서문

INTRO

제2권 분야별 보고서에서는 15개의 분야별 주요 특징 및 동향과 더불어 각 국가별 중요 사안들과 최근 변화들을 집중 조명한다.

관세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이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는 자국 산업 보호 수단이다. 취약산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고관세는 물론,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말한다. 수입금지는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가안보, 보건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허가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품목들에 대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수입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류 임의 변경,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다. 그간 세계 각 국의 통관 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통관절차는 가시적인 무역장벽 및 무역제한조치 등과는 별개로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특히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제한 조치라는 이유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와 구별된다.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은 수입국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되며, 수입국 정부는 덤핑차액(보조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2012년 이후 연간 200건을 상회하며 2020년 355건, 2021년 186건을 기록했다(조치 건수는 2020년 107건, 2021년 287건).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기업(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으로, 선진국들은 주로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 철강, 섬유 등 사양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관련 행정적 절차를 말하며,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로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정부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에 10~15%로 추정된다. 그간 정부조달시장은 정치·국방·경제적 이유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효율성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최근에는 TBT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TBT 통보건수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기술집약적인 산업

에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SPS의 경우 최근 각종 질병 및 병충해의 진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SPS를 둘러싼 이해관계국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생성물을 권리화 한 것으로 국제무역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 협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FTA 등을 통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범위의 확장, 신유형 지식재산권 보호 등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조치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 같은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 그리고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 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외국인 설립 기업에 내국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이란 금융서비스(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그리고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협정에 위반되는 당사국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시장접근 제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정,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이행의무의 부과,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제한 등이 있고,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과세 문제, 금융 및 자본조달 상 제약, 인력의 현지 파견 제약 등이 있다.

환경관련 규제의 전 세계적 강화 추세에 따라 환경관련 통상장벽 역시 점차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 역시 점차 환경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은 인프라, 공공서비스, 해운·수송 분야에서 국내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를 부과하는 것과 교역국 기업에게 경쟁법을 역외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반경쟁행위에 대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개도국이 취하는 형태이고, 후자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이 주로 적용하는 유형이다.

디지털 무역 장벽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장벽, 디지털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차별적 조치, 인터넷 지원 서비스의 공급 제한, 기타 제한적인 기술 요건 등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WTO의 규범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장벽은 각국의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일부 민감한 사안 또는 분야를 제외하면 디지털 무역 관련 장벽이 낮은 편이다. 이와 상반되게 개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많고,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지역화와 같이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

2022년 12월



분야별 통상환경

www.motie.go.kr

CONTENTS

Part. I 무역장벽보고서

Part. II 분야별 통상환경

Part. III 아시아 · 대양주

Part. IV 아메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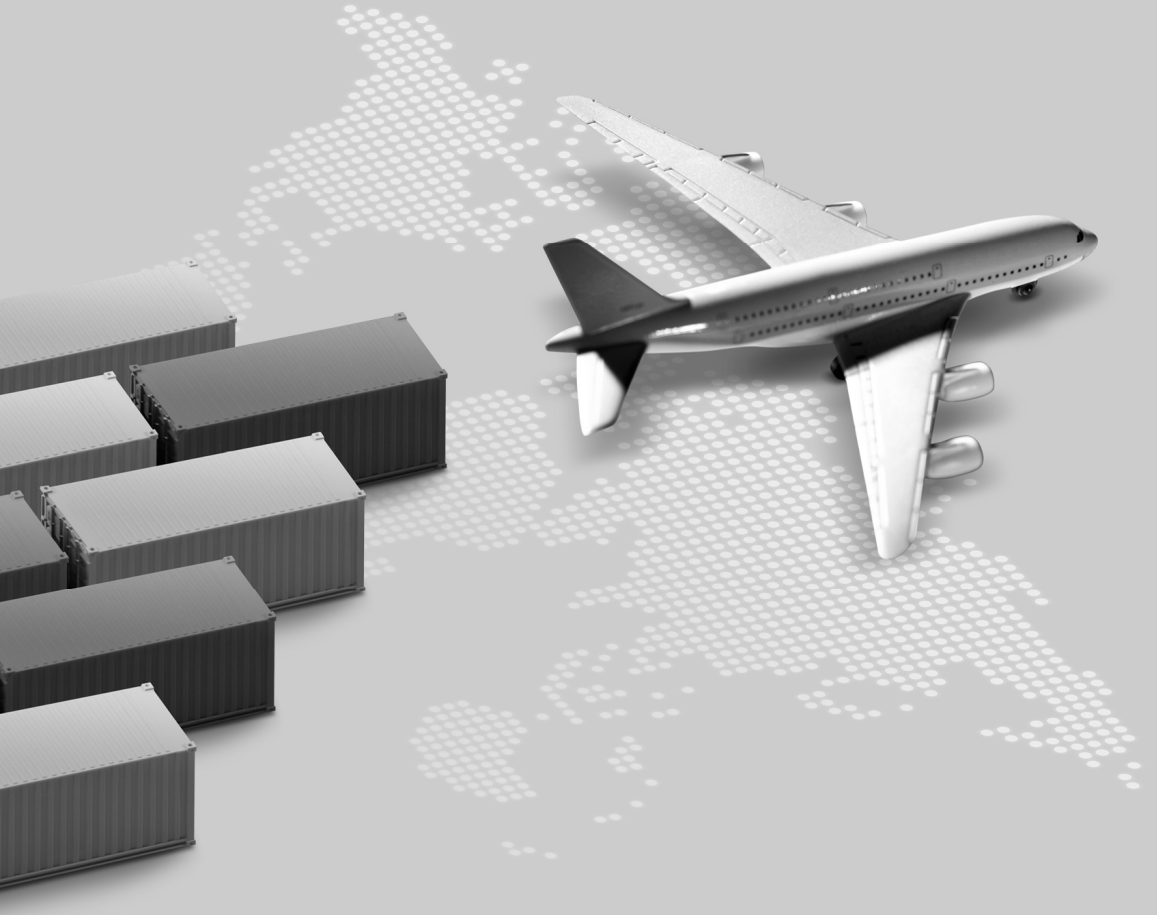
Part. V 유럽

Part. VI 아프리카 · 중동

관 세	003
수입규제	036
통관절차	141
세이프가드	180
반덤핑 및 상계관세	187
보조금	207
원산지규정	240
정부조달	262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299
지식재산권	368
서비스	392
금융서비스	448
투 자	471
환 경	530
경쟁정책	600
디지털 무역	635
요약문	676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www.motie.go.kr

Part II

분야별 통상환경

관 세
수입규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 자
환 경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요약문



관 세

개관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는 크게 인하되었다. 국제 다자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이전,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었다. 그러나 여덟 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억제 기능은 크게 쇠퇴하였다.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공산품 부문의 관세가 선진국의 경우 평균 40%, 개도국의 경우 평균 37% 인하되었다.

관세는 WTO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각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높은 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 특정품목들에 대해 고관세(tariff peaks)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관세 수준이 여전히 높다.

한편 WTO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자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세장벽 완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일례로 최근에는 IT제품, 환경상품 등을 중심으로 WTO 복수국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expansion)이 타결되어 2016년 7월부터 해당 IT제품의 단계적 관세인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2022년 2월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시작으로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협정까지 발효하면서 전체 FTA 발효건수가 21건으로 늘어났다.[1] 이와 함께 그간 교착상태에 있던 한·GCC FTA와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2022년 3월과 9월에 각각 재개하였으며, 11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협정인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MERCOSUR,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상을 추진 중인바, 각국의 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분류되고 과세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류된다. 또한, 과세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그리고 과세의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협정관세 등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 특수관세로 분류된다.

※ 관세의 종류
- 과세의 기회: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 과세의 목적: 재정관세, 보호관세
- 과세의 방법: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 과세의 성격: 일반관세(국정관세, 협정관세), 특수관세(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각 국의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관세율표는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한 물품을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국제품목분류기준인 HS코드를 따른다. 또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에 있으면 재정관세, 섬유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데 있으면 보호관세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나이지리아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재원조달 수단으로써의 관세는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다.

1) ASEAN 10개국과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가 참여한 RCEP은 2022년 2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음. 또한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와의 FTA가 2022년 12월 1일 같은 날 발효되었고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23년 1월 1일 발효되었음.

한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종가세와 상품의 수량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공평하게 과세되며 시장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반면 종량세는 일부 농림수산업 등에서 저가 수입품 급증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적용하는 관세로서 종량세와 종가세를 합쳐 과세하는 복합세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선택세가 있다.

또한, 자국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국정관세(보통 기본관세(general tariff))라 하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하는데, 협정관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의 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WTO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율 인상은 할 수 없으며, 또한 모든 국가에 대해 최혜국대우[2]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각 국은 국내외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건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 간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황분석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로 여기에는 다자통상 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2~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

2) 무역상대국들 간 차별을 두지 않고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최선의 대우를 모든 WTO 회원국에게 부여하여, 모든 국가들이 최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외교통상부 2007, WTO 이해하기, p. 11).

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브라질, 인도 등)가 종종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이 13.6%, 평균 양허세율이 18.3%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2021년 주요국별 평균관세율

(단위: %)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평균양허세율	18.3	3.3	5.3	4.6	6.7	9.4	10.0	31.4	50.8	7.6
평균실행세율	13.6	3.4	5.2	4.2	4.0	2.4	7.5	13.3	18.3	6.6
양허비율	93.6	100	100	99.7	99.7	97.2	100	100	74.3	100

주: 자료 출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22. World Tariff Profiles 2022.

주요 품목별 평균 관세율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개도국은 운송장비, 전기기계 그리고 농산물 분야의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아래 표 참고).

2021년 국가별 주요 품목별 평균관세율

(단위: %)

국가		농산물		운송장비		전기기계		섬유		의류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선진국	미국	4.5	5.2	3.1	2.9	1.4	1.4	8.0	7.9	11.6	11.6
	EU	12.6	11.7	4.5	4.7	1.9	2.1	6.5	6.5	11.5	11.5
	일본	18.4	14.9	0.0	0.0	0.2	0.1	5.5	5.4	9.2	9.0
	캐나다	16.1	15.9	5.6	5.5	3.7	0.8	10.6	2.3	17.3	16.6
	호주	3.2	1.2	12.6	3.4	9.1	2.4	18.3	4.2	41.4	4.6
개도국	중국	15.7	13.8	11.4	9.6	8.9	5.5	9.8	7.0	16.1	6.8
	브라질	35.5	10.1	33.2	18.8	31.9	13.8	34.8	23.2	35.0	35.0
	인도	113.1	39.2	35.7	31.1	27.8	10.3	27.3	25.5	37.7	24.1
	러시아	10.8	9.7	8.9	7.9	6.1	4.5	7.8	7.5	8.7	7.6
한국		64.9	56.8	8.1	5.7	6.9	5.2	16.6	9.0	28.5	12.5

주: 자료 출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22. World Tariff Profiles 2022.

국가별 자료를 토대로 최근 각국의 관세율 구조 및 운영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자체제의 정착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다. WTO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다자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무역상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예컨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이 2000년대 이후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관세율 체계를 신속하게 국제적 표준에 조화시켜 가고 있다. 또한, 인도와 같이 전통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최근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만 최근에는 DDA 협상을 통한 관세장벽의 해소는 부진한 상황인데, 이에 대안으로 복수국간 협상에서 관세철폐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참여국의 관세철폐 의무는 같은 참여국 뿐 아니라 비참여국, 즉 모든 WTO회원국에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둘째, 지역주의의 확산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는 협정유형 기준으로 585건에 이른다.[3] 이에 따라 국별로 특혜관세율을 지역무역협정국에게 부여하면서 관세율 체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게다가 역내국 간의 특혜관세로 인한 역외국의 간접적 손실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각국은 관세율을 여전히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취약산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고관세는 물론,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관세율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DDA 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는 물론 관세율 운영체계를 투명화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3) http://rtais.wto.org/UI/publicsummarytable.aspx (검색일: 2023.5.23)

마지막으로, 관세율만으로 각국의 개방도를 가늠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소위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 업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관심의 초점은 외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국내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별 관세인하의 추세와 잔존하고 있는 고관세 품목, 그리고 관세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2022년 World Tariff Profiles에 따르면 평균 실행관세율은 3.4%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46.5%(기계, 전자, 화학, 철강제품 등)가 무관세이다. 다만, 전체 품목의 2.7%(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15%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통해 2012년 전 품목의 82.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이행 5년차인 2016년에는 철폐된 품목의 비중이 92.8%까지 늘어났다. 한·미 FTA는 기존 관세율이 높은 섬유 분야의 관세철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등 우리 제품의 미국 시장접근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의 최대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가솔린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2015년까지 2.5%로 유지된 후 2016년 철폐되었다.

EU는 2020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의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이 5.1% 수준이다. 이 가운데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11.2%, 비농산물은 4.1%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일 한·EU FTA의 잠정발효에 따라 EU측 전 품목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승용차(관세10%)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관세철폐 양허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소형(1,500CC 이하)의 경우 발효 후 5년이 지난 2015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또한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의 관세도 발효 5년 후인 2015년 7월 1일부로 철폐되었으며, 전기·전자 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9.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다.

영국의 경우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관세제도를 적용해왔으나,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는 영국의 자체적인 관세제도 및 관세율표(UKGT: UK Global Tariff)를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세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해당 관세율표가 적용된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 EU와의 협상은 물론 역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2021년 7월 기준 EU를 제외한 67개국과 총 36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과는 2019년 8월 양자간 체결된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는데, 쌀을 제외한 99.6%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평균실행관세율 4.2%, 공산품의 평균관세율 2.5%)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18.4%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RCEP 체결로 우리의 수출 유망품목 중 소주(16%)와 막걸리(42.4엔/L)에 대해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여 우리 제품의 일본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할 뿐,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HS 8단위 기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8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4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홍콩은 자유무역정책에 따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담배, 주류(와인 및 알콜도수 30도 이하 제외), 탄화수소, 메탄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가 판매자들에게 부과되어 관세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호주는 2019년 기준 평균관세율 2.4%,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품 관세율 2.6%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평균 4.3%)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호주의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보다 크게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도 1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호주는 1989년 이후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FTA를 통해서도 관세를 더욱 낮추고 있다.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는 2018년까지 품목 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에 해당하는 한국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품목수 기준 90.9%는 즉시철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발효일 즉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바 있다.

뉴질랜드는 평균 MFN 실행관세율이 약 2.0%이며, HS코드 기준 전체 7,926 품목 중 64.9%(5,143개)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대체로 일반관세(General Tariff) 자체가 낮은데, 이는 국내의 생산 중 제조업 분야가 약 11%에 불과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섬유, 신발, 가공식품, 기계류, 철, 플라스틱 제품 등을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5~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5년 12월 20일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었으며, 현재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다.

캐나다의 2020년 기준 WTO MFN 평균 관세율은 3.9%이며, 공산품은 평균 2.1%, 농산품 평균 15.1%이다.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의류, 신발, 조선 등 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2015년부터 중국, 인도, 브라질 등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

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캐나다가 GPT를 적용하는 국가는 106개국이다. 한국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한·캐나다 FTA에 따른 특혜관세(KRT, Korea Tariff)를 적용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WTO 가입과 EU와의 유럽경제지역(EEA)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여전히 높은 관세(평균 MFN관세 40.4%)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외무역은 EEA 협정과 우대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품의 85%가 무관세로 거래되며, 공산품의 MFN 평균 관세율은 2019년 기준 0.4%(simple average)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은 2006년 9월부터 노르웨이가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FTA를 발효중이다. EFTA측은 모든 한국산 공산품(가공농산물 포함) 및 수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나 기초농산물 400여 품목에 대해서는 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등 자국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개도국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에 더하여 각종 수입부가금이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튀르키예는 EU의 제3국 관세제도를 수용하여 자국과의 관계 및 해당 국가의 개발정도를 기준으로 국가군을 7가지로 분류한 뒤 관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1군은 EU, EFTA 등 관세동맹 체결국으로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군은 FTA 체결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본래 7군에 속해 MFN을 적용받았으나, 2013년 FTA 체결 이후 2군에 포함되었다. 튀르키예의 MFN은 EU 기준인 4.2%이며, 농산품 및 일부 민감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4]하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약 4,700개 수입제품에

4) 견과류 43.2%, 채소 5.3~49.5%, 과일류 6.8~86.4%, 의류 12%, 신발 8~17%, 유리제품 11%, 철과 비합금강 30%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적용 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이후 2020년 12월 31일에 추가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를 개정하여 발표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총 4,8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시행중이다(관보번호 제31351-3호, 시행령 제3351호). 2022년 1월 1일부터는 4,237개로 추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소폭 축소시켰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될 예정이다(관보번호 제31706-3호, 시행령 제5053호). 다만, 튀르키예 무역부에서 발표한 관보에 따르면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추가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1992년부터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시켜 왔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잠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2017년 822개에서 2018년 948개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 1월부터 859개로 줄었다. 또한 2018년 관세조정방안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소비품과 의료기기, 중국 정부가 수입을 지원해왔던 첨단설비와 핵심 부품, 생산과정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제품들이 포함되었다. 조정 후 2018년 중국 세칙의 세목수는 8,549개로 전년에 비해 2개 늘어났다.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양자 및 다자 간 경제무역협력과 FTA 체결에 따라 해당국가와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2016년 9월 15일부터 ITA 확대 협정으로 정보통신상품, 반도체 및 그 생산설비, 디스플레이상품 등에 대해 최혜국 세율을 인하하였고 2018년 7월 1일에 제3차 인하까지 이루어졌다. FTA와 관련하여 2019년 중국은 28개 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를 발효하였고 지금까지 총 4,28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였다. 발효 20년이 되는 해에는 한국은 전체 품목수의 92.2%, 중국은 90.7%에 대해 무관세가 실현될 예정이다.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한 이후, 2022년1월1일 중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6개국을 포함한 10개국과 RCEP을 발효했다. 그 후 한국은 2022년2월1일에 RCEP이 발효되는 등 2022년 11월 현재 중국은 총 13개국과의 RCEP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대만은 2002년 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HS코드 8자리 기준 9,128개 품목 중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4,491개 품목(공산품 3,470개, 농산품 1,021개)이며, 2022년도 평균 명목관세율은 6.34%, 농산품 15.06%, 공산품 4.14%의 세율로 2020년부터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SEAN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다. 게다가 2007년 6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되었다. 한·ASEAN FTA에서는 품목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한다. 한국을 비롯한 ASEAN 6개국과 후발 ASEAN 가입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상품양허 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모든 국가의 일반품목군(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90% 이상) 관세는 철폐되었다. 그리고 민감품목은 0~5%로 관세를 인하하며, 초민감품목은 양허유형에 따라 부분 관세감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등이 수입액 기준 상한선 때문에 초민감품목에 분류되지 않고 일반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의 CKD(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었고, 완성차의 경우에도 0~5% 수준으로 관세가 인하되었다.

베트남의 평균 MFN 실행관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WTO 가입 이후 점차 인하되어 2021년 9.6%(WTO Tariff profile 기준)로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한국과는 한·ASEAN FTA에서 개방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자간 FTA가 발효(2015년 12월)되었다. 이에 따라 87.8%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 89.9% 품목의 관세가 발효시점부터 15년 내에 철폐 된다. 특히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등은

3년; 전동기,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 5년; 철도 차량부품, 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화장품 등은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최근 EU와의 FTA를 발효(2020.8.1.)한 상황에서, 2022년 1월 발효한 RCEP 수입세율이 베트남 관세율표에 포함되어 활용이 가능해지는 경우(2022년 말 법령 개정 예상) 베트남의 관세장벽 제거는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전체 11,058개 품목의 약 55%가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9%의 품목에 대해서는 20~6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과거부터 필리핀은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여전히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MFN 평균 관세율은 2020년 하반기 기준 7.75%이다. 산업별 관세율은 초민감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이 11.63%로 가장 높고, 화학 4.33%, 기계/장비 7.66% 수준이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한·ASEAN FTA에 따라 2012년부터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상태이며, 2020년 타결된 RCEP과 2021년 10월 타결된 한필 양자 FTA를 통해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4.3%,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2019년 기준 단순평균 MFN 실행관세율은 8.1%(농산물 8.7%, 비농산물 8.0%)로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안전보장 및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일부 보호 산업과 물품에는 고율의 수입 관세(양주 150%, 와인 90% 등)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코코아두, 목재, 팜오일(22년 말까지 면제), 광석(피로니켈, 니켈선철 포함) 등 천연원료에는 자원보호 및 국내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자국 산업보호 및 소비재 수입억제 등을 위하여 1,147개 최종 소비재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시 징수하는 선납 소득세를 종전 2.5% 또는 7.5%에서 최대 10%로 인상하였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한·ASEAN FTA를 통해 일반품목군의 경우 0%, 일반 민감품목군은 최대 5%로 감축되었으나, 자동차 등 초민감품목은 여전히 5% 이상의 관세, 양허제외, TRQ 등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일반품목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하고 있

다. 다만, 최근 양국 국회의 비준이 끝나고, 2023년 1월부터 발효가 예상되는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향후 열연·냉연·도금강판, 합성수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 등 관세혜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대부분 종가세를 부과하나, 많은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에 맞추어 현재 다양한 종류의 원자재, 부품과 기계류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 인하 또는 면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이며,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다.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2022년 3월에 RCEP이 발효되면서 일부 품목에서 추가적인 특혜 관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태국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7.96% 수준이며 6단계로 이루어진 관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광물, 연료, 화학물 등은 2~3%, 중간재, 자본재, 기계 및 전기제품, 목재 등은 4~5%,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그 외 기타 제품은 6.51%, 돌과 유리, 그리고 원자재는 9%, 소비재는 13%, 운송관련 품목은 17%, 채소 및 식품은 21~22% 등이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품목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최고 80%), 오토바이(60%), 특정 섬유제품(60%), 증류주(60%), 특정 플라스틱 용품(30%)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ASEAN FTA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2017년까지 91.1%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나머지 품목들도 5% 또는 일정한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가능하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은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와는 한·ASEAN FTA에 따라 일반품목군은 2018년부터 0%가 적용되고 있으며, 민감품목군의 관세는 2024년까지 점차 감소해 5%

까지 인하된다. 초민감품목의 A군과 E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B군만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현재 관세율의 80%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4륜)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 40%, 소비세 25~90%, 부가가치세 10% 등 이다.

캄보디아의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ASEAN FTA에 따라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ASEAN 회원국으로서 AEC 서명에 따라 2018년부터 대부분의 역내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었다. 캄보디아는 FTA('07)와 RCEP에서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2022년 12월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전체 품목의 0.8%p, 수입액의 19.8%p(1.1억 달러 규모)가 추가 개방될 전망이다.

파푸아뉴기니의 평균 수입관세는 5.1%로 영세율(Zero Rate, 0%),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15%), 보호세율(Protective Rate, 25%), 금지세율(Prohibitive Rate)의 4가지로 구분된 관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투입재는 중간세율, 국내 생산품과 경쟁하는 최종재는 보호세율, 사치품이나 과일·채소·목재 등에는 제한된 일정 기간 동안 금지세율이 부과되며, 이외에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설탕(최대 30%), 가전제품(30%), 자동차(20~40%) 등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Excise Tariff (2020 Budget)(Amendment) Act 2019)이 2019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0년 1월부터 기존 80~120%의 고율 관세가 20~40%로 대폭 인하되어 실시 중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양허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고 관세율 역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세 외의 장벽도 많아 관세율 인하 자체만으로 무역

장벽 완화를 속단할 수는 없다.

칠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6%의 단일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19%)가 부과되며 담배, 주류,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부가금이 부과된다. 한편 현재 칠레는 6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세계 최다 FTA 체결국으로 실효관세율은 1% 미만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로 인해 현재 상호 97% 이상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변화된 통상환경 등으로 인한 협정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양국은 2018년 11월부터 FTA 개선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최근 디지털경제 추세를 반영하며 협정 내 디지털경제 챕터를 신설하였다.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여 2022년 기준 총 15,050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MERCOSUR 역내는 지속적인 관세 철폐를 통해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거의 무관세이다.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 여타 신흥경제국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 tariffs)이다. 한편 MERCOSUR 회원국들은 CET가 적용되는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품목 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028년 12월까지). 과거 동 제도의 도입으로 브라질의 경우, 해당 100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어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 외에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아르헨티나 평균 관세율은 13.5% 수준이다. 다른 MERCOSUR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민감품목 100개를 지정하여 35%한도 내에서 별도의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류도 포함되어 있다. 아르헨티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종가세 제도를 운영하며, WTO 규정에 따라 35% 범위 이내에서 중간재에는 낮은 관세를, 고부가가치제품 또는 완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칠레, 멕시코, 안데스공동체회원국 등에 대해서는 양자적 또는 MERCOSUR 차원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MERCOSUR 회원국이지만 대외공동관세(CET) 적용 품목 가운데 23%를 예외로 설정하고, 대부분 CET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2019년 평균 실행관세율은 9.8% 수준이며, 전체 상품 10,270개(HS 8단위 기준)에 대해 0~35%의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6%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고관세 품목은 주로 신발류(20%), 섬유류(20%), 무기류(20%)에 집중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MERCOSUR의 규정에 따라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한다. 우루과이가 CET 예외 목록에 포함시킨 품목은 총 2,115개로 그 중 1,223개가 산업별 예외 대상이고 892개는 국별 예외 대상이다. 우루과이는 이러한 품목의 대부분은 CET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MERCOSUR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관세를 면제하나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2~6%), 중간재(8~9%), 소비재(10~20%)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농업 및 호텔 공급재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한다.

베네수엘라는 2017년 8월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자격이 정지되었지만, 제도적으로는 MERCOSUR의 대외공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관세는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가세(CIF 가격 기준)를 원칙으로 하며, CIF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 위기 심화에 따라 수출 진흥을 위해 2019년까지 일부 품목에서 관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20~25%를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차종에 따라 33%에서 35%수준이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10단계(0~45%)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가에 따라 관세 수준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멕시코에서 재가공 되기 위한 품목은 0%가 적용되며, 반대로 가죽·신발·의류 등 멕시코의 국내 생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23~45%의 고관세가 부과된다. 농산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260%에 이른다. 한편 2016년 5월 멕시코는 섬유·의류·신발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인하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2019년 2월 멕시코 경제부는 동 조치를 번복하며 2019년 4월 25일부로 일부 섬유, 의류, 신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표하였다. 그리고 2019년 10월 28일 부로 동 분야 단계적 관세 조정 조치를 연방관보에 발표하였다.

에콰도르는 안데스공동체(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회원국으로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와의 역내 무역은 무관세로 이루어지나, 대외 단일관세는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에콰도르의 관세체계는 CAN 무역규범을 따라 0%, 5%, 10%, 15%, 20%로 구분되며, 예외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35~40%의 관세가 부과된다.

페루는 법령 개정(404-2021-EF)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관세제도에 따르면 품목 수 기준으로 71.6%(5,727개)가 0%, 20.0%(1,602개)가 6%, 8.4%(674개)가 11%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각 세율별 2021년 수입액 비중은 무관세 76.6%, 6%가 19.0%, 11%가 4.3%이다. 현재 페루의 평균 관세율은 2.1%이다. 한국과는 2011년 8월 한·페루 FTA를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콜롬비아는 수입품목을 용도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세율(0%, 5%, 10%, 15%, 20%)을 적용하고 있으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15일 발효된 한· 콜롬비아 FTA의 특혜관세가 적용되어 콜롬비아는 4,390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79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였다.

볼리비아의 관세율은 0%, 5%, 10%, 15%, 20%, 30%, 40%로 구성되어 있다. WTO가 발간한 2021년 세계관세현황(World Tariff Profiles 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볼리비아 평균 관세율(MFN)은 11.8%이며, ①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3.2%, ② 비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1.6%이다. 안데스공동체(CAN)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세가 100% 면제되며,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국가 중 멕시코와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파나마의 2019년 평균 관세는 약 8.25%로 농산물 등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중남미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 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7%가량의 판매세(ITBMS)를 부과한다. 또한 일부 품목에는 추가적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일례로 자동차의 경우 2010년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나, 7%의 ITBMS와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오히려 전체 세율이 더 증가되기도 하였다. 파나마는 0%에서 최고 260%까지 29단계의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약 97%에 해당하는 품목이 크게 3단계(0%, 0~10%, 10~20%, 20%)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간다. 다만 생, 가공, 냉동 닭고기(260%), 우유 등 일부 유제품(155%), 사탕수수(144%), 유장 (120%) 등 총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100% 이상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과테말라는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회원국으로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한다. 중미관세제도(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코드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한다. 다만 흰 옥수수

(HS 1005.90.30), 설탕(17.01), 담배를 함유한 궐련(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그리고 알코올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1년 2월 기준 최신 자료)과테말라의 평균 관세율(관세징수액/CIF수입총액)은 3.33% 수준이다. 한국은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2021년 3월 1일부로 전체 발효하였다. 과테말라는 한국과의 FTA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 반대하는 산업계를 설득하는 한편 추가 가입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중미 6개국의 일원으로 한국과의 FTA에 정식서명하고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한바 한·코스타리카 양국 간에는 2019년 11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되었다. 코스타리카와 한국은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확보하였으며, 한국은 의료기기 및 전자부품 등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니카라과는 한·중미 FTA의 서명국으로 2019년 10월 한·니카라과 FTA를 발효하였다. 양국 간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5% 이상, 수입액 기준 99%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니카라과는 「수입관세법」과 중미공동시장(CACM) 협약에 따라 역외 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과 공동역외 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는 무관세로 수입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었다. 이후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돼지고기,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는 중미공동시장(CACM)의 회원국으로 자국의 기본관세를 CACM 공동관세로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0~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고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으로는 의류완제품(25%), 섬유(20% 이상), 자동차(25~30%), 일부 농산물(40%) 등이 있다. 또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13%)가 과세되며, 총기와 담배 품목에는 특별세(30~39%)가 부과된다. 엘살바도르는 한·중미 FTA의 서명국으로 협정 규정에

근거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2020년 1월부로 동 FTA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전 품목의 89.5%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며, 특히 승용차에 대해서는 미국, EU에 제공(10년 비선형 철폐)한 것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인 9년 비선형 철폐로 양허한다.

온두라스는 중미공동시장(CACM)의 회원국으로 기본관세체제는 CACM의 대외공동관세를 따른다.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0~15%(자본재 및 원자재 0%, 중간재 5~10%, 최종재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자국 농업의 보호를 위해 옥수수 및 수수(sorghum) 수입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가격 상한선제도와 정부 수매정책을 근거로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가 15%에서 50%까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한편 한·중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온두라스는 2019년 10월부로 한·온두라스 FTA를 발효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의 평균 MFN 실행관세율은 7.6%(2021년 기준)이며, 관세와 더불어 10~130%의 특별소비세(알코올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담배 등), 18%의 부가가치세(ITBIS), 0.4%의 세관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특별소비세 및 세관서비스 수수료는 CIF 기준,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한편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되며, 국내시장 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 품목은 WTO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각종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WTO에 가입하면서 당시 평균 10%의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 2018년 관세율은 4.9%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8%로 유지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2015년 1월 1일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회

원국으로 회원국 간 관세를 폐지하고 대외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에는 역내외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EAEU 통합관세법(The Customs Code of the EAEU)을 시행하였다. EAEU 출범 이후에는 개별 회원국이 아닌 EAEU 차원에서 FTA를 체결하여 특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AEU 출범 후 첫 FTA로 베트남과의 FTA가 2016년 10월 발효되었다. 2018년 5월 체결된 EAEU와 이란 간 FTA 협정은 양측 교역의 약 50%에 해당하는 제한된 범위의 관세 양허를 담은 유효기간 3년의 잠정 협정으로, 2022년 3월에 해당 협정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되었으며, 2023년부터 동 잠정 협정을 전면적인 협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10월 1일에는 EAEU와 싱가포르 간 상품 FTA가 체결되었으나 현재 발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EAEU와 세르비아 간 FTA 협정은 2019년 10월 25일에 체결되어 2021년 7월 10일 발효되었다.

세르비아는 현재 총 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7.4%(WTO 기준)이다. 농산물 및 계절성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20%이다.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 진출 시 수출 유망 품목의 관세율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류 1~5%, 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 1~3%, 화장품 15%이다.

벨라루스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이다. EAEU는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에서 생산된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일반관세의 75% 적용 대상 국가이다. 2019년 7월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 대만,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이 벨라루스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20년 2월 벨라루스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EU, 캐나다, 브라질과 양자회담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일부 합의를 이루었다. 2020년 2월 기준 WTO 전체 회원국 중 6개국(EU, 캐나다, 미국, 우크라이나, 브라질, 호주)과 협상이 미완료된 상황이다. 2021년 4월 마케이 벨라루스 외교장관이 WTO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통해 가입 협상 마무리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후 벨라루스는 미국, EU,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캐나다와 협상 중이었으나,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협상은 전면 중단되었다. 한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 역내 원자재 공급망 수급부족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결정문 46호(2022.4.5.) 및 63호(2022.4.12.)를 통해 특정 유기화합물, 화학제품, 특정유형의 기계장비 및 부품, 특정유형의 제지류 등 537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으며, 관련 사이트에서 HS 코드별 해당 제품군 검색이 가능하다.[5)]

카자흐스탄은 EAEU 출범 이전인 2009년 11월 27일 러시아, 벨라루스와 이미 관세동맹을 형성한 바 있다. 2017년 4월에는 EAEU 5개국이 통합관세법에 서명하였고, 2018년 1월 1일에 발효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관세는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편이며, 평균 관세율은 농산물 10.6%, 비농산물 6.4% 수준이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2%가 적용되며, 수입업자가 수입품을 재가공하여 수입 후 2년 이내 타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주류, 담배, 자동차의 수입 시 수입관세와 부가세 외 별도로 소비세가 부과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우유 등 생필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낮은 세율과 자국 생산제품 보호를 위한 고관세 정책을 병행해 왔다. 특히 WTO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장벽이 높고 관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Decree)에 따라 자주 세부 품목에 대한 세율이 변동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수입 시 일반적으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관세 및 소비세가 각각 0~100% 이상, 부가가치세가 0% 또는 15%로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가 낮더라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통관 시 0.2%의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부가된다.

타지키스탄은 상품 유형에 따라 0%~15%(0%, 2.5%, 5%, 7%, 10%, 15%)에 이르는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6.1%이다. 다만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 인도적 지원물품, 정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수입된 제품, 농업 등 기계설비, 의약품, 알루

5) https://www.alta.ru/tamdoc/22sr0046/, https://www.alta.ru/tamdoc/22kr0063/

미늄의 관세는 면제된다.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농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감자, 양파, 양배추, 당근, 무, 토마토, 오이, 마늘, 수박 등에 대해 30%, 과일류, 밀, 계란, 육가공제품, 국내산 가죽제품과 캐시미어 등 방직물, 인쇄물과 가구류에 대해 2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각종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해 도수 및 강도에 따라 25~4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 건축자재인 시멘트, 석회, 유리와 세라믹 제품 등에 대해 2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석유, 의료용, 항공기, 나무, 농업, 중소기업 등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한편 몽골은 염소 가죽 및 나무와 관련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화 수준이 낮은 관계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자국 중소기업 활동 장려를 위하여 식료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담배, 주류 등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여 관세를 높인 바 있다. 최근에는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야채, 과일, 주스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등 보호주의적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한 수제 모직 및 견직 카펫은 해외 반출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조 후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투르크카펫트협회〈Туркменхалы〉 승인)가 있어야 하고, 수입 시에는 1㎡당 5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개도국 가운데서도 대체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 역시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인다.
인도의 평균 실행관세율(MFN)은 2020년 기준 15%이다. 2019년 평균 실행관세율인 17.6%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인도에서 관세는 여전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진흥을 위한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장벽 중심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인도에는 관세 외에도 각종

간접세가 존재하는데, 2017년 7월 1일부터는 통합부가가치세로 통합되어 부과되고 있다. 통상적인 공산품의 기본관세는 20%이며, 여기에 사회보장세(SWS) 10%, 통합부가가치세 (0%~28%)가 적용되는데, 예컨대 화장품의 경우 수입금액의 대략 44%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2020년 45개 제품의 관세 인상(휴대전화 부품 10%→20%, 전기자동차 부품(10%→20%, 15%→25/30%, 25%→40%))에 이어 2021년 IT 기기 및 부품(0%→2.5%), 화학제품(0%, 2.5%, 5%→7.5%, 5%→7%, 10%→15%), 자동차부품(10%→15%) 등 47개 제품군에 대하여 관세를 인상하여 주요 산업의 인도 내 제조를 장려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수입 규제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혜택 부여 등 수입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보호 및 과잉수입 억제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관세(Regulatory Duty)를 부과하여 1996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섬유, 전자 등 일반 소비재와 산업재를 불문하고 규제관세를 폭넓게 부과해 오고 있다. 파키스탄 연방국세위원회(FBR: Federal Board of Revenu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99개 사치 및 필수품목에 대해 2~90%의 규제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규제관세를 재정적자 보전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평균 관세율은 농산품과 비농산품 모두 10~15%이며, HS(2019) 8단위 기준 6,965개 품목 중 약 50%가 무관세이지만, 정부지침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만,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스리랑카의 주요 제조업 생산 품목과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는 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CESS)이 부과되는데 CESS 관세율은10~45% 사이이다. 비필수재 품목 중 일부에는 75~100% 사이의 관세할증률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차(茶)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재인 커피 및 기타 차 종류(HS코드 09류 품목)에 15~30% CESS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4라운드

가 2018년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양허품목이 기존 4,270개에서 10,677개로 늘어나 이전보다 확대된 관세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거나 제도운용의 투명성이 낮은 경우가 발견된다.

이란은 WTO 비회원국으로서,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란력 신년이 되는 매년 3월 21일 기준으로 관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중 재조정하기도 한다. 2018년 5월 미국의 포괄적 이란핵협정(JCPOA) 탈퇴로 미국의 제3자 제재(Secondary sanctions)가 부활되어 이란 정부는 자국산업 육성과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해 외환과 결부된 수입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란 정부는 수입품목을 Group 1(수입허가 면제), Group 2,3(조건부 수입 승인), Group 4(수입금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은 의약품, 식료품 등 수입품목 Group 1에 해당하는 필수품에 대해 2018년 8월부터 고정환율(1$=42,000리알)로 외환구입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 3월 21일부터 정부환율제도를 폐지하였다. 관세율은 평균 24% 수준인데, Group 1의 의약품과 식료품 등은 5~10%, 산업용 필수 원부자재는 5~15%, Group 2의 중간재는 10~34%, 그리고 Group 3의 일반 완제품은 15~5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수입금지 품목은 사치품과 이란에서 제조가 가능한 품목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2022년 10월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2,500개 품목이다. 참고로 완성차는 2018년 6월 22일부터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 8월부터 FOB 기준 2만유로 이하 소형 승용차는 수입을 허용하였다. 현재 이란은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튀니지, 시리아, 쿠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7개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는 2018년 5월 639개 산업재와 223개 농수산품에 대해 특혜무역협정(PTA) 체결 후,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6] PTA에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은 이란 상품의 경우 3.1%, EAEU 상품은 12.9%이다. 기존 특혜관세 대상국인 벨라루스와 키르기스스탄은 EAEU

6)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경제공동체(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회원국 간 관세 감축을 위한 ECOTA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Free Trade Agreement)는 2003년 서명된 이후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PTA를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이란 무역진흥청은 이란과 EAEU 간 FTA가 2023년 3월 21일부터 발효하며, 양측 간 교역 품목의 80%가 무관세로 교역될 것이라고 발표(2022.10월)한 바 있다. 이란과 EAEU간 교역량은 2015년 23억 달러에서 2021년 기준 5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이란 회계연도 7개월간(2022.3.21-10.22) EAEU와 교역액은 18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한편 이란은 2021년 9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ahi Cooperation Organization) 가입 신청 이후, 2022년 9월 정식 멤버쉽을 획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해 확정된다. HS2002의 8단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기존 관세는 대부분 5% 또는 12%로 고정되었으나, 2020년 6월 20일부 철강, 전력기자재, 석유화학제품, 가전제품 등 주요 수입품 1,390여개 품목의 관세를 품목별로 0.5~15%p까지 다양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기존 0~20% 범위의 관세율을 6~25%로 인상하였다. 또한 2022년 6월 12일부터 추가적으로 농수산품, 화학제품, 기계류 등 주요 99여개 수입 품목의 관세를 품목별로 0.5~15%p까지 적용하며 기존 0~20% 범위의 관세율을 5.5~25%로 인상하였다.

UAE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한다. 단 예외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담배 100%, 주류 50%) 또는 무관세(왕실, 정부 및 외교관용으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 원산지가 GCC 회원국인 상품)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 가축류, 기초 식품류, 약품류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대부분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CIF 기준 5%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며, 다만 GCC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별도의 서류 절차를 통해 무관세를 적용 받는다. 농산물 및 기본생필품 등 41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담배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쿠웨이트 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해 CIF 가격 기준 25%까지의 보호관세가 부과된다.

카타르는 GCC 관세동맹국들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 1월부터 채택,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에 CIF 송장 금액에 5%의 종가 관세를 부가한다. 철근 등 철강제품 및 시멘트는 20%, 요소는 30%, 악기류는 15%, 술과 담배, 돼지고기류는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GCC 국가들이 지정하는 면세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적인 관세장벽은 GCC의 결정에 따르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 GCC는 2017년 4월 23일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 12~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카타르는 여전히 통상적인 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라크는 2016년 1월부터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5~35% 수준(주류 등에 대해서는 300% 관세 부과)의 차등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법을 시행하였다. 동 관세법은 과거 2010년부터 마련되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연기되어 왔었다. 또한 관세 분야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차등 관세가 강력하게 시행되지 못하였고, 2018년 1월부터 관세를 품목군별로 단순화했다. 2019년 2월부터 중앙정부와 쿠르디스탄지역 간 관세를 통일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TAMA는 CIF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TAMA 및 구매세는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다. 다만 2017년 4월부터 Family Net Plan을 통해 휴대폰의 구매세(15%)가 폐지되었으며, 유아의류(관세 6%), 신발(관세 12%) 등 품목의 관세율 폐지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FTA를 최초로 체결한 이래 44개국과의 FTA를 체결 중이다. 한국과 이스라엘간의 FTA는2019년 8월 최종 타결되어 2021년 정식서명이 이루어졌고, 2022년 12월 발효된다.

바레인은 428개의 물품(주로 식료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

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생산에 사용될 반제품, 혹은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125%와 110%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016년 2월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정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동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각각 225%, 200%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바레인은 GCC 내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레바논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수입품목에 따라 5%이내에서 80% 이상 등 다양하게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최고 100%까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2019년 9월 레바논 정부는 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해 18개 수입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즉 레바논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약 10~20% 선에서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콘플레이크의 경우 현재 10%의 관세가 부과중이나 유럽산 콘플레이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20%의 관세가 더 부과될 예정(3년차에 17%, 4,5년차에는 16%로 인하)이다. 냉장고 및 세탁기는 기존 15%에서 10%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나 이러한 관세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현지 생산업체는 가정용 가전제품의 경우 단 하나의 기업에 불과하여 다분히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 내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5년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1%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평균 실행관세율이 1996년 13.82%에서 2019년에 7.7%로 낮아졌다. 농산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의 경우 2021년 8.8%, 비농산품에 대해서는 7.6%가 적용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인하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차량 수입시 가치에 따라(ad valorem) 20%의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15%가 부과된다.[7]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는 제

7) 남아공 국세청 (SARS).

조업 육성,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알제리의 관세체계는 원자재 5%, 반가공제품 15%, 완제품 30% 등으로 단순화 되어 있다. 이러한 관세율 조정은 외국자본을 생산활동과 투자에 유도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단가의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생산공정에 사용할 품목이면 5% 또는 15%를 적용하는 등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집트 관세율은 시장규모 및 산업구조가 비슷한 타 개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등을 통해 품목별로 조정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집트 정부는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동차(40~135%), 화장품(45%), 위스키(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무역적자 개선 및 자국 제조업 육성의 목적으로 2016년 1월에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관세를 종전 10~30%에서 20~40%로 일괄 인상한바 있다. 또한 2018년 9월 전체 관세 부과 품목 중 약 40%인 5,791개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면서 완제품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크게 인상하였다. 한편 2020년 9월,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최종부품에 사용되는 현지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수입부품 관세 할인율을 확대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2022년 6월 7일, 현지 자동차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에 필요한 약 150개 원자재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인하되었다. 의료 장비에 대한 관세도 인하되었으며, 천연 가스 구동 차량의 관세는 35% 인하되었다.

나이지리아의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라 할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관세는 수입관세(Import Duty)와 VAT, 각종 Sur Charge(Levy, Excise Duty, 관세연동 부담금 등)로 구분된다. 수입관세는 5개 카테고리화하여 필수품(0%), 기초 원자재 및 자본재(5%), 중간재(10%), 나이지리아 미생산

완제품(20%), 나이지리아 생산되어 보호 필요 완제품(35%) 원칙하에 부과하고 있다. Levy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 최대 50%, 쌀 최대 50%, 담배, 소금 및 설탕 최대 60%, 변압기 최대 35% 등이다. 소비세(Excise duty)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5~ 20%를 부과하며 향수, 화장품 등 11종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튀니지는 관세의 인하 또는 면세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1년에는 1차 원료, 반제품, 장비의 최고관세율을 30%, 에너지, 재생에너지 장비를 10%(장비 제조 원료는 0%), 2012년에는 대형 차량용 타이어를 15%, 농업원료(종자·식물 등)를 0%로 인하한 바 있다. 튀니지는 현재까지 60여개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EU의 튀니지 시장점유율이 60%를 초과한다. 한국은 튀니지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튀니지가 체결한 무역협정이 일종의 관세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모로코의 관세는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40%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2020년 들어 기존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2차례 인상하여 최고관세를 40%까지 올린 바 있으며, 관세부과 단계를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2~5%, 10%, 17.5%, 40%)로 조정한 이후 품목에 따라 다소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8] 모로코는 현재 50여개 국가(EU,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튀르키예,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는 2012년 관세철폐가 완료되었고, 미국 및 튀르키예와는 2015년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완료되었는데, 이에 따라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편 모로코는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주도 하에 아프리카 중시 및 남-남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연합(AU) 재가입,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가

8) 2022년 재정법안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실내 장식용 직물, 양품용 직물, 초콜렛 가공품, 카트리지토너 등 일부품목의 수입관세는 상향 조정(품목에 따라 17.5%~40%)될 것이며, 버스, 트럭용 타이어와 결핵항생제에 대한 수입관세는 하향 조정(2.5%~17.5%)될 예정이다.

입 신청, AfCFTA 출범 서명 동참이 이루어졌다. 현재 AfCFTA는 아프리카 총 54개국 중 모로코 포함 44개국(81.5%)이 비준에 동의했다.[9)]

가나는 ECOWAS의 회원국으로 2016년 2월 1일 ECOWAS의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여 현재 △의약품, 의료부자재 등 필수재는 0%, △원자재, 기계·장비류 등 자본재는 5%, △가축, 보석류, 부품류 및 중간재는 10%, △건설자재 및 최종 소비재는 20%,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특수재(육류, 과자류, 코코아 가공품 등)는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가나는 2016년 8월 3일 EU와 임시 경제동반자협정(Interim EPA)을 체결하여, EU 수출시 관세나 쿼터를 부과받지 않게 되었으며, 2013년부터 향후 15년간 EU로부터의 수입 80%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다. 아울러, 2000년 10월부터는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 수혜국가로 지정되어, 2025년까지 직물, 의류, 원자재 등 HS코드 8단위 기준 7,000여개 품목의 미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누린다. 또한, 2021년 1월 본격 시행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역내 상품 90%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개도국은 5년내, 최빈국은 10년내, △기타 민감품목(7%) 및 예외품목(3%)에 대한 관세 철폐는 국가별 경제 환경에 따라 유예(일반 5년내, 개도국 10년내, 최빈국은 13년내))를 시작으로 향후 완전한 관세 철폐 및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후 관세 완전철폐 시, 아프리카 대륙 내 역내무역은 약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디부아르는 WTO,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ECOWAS의 회원국으로 ECOWAS의 대외공동관세(CET)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생필품은 0%, 필수재·원자재·자본재는 5%, 중간재는 10%, 완제품은 20%, 특수재는 35%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관세가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수산물(5~20%), 쌀(5~20%), 주류(7~35%), 담배(23~35%), 시가(30~35%), 석유제품(5~20%) 등이 해당된다.

에티오피아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35%의 수입관세와 15%의 VAT를

9) 세계은행의 2020년 7월 보고서(The African Continental FTA Area, Economic & Distributional Effects)에 따르면 AfCFTA 완전 이행시 아프리카 국별 및 산업분야별 영향은 매우 상이한데, 모로코는 잠재적으로 AfCFTA를 통해 2035년 8%의 실질소득 증대 실현이 예상되어 혜택을 받는 국가(Top 9)로 분류되어 있다.

부과하나, 제조업 및 수출산업 육성, 국내 산업 및 제품 보호를 위해 기계, 장비와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차등적 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0~35%까지 5단계가 적용되며 품목 및 생산단계(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등)에 따라 다르다. 또한 관세 외에도 품목에 따라 특별소비세(Excise Tax), 부가가치세(VAT), 물품세(Surtax), 수입인지세(With-holding Tax)가 부과된다.

앙골라는 1996년 WTO에 가입하고 자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상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앙골라는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수출관세 폐지, 비석유 및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장벽 제거 등을 통해 세계적인 교역 자유화 추세에 발맞추고자 한다. 한편 앙골라 정부가 2017년에 제정한 『2017 관세법』이 2018년 8월 9일 발효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앙골라 제조업 및 농업 활성화를 위해 2,475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세수 증대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12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밀수·가품 거래 방지를 위해 635여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재수출 상품에 대한 수출세 20% 부과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케냐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일원으로 역내 무관세와 공동역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역외 수입 품목의 경우 원자재 0%, 중간재 10%, 완제품은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한다.

DR콩고의 관세는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수의(동물 관련)용품, 용기자재), 10%(중간재, 식료품, 병원 관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되고 있다. DR콩고의 2016년 기준 MFN 실행관세율 평균은 10.9% 수준이다. 한편 DR콩고는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와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의 가입국이지만, 관세를 정부 세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 자유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COMESA, SADC, ECCAS(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3개의 FTA가 통합된 TFTA(아프리카 3각 자유무역지대)가 2015년 6월 10일 출범을 26개국이 공식 서명한 바 있다. TFTA는 회원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낮춤으로서

종국적으로 역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동 협정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은 4개국에 그치고 있는바 협정 발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도기니는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회원국으로 공동대외관세(TEC: Tarif Extérieur Commun)를 적용하고 있다. TEC의 관세체계는 품목에 따라 생활필수품(5%), 장비·원자재(10%), 중간재(20%), 소비재(30%)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가봉은 CEMAC의 일원으로 해당 공동대외관세를 적용한다. 추가적으로 일반특혜관세(TPG: Tarif Préférentiel Généralisé), 지역 통합을 위한 공동체세금(Taxes Communautaires), 부가가치세(TV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18%, 소비세(DA: Droit d'Accise) 25~32% 등을 부과하고 있다.

수단은 현재 WTO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이다. 수단의 평균관세율은 2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곡물, 기초 원자재, 농업용 기계 등 국민 생활과 제조업, 농업 발전에 소요되는 기계 등 8백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율이 40%에 달하는데 이는 Sub-Saharan Africa(SSA) 국가들(12.5%)이나 저소득 국가 그룹(lower-middle-income country group)(11.4%)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품목별 관세율의 편차도 매우 크다.

우간다는 EAC와 COMESA의 회원국으로, 관세규정은 2005년 1월 발효된 동아프리카 관세운영법에 근거한다. EAC 역내국가간 무역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나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역외공통관세(CET)를 부과하는데, 완제품 25%, 중간재 10%, 원자재와 자본재는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간다는 별도로 18%의 VAT, 6%의 원천세(추후 환급 가능)를 징수하고 있으며 유제품, 농산물 등 민감품목의 경우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승용차의 경우 제조 후 5~10년 사이인 경우에는 3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환경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2014년 7월 이후 COMESA 국가들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한해서 상호간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다(민감품목 제외).



수입규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GATT 협정문 제XI조는 수출과 수입에 대해 관세나 세금, 과징금 이외의 수량제한, 수출입허가 등에 의한 규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제XI조 2항), 국제수지문제(제XVIII조 2의 b항) 등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예외적인 수량제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GATT 협정문 제XIII조는 제I조에서 일반적인 최혜국대우(MFN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허용되는 경우에 그것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량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각 체약국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에 가장 가깝게 수량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량제한 금지를 엄격히 규정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수량제한이 관세와 비교할 때 자유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즉, 관세는 일국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더라도 외국의 상품이 관세에 의한 장벽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외국제품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제한된 수량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다.

WTO산하 수입허가위원회에서 수입허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WTO가 정한 규율위반여부를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수입허가와 관련된 국내규제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즉각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WTO 회원국의 수입관련 조치

(단위: 건)

무역관련 수입조치 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10~ 2021.10	2021. 10~ 2022. 5 (7개월)
수입	**84**	**114**	**77**	**72**	**75**	**57**	**43**
- 관세	47	70	46	40	36	23	27
- 통관절차	19	6	6	10	21	17	3
- Tax	9	13	6	6	5	6	0
- 수량제한	7	16	14	10	11	8	12
- 기타	2	9	5	6	2	3	1

자료: WTO(2022), WT/TPR/OV/W/16, p.20

2021년 무역제한효과를 가지는 조치(146건) 중 수입관련 조치는 75건, 수출관련 조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WTO 회원국의 수입관련 조치는 2018년 114건에서 2021년 75건으로 34%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수입조치 중 관세 조치가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통관절차 28%, 수량제한 조치가 15%를 차지하였다. 수입조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관세는 2018년 70건에서 2021년 36건으로 49% 감소하였다. 2021년 수량제한 조치가 전년대비 10% 증가한 것에 비해 통관절차 조치는 전년대비 110%나 증가하였다.

수입금지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10)]

미국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거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해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불법표시의 수입을 금지한다. 또한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물의 질병 및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및 「계란제품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에 따라 수출국가의 수의공중보건 위생통제 및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 및 작업장으로부터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 및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동 법의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해양

10) 이와 관련하여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금지 또는 수출세를 통한 규제가 드물게 존재하고 있다. 수출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1차 산품이며 대표적인 품목은 원목으로 미국이 특정 조류(점박이 올빼미; spotted owl)의 보호를 이유로, 그리고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등이 국내 가공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포유류의 혼획의 위험성이 높은 어업은 수출어업(Export Fishery)으로 분류되어 해당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 및 해당 수산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이 규제될 예정이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 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법 어획 및 허위표시 수산물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월부터는 해삼, 참치, 전복, 새우 등 13개 주요 관리대상어종에 대해서는 어획 단계에서부터 미국 내 수입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수산물 수입감시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 toring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물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930년부터 강제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제품은 수입 금지되었으나, 예외조항 때문에 그동안 제한적으로 집행되었다. 2016년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이후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청장은 수입물품이 강제노동으로 강제노동과 연관된 것으로 결정적이지 않더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reasonable, but not conclusive)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억류명령(Withhold Relase Order)을 발표할 수 있다. 억류명령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련 해석과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병충해 발생여부의 통계자료에 따라 국가별로 허용된 농산물 식품(예를 들면 List of Admissible Fruits & Vegetables from Each Country) 수입의 경우, 미 동식물위생검사처는 수입허가(PPQ Form 587)를 통한 수입프로그램과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의 농업검사관을 통한 수입 검사를 실시하여 병충해가 발견되면 특정 구제조치와 폐기처분을 하고 기타 허용되지 않는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동물 질병이 종류별로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미 농무부는 현재 삼계탕을 제외한 한국산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FDA는 식품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캐나다의 경우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규정에 의해 미국,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국과 상이한 특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이는 GATT 규정 XXIV에 따른 지역적 통합 시 최혜국대우(MFN) 규정의 예외적용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재생타이어 수입금지 사례[11]는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 품목이 없다. 다만,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멕시코 내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1994년 NAFTA 협정으로 8년 이하의 개인용도의 중고차와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1994년

11) 일반승용차용은 미국산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고, 트럭용 등 특수타이어는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우루과이는 WTO 규정에 따라 보건, 동식물검역, 안전, 국방,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상자로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중고차 등이 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루과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령 175/012에 따라 우루과이 내에서 조립이 불가능한 특수 교통수단이나 비영리목적으로 기증된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보건, 동식물위생, 공중도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수입금지 대상품목은 아프리카 벌, 중고 의류 및 신발류, 살아있는 조류 및 그 부산물, 유기염소농약, 마약원료물질(에틸-파라티온, 트리폴리인산나트륨 등), 독성 산업폐기물, 10년 이상 중고차, 돼지질병치료의약품(카바독스) 등이다.

페루는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다. 내외국인 동일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삐스코(Pisco, 페루 전통주)라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제품,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 원료,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연식 2년 이상의

중고 자동차로 3.2만 km 이상 주행거리 등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체 수입금지 품목은 페루 관세청 세관업무 홈페이지[12]에서 제한금지품목(Mercancías Restringidas y Prohibidas)을 클릭한 후 확인할 수 있다. 페루는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수입규제 품목

품목	수입 시 요구 조건
식음료 제품(화장품 포함)	수입 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무선통신 장비	수입 시 교통 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지도 및 지형 연구 관련 자료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 무기 및 탄약, 폭발물	수입 시 내무부 허가 필요
해산물 및 어패류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농약 및 유사 제품	수입 시 신고 필요
수의학과관련된 의약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일반 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o 수입 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일자 o 수입물품 포장별 내용물 및 유효기간 o 수입업체회사명 및 납세번호 신고 필요 o 세계보건기구 품질보증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해당 물품이 자유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

과테말라의 경우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코드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Decreto 10-2012'에 따라 연식규제를 2012년 3월부터 시행하여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의 수입(등록)을 금지하였으나, 이 규제는 2013년 6월 29일 철폐되었다. 단,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을 수입할 경우 시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검사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중고차 수입 급증으로 교통

12) http://www.sunat.gob.pe/aduanas.html

체증 및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중고차 수입자조합 차원에서도 수입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입법 필요성을 밝히는 등 조만간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코스타리카는 무기류, 탄약, 페타이어, 화약물질 및 마리화나, 모르핀 등 향정신성 약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파나마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 선전물,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도검 및 무기류, 복권, 아편 등 마약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등과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각종 공공질서, 영토수호, 정치적 독립 및 국가 주권의 저해와 전쟁, 폭력, 테러 및 반유대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목적으로 한 인쇄출판물, 원고, 그림, 사진, 영화 등의 매체물 및 포르노 콘텐츠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수입금지(통제) 품목은 군비, 탄약 및 군사장비, 항공기 부품 및 그 장비, 군수 물자 및 항공기 제조를 위한 기계, 폭발물, 독극물,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이를 위한 도구, 보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통신개발부 허가를 받지 않은 고주파 라디오 전자통신기기, 국가생태환경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오존 파괴 물질, 멸종 위기 동물, EURO-4기준 이하의 버스와 화물차,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 등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표준인증청은 2016년 1월 1일부로 가전제품에 대한 신규 에너지 효율 규제를 실시해, 해당 표준 기준 및 라벨링 기준 미부합 수입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불법 수입 및 생산 · 판매, 합법적 유통 보장 등을 위해 제737호 우즈베키스탄 내각령(2020년 11월 20일)에 따라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의무 디지털 라벨링 제도를 도

입하고 있다. 2022년 기준 5개(담배, 술, 의약품, 맥주, 가전제품)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품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2014년 8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후 금수 조치를 매년 연장하고, 현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서방 농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러시아 대통령령 제725호, 2022.10.11.).

수입 금지 서방산 농식품 품목

분류	주요 품목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 식용설육 등
생선류	활어, 냉장 및 냉동어류, 갑각류 등
낙농품	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 등
채소류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 등(신선/냉장/건조) * 단, 씨감자, 파종용 옥수수 및 콩 제외
과일류	코코넛 및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메론, 사과, 배, 복숭아, 냉동 및 건조과실 등
육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 품목 등
곡물류 및 기타	멕아엑스 및 관련 전분, 기타 조제품 등

자료 : 러시아 산업통상부, 금지 품목 목록 관계 법령 : 러시아 정부령 제778호(2014.8.7.)

카자흐스탄의 경우 각종 무기, 탄약 및 폭탄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와 마약 등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및 동 약품의 재료, 전쟁, 테러, 폭력, 인종차별 내용이 포함된 자료, 음란물, 토양 및 토양이 포함된 식물, 식물 질병 및 해충, 감염제품 등은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한편 카자흐스탄으로 주류 수출을 위해서는 주류보관면허 및 도매면허 취득이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 국립 소비자보호국은 알코올 제품의 라벨링 등 주류 제품에 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일시적으로 주류 제품에 관하여 관세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에서는 2015년 6월부터 자국어로 성분표시, 경고문 등이 부착되지 않은 주류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당국은 관세 동맹 협정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민족 정체성 확립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모든 수입소비재는 국가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장비 수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특수 차량 및 장비는 출시된 지 5년이 경과한 것은 수입이 금지된다.

호주 정부는 달팽이, 두꺼비, 벌, 개미 등을 고위험 병충해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검역하고 있다. 계란 및 계란제품, 유제품, 완전 가공되어 조리 없이도 즉시 섭취가 가능하지 않는 육류제품, 씨앗 및 견과류, 생과일 및 채소는 개인적 목적으로도 항공편이나 우편으로 수입하지 못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이외에 주정부 또한 수입식품의 해당 지역내 판매에 관한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별 규정도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뉴질랜드는 △비디오테이프, 영화, 기록물, CD-ROM 및 출판물 형태의 유해 콘텐츠, △칼(손칼, 무기), △대마초 및 메타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이용을 위한 장비, △범죄 도구 등을 수입 금지한다. 또한 뉴질랜드의 생산자, 상인, 장소를 포함해 뉴질랜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한 외국 물품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고, 거짓 혹은 허위상표가 부착된 모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파푸아뉴기니는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농작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권 침해물 등에 대해 수입·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EU의 수입규제를 따르고 있는데,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역외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단독으로 취할 수 없다. 즉,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집행위의 조사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또한 콩고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금지를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수입규제를 관장할 정부기관으로 무역구제국(UK TRA: Trade Remedies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시(2020년 12월 31일) 까지는 EU의 경제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에 입각해 자체적인 인권 제재 및 경제제재를 이행하게 되었다. 2022년 11월 11일 기준 영국 제재 명단(UK Sanctions Lit)에는 북한의 84개 기관(Entity), 15개 선박(Ship)이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네덜란드식품안전당국(NVWA, Dutch Food Safety Authorities)과 위험평가국(RuRO, Bureau for Risk Assessment)의 연구결과, 대나무와 멜라민(melamine) 혼합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건강상 위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2021년 2월 두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네덜란드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3국의 식품안전당국은 공동서한을 통해 사업운영자들에게 EU 시장에서 '대나무·멜라민' 상품을 즉시 회수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

노르웨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시장선점 경쟁이 심하지 않아,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나 시장질서 교란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민보호 차원에서 일부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계절별 쿼터제도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2005년 7월 FTA를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년 9월 1일부터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입

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철폐되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 시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한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 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캐나다, 미국, 멕시코, 포르투갈,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목재의 경우, 한층 강화된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노르웨이 식품안전청).

세르비아는 자동차의 경우, "유로 1~6" 중 적어도 "유로 3(Euro 3)" 조건(배기가스 기준과 소음 규제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된 차량(중고차 포함)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 다만, 세르비아 정부는 "유로 3"의 낮은 수준의 환경 요건, 주변국들이 "유로 5"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고차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로 3" 차량의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14] 또한 세르비아는 3년 이상 되어 노후한 가스 트랙터, 건축 및 광산 설비(인도주의적 목적 제외)와 유해폐기물 및 유독성 물질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튀르키에는 관세법(The Customs Law No. 458)과 기타 개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목은 특정 폐기물, 일부 화학유기물, 고철 등이며 튀르키에 무역부에서 매년 수입금지 품목을 개정하여 고시한다.

일본은 관세법(제69조)에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아편, 양귀비, 각성제, 각성제 원료, 아편 흡연기구, △지정 약물(의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은 제외),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총포탄, 권총 부품, △폭발물, △화약류,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관한 의료법에 정

13)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erbia-prohibited-restricted-imports

14) BalkanInsight, "Serbia Mulls Banning Import of Euro 3 'Junkyard' Cars",
www.balkaninsight.com/2020/01/27/serbia-mulls-banning-import-of-euro-3-junkyard-cars/

하는 1종 병원체 등, △화폐, 지폐 혹은 은행권, 유가증권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등의 물품, △아동 포르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특정 불공정행위를 조성하는 물품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장이 몰수하여 폐기하거나 환송을 명할 수 있다. 관세법 이외에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각 법령에서도 필요에 따라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정하고 있다.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 및 금지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기준 총 2,424개의 농·공산품(농산품 1,038개 품목, 공산품 1,386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6월 철강 제품의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2015년 7월에는 소비재와 최종재의 MFN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주류에 대하여는 기존 종량세에서 종가세(와인 및 과실주 신고가격에 90%, 증류주 수입신고가격에 150%)로 시행하는 등 관세인상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 및 최종재 수입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껌(HSA에서 승인한 의료 및 치료용 껌 제외), 총 모양의 라이터, 폭죽,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예: 가공/비가공/파우터 형태의 코뿔소 뿔), 전기통신장비(주사 수신기, 군용 통신 장치, 전화 음성 변환 장치, 무선 통신 장치(핸드폰 제외), 무선 통신 전파 방해 장치, 음란 출판물·소프트웨어·비디오테이프·디스크, 반국가적 선전물), 담배(씹는 담배, 담배 유사품(예: 전자담배) 및 부품, 무연담배, 용해성 담배/니코틴, 인체에 주입해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 제품 또는 담배, 전자 니코틴 전달장치 또는 기화기가 함께 사용되는 담배 또는 니코틴 함유 물질, 코담배, 경구용 담배, 구르카), 규제약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싱가포르 관세청, 2022년

10월 기준). 또한 아래 제품들은 수입규제 품목(Controlled Goods for Import)이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CA: Competent Authorities)의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의 수입규제 품목

	품목	관할기관
1	동물, 조류 등과 그의 부산물 멸종 위기 동식물 관상용 물고기 식물	National Parks Board
2	물고기와 그 외 수산물 과일과 채소류 고기와 고기제품	Singapore Food Agency
3	무기& 폭약 방탄조끼를 포함한 보호용 의복 제품 장난감 총기류, 창, 검 등	Licensing Division Singapore Police Force
4	CD-ROM 과 비디오게임 필름/비디오테이프/레이저 디스크 출판물(신문, 서적, 잡지) 콘텐츠가 저장돼 있는 카트리지/카세트/CD 전기통신장비 장난감 워키토키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5	약물 조제약품 독극물	Health Sciences Authority
6	위해물	Singapore Customs
7	전리방사선(IR) 기계장치 및 방사선 물질 비전리 방사선 (근적외선) 기반 의료기기	National Environment Agency

자료원: 싱가포르 이민 및 출입국 관리청((2022년 10월 기준)

필리핀의 수입금지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 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물품은 자국 산업 보호 및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지정된다.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이며, 수입제한 및 금지 품목은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농산물, 화공품, 중고제품, 무기류 등이다. 2023년 5월 기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입제한 547개, 수입금지 105개 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는 2020년 6월 12일, 타이어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30일 컬러TV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였다. 동 조치로 인해 타이어 및 컬러TV를 인도에 수입하기 위해서 대외무역총국(DGFT) 및 주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2020년 10월 15일에는 에어컨을 비필수재로 간주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몽골의 수입금지품목은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잣, 잣나무 등이다. 또한 국내 가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날가죽과 캐시미어의 수입 역시 금지하고 있다. 수입제한품목은 우라늄과 그 부산물, 유해 화학물질,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무기 및 관련 부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생물, 광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소, 낙타 등),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등이다.

방글라데시의 수입제한 및 금지 품목은 통상 3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있는 수입관리정책(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동 품목은 연간 예산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종교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품목 또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특정국가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관세법(Customs Act, 1967) 및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 and Customs (Prohibition of Exports) Order 2017)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은 수입 불가(어떠한 조건에서도 수입이 불허되는 품목), 수입면허가 없을 시 조건부 불가(관련부처로부터 수입면허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자국민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건부 불가(수입허가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정해진 수입방식 이외에는 불가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말레이시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국민건강 등을 이유로 모조 화폐, 공서양속,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단검,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 또는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아비산나트륨(Sodium Arsenite), 피라냐(Piranha fish) 어족류, 거북이 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코코아 등 과일류,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독성 화학물,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이를 압수하고, RM 50,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또는 외환방어 등을 위해 필요할 시, 관할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종교적, 안보적, 환경적 이유 또는 사치성 소비재 자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21년 기준 52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및 71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 리스트는 파키스탄 재무부 홈페이지(http://www.commerce.gov.pk)에 공지된 수입정책 시행령(Import Policy Orde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쿠웨이트 역시 종교상의 이유로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 제품 및 주류,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의 반입이 금지된다. 특정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일부 동물 제품, 닭을 제외한 산동물(live stock) 및 가금류, 잡종 소 및 염소, 냉장 및 냉동 육류, 어류 등의 수입도 금지된다. 또한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디자인, 상표 부착제품과 슬롯머신 등 도박성 게임기 수입이 금지된다. 쿠웨이트는 수입쿼터제 등에 의한 공식적인 별도의 규제는 없다. 다만 총포류, 약품 등의 반입 시에는 특별한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며, 특수 화학물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또한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하여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담배 생산을 금지하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연구 목적이 아닐 경우 쿠웨이트 내에서의 잎담배(Tobacco) 및 제조담배(Cigarettes)의 생산과 담배 종자 및 묘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인공감미료(Cyclamate)를 사용한 식품과 석면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라크는 타 국가와 유사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특별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할 시, 관할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관세청에서 39개 품목을 수입 금지 및 사전허가 품목으로 지정하고, 농업부에서도 52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8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중고 차량에 대해서는 생산된 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중고차량의 수입제한 조치를 차종과 용도에 따라 연식 5년~10년 사이에서 차등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일반승용차 2년, 버스 10년, 농기계 15년 등). 이라크의 수입규제 제도는 선적전 검사를 통해 시행된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기획부 산하 '표준화 및 품질검사 중앙기관(COSQC: 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관장된다. 수입규제 제도가 2011년 5월 개정 발효된 이후 대이라크 수출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이라크 세관의

사전 심사에 따라 수출해야 한다. 이라크는 수입규제 관련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 금지품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쟁이후 이라크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 2005년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시킨바 있으며, 2005년 9월 1일 부터는 2004년 이전 생산된 중고차량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후 매년 동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된 지 2년 이상 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2009년 일부 법을 개정하여 10년 이하의 버스(20인승 이상) 및 트럭(3톤 이상)과 15년 이하의 농업용 및 건설용 차량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부품수입과 관련, 중고부품 수입을 금지했던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는 중고부품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차량을 절단하여 반입하는 것은 불허하기로 했다.

이라크 정부는 수입물품 범람에 대한 대처를 위해 수입규제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입면허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수입면허 자격 취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면허 취득 시 모든 수입물품 취급이 가능하였으나, 규정 개정 후에는 수입품목별로 별도 수입면허를 취득해야 해당 품목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농업부, 내무부 등 타 부서의 승인을 득해야만 발급이 되는 등 점점 더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물자의 경우 수입면허가 불필요했으나, 최근에는 수입면허 발급이 의무화되고, 관세감면 절차와 기간도 매우 어렵고 복잡해졌다. 이라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평균 관세 감면절차에 한 달 가량이 소요되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수입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03년 이라크 전쟁 후 중고차 수입 자유화로 많은 중고차를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2005년 저렴한 중고차가 자살폭탄테러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유류난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고차 수입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

튀니지는 1994년 제정된 수입금지법에 의거하여 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을 엄격히 관리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다. 총기류,

폭약(2013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생산, 판매, 수입 전면 금지), 투견 등 치안 및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품목과 마약류와 같이 보건에 위해한 물질, 미풍양속 및 관습을 저해하는 품목과 동식물군 및 문화재 보존에 위배되는 품목 등이 수입금지 품목(총 관세품목의 7.2%)에 해당된다.[15] 단, 완전수출기업은 상기 수입금지품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생산 및 투자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수입할 수 있다. 한편 1998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입보호조치에 따라 △시기적으로 농산물 등 대량수입에 의해 국내 생산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품목,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재, △정부 보조금 혜택이 부여되는 품목에 한해 수입제한이 적용된다. 이 경우 통상부나 관계 기관에 대상품목에 대한 수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통상부의 적격심사(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2개월 연장 가능)가 실시된다. 수입보호조치는 수량제한이나 관세인상의 형태로 적용되고, 일시적 조치에 해당하며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 반입 금지에 대한 바마코협약(Bamako Convention on the Ban of the Import into Africa)에 따라 유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언급된 화학물질(aldrine, chlordane, dieldrine, heptachlore, hexachlorobenzène, mirex, toxaphène, polychlorobiphényles(PCB), etc)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스라엘은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17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 문제 완화를 위해 정부는 2017년 12월부터 중고차량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차종과 용도에 따라 연식 5년~10년 사이에서 차등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승용차 5년, 미니버스 7년, 소형트럭 7년, 대형버스 10년, 대형트럭 10년).

15) 이스라엘산 제품은 전 품목이 수입 금지되어 있다.

UAE는 자유무역경제를 지향할 뿐 아니라 생필품, 소비재, 산업자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대부분 품목에 대한 자유로운 수입을 목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 도덕적 관점에 반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금지 품목은 대체로 GCC 세관 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UAE에서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물건, 마약류, 위폐 등 하기 품목이 연방세관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그간 중동국가의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스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했으나, 2020년 9월 UAE-이스라엘의 공식 외교 정상화 합의에 따라 동 규제는 폐지되었다.

UAE연방세관 수입금지품목

- 마약류 (Hashish, opium, heroine, morphine, cocaine, papaver and its hull and seeds, Khat, cannabis and any other grains of similar effect 등)
-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출판물, 유화, 사진, 잡지, 조각상 등 종교적으로 금지되는 물건
- 코끼리 상아, 코뿔소 뿔
- 3겹의 나일론 소재 어망
- 도박 용품
- 식품 (비사업적 목적의 반입만 허용)
- 캔디 담배(Candy cigarettes)
- 오존 폭발 물질, 방사능 오염물질
- 석면 시트 또는 석면 파이프
- 적색 레이저 포인터
- 유해 폐기물
- 매(Falcon) : CITES 협약에 따라 허가받은 매, 여권이 있는 매, 환경 연구청으로부터 치료 허가를 받은 매를 제외하고는 매년 4월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금지
- GCC 공통관세법이나 UAE 법률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

그간 중동국가의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스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했으나, 2020년 9월 UAE-이스라엘의 공식 외교 정상화 합의에 따라 동 규제는 폐지됐다. 또한 주로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WTO 규정 등에 다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파동에 따라 2009년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경우가 있으며, 2011년에 유럽발

E.coli 박테리아 오염 파동에 따라 독일,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부터의 오이 수입을 금지한 예가 있다. UAE의 기후변화환경부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살충제 및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된 품목의 원산지에 수입 금지를 시행하여, 2017년 5월 이집트, 오만, 요르단, 레바논, 예멘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해당국의 가금류 수입 금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6월 벨기에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세계 동물 보건 기구에 등록됨에 따라 벨기에산 열처리하지 않은 가금류 및 부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2017년 8월 필리핀산 가금류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를 취하였다. 더불어 2017년 8월에는 식품대상 사용제한 살충제인 피프로닐(Fipronil)이 검출된 네덜란드산 달걀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일본의 키코만(Kikkoman)사 간장과 관련하여 양조 과정에서 알코올 성분(1.5~2.0%) 검출과 제품의 제조 일자 표기 오류 등의 문제로 일본에서 제조된 제품에 한하여 수입을 금지하였다. 재고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소비자들에게 기 구매 제품의 처분을 권고하기도 하여 우리 기업이 식품 수출 시 알코올 성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리아는 총 7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수입금지 리스트를 갖고 있는 등 수입관련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였으나, 지난 2008년 4월 30일부로 수입을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시리아의 시장접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시리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입 금지 및 제한 혹은 수입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① 환경, 안보, 위생, 종교상의 이유로 한 수입 금지(총 174개 품목), ② 시리아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품목 및 이스라엘 보이콧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및 제한(해당 품목 수시 변경), ③ 정부 수입독점품목 수입 금지 및 제한(석유 및 관련 제품, 알코올성 음료, 무기류, 일부 곡물 제품, 제약, 소금, 블랙 시멘트, 의류, 과일, 올리브 오일, 사료, 인광 등) 등이다.

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 보건, 종교와 관련된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 수입자유화 시장으로 수입쿼터제 등 수량 제한, 수출 이행 의무 부과 등의 규제는 없다. 식료품, 비료, 서적 및 잡지, 영화, 비디오, 의약품, 자동차, 타이어, 전선류, 페인트, 무기류 등은 통관 전에 정부로부터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주류, 폭발물, 라디오 송수신기, 무선전신기, 춘화, 마약류 등은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식료품의 경우 위생증명서 및 식품 검역 증명서가 필요하며 통관 시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육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류 및 광우병 안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알제리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의 한계를 벗어나 산업 다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생산을 장려하고 각종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알제리의 경우, 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2019년 1월 말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제도가 도입되며 철폐되었다.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는 당초 2018년 7월 말 시행계획으로 발표되었으나, 업계와의 의견 조율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어 2019년 1월 말에 발표되었으며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임시추가수입관세는 기존의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임시 관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200%까지 부과된다. 최초 발표 후 한차례 수정을 거친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에 따라 HS code 기준으로 총 992개 품목이 임시추가수입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알제리 상무부는 대상 품목과 세율은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한차례 수정 발표되었고, 2020년 하반기에 또 한 차례 수정되었다.

알제리 정부는 정책적으로 가전제품의 생산을 현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18년부터 현지 생산 중인 일정 가전 완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현지 생산 가전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지 생산되는 가전제품 품목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 바 있다. 2022년 3월, 알제리 대통령은 전자제품의 현지생산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알제리에서 생산되는 전선, 변압기 등 전기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를 지시한바 있다. 이밖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 알제리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현지 수요 대비 공급량

및 품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4월에는 대통령 지시로 소형발전기류, 8월에는 참치, 아이스크림 등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시행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위 '아랍 보이코트'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수입금지 사례

- 수입금지 품목: 돼지고기류 및 중고자동차
- 수입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제반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입 물품이 제반 증명서상에 표기된 종류와 불일치하는 경우
- 수입 물품이 관세법상에 명기된 제반 규격 및 규정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 동물 수입 시 공공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식물 수입 시 검역상의 문제
- 유통기한이 너무 짧거나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경우
- 서적, 영화 수입 시 사회풍속이나 종교적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에 유해한 경우
- 위험 화학제품에 대해 하역 시 모든 안전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또한 2021년에는 국제표준 바코드 부착 조치, HS CODE '기타'수입금지 등 수입규제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품목을 섞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기타'로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제리 정부는 HS 코드 '기타' 분류 상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조치를 시행하였다. 즉, 기타 품목의 수입거래의 신용장 지급 장소 지정 절차를 중지하여 수입대금 절차를 막아 사실상 거래를 중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강력한 수입규제는 2022년 8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이후 점차 완화 추세에 있으나, 2022년 4월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국내 미생산 인증(ALGEX)'규제가 신용장 개설까지 2~4개월의 지연을 추가로 야기하면서 현재 알제리의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단은 산업화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 소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법상 금지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알코올, 음란물, 돼지고기

등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품목은 금지하고 있다. 특정 중고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도 강력히 유지 중으로 출고 후 1년이 지난 중고차, 중고의류, 중고 전자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신차 및 중고차의 수입을 전면 금지 중이다(버스·트럭 중고차 수입의 경우는 제외). 다만,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아 예외 또는 편법 반입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반복하여 불요불급한 비필수재에 대해 수입금지 품목을 발표하기도 한다. 또한 수단 「관세법(Custom Act, 1986)」에 따라 주류(술)는 「형법」에 준하여 금지, 보건부에 등록되지 않은 크림은 「약사 및 독극물법」에 준해 금지, 위조수표 등 위조 유가증권, 공중도덕에 저촉되는 음란 영상, 음악, 사진, 또는 인쇄물, 과학적 조사와 의학적 처방으로 인가된 것들을 제외한 마약류, 브롬화칼륨(진정, 최면제) 등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 종류의 수입 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앙골라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무기 및 탄약, 통화, 음란물, 도박 장비, 유독성 제품, 의약품, 철광석 등이다. 또한 앙골라는 유통기한에 따른 수입제한을 두고 있으며 식품은 유통기한 1/4 이하, 의약품은 유통기한 1/2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일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자동차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트럭은 5년 이상의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앙골라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2017 관세법』)

화학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해로운 화학물질
제조	중고 및 재생 타이어/중고 모터
동·식물	Welwitschia mirabilis(웰위치아) 화석식물/ 자이언트 세이블 영양
목재	비가공 원목

르완다는 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과 특정 형태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공중도덕, 공공정책,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

역사적·예술적·건축적 가치를 지닌 국보의 보호 또는 산업 및 상업정책의 보호)으로 구분한다.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는 위조지폐, 음란물, 마약류, 독극물, 수은 함유 화장품, 경상용차 및 승용차의 중고타이어, 농업용·공업용 화학물질 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 제한 품목은 덫, 무기류, 상아 등 동물의 뼈, 몬트리올 협약 및 비엔나 협약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 GMO, 역사적 유물 등이다. 또한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 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2019년 6월 12일 의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공항 입국검사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소지 시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9월에는 페루와 함께 유엔환경계획(UNEP)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2022년 3월 케냐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환경총회(UNEA)에서 동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고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 독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이 없다.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건별 지침이 발표되나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요르단 표준 계량원(JSMO)에서 건별로 수입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요르단 식품안전처 (JFDA)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등록 및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 1일부로 연식 5년 이상의 중고차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 협약 이행과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디자인과 라벨링 부착 여부를 조사하는 요르단 에코 라벨링 제도(가전기기 등에 해당)를 운용 중이다. 주요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모든 종류의 약물(마약), 유독 물질, 공공보건에 해로운 물질, 무기, 폭발물, 탄약, 연식 5년 이상 된 중고 자동차, 플라스틱 폐기물, 디젤 승용차, 촉매 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 미장착 차량, 마약성 작물(양귀비, 대마초 등), 소리만 나는 모형

총, 10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는 제외), 공공보건 유해물질, 할랄 무인증 고기류(할랄 대상 고기만 해당) 등이 있다.

또한 △원유, 원유 파생상품(Mineral Oil, 광유 제외), 가정용 가스 실린더: 요르단 석유정제 회사(JPRC)만 수입 가능, △검은 시멘트(Black Cement): 요르단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만 수입 가능, △폭발물, 화약, 미정제된 인산염: 요르단 인산염 광산회사(JPMC)만 수입 가능, △중고타이어: 요르단 타이어 수리 공장만 수입 가능, △미가공된 가죽(원피): 요르단 제혁 회사만 수입 가능, △무기 등 방산제품: 요르단 정부에서 인가하는 업체 및 기관만 수입 가능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요르단 내 특정 기관 또는 회사만 수입이 가능하다.

레바논은 마약류, 무기, 폭약류, 8년 이상된 중고차량, 공중도덕 및 공중보건을 해치는 물건과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 농산물의 경우 감자, 양파, 마늘처럼 계절 면허가 필요한 품목과 올리브유, 솔씨 등 연중 면허가 필요한 품목, 그리고 토마토처럼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된다. 한편 신용장 개설 혹은 수입 심사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타결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는 1986년 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목을 계속 축소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무역적자 해소차원에서 각종 수입억제책을 발표/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정부는 2016년부터 모든 수입건에 대한 대금결제시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100% 은행예치, 선적서류의 은행간 송부 의무화, 자국 내 제조기반이 있는 소비재 31개 품목에 대한 공장등록제, 수입업자 등록법 개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 1975)」이 명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닭고기 내장 및 다리, 가금류 내장,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모든 종류의 석면,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유전자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DDT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중고제품(13개 품목군 제외) 등 9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중고제품의 경우, 별도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중고 생산 라인 기계 및 부품, 차량 및 부품, 기계, 장비, 스포츠 장비, 컨테이너, 무기류,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 폐지 및 폐잡지,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넝마, 예술품, 금속 및 목재 기둥 및 지지대, 전기차 등의 14개 품목 이외에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규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 및 농산품은 원산지 표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주 내로 파기될 수 있다. 일반 비닐봉지(폴리에틸렌)는 수입 규정에 어긋나며, 포장재의 두께는 최소 40 미크론 이상(GS 654/1998, GS 839/2001, GS 1024/2001)이어야 한다. 또한 2016년 5월 1일부터 75W, 100W 범주의 백열전구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2016년 11월 1일부터 40W, 60W 범주의 백열전구 수입 및 판매도 금지하였다. 한편 카타르 자치행정부(Ministry of Municipality)는 2016년 7월 1일부터 에어컨 제품에 대해 지정 인증기관의 표준화 인증 테스트, G-Mark 부착, 에너지효율등급표시(Star Rating)라벨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8.5(별3개) 미만인 에어컨 제품은 카타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카타르 거주 외국인이 무관세로 개인 소유물을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주류, 무기류(장식용 포함), 마약 및 유독 화학품, 폭발물, 방사능물질, 오존 파괴물, 약품, 암호기기, 돼지고기, 음란물, 무선 송수신기, 상아로 만들어진 물품 등은 수입이 제한된다. 여행객의 휴대화물 면세한도는 3,000 리얄(약 825달러)이며, 5만 리얄(약 13,736 달러) 이상의 현금 및 금품, 물품을 보유할 경우 공항에서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반입 시 의사 처방전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바레인은 재활용 타이어, 석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제품, 야생 상아, 상아로

만든 장식품, 살아 있는 돼지, 마약류, 저작권 위반 소프트웨어 및 음란물, 야생동물, 양식진주,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염화메틸(methyl chloride) 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장난감, 시클람산염(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등과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서커스용 야생동물, 말(지방정부농업부 승인 필요), 동물, 동물의 생산물, 육류, 생선, 과일, 야채, 나무(지방정부농업부 승인 필요), 순수 알콜·이소프로판올, 철제 수갑류, 무기류(내무부 승인 필요), 방사선조사식품 및 의약품(보건부 승인 필요), 잡지, 출판물, 영화 등 저작권과 관련 있는 품목(공보부 승인 필요), 통신, 라디오, TV 전파 수신 장비(통신규제청 승인 필요) 등은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허용된다. 그 외 식품의 경우, 시클람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들은 개별 연구소가 있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한 개 이상의 GCC 국가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육류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안전증명서와 수출국 소재 이슬람센터에서 발행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할랄 증명서가 요구된다.

가나는 공공위생과 안전을 위해 중고 손수건, 속옷, 매트리스 및 위생용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커피 원료, 음란물, 전염병에 걸린 동물 및 동물사체, 일부 의약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에 관한 바젤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가나에서는 화폐, 주류, 다이아몬드, 영화 필름, 도박기계, 열쇠 복사기계, 항공우편 용지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화폐나 여행자수표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나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며, 다이아몬드의 수입 역시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y Process)에 따른 증명서가 요구된다.

품목명	허가처
금화, 미가공 다이아몬드	재무부 장관
무기·탄약, 다이너마이트·기폭제, 수갑, 열쇠 복사 기계, 도박 기계	내무부

품목명	허가처
통신 장비	국립통신위원회(NCA)
약품	보건부 및 식약청
영화촬영기, 영화	가나 관세청(CEPS) (Kotoka 공항, Tema, Takoradi 항구 이외 장소에서 촬영된 경우에 한함)
8% 이하 유지를 함유한 농축 연유, 26% 유지 이하 우유 분말가루	가나 관세청(CEPS)
동물 사냥용 그물, 덫, 올가미, 스프링건	식품·농업부
식물, 분토, 화분용 흙, 감염병 또는 해충 보유 가능성이 있는 원예 제품	식품·농업부
수은	광산 에너지부
직물, 옷감 등	Takoradi 항구를 통해 유입되는 품목에 한정 (소규모 항구로, 수입 전 사전 허가 필요)

가나 정부는 2014년부터는 가나 정부는 가나 연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조건(조업장소, 어종별 조업 방식)에 따라 연안의 경우 5~6월, 일부 참치조업방식의 경우 1~3월 중 금어기(close season)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현지 진출 수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어료(lisence fee)를 인상하는 등 가나 정부는 현지 진출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7~21년)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 내 해적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수역 내 항해 및 조업시 안전에 대한 선사 및 선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나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 5월 49개의 의약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 규제 대상 의약품 49종과 관련 새로운 등록 및 갱신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가나 국회도 '의약품 라벨' 수입금지를 촉구하는 등 최근 들어 관련 품목의 추가 수입금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가나내에서 한국산 차량의 비중이 높은 중고자동차 분야 관련, 가나 국회가 2020년 3월, 사고 차량 및 10년 이상 된 중고차량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관세법(Act 891)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0년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업자들의 반발로 시행을 2021년 상반기로 한 차례 연기하였다. 2022년 9월부터 다시 시행하였으나, 현재 유예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나 기술표준청은 유예기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해 2005년 4월 이후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현재 25개 품목이 수입금지 물품으로 고시되어 있다. 아울러 공기소총, 항공우편 인화지, 중고 의류 등 절대 수입 금지 세부 물품 27개도 함께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금지 예외규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2022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압축 또는 액화 가스용 강철용기는 수입금지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초과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현재는 15년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신자동차 정책에 의해 완성차 수입관세(Levy 포함)를 최대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2015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수입금지 품목 (25개, 2022년 11월 기준)

* https://customs.gov.ng/?page_id=3075

1. 살아있거나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2. 돼지고기, 소고기
3. 새의 알(계란 등)
   * 부화용 알 제외
4. 정제된 식물성 기름과 지방
   * 식물성 기름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
5.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설탕, 그리고 순수 자당(첨가된 향미 또는 착색 물질을 함유한 고체 형태)
6. 코코아(버터, 분말, 케이크)
7. 스파게티, 라면
8. 과일주스(소매포장)
9. 물(생수 및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탄산수를 포함), 기타 알코올 미함유 음료 및 맥주류
   * 에너지, 건강음료는 제외
10. 포대 시멘트
11. 표제 3003 및 3004에 해당하는 의약품
12. 폐기 의약품
13. 비누 및 세제
14. 모기퇴치제

15. 플라스틱 위생용품, 아기 젖병을 제외한 플라스틱 용품
16. 재생 및 중고 공압 타이어
    * 트럭용 중고 타이어(사이즈 11×20 이상)는 제외
17. 골판지, 골판지 상자, 화장지, 티슈
    * 아기 기저귀, 어른용 기저귀는 제외
18.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19. 카펫 및 기타 섬유 바닥 커버
20. 신발 및 가방(가죽제 또는 플라스틱제 여행가방 포함)
    * 석유산업에서 사용하는 안전화, 스포츠화 등은 제외
21. 빈유리병(150ml 이상으로 음료, 주류 회사에서 사용되는 제품)
22. 중고 컴프레셔, 중고 에어컨, 중고 냉장고, 냉동고
23. 중고차(제조년도 기준 15년 초과)
24. 가구 (유아용 보행기, 실험실 용품 등 일부 제외)
25. 볼펜 및 리필 제품

2009년 10월에 새로운 시멘트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자국 시멘트 산업 육성을 위해 포대 시멘트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시멘트 설비기계와 석고와 같은 원재료에는 면세혜택까지 주어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식량안보, 산업진흥, 자원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수출금지 품목은 옥수수, 원목, 생가죽, 고철, 처리되지 않은 생고무, 유물 및 골동품,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제품(악어, 코끼리, 도마뱀, 독수리, 원숭이, 얼룩말, 사자 등), 모든 수입물품 등 8개 품목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인을 상대로 한 국제무역사기의 대상이 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품목이 고철(폐철도레일 포함)이다. 나이지리아로부터 폐철도레일 또는 고철 수출을 미끼로 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수출금지품목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자유화가 되어 있으나, 내수 산업 보호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 또는 전면 수입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카메룬에 수입되는 품목은 제한 정도에 따라 수입자유화 품목, 수입 부분제한 품목, 수입금지 품목 등 3개 분류로

16) https://customs.gov.ng/?page_id=3079

구분된다. 수입제한 품목은 고체 비누로 규정에 맞지 않는 것, 담배, 의약품, 수의약품, 식용육류, 바다 생선 또는 양식 어류, 의약용 비누, pyrotechnic articles, beacon rockets 등 폭발물, 전파 송수신기, 무기와 탄약, 귀금속 물질, 방사선 물질과 방사선 요소를 포함한 장비, 이소다인을 최대 100ppm 함유하거나 또는 100mg/kg 포함한 소금, 밀가루,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등이다. 수입금지 품목은 모조품, 'IBERO' oil and 'Turkey Brand' vegetal oil, 유독성 또는 산업폐기물, 비 이소다인 소금, 나이지라로부터 수입된 밀, 아시아로부터 수입된 우유, 비누류, 소독용 살충제 등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민건강, 환경보호, 안전 및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산업 등 주요 국내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AC)의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1998 UN 협약 등 국제 협약이 규정하는 품목 및 중고품의 수입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의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규제 품목으로는 차량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중고차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 물질, 총기·무기, 사행성 도박기기 등이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 자동차 및 중고 자동차 부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안전을 이유로 좌측 핸들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행정위원회에 따르면, 통관분류대상 총 6,650개 품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규제 대상품목이다.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77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품목은 주로 △호안석 (Tiger's eye) 등 희귀 광물 △제조업을 위한 원자재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 지원을 위한 품목(도난 차량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량의 수출 금지 등) 등이다. 수입통제 대상 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남아공 수입통제대상 품목 예시

품 목	수입 규제 사유
방사성 화학물질(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국민보건
신품 압축타이어(New Pneumatic Tyres)	안전기준
1998년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Chemicals liste in the 1998 Convention)	협약 준수
화석연료(Fossil Fuels)	효율적 제조 필요성, 소기업 보호
무기 및 탄약(Arms and Ammunition)	국민안전
도박기기(Gambling Services)	사회질서 유지
중고품(전자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기, 폐기물 및 스크랩 등)	국내산업 보호 및 환경 보호

자료: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리비아의 수입금지 품목은 총 10개 품목으로서 돼지고기, 주류, 과일, 생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배, 총기, 의약품 등은 리비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DR콩고의「무역법」제13조에 따르면 건강에 위험하거나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DR콩고에서 총기류, 탄약, 부레옥잠 및 음란물은 상업적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동전, 기념주화, 지폐 및 중고물품은 상업적 수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수입 전 관세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의 이유로 자동차와 중고자동차부품, 중고기계류, 중고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특히, 중고차의 경우 아직 자동차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향후에도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지 않을 전망이다.

멕시코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수입허가(padron de importacion)를 얻어야 하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업 및 수자원부, 사회개발부 등의 허가(Permiso) 또는 등록(Aviso)을 요한다.

한편 1994년 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을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하여 미국과 캐나다산의 중고차 수입은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제조연도로부터 8년 이상 사용한 승용차(마이크로버스, 이륜 오토바이 포함) 및 경화물차(픽업트럭, 3톤 이하 트럭 등), 10년 이상 사용한 버스, 15년 이상 사용한 중화물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22년 8월 △중고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입제한 연식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고 △신규 배터리 탑재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며, △신규 전기차·하이브리드차를 수입할 경우 10년간 부가가치세(IVA)를 100% 면제하고, 중고차는 25% 면제한다는 내용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 교통수단의 사용·수입을 위한 인센티브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그밖에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커피나무 및 씨, 동전주조용 기계, 도박용 기계, 낙태 약품, 대구경 화기, 아편,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책자, 인쇄물, 영상물 등이 있다. 정부만이 수입할 수 있는 제한적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군용 비행기 및 함선, 방독면, 그리고 담배제조용 종이, 수입인지, 우표 및 니켈동전 등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안전,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된 중고차와 오토바이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를 통해 중고 의류제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수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 등 중고차 인지도가 좋은 차량을 중심으로 5년 이상 된 노후중고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형성되어 있다. 2009년 이후 우측 핸들 개조 차량 수입이 규제되어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 수입이 급증하였다. 한편 미국은 DR-CAFTA 하에서 미국 중고차 수출시 우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미니카공화국 세관 당국과 협상 중이다.[17)]

17) 2020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42

브라질은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옷, 중고 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 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니카라과의 경우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 외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섬유 및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수입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육상운송법(2005/524)」은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하지만 소방청, 적십자사 및 종교단체에 기증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규제 관련 법령(Law 26473, 25426, 24051), 대통령령 및 부처 훈령을 통해 일정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수입 규제 품목은 프탈레이트가 고농축 함유된 장남감 및 유아용품(「보건부 Resolution 583/2008」), 활성성분으로 니메술리드(Nimesulide)를 함유한 의약품(「Disposition 4430/2009」), 백열등(「Law 26473」), 특정중고기계, 장비, 장치 및 그 부품(「경제부 Resolution 909/1994」), 올라킨독스(Olaquindox)를 함유한 식품 및 의약품(「SENASA Resolution 84/2007」), 납 함유 페인트(100g 당 0.06 그람 초과) (「보건부 Resolution 7/2009」), 중고 자동차(「Decree 110/1999」), 중고 오토바이 및 세발자전거(「경제부 Resolution 790/1992」), 중고 의류 및 악세서리(「Decree 2112/2010」), 중고 타이어(「Law 25626」), 중고 의료기기(「Decree 509/07-ANEXO X」), 위험 폐기물(「Law 24051」), 특정 위험 물질(「Resolutions 750/2000, 845/ 2000, 182/1999」) 등이다.

페루는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타이어 및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도 동일하다.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정 등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타이어, 중고 의류 등 약 130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에 따라 중고 의류, 중고자동차, 중고타이어, 파충류, 상아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최고법령 제572호에 의거하여, ①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그리고 환경에 유해한 상품, ②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농식품, ③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④ 볼리비아의 안보 및 재정경제시스템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품, ⑤ 여타 규정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차량 또는 오토바이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사항의 경우 볼리비아 관세청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사고로 손상된 차량, △1년 이상 경과된 중고 승용차(HS 87.03) 및 오토바이(HS 87.06), △3년 이상 경과된 10인 이상 탑승용 중고차(HS 87.02) 및 화물차(HS 87.04), △LPG 사용 차량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칠레는 수입규제제도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관세법」 제9397조에 의거하여 중고타이어의 수입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8483조에 의거, 중고자동차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음란물 등 사회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 독성 산업폐기물 등 기본적인 수입금지 품목, 중고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 타이어, 모든 종류의 석면류, 보건부·농림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 동물, 농업 및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톨루엔 및 휘발성 솔벤트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한 유아용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청, 적십자사, 위기대응상설위원회(COPECO), 시청 등에 기증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응급차량, 재난구호차량 등의 반입은 허용된다.

또한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 그리고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 및 인체에 해로운 금속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2021년 9월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갱신이다. 2011년 6개의 수입품목에 대한 국제 거래를 금지했으나, 2021년에는 12개로 제재 품목을 늘렸다. 라오스 무역 금지 품목은 국가의 안전, 보안, 보건, 환경과 국가의 천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라오스는 최근까지 산업용 위험물질, 무기류, 마약성 향정신성 물질, 유해어법(distructive fishing) 관련 도구 및 기기,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판물, 위조지폐 관련 분야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지난 2021년 9월 13일 발표된 새로운 수입금지 품목은 기존 품목에서 1개가 빠지고 7개가 늘어났다. 제외된 품목은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어법 관련 도구다. 바다가 없는 라오스 특성상 영향이 크지 않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 유해어법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제외됐다. 신규 추가된 항목은 국제협약이나 자국민 보호, 통신 보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자폐기물(e-Waste),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규정 품목, 방사성 광물, 위험 화학물질이 포함된 살충제, 무선통신망 교란 관련 물품, 전자담배가가 신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으로 해당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동·식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과 무역의 편의를 위해 수입쿼터 및 무역수지 균형 정책을 폐지하고, 수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리랑카는 국가안보, 안전, 환경, 보건,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폭발 물질이 포함된 폭죽, 장난감 총, 위조화폐, 생선, 곡물, 온혈동물로부터 추출된 고기, 10년 이상된 중고 자동차, 농업 및 건축용 기계류, 상아로 만들어진 보석 및 물품, 약물, 외설적이거나 종교적 신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책자나 마취성 품목 등은 수입이 규제된다. 최근 특이사항으로는 2020년 3월 코로나 확산 사태 이후로 당해

4월부터 시작된 비필수재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제한 조치가 있다. 현재 통제 및 금지 수입품목 리스트는 2022년 9월 관보(「Gazette No. 2296/30 of 09 September 2022」)에 공개되어 있으며, 수입규제 품목 리스트는 수시 변경되기 때문에 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Control을 통해 수출 전 확인해야 한다.

미얀마는 2015년 8월부터 수입제한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로 변경하였다. 수입면허 취득이 필요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최초 4,405개로 설정되었다. 이후 2016년 8월에는 고무, 섬유, 철강, 구리,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한 267개 품목, 12월에는 커피, 니켈, 알루미늄, 전철 관련 부품 등을 포함하여 150개의 품목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 2018년 2월에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3,345개 품목을 공지하였으며, 여기에는 축산물, 희귀한 나무, 종자, 쌀, 기름 등의 콩류, 광물, 보석, 비료 등이 포함되었다.

캄보디아는 ① 국가 안전, ② 공공질서와 도덕성 준수, ③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④ 예술, 역사적 가치의 보호, ⑤ 천연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우측 핸들 차량, 중고컴퓨터, 중고신발, 중고가방, 중고배터리, 폐타이어, 종교 및 정치 서적, 외설물 및 기타 법으로 금지된 출판물, 지식재산권 저촉 상품, 위조물품, 독점권 위반 상품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담당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으로 수입금지 품목과 유사한 품목의 경우 국제적으로는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도 캄보디아 세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생타이어를 수입 금지 품목인 폐타이어로 취급하여 수입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 또한 밀수 및 사기행위 근절을 위해 일부 민감하거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특별지정상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상품의 운송, 유통, 보관 및 소유에 대하여 추가로 통제 및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입제한, 금지, 규제 사례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없다.

베트남은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범위를 과학적 연구 목적, 인도적 원조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전염병 및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허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관련법으로는 기존 「국제적인 재화 판매와 구매, 외국과의 판매·구매·가공·중계 대행활동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Decree 187/2013/ND-CP)」은 폐지되고, 2017년 6월 12일부터 적용된 「대외무역법(Law 05/2017/QH14)」과 2018년 5월 15일 발표된 「대외무역법 시행령 (Decree 69/2018/ND-CP)」이 적용되고 있다.

베트남의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발물 제외), 군사용 기술장비, 각종 폭죽(교통운송부 지침에 따른 항해 선박 안전용 폭죽 제외), 풍등, 교통수단 속도 측정을 방해하는 각종 장비, 중고 소비재(섬유·의류제품, 신발, 전자제품, 냉장기기,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제품, 도기·유리·금속·플라스틱·고무·수지 및 기타 자재로 된 가정용품, IT 제품),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출판물, 우편법에 의해 사업·교환·전시·선전이 금지된 우표, 무선장비·무선전파기술 응용장비 중 무선주파수 개발계획 및 무선주파수법 규정과 관련 있는 기술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 우측 핸들 차량(분해된 상태의 차량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포함, 단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각종 차량과 그 부품 및 오토바이,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개조된 차량,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차량, 구급차, 자전거, 오토바이, Rotterdam 조약 부록 III에 속하는 화학물, 베트남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보호제, 폐기물, 스크랩, CFC 사용 냉동기,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과 자재, 「화학무기금지협정(CWC) 이행 베트남 시행령(Decree 100/2005/ND-CP)」에서 규정한 독극화학물, 「화학물법 세부규정 시행령(Decree 113/2017/ND-CP)」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 등이다.

중국은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년 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 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産品進出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국을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1998년 11월 1일부터는 외국계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舊국가질검총국의 「중고전기기계제품 수입검사관리감독방법(进口旧机电产品检验监督管理办法, 总局令第171号)」에 따라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유독성 화학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4년 4월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2019년 12월에는 신규 목록을 발표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 목록에는 총 20개 품목이 발표됐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품은 수출입시 환경보호부에 관련 수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규 목록의 시행과 동시에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 발급이 필요 없고,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가통관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독성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 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목록(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최신본)은 3대 공약 중 화학제품을 통제하는 것을 근거로 '지속적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및 관련 수정안,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국제무역에서 특정 위험 화학품과 농약에 대해 미리 동의하는 절차를 채택하는 로테르담 협약'을 발표했다.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국가안감총국 제53호)은 위험화학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품 등록을 규범화하기 위해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에 따라 2012년 7월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을 고시하고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2002년 3월 15일 시행)에 의하여 「위험화물리스트(2015판)」(2015년 5월 1일 시행): 유독성화학목록: 기타〈리스트〉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위험화학품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또는 방어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통제화학약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국무원 상무부에 의하여 공동 지정된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화학품은

위험화학품목록(2015판)에 등재되어 있으며,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을 이행하여 위험화학품 수입위해 등록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위험 화학품 경영 허가 관리방법》을 이행하여 위험 화학품 경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위험화학품목록(2015판)」 시행 후 위험화학품 리스트(2002판)와 극독화학품 리스트(2002판)를 동시에 폐지했다. 본 목록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의 GHS 정의와 결합해 화학품 분류와 라벨링 규범 등 국가기준에 따라 화학품 28개 분류 중 95개 위험물 분류 가운데 위험성이 큰 81개 항목을 위험화학품 확정원칙으로 선정해 물리위험성 45개, 건강위해성 30개, 환경위해성 6개 항목에 포함됐다. 위와 같은 어떤 법규의 의무를 이행하든지, 위험화학품은 화물로서 운송 과정 중에, 예를 들면 IATA와 IMDG와 같은 국제운송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 세관에서 화학품 화물의 안전, 포장 등 각 방면에 대해 검사 검역을 받고 있으며, 중국에 입국 후 중국 내 모든 공급사슬에서 중국 법규에 부합하는 포장, 표시, 운송, 창고 저장 및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이 모두 규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한편 2017년부터 중국 정부는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했다. 2017년 말부터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종 고체폐기물, 2018년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등 16종 고체폐기물을 수입 금지했고, 2019년 12월 31일부터는 목재 폐기물 16종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비제한 고체폐기물 수입목록'의 8종 금속 폐기물을 '수입제한목록'에 포함시켰다. 2020년부터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는 대폭 강화되었다. 2020년 9월부터 일부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철과 폐지 등 고체폐기물 수입을 제한하고, 화물을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징벌적 벌금(7만1000~71만 달러)과 함께 폐기물 반송 및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해외 고체폐기물의 반입·적치(堆放)·폐기도 금지한다. 수은제(고독성(高毒) 농약제품) 및 수은 함유 전지 등에 대한 생산과 수출입도 금지한다. 시진핑 지도부가 '아름다운 중국'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환경보호법',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등 환경법 제도가 갖춰지며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이다.

2022년 1월 1일부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기업(식품첨가제, 식품 전용 소독제와 세척제 등을 생산, 보존하는 기업은 제외)은 해관 시스템 등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식해야 한다. 기존 육류, 유제품, 수산물, 벌꿀 제품, 제비집 관련 생산업체에 적용하던 '해외 식품생산업체 인허가 제도'를 전 식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건강식품, 견과류, 냉동만두 등 18종 중점 품목은 수출국 주관부처(한국은 식약처에서 주관)을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하고 기타 식품은 해외생산기업이 직접 해관총서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으나, 수량 제한 등의 수입규제 사례나 여타 비관세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계부처의 승인 또는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마약 등 非할랄 제품 92개 품목이며, 관련부처의 특별승인이 요구되는 품목은 식물의 종자, 비료, 무기, 보안용품 등이다. 특히 미디어제품은 수입 검열을 필수로 한다. 2009년 6월부터 사우디 정부는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트럭(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2022년 5월에는 대형트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여 타 기종과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운행하던 노후 차량에 필요한 부품의 경우에는 별도 수입 제한이 없다. 또한 2010년 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된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한편 사우디 정부는 2011년 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 및 자국 내 제조를 2012년 5월 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우디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은 무기류, 폭발성물질, 마약, 술, 도색출판물, 도박관련물품, 돼지고기, 고급 승용차 완제품 등 수입금지 품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10월 현재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2,500개 품목이다.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적용하는 반면 완제품,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인 경우 55% 이상의 고율 관세 혹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모로코는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중고타이어 등에 대한 수입허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도 중고품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이집트는 장애인사용 목적이나 국가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중고차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케냐는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으며, 예멘 역시 중고타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고기계, 중고디젤승용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의 공통적인 목적 외에도 자국의 산업보호 또는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인 이유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예시한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여건도 살펴보아 수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입허가

현실적으로 수입금지보다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허가 조치를 통한 규제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학제품, 일부 의약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방출 전자제품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 파기 또는 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요건을 적용받는다. 또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는 상무부의 수입허가제 대상이다. 동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 제도는 철강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함으로써 수입피해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천연가스법」). 장기 및 단기로 신청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가격, 공급업체, 물량 등의 정보를 최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월별로 각종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예외적으로 일정한 검역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VS Form 16·3)와 철저한 수입검사를 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동물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국가로부터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허가와 함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철저한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다.

미국 정부는 과거 뿌리를 제거한 절화(折花)와 재배매체가 없는 상태의 어린 묘목만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2017년 9월 14일 한국산 재배매체에 심겨진 호접란 및 심비디움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동 조치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 2019년 3월에는 국내 고시 제정, 현지 실사 및 수출농장 승인(2개소) 등의 절차를 거쳐 재배매체에 심겨진 호접란이 미국(플로리다)으로 첫 수출되었다.

미국 FDA는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욱 강화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산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 즉, 화학적 오염문제로 수입검사와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열처리 가공과 진공 포장된 저산성식품과 산성화 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FDA에 시설등록과 제조과정을 신청하여 FDA로부터 FCE No.(Food Contai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 No.)와 SID No.(Submission Identification No.)를 획득·유지하고 Botulism 이라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가공처리를 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산 깻잎 통조림, 장아찌 통조림 등과 두유, 식혜 등 음료제품 등이 FCE No.와 SID No.의 미등록으로 말미암아 폐기처분 및 반출된 사례가 있다.

한편, 건조 농산물 식품(Dried Fruits & Vegetables)의 경우 건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물리적 오염(예 : 흙, 곤충벌레, 쥐털, 새털)에 감염되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Seafood)의 경우 수산물 식품의 수입 공급선상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식품안전의 위해요소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System)를 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식품의 제조 과정부터 최종 판매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FDA는 HACCP Program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가는 경향이다. 2010년 10월 한국산 온주밀감의 미국 본토 수출이 허용된 이래 한국산 한라봉·천혜향도 온주밀감과 동일한 검역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규정 개정안이 2014년 7월 29일 입안 예고되었다. 농무부는 2014년 9월 29일까지 60일간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5년 1월 30일 한국산 한라봉·천혜향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 규정 개정 내용을 발표·시행하였다.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는 2005년 12월 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한국산 파프리카(Bell Pepper)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를 종결하고 2006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2006년 수출요건 타결 이후 매년 10~15톤을 수출하였으나 미국이 총채벌레 관리 방충망 요건을 강화(0.6㎜)하여 2010년 이후 수출이 중단되었다. 이후 방충망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개정안이 2018년 4월 입법예고되었고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연방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2005년부터는 한국산 박과작물(호박, 수박, 오이, 참외) 및 포도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한국 정부가 1999년 4월 미나리 수출을 요청한 이후 9년 만에 미국 정부는 한국산 미나리에 대해 2008년 3월 20일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2014년 4월 한국산 당근 수출허용 요구에 따라 미국은 병해충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 진행 후, 2020년 6월에 당근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미국은 한국산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고기류 및 가금류를 소량으로 포함하는 식품,[18] 즉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은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류 및 가금류의 원재료는 미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국은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류 및 가금류 소량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를 2009년 6월 22일부터 강화하였다. 즉,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에서만 검토하였으나, 2009년 6월 22일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계란성분을 소량으로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의 반대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업자별·제품별로 매 1년 단위로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여 수입자 및 수출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케 하고 있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로 완전히 가공되어 식품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글로벌부(외교통상개발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이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18) 최종제품의 함량 중 가공육류(cooked meat)는 2%, 신선육류(raw meat)는 3%, 지방, 우지, 육류 추출물(extract)은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육류 수출국가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예외적으로 삼계탕의 수출이 허가된 바 있다.

페루의 경우 식음료제품은 수입 시 환경보건국(DIGESA)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해산물 및 어패류는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적합증명서가 필요하다.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은 수출국 발행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상품 및 제조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非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非상업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천 달러 이하의 선물과 이천 달러 이하의 非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OB 가격으로 2,000 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에는 단일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0.8.18일 제정된 법률 제64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에콰도르는 2014년 1월 14일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 고시 116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수입업자 및 해외 수출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제류,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업 부품, 건설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2019년 1월 에콰도르기술표준원(INEN)은 252개 품목의 인증관련 수입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번에 수입규제가 철폐된 품목은 국내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중심이며, 농산업, 화장품, 위생용품제조, 플라스틱 사출성형, 장난감 제조, 기타 화학산업에 사용되는 원료들이다.

온두라스의 경우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자국민들의 건강보호(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 등), 안전관리(공산품의 표준관리), 사회안전(무기, 총기류), 자국 식량주권 보호(특정 식료품 또는 농산품) 등을 이유로 통관하기 전에 사전에 요건 확인기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확인기관으로는 온두라스

표준기구(OHN),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농축산검역청(SENASA), 수의학연구원(IHIMV),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등이 있다. 특히 오존파괴물질(ODS)인 염화불화탄소(CFCs)와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산하 오존기술부(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축산검역청(SENAS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허가/등록	구분	유효기간	발급 소요일	담당부서
허가	총기/총탄	1년간	5일 이내	국방부
허가	폭발물/화약	1년간	30일 이내	국방부
등록	향정신성 약품/마취제	150일간	15일 이내	보건부
등록	유제품	60일간	5일 이내	경제개발부
등록	식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농업용 소모품	30일간 (갱신가능)	1~15일 이내	농축산부
등록	동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식물용 소모품	30일간	6일~15일 이내	상동
등록	브롬화메틸	3~6개월간	5일 이내	상동
등록	냉매/합성물질	15~30일간	5일 이내	에너지자원부

우루과이의 경우 수입제한은 없지만 수입면허(import licence) 의무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트산, 무기와 탄약, 할론 가스류 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하다. 동 물품의 수입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만 세관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48시간에서 10근무일이며, 수입면허 발급은 산업에너지광물부, 보건부, 국방부 등에서 담당한다. 수입면허는 일반적으로 60일간 유효하며 자동차 수입면허는 90일, 향정신성 물질과 화학제품은 180일간 유효하다. 또한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는 관할 정부부처에 등록 의무(registration requirements)가 있다. 농업용 살충제,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약 기기, 화장품, 음료수, 가정용 위생용품, 방사능 사용기기, 육류, 사료 등 보건·위생상 민감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목축수산부(Ministerio de Ganaderia, Agricultura y Pesca),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산업에너지광물부(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 통관 방지를 위해 설탕, 시멘트, 밀가루, 마테차, 위생용품, 의류, 신발류, 산동물, 쇠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사전 수입자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위생검역, 환경, 국가안보 등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소관 정부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휴대전화기 및 부속품 관련, 불법복제품 및 병행수입으로 유통되는 비인증 제품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산업통상부(MIC)는 2017년 2월 휴대전화 및 부품 수입자 등록과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위원회(CONATEL)의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는 사전수입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산업통상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는 데는 통상 약 10여일이 소요되나, 보건, 위생검역 등 소관 당국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1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

EU는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만이 수입할 수 있다. 또한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 대상국과 기업은 위생요건을 고려하여 계속 변경되며 EU 관보에 공고된다.

오스트리아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들을 Freiwaren이라고 부르며, 동 물품들은 상기 경제부 장관령 별표 3에 'F'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다. 그러나 HS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 물품은 세관의 통관 과정에서 수입허가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①대부분의 농산물(HS코드 01~24류, 농산물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수입 승인서를 신청, 교부 담당관청은 연방 농업부), ② 다국간 섬유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제품(셔츠, 블라우스, 니트웨어

외 의류 등 주로 쿼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연방 경제부를 통해 수입 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음), ③갈탄 및 의약품 등이다. 다만, 363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량에 대해서는 상기 수입 승인 요건이 면제된다.

노르웨이는 농산물, 주류, 의약품, 소형화기·탄약, 폭발성물질, 멸종위기종 등 6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 대상임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담배, 식자재, 무기, 문화재, 골동품 등도 노르웨이의 담당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군수용품, 민군겸용(dual use) 제품, 무기, 고문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 등은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교역할 수 있으며, ECJU(Export Control Joint Unit)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 EU-영국간 해당 제품을 교역하려면 기존 라이센스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취득해야 한다.

스페인은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을 할 수 있으며,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청(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투갈 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크로아티아는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없으며,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무기/탄약, 군대 및 경찰 장비, 무전기, 마약·향신류, 골동품, 귀금속, 폐기물, 원자력 기술, 화학무기 제조용 성분, 오존층에 해로운 물질 등이다. 또한 수입일 최소 30일 이전에 동물, 동물제품, 동물성원료 함유 제품, 난자(ova), 태반(embryos), 동물사료, 부화 알, 동물사료 원료, 전염성 질환 전파 또는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경우 크로아티아 농업부에 수입

허가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벨라루스는 관세당국이 자국에 대규모로 수입되는 상품 생산업체에 제조원가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여 상품 원가정보공개를 통해 보호무역 및 국내 수입 상품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해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위생검역증 이외에 자국 특별 검역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19]하여 이를 자국상품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단일관세율 품목 중 제3국과의 거래가 금지·규제된 일부 품목은 공동관세협정에 따라 수출입허가의 대상이 된다. 주로 알콜제품, 어류 및 수산가공품, 담배제품 등이며 1년 이하로 발급되는 유효한 1회성 허가(One- time license), 1년간 유효한 일반 허가(General license),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사안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배타적 허가(Exclusive license)가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무역독점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외부에 공표된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독점적 수입이 인정되는 품목은 알콜제품, 수산가공품, 담배제품이며 칼리비료가 독점적 수출 대상이다. 한편 벨라루스는 EU의 기존 경제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EU로부터 식품류(육류, 우유 및 유제품, 야채 및 과일, 견과류, 제과, 소금 등) 수입을 금지하는 각료법 700호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 식품류의 수입 대체국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의 수입마저 불가능해지면서 야채, 과일, 견과류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자, 2022년 4월 22일 각료법 245호를 통해 EU산 야채와 과일, 견과류에 대해서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튀니지는 농산품, 자동차, 섬유제품, 전문 음향기기, 위성전화, 측량 및 측정기기 등 전체 수입 품목의 약 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허가서 신청은 무역 계약서(Proforma) 및 계약 당사자, 수입품목, 원산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통상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상부가 발부하는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허가 결정일로부터 1년이고 양도는 불가능하다. 수입허가증 발부에

19) 2015년 8월 총리 훈령(No.666)을 제정

소요되는 시간은 대상품목의 민감성에 따라 다소 격차가 있는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정(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첨부서1에 수록된 동·식물의 수입은 농산부의 수입허가서 취득 후 가능하며,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관련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품목들은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ANPE, Agence Nationale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에서 발부하는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다.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수입이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의 경우 보건부의 사전 수입 승인이 필요하며,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와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 장비류 및 다이너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 등에는 공공안전부 공공안전국(DIASP)의 사전 수입승인이 필요하다. 식음료의 경우 별도기구인 식품안전청(AUPSA)을 통해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테말라의 경우 유기화학품은 농수산부와 보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분유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고,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 500이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청해야 한다. 한편 관련 당국은 2018년 8월부로 새로운 의약품·화장품 보건등록 양식을 공지하였다. 일종의 법적대리인 위임 문서(PODER DE REPRESENTANTE LEGAL)인데 내용 상 독점에 준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독점계약을 원치 않는 수출자의 경우 동 내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사전에 주의를 요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의무화하는 양식이므로 현재로서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바이어와 법적 책임과 독점권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중고타이어,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건축자재의 경우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허가 조건이 다르다.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ASTM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재의 스펙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니카라과는 식품 및 음료제품의 경우 보건부(식품검사실)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농산물안전검역실)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식품이 비포장(bulk) 형태로 니카라과내 반입된 후 상품으로 포장될 경우, 원산지 국가와 니카라과 보건부(식품검사실)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통관 관련해서는 보건부(의약품실)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수입업자는 검역등록을 위해 실험실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485.1달러)을 납부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품 통관을 위한 검역 및 검사는 농림부(동물검역보호국)에서 담당한다. 농림부(농약실)는 농약, 가축 치료제 등 농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며, 바이오 제품의 수입

허가도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보통신(ICT) 제품, 무선통신 제품, 케이블TV 장비, 전화교환 장비, 상업용 방송장비 등 의 통관 및 수입허가증은 우정통신청에서 발급한다. 액화가스 및 여타 압축가스 용기와 실린더 수입 허가증은 소방청(화재예방실)에서 발급하며, 소형 화기 · 탄약 · 폭발물 등에 대한 수입허가증은 경찰청(소화기 탄약실)에서 발급한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상품이 자동수입허가 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수입 시 사전에 해당 기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은 수입쿼터 대상 품목,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혜택을 받는 품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모든 중고 상품,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목,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등이다.

브라질 통신규제청(ANATEL)은 부피가 크거나 운반비용이 엄청난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화 제품에 대해 브라질 내 시험소의 인증을 거쳐야만 브라질 내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내' 인증 절차는 브라질로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 구매시 브라질 기업 생산제품에는 세금 감면 등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에 유사상품이 존재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ANATEL이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①일반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 전화기 단말기 등, ②통신용장비의 일부로 ①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안테나, 근거리용 통신장비 등), ③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①과 ②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 Multiplex), 라우터(router) 등 3개 분야로 분류된다.

또한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광물에너지부 및 국가에너지국의 통제와 석유공사(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입 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제품 등록을 승인받아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ANVISA(위생관리국)이며,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브라질 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대부분의 품목의 경우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의료용품,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사전에 관련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르비아는 공공보호, 국민 및 동식물 보호,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그리고 금·은 거래 시 특별 규정 적용 등의 이유로 일부 제약물질, 귀금속,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제 실시 품목은 관세 대상 품목 10,270개 중에서 2%에 해당하는 212개이다. 수입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동 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볼리비아 역시 의약품 및 보건제품, 농수산품,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환경 공해 관련 품목 등을 수입할 경우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2015년 12월 22일 기존 수입규제 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ones)가 승인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이를 전격 폐지하고, 현지 생산이 있는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 Licencias No Automáticas)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사전 수입신고제(DJAI)와 달리 신청절차가 매우 단순해졌다. 약 1,500개 HS코드가 수입허가제(LNA) 대상이며,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고 수입수량 및 금액에 제한을 두어 규제를 한다. 수입허가제에 해당되는 주요 품목은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장난감, 제화, 제지, 농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가죽제품, 카펫, 철강(철사, 튜브, 파이프, 못), 유리제품, 모터, 가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수입허가제 대상 품목인 경우 수입승인은 최대 60일(근무일 기준)까지 소요되고, 수입허가제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에 신청 후 약 48~72시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은 제품은 180일간의 통관기간이 주어진다. 통관시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제 수입제품을 검사하여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다 (FOB 단가 7% 오차범위 이내, 수량 7% 이내 차이에 한해 허용)

2022년 3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업별로 '21년 수입 총액의 105% 혹은 '20년 수입 총액의 170%까지(둘 중 작은 액수 적용)만 외환 구입을 자동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외환시장에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180일간 대기할 것을 규정하는 새로운 외환통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22.6월에는 수입허가제(LNA)품목 및 서비스 수입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180일 이후 외환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수입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로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이 대금 지급을 최소 180일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전기공업제품 표준규격제도(IRAM)를 강화시켜 모든 수입 전기·전자제품들은 공업규격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농산물 및 보건 관련 제품을 수입하려면 아르헨티나 연방 식품·의약품청의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아르헨티나 식품 코드(CAA: Codigo Alimentario Argentino)에 따라 위생, 품질, 포장, 운송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립농식품품질관리원(SENASA), 연방식품관리원(INVAL), 연방포도주관리원(INV) 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 및 보건제품 수입 시는 수입업자 상품 등록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약완제품 수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취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미국, EU 국가 등의 제품의 경우 1년 미만이지만 한국 등 여타국가 제품은 최소 3년이 소요된다. 이에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 사전승인절차 간소화(임상절차 면제 등)를 위한 부속서(Anexo I, II) 등재를 위해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농수산품,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등 몇몇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나, 수출국의 품질, 규격 및 위생수준이 아르헨티나보다 높거나 엄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는 형식적으로 행해지며 자동으로 승인이 부여된다.

칠레는 무기, 탄약, 화약류, 알코올, 동식물, 비료, 살충제,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방사성 물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사전허가 또는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 차량의 수입은 가능하다. 또한 칠레 북부 이키케(Iquique) 및 남부 푼타아레나스(Punta Arenas)와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중고차를 수입하여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은 특정 품목의 경우, 소관 기관의 허가 또는 인증이 필요하다.

품목	해당 기관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	국방부 산하 병무청(DGNM; Direccion General de Movilizacion Nacional) * 홈페이지: www.dgmn.cl 참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무술 교습서 및 영상 교재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식품	농림부 산하 농목축청(SAG; Servicio Agricola y Ganadero) * 홈페이지: www.sag.cl 참고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동물 및 동식물 쓰레기	
비료 및 살충제	
의약품, 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보건부 산하 공공보건청(Instituto de Salud Pública) * 홈페이지: www.ispch.cl 참고
마취제 및 유해물질 환각제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	칠레 원자력 위원회(Comi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 * 홈페이지: www.cchen.cl 참고

품목	해당 기관
수산물	농수산차관실(Subsecretaría de Pesca y Acuicultura) * 홈페이지: www.subpesca.cl 참고
수산물 자원(관상용 포함)	
무선통신장비(주파수 사용에 대한 사전취득 필요)	교통통신부 산하 통신차관청(SUBTEL) * 홈페이지: www.subtel.cl 참조
야생동물국제협약(CITES)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동식물	야생동식물국제협약(www.cite.org)와 소관부처
시멘트	주택도시계획부(Ministerio de Vivienda y Urbanismo)에 등록된 건설품질기술검사소에서 관련 품질 증명서(Certificado de Calidad)를 선발급받아야 함.

코스타리카는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 일부 품목 수입 시 보건부, 농축산부, 환경에너지부 등 관계부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볼리비아 정부는 최고법령 제572호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위한 사전허가 혹은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광물류, 화학제품, 플라스틱, 기계류, 무기류 등이 있다. 담배류 수입을 위해서는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과 보건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류 포장 및 라벨링 관련 구체 요건은 최고법령 제27053호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국가 의약품 관련 법률 제1737호, 필수의약품 관련 최고법령 제25235호 및 제3376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최고법령 제4338호(2020.12.30.)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료·보건 제품은 2021.12.31.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뉴질랜드는 △코끼리 상아 또는 거북이를 포함하고 있는 액세서리 물품, △고래·돌고래·두루미·꿩·거북이·코뿔소·호랑이 등 재료를 포함하는 의약품, △고래 등 해양포유류 뼈로 만든 조각품, △고양이 가죽, △벌레잡이 식물 등이 허가가 필요한 수입 품목이다.

한편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뿐 아니라 기초 금속 및 일부 원자재,

수송기기, 기계류, 전기기기, 석유제품, 섬유류, 화학제품 및 일반적인 제조업 제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수입업자에 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무역부 또는 주무부처의 특별 관리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산업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 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2002년 1월 1일 「화물진구허가증관리판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2005년 1월 1일 신규정책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수입허가증관리대상목록(2022년판)」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존층 파괴물질, 화공설비, 식품가공 및 포장설비, 인쇄기기, 토너 등 14종 제품, HS 10단위 기준으로 156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수입허가증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상무청 또는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파견사무소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 辦法)」(2005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HS 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HS 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정되어 2022년 현재 412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 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공실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플라스틱 중간원료의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모든 수입자는 국가환경보호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와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표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원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고체폐기물수입허가증, 환경보호허가증제도, 수입폐기물원자재전자관리감독시스템이 2014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중국은 2004년까지 자동차를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대상품목으로 관리하였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완성차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허가라기보다는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다. 자동차 수입관세는 2003년 52.5%에서 2006년 7월 1일부로는 완성차 관세율이 25%, 부품은 10%로 인하되었으며, 2018년 7월 1일부로는 완성차 관세율을 15%, 부품은 6%로 낮아졌다. 관세 인하에 맞춰 수입차와 럭셔리카의 가격인하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중·미 무역 갈등에 따라 25%의 추가관세 조치를 실시하여 40%까지 관세가 올라갔으나, 2019년 1월부터 3개월간 다시 추가관세 부과를 정지하여 다시 25%로 낮춰지는 등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주재원이

중고자동차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 후 이를 제3자(중국인)에게 양도하거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유독성 및 위험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품목이 「중국 기존화학물질(IECSC) 2013」에 수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제도(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근거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2020년 4월29일, 생태환경부가 개정된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제도〉를 공시 (생태환경부령 제12호). 본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시에 2010년 1월 19일에 원환경보호부가 공시한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를 (환경보호부령 제7호)는 폐지). 중국 정부가 환경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감독을 중점 강조하며, 관제중점은 지속성, 생물축적성, 환경과 건강위험성이 크거나 환경에 장기간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생태환경과 대중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화학물질을 명확히 관리 감독한다. 신화학물질 생산·수입 전에 신화확물질 환경관리 일반등기증(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0T(10T포함) 이상), 또는 간이등기증(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 ~10T(1T포함)을 취득하거나, 환경관리 등록(신규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이하, 신화학물질 단량체나 반응체의 함유량은 2%를 초과하지 않은 고분자 또한 저우려 고분자)을 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신화학물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동일 종류 화학물질을 다른 외국인이나 그 대리인이 중국에 등록했더라도 여전히 화학물질을 처음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기업(식품첨가제, 식품 전용 소독제와 세척제 등을 생산, 보존하는 기업은 제외)은 해관 시스템 등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육류, 유제품, 수산물, 벌꿀 제품, 제비집 관련 생산업체에 적용하던 '해외 식품생산업체 인허가 제도'를 전 식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건강식품, 견과류, 냉동만두 등 18종 중점 품목은 수출국

주관부처(한국은 식약처에서 주관)를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하고 기타 식품은 해외생산기업이 직접 해관총서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인도의 경우 중고자동차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 「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뭄바이항, 첸나이항, 콜카타항을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보건, 위생, 지식재산권 및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Import Permit) 또는 수입면허(Impor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고, 품목별로 수입허가면허를 발급해주는 기관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허가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국제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여,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수입허가(AP)가 있어야 하고, AP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 Standar Nasional Indonesia), 할랄 인증 3대 인증 제도는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주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6년 미국 NTB 보고서에도 3대 인증에 관한 내용이 비관세장벽으로 명기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할랄 인증을 제외한 나머지 인증을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바이어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득한 글로벌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기 인증이 해당되는 제품군은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한편 「정부령 2019년 제31호 (PP No. 31 Tahun 2019)」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비할랄(하람) 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나, 반드시 할랄 제품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할랄 인증 관리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이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 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품목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식품 및 음료는 2024년, 의약품 및 화장품은 2026년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되었다. 기타 제품의 경우는 2021년에 관련 제품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에 있다. 또한 동법에 따라 이전에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에서 관장했던 할랄 인증의 접수, 검사 및 발급이 할랄 인증청(BPJPH)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할랄 인증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할랄 검사기관(LPH)에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12월에 수입승인제도 법령(No.82/M-DAG/ PER/12/2016, 2017.3월 발효)을 발표하였다. 수입 승인 제도(Persetujuan Impor)는 내수 증진을 목표로 생겨났으며, 사전수입승인대상 품목군은 2019년 말

기준 총 75개가 지정되어 있다. 철강, 합금강 제품, 가정용 또는 사무실용 스탠 제품, 육가공품, 시멘트, 임산물, 쌀, 중고기계설비, 농기구, 재활용제품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동 수입승인면허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품목별로 상이하다. 해당 품목은 수입 전 PI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쿼터할당제가 존재하고, 수입실적에 대해서는 매월 15일 수입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수입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선적전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중고기계 수입 시는 실수요자(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전 검사(SGS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입허가 취득이 요망되고 있다. 섬유를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수입 시 선적전 검사가 요망되며, 세라믹 제품 수입시도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 시 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전화, 모뎀 등)하다.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Listed/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34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21년 11월 기준 248개 품목이 SNI 강제인증 적용대상 품목이며 자발적 인증 품목은 1만여 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에 포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한편 핸드폰, 핸드헬드/태블릿PC의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산업부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 등 총 97개 품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17일부터 재무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RI Nomor 34/PMK.04/2020)에 명시된 물품 수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 운영되던 재난방재청 긴급조달물품이 7월 12일 재무부령(Peraturan Menkeu RI Nomor 92/ PMK.04/2021)으로 개정됐다. 현지에서 긴급히 필요한 산소발생기, 산소실린더, 산소호흡기 부품 등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조금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포함된 물품이 수입 전 재무부 허가를 받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도 관세가 면제되고 소비세(PPn 21)와 부가세(PPn BM) 등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재난방재청 긴급수입승인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법에 명시된 인증 및 인허가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하다. 작년 7월부터 재난방재청 긴급수입승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라도 보건부 의료기기 등록(ALKES, Alat Kesehatan) 이후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지만, 현지 코로나19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면서 재난방재청 허가로도 통관이 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법령을 통해 기존 21개에서 26개로 물품 대상이 확대됐다. 주요 추가 물품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급격히 수요가 증가한 산소 관련 물품(실린더, 발생기, 운반탱크 등)과 의약품 등이다.

필리핀은 쌀, 옥수수,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중고자동차 부품, 군함, 중고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류 등은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 농수산물 품목은 국내 농업보호 차원에서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 고율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등은 「공공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

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축산물, 해산물, 과일,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물, 제약품, 통신장비 등 일부 품목은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싱가포르의 모든 상업적 식품 수입은 승인국가(approved country)의 승인된 기관(accredited food establishments)에서 생산된 제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싱가포르에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 시, 모든 해외식품기관은 싱가포르 식품청(SFA)[20]에 등록해야 하며, 이때 수입되는 육류 및 육류제품은 육류 성분을 제품의 최소 5%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쇠고기의 경우 모든 재료 및 관련제품은 제품 성분의 육류 포함 정도에 상관없이 싱가포르 식품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및 구제역 청정국가(또는 지역)로 지정된 곳에서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 청정국가가 아니어서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식품청에서 발표한 '싱가포르로 생육, 가공육 및 가공란 수출 가능 국가 리스트(List of countries approved to export raw and processed meat products, processed eggs to Singapore)'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 가능한 육류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	승인 현황
소고기	미승인
양고기	미승인
돼지고기	통조림 형태의 가공육에 한해 승인
가금류	통조림(canned) 형태 승인
계란	통조림(canned) 형태 승인
개구리 다리	미승인

자료: 싱가포르 식품청(2022년 10월 기준)

베트남은 보건부, 산업무역부, 건설부 등 각 관할 부처들이 관할 품목들에 대한 수입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

20)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은 국립공원청(NParks) 산하의 싱가포르식품청(SFA)와 동물 및 수의청(AVS)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모든 음식 관련 서비스는 싱가포르식품청에서 담당한다.

별로 관할 부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관련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관련 절차를 완료 후 수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비료, 철강제품, 날생선, 조제식료품, 도자제품, 일부 전기 전자 제품 등에 대해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서 정하는 수입자동허가(AIL) 제도가 있었으나, 27/2012/TT-BCT 및 07/2017/TT-BCT 등의 시행 규칙 시행으로 AIL 해당 품목은 상당 수 제외된 상황이다.

파키스탄의 수입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제한 품목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동식물에 대해서는 사전 검역 및 표본조사 등을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고기계류는 제한된 조건에서만 수입이 허가되었으나,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고기계류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일부 제품은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농림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제품(의약품, 화장품 등)은 캄보디아 보건부 등록 및 수입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하다.

미얀마 정부는 2013년 3월 1일부터 166개 수입품목, 152개 수출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 모든 수출입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미얀마는 모든 수출입 품목에 대해 건 별로 사전에 허가(License)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출입 통관기간 증가 및 수출입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미얀마 정부의 수출입허가제 폐지는 무역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과거 수입 기계에 대해 신제품 기계(Brand New)와 반품 기계(Reconditioned)에 대해서만 허가해 왔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한 해 동안 시범적으로 중고기계에 대해 수입을 허가했다. 이는 2011년 중고자동차 수입 이후로 두 번째로 중고제품 수입을 허락한 것이며, 향후에도 중고제품 수입을 허가하고 품목에 대한 제한을 줄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중고기계 수입허가에 대한 연장은 국회에서 아직까지 의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얀마에서 의약품을 생산, 수입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 COA (Certificate of Analysis for drugs)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얀마는 식품관리 부처와 의약품 관리 부처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식품과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FDA 허가(Recommendation)를 받아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브루나이는 동식물, 무기류, 폭발물, 출판물, 쌀, 설탕, 소금, 중고자동차(오토바이, 미니버스 등 포함), 라디오 무선전화기, 통화 및 통신장비, 고미술품,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출입 인가가 필요하다.

라오스는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석유, 사치품 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사업교통부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은 기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면세 허가는 관련 부처의 협조공문을 바탕으로 재무부에서 최종 승인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스리랑카의 수입허가(license)는 「수입수출통제법(Imports and Exports (Control) Act No. 1 of 1969)」에 의해 규제되며, 환경, 공공안전,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서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를 원칙으로 한다. 수입허가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되고, 일부 화학물질을 제외하고는 양적(quantitative) 혹은 가치(value-based) 기준에 따른 수입 제한은 없다. 수입허가는 선착순 원칙에 의거, 일주일 단위로 시행되며, 보통 수입하기 1개월 전에 부여된다. 의약품 등 1년 수입허가(block license)가 주어지는 경우 과거 수입실적을 요구하기도 하며, 재수출을 목적으로 현지 투자한 경우에는 재수출에 한하여 수입허가가 부여되기도 한다.

수입허가 대상품목

구 분	주요 대상품목
의약품	Western drugs, Veterinary drugs, Indigenous Medicine, Surgical Sutures
차 량	Special Purpose Vehicle, Hearses, Engines, Body Shells, Cabin, Motor Cycles, Aircraft Parts & Accessories 등
화학품	Petroleum Products & Lubricants, Insecticides & Pesticides Substances, Radio Active Materials, Alcohol & Spirits 등
통신 및 전자기기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 Cellular Phones, Computers, Washing Machines, Remote Controlled Toys, Balloons 등
기타	Tea, Explosives, Timber, Sports Goods, Used Furniture, Plastic Packaging Items, Animals & Animal Products, Sludge Oil 등

자료: Import & Export Control Department

멕시코는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 왔다. 1994년 1월에 발효된 NAFTA 협정 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 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체결국 생산 자동차에 20%라는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對멕시코 직수출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2016년 기아자동차공장이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공장을 가동하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바 있다. USMCA에는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연간 260만 대까지 관세를 면세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미·멕 국경지대 및 일부 州 등지 소재 중고차 거래상들은 동 지역 내 운행용으로 중고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을 수입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

하기로 하고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체결 5년 후인 1999년부터 미국-캐나다산 신차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15년 후인 2009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트럭 및 버스의 경우 계속하여 2년마다 8년, 6년으로 수입 차량 연수를 낮출 예정이며 2019년 3월부터 연수제한 없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 보다는 멕시코 내 자동차산업 보호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연방관보를 통해 일명 초콜릿 자동차라 불리는 미국, 캐나다산 중고자동차 수입이 허가되었다. 대상 지역은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치와와(Chihuahua), 코아우일라 데 사라고사(Coahuila de Zaragoza), 누에보 레온(Nuevo León), 소노라(Sonora). 타마울리파스 (Tamaulipas), 두랑고(Durango) 등 북부 지역이며, 약 2,500페소 납부 및 소정의 서류 제출 시 경제부의 사전 허가 없이도 중고차를 수입할 수 있다.

폴란드는 우유 및 유제품, 당류 및 당밀, 육류, 바나나, 포도주 및 포도주스 등의 농산물과 중국산 신발 등을 수입허가 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EU와 동일하게 철강제품 및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신발, 철강제품은 수입 감시(Import Monitoring) 대상 품목이다.

튀르키에의 경우 농산품(쌀, 콩, 해바라기씨, 밀, 호두 등), 에프터서비스가 필요한 공산품(복사기, 데이터처리장비, 디젤 발전기 등), 정보통신장비, 화학물, 의약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검사가 필요하다. 알코올제품, 담배, X-ray 필름, 보석류 등은 정부 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사위원회'가 수량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체코는 설탕, 석탄, 폭발물, 유류, 천연가스, 화염관련 제품, 스포츠용 총기류, 총탄류, 군장비 등의 품목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의 수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기타 수입 신용장 개설시 수입업체로 하여금 거래은행에

인보이스 금액의 11% 이상을 사전 예치토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 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안전·건강·경제·환경과 연관된 일부 민감한 품목(VGEM: Veiligheid, Gezondheid, Economie, Milieu)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등 제약이 따른다. 폐기물(Waste materials), 멸종위기 동식물, 문화적 물품(예술품, 골동품 등), 동물 사료, 의약품,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전략물자(군사물품 또는 민군 공용 물품), 마약류, 무기 및 탄약, 환경 유해 물질, 동물 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된 목제품 등의 제품들은 이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중고차량 수입을 위해서는 허가증이 요구되며, 외국인의 남아공으로 이민 시, 해외거주 자국민의 영구 귀국 시 중고차량 반입, 경주용 자동차, 수집용 빈티지 자동차 등 특정 용도의 중고자동차 등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된다.

UAE는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엄격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은 할랄 인증이다. 무슬림들이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것들, 즉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의 할랄(Halal)인증은 육류와 육가공품 수입에 필수적이다.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성분검사가 까다로우며,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표기된 성분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UAE로 육류, 가금류가 포함된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전 세계 공인기관이 발행한 할랄인증서를 취득, 통관 전 수입 승인 시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전에 UAE 보건예방부(MOH: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에 등록하고 수입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인허가의 신청과 취득 절차는 보건예방부가 부여한 의료기기나 의약품 취급허가를 가진 현지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진행

가능한바 현지 파트너사의 선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디스트리뷰터 선임 -〉제조업체 등록-〉제품인허가-〉유통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라크 정부는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저가 불량 수입상품 범람, 이라크 외 제3국에 사무실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라크 시장에서 수입 업무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통제 등을 위해 사전 등록된 기업만이 수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수입품목을 Group 1(수입허가 면제), Group 2,3(조건부 수입승인), Group 4(수입금지)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해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외 품목은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산광무역부를 통해 관계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허가 면제 품목은 산업기자재 등 필수품으로 제한한다. 조건부 승인 품목은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부 등 해당부처가 건별 심사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으로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일부 수입금지 품목 외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부서가 수입허가 결정시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여부와 생산량이 고려된다. 또한 이란과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하려면 이란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상업카드(commercial card)가 필요하다. 상업카드는 이란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부여되므로, 이란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란에 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이 카드를 취득하거나 이란 국적의 대리인(에이전트)을 선임하여야 한다. 물품 수입을 위해서는 이 카드와는 별개로 산업광물무역부 등으로부터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건부 승인 품목 중 약 80%는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차가 필요 없지만, 조건부 승인 품목중 나머지 약 20%는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 접수시 지정하는 관련부서에서 수입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산업광물무역부, 보건부 등 해당품목 관할 부서의 수입허가(실질적인 수입허가 여부 결정)는 해당부서에서 건별로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하며, 상업은행을 통해 L/C를 개설하는 경우, 수입자는 품목 및 수입자의 업체 규모, 신용도에 따라 수입 대금의 최고 60%까지 은행에 사전 예치하고 L/C를 개설한다.

이란 정부는 화장품, 시계, 보석, 의류, 전자제품 등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수입을 금지하거나 최고 55% 고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자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샴푸, 치약 등 소비재 생필품의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의 수입제한 또는 수입불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이란 정부는 자국 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들이 이란내 직접·공동 투자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면 해당제품 수입에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일정 수준의 완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2017년 7월 이란 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등 21개 기술제품의 수입제한 또는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과거 이란에서는 완성차 및 중고차의 수입금지로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으나, 2004년 이후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 1994년부터 금지되었던 완성차 수입을 2004년부터 허가한 바 있다. 완성차는 2018년 6월 22일부터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 8월부터 FOB 기준 2만 유로 이하 소형 승용차는 수입을 허용하였다. 최근 이란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외국회사들의 이란 내 직접/공동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 내 완성차 업체에게만 외국산 자동차 수입면허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 브랜드 완성차를 제조하는 업체만이 해당 브랜드 자동차를 CKD 및 SKD 방식에 한해 수입할 수 있다.

오만은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된 회사와 제품에 한해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사전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비록 샘플일지라도 통관이 불가능하며, 보건부에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스라엘은 자유수입명령(Free Import Order of 2008)의 특정 제품군인 동식용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의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많으며, 무역 상대국에 관한 제약이 있었다. 과거에는 약 30여개의 아랍 국가들과 외교관계가 없어 이스라엘 제품이 이들 국가로 수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9월 '아브라함 협정' 이후 이스라엘은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현재에도 다수 아랍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랍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 정부가 수입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국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는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국가
동티모르,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UAE, 인도네시아, 이란,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튀니지,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시리아, 오만,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차드, 카타르, 쿠바, 북한, 캄보디아, 예멘

출처: 이스라엘 경제부

이스라엘은 2017년 경제계획(Economic Plan Law)을 통해 보건부가 인정한 국가(Recognized Country)에서 유통되는 화장품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따라서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수입허가 신청 시 제품이 등록되어 유통되는 인정 국가의 보건관청에서 자유판매증명(Certificate of Free Sales : CFS)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용인하는 인정 국가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등 총 36개국이며 한국은 현재 인정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2021년 11월 새롭게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2023년부터는 북미,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 발급받은 FDA 또는 CE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수입허가 없이 이스라엘 내 수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잠정). 또한 이스라엘 약사규제(Pharmacist Regulations- Preparations-1986)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은 보건부 산하 기관인 제약관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약관리부는 의약품 수입인증을 위해 제한된 수입 인정국(Recognized Country)을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국가에서 생산, 등록, 판매되는 의약품에 한해서 수입을 승인한다. 인정 국가로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이스라엘이며 한국은 현재 제약관리부에서 인정하는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있다.

가나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량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금화, 비가공 다이아몬드, 통신장비, 영화 필름, 도박기계, 동식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허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가나 식약청(FDA: Food and Drugs Authority)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규제한다. 모든 관련제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FDA의 등록허가는 2012년 제정된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2012)따라 의무화되었다. 의약품 수입업자의 경우 FDA로부터 사업 허가를 승인받아야 하며,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한 수입의약품의 유통기한은 60%를 초과하여야 하고, 남은 유통기한이 80% 미만 또는 24개월 이하인 의약품은 수입이 불가하다. 아울러 가나에서는 정식 인가를 받은 기업만 상업적 목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으며, 가나 약국위원회(Ghana Pharmacy Council)에서 인가를 받은 제약회사는 소매업 판매만을 위해 한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고, 의료종사자는 업무중 사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카타르의 경우 식품 및 농산물 수입 시 상업송장, 물품 상세서, 적재 화물 운송장, 원산지로부터의 신선도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농약과 제초제 0% 증명서(향신료의 경우), 식물 위생 증명서(밀가루, 곡물, 씨앗의 경우), 수출국가가 발행하고 해당국의 인가된 이슬람 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증서(쇠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등이 필요하다. 라벨 또한 식품 수입 시 중요한데,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실, 손상·오기 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은 수입 거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 검역관들은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후 파기한다. 큰 규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식품이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는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하지만 식품이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입되는 경우 아랍어 라벨 표기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오리지널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는 허용된다. 다른 모든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 아랍어 표기를 요구한다.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살모넬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된다.

일반 식품의 경우 공공보건부 식품규제국(Food Control Department)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지 수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품목별 요구 서류를 업로드 해야 한다.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은 공공보건부 의약규제국(Pharmacy and Drug Control Department)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

카타르 내 수출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원산지표기와 카타르 대사관의 인증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세관은 유효한 수입면장을 발급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카타르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세관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2011년 5월 11일부터 카타르로 발송되는 모든 비서류 물품에는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 상에 주한 카타르대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을 경우, 수취인에게 상업송장 인증료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세관서류

서류	비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 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원산지증명서(CoO)	선적지 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품목별 HS코드 명시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한국 기업이 카타르에 수출할 경우 상업송장 금액별 주한 카타르 대사관의 영사인증(카타르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카타르 외교부의 인증은 원칙적으로 수출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수입자가 카타르 현지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며, 인증 수행 주체나 인증료 지불 등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인증료 금액이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 간 종종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바, 수출 직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출자-수입자 간 꼼꼼한 협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계약서나 L/C상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업 송장 수수료

송장 금액(USD)		인증료(KRW) C/I & C/O & C/S 〈Total〉
1	4,121	296,000
4,122	27,473	481,000
27,474	68,681	1,036,000
68,682	274,725	1,961,000
274,726	이상	영사과 문의

자료: 주한 카타르대사관 (2021.04월 기준)

DR콩고는 국경무역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입에 허가가 필요하다. 자동수입허가는 통계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수료는 필요 없으며, 물품 수입 또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에 관한 물량 한도가 없을 때에는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쿼터, 비자동적 허가 신청절차, 예외 및 면제 등에 관한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카메룬 정부는 1994년부터 수입면허 취득 절차를 단순화하였다. 수입업자는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하고 가액이 200만 CFA 이상의 모든 수입품을 수입검사기관(SGS)에 통보하면 된다.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특별 수입허가가 부여된다. 임시 수입허가는 카메룬 시장에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일부 대형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데, 최장 1년간 보관이 허용되며, 보증금이 요구된다. 보관료는 화물이 상륙한 날부터 산정되며, 수입업자는 전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보관물품이 나갈 때마다 관세를 지불한다. 정부는 임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창고를 제공하며, 일부 대형수입업자와 화물 운송회사도 임시수입을 위해 정부가 감독하는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카메룬에서의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상업견적서(commercial invoice)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제시해야 한다. 선박부호와 번호는 견적서와 물품에 표시된 것과 부합해야 하며, 육상운송을 위해서는 견적서 3부, 항공

운송은 견적서 4부가 필요하다. 카메룬의 수입검사기관(SGS)은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품질, 수량, 가격을 사전 검사한다. 일부 품목은 FOB 기준 200만 CFA 미만일 경우, 선적전 사전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입 승인액이 200만 CFA 이상이고, 이중 일부만 수입되어 200만 CFA 미만이 된 경우에는 사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액 200만 CFA 미만으로 SGS의 선적전 검사가 면제되는 품목은 귀금속, 예술품, 살아 있는 동물, 철 스크랩, 신문, 중고차를 포함 개인 생활용품, 6개월 이상 사용된 관광용 중고차, 상업용 샘플, 석유시추용 장비 및 물품, 외국기관 수입물품, 기부용품, 군에 의한 수입물품, 자유무역지대 수입물품 등이다.

요르단의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요르단 관할부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밀가루와 그 부산물, 흰 시멘트, 중고 오븐, 온수기, R12를 사용하는 냉장고용 압축기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동물의 냉동 정액, 올리브유, 냉동 동물, 살아있는 동물, 날고기, 냉동 고기, 방부 처리한 야생 동물, 수입 유가공품, 농업용 묘목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감자, 양파, 마늘, 과일, 채소 (농산물마케팅가공회사; Agricultural Marketing & Processing Co.), △질산암모늄, 병기 탄약, 폭발물, 잭나이프(스위치 블레이드), 연료로 작동하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콘으로 조정되는 장난감 비행기, 상업용 전자게임, 자기 방어 용품(내무부 공중안보부서; Public Security Directorate, Ministry of Interior), △방사성 물질, 우라늄 등 (에너지광물자원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무선수신기와 방송국, 무선 알람 장치, 원격 조정 장치(모터, 차고, 창문, 셔터 포함: TV, 비디오 장치 제외), 사이트 맵 장비, 휴대폰 장비, 무선마이크, 통신용 단말기, 원격조정 장남감, 이동 TV 장비 등 (통신 규제위원회;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디코더와 위성방송 수신기 (요르단 라디오·텔레비전 공사; Jordan Radio & Television Corporation), △군복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의약품 전체, 항생제, 운동선수용 식품 보조제, 브로민화 칼륨, 식용색소, 석면, 파이프와 패널, 유아식/유아용 우유, 산소, 산화질소, 레이지 팬 등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우편 분류기 등 (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아르투아식 우물 드릴 (수자원관개부; Ministry Of Water And Irrigation) 등은 요르단 관할부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품목은 요르단 식품의약처(Jordan Food & Drug Administration)에 수입 전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단기적 수입규제 조치, 에코 라벨링 제도, ISO 라벨링 금지 등의 조치가 발효 중이다.

요르단 코로나19, 인증, 수입검사, 라벨링 관련 규제

구분	주요 내용
코로나19 관련 수입규제	- 요르단 식약처(JFDA)는 2020년 3월부터 신속 진단 테스크 키트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2021년 1월부터 수입을 재개. 단, 이 경우 JFDA로부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음. * ① EUA 또는 FDA 인증 보유 ② CE 인증 보유 ③ 요르단에서 판매허가를 득한 에이전트를 통한 상품 판매 (민감성 97% 이상, 선별도 99% 이상, 검사시간 15분 이하)
에코 라벨링 제도	'14년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램프 등 가전기기에 대해 에너지 디자인·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
ISO 라벨링 금지	- '20년부터 요르단 표준계량원은 제품 및 포장재, 카탈로그 등에 ISO9001, ISO14001, ISO22000 등 모든 ISO 로고 표기를 금지 ISO 인증에는 품질인증이 아닌 기업 품질경영시스템 평가인증이 섞여 있어 해당 인증이 표기되면 소비자가 제품 품질이 좋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

알제리 정부는 2016년부터 수입허가제를 전격 도입(Executive Decree No. 15-306, 2015년 12월 6일)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까지 국제유가 하락 현상에 따른 수출액의 지속적인 감소 현상(2014년 600억 달러→ 2016년 291억 달러→2018년 411억 달러→2020년 219억 달러->2021년 357억 달러) 및 외환보유액 감소(2014년 1,774억 달러→ 2016년 1,129억 달러→2018년 802억 달러→2020년 489억 달러->2021년 433억 달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산업 다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자동차, 시멘트,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reinforcing bar) 등이며, 이 가운데 수입허가제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이다. 또한 환경에 유해한 품목(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 시에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에 더하여, 2019년 11월 완성차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2020년에는 알제리 국내 차량 조립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 및 중고차 수입이 중단되어, 알제리 차량 시장은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2021년에는 신차 수입을 일부 허가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실제로 알제리 정부는 신차 수입 허가권을 어떤 업체에게도 주지 않아, 사실상 수입 전면 금지 상태가 지속되었다. 자동차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지속되고,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자, 2022년 8월 알제리 정부는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직접 사용할 용도에 한하여 3년 이내의 중고차 수입을 2023년부터 허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2022년 9월, 알제리 정부는 국내 차량 조립생산을 위한 자동차 부품 수입 재개를 허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케냐는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내인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나 이를 5년으로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1] 중고 자동차 수입 시에는 선적지(주로 일본)에서 검증을 마쳐야 하며, 일본품질검사서비스(Quality Inspection Services Japan)로부터 취득한 인증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우측핸들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르완다의 수입규제 품목은 통관 시 특정기준(certain condition)을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수입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주요 품목으로는 산(acid) 처리된 뼈, 가공이 되지 않은 동물의 뼈, 뿔, 이빨, 상아, 발톱, 부리, 산호류, 해면, 암석류, 금속류, 토종이 아닌 어종 혹은 어종의 알, 핵 원료, 몬트리올 의정서 및 비엔나 협정에 의거한 오존 고갈 물질, 화학류, 군함, 군수품, 역사적인 유물, 유전자조작 물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1) Kenya Revenue Authority, Procedures for Motor Vehicle 참고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및 그 개정에 규제된 멸종위기종 등이 있다. 르완다는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약품 및 화학 물질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환경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가축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농업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레바논의 경우는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면허제도(Import License)를 채택하고 있다. 수입면허가 필요한 품목은 마약류, 생산된 지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 트럭이나 픽업, 밴, 버스 등 디젤엔진 차량의 경우 5년 이상된 차량, 공중보건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 등이다.

앙골라의 경우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Proforma Invoice를 받고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수입허가 번호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수출지에서 앙골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Angola National Shipper's Council)에서 발행하는 선적증명서인 CNCA(Conselho Nacional de Carregadores de Angola)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처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부는 의약품 원재료, 사카린 및 그 파생품을, 내부부는 총기와 화약 제품을, 농림부는 식물, 근채류, 과일, 씨앗, 미생물 제품을 사전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앙골라 경제기획부는 2019년 5월, 기본 생필품 54개(설탕, 쌀, 밀가루, 콩, 우유, 소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한 수입통관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상기 품목 수입기업은 sepe.gov.ao 사이트에서 온라인 수입통관 신청 절차를 통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앙골라 정부는 유전자변형 곡물 및 종자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처리된 곡물 및 종자는 반드시 제분 또는 단종 처리를 거쳐야 수입이 허가된다.

수입수량제한, 관세할당제

수입수량제한(Import Quota)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주로 단순노동

집약적인 소비재에 대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량제한을 두고 있다. 수량제한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일부 섬유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제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수입제한(Safeguard)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예였던 섬유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급증에 따라 2005년에 주요 품목에 대한 대중국 섬유류 특별세이프가드가 한시적으로 발효되기도 하였다. 이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 11월 미국과 중국 간의 섬유 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08년 동안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한 바 있다. 2018년 3월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안보수입제한조치(232조)를 발동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에 대해 2015~17년 평균수출물량의 70%(263만 1,012톤) 쿼터를 부과하여 직접적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되었다. 한편 2018년 2월에는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효되었는데, 동 조치는 일정 수입량(쿼터)을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캐나다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 간 섬유쿼터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 간 섬유쿼터를 운용하여 왔으나,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1995년 1월 제1단계 조치로 1990년 총 수입량 기준으로 16.4%를, 1998년 1월 제2단계 조치로 18.6%를 쿼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2년 1월에는 제3단계 조치로 18%를 추가 개방하고, 2005년 1월부터 쿼터제를 폐지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멕시코의 수입, 수출에 대한 쿼터는 「대외통상법」 23조 및 25조에 근거하여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가 발의한다. 수입수량할당(Cupo máximo) 제도는 특정기간 동안 일부품목에 관하여 수입 및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정해진다. 또한 관세할당(Arancel Cupo) 제도는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하는 경우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수입 129개, 수출 56개 총 185개의 쿼터조치가 발효되고 있다. 이 중에서 164개 쿼터는 경제부소속 대외 무역부가 직접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자동차산업에 대한 한시적인 할당관세제도 외에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산 수입 직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쿼터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중국산 섬유제품이 대량 수입되면서 브라질 정부가 쿼터 제도를 실시하자, 2006년 2월 중국 정부는 브라질에 수입되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60%에 해당하는 70여 가지 품목에 대해 향후 3년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브라질 정부와 합의한 사례도 있다.

코스타리카는 제조업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고 수입쿼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코스타리카산 생산품 보호를 위해 FTA를 체결한 일부 국가 제품들의 수입할당량을 지정하여, 초과분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22년 기준, 국가별 수입할당량 제한 품목은 △EU: 햄, 돼지고기, 분유, 치즈, △영국: 햄, 베이컨, 돼지고기, 분유, 치즈,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감자, 양파, 유제품, 쌀, 닭고기, △캐나다: 돼지고기, 분유, 설탕, △파나마: 돼지고기, 팜유, 토마토소스, △페루: 소고기, △콜롬비아: 물고기용 사료, △중국: 검은콩 등이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옥수수, 벼, 강낭콩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나 쿼터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고관세가 적용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2년 6월 11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를 통해 자동차,

휴대전화 수입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제도는 2015년 12월 29일에 결의안 49호를 통해 재연장하여 실행하다 2017년 1월부터 폐지되었다. 또한 자동차, 휴대전화기, 가전제품,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수입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목에 적용하며, 텔레비전, 카메라, 세탁기, 담배, 가방 등 100여 가지 이상의 수입상품 관세가 5~20% 정도 상향 조정됨을 포함하고 있다[22]. 해외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인상과 감축 책정된 수입품목의 쿼터제로 인해 시장에 공급 부족과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주류와 가전제품, 휴대전화기, 컴퓨터와 같은 첨단기술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엘살바도르는 일부 농산물(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량을 상회하는 경우는 고율관세(최대 40%)가 적용된다. 한-중미 FTA에서도 엘살바도르는 쌀, 돼지고기, 낙농품 등 122개(품목 수 비중 12.2%) 상품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공업무역부는 2008년 1월부터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산 차량에 대해 115,500대만 수입을 허가하는 한편, 3,000cc 이상 대형 고급차량 수입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종의 수입 쿼터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말 금융위기 여파로 유가하락이 심화되자, 국내 조립판매자동차 회사에 시행하던 완성차 수입쿼터를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파라과이는 수입금지 대상품목들을 제외한 일반 수입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 등의 수량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U는 EU회원국이 유지해오던 수량제한을 철폐 또는 공동체 차원의 쿼터로 전용하고, 동 공동체 차원의 규제도 WTO 협정(자동차, 섬유 등) 및 양자협상의 결과 대부분 폐지하였다. 섬유에 대한 수량제한과 관련하여, WTO의

22)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 조정(상품가격당 관세율): 카메라 0% → 25%. 텔레비전 5% → 5~20%, 주류 20% → 알코올 도수당 $0.25, 면류 20% → 30%, 세탁기 15% → 25%, 오디오 5% → 20%, 담배 15% → 20%, 가방 20% → 30%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기존 양자협정에 의해 유지되어 온 모든 수량규제를 철폐함으로써 2005년부터 섬유무역의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EU·중국 간 별도 협의를 통해 2006년과 2007년 10개 카테고리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이 중 7개 카테고리(T셔츠, 풀오버, 바지, 블라우스, 베드린넨, 드레스, 브래지어, 아마사(flax/ramie yarn))에 대해 수입감시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 수입감시제도는 2009년에 폐지되었다.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은 유럽공동농업제도(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EU역내 생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판매 보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생산량 제한을 두는 쿼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국산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이지만, 보호주의 논란 속에 개혁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위스는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종전의 쿼터제를 관세할당제(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방식은 국산품 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관세 할당량은 "e-quota"이라는 할당량 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으로 관리되며, 할당량이 소진된 범위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르비아는 특정물품 수입으로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하는 수량 제한 및 추가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튀르키예는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관세할당제가 시행된 사례로 2020년 6월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관련 규제[23]가 있다. 그러나 현재 튀르키예 무역부 관세할당 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규제는 종료되었다.

* https://uygulama.gtb.gov.tr/KotaSorgulama/

23) 50만개까지 무관세 수입, 할당량 초과시 기본관세 2.2% 부과

파나마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당시인 1997년 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세할당 허가위원회(농축산개발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일본은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IQ 설정 품목은 총 17개 품목으로 김(對한국 쿼터, 1개),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글로벌쿼터+對한국 쿼터, 9개),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글로벌쿼터, 7개) 등이다.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 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및 「수입무역관리령」 제3조 등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매년 2회 IQ 대상항목 등을 공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IQ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농업협정 제4.2조와 주석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는 일반관세로 전환해야 하며,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일본의 IQ제도는 동 조항들에 대한 예외 사유(농업협정 부속서 5, GATT 제11조2항, 제20조(g) 등)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김과 다시마의 경우 현행 IQ제도는 IQ 전체 품목의 쿼터를 ①수요자 할당, ②상사 할당, ③선착순 할당 등으로 세분하고 쿼터 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쿼터 미소진 분량이 발생하며,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IQ 할당량(2006.1월 한일 정부간 합의사항) 및 실제 수출량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IQ물량 (만속)	436	531	627	722	818	913	1,009	1,104	1,200	1,350
- 상사	175	213	251	(289)	(491)	(564)	(605)	(666)	(694)	(675)
- 수요자	261	318	376	(433)	(327)	(349)	(404)	(438)	(506)	(675)
수출량 (만속) 소진율(%)	217 (49.8)	239 (45.0)	349 (55.7)	471 (65.2)	692 (84.6)	796 (87.2)	883 (87.5)	897 (81.2)	728 (60.6)	972 (72.0)

2021년도 한국산 김 수입쿼터

구 분	수입할당방식	수입할당 한도수량(백만 매)
마른김	상사할당	420
	수요자할당	630
	계	1,050
무당조미김	상사할당	405
	수요자할당	160
	계	565
김 조제품	상사할당	225
	수요자할당	260
	계	485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200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기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으며, 이 중 일부 제품의 쿼터 및 허가증이 현재 폐지된 상태이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해 과거 쿼터 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소맥 등 10종 상품은 관세쿼터관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세율은 불변하였다. 이 중 요소비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3종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계속 1%의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쿼터외에 수입되는 일정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활준세를 적용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대폭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에 맞추어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貨物進出口管理條例)」,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 「수출허가증관리규정(出口許可證管理規定)」, 「기계·전자수입관리방법(機電産品進口管理辦法)」, 「화물수입지정경영관리방법(貨物進口指定經營管理辦法)」,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기계·전자상품 수입쿼터관리실시세칙(機電産品進口配額管理實施細則)」,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입쿼터와 허가증관리 제도를 수정한 바 있다.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차원에서 농산품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산품의 경우, 식용 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3종 품목(바나나, 녹용, 동양배)을 제외한 나머지 13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품목별 할당량(2021년)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652 15,000	20 20 20	3,000 4,13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바나나	13,338	20	-	비례할당(20%)
녹용	5,000kg	50kg	-	
동양배	9,800	20	-	
팥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250	비례할당(20%)	
땅콩(땅콩기름 포함)	5,235	14	1,047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144	3 3	28 28	
마른 팽이버섯	50 51	3 3	10 10	
코코넛	3,000 7,000	20 20	600 1,400	
빈랑(檳榔)	8,824	15	1,764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파인애플	11,870 12,000	15 15	2,374 2,400	
망고	7,000 5,755	11 11	1,400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대만의 9인승 이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수입량 제한 해제, △동일 세율(17.5%) 적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은 2022년에도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대만의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2022년)

(단위: 대, %)

구분/년도		2004	2006	2008	2010	2011-2022
할당량	미국	18,593	26,774	38,555	55,519	∞
	EU 국가	229,227	330,159	475,428	684,617	∞
	캐나다	229,227	330,159	475,428	684,617	∞
	우리나라 및 기타 WTO 회원국(국가당)	14,400	20,736	29,860	42,998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26.1	23.2	20.3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60	60	30	30	17.5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

베트남은 2003년부터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리대상 품목은 무역부(MOT), 기획투자부(MPI) 등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에 의해 결정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수입쿼터는 주로 무역부가 통제하면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2022년도 12월 31일까지의 수입쿼터 대상품목은 소금(HS 2501), 미제조 담배(HS 2401), 부화용 수정란 제외 가금류 알(HS 0407) 등이다.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육성의 목적으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등 22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다. 만약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36~226%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년 10월 31일)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	Raw Milk	20	41
	Flavored Milk	20	84
2	Milk Powder (Skim Milk)	5	216
3	Potatoes Seeds	Exempted	125
	Processed Potatoes	27	125
4	Onion	27	142
5	Onion seeds	Exempted	218
6	Galic	27	57
7	Coconuts and Coconut Flakes	20	54
8	Dried Longan	30	53
9	Coffee Beans	30	90
10	Coffee Products	40	49
11	Tea	30	90
12	Pepper	27	51
13	Maize (Corn)	20	73+additional 180Baht/ton
14	Rice	30	52
15	Soybean	Exempted	80
16	Copra	20	36
17	Soybean oil	20	146
18	Palm and Palm Kernel Oil	20	143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년 10월 31일)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9	Coconut Oil	20	52
20	Sugar	65	94
21*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extraction of Soybean oil	10	133
	For animal consumption	2	119
	For people consumption and other purpose	10	133
22	Raw Silk	20	226

자료: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주1: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해 수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 시에는 국가 쌀 지원 기관인 BERNAS가 관여하여 자국 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원예농산물의 수입통관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선 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 축소(종전 8개 항구 → 1개 공항, 3개 항구),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쿼터제는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쇠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쇠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등의 제품은 「공공법(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서,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과거 섬유 수입에 적용하던 수량제한은 2000년 11월 WTO와의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섬유제품은 현재 제한 품목이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TRQ를 유지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농산품은 고관세, 가격통제정책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쌀, 닭고기 등의 품목은 WTO 상의 수입쿼터로 보호받고 있고, 설탕 수입량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앙골라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폭락으로 인한 외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월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할당제 및 수입제한 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입할당 적용 품목은 국내생산량이 국내 소비 수준의 60%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으로 주로 식품 및 음료로 구성되어 있다(단, 상금, 수입할당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 또한 시멘트의 경우 2017년 4월 발표된 수입제한조치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 기관(Cement Sector Commission)의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수입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멘트 수요가 많은 3개주(Cabinda, Cunene, Cuando Cubango)에서는 시멘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동 3개주에 대한 종전 수입 허용량(15만 톤) 제한도 폐지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2016년 5월 자동차 수입쿼터제(총 83,000대, 금액 기준 10억 달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입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수입액(2014년 기준 42만대, 57억 달러 수입)을 현격하게 축소시킴으로써 무역수지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알제리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현지 생산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알제리 정부 방침에 따라 르노·벤츠(2014), 현대(2016), 폭스바겐(2017) 등 글로벌 메이커들은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반제품 수출 및 현지 조립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자동차 수입 쿼터제는 폐지(2018)하였다. 그러나 알제리 정부가 당초 의도한 현지 자동차 제조 기반 육성을 위한 부품 현지화율이 15% 목표 기대치에 미달하고, 조립생산 증가와 함께 부품 수입도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9년 알제리 정부는 동 조립 생산이 무역적자 심화와 외환보유고 감소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관련 규제를 대폭 상향하였다.

튀니지의 경우 주류, 자동차, 사치품과 같은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와 별도로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거나 높은 소비세(일반 품목은 200%, 사치 품목은 700%까지)가 부과되어 수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 튀니지는 수입쿼터를 통한 외국기업의 시장진입 규제가 있다. 일례로 자동차의 경우, 주재국 통상부는 공식 업체를 통한 수입쿼터를 약 60,000대 기준으로 전체 규모를 책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자동차 업체에 1년 단위로 할당하고 있는데, 쿼터할당 교섭은 자동차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식 업체를 통한 자동차 수입가격은 공식 업체의 세금부담 등으로 개별수입(주재국 재외국민에 의한)을 통한 판매가 보다 10~30% 정도 비싸다. 이는 주재국 자동차 시장의 당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높은 소비세와 2011년 혁명 이후 확대 추세를 보이는 개별수입 규모(2015년 기준, 약 8만대) 및 '개별수입에 대한 혜택 확대 조치' 등이 가중되어 튀니지 내 외국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시장개방, 쿼터제 폐지, 개별수입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공식수입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자동차의 최근 수입쿼터(2017년 9월 기준) 분포를 살펴보면, Volswagen 등 독일차(7,650대), Renault(6,450대), Peugeot(5,000대), Citroen(4,637대), 기아(4,100대), Fiat(3,600대), 현대(3,000대), Toyota (2,800대), Ford(2,060대), Mazda (1,700대) 등이며, 주재국 통상부는 신형 자동차에 한해 수입쿼터를 10% 감축 조치하였다.

기타 수입 규제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도 수입금지, 수입허가제나 수량제한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입 규제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을 수립하고 2007년 7월 18일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안전작업반(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을 구성하였다. 동 계획은 수입식품의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형태의 변화는 물론 인구학적

변화까지 반영한 것으로, 특히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리콜 문제 등 아시아지역의 식품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동 계획은 사전예방, 사후개입과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①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예방 ②위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③위해요인 또는 위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2007~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제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10년 12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1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해성 식품군(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관리권(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고위해성 제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를 2년마다 새로이 갱신, 현행 우수제조기준(cGMPs) 기준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검사 비용(new reinspection fee) 부과, 기업의 자발적 회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회수 실시권 부여 등이 있다. 동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의 식품시설 주기적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 조사를 강화하여, 대미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한다. 이외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FDA는 식품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상기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미국의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Prior Notice of imported food)는 미국 내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에 의해 제정(2002년 6월 12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개정(2013년 5월 30일)되었다. 수입식품 사전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면 FDA에 사전에 수입이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오염된 전례가 있다면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페루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견본(샘플)을 수입할 경우, 상품 또는 제조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비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1,000달러 이하의 선물과 2,000달러 이하의 비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FOB 가격으로 2,000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 단일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세입청(AFIP)은 송장조작을 통한 관세 등 세금포탈 행위 근절을 위해, 2009년 훈령(resolution 1970/2005 및 2730/2009)을 통해 최저 수입가격제도를 재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고된 수입가격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한 최저 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치에 따라 국가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저수입가격제도에 적용되는 한국산 제품은 성냥, 살균제, 테레프탈염산,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의 관·파이프, 타이어, 고무장갑, 가방(플라스틱, 가죽, 섬유), 섬유(원사, 원단, 의류), 신발, 주방·생활용품, 철강제품, 사출성형기, 밸브, 플라이휠, CD, 퓨즈, 전선, 자동차부품, 모터사이클, 자전거, 안경렌즈 등이다.

온두라스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는 자국민들의 건강보호(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 등), 안전관리(공산품의 표준관리), 사회안전(무기, 총기류), 자국 식량주권 보호(특정 식료품 또는 농산품) 등을 이유로 통관하기 전에 사전에

요건 확인기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확인기관으로는 온두라스 표준기구(Organismo Hondureno de Normalizacion: OHN),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 수의학연구원(Instituto Hondureno de Investigaciones Medico Veterinarias: IHIMV),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등이 있다. 특히 오존파괴물질(SAO, Sustancias Agotadoras de la Capa de Ozono)인 염화불화탄소(CFC, Clorofluorocarbonos)와 메틸브로마이드(Brumoro de Metilo)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산하 오존기술부(UTOH, 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 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상기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표' 참조).

베네수엘라의 경우 2006년 12월 상업부는 수입업자가 Cencoex에 외환 구입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제품 등 3,500여 개의 관세코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국내 미생산 확인서" 및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각각 1년 및 3개월에 불과하고, 수입을 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 발급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또 다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경공업부는 이전에는 국내 자동차 조립업체에 허용했던 완성차 수입제도를 2008년 말부터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위기, 외환부족 등으로 인해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지에서 조달되지 않는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도입하였다. 수입관세 면제, 국내 미생산 확인서 제출 면제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시작했다. 이는 베네수엘라에서 제조업을 육성해 해외 수출 장려를 통해 외화 획득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슬로바키아는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를 거쳐야 한다. 슬로바키아 세관당국은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품목인증서를 사전에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서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a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수단 정부는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 보건,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군에 대해서는 수입 판매전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바이어를 통해 NMPB(National Medicines & Poision Board, 우리의 식약청에 해당) 제조시설, 품목 등을 등록해야 하며, 농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은 우리의 표준청에 해당하는 SSMO(Sudan Standard & Metrology Organization)에, 그리고 동물용 사료, 의약품, 사료 첨가제 등은 동물자원부(Ministry of Animal Resources)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 등록시는 제조사, 판매사, 제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단 자체 인증제가 없는 만큼 미국, 일본, EU, 한국 등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USFDA, CE, ISO)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등록이 수월한 편이다.

DR콩고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도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라 5~40% 수준에 달한다. 수입품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달러)해야 하며, 물자의 항구 도착 시 △관세청(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의 1%), △수출입통제청(OCC)의 검사비용(CIF 2,500달러 초과 금액의 2%, 2,500달러 미만은 금액의 1%), 하역요금(1톤당 5달러), △산업증진청(FPI)의 산업증진세(CIF 금액의 2%), △상선운영국 (OGEFREM)의 커미션(CIF 금액의 0.595%) 및 수수료(0.59%), △국가항만국 (ONATRA)의 하역수수료(톤당 20달러) 및 항만사용료(톤당 32달러), 지방세(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 당 135달러) 등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DR콩고 정부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면세품목 수입자들은 통관 비용으로 최종가격의 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품,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2012년 1월부터 기존의 소비세(ICA)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 16%가 부과되고 있다.

이라크의 경우 수입품 선적전 품질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 5월 이라크 내각회의는 2004년 12월 1일 이라크 전쟁 이후 활동을 중지했던 '표준화 및 품질검사 중앙기관'의 기능을 부활시켜 상품 수입에 앞서 반드시 동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결정하였고, 동 기관에서 발행한 승인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이라크의 자체적인 수입품 사전 품질 검사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불량 제품의 수입이 확산되자 이라크 정부는 2011년 5월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전 검사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검사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수입품 통관 시 품질검사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동 기관은 국제공인 시험소인 Intertek, HQTS, Geo-Chem, Bureau Veritas 등 4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 4월 일부 의류 및 침구류, 전자제품 등 13개 수입완제품의 경우, 통관 후 주재국 내에서 12개월 이내에만 판매토록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밀수, 저가 상품의 유통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2개월 이내 판매되지 않을 시에는 수입상(바이어)들이 다시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통관을 하거나,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관계로 수입비용이 높아지게 되며, 수입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사치성이 있다고 간주되거나 불요·불급품이라고 간주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절실한 품목들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은 커피, 캐비아, 바다가재, 초콜릿·코코아 함유 식품, 맥주 및 각종 주류, 담배, 차량용 휘발유, 디젤유, 경유, 타이어, 혁제의류, 모피 의류, 보석류,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 CD, TV, VTR, 차량, 모터사이클 등이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1999년 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입신용장 개설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사전 예치하는 소위 L/C margi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00년 11월 14일자로 전면 폐지되었다가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부활하였다. 2008년 8월에 주요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L/C margin이 기존의 10~3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되었으나,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 2009년 7월부터 동 조치를 폐지하였다.

중국은 기타 다양한 수입규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외환관리,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관리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2,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분급(分級관리제도)'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품은 '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에 의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국영무역전업공사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품은 '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를 1997년 4월부터 새로이 제정하여 전시용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년 1월부터 중고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공사(機電産品進出口司)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사(機電産品管理司)를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은 대련신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深川皇崗)항, 신강 아라산구(阿拉山口)항 등 7개 지역 이외에 청도, 광주신항, 광주남항, 광주황포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 21개 입항지로 확대하였다. 자동차 부품은 상기 7개 지역 외에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1999년 1월부터 중국정부는 전자 환경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입최저가격제, 수입 시 일정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의무화하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기도 한다.

또한 China RoHS는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 RoHS의 특징은 유해물질이 기준값을 초과해도 관계없으나 관련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정보제품은 제품 포장에 6대 유해물질의 기준치 초과 여부에 따른 마킹을 해야 하며 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2016년 7월부터는 적용대상이 백색가전을 포함한 전체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부 품목은 중국 당국에서 마련하는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산업정보부가 공동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적합성평가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11월 1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텔레비전, 모니터, 마이크로컴퓨터(개인용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PDA), 이동통신장치, 전화 등 12개 품목의 제조 및 수입제품은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 RoHS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공업정보화부 합동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구축해 2019년 12월 정식으로 운영해 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 사용 제한 적합판정 정보, 적합판정 결과 공표, 적합판정 정보 송출, 공개조회, 통계분석, 정보발표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2021년 7월 말까지 1140개 기업이 합격 선정 정보 1만 2369건을 플랫폼에 올리고 있으며, 제품 1만 8420종에 이른다.

2019년 중국RoHS 2.0 법률규정 요약

항목	중국 RoSH 2
적용 범위	중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 혹은 수입된 전기 전자 제품 중국 RoHS 2.0은 1500볼트 DC 및 1000볼트 AC 미만의 전기 전자 제품을 포함(에어컨, 냉-- 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백색 가전 등 제품 범위 확대)
제한 물질	6대 유해 물질: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카드뮴 한도가 100ppm(1ppm=1×106)인 것을 제외하고 기타 유해 물질의 한도는 1000ppm
표기	중국 RoSH 상표 환경 보호 사용 기간9 표기 위험 물질 내용과 명칭을 제품 사용 설명서에 기재
적합성 평가	목록 내 기재된 제품에 적용 "전기 전자제품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관리 목록"은 전기 전자제품의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목록으로 전기 전자제품의 종류, 사용 제한 유해 물질의 종류 사용, 사용 제한 기간 포함 목록에 나열된 상품의 RoSH 준수는 중국 강제 인증 제도의 일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 실험실에서 강성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음

2020년 12월 14일과 2021년 10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화 관리 위원회)은 GB/T 39560 전자전기제품 중 일부 물질 측정 시리즈의 9개 표준을 발표하였다. 신규 발표된 9개 기준은 현행 중국 RoHS 부대검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GB/T 39560 시리즈 표준은 기존 표준 GB/T 26125-2011과 비교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새로운 표준이 동등하게 IEC 62321을 채용한 경우 GB/T 26125-2011과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중국 RoHS 신규 기준 GB/T 39560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시 후 현행 RoHS 패키지 검사 기준을 대체한다. 이번 변경에 의해, 중국 RoHS는 유럽연합(EU) 등 지역이나 국가의 관련 규제 요구와 검사 방법에서 어느 정도의 일치성이 이루어졌다.

표준번호	표준 명칭	GB/T 26152와의 차이	시행일
GB/T 39560.1-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1부: 소개 및 개요	기본적으로 변경 없음	2021-07-01

표준번호	표준 명칭	GB/T 26152와의 차이	시행일
GB/T 39560.2-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2: 분해, 해체 및 기계 제작	기본적으로 변경 없음	2021-07-01
GB/T 39560.301-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3-1: X선 형광 분광 법에 의한 납, 수은, 카드뮴, 총 크롬 및 브롬	주요 차이는 샘플에 대한 무손실 시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샘플 모양의 규칙 여부, 전체 영역의 평탄도, 표면의 거친 정도를 고려	2021-07-01
GB/T 39560.6-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6: GC-MS에 의한 폴리머의 폴리브롬화 다브롬바이페닐류 및 PBDE 측정	IAMS 검측 방법 추가	2021-07-01
GB/T 39560.701-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7-1: 비색법으로 금속의 무색 및 유색 부식 방지 니켈 층에서 6가 크롬 측정 [cr(vl)]	결과에 대한 음양성 판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함	2021-07-01
GB/T 39560.4-2021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4: CV-AAS, CV-AFS, ICP-OES 및 ICP-MS를 통해 폴리머, 금속 및 전자 제품의 수은 측정	열분해 아말감법의 시스템적 방법 신규 추가	2022-05-01
GB/T 39560.5-2021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5: AAS, AFS, ICP-OES 및 ICP-MS를 통해 폴리머 및 전자 부품 중 카드뮴, 납, 크롬과 금속 중 카드뮴 및 납 측정	총 크롬 검측 요구 사항 및 새로운 검측 방법(AFS) 추가	2022-05-01
GB/T39560.702-2021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7-2: 폴리머 및 전자 부품의 6가 크롬 비색 측정 [cr(v1)]	샘플 분류 추가, 이전 처리 방법 개선	2022-05-01
GB/T 39560.8-2021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8:GC-MS 및 Py/TD-GC-MS에 의한 고분자 중 프탈레이트 측정	7개 항의 프탈레이트 측정 방법 규절 추가	2022-05-01

필리핀은 2020년 10월 농업부(DA)가 쌀 수입허가서 발급을 필리핀 쌀 농가들의 수확기를 피해 1월, 5월, 6월, 11월, 및 12월로 제한할 계획임을 발표하여 일각에서 이는 WTO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필리핀 상원 경제사위원회의 Imee Marcos 의원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필리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3가지로, 필리핀

쌀 수확기 90일 이전 수입제한(specific seasonal ban), 쌀 수입에 필요한 위생·식물위생 수입허가서(SPSIC) 발급 규제, 수출품목에 대한 테스팅 및 인증/요구절차 등과 관련한 TBT(무역상 기술장벽협정) 활용 방안 등을 제언한바 있다. 향후 필리핀의 쌀 수입이 수확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필리핀이 소비/수입하는 쌀 품종이 장립종(long grains)이며, 대부분 태국 및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하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의 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2019년 1월 갱신)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신청하여 분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을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본부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근교 딴중 프리옥항을 통한 신선 과일 수입을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산 배로 한정하고 있어, 기타 농산물에 대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19년 10월17일부터 「할랄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시행중에 있다. 동 법 시행에 따라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 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 공학 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에 할랄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품목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식음료의 경우 2024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제품의 경우는 2021년에 관련 제품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무 품목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코로나19로 SNI 인증 실사가 어려워지며 신규 인증과 기존 인증 연장 모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24] 또한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수입품목을 산업부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지정한 항구[25]와 공항[26]에서만 가능하다.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27]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미얀마의 수입절차는 수입자가 외환계좌에 수입대금 100%를 선 예치시킨 상태에서, 외환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수입허가(import license, I/L)를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건별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되어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수입신청에서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자금이 은행에 한동안 예치되어야 하므로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얀마의 독특한 수입규제인 Export Earning은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보유한 업체만이 동 수출실적의 범위 내에서 수입이 가능한 제도로,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 수입상의 경우, 자체 수출실적이 없으므로 수출상으로부터 Export Earning을 구입해서 수입활동을 하게 되는데, 통상 15%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Export Earning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가 동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외환보유액(2009년 말 36억 달러)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24) 시험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되며,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로 인력 실사가 어려워지며 인증 연장 및 신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미화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기업은 실사 비용을 포함해 약 1만~2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25)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26)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Surabaya), Hasanuddin(Makassar)

27) 8개 항구 지정: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 (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 (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 (Tarakan).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

파푸아뉴기니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는 없다.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며, 수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충족시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검역·보건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가 있다.



통관절차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통관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절차 전부를 포함하는 수입통관절차와 세관절차만을 의미하는 세관통관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통관절차는 선박의 입항에서부터 부두배정, 하역, 보세운송 및 입고, 각종 수입 허가·추천서 구비, 세관 수입신고,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 세금납부 및 신고수리물품 반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수입통관절차에는 수입과 관련한 모든 물류관련 민간업체와 수입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각종 협회와 단체, 세관 등이 전부 관련되어 있다. 반면 세관통관절차는 세관에 수입신고 후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와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의 통제를 벗어날 때까지의 과정으로 오로지 세관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통관절차라고 하면 협의의 세관통관절차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나 통관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는 주로 넓은 의미의 수입통관절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관절차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류 임의 변경,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FTA의 확산으로 인한 원산지 규정 적용의 문제, 교역화물의 안전성과 물류 원활화의 조화, 개도국의 경우 통관 관련 역량 부족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역업자에게 상당한 시간·금전적 교역비용으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통한 무역장벽 완화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 선진화는 세계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WCO, WTO, OECD, World Bank, APEC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통관절차 관련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는 WCO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토협약이 있다. 교토협약은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세관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에 채택되어 1974년에 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일명 「국제관세법」이라고 불린다. 이후 21세기에 맞는 현대화되고 효율적인 통관 절차를 위해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 개정 교토협약이 발효되었다. 개정 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통관 및 증빙 서류의 표준화 및 간소화, 인가된 영업자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 IT의 사용 극대화, 위험관리의 사용, 기타 국경 관련 기관 간의 조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28] 2022년 6월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33개국이 개정 교토협약에 가입 중이다.[29]

WTO 차원에서 통관절차와 관련된 논의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가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함께 싱가포르 이슈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싱가포르 이슈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한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July Package)이 합의되면서 무역원활화만이 뒤늦게 DDA 협상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다. DDA협상 중단에 의해 무역원활화 협상 역시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여타 DDA 이슈들에 비해 논의 진전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2013년 제9차

28) WCO.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aspx (검색일: 2018. 12. 17)

29) WCO. List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https://www.wcoomd.org/Topics/Facilitation/Instrument%20and%20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Instruments(검색일: 2022. 12. 30)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11월에는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하였다. 이후 2017년 2월 22일 르완다, 오만, 차드, 요르단이 추가적으로 의정서를 기탁하면서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었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크게 3개의 절로 구성되는데, 제1절은 신속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위한 조치, 제2절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우대, 제3절은 기관협정 및 최종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무역원활화협정의 발효로 인해 무역비용감소, 수출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OECD(2014)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으로 인해 10.4~ 17.4%의 교역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30] WTO(2015)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으로 인해 7,500억~1조 달러의 수출 증가와 0.34~0.54%의 연평균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1] 한편,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현재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 중 A의무는 121개국, B의무는 105개국, C의무는 95개국이 의무 분류 및 이행일에 대한 통보문을 WTO에 제출하였다.[32] 이 중 A의무 비중은 50.8%, B의무와 C의무는 각각 18.4%, 27.2%이며 미통보는 3.6%이다.[33] 회원국들이 제출한 통보문을 분석해 보면 WTO 전체 회원국의 무역월화화 협정의 이행률은 76.2%이며,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으로만 국한하면 협정 이행률은 68.9%이다. [34]

30) OECD. 2015. Implementation of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he Potential Impact on Trade Costs

31) WTO. 2015. World Trade Report 2015

32)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제2절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은 제1절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자국의 상황에 따라 A, B, C 의무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이행일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의무는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이행을 위해 과도 기간이 필요한 의무, C의무는 이행을 위해 지원 및 과도기간이 필요한 의무를 말한다.

33)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 Notification https://tfadatabase.org/en/notifications/global-analysis(검색일" 2022.12.30.)

34)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 Implementation https://tfadatabase.org/en/implementation (검색일: 2022.12.30.)

OECD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바탕으로 160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무역원활화 지수(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수를 활용하여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선순위 분야 선정, 효율적인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OECD 무역원활화 지수는 11개의 지수로 구성되고 지수값의 범위는 0~2이며, 2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며, 2022년 기준 OECD 평균과 비교 시 불복절차, 절차의 간소화를 제외한 분야에서 OECD 평균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및 한국의 OECD 무역원활화 지수(2022년 기준)



자료: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https://www.oecd.org/regreform/facilitation/indicators.htm (검색일: 2022. 12. 30)

World Bank 역시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통관절차와 관련이 있는 물류성과지수(Logistic Performance Index)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다.

APEC 국가들의 경우 Shanghai Accord 채택 이후 역내 무역비용 감축을 위해 통관절차를 비롯하여 표준 및 적합성, 기업인 이동, 원산지 규정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간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통관

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자동화시스템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통관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35]

통관절차는 관세와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번한 분야로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와 더불어 기술의 발달로 전반적으로 통관 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통관절차는 가시적인 무역장벽이나 무역제한조치와는 별개로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황 분석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의 선진국 및 일부 중진국의 경우 통관 절차의 간소화, 효율화, 자동화 및 투명성 강화로 인해 통관 환경은 우수하나, 농축산물 등 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검역, 원산지 확인, 위조 상품 확인, 국경 안보 등을 이유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고,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한다. 그리고 2006년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미국은 수입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이다. 수입제품의 반출이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과 관련된 형식적인 절차의 완료 여부에

35) 김상겸·박인원·박순찬·임경수. 2010. 『보고르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7501)을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는 담보를 제출하면 전산 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내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 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그리고 견본(sample)과 관련해서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 통관 시 천공, 견본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안보통관절차(SFI, CSI, C-TPAT, Fast, CEAR 등)를 강화하여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수입자에 대해 제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종, 선사에 대해서는 화물탑재계획 등 2종의 정보를 선적 및 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신고제도(Security Filing)'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는 검사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이 제도의 이행으로 약 9억 달러에서 7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외국항구에서의 100% 검사조치(CSI 프로그램의 일환)를 실효성 부족과 물류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6년 6월 말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였다.

한편, 한·미 FTA에서는 양국 간 교역원활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물품 반출에 관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도착 후 최고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출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물 반출 절차 도입,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개선하였다.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다만 EU의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제정하는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사무의 처리는 각 회원국의 통관당국이 맡고 있어 원산지, 관세분류 등의 판단이나 업무처리 능력, 신속도, 고객봉사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2004년 5월 신규로 EU에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과 2007년 1월과 2013년 7월에 각각 신규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경우 세관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업무의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EU는 1968년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는 따로 창설하지 않음에 따라 세관 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이하여,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EU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체관세규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년에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기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8년에 개정(「Regulation (EC) No 450/2008」)되어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산시스템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EU 집행위에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 상의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년 2월 새롭게 UCC(Union Customs Code)를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송부하고 관련기관 및 경제 운영인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UCC는 EU 집행위에 세관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행규정의 제정을 위임하고, 수출입 물품의 물류 흐름에 부합하도록 세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세관 절차 간소화 등 경제운영인의 권리 확대와 세관업무의 전면적인 전산화 및 회원국 세관 당국의 감시 강화 등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유럽 의회는 2013년 9월 11일 동 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EU 이사회에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년 11월 1일에 UCC가 발효되었다. 단, UCC 대부분의 조항은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EU는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우대 조치 부여, 자료 제출 축소 등을 보장하는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에까지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U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1988년 통관서류 양식을 통일하고, 2003년 전산처리시스템 도입(NTSC: New Computerized Transit System)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판정(원산지, 품목분류 등)이 여타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의 세관당국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관 당국 간 의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해 집행위 내에 통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U 회원국별 세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나 제소는 1차적으로 해당 회원국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사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U는 관세행정의 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테러 및 조직범죄 대처 등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조치(COM(2003) 452)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공동체 안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출입화물 사전신고, 위험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03~07년까지 역내 회원국 세관당국 간 전산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인력 교류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통관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Customs 2007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2008년 1월부터는 2013년 완결을 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트를 추진한바 있다. 이는 회원국 세관당국 간 일체성 제고, 역내외 통관안전(security and safety) 강화, 통관사기 방지, 통관절차의 신속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2008년 1월에는 '전자통관결정(Electronics Customs Decision)'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통관에 대한 결정(70/2008/EC)」이 채택되었으며, 2008년 4월에는 「신통관규정(Modernized Customs Code: Regulation(EC) N 450/2008)」과 심화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조치(COM(2008)169)가 채택된 바 있다. 이 결과 향후 EU 회원

국의 세관당국 간 전자통관이 더욱 효율화되어 위조상품 적발, 환경보호, 보건 등 통관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범EU 차원의 대처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아울러, 역내 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Customs 2020 프로그램, 위험관리 향상 액션 플랜, 세관정보포털(ECIP) 등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Customs Union Action Plan (2021-24)을 발표하고 회원국 간 단일화되고 통일된 관세절차 추진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EU 세관에서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품목분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최초 제품 수출시 품목분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0.5월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EU 품목분류정보시스템(CLASS)이 신규 구축된바 수출업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영국의 수입절차를 따른 EU 역외국 제품은 영국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타 EU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나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통관과정이 추가되게 되었다.

노르웨이의 통관절차는 대부분 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간단하고 편리한 편이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일본은 우리나라 특수차량의 일본 내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어 같은 제품의 경우 일본 항만 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량에 적재 후 통관하고 있어 신선도 저하와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활어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일본 내 등록절차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나라의 차량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협의는 안건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1~71일 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사가 경쟁력 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으며, 사전협의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후생성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뿐 아니라 화장품 수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판매목적이 아닌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사용되는 소량의 화장품 수입시에도 원칙적으로 각 지역 후생국에서 수입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수입확인신청서, 상품설명서, 송장, 선하증권, 전시회 참석 요청서 등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후생성의 수입확인을 받아야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36]

호주와 뉴질랜드는 식품에 대한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므로 일부 농축수산물의 수입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바 사실상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호주는 1999년 6월부터 수입농축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ed Risk Analysis)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분석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분석에 1~2년의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뉴질랜드는 특히 새로운 품종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행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한국산 과일 중에는 배와 포도는 뉴질랜드 검역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되어 있으며, 채소 및 과실 수입업자는 뉴질랜드 수입업자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입업자를 통해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중계무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할 만한 통관장벽은 없다. 2018년부터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네트워크 무역 플랫폼(Networked Trade Platform)을 통해 서류 없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된다.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으나 일부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s)에

36) https://kouseikyoku.mhlw.go.jp/kinki/iji/tenji.html

전자 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수수료는 SP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에 명시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거나 홍콩에서 출발하기 이전에 운송인이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전에 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그 외의 화물은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도로화물시스템(ROCARS)을 201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12년 4월에 개시된 AEO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홍콩 내 기업들은 AEO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관세행정기관과의 상호승인을 통해 이러한 AEO들이 해외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만의 통관제도에는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관할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자외선차단(UV) 기능이 있는 화장품 통관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품목별 현지기관의 검사필요여부는 수출입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은 통관 관련 법·규제를 정비하고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통관관련 무역 장벽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통관 관련 제도 및 규정의 복잡·불합리성, 구비해야 할 서류 과다, 일선세관의 임의적인 규정 해석·처리, 예고 없는 규정 변경과 같은 투명성의 결여, 세관직원의 부정부패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한 수입통관지를 지정하고 있다. 자동차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항, 신강 아라산구항, 청도, 광주신항, 광주남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 13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 부품은 상기 13개 항 이외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수입약품에 대해서 반드시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NMP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추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중국으로 화장품이 최초 수입되는 경우 NMPA가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NMPA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위생안전성검사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수출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 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점검사항목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기업의 연구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2017년 5월부터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NMPA의 위생허가가 요구되어 통관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단 소품목마다 개별적으로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다.

몽골로 수입되는 상품은 허가가 필요한 소수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입 제한이 없다. 조세당국에 등록된 수입자가 세관신고서(CDF: Custom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정된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을 직접 확인 후 인계해 준다. 세관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인보이스 상의 물품원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요율표가 있어 동 물품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태국은 2000년부터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WTO/GATT의 평가기준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 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수수료 등 수출입 관련 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

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AEO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22년 11월 확인 기준 태국에는 총 332명의 AEO(수출입업체 166명, 세관브로커 166명)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통관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직원별로 상이한 해석 및 판단 등으로 인해 통관에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한편, 현재 관세환급처리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환급신청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급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태국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 민원해소 방안으로 환급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과거 통관시검사(clearance-based controls) 방식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종이 없는(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 선적물품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심사부서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하게 된다.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은 관세(BM), 부가가치세(PPN), 사치세(PPnBM), 소비세(Cukai)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소득세(PPh)가 있다. 한·아세안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전자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인정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입물품이 반출되는 과정은 수입신고서(PIB)를 전산으로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통관채널 결정서가 수입자에게 통보되고 동 채널에 따라 세관 심사없이 반출이 허용되거나 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 등의 절차를 걸쳐 물품 반출이 허용된다. 통관 채널은 수입자, 수입물품 등의 위험도에 따라 우대(Priority), 저위험(Green), 고위험(Red)의 3개 채널로 분류되며 우대채널과 저위험 채널의 경우에는 세관 심사없이 채널 결정과 동시에 화물반출이 허용되지만 중위험 채널은 세관의 서류심사, 고위험 채널은 물품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반출이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통관 이후 2년 이내에 세액 등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사후심사를 통하여 부족세액이 확인될 경우 부족세액의 100% 내지 1000%의 높은 행정 벌금(단순 품목분류 오류의 경우 행정 벌금 면제)이 부과된다. 한편, 세관의 처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보세지역(KB; 보세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세지역의 경우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에서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고 대부분의 수입제한에 대한 인허가도 적용받지 않으므로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은 보세지역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63개의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5개 시·성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되며,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193개의 관세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 관세청의 명칭은 '관세총국'이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관세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중앙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베트남에는 63개의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5개 시·성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되며,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193개의 관세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 관세청의 명칭은

'관세총국'이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관세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중앙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베트남은 2013년 2월 전자통관시스템(VNACS)을 도입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 모든 신고는 VNAC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통관신고는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통관신고 시 세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 이외 세관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하는 등 범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등록되어 매 수입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왔다. SGL은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GL은 실물 및 서류 검사 없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된다.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다. RL은 불량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GL의 경우 2017년 8월 필리핀 세관당국에 의해 운영이 잠시 중지되었으나, 2018년 12월에 재도입되었다. 2020년 9월 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YL과 RL 사이에 OL(Orange Lane)을 추가하였으며 엑스레이 검사와 랜덤하게 검사의 대상이 된다. 최근 통관과정에서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남아와 같은 신흥개도국일수록 통관애로 사항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사소한 오류(대소문자 기입 오류, 스펠링 오류, 숫자 사이 쉼표 누락 등)를 지적하며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에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다.

캄보디아는 통관과 관련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가 2019년 2월 공식적으로 폐쇄되어 기업의 통관부담이 크게 줄었다. 현재 통관화물에 대한 검사는 캄보디아 관세청에서 일괄하며 이로 인해 통관 비용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캄보디아의 다양한 기관들이 수입품목에 따른 인허가 등의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이 강한편이다. 최근에는 보건부, 농림임업수산부 등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미얀마 관세청은 통관서류를 제출받아 정확성을 검토하고 수입 규정 위반 여부,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재화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관세 및 상업세를 부과하여 통관 처리를 완료한다. 관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종 품목의 과거 수입 가격, 카탈로그 정보,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하여 상품 가치를 산정하며, 과거 수입기록이 없는 신규 수입품의 경우 특별한 기준 없이 세관에서 임의로 수입 추정가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때 특정 상품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관세가 과다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라오스의 통관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복잡한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한 통관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검사에 통상 6일이 소요된다.

인도에서의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의 문제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3~4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2~3일이

소요된다. 또한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한편, 인도정부는 최근 'EASY DOING BUSINESS' 및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에 충실한 이행 및 기업하기 좋은 통관 환경 구축을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의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수출입 우수인증업체(AEO)제도 도입, 2017년 DPD(Direct Port Delivery System)시스템 도입, SWIFT(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 도입, E-Sanchit 도입, 2018년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이 그 예이다. DPD 시스템은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통관 시간을 단축 시켜주며, SWIFT는 통관에 필요한 규제기관의 서류 및 인증서를 세관 단일 창구로 온라인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6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E-Sanchit은 Paperless 통관을 위해 통관 관련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2020년 4월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플랫폼 구축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를 계기로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였으며, 익명(Faceless), 비대면(Contactless), 전자서류(Paperless) 제출을 특징으로 하는 '수입화물 비대면 통관 시스템(Turant Customs Faceless Assessment)'를 2020년 10월 31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는 신속한 통관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의 입항 전 수입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상 및 내륙을 통한 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까지, 항공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는 당일까지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과 AEO에 대한 MRA를 체결하고 있어 인도 수입검사 비율이 이전 40%에서 5%까지 낮춰져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기존에는 자격요건이 가장 간소화 되어있는 AEO T1 등급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였는데 2021년 7월 7일부터 T2 및 T3 등급까지 확대되어 이전에 비해 절차적으로 편의성을 갖추었다.

파키스탄에서는 수입업자가 세관신고 시 인보이스 저가신고(under value) 관행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어, 세관 내부적으로 가지는 취약품목에 대한 품목별·국가별 표준 수입가격 리스트를 이용하여 세관이 수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업자와 세관 간 가격을 둘러싼 마찰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을 이용한 세관 처리 절차의 개발, 위험관리 모델의 적용, 자동차와 컨테이너의 이동경로 추적 시스템의 사용, 위험기준 통관 수속 시스템의 사용 등 관세 현대화를 위한 개편이 단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수출입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인 Pakistan Single Window(psw.gov.pk)를 구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스리랑카는 2016년 1월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을 시행함에 따라 모든 서류가 구비된 경우 화물통관은 평균 4시간 내로 가능하며, 약 80% 화물의 통관절차가 당일 내로 완료될 수 있게 되었다. 현지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관리 기업들 중 투자청이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컨테이너가 산업단지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입회 하에 통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보다 검사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아울러 스리랑카 내 만연한 비효율적 행정관행으로 인해 통관절차가 전자화 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카자흐스탄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이다. 세관 신고서는 카자흐스탄에 상품이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 간이 통관신고는 상품이 국경을 넘어 임시 저장 창고에 배치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상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신고(preliminary declaration)를 할 수 있다. 통관업무는 해외 기업의 경우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중개사에게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통관시스템이 전자통관신고로 바뀌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관중개인을 거쳐야한다. 이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관세법」에 의거해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된 EAEU 신관세법 제정에 따라 AEO에 관한 별도의 법령 조항이 신설되었다. AEO 공인기업의 경우 업체별로 구분하여 그 조건을 준수할 경우 AEO 수준별로 차등화가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카자흐스탄 국경에서 화물의 검역상태를 이유로 화물이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 통관은 모든 필요서류 및 관련정보가 제출되고 관세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의 근무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2015년 외국 사업체라도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사전에 수입품과 교통수단에 대해 전자문서 통보를 할 경우 통관점수가 1일 안에 마감되는 등 수출입절차가 다소 간편화 되었다. 2018년에는 OECD 국가에서 발급한 적합 판정 증명서(conformity certification) 서류를 인정하고 국경세관에서 통관검사와 동시에 동식물 위생 역학 검사 시행 등 통관 시스템 및 제출 서류를 변경, 개선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불법 수입 및 생산 · 판매, 합법적 유통 보장 등을 위해 2020년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의무 디지털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하였다. 2022년 기준 5개(담배, 술, 의약품, 맥주, 가전제품)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품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절차 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행업체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중남미 국가들은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통관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관절차가 복잡하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 관련 제도 역시 불투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통관 애로 사항으로 저가 신고 관행 단속을 위한 자의적인 규제 운영, 통관사의 의무적인 고용, 까다로운 검사, 부정부패 등이 있다.

멕시코는 1993년 8월 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이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인해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제품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당국이 현실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최저수입가격만을 고집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5월 멕시코 경제부는 기존 품목을 1,142개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2020년 3월 3일 연방관보를 통해 최저수입가격 고시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였다.

과테말라 통관의 서류검사는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 청색신호인 경우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된다. 그러나 적색채널로 판정되는 경우 화물을 열어 전량 검사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 때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이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세관직원들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컨테이너 헤드 부족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범죄조직과 통관사 혹은 회사내 무역업무 담당자 간의 결탁으로 밀수가 이루어지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2015년 세관부정사건 적발이후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금액도 다시 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외 최근에도 현지 진출 또는 교포 한국기업들로부터 세관직원들의 자의적인 물품가격 산정에 따른 높은 세금 부과, 기계류에 대한 설계도와 용도 설명서 요구, 불합리한 통관지연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 등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8년 6월부터 주요 항만 및 국경 세관 등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이 종전 5%에서 15 ~ 20%로 늘면서 수입업체들의 통관 애로가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는 세관 검사에 면제된 화물에 대해서도 검찰 소속 마약단속국이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엘살바도르는 2014년 1월 6일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물품 및 통과

물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X-ray 검사 수수료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한·중미 FTA 발효와 함께 화물 도착 전 통관 수속을 위해 관련 정보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토록 하며, 가능한 한 상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의 통관을 허용토록 하는 한편, 특송화물은 일반적인 경우, 상품도착 및 필요서류 제출 후 6시간 이내 통관을 허용하고 150불 이하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다.

2020년 한·중미 FTA 발효와 함께 화물 도착 전 통관 수속을 위해 관련 정보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토록 하며, 가능한 한 상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의 통관을 허용토록 하는 한편, 특송화물은 일반적인 경우, 상품도착 및 필요서류 제출 후 6시간 이내 통관을 허용하고 150불 이하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다.

온두라스는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물류 처리기간 단축 및 관세 징수 확대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OEA: Operador Economico Autorizado)' 제도를 시행 중이다. 수입품 반입 20일 이후부터 창고료가 부과되며, 반입된 수입품은 1년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

니카라과는 관세행정 및 무역촉진 조항(CAFTA-DR)과 중미통합 관세규약 등의 협정에 따라 통관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세청의 통관행정 지연, 자의적인 관세평가, 부패, 기술적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니카라과 전국경제인연합회(COSEP) 회장도 니카라과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 압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통관절차는「중미관세코드(CAUCA IV)」와 「일반통관법」에 따라 시행된다. 중미통합시장 회원국들은 2008년 4월에 중미관세코드를 CAUCA III에서 CAUCA IV로 개정하였으나, 코스타리카는 2021년 5월부터 CAUCA IV를 적용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수출업자를 위한 온라인 통관시스템인 VUCE와 수입업자를 위한 통관시스템인 TICA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통관 절차는 ①수입업자 사전등록(일부 수입품은 관련부처 사전 등록 필요), ②통관대행자 고용, ③통관대행자를 통한 필수서류 등록(필수서류: 관세신

고서(DUA), 영수증 원본 및 번역본, 운송서류(BL), 통관허가증, 수입가액신고서, 수출국발 신고서, 원산지증명서, 제품리스트 등), ④보세창고로 수입품 이동, ⑤기술증명서 검토(필요시), ⑥관세 납부, ⑦시스템상 심사 채널배정(녹색-무검사 통과, 황색-서류심사, 적색-서류 및 화물검사), ⑧심사 및 출고 순으로 진행된다.

파나마는 온라인 통합통관시스템인 SIGA(Sistema Integrado de Gestion Aduanera)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홈페이지에서 통관에 관련된 각종 신고나 비용지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통관에 필요한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을 위해서는 통관사를 통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 세관창고는 5일이 경과하면 창고료가 부과되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점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관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 중이다. 2009년 12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스템(SIGA)으로 통관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대통령령 431-17에 따라 2017년 12월 WTO 무역촉진협정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인 '국가무역촉진위원회(Comité nacional de facilitación del comercio)'를 설립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편 최근 한국산 중고차가 대거 수입되어 2013년 기준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주재국 세관에서는 수입관세부과 기준 및 과세표준 기준을 차종별로 평균 2배 정도 인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입중고차의 저가신고송장(Under-valued Invoice)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재국 관세청의 조치로 이해되나, 한국산 중고차 수입에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검사는 무작위 선별(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는데, 선별된 견본 중 잘못이 발견되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차베스 정부이후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 졌으나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재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가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전히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대체로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통관사협회(SIA) 소속 통관사에게만 통관에 필요한 고유코드를 부여하므로 수입신고 시 SIA 소속 통관사 이용이 필수적이다. 콜롬비아는 대외무역 싱글 윈도우 프로그램인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며, 1,000달러 이상 물품 수입의 경우 수입자는 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취득한 뒤 반드시 VUCE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상품의 통관기한은 물품 도착 후 최대 2개월이며, 2개월 이내에 통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창고 이용료뿐만 아니라 누진적 벌금이 부과된다.

에콰도르는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에콰도르에 적용한 신전자통관시스템(ECUA-PASS)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 2월부터 동 시스템과 18개 정부 부처를 연결한 단일창구시스템을 통한 통관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통관 기간 및 비용이 상당부문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수의 수출입업자들이 수출입물품 통관 시 기존 세관운영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 시스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페루 정부는 통관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절차마련, 법령공표, 위원회 설치 등 통관개선을 포함한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SIGAD(Sistema Integrado de Gestión Aduanera)라는 통관자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하목록, 수입신고, 특급탁송, 출항신고서, 통합세금납부, 디지털화, 인적자원 개발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브라질의 경우 수입업자는 경제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을 해야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무역자동화시스템은 대외무역국이 수입허가 관련 절차를 전산화하기 위해 1997년 1월에 도입한 시스템으로 2007년에 업그레이드되어 무역등록절차 이행의 소요시간이 단축되었고, 관련 비용들도 산정되도록 개선되었다. 2011년부터는 수입절차가 한 단계 더 개선되어 특정품목을 제외하고 다수 일반적인 수입 품목은 사전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7년부터 국세청 통관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성화 등 위험평가방법 향상과 다수 내부 규정(ICMS 유통세 신고, 지불 및 증명 방법 단순화, 추후 수입신고서 수입자가 직접 작성, 수입절차 표준화 등) 변경 등을 통하여 통관 절차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되었다. 2018년부터는 성실무역업체(AEC)에 가입된 기업에게 화물 도착 이전에 수입신고를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Customs Clearance over Water)을 확대 실시하여 일부 해상화물 통관 절차의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수출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싱글윈도우 프로그램(Single Foreign Trade Portal Program)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18년 신속한 수입절차를 위해 "단일 수입신고(DUIMP: Decalaracao Unica de Importacao)"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 중이며 이로 인해 수입 통관절차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단축됐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세관의 파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행하고, 진행속도는 현저히 느려진다.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저가 신고(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 8월 무역국 산하에 국가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허위 신고를 포함한 조세 회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교역분야에서 비교대상 190개 국가 중 73위로 전년도에 비해 사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을 위한 서류 준비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상파울루 지역 기준 약 30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375달러로 OECD 국가 평균인 8.5시간, 98.1달러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여전히 통관 애로가 존재하고 있다. 주요 요인은 열악한 항만 시설에 따른 적체, 통관 분야의 관료주의 및 관련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빈번한 파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볼리비아의 경우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언더밸류(under value)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이전에 비해 통관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관세법 117조는 모든 수입품은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하면 암묵적 유기물품으로 분류된다. 상기 물품은 일반관세법 154조에 따라, 유기물품통지서 발급 이후 20일이 추가로 지나는 경우 세관에 압류되고 공매처분의 대상이 된다. 2019년 관세청 통관절차 지침서에 따르면, 통관절차는 ①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개시되고, ② 통관절차정보시스템(SIDUNEA++)에 수입신고서(DUI) 등록, ③ 수입신고번호 부여, ④ 기타 관계서류 제출, ⑤ 수입신고서 승인 후 3일내 관세 납부, ⑥ 시스템상 심사 채널 배정(녹색-무검사 통과, 황색-서류심사, 적색-서류 및 화물 검사), ⑦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⑧ 출고 및 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통관절차의 진행이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통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시일이 지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파라과이는 2016년 3월 WTO 무역원활화 협정을 비준하고, 리스크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AEO 프로그램 이행, 특송절차 도입, 통관서류 디지털화 등을 통해 통관행정의 투명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진행 중이다.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물품의 성격에 따라 녹색(즉시통과), 주황색(서류심사 후 통과, 1~2일 소요), 적색(서류 및 물품 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으로 구분된다. 녹색과 주황색은 별도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게 되지만 필요한 경우 세관은 이러한 물품을 수입업자의 창고로 운송한 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적색은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과 공탁하지 않는 방식이 있으며, 공탁하는 방식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 되어 있을 때 적용되며 허위가격 신고(under- billing) 방지를 위한 특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예치금의 규모는 세관당국이 설정한 최저수입가격과 신고가격간의 차액 만큼이며, 현금 예치 또는 은행 보증서 공탁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루과이에서의 수입은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나 통관은 세관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통관 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산 섬유 제품, 신발 제품 등은 반드시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며, 위스키 및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방송용 음반과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한 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한 모든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규정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세관신청서에 명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칠레도 1천 달러 이상 수입품에 대해서는 전문통관사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세관 도착 후 반출까지 48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입물품은 세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출해야하며 반출이 지연되면 창고 보관료가 누적 적용되고, 9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유기물로 간주된다.

동구권과 러시아의 통관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소요되는 비용 역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WTO 가입과 EAEU 통합관세법 발효(2018년 1월 1일)를 통해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시스템 전산화 진행 등 통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러시아의 통관 행정 평가 부문은 190개국 중 99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러시아 통관 제도의 어려움으로는 많은 서류 제출 요구, 복잡한 서류 양식, 잦은 화물검사(Inspection)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 발생 등이 지적되고 있다. 관세법상 화물 도착 후 3일 안에 통관을 해야 하나, 통관이 지연되어 3일이 초과되는 경우 세관 내 보세 창고료가 부과되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산정도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세관에는 제품별(HS코드) 최저 단가가 등록되어 있어, 등록된 제품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의 등록을 방지하고 있다. 수입 신고 서류상에 실제 인보이스 금액(Invoice Value)을 기입하여 신고를 하여도 HS코드를 근거로 러시아 중앙 세관에서 적용하는 세율을 강제로 반영하여 인보이스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WTO 비회원국으로 국제무역 규제 해소나 법집행의 투명성이 모호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애매한 해석뿐만 아니라, 통관 절차의 투명성 및 선진화 수준이 미흡하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과 함께 역내역외 통관 관련 행정 및 내부 규정들이 상당부분 수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아 중소 무역업자들에게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2010년 5월 관세제도를 EU표준에 근접하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관세요율 분류, 통관절차 등에 있어 WTO 및 WCO 등이 권고하는 규정에도 상당히 부합하게 되었다. 세르비아는 상품 통관절차를 엄격히 규제하는데, 수입된 상품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부족으로 수입상품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절차는 이전보다 간소화되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세르비아 관세청에 등록된 수출업자의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다만, 운영 측면에서는 주말 및 심야 통관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세르비아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튀르키예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입품 관리를 위해 산업별 전담 세관을 지정하고 있어 수출하려는 물품이 자동차, 섬유·직물제품, 비료 또는 석유화학제품인 경우 지정 통관세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는 일부 향수, 디퓨저, 립스틱, 샴푸, 헤어스프레이 등 제품군에 대해 정확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문관세제가 도입되었다. 전문관세제 적용 대상인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의 통관은 튀르키예 내 6개 세관(아다나, 앙카라, 딜오바스, 에렌쾨이, 이즈미르, 무랏베이 세관)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튀르키예의 세관심사는 적색라인(물품검사), 황색라인(서류검사), 청색라인(간단한 서류검사), 녹색라인(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으로 분류된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주로 적색라인을 적용, 엄격한 세관 통과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잦고, 아시아산 수입물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적색라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관절차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품목 제한, 투명성 부족, 절차의 복잡성, 통관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이와 더불어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 시설, 부정부패도 통관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스라엘 통관 시 필요서류로는 상업송장, 선화증권(환적이 가능하고 도착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 보험증권, 포장명세서(필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 수입허가서(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인 품목은 반드시 사전 취득 필요), 원산지증명서(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 시 반드시 필요, 아닌 경우

불필요), 특별확인증(산 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목 해당) 등이다. 유의사항으로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리비아 등 아랍국 항구에 입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팔레스타인으로 수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중개인을 통해야만 통관이 되므로 통관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레바논의 수입자는 경제무역부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계약 체결 후 High Customs Council 혹은 관련부처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수입승인은 신청하는 대로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스라엘 보이콧 대상 품목, 석유 혹은 석유부산물 등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 농산물 등은 예외이다. 한편, 저가 신고(under value) 혹은 고가신고(over Value)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품 가격 산정 시 로컬 업체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 그들로부터 인보이스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관세부과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레바논 관세청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의적인 저가신고 판정사례는 줄어들었고 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출시 상업송장의 상공회의소 확인 및 주한 레바논 대사관 공증절차도 없애는 등 통관에 따른 불편 해소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요르단은 해외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 등 무역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회의소 인증을 받은 후, 각국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2020년 7월부터 수입품에 대한 영사인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였다.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 국가와 유사하다. 세관원은 서류가 적절하게 준비된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대체로 통상적인 국제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 민간 수입의 경우 수입면허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L, 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적합성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등이다.

이란의 통관절차 상에서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검사

되며 세관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단,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장 동의하에 CIF 가격의 5~25%의 벌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 세관에서 통관확인서(Green Paper) 발행 후에도 그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스탬프를 받아야 완전한 통관으로 간주된다. 만약 견적송장(P/I) 상의 금액과 상업송장 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증명서의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는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통관확인서(Green Paper) 뒷면에 최종 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다. 샘플통관의 경우 소액·소량인 경우라도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관기간도 1~2주 정도 소요된다. 수입통관 시 실중량 측정과 관련 철강, 종이, 파이프 등 제품은 무게를 측정하여 인보이스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데, 이란 세관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중량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란은행은 세관에서 측정한 중량이 인보이스에 명기된 중량에 미달할 경우 통관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선적서류 도착 후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통관에 약 2주가 소요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물품검사를 하며,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3년 내의 구류형과 벌금을 동시에 적용한다. 또한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정부의 통관 정책 및 규정 변경사항을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출 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위해서는 SABER(사우디 수입안전관리 프로그램) 등록이 필수이다. SABER는 기존 사우디 표준청(SASO) 수입인증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SABER 등록은 사우디 현지기업만 진행할 수 있으며, 현지기업이 SABER 플랫폼에서 수출국 인증 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수출업자는 지정된 대행기관과 SABER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SABER 등록이 완료되면 제품인증서(PCoC)와 선적인증서(SCoC)가 발급된다. 사소한 통관문제로 인해 수출국(한국)이나 제3국으로 반송(Back Ship)을 해

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통관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의 포함 여부 및 가능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을 할 수 있으므로 통관 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 기업을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세관 제출서류는 원산지증명서, Commercial Invoice(C/I, 상공회의소 인증), Bill of Landing(B/L, 선화증권), 보험증명서(CIF의 경우), 제품인증서(PCoC), 선적인증서(SCoC), 위생검사서(의약품, 식품) 등이다.

오만의 통관절차는 오만 경찰청(세관 업무를 병행)의 온라인 통관 단일 창구인 Bayan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 수입 라이선스를 사전에 오만 상공부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회사의 수입은 제한된다. Bayan 웹사이트에 상품 수입자/수출자가 관련 서류를 사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영사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업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에 주한 오만 대사관의 영사 인증 취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통관 시 요구되는 서류는 통상적으로 선하증권, 상업송장,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등이다. 식품류 및 화장품 수입의 경우, 일반 유통 목적으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제품은 상공부 표준청(Directorate General of Standards and Metrology, DGS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걸프 표준기구(Gulf Standards Organization, GSO)의 기준에 맞춰 포장, 라벨부착, 품목별 성분 표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식품 품목 성분은 라벨에 표시된 성분과 일치해야 한다. 상공부 표준청의 승인 후 1년 기간의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매해 같은 절차를 통한 갱신이 필요하다.

UAE의 수입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자는 반드시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Mirsal Code)를 획득하여야 하며, UAE에 등록된 회사만이 수입 자격이 있다. 수입물품 통관 시 송장(Invoice) 및 원산지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세관 신고서류에 대해 아랍어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UAE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체결하여 2018년 10월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AEO 수출 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질 수 있으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일반화물보다 먼저 검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통관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내 수출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원산지표기와 카타르 대사관의 인증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 세관은 유효한 수입면장을 발급한다. 카타르로 수입되는 상업용 물품의 통관서류(C/I, C/O, B/L류)는 선적지 상공회의소에서의 인증 절차 수행 후 카타르 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카타르 외교부 인증은 수출자가 수출지에 위치한 카타르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거나, 수입자가 카타르 현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인증 수행 주체 및 인증료 지불은 거래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인증료는 상업송장 금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한 쪽 당사자가 모두 지불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 절반씩 부담하는 등 협의에 따르고 있다. 수출서류 대사관 인증 관련 문의는 주한카타르 대사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집트의 수입통관 절차 소요시간은 14~16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항구들이 평균 24일, OECD 국가들이 평균 10일 소요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편으로 평가된다.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등 대부분의 수입통관 시 품질조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통일된 통관검사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구매자 평가, 상담,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

품의 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판정이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알제리는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회사별로 담당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 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을 도입하였으며, 2003년 4월에는 알제항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알제항의 접안시설 및 컨테이너 처리시설 부족, 관료주의 등의 문제로 통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과 알제리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16년 6월부터 발효되어 양국간 세관분야 전문가 교류, 법규·제도 관련 정보교환 등을 통해 점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제리 세관 당국은 전자세관(E-Custom)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구축 사업과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축 사업을 각각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아랍 보이콧'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케냐 관세청(KRA)은 2019년 통합관세관리시스템(iC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1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그러나 동 시스템의 도입이 오히려 수출입 절차에 혼란을 가중시켜 전체 절차가 지연되는데 부정적으로 기여한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2022년 8월 인접국에서 생산한 식품(차)이 몸바사 항구에서 통관되기까지 2주 이상이 소요되며 결국 환불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여 향후 비관세 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관절차는 케냐와의 무역 시 가장 커다란 애로사항의 하나로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있다.

튀니지는 교역을 촉진시키고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통관 전자화(No paper) 시스템 도입 외에도 관세 수취에 전자서명 및 전자결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세관신고 전자화(TTN: Tunisie Trade Net

및 Liasse Unique 시스템)를 추진하여 세관신고서 및 수입품목에 대한 기술검사 서류 등의 전자 수·발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출입 관련 모든 정보를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은 '통관절차 자동화 정보 시스템(SINDA: Système d'Information Douanier Automatisé)'이며, 상기 TTN 및 Liasse Unique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SINDA의 문서(기술규제에 부합하는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의 건강, 수입품목의 성향 및 가격, 원산지 및 수입업자 등에 대한 정보)판독 결과, 기술검사(controle technique)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녹색, 주황색, 적색으로 구분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한다. 기술검사는 총 관세품목의 약 11%에 해당하며, 대상품목이 기술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유통이 금지된다. 한편, 밀무역 근절 및 수입품목 가격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수입업자가 준수해야할 신규 세관수칙을 2017년 9월 28일에 발표(2017년 10월 30일부터 적용)한 바, 모든 수입품목 특히, 식료품, 화장품 및 공업용 자재류의 통관절차를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튀니지 정부는 2022년 10월 17일부터 수입품목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 수입업자가 수출 공장 발행 송장, 수출 공장 법적 지위 및 운영 허가 증명서 및 기타 튀니지 정부가 수입 제품 품질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모로코의 경우 최근 정부가 투명한 통관 행정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통관 제도를 도입하여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나에서는 모든 수입품이 도착지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수입업자의 불만이 증가하자, 가나 항만청은 기존 시스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9월 1일 무서류 통관시스템(Paperless Port Sysetm)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공항 및 항구에서 전산화된 통관절차를 마련, 통관품목에 대해 관련 기관이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나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입하고 가나 내 통합관리시스템(ICUMS)을 구축함으로써 조세 수입 증대 및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가나 정부는 2018년 10월 15일부터는 화물추적노트(CTN)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36 TEUs를 초과하는 물류에 한해 추적노트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가봉은 통관업체가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가봉 수입품은 해상 운송 시 선박 도착 후 24시간 내에 적화목록(Cargo Manifest)을, 항공운송은 도착 즉시 적화목록을, 육상 운송은 도착 시 수입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업체는 통관업체와 운송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통관 수속을 위해 세관에 품목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수입통관서류(모두 불어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 제출서류는 송장(Invoices), 선하증권(B/L), 운임영수증, 원산지증명서, 보험증명서, 포장명세서, BIETC(Electronic Cargo Tracking Note)이다. 통관업체는 세관에 서류제출, 통관수속, 관세·세금 결정 등 절차를 수행한다. 수출업체는 세관이 결정한 관세·세금을 납부하고, 운송회사를 통해 수입 품목을 반송하게 된다. 물품 도착 후 항구에 11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보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가봉은 수도 리브르빌에 국제공항이 있으며, 현재 리브르빌 외곽의 Nkok 지역에 별도의 신공항 건설을 진행 중이다. 해상운송은 대부분 리브르빌 인근 오웬도(Owendo)항을 이용해 수입되고 있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2일, 해상화물은 7일 정도가 소요되나, 해상화물의 경우, 오웬도 항의 하역 사정에 따라 통관이 지체되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코트디부아르 통관 업무는 관세청(DGD)과 수탁 민간회사 Webb Fontaine 사가 맡고 있으며, 통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단일창구(GUCE)가 신설되어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통관 절차에서 화물위치추적서(BSC)를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 7월부터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업자는 물품 선적 전 서류 확인 검사를 통해 수출선적인증서(VOC)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이지리아는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Lagos)항의 경우 지속적인 적체현상으로

통관은 최대 60일까지 소요된다. 이러한 라고스항의 물류 적체는 현지에 진출해있는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 이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에서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원(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카메룬의 통관을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 등록하여 납세번호(tax payers card number)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후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2일,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하여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특히 10~12월 중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적체로 인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일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2015년 9월 카메룬과 우리나라 관세청은 MOU를 맺고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입하기로 한 바, 향후 3년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12년간 유지보수하기로 하였다(총 2억 3천만 달러 규모). 2020년 6월 기준 카메룬 전역의 세관에서 카메룬 전자통관시스템(CAMPASS)이 운영에 돌입하였다. 우리 UNI-PASS 시스템 도입으로 카메룬의 통관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관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국 간 관세행정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세 시스템뿐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관세 행정 노하우까지 전수함으로서 카메룬 관세행정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DR콩고의 수출입 업무는 규정상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행정업무의 지연,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조율 부재 등이 발생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콩고 정부는 2013년 OHADA(아프리카 비즈니스 법률 조화 기구) 가입 이후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통관작업을 대부분 전산화함으로써 현재 자동차 통관에 3일, 컨테이너 통관에 5일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세금 및 비용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주요 항구인 보마(Boma)항과 마타디(Matadi)항이 협소하여 선박이 많아질 경우 선박의 해상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급행료 등을 통한 세관 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여전히 남아있다. 간혹 전산 장애, 항구 주변의 운송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통관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인근 케냐 몸바사 및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항구로부터의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Asy scan과 사전통관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 2월부터는 통관절차를 웹 기반 전자 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한편, 르완다의 수입업자는 르완다 개발이사회(Rwanda Development Board)에 등록해야 하며, 납세자확인번호(TIN: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아야 한다.

세네갈 세관은 과거 전수검사를 시행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약 10% 정도의 상품만 검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수입증명제도(DPI) 도입과 더불어 세관당국의 통관 분석장비의 현대화에 기인한다. 사전수입증명은 category C(최종소비재) 및 S(suspensive regimes)의 경우 FOB 가격이 100만 CFA 프랑 이상이거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3백만 CFA프랑 이상의 수입 시에는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세네갈의 통관절차는 여러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관련 당국의 부정부패로 인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출입 업자들은 세네갈의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운송·보관·하역·선적 등 수출입 관련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뇌물 없이는 원활한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적도기니의 통관절차는 효율적인 시스템 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등에 기인하는 장애요인들로 인해 통관 소요기간(약 240시간,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 126시간, OECD 고소득국가 평균 9시간)이 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관련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세금산정 기준 금액으로 인정하나, 기준 금액 설정에 있어 세관원과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잦으며, 하역 이후에도 세관 측 검열 등 규정 이외의 절차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도 하여 규정 외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우간다 내 통관을 위해서는 선하증권(B/L),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입제한물품의 경우 수입 허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우간다 국세청(URA)에 따르면 통관 소요시간 관련 통관 서류를 모두 승인받고 지정은행을 통해 통관세를 기납부한 경우 1시간, 통관서류 승인만 취득한 경우 6시간, 물품 검색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재수출을 위해 분리 후 수출 증명 프로세스를 거치는 경우 8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수단의 경우 2018년 외환부족에 따른 수입 통관이 엄격해져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3국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건의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져 수입상들이 통관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품목 분류, 필요 서류 등에 있어 규정의 제정 및 인식 부족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요구하는 서류도 까다로운 편으로 수입 통관 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케냐의 통관절차 역시 케냐와의 무역에서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 중 하나로써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앙골라는 과거 항구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앙골라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년 10월 앙골라 최대 항인 루안다 항구의 통관 평균 시일은 약 2주로 감소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되는 경우 공매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통관 물품의 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추가비용 발생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상품운송 지연 개선을 위해 선적전 의무검사는 2013년 7월 17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수출입에 관계없이 자발적 검증절차의 경우 요청자에 한해 검사 관리부(ADV)에서 실시하며, 정부는 가격조건, 수량, 기술·상업·위생 분야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다 빠른 통관을 위해서는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와 관련된

계약을 정부 지정검사기관(Bromangol)과 높은 비용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여전히 통관상의 제약이 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공항 및 항구에서의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 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관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수입에 필요한 국가규제기관의 인증서 발급 지연 등으로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에 필요한 국가규제기관의 인증서 발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품의 항구 보관에 따른 보관료가 발생하여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이프가드

개관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GATT 제19조에서는 '긴급조치'(emergency action)라는 용어를, 그리고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비관세 조치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된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WTO 협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 회원국이 WTO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다보면 국가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예외를 인정함 없이 WTO 협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협정의 탈퇴나 위반을 초래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둘째, 동종상품이나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특정 상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unforeseen developments)이라는 요건은 GATT 제19조에는 규정되

어 있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인지 그리고 예견의 기준시점과 주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를 요건으로 인정한 판정례가 없지 않음에도 여전히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하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한다.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한인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라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WTO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제한 조치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징으로 반덤핑 조치나 상계관세 조치와는 구별된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절차에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공고, 이해당사자들이 증거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조사당국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의 공표가 포함된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provisional safeguard measures)는 예비판정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나 피해의 우려에 대해 긍정판정이 내려지고 또 세이프가드 조치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2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해질 수 있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관세인상의 형태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량제한의 형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량제한조치를 사용하여 쿼터를 수출국 사이에 할당해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별적 적용이 허용된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수량제한의 형태로 취하는 경우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최초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적용기간은 잠정조치, 최초 적용기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려는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보상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가 그러한 양허정지의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상품무역이사회가 반대하지 않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을 상대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진 처음 3년 동안에는 이러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농업협정에 규정된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이 되므로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섬유 및 의류의 수입에 대해서도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잠정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현황분석

WTO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412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WTO 출범 이후 25년간 연평균 약 15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더욱 증가했다. 1995~2022년 기간 동안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많이 한 국가는 인도(47건), 인도네시아(38건), 튀르키예(29건)이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25건), 필리핀(20건) 등의 세이프가드 조사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세계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4건으로 지난 2019년(30건), 2020년(22건), 2021년(9건)에 비하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8년 2월 7일 대형가정용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와 태양광제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

치를 발효시켰다. 동 조치는 일정 수입량(쿼터)을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쿼터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치의 부과 기간은 2018년 2월 7일부터 세탁기가 3년, 태양광제품이 4년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대형가정용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2021년 1월 연장 포고문이 발표되어 2023년 2월까지 연장되었다.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2018년 5월 해당 조치를 WTO에 제소, 2022년 2월 승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상소하지 않을 경우 2023년 2월 7일부로 종료된다.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Auxin Slar 등 업계에서 4년 연장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 2021년 11월 美무역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쳐 2022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2026년 2월 6일까지 연장되었다.

EU는 美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발생하는 세계 철강제품 수출의 대EU 전환효과에 따른 EU 철강산업의 피해 우려를 감안하여 2018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시행하였다. 이후 최종 조치는 같은 방식으로 26개 품목에 대해 2019년 2월 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었다. 2021년에는 재심을 통해 동 조치가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이 연장되었으며, 동일하게 26개 철강 제품에 TRQ가 적용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철강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다만 EU 역내 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TRQ를 다른 국가들에게 배정하였으며, 열연 및 후판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TRQ도 증가하였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국익과 관계가 있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19개 항목에 대해 기존 EU의 조치를 2021년 6월 31일까지 이행하였다. 그리고 이행재심사를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10개 품목군에 대해 2024년 6월 30일까지, 5개 품목군에 대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세이프가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22년 6월 30일 5개 품목군에 대해서도 2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재차 연장하면서, 총 15개 품목군에 대해 2024년 6월 30일까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다. 영국의 쿼터 방식은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으로 영국 수입업자에게 부여되며, 해당 분기의 미사용 쿼터는 다음 분기로 이월되나, 해당 연도 미사용 쿼터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연도의 특정 국가에 부여된 미사용 쿼터는 4/4분기에 다른 국가 제품 수입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는 2021년 9월부터 아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불순물 함량이 2ppm을 초과하는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Polyvinyl Chloride Suspention Resins), 페로몰리브덴(Ferro Molybdenum)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판정일 기준으로 2020년 5월 섬유·직물(Fabrics), 2021년 2월 카페트 및 섬유소재 바닥재(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2021년 11월 궐련지(Cigarette Paper), 2021년 12월 폴리스티렌(Expansible Polystyrene) 총 4건이 시행 중이다. 다만 한국은 궐련지 관련 세이프가드 조치의 예외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된 합금강(I & H Section of Other Alloy Stee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1년 1월 재연장을 위한 재심이 진행된 바 있으나 현재는 규제가 종료된 상태이다.

필리핀은 2019년 8월 시멘트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를 결정하였다. 당시 한국의 경우 수입 비중이 미미한 개도국은 제외될 수 있다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2021년 필리핀은 한국이 개도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동 조치는 2022년 2월 연장조사가 개시된 바 있으나,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2022년 10월 22일부로 종료되었다.

필리핀은 2020년 8월 폴리에틸렌 2개 품목(LLDPE, HDPE)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를 개시하였다. 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에 대해서는 수입증가가 없었다는 공식조사 결과에 따라 2022년 6월 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러나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의 경우 수입증가와 자국산업의 피해·위협 간 인과성이 인정되어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권고하는 공식조사 보고서가 2022년 7월 발간되었다. 다만 2022년 9월 필리핀 무역산업부 최종판정에서 한국은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다.

베트남은 2022년 10월 기준 반가공 합금철강재(Semi-finished and certain finished product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선 및 압연강재(Wire and Rolled steel) 2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 중이다. 가장 최근에 취해진 선 및 압연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18년 조사가 개시되었고, 베트남 국내 생산량 대비 상대적으로 수입이 급증한 한국산 제품으로 인해 자국 관련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최종판정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 또한 부과 연장결정으로 2023년 3월 21일까지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남아공은 철강재 육각 스크류(Screws fully threaded with hexagon head made of steel)에 대해 약 50% 수준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과한 바 있다. 동 조치는 2021년 7월 3년의 기간 연장이 결정, 2021년 9월 2일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35.6%, 2023년 8월 1일까지 30.6%, 2024년 8월 1일까지 25.61%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GCC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은 GCC 차원의 관련 수입규제를 따른다. GCC는 시멘트·모르타르·콘크리트용 조제첨가제 수입에 대하여 2019년 6월 21일부로 연간 250,354톤의 쿼터를 부과, 초과 물량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했으며, 세이프가드 관세는 1차년도 221달러/톤, 2차년도 199달러/톤, 3차년도 177달러/톤이다. 또한 2019년 10월 9개 카테고리의 철강제품에 대해 조사당국 직권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으나, 2021년 9월 2일 GCC 각료이사회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UAE의 경우 현재 산업다각화를 위해 기초 소비재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석유화학 및 다운스트림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된 수입규제 조치의 증가가 예상된다.

튀르키예는 2022년 6월 기준 5건의 세이프가드 조치(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벽지 / 나일론 / 칫솔 / 폴리에스터 단섬유사)를 발동 중이며, 한국에도 모두 적용 중이다. 벽지(Wallpaper and Similar Wallcoverings)에 대한 조치는 2015년부터 3년 간 시행, 2018년부터 3년의 기간이 연장되었고, 2020년 연장재심을 거쳐 다시 2024년 8월 5일까지 연장되었다. 나일론(Yarn of Nylongs or other Polyamides)에 대한 조치는 2022년 11월 20일부 종료 예정이었으나, 재심을 통해 연장이 결정되면서 2024년 11월 20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폴리에스터 단섬유사(Polyester Staple Fiber: PSF)에 대한 조치는 2020년 5월 조사가 개시, 2021년 8월 최종 판정을 통해 2024년 8월 23일까지 조치가 결정되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는 수입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 시장가격) 이하로 덤핑[37]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38]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치이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반덤핑 협정 제16조 제4항은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반덤핑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반덤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반덤핑 협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제도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덤핑마진 산정 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해야 하는데, 조사 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덤핑마진을 확대하거나 반덤핑 협정의 재심제도를 남용하여 반덤핑 조치를 장기간 연장함으로써 수출국의 수출

37)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일컫는다.

38)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을 감소 또는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에 2001년 공식 출범한 DDA에서 반덤핑을 포함한 규범 분야가 의제로 채택되었고, 각료선언문에서는 반덤핑 협상의 목적을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반덤핑 협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반덤핑 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건의 제안서 및 논평이 제출되었고, 반덤핑 프랜즈 그룹이 결성되어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있었다. 각국은 자국이 체결하는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 조사와 부과에 관한 요건들을 WTO 규정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도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WTO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을 원용하며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현황분석

전 세계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1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12년 이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매년 200건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고 2016년에 298건을 기록한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355건으로 급증하였고 2021년에는 186건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11년 이후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205건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287건으로 급증하였다.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 건수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조사개시	173	165	208	287	236	229	298	248	202	214	355	186
조치	134	99	121	161	159	182	162	201	205	152	107	287

주: 총 건수는 조사개시 6,422건, 조치 4,225건
자료: WTO를 기초로 저자 편집

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및 조치 건수(1995~2021년 누적치)

반덤핑			상계관세		
국가	조사개시	조치	국가	조사개시	조치
인도	1,130	775	미국	311	212
미국	860	620	EU	93	49
EU	547	359	캐나다	79	42
브라질	438	277	호주	41	18
아르헨티나	418	298	남아공	13	4
호주	378	177	브라질	14	12
남아공	254	154	이집트	12	-
중국	294	265	페루	10	7
캐나다	279	189	중국	17	11
튀르키예	241	209	칠레	6	2

자료: WTO를 기초로 저자 편집

미국은 2016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이 통과되면서 조사 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강화되는 등 미국의 반덤핑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은 2016년 12월 12일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면서 분쟁(DS/515 및 DS/516)이 개시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따라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제15조(a)항(ii))은 15년 뒤인 2016년 12월 11일에 만료되어야 하는데(제15조(d)항),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고 지속적인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해당 조항이 만료된다고 하여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을 개혁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한다며 최근까지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EU도 보호조치를 신설한 후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조건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받더라도 미국과 EU 등은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개정하거나 상계관세를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19년 6월 기준 반덤핑 제소 715건, 반덤핑 조치 484건을 기록하며 인도 다음으로 반덤핑 제소를 많이 하는 국가이다. 미국의 반덤핑 제소 추이는 2010년 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반덤핑을 통한 수입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특히, 미국의 덤핑·보조금 판정이나 산업피해 판정에 있어 조사 당국의 재량권이 크다.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20년 10월 기준 총 32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4건은 조사 중이다.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은 철강금속제품이다. 미국 철강업계는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덤핑조사 신청을 해왔는데 2020년 10월 기준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은 철강금속제품(무계목강관), 플라스틱·고무제품(타이어), 화학제품(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기타(4급 담배) 총 4건이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020년 10월 기준 대형구경강관, 탄소합금후판, 열연강판 등 총 7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내식강, 열연강판, 냉연강판, 탄소합금후판 등 4건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또한, 현재 무계목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은 AFA 사용 권한 강화 이외에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의 제504조(Sec. 504)상 특정시장상황[39](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따라 내수 가격 인정에 대한 재량권을 강화하였다.[40] 2015년 이

39)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정시장상황)는 특정 국가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인 경우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당국의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조치이다.

40) TPEA 제504조에 따르면, 덤핑 마진 산정시 비교시장에 PMS가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제가격 대신 구성가격의 사용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효영(2017),

후 덤핑 마진 관련하여 상당수의 조사 건에 AFA가 적용되었으며, AFA 조항이 적용된 시장경제 국가의 덤핑 마진은 평균 50%를 상회한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도금강판, 냉연간판, 열연강판 사건에서 AFA가 적용되어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2016년 9월 2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포스코와 대우에는 반덤핑 관세 6.32%, 상계관세 58.36%로 총 64.68%의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고, 현대제철에는 반덤핑 관세 34.33%와 상계관세 3.91%로 총 38.24%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6년 9월 12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포스코에는 반덤핑 관세 3.89%, 상계관세 57.04%를 부과하여 총 60.93%를 부과, 현대제철에는 반덤핑 9.49%, 상계관세 3.89%로 총 13.38%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특히, 포스코의 관세율은 열연강판 관세가 부과된 7개국 철강업체들 중 가장 높았는데, 미국이 포스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덤핑 판정에서 특정시장상황(PMS)을 적용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PMS 규정은 조사 당국이 수출업체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신뢰하지 않고 재량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WTO 협정 2.2조에 PMS에 대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활용사례가 없었는데, 미국이 TPEA의 발효를 통해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PMS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2017년 4월 11일 미상무부는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1차 년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특정시장상황[41]을 처음으로 적용하고 2016년 10월 반덤핑 예비판정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넥스틸 24.94%, 세아제강 2.76%, 현대제철과 휴스틸에 13.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7년 10월 2차 년도(2015-2016년)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최대 46%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하였다. 업체별로는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기업에는 19.68%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2017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pp. 17-18; 법무법인 광장(2017),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연구," pp. 74-77 참고.

41) 미상무부가 한국 시장이 특정시장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1) 한국 국내시장에서의 중국산 제품 급증 2) 중국산 제품으로 포스코 제품의 가격 억제, 3) 산업용 전기요금, 4) 조사대상 기업과 관계사 사이의 특수 관계 존재임.

년 4월 20일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철강 수입 제한 관련 대통령 명령[42]을 발표하는 등 철강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세이프가드 제재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철강업체 Gerdau Ameristeel US Inc. 외 3개사는 한국의 탄소합금강선재가 공정가격 이하로 수출되고 있다면서 반덤핑 혐의로 미국 상무부에 제소하여 조사가 개시되었다. 미 상무부는 2017년 11월 28일 한국산 탄소합금강선재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예비관세를 10% 수준에서 40%로 대폭 상향하였고, 2017년 12월 7일 한국산 스탠다드 강관에 대해서는 40%의 고율의 예비 반덤핑 관세(현대제철 38.16%, 넥스틸과 세아제강 23.17%)를 결정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한국산 PET레진에 대한 산업피해 판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 또는 PMS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 및 정부의 사전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EU는 2021년 12월 기준 총 131건(반덤핑 조치 111건, 상계조치 19건, 세이프가드 1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중이며, 2021년에 EU가 신규로 조사 개시한 건은 반덤핑 11건(중국 3건, 인도 2건, 인도네시아 2건, 튀르키예 2건, 브라질, 한국, 러시아, 모로코에 각 1건), 상계관세3건(중국,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이다. EU의 주요 반덤핑 부과 품목은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다. 2022년 12월 기준, EU가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8건(반덤핑 7건, 철강 세이프가드)이며, EU는 우리나라에 대해 상계관세조치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WTO 반덤핑 협정의 발효에 따른 전면적 개정 이후, 그간 부분적인 기술적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EU 내부적으로 EU의 무역구제제도가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2006년 12월 EU 집행위가 무역구제조치 개편을 위한 보고서(Green Paper)를 발표하면서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 작업이

42) 대통령 명령(Presidential Memorandum) 주요 내용: 상무부는 『무역확장법』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철강 수입에 대해 조치 방안을 제안할 것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U는 두 차례에 걸쳐 무역구제제도를 개편하였다. 2017년 12월 발효한 개정 반덤핑 규정의 주요 이슈는 무역구제조치 대상국을 시장경제국과 비시장 경제국으로 구분하던 반덤핑관세 부과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중대한 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반덤핑 부과 기준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왜곡은 국영기업의 시장 장악, 가격/비용에서의 국가 개입,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파산 법 등의 부적절성, 낮은 급여, 값싼 금융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비슷한 경제수준의 제3국 생산가 및 판매가, 국제가격을 정상가 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3] 한편, 2018년 6월 발효한 무역구제제도 현대화 방안은 무역구제조사 기간 단축(9개월→7개월), 잠정조치 시행시 조기통보, 최소부관원칙의 제한적 적용, 조치수준 결정시 조사 대상국의 사회 및 환경, 노동 기준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은 시장경제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WTO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며 특정 국가뿐 아니라 특정 국가의 특정 분야(sector)에 대해서도 중대한 왜곡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한편, EU는 2017년 12월 중국 대상 첫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내용을 토대로 중국산 유기코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종료 재심 검토 시, 중국 시장 내 중대한 왜곡여부에 대한 판단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치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최근 2020년 10월에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두 번째 국가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금번 러시아 보고서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바, 한-EU FTA 등 양자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EU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이 중대한 왜곡 보고서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튀르키예는 통상 정책에 있어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조치를 매우 빈번하게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튀르키예의 반덤핑 조사 및 조치는 주로 플라스틱, 고무, 섬유, 비금속(base metal)을 대상으로 한다. 2021년 11월 현재까지 튀르키예는 총 190여 건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anti-subsidy measures) 조치와 7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중이다. 이 중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치는 8건[44]이며, 세이프가드 조치는 6건[45]이다. 지난 1년 동안

43) 강민지(2018),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P.24 참고.

(202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튀르키예는 총 34건(반덤핑 9개, 재심조사(expiry review investigation) 19개, 우회반덤핑(anti-circumvention investigation) 조사 3개, 세이프가드 조사 3개)의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 중,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우회반덤핑 조사는 열연강재 반덤핑 조사 건을 포함 총 5건이다.

중국은 2021년 12월말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14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철강 2건(STS 열연, 방향성 전기강판), 화학 9건(페놀, 스티렌, 메틸이소부틸케톤, 폴리아세탈, 아크릴섬유, 아세톤, 비스페놀A, PPS, EPDM), 전자 1건(광섬유), 태양관 1건(폴리실리콘), 플라스틱 고무 1건(니트릴고무) 등 총 14건이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판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다수의 WTO 분쟁판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일본은 경제 규모 및 무역 규모에 비해 무역구제조치를 많이 발동하지 않는 국가이다. 2022년 11월 기준 일본은 총 8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중 3건이 우리나라, 나머지 5건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 중인 3건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경과를 보면, 2015년 5월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2016년 8월 9일부터 49.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서는 73.7%의 반덤핑 관세 부과) 중이며, 과세 기간은 최근 연장되어 2026년 8월 12일까지이다. 2017년 3월에는 한국산 탄소강 용접식 이음쇠(HS 7307.93,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7년 12월 잠정 관세 통보(태광 41.8%, 기타 69.2%)가 있었으며, 2018년 3월 잠정 관세 통보 때와 동일한 반덤핑 관세를 2023년 3월 30일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2020년 4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는 한국산 탄산칼륨(HS 2836.4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고, 이에 2020년 6월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

44) 경첩, 폴리에스터 단섬유, DOP/DOTP, 무수프탈산, 장식체인, 금속드리사, 콘크리트 펌프카, 합성 필라멘트 섬유

45) 다자 세이프가드 포함, 나일론 등 섬유, PET Chip, 칫솔, 벽지, PET 원료, 폴리에스터 단섬유

여, 2021년 6월 24일부터 2026년 6월 23일까지 5년간 30.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현재 일본이 발동 중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는 상황이나, 과거 우리나라 아이닉스 DRAM 반도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던 사례가 있다. 일본은 2004년 8월 우리나라 하이닉스 DRAM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여, 2006년 1월부터 27.2% 상계 관세를 부과하였다. 동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06년 3월 WTO에 제소하였고, 2007년 7월 WTO 분쟁 패널 최종보고서에서 우리측 승소로 발표가 되었다. 일본은 2008년 1월 WTO 권고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여, 2008년 9월부터 상계관세를 9.1%로 변경하였다. 이후, 하이닉스 측 요청에 따라 일본은 2009년 4월 사정변경 검토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4월 상계관세를 폐지하였다.

대만은 일방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등과 같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만의 반덤핑 규제 품목은 총 9건으로 이중 타일(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특정 알루미늄 호일(중국), 300계열의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중국, 한국), 신발(중국), 수건(중국), 포틀랜드시멘트 및 클링커(중국), 과산화벤조일(중국) 등 7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2021년 8월 21일까지 각각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탄소강판(중국, 브라질,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과 특정 아연 및 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중국, 한국)은 2022년 일몰재심을 거쳤으며, 그 결과 한국 제품은 향후 5년간(2027년 9월 13일까지) 반덤핑 과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중국), 탄소강 냉연제품(중국) 등 2건은 2019년 10월 9일부터 2024년 10월 8일(5년간)까지 반덤핑 규제 항목에 추가하였으나, 현재는 관세 부여를 일시 중단한 상태이다.

인도는 2020년 12월 기준 반덤핑 258건, 상계관세 11건, 세이프가드 3건(양자 세이프가드 포함)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신규 조사 개시 건수가 2019년 78건, 2020년 100건

을 기록하였다. 다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1년 6월 누적 기준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25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2021년 6월 기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 중인 국가는 중국(78건), 한국(13건), 영국(12건), 인도네시아(11건), 태국(10건), 대만(6건), 미국(5건) 순이며, 품목별로는 화학, 철강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섬유 순으로 인도의 주력산업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TR)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조사개시 건수를 포함, 전체 20건으로, 반덤핑 건(부과조치 중 11건, 조사 중 6건), 세이프가드 3건(부과조치 중 3건)이다. 품목별로는 화학 10건, 철강·금속 5건, 플라스틱·고무 3건, 전자전기 1건, 섬유 1건이 해당되며, 2021년 상반기에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1건이다. 최근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여 대외무역총국(DGTR)의 조사에 따른 반덤핑관세 등의 부과 권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는 미부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담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2022년 11월 현재 한국과 관련된 태국의 반덤핑 조치는 8건으로 모두 철강재에 대한 것이다.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Stainless Steel Pipe and Tube)는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11.96%-51.53%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2021년 9월 17일 일몰재심 착수 결과, 2022년 9월 17일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반덤핑 세율 부과가 1차례 연장되었다. 강관 및 튜브(Iron Steel Pipe

and Tube)의 경우 2017년 7월 20일부터 2차례 연장, 2023년 8월 11일까지 3.49~53.88%의 반덤핑 세율을 부과해야 되며 2022년 7월 19일 일몰재심에 착수하였다. 열연강(Flat Hot-Rolled in Coils and not in Coils)은 2003년 5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3차례 연장되어 현재(2021년 6월 9일-2026년 6월 8일) 일반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58.85%이다(현대제철 2.81%, 포스코 13.58%).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은 2003년 3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3차례 연장되어 현재(2021년2월18일-2026년2월17일) 50.99%이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은 2013년 1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2차례 연장을 거듭하여 현재(2019년 1월 10일~2024년 1월 9일) 일반기업에 대한 부과세율은 22.55%이다(동국제강 6.31%,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15.40%, 동부제철은 2020년 10월 0% 판정). 도색아연도금강판(Painted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rolled steel)은 2019년 10월 조사 착수,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년간 4.27-33.62%의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세아씨엠 4.27%, 동국제강 7.00%). 석도강판(Tin Plate)은 2020년 4월 7일 조사 착수,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5년간 일반기업에 대한 부과세율은 22.67%이다(TCC 스틸 8.71%, 동부제철 0%). 크롬 도금강판(Flat-rolled Steel Coated or Plated with Chromium)은 2020년 5월 15일 조사 착수,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3.95%-17.06%의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동부제철 3.95%, TCC 스틸 4.73%). 단, 첫 6개월간 부과 유예기간을 두었고 2022년 11월 11일에는 유예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였다. 한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2020년 9월 19일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에 관한 세이프가드 신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021년 8월 31일 국내 산업에 타격이 없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태국이 한국에 대해 적용중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다.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

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 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2007~11년까지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시아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철강 때문에 피해를 입은 철강업계의 제소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에 기인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자동차,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방식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품질 저하, 경쟁력 하락 등으로 말레이시아 철강업체들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2022년 10월 현재 말레이시아가 한국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 냉연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 등 4가지다. 한국산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포스코 0%, 포스코-베트남 7.42%, 현대제철 11.55%, 그리고 기타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21.64% 부과된다. 한국산 냉연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CRSS))에 대한 관세는 2018년 2월 8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5년간 포스코는 4.44%, 기타 한국기업은 7.27%이다.(현대제철과 현대BNG스틸은 해당되지 않음). 한국산 폭 1,300mm 이상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24일까지 포스코 0%, 기타 한국기업 3.84%이다. 한국산 평판압연 비합금철(Flat rolled product of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and zinc)에 대한 관세는 2020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5년간 KG동부제철 9.98%, 기타 한국기업 34.94%이다. 한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관세는 2015년 3월 14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5년간 14.91%였으나 현재는 종료되었다.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1999년 8월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Republic Act No. 8752」)의 주요 내용은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로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 일부 규정이 강화되기도 하여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된 면도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08년부터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4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했는데 2008~09년에는 2페소/kg, 시행 3년차인 2010년에는 1.80페소/kg, 시행 마지막 해인 2011년에는 1.76페소/kg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였다. 한편, 2018년 12월 동 품목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2019년 5월 200일간 3페소/kg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하였으나 한국은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2008년 8월에도 필리핀 정부는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자국업체의 세이프가드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한 바 있으나 2009년 7월 27일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 이하임을 들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발표한 최신 제외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아 한국의 봉강 수출은 2013년 8월 기준 L형강은 전년동기 대비 40.1%, 기타형강은 92.4% 감소하여 세이프가드 규제에 의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동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15년 8월 21일 관세부과 4년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톤(m/t)당 1년차에 3,345 페소, 2년차에 3,178 페소, 3년차에 3,019 페소, 4년차(2018년 3월~ 2019년 3월 23일)에 2,868 페소가 부과되었다. 또한, 2010년 5월 필리핀 정부는 판지(Testliner Board, HS코드 4805.24/ 25)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2009년 판지의 총 수입액 310만 달러 중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절반이 넘는 15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결과 판지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판정하였으며, 2010년 9월 16일부터 3년간 톤당 1,324페소(약 30 달러)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바 있다. 2013년 6월 14일부로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만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DTI)는 2013년 11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6년 연장조치가 종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첫해(2016년 6월 12일~2017년 6월 13일)에 톤당 986.50페소, 2년차 937.17 페소, 3년차 890.31페소, 4년차(2019년 6월 18일~2020년 6월 20일) 845.80페소가 부과 중이다. 이로서 수입판지에 대한 주재국 세이프가드 조

치는 최장 10년을 채우게 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2015년 5월 11일부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계획을 발표하여 2015년 5월 27일 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약 3년간 발동되었다. 동 품목의 추가관세 금액은 첫 해(2015년 5월~2016년 4월) PHP980(약 22달러)/톤, 두 번째 해(2016년 5월~2017년 4월)는 PHP800(약 18달러)/톤, 마지막 해(2017년 5월~2018년 4월)에는 PHP640(약 14달러)가 부가되었다. 2019년 8월부로 필리핀 정부는 시멘트(HS Code 2523.29.90 및 2523. 90.00) 제품에 세이프가드 관세 조치를 시행하였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P250/MT 또는 P10/40kg, 2020년에는 P9/40kg, 2021년에는 P8/40kg를 부과하였으며, 2022년 10월에 시멘트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되었다. 2020년 1월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색유리(tinted glass), 투명 float 유리(Clear Float glass)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공식조사(formal investigation)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조사결과 관세위원회는 세이프가드 부과조치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지난 7월 내린바 있다. 또한 2월에는 필리핀 금속노동자연합(Metalworker's Alliance)의 청원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를 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2021년 7월 수입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통상산업부(DTI)에 권고하였고, 2021년 8월 11일 공개된 행정명령을 통해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동 세이프가드 청원을 최종 기각(Dismiss)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 6월에는 아연도금철판(Galvanized iron(GI) sheets, coils and strips), 알루미늄 아연시트(Aluminum Zinc Sheets, coils, and strips) 등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1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아연도금철판(GI), PPGI(Pre-painted Galvanized Iron), PPGL(Pre-painted Aluminum Zinc)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기각하고 GL(Galvanized Aluminum Zinc)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폴리에틸렌(HDPE, LLDPE)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가 개시되었다. 저밀도 플리에틸렌(LLDPE)은 2022년 6월에 공식조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고, 고밀도폴리에틸렌(HDPE)는 2022년 7월 3년간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를 권고하였다.

호주는 2022년 8월 기준 총 29개 품목(총 19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26건은 반덤핑 조사 5건(7개국), 덤핑 관세부과 연장여부 조사 6건(9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여부 조사 3건(1개국), 재조사 1건(1개국), 면제 조사 8건(6개국)이다. 품목별로는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29건 중 20건(전체 대비 69%)이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조사가 진행 중인 7건[46],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7개 품목[47]이다. 품목별로 보면 조사가 진행 중인 8건 중 7건이 철강제품이며,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중인 7개 품목 중 6개(86%)가 철강 제품이다.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의 경우에는 대호주 수출 시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품목이 제소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호주 정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반덤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를 관세청에서 분리하여 설립하였다. 특히, 호주 정부는 주재국 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 조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조금 지급을 대신할 지원책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호주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48] 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수입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46) 품목별로는 정밀강관(Precision pipe and tube steel), 철강재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47) A4용지(A4 Copy paper), 철강재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열연구조강(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 정밀강관(Precision pipe and Tube),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48)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산업장관은 2016.9월 호주 반덤핑 제도가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지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음.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홈페이지(www.mbie.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대뉴질랜드 수출품목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2013년 6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12월 조사결과에서 덤핑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뉴질랜드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사례들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2018년 9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산 철강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기업혁신고용부의 잘못된 조사에 근거한다고 판결하여, 동 건을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7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일부분 수령하였으나 뉴질랜드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 또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2018년 8월 기업혁신고용부는 말레이시아산 철강제품에 대해 상계 관세 부과 잠정 결정을 하였다.

캐나다는 2022년 10월 기준 총 41개국, 49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18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 건수는 총 12건이며 부과 대상 품목은 구조용 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유입식 변압기, 소형 전력 변압기, 용접탄소강관, 동관, 열연강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유정용 강관, 탄소합금강관,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으로 주로 철강 및 금속제품이다. 캐나다는 2017년 6월 한국산 탄소 합금 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9월 예비판정에서 4.7%~ 107.2%의 반덤핑 예비관세가, 12월 최종 판정에서 최고 88.1%의 관세율 부과가 결정되었다. 2022년 11월, 규제 만료 검토를 개시하였고 2023년 4월 검토 결과와 함께 보고서 발표 예정이다. 2018년에는 냉연강재(Cold-rolled steel)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 내부식강판(Corrosion- resistant steel sheet)에 대한 덤핑 조사가 각각 5월 25일, 7월 26일 착수되었다. 냉연강재의 경우 2018년 12월 CBSA 최종판정에서 긍정판정으로 64.3%의 관세율 및 1톤당 KRW 86,733의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도

금강판(Corrosion-Resistant Steeel Sheet)의 경우 2018년 7월, 한국산 등의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9년 1월 최종판정 결과 4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부과에 따라 수요처를 잃은 철강제품의 수입 확산을 규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2018년 10월 25일 잠정실시 하였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최종 결과를 2019년 5월 10일에 발표하였다. 최종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은 중강판, 스테인리스강선 등 2개이다. 한국산 철강재의 경우 잠정초치가 진행되었던 7개 군 모두 피해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캐나다와 FTA 체결국가인 파나마, 페루 등도 제외 국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기존 국별 쿼터방식이 아닌 세관신고 기준의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basis)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품군별 쿼터까지는 기존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수입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TRQ) 형태이다. 또한 한 국가가 수출할 수 있는 제품별 최대 물량이 각 연도별로 제한된다.

브라질은 2022년 10월 18일 기준, 141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34개국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138건이 반덤핑 조치, 3건은 보조금 조치이다. 브라질은 198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88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 중 94% 해당하는 460건이 반덤핑 조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149건, 미국 47건, 인도 28건, 한국 19건, 독일 19건, 멕시코 18건, 대만 18건, 태국 14건, 러시아 14건, 남아공 14건, EU 12건 등이다.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①플라스틱 및 고무(28.0%), ②화학제품 (23.1%) ③금속제품(21.0%) ④시멘트·유리·세라믹 (10.5%) 순이다. 2022년 10월 18일 기준, 압연실리콘철강, 평판압연제품(후판),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화물차용 타이어, 니트릴 고무 등 우리 수출 품목 중 6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판압연제품(후판) 및 압연실리콘철강, 나일론사는 재심을 통하여 5년간 반덤핑관세부과가 연장되었다. 승용차용타이어의 경우, 반덤핑 조치 기한이 2025년 1월 16일까지이나 현재 조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실무는 경제부의 무역구제국(DECOM),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대외통상위원회(CAMEX), 반덤핑 관

세 징수는 관세청(SRF)이 담당하고 있다. 대외통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무역구제국의 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CAMEX 내 기술그룹인 GTIP의 공공이익 검토를 거쳐, 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운영위원회(GECEX)에서 결정된다.

페루의 반덤핑은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페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2004년 한국산 직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규제가 있었으나, 2005년 규제가 종료되었으며, 2022년 11월까지 덤핑 제소된 품목 중에 한국 제품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 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경부(MEF)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결과는 재경부 차관에 의해 판정된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동 위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후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혐의 판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년 7월 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한 제소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며 경제부 무역구제본부(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의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멕시코가 부과 중인 반덤핑 건수는 17개국 44품목 71건이다. 반덤핑관세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 32건, 미국 7건, 인도 6건, 우크라이나 5건, 러시아 4건, 한국 3건, 스페인 3건, 브라질 2건, 그 외 기타국가들이 9건이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0년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냉장고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후 2001년 6월 예비판정(35.3%의 잠정관세)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2002년 3월 8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결정되었다. 2001년 6월 22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서는 16.3%의 반덤핑판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으나 2007년 5월 5일 종료되었다. 1993년 8월 19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일몰 심사를 통해 매 5년마다 동 조치를 연장해오고 있다. 2013년 8월 20일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어 2018년까지 부과되었다. 2012년 10월 1일 UPCI는 멕시코 철강회사인 Terniun사의 신청(7월 6일)을 받아 들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UPCI는 양 당사자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2013년 6월 3일 한국산 포스코 냉연강판에 60.4%, 현대하이스코 제품에 6.45%라는 고율의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양측간 협의를 통해 수입물량 조절(쿼터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포스코 멕시코와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은 냉연강판 수입쿼터 적용을 받아 생산 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UPCI에 수입쿼터 증량 요청을 지속적으로 한 바, 2016년 5월 25일 수입쿼터 재심이 이루어졌고, 2017년 멕시코 정부는 몬테레이 기아차 공장 가동으로 인한 수입물량 증가를 이유로 2017년과 2018년 수입물량을 확대했다. UPCI는 한국산 고탄소 페로망간 수입제품에 대해 35.6%의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조사 예비판결(2016년 7월) 발표하였으나 아국의 해당기업은 현재의 수출물량이 미미하고 향후 수출계획이 없음을 이유로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멕시코가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는 한국 상품은 총 5건으로 3건은 철강금속제품(냉연강판, 훼로망간, 무계목강관)이며, 2건은 화학제품(폴리부타디엔-스티렌 고무에멀젼, 디옥틸 프탈레이트)이다.

칠레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 부과는 '칠레수입상품 가격왜곡조사위원회(CNDP)'에서 조사를 거쳐 임시조치 후, 최종판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9년~2021년까지 칠레 내 수입 규제(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현황을 살펴보면, 반덤핑 조치는 연평균 0.87회, 세이프가드 조치는 0.13회로 수입규제 조치를 매우 제한적으로 부과하였다. 반덤핑 대상 국가는 아르헨티나, 중국, 멕시코, 미국, EU, 폴란드, 체코이며 한국의 대칠레 수출 품목이 아닌 밀가루, 강철선, 강철봉, 분유 등에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 또한 한국의 대칠레 수출 품목이 아닌 식료품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검토를 거쳐 통상산업부(DTI) 승인을 통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한다. 남아공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가 WTO에 통보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기준 남아공은 37건의 반덤핑 조치가 발동 중이며, 국별로 보면 중국(9건), 인도(3건), 인도네시아, 아랍 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대만, 태국, 영국, 미국(이상 각 2건), 이집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튀르키예, 네덜란드, 브라질,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이상 각 1건)에 대해 수입 규제가 발동되고 있다.[49] 2022년 10월 기준으로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1건으로, 페트(PET)에 대해 2006년 5월 30일부터 반덤핑관세 19.7%를 부과하였고 반덤핑 조치를 5년 마다 연장 적용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장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다시 5년 연장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2022.9.9.).[50] 2020년 6월 수입산 철강 부문(U, I, H, L 및 T 부문)에 대한 세이프 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입산 철강 부문(U, I, H, L 및 T 부문)에 대한 세이프 조사는 최근 해당제품의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피해와 수입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021년 9월 17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종결하였다.[51]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2021년 5월 21일부터 육각형 헤드(hexagon head) 강철 나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착수하였고, 2021년 7월 26일 해당 품목에 대해 2021년 8월 2일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35.6%, 2023년 8월 1일까지 30.6%, 2024년 8월 1일까지 25.61%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52]

49) WTO 홈페이지 → WTO membership → South Africa → Notification (by Agreement → anti-dumping click)

50) WTO, ITAC

51) Government Gazette Notice 563 of 2021 (2021.9.17.)

52)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http://www.itac.org.za/)



보조금

개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 지급은 수출과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을 규율하려는 노력은 1947년 GATT 체제에서도 있었다. GATT 1947 제16조(보조금)는 "수출증대 또는 수입감소를 목표로 운영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 지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1995년 1월 1일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발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 협정")은 최초로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1조)을 두어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은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거나 또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그리고 ② 혜택이 부여된 경우에 존재한다.

보조금 협정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의 개념–즉,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 등에서 특정 기업, 산업, 기업군 또는 산업군만이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도입하고 있다. 규율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러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국내보조금일 수도 있고 수출보조금일 수도 있다.

보조금 협정은 보조금을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 두 가지로 구분한다. 원래는 허용보조금도 있었으나 1999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연장되지 않아서 5년 동안만 유효했다.

또한 보조금 협정은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을 서로 구별하고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은 무역왜곡 정도가 가장 큰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 조치가능보조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부정적 효과를 충족해야 하는 반면, 금지보조금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국산품 사용을 요건으로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특정성이 간주되고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보조금이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한다면 제소국은 이 보조금이 자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조금은 허용된다. 금지보조금은 수출목표를 달성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내 생산품 사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금지보조금은 국제무역을 왜곡하여 다른 국가의 무역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지되며,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신속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위법한 보조금에 대한 대응으로서 WTO 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먼저, 다자적 수단으로서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보조금의 철폐나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일방적 수단은 개별 국가가 WTO 회원국에 대해 직접 보조금의 존재 및 금액 피해에 대한 판정을 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최근 WTO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회원국 간의 산업보조금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 관련 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 개정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EU는 산업보조금이 합법적인 정책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생산과정을 방해하고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경쟁을 왜곡할 수 있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협정)이 산업보조금 규율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EU는 조치가능보조금이라도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경우 국제무역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현행 규범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보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보조금(과잉생산유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도 중국의 국영기업을 통한 산업보조금에 대해 현행 WTO 보조금협정이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EU, 일본은 공동성명을 통해 WTO 산업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2020년 1월 14일 제6차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SCM협정 제6.3조 '심각한 손해에 대한 의미'의 확대 적용, 미통보 보조금의 경우 SCM 협정 위반 보조금으로 간주, 국영기업의 공공기관(public body) 포함 등이다.

현황분석

보조금은 덤핑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으로 거론된다. 보조금은 개별 기업의 행위를 문제 삼는 반덤핑과 달리 다른 국가의 금융 정책 또는 산업 정책을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다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조금에 대한 규율 방안은 WTO 설립을 위한 협상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다. WTO 협정에 부속된 협정들 중에서 협정의 취지와 방향을 제시하는 서문(preamble)이 없는 단 2개의 협정 중 하나가 보조금협정이라는 사실은 이 분야에서 회원국 사이의 합의 과정이 다른 분야에서보다 특히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비록 WTO 협정이 보조금을 규율하고 있지만 각국은 여전히 수출지원, 수입대체, 구조조정, 유치산업 보호, 기술개발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이 WTO 협정 위반인지를 다투는 국가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WTO 보조금협정이 상품무역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보조금협정의 정의에서도 서비스의 구매가 재정적 기여의 유형에서 빠져 있는 점을 착안하여 서비스 구매 형식

으로 지원함으로,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벗어나려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년 넘게 WTO 보조금 협정이 개정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보조금을 정면으로 규율하지 못하자,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FTA에서 비록 한정된 분야에서나마 서비스 보조금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는 역내 시장에서 자유경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EU가 역내시장에서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EU와 제3국 간 경쟁의 공정성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베스티저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16년 10월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주최 경쟁컨퍼런스(competition conference)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EU의 규정이 WTO 보조금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EU 경쟁당국의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등에 대한 세금추납명령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을 위한 EU의 국가보조금 규정이 반덤핑 등의 국제적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U 경쟁당국은 과거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state-aid) 심사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조금 심사 부분은 EU 경쟁당국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EU 경쟁당국은 회원국내 조세심판 관행(tax ruling practices)을 조사해 왔으며, 2015년 10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피아트(Fiat)[53]와 스타벅스(Starbucks)[54]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었다고 결론짓고 세금추납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16년 8월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대해 불법적인 조세특혜를 주었다며 130억 유로를 애플로부터 환수하라고 명령[55]한데 이어, 2017년 10월에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아마존에

53) 피아트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9월 패소함. 그러나 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하여 2022년 11월 승소하였음

54) 스타벅스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9월 승소함.

55) 애플은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7월 승소하였음. 이후 2020년 9월 EU 집행위는 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하였음.

대한 조세특혜 2.5억 유로를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현재 나이키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세제혜택이 불법적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U 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라는 3가지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일시장화, 고용, 환경보호, R&D와 혁신 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의 개별 회원국들은 자국의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의 하나인 국가보조금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U 이사회의 멤버로서 EU 법령을 제정하는 기능도 행하기 때문에 EU 차원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갈등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EU 회원국들은 투자 보조금을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반면, EU 집행위는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EU 단일시장 내 경쟁이 왜곡되고, 회원국 간 보조금 지급경쟁이 펼쳐지게 될 경우 자칫 EU 통합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투자 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이 다른 요소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보조금 지급에 엄격한 잣대를 취하고 있다.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스코어보드(State aid Scoreboard)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철도, 공공서비스 제외)은 3,843억 유로(EU

GDP의 2.4%)였다. 이는 19년도 1,351억 유로(EU GDP의 0.81%) 대비 137% 증가한 수치로서, COVID-19 관련 보조금 지급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전체 보조금 중 COVID-19 보조금은 건수기준 총 384건(6%)에 불과하나, 금액기준 총 2,280억 유로(59%)로서 전례 없는 수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COVID-19와 무관한 보조금은 총 1,564억 유로로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는데[56], 이에 대해 EU집행위는 보조금 통제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분야별로는 환경 및 에너지(770억 유로), 지역 투자(183억 유로), 연구개발 및 혁신(164억 유로) 순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당해 3개 분야 총액(1,117억 유로)이 전체 COVID-19와 무관한 보조금 총액의 72%를 차지하였다.

새로운 프레임워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이루어져 왔다. 2012년 1월 30일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이 에너지, 교통, 통신, 우편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 5월에 EU집행위는 국가보조금현대화(SAM: State Aid Modernization)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단일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동 프로젝트에 따라 2013년 6월 'Regional Aid Guidelines', 2014년 1월 'New Risk Finance Guidelines' 등이 채택되었다.

2019년 12월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에는 녹색전환, 디지털전환 등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럽 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 Interest, 이하 IPCEI)에 대한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1월), 기후·환경보호·에너지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2월), 연구개발혁신

56) 2019년 대비 91.2억 유로 증가했으나, 당해 증가액은 19년도 기준 전년대비 증가액(134.4억 유로)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보조금 심사기준(2022년 10월) 등이 개정되었다. 특히, IPCEI는 다수 회원국이 공동으로 개별 국가를 뛰어넘어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기술 혁신 및 기반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EU는 2022년 말까지 초소형전자공학(2018년 12월 17.5억 유로), 배터리 공급망(2019년 12월 32억 유로, 2021년 1월 29억 유로), 수소(2022년 7월 54억 유로, 9월 52억 유로) 분야 IPCEI에 대한 보조금을 승인하였다. 한편, EU는 2020~2022년 동안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Temporary Framework for State aid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in the current COVID-19 outbreak)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Temporary Crisis Framework for State aid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following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 by Russia)을 채택하여 수차례 개정하기도 하였다.

2021년에는 지역투자 보조금 심사기준(regional aid guidelines)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이 유럽 낙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시 회원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EU 집행위는 2021년 7월 헝가리의 SKBM 지역투자 보조금(90백만 유로), 2022년 3월 폴란드의 LG에너지솔루션 지역투자 보조금(95백만 유로), 헝가리의 SK On Hungary 지역투자 보조금(2.09억 유로) 지급계획 등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1월 기준 헝가리의 삼성SDI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 지급계획(1.08억 유로)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2021년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EU 전체인구의 47%(28개국 기준)에서 48%(27개국 기준, 영국 탈퇴)로 확대되었으며, 지역별 인구, 1인당 GDP,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57]을 재지정 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의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비율 상한을 확대한 반면, c지역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이 강화되어 새로운 혁신공정 적용을 위한 기존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었다.

57) 지역투자 보조금은 생활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실업이 심각한 지역(a지역),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 지역(c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a지역이 c지역보다 더 낙후된 지역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도 a지역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한편, EU는 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들이 EU 내 상품·서비스 판매, 기업 인수합병, 공공조달 분야의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역외보조금(foreign subsidy)을 규제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율 법안(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5월 집행위가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을 발표한 이후, 2022년 6월 집행위,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3자 합의를 통해 동 법안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2022년 11월 10일 유럽의회는 동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58]. 동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역외 기업이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참여시 사전에 EU 집행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역외기업이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EU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보조금으로 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상당한 자구노력이 없는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 규모·기간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채무보증, 기업결합을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공공조달에서 과도하게 유리한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은 유럽공동농업제도(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EU역내 생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판매 보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생산량 제한을 두는 쿼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국산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이지만, 보호주의 논란 속에 개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영국은 유럽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농업 정책을 시행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 자체 농업법(Agricultural Act 2020)을 제정해 독자적인 농업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기존 CAP 하에서의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반면, 환경, 동물 건강 및 복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특정 목적형 보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58) 2022년 11월말경 EU 이사회 승인 이후 관보 게재절차를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일로부터 규정별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2021년 9월 연임에 성공한 자유당(Liberal)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하여 항공우주,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 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동 기종의 양산과 판매가 지연되면서 2016년에도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009년 3월, 캐나다 정부는 G사와 C사에 각각 108억과 29억 캐나다달러의 구제 금융을 주식과 채권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후 C사는 2011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양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주식을 점진적으로 다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2009년 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억 캐나다달러(9.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 항공 등 핵심 제조업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에 대한 총 14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감세조치 연장, 온타리오 주 산업단지에 정부예산 9억 캐나다달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CPTPP 발효시 피해가 우려되는 낙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15년간 43억 달러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파라과이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수출지향형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업체들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를 통해 투자계획서를 승인받으면 파라과이 정부가 투자사업 형태에 따라 60/90호 수출진흥법, 마낄라 보세가공무역법(Ley de Maquila),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제도 등을 통해 부여하는 각종 면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에 대해 10년간 관세 및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동 제도가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폐지하고 자유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법은 기존의 수출 기준 대신 입주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에게 최대 20년간 소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롬비아 노동부는 2021년 최저임금을 908,526페소(전년대비 3.5% 인상)로 규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인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시행령을 통해 정액을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을 106,454페소로 고시하였으며, 합계는 1,014,980페소(약 267달러, 1달러=3,800페소 가정)이다.

칠레 생산진흥청(CORFO)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전자공학 등 고도기술 분야에 대해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제공(2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한해 최대 30% 지원)하며, 지원금은 기술고정자산, 전문 인력 고용/교육 등에 사용한다.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산업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오염, 소음, 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를 줄이고 환경 보호가 가능한 건물, 플랜트,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해당 지출금액의 최대 35%, 중소기업의 경우 45%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열병합발전, 재생 에너지 투자 등 일부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지출의 4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스위스는 〈농산물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연방법〉 일명 「초콜릿 법(Schoggi-gesetz)」에 따라 농산물가공품 수출과 관련해 연간 약 9천 5백만 스위스 프랑을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의 농산물 원재료 가격이 외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스위스 산 우유 및 곡물이 자국의 식품수출기업(초콜릿, 어린이 식품 및 과자류 제조업체)들에 의해 국제가격 수준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이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에 합의함에 따라

스위스는 2020년 말 〈초콜릿 법〉을 폐지하고 2021년부터 수출지향적 식품 가공 및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 WTO 수출보조금 폐지 결정으로 스위스정부는 〈농산물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연방법〉을 전면개정(2017년 12월), 〈농산물 수입에 대한 연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2019년 1월 시행). 〈초콜릿 법〉 폐지의 후속 조치로 스위스 정부는 기존에 분담금을 받을 수 있었던 농산물의 수입가공거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유 및 곡물 생산자 중 신청자에 한해 직접보조금을 지급한다. 우유의 경우 kg당 5 Rappen이며 곡물에 대한 지불은 경작 중인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지원금은 이전 수출 기여금을 농업 예산으로 전환하여 조달되었다. 한편 공해 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주 정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공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 재생가능한 전력(풍력, 태양열, 지열 및 바이오매스) 생산자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농업 등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수입제한 조치와 보조금 정책은 모두 EU 기준과 부합하며, 그 밖에 환경 관련 규제나 각종 표준·검사 및 인증제도도 사실상 모두 EU 기준으로 대체되었다. 독일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시행한 바 있으나 동 보조금은 독일 자동차 업체 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비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독일은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의 영화산업에 대한 독일 정부 차원의 공식 보조금 규모는 연간 5,000만 유로 수준으로 프랑스(8억 유로)나 영국(2억 7천만 유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영화진흥청(FFA) 뿐만 아니라 각 연방주 차원에서 2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영화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9년 3월 전기운송(electromobility) 발전 액션플랜을 채택하였다. 동 액션플랜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강화, △충전소 건설 행정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원, △전기자동차 전용차로 설치, △탄소 저배출 지역 설정 등 총 15개의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9년 11월 정부보조금 지원법을 개정

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이로써 슬로바키아 정부는 15년 이상 사용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연료 이용 차량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지원자에게 최대 35%까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전기자동차 구입시 지원금은 최대 8,000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지원금은 최대 5,000유로였다. 현재는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후속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를 검토 중이다.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2020년 9월 및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는 설치비의 최대 95%(18만 유로), 개인사업자는 최대 50%(9천 유로)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2022년 6월 기준 슬로바키아 내 AC(교류) 충전지점(22kW까지) 865개, DC(직류) 충전지점(150kW까지) 243개, UFC 충전지점(150+kW) 78개가 있다. 슬 전기운송수단협회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노력에 따라 10년 후에는 약 14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슬로바키아 내에서 운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웨덴은 탄소배출과 온실가스 저감 차원의 그린 솔루션 및 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R&D 예산'을 지원, 2022년 기업들에 약 9억 900만 크로나를 지원했으며, 2018년 이후 총 8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약 15억 크로나를 지원해 왔다. 보조금은 스웨덴 에너지청(Swedish Energy Agency)의 e-service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스웨덴어로 작성해야 한다. 상, 하반기 2회 지원 공고를 하며, 지원 요건은 응용R&D, 타당성 조사, 산업 프로젝트 등에 한한다. 녹색 산업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투자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관련 투자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스웨덴은 민간 및 공공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운송 및 농업, 부동산, 그린 에너지 전환 기반 시설 등에 주로 '투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업투자 관련 2022년 보조금은 약 28억 크로나였으며, 수익성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나 법률 요구 사업, 재생에너지 생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혁신 인센티브는 혁신 연구와 관련한 R&D 지원 보조금으로 혁신청(Vinnova)에서 관리하며, 지속가능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및 협력, 스웨덴의 글로벌 혁신 솔루션 및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17개의 전략적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80억 크로나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스웨덴 경제·지역성장청(Tillväxtverket,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은 인구밀도가 낮고 개발이 부진한 스웨덴 중북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역 투자 지원금(regionalt investeringsstöd)'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지원 방식으로, 건물, 설비, 기계 등에 대한 투자 또는 신규 투자에 따른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 보조금 지원 등이 해당한다. 동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투자가 고용제고, 지역 산업 구조 확대, 여타 기업들의 투자 촉진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투자의 종류, 지역,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각 신청 건별로 개별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가 정해지며, 소기업의 경우 30~40%, 중기업의 경우 20~30%, 대기업의 경우 10~2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결정이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가 완료되어야 하며, 대기업(250명 이상 고용, 연간 매출액 5천만 유로 초과하거나 총 자산 연간 4,300만 유로 초과 기업)의 경우 신규 기업 활동이거나 같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투자지원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거리상 물류 운송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Norrbotten, Vasterbotten, Jamtland 및 Vasternorrland 지역에서의 제조 기반의 사업 물류비용에 대하여 운송비의 5~45%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500만 크로나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운송 거리는 401km를 초과해야 하며 철도와 트럭, 해상 운송이 포함되며, 경제 · 지역성장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크로아티아는 만성적자를 안고 있는 조선, 철도 등 국영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없애고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요 조선사 대부분을 포함, 많은 기업들이 이미 국영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모로코는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부가세 환급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20 재정법(Loi de finances 2020)에 따른 세제 개혁에 따라 2021.1.1.부터 수출기업에 대해서 처음 5년간은 법인세 100% 면제, 이후 전체 매출의 15% 세율로 고정되어 있다(기존 대비 혜택 축소/2021.1.1 이전 기진출 기업에는 불소급). 또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

세를 환급하고 있다. 부가세 환급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년 이상 소요된다.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장애인, 노인, 미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업의 사회 보장세를 감면해주고 있다.[59] 2016년부터 기업설립 후 1~2번째 고용된 근로자들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3~6번째 고용된 근로자까지 그 혜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벨기에의 보조금 형태는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 지역(낙후 지역),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현금 보조 또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된다. 현금 보조는 신규 환경 규정의 적응을 위한 기존 시설 대체 투자의 경우 투자비용의 12%를 지원하며, 기존 환경 규정보다 더 강화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에는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다. 한편 무이자 대출 시에는 직업 훈련 프로젝트 비용 및 외부 컨설팅 조사 의뢰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적용 대상은 오염 감축 또는 방지를 위한 설비, 오염 지역 정화, 환경 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현금 지원 대상은 유형 고정자산(토지, 건물, 신규 설비 등) 및 무형 고정자산(특허권,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 조사 등) 매입 등이다.

노르웨이는 높은 관세(40% 내외)를 통해 농업을 특별히 보호하는 동시에 곡물, 기름용 씨앗,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 소, 양, 돼지, 닭, 계란, 양모에 대해 목표가격 책정 등 행정적 조치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는 정부보조금에 속하며, 투자인센티브는 제조업, 첨단기술 제조업, 의료분야 및 보호장비 제조업, 기술(R&D)센터, 비즈니스 지원센터(소프트웨어, IT 개발, 데이터센터, 첨단수리 센터, 공유서비스 센터)의 신규 또는 확장 투자에 적용된다. 투자 인센티브는 프라하를 제외한 지역(프라하는 0%)[60]에서 국가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지역별로 대기업 기준

59)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 기업이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 연간 최고 4,000 유로의 사회 보장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60) 체코는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에 동등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프라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만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적격비용의 20~40%이다. 대기업 기준에서 중기업은 10%, 소기업은 20%가 추가 적용된다. 여기서 적격비용이란 인센티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비용으로 △ 신규 기계 취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 고정자산(신규기계, 건물, 토지, 무형자산 등)과 △ 신규 채용 직원의 2년간 임금 총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제조업의 경우 장기 고정자산 금액만을 적격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체코 투자청은 기업규모 산출시 관계사와 해외지사 등 그룹 전체의 규모를 고려하고 있어 현재 체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업규모별 보조금 상한선(수혜한도) 및 구분 기준

구분	수혜한도	직원 수	매출(Turnover 또는 자산(Balance sheet total)
대기업	25%	250명 이상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초과
중기업	35%	250명 미만	매출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이하
소기업	45%	50명 미만	매출 1,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1,000만 유로 이하

주) 수혜한도는 적격비용에 대한 비중
출처: 체코투자청

투자 인센티브법 개정을 통해 R&D 투자의 경우 일부 지역에 한정되던 고용창출 보조금과 직원훈련 보조금 지급이 체코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개정 시행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보조금 금액과 실비용 지원 비중이 줄어든 곳도 일부 있으나, 전반적으로 투자지역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창출 보조금의 경우 신규 고용 창출 1인당 20만 코루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원훈련 보조금은 실제 집행된 직원훈련 보조금의 2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체코 정부는 2018년 이후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기업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기면서 단순 제조업보다는 미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R&D, 혁신기술 산업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 9월 투자 인센티브법 개정 후 정부에서 모든 개별 외국인 투자가 향후 창출할 경제적 이점을 평가하여 승인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제조업 분야의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첨단기술 제조 분야도 조건 및 혜택 사항을 단순 제조업과 달리하여 구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기

업과 소기업도 차등)의 인센티브 조건이 보다 완화되고 혜택은 강화된 편이다.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 고부가가치 조건(제조업 투자),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 조건을 충족할 때 인센티브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투자유형은 일반투자와 전략적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 투자는 최소 투자금액이 2억~20 코루나에 달하고 최소 70~25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말하며, 일반투자 인센티브에 자본 투자 보조금을 추가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첨단기술 제조업, 의료 제조업 분야의 경우도 자본 투자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 내용

구분	대상	내용
법인세 면제	모든 투자 분야 해당	최대 10년까지 법인세(현재 법인세 19%)가 국가보조금 한도 내에서 면제
고용창출 보조금	제조업, 전략적 의료, 첨단기술 제조업	•실업률이 7.5% 이상이며 동시에 체코 평균 실업률의 50%를 초과하는 지역만 해당 •신규 고용 창출 당 20만~30만 코루나 지역
	기술센터	신규 고용 창출 당 20만 코루나 지원
직원훈련 보조금	제조업, 전략적 의료, 첨단기술 제조업	•실업률이 7.5% 이상이며 동시에 체코 평균 실업률의 50%를 초과하는 지역만 해당 •대기업은 직원훈련 비용의 50%, 중기업은 60%, 소기업은 70% 지원
	기술센터	대기업은 직원훈련 비용의 50%, 중기업은 60%, 소기업은 70% 지원
자본 투자 보조금 (추가혜택)	제조업 전략적 투자, 전략적 의료, 참단기술 제조업	적격비용(기준 투자금액)의 최대 10% 또는 20% (최대 15억 코루나 한도)
	기술센터, 첨단 수리센터의 전략적 투자	적격비용(기준 투자금액)의 최대 20% (최대 5억 코루나 한도)

폴란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2011~2030년 폴란드 경제에 중요한 투자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다.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을 위해 2021년 3월 25일 국무회의 결의로 현금지원 인센티브 수혜 기준(예: 투자금액, 고용인원수 등)을 낮추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폴란드 경제부 장관과 개별 투자기업이 체결하는 양자

협약에 따라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지급 조건의 세부 사항은 위 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기업의 의무이행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자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관련 비용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의 경우 비즈니스 서비스 아웃소싱 또는 연구개발(R&D) 분야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 관련 비용은 전략 또는 혁신,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일자리 창출 비용 지원(고용보조금) 해당되는 분야는 ①비즈니스 서비스 아웃소싱(신규 고용 1인당 최대 7천5백 또는 1만 5천 즈워티,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모두 해당, 투자지역 입지 및 해당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금액 차등) 분야와 ②R&D(신규 고용 1인당 최대 1만 또는 2만 즈워티,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모두 해당되며, 투자지역 입지 및 해당 지역 실업률에 따라 금액 차등) 분야이다.

신규 투자적격 비용 지원(투자보조금)에 해당되는 분야는 ①전략 또는 혁신(대기업: 투자금액의 최대 5% 또는 15%, 중견기업: 투자금액의 최대 10% 또는 20%, 소기업: 투자금액의 최대 15% 또는 25%) 분야와 ②R&D(대.중.소기업 모두 해당:투자금액의 최대 15% 또는 25%) 분야이다. 고용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은 투자대상 지역의 낙후 정도, 실업률, 입지(동부 및 북동부 지역은 수혜 금액 커짐)에 따라 달라진다. 수혜 적격 평가 기준은 양적 및 질적 기준 모두 부합해야 한다. 양적 기준은 투자기업의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여부), 최소 투자액 및 고용인원 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 투자기업에 주로 해당되는 전략산업(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전자 등) 대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액은 8천만 즈워티, 최소 고용인원 수는 50명이다. 질적 평가의 주요 기준은 사업유형, 투자기업의 해외 수출액, 연구 및 개발 활동 수행 및 친환경 사업 여부, 직원 교육 및 지역 소재 산업학교와의 협력 지원 여부 등이 해당된다. 질적 기준 평가등급은 투자지역에 따라 다르며 개발 낙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평균 4~5점, 그 밖의 지역은 6점을 획득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9-2023), 신경제계획(2021-2023) 등 경제정책 운용을 통해 수출주도 성장 기반 경제모델 설립을 목표로 전략산

업 육성 및 수출기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 IT, 의료산업 등 전략육성 산업을 중심으로 R&D 연구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1년 튀르키예 무역부 수출보조금 지원 규모는 약 22억 달러 수준이다. 대표적인 수출자금 지원프로그램으로는 튀르키예 정부 품질보증 브랜드 대상 'Turquality' 프로그램, 자동차, 항공, 기계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대상 '글로벌 공급망' 프로그램이 있다. 2021년 기준, 총 383개의 브랜드가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Turquality' 품질보증 및 총 1천 6백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글로벌 공급망' 프로그램으로는 총 29사 30개의 프로젝트가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별 최대 1백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이후 수입대체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개발기금(IDF)을 통한 자금 지원, 정부 보조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2015~16년 수입대체화 프로그램 결과로, 22개 산업(2,255개 품목)에서 집중적으로 수입의존도를 낮추었으며 2022년까지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WTO 가입 이전부터 취약한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8월 WTO 가입 이후에는 농업보조금 지급 체계를 WTO 농업보조금 규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모든 농업보조금은 생산 및 가격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decoupled) 지급되어야 하므로,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단위별로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러시아는 WTO 가입 시 농업보조총액(AMS)을 2013년 90억 불에서 44억 불까지 감축하고, 품목특정 지원액을 품목불특정 지원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수출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WTO 농업위원회에 러시아가 공식 제출한 2020년 농업보조총액(AMS)은 89.5백만 불에 불과하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2019년 2월 '2013~20년 러시아 연방 농업발전 프로그램'을 개정해서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농업발전 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프로그램 단계'와 2018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프로젝트 단계'로 구분된다. 2020년 7월 29일 기준으로, '2013~25년 러시아 연방 농업발전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은 8조1,029억 루블(약 1,126억 달러)로, 이 중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예산은 6조3,345억

루블(약 880억 달러)로 배정되었다. 하지만 보조금이 실제 지급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분담하고 보조금 지급을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연방 농업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공식) 및 소요인력 확보 또한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계획만큼 보조금이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는 우리 농기업들도 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준비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서류 등을 면밀히 구비하고 러시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해 커피, 카카오, 바나나 및 기타 과일류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 충족을 위한 제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어 수출 보조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두라스의 경우 보조금에 대한 제약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 가스 및 전기 요금에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차원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가스사용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기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까지만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논의 끝에 2018년 8월 가스 보조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가정용 주방 조리기구를 인덕션(INDUCTION)으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 2022년까지 일정 부분 전기요금 면제 및 저렴한 전기 요금 부과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경제 및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고급 가솔린 보조금을 없애고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9월부터는 수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 경유 보조금을 폐지하였다. 이밖에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재수출시 이에 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1년 WTO가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구역 지원 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2007년 재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2015년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2018년 말까지 개도국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이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구역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 내 섬유, 의류, 신발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내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수출진흥책,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1년 6월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내수판매를 허용하였다. 기존에는 수출자유구역소재 기업에 관세 및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대신 내수판매는 허용하지 않았으나, 내수판매를 허용하고 대신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2012년 세제개혁, 법률 253-12). 2007년 3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에서는 농산품 수출보조금 폐지에 합의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농산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보조금을 용인하기로 하는 한편, 동 보조금 폐지를 위해 다자간 틀 속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튀니지 정부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①투자장려금(지역개발 계획, 우선순위 분야 및 지역개발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출비용), ②농수산장려금(동 분야에 대한 대규모 및 소규모 프로젝트 투자비용에 대해 각각 15%와 30%까지 지원하며 최대 1백만 디나르까지 지급), ③수익증대장려금(신기술 습득 및 생산력 증진 차원의 장비 구매, 연구 및 개발 목적의 무형투자, 직원 교육 및 역량강화), ④고용능력증진 장려금(튀니지인을 고용(첫 고용)하는 경우, 기업측의 사회보장기금 분담 지원), ⑤지속가능개발장려금(수질관리 및 대기오염방지, 친환경·무공해기술 분야 관련 장비 구매 시 총 투자비용의 50%(최대 30만 디나르)까지 지원) 등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튀니지는 조세압력 감소와 분야별·기업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4년 1.1

부터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35%에서 25%로 감세 조치했으나, 일련의 보조금 누적 혜택을 허용하기 때문에 국고에 타격이 크며,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기대치 이하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보조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비상주전량수출기업[61]'으로 환전의 자유, 과실송금, 중대한 감세 혜택 등이 주어진다. 튀니지는 기업 조세압력 완화정책 일환으로 2021년 개정 재정법 14조를 통해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었다. 수출기업의 형태에 따른 조세 혜택과 과실송금 의무 여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정부보조금 혜택 외에도 비상주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외 여타 비상주기업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각종 조세 및 관세 면제가 허용되며, 환전의 자유도 보장된다. 단, 상기 나열된 혜택은 상주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혜택	비상주전량수출기업	상주전량수출기업	상주부분수출기업
과실송금 의무	없음	의무	의무
법인세	·1-10년간 면세 ·14.1월부터 수출 이윤의 10% 부과	·1-10년간 면세 ·14.1월부터 수출 이윤의 10% 부과	·1-10년간 면세 ·14.1월부터 수출 이윤의 10% 부과
생산원료 및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세	면세	2016년 재정법에 따라 장비 수입에 한해 면세
상기 생산원료 및 장비에 대한 입항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세	면세	장비 수입에 한해 면세

한편 수출장려 차원에서 조성된 비즈니스 파크(Parc d'activités économiques)를 활용할 경우[62], 단지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전량수출기업은 조세, 금융 및 관세 혜택을 부여받으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품목 수입 및 수입 시 기술검사도 면제된다.

61) '전량수출기업'은 수출로 얻은 수입이 기업 총 매출의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부분수출기업"으로 분류됨. '비상주기업'(Offshore)은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기업으로 환전이 가능한 외환을 투자하여 기업 지분의 최고 66%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상주기업은 주로 전량수출기업의 형태, 즉 비상주전량수출기업의 형태로 존재한다.

62) 이 외에도 기타 경제특구가 구축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sompat/220924832656)에서 참고 가능함.

위치	관련 분야	면적(ha)	고용자/기업 수 (2020년 기준)
Zarzis(남부)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 및 기술 관련 산업, IT 서비스, 자동차 정비, 농수산가공업, 기계전기부품사업, 플라스틱 제조 등 생산 관련 서비스업	60	320명/43개 기업
Bizerte(북부)	기계·전자·전기, 조선 및 마리나, 제약, 플라스틱, 직조, 섬유 및 피혁, 기타 무역서비스	81	5,000명/69개 기업

튀니지 통상부 산하의 수출진흥공사(CEPEX: Centre de Promotion des Exportations)는 "수출진흥기금"(FOPRODEX, 1985년 국가가 설립)을 운용하고 있으며, 보조금이나 융자(상환기간 3년, 거치 1년, 평균이자율 조건) 형태로 수출업자 및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63] CEPEX는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운송비의 일정액(해운 1/3, 항공1/2)을 지원하며, 수공예품의 경우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운송비의 25%를 분담한다. 또한 CEPEX는 대졸 인력 고용 장려를 위해 수출기업들이 이들 인력을 고용한 경우 3년 동안 임금의 일정부분(첫 해 50%, 2년차 40%, 3년차 30%)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수출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시장접근기금"(FAMEX II, Fonds d'Acces aux Marches d'Exportation)은 개인(최대 10만 디나르), 기업(50%) 및 전문협회(70%)의 수출전략수립 비용을 분담하고, 해외판로 개척 성공 사례의 경우 최대 보조금 15만 디나르를 지급한다. 세계은행에서는 튀니지 수출증대 지원 차원에서 "수출 경쟁력·개발 지원기금"(TASDIR+, Fonds d'Appui a la Competitivite et au Développement des Exportations)을 마련하여 제약, 보건 및 교육서비스, 전기전자산업,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 종사자에 보조금을 지급, 이들의 재화 및 용역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 산하 튀니지 무역보험공사(COTUNACE, Compagnie Tunisienne pour l'Assurance du Commerce Extérieur)는 수출에 필요한 보험 및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63) 2015년 기준, 수출진흥기금 예산은 1.9천만 디나르(CEPEX총 예산의 63%에 해당)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6월 브라질 정부는 수출금융,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 촉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수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PROEX의 2015년 재원을 전년대비 30% 증액하였으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수출지원자금도 20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특히 FINAME 프로그램의 경우, 브라질 기업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계 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재 금융지원(capital financ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목적은 수입 장비대신 국산장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5년 도입된 IT수출지원프로그램(REPES)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을 수출하는 브라질 기업은 수출 비중이 연간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수입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수출기업 자본재 지원 프로그램(RECAP)에 의해 3년 이상의 기간 중 수출비중이 총소득의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수입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고 있다.

뉴질랜드는 2014년 4월부터 영화제작투자 시 제공하던 기존의 보조금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을 하나로 통합한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가 도입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제작 또는 공식 공동 제작(official co-production)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600백만 뉴질랜드달러 지원하고,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 5,0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하여, 총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책을 통해 콘텐츠 및 스토리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 영화	2,500,000뉴불
단편 프로그램(비다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800,000뉴불 이상
단편 다큐멘터리	250,000뉴불
장편 시리즈(비타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500,000뉴불 이상
장편 시리즈 다큐멘터리	- 방송시간당 250,000뉴불 이상
단편 & 장편 애니메이션	250,000뉴불 - 방송시간당 400,000뉴불 이상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 시 제공되는 보조금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도 변경되어 2017년 기준 투자비용이 5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비용의 20%(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투자비용의 18%(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달러 초과인 경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사촬영의 경우 'Live Action Grant'를 통해 투자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작품이 뉴질랜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5%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외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기준보조금
장편극 영화	15,000,000뉴불	총 제작비용의 20%
TV 프로그램 및 기타	4,000,000뉴불	
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500,000뉴불	

※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홍콩은 혁신기술기금(ITF: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을 통해 응용 R&D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려 노

력하고 있다. 2022년 9월말까지 ITF는 누적기준 313.8억 HKD를 조성하여 총 40,237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2012년 7월에 각 프로젝트에 대한 ITF의 상한액이 2,100만 HKD에서 3,000만 HKD으로 증가하였고 대상분야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 ITF의 소규모 사업 리서치 지원프로그램(SERAP)은 신규업체들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금액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22년 9월 말까지 5.04억 HKD 가량의 지원금이 412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ITF SERAP는 2012년 4월에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상한액 400만 HKD에서 600만 HKD으로 증가, △벤처기업들까지 적용되도록 대상 확대, △산업디자인, 테스팅, 원형 인증 및 임상실험에 적용 등 지원규모와 대상이 확대되었다.

R&D Cash Rebate Scheme을 통해 홍콩 정부는 기업들이 지역 내의 연구기관들과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기업이 ITF 관련 연구개발을 시행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할 시에 자금을 지원받으며 2022년 9월 말까지 총 568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7.8억 HKD가 지원되었다. 이 지원제도는 2012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 2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연구개발 총비용의 30%에서 40%로 확대되었다.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ASTRI)은 R&D프로젝트들을 시행하여 홍콩의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분야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ASTRI는 홍콩의 5개 기술부문(통신, 전자제품, 통합전기회로디자인, 소재 및 포장, 생물의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 nologies)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 내 선택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돕는 다섯 개 R&D센터들이 있다. 자동차부품 및 부속시스템 R&D 센터(APAS), ASTRI산하 정보통신기술 R&D 센터(R&D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nder ASTRI), 홍콩 직물/의류 연구기관(Hong Kong Research Institute for Textiles and Apparel), 홍콩 물류 및 유통망 R&D센터(Hong Kong R&D Center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Enabling

Technologies), 나노/선진 물질 연구기구(Nano and Advanced Materials Institute)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APAS는 연구능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2012년 11월부터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과 합병하였다.

홍콩·중국 과학기술협력위원회(The Mainland/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는 중국의 과학/기술부와 홍콩의 경제/상업부서가 기술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고위급 회의체이다. 2020년 12월까지 모두 2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홍콩에서 승인받은 16개 국가중점협력연구소(SKL) 중 12개는 2010년 이전에, 4개는 2013년에 중국 과학기술부(MOST)의 인가를 받았고, 홍콩사이언스파크를 Hong Kong National Modern Services Industrialization Base로 지정하였다.

홍콩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조업 기업의 경우 고용인 100명 미만, 비제조업 기업은 고용인 50명 미만이다. 홍콩에 등록된 중소기업 수는 약 34만개로 추산되며, 이는 홍콩 사업기관의 98%, 민간 노동인구의 45%(130만명)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홍콩 정부는 중소기업을 홍콩 경제의 근간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자금지원(SME Funding) 정책을 2001년에 도입하였다.

2018년 6월 홍콩 입법회 재무위원회는 홍콩의 중소기업을 지원(스타트업 지원, 사업기회 제공, 경쟁력 제고 등)하기 위해 HKD 25억불(US$ 3.2억불) 상당의 자금지원 방안을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프로그램	시장확대기금 (EMF)	브랜딩 및 시장 지원기금 (BUD펀드)	공업무역지원기금 (TSF*)
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장려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홍콩기업의 중국시장 내 경쟁력 강화, ASEAN 및 FTA서명국과 시장개척 지원	홍콩 비상장기업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시장확대기금 (EMF)	브랜딩 및 시장 지원기금 (BUD펀드)	공업무역지원기금 (TSF*)
지원대상	홍콩에 법인설립을 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홍콩에 등록한 비상장기업	비영리 단체
지원내용	(지원범위) - 해외 무역 박람회 / 전시회 및 비즈니스 활동 - 중국본토의 박람회 / 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에서 발행되는 무역관련 출판물에 광고 게재 - 해외시장에서 진행되는 전자 플랫폼/ 미디어 통한 수출 프로모션 행사 개최 -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지원기업 협력 웹사이트 구축 (지원금액) - 누계 기준 최대 HK$100만불	(지원범위) - 전시회, 장비구입 및 직원고용 등 ① 중국 프로그램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20개의 승인 프로젝트 대상 HK$200만 - 지원상한액: 승인된 총 지출의 50% 또는 HK$100만 - 기간 : 최대 2년 ② ASEAN 및 여타 FTA서명국 프로그램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70개 승인 프로젝트 대상 HK$700만불	(지원금액) - 건별 최대 HK$500만 또는 비용의 90% - 기간 : 3년
지원규모	HK$ 72.5억불	HK$ 60억불	HK$ 72.5억불
수혜기업	48,787개 (2019.8월 기준)	2,500개 (2021.12월 기준)	397개 (2021.1월 기준)

* 공업무역지원기금(TSF): 기존 단체지원프로그램(OSP)과 발전지원기금(SDF)이 통합된 기금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중국정부는 우선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추천 목록을 발표하고, 동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차를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고 있어 가솔린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2020년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라 2020년 3월 보조금을 2년 더 연장하여 2022년까지 지급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다만,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최소기준을 강화하고 대당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보조금 대상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50km 이상인 차량으로 강화했고, 2020년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0km 이하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300km에서 400km 사이의 경우는 16,200위안, 400km 이상은 22,500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보조금은 주행거리 300km에서 400km 사이의 경우는 13,000위안, 400km이상은 18,000위안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의 경우 주행거리 300km에서 400km 사이의 경우는 9,100위안, 499km이상은 12,600위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수전기승용차(160Wh/kg 이상)에 대한 보조금 추이

(단위 : 만 위안/대)

1회 충전 주행거리(km)	2018	2019	2020	2021	2022
150 ≤ R 〈 200	1.8	–	–	–	–
200 ≤ R 〈 250	2.8	–	–	–	–
250 ≤ R 〈 300	4.0	1.8	–	–	–
300 ≤ R 〈 400	5.4	1.8	1.62	1.3	0.91
400 ≤ R	6.0	2.5	2.25	1.8	1.26

출처 : KAMA 및 재정부 홈페이지
http://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409&menunum=0002&searchGubun=titlecontent&searchValue=%C1%DF%B1%B9&pagenum=2
http://yn.mof.gov.cn/tongzhitonggao/202206/t20220623_3820913.htm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중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발전 가이드(2015~2020년)」에 따라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보급량을 480만개까지 목표로 삼았다. 또한 2020년 3분기 브리핑에서 신인프라의 일환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내 각 성시별로 충전소 설치 장려금을 확대하고, 장려금은 충전 기초설비 운영, 리모델링, 전기충전 서비스 운영 감시 시스템 건설 등에 사용하는 등 선순환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을 4종 4횡으로 나누어 도시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급속충전소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2천만대 전기차 충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스마트 ·고효율 충전인프라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1년 말 기준, 중국 내 신에너지차 보유량 784만 대, 신에너지차와 충전기 비율은 1:6.84이다. 2020년 말 동 비율은 1:6.07로 2021년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 폭증으로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가 한층 심화되었다.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향후 충전인프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등을 포함한 바스(BaaS) 사업도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대형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중소형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생산조건,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화이트리스트로 발표하고 있다. 2018년 5월에 발표된 화이트리스트에는 우리 기업 3곳(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포함되었다. 또한 2019년 12월 발표된 보조금 지급 대상인「신에너지자동차 보급 응용추천 목록」에 처음으로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테슬라 모델3, 베이징벤츠 E클래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이 포함되었다. 2020년 4월에도 우리 기업(SK이노베이션)과 중국 기업(베이징자동차)의 합작사인 베스트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아크폭스 알파-T)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선정되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 대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진입을 점차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NDRC), 공신부(工信部), 민정부(民政部), 재정부(财政部) 등 11개 중앙부와 위원회는 공동으로 '2019년 중국 전체 가전제품 소비 시장 추진 방안(进一步优化供给推动消费平稳增长促进形成强大国内市场的实施方案2019)'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가전제품 에너지 절약 보조금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하여 단일 가전제품에 최대 800위안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일본은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정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국가적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기반 정비 등을 목적으로 2021년 추경예산에 6,170억엔을 편성하여, 2022년 6월에 TSMC 및 소니,

덴소 등이 공동출자한 구마모토 반도체 설비투자에 4,760억엔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설비는 향후 로직반도체를 생산하여 2024년 첫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용효과 7,500여명, 경제적 파급효과는 4조2,900억엔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정부는 키옥시아의 미에현 플래시 메모리 설비투자에 약 929억엔, 마이크로社의 히로시마 DRAM 설비투자에 약 465억엔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본정부는 2022년도 추경 예산에도 반도체 지원책으로서 △일-미가 협력하는 차세대 연구거점 정비에 약 3,500억엔, △첨단품 생산거점 지원에 약 4,500억엔, △제조에 필수불가결한 부소재(部素材) 확보에 약 3,700억엔 등 총 1조 3천억엔을 편성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연구를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조직인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기술센터(LSTC)」를 설립하고, 차세대 반도체의 제조기반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수행자로 소니, 소프트뱅크, 덴소, 도요타, 키옥시아, NTT, 도쿄일렉트론 등이 공동출자한 Rapidus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그린뉴딜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증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차 추경예산 2조엔 규모의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조성하였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그린성장전략'을 통해 해상풍력, 수소, 카본리사이클링, 축전지 등 성장이 유망한 14개 산업을 정하고, 각 분야별로 정책 효과가 크고 사회에 실제 도입까지 장기간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2035년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를 100% 전동화할 계획으로 전동차 구매를 보조하는 지원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각 자동차 모델별로 EV·PHV 자동차에 대해 최대 92만엔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대차의 아이오닉5에 대해서도 85만엔의 보조금을 지원(2022.11월 기준)하고 있다. 또한 도요타 미라이 등 FCV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38만엔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몽골은 밀 재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입 주류에 대한 특소세 차별적용으로 인해 몽골 국내 주류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 수출상품 역시 직접보조금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수출업자의 경우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인도 수출품 세금환급제도(Remission of Duties or Taxes on Export Products, RoDTEP,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감면(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EPCG),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Duty Drawbac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기존 수출 인센티브(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MEIS)는 2015년 기존 산업별, 품목별로 운영되던 'Focus Product Scheme', 'Market Linked Focus Product Schem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ncentive Scrip'와 같은 다양한 수출 촉진 제도를 재화 수출 제도(MEIS)로 통합한 것으로, 지정된 국가로 정해진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제조세(Exercise Duty) 및 서비스세(Service Tax) 납부액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동 제도는 불공정 경쟁으로 WTO에 제소된 후 패소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었다. 대신 수출품 세금환급제도(RoDTEP)가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투입요소(원자재·부분품·연료·전기 등) 대상 부과된 간접세(지방세, 광업세, 농산물세, 부가가치세 등)를 환급한다. 2020년 1월부터 운영되어왔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앙·주정부세 환급제도(RoSCTL: Rebate of State and Central Taxes and Levies)는 RoDTEP 제도가 시행되면서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1년 8월 정부가 섬유제품 수출자에 의해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수출목적 자본재제도(EPCG)는 인도 내 자본재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도 내 제조업자로부터 자본재를 조달할 경우, 제조세(excise duty) 면제를 위해 일반 관세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년 내에 수출하는 조건인 수출의무조건을 90%에서 75%로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필리핀의 경우, 수출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 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의 보조가 있으나 미미하다(현재 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를 위해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부재정 악화 및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사우디 정부는 농업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품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WTO 가입 시 협의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보조금을 폐지하였다. 2006년 농업보조금 규모는 9억 7,70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 폐지하였다.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년 12월부터 중단하였다.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이후 정부는 전기, 수도, 석유, 식품 분야의 보조금을 삭감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의 시장원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2015)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차량용 가솔린 가격은 유럽 평균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부는 가솔린, 디젤, 전기, 천연가스 보조금에만 GDP의 10%에 해당하는 6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로 2018년 차량용 휘발유 2배, 전기세 3배 인상을 시행했다.

알제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해 자국 시장에 원유 및 가스를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WTO는 이를 일종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카메룬은 코로나19 영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러-우 전쟁, 세계 인플레이션 급등 등 국제 경제·정치 상황으로 인해 2022년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작년대비 5.8% 인상되었다. 이에 카메룬 정부 당국은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소비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 선적전 검사 프로그램의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가봉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류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

1월 유가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6년 2월부터 가솔린과 경유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였으며, 가정용 등유와 부탄가스에 대해서는 유류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미국, 중국, 한국 등과 달리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없으며, 일반 자동차 수입 시 부여되는 18% 관세보다 높은 25%의 관세를 전기차 수입 시 부과함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환경 마련, 잦은 정전 등과 관련한 전력수급 안정화 그리고 전기차량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산지규정

개관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인 원산지결정기준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그 규정의 불명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경제통합의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조치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범위는 GATT 제1조 1항의 최혜국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혜관세제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즉, GATT 제1, 2, 3, 11, 13조의 최혜국대우(MFN) 원칙,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이나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적용된다. 반면 특혜원산지규정은 GATT 1994조 제1조 1항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goods wholly obtained test) 기준[64]과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기준[65]이 있으며, 실질적변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66], 부가가치 기준[67], 주요공정기준[68]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세계관세기구(WCO)와 WTO의 공동 작업으로 1995년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69] 2013년 9월 26일 WTO 원산지규정위원회에서는 반덤핑 조치 등 적용영역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그간 진전이 없었던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의 향후 방향이 논의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제정 작업 초기와 다른 상황변화로 통일원산지규정이 무역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술적 사항 이외는 총회의 방침이 결정될 때 까지 작업 중단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EU, 인도, 중국, 스위스 등은 생산 활동의 글로벌화로

64) 한 국가 내에 당해 물품의 모든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65)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66)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 품목번호(세번)에 근거하므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다.

67) 부가가치기준이란 완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최종공정을 수행한 국가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68) 각 제품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행시켜주는 기술적인 제조·가공 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69) WTO 원산지규정 협정은 원산지규정 통일화 작업을 WTO 협정 발효 후 조속히 개시하고 3년 내에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각국의 자의적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0]

이와 같이 아직까지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국은 자국의 특유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상이한데, 크게는 미주지역의 NAFTA 모델과 EU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PANEURO 모델로 양분할 수 있다. 이외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NAFTA모델과 PANEURO 모델을 병용하여 사용하거나 대체로 이들 모델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용이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71]

지역별 특혜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

	NAFTA 지역	PanEuro System	동아시아 지역
일반적인 특징	엄격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행정비용이 과다하여 역내수출입자들에게 상당한 애로	역내 원산지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부터 PanEuro 모델을 시행	상대적으로 단순한 규정 체계를 가지고 있어 역내 보호수단이 미약
원산지 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 HS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충분가공기준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AFTA)
부가가치생산 방식	RVC 순원가 및 거래가격(FOB)	MC 공장도 가격(ex works price)	RVC 또는 MC
부가가치인정 기준	순원가 50% 거래가격 60%	MC 50~30%	RVC 40%
중간재 흡수원칙	사용(자동차 제외)	사용	사용
누적계산	양자누적	완전누적(EU)	양자누적 및 완전누적(ASEAN)
최소허용기준	7%	10%	사용안함
원산지 증명	자율증명	반자율증명	기관증명

자료: 최홍석, 이영달(2011)[72], p.64

70) 김영환. 2013. 원산지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71) 최홍석, 이영달. 2011. FTA 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년에는 NAFTA 재협상 타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변경되고 일부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었다. USMCA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의 확대[73], 세트상품의 특례 인정 도입[74], 통과 및 환적 규정의 개선[75], 재생재료(recovered material) 취급에 관한 규정 도입[76]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77] 또한 자동차 및 부품, 섬유, 화학, 철강 제품 등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개정되었는데, 특히 승용차, 경량트럭, 중량트럭의 경우 역내부가가치 함유비율의 상향,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사용 의무화, 노동부가가치 요건의 추가 등 원산지 결정기준이 강화되고 역내 생산 촉진 및 역내산 부품의 사용을 유도하도록 개정되었다.

USMCA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원산지 규정

구분	원산지	철강·알루미늄 구매	노동부가가치
승용차 (8703.21-8703.90)	HS 4단위 세번변경 + 75% 역내 부가가치	연간 구매의 70%이상 북미산 증명 (North America Origin)	40% (고임금 재료 및 제조 비용 25%, 기술비용 10%, 조립비용 5%)
경량트럭 (8704.21, 8704.31)	HS 4단위 세번변경 + 75% 역내 부가가치	연간 구매의 70%이상 북미산 증명 (North America Origin)	45% (고임금 재료 및 제조 비용 30%, 기술비용 10%, 조립비용 5%)
중량트럭 (8704.32-8704.90)	HS 4단위 세번변경 + 70% 역내 부가가치	연간 구매의 70%이상 북미산 증명 (North America Origin)	45% (고임금 재료 및 제조 비용 30%, 기술비용 10%, 조립비용 5%)
승용차 및 경량트럭 부품(HS6단위 기준) ① 핵심부품(15개) ② 주요부품(53개) ③ 보조부품(28개)	HS 세번변경 + ① 75% 역내부가가치 ② 70% 역내부가가치 ③ 65% 역내부가가치	-	-

자료: 설송이, 제현정(2018), pp.2-4

72) 최홍석, 이영달 . 2011. FTA 시대의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73) 최소허용기준이 NAFTA에서 7%였으나 USMCA에서는 10%까지 확대되었다

74)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세트 가격의 7%이하인 경우에는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특례 기준을 말한다.

75) USMCA에서는 원산지 상품의 제3국 통과 시 세관 통제 하에 있어야만 원산지 지위가 인정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76) 재제조상품(remanufactured good)의 생산에 소요되는 재생재료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77) Gregory Spak, Francisco de Rosenzweig, Dean Barclay, Scott Lincicome, Matt Solomon, Brain Picone and Ata Akiner. 2018. Overview of Chapter 4(Rules of Origin) of the 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Client Alert. White&Case

한편, WTO 차원에서는 2013년 제9차 발리 각료회의에서 각료결정에 따라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원산지 규정 관련 지침이 제시되었고,[78] 2015년 제10차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최종 합의문이 도출되었다.[79]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발리 각료 권고안을 토대로 하되, 이후 제네바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동 합의문에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 또는 단순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합의문은 최빈개도국간 원산지 누적확대 노력을 독려하고, 자가증명서 허용 등 관련 서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황분석

원산지규정이 통상장벽으로서 기능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쿼터품목이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의 경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적용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물리적 구성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쿼터품목의 가공 및 조립과정이 제조과정인지를 엄격히 판정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규정이 연계되는 무역상의 조치 또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나항, 그리고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호와 합치하는 종가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다항에 위배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판정할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78) WTO. 2013.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Ministerial Decision (WT/MIN(13)/42/WT/L/917)

79) WTO. 2015.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Ministerial Decision (WT/MIN(15)/47-WT/L/917/Add.1)

또한, 정부조달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즉 전체 부품 및 제조비용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통의 원산지 판정의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수입가공품의 정부조달 입찰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라항의 각주에 의해[80] WTO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이것이 무역장벽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특정한 표시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예컨대 상품의 부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특정위치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f항[81]에 어긋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은 통상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해석·운용되어 무역제한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야가 섬유류이다. 그 이유는 섬유류의 경우 국제 분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각국에서 보호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등 특혜무역의 증가와 국제 분업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별로 다양한 품목에 걸쳐 원산지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품목별 대비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FTA별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Mega FTA를 통해 역내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또한 글로벌 생산 분화현상이 심화되면서 FTA 체결국간 기존 역내 생산 공급망을 효율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누적 원산지 규범이 Mega FTA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FTA 원산지 누적조항은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FTA 역내 국가들 간의 생산 및 공정을 최종 생산국이

80) 정부조달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1994년도 GATT에서 회원국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의무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81) 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은 것을 기술하는 원산지규정(소극적인 기준)은 적극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환이나 원산지의 적극적인 판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수행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된 CPTPP의 경우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조항에 따라 역내가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역내 재료 또는 역내에서 수행한 공정 및 작업이 원산지 판정에 전부 고려되어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로 판정된 중간재 뿐 아니라 비원산지로 판정된 중간재에 포함된 역내 공정 및 부가가치 누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완전누적은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효과의 반대급부로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글로벌 생산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완전누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재료의 원가 및 공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요구되므로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지역별 각 국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북미 및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의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명칭의 변화보다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기준이 되며,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한다. 특히 미국은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인 경우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의 조립과정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속할 경우 수입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2005년 10월 개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과거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유신고서(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제조업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한·미 FTA에 특혜원산지기준 중 완전 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을 명문화하였다. 부속서에서는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하여 약 5,000여개(HS 6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일부 품목의 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둬야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섬유산업 또는 다단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품목군의 경우에는 실제 제조자가 발급한 국내 제조확인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사후검증을 실시하게 될 경우 수입자로부터 수령한 '정보제공 요청서(CBP Form 28)'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최근 사후검증이 더 엄격해지는 추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원산지규정에서는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를 해야 한다. 캐나다의 「상품 원산지 표시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는 생산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였으나, 새로운 「상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두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2015년 1월부터 발효된 한·캐나다 FTA를 통해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육류(닭고기 제외)의 경우 한·미 FTA와 동일하게 도축기준을 인정하고, 완성차의 경우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섬유·의류는 한·미 FTA의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보다 완화된 기준인 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을 채택하였다. 한·미 FTA 및 한·EU FTA와 유사하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한·캐나다 FTA에서는 한국 혹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을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는 과거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co Ⅲ) 제출을 의무화한 적이 있으나, 현재 동 조치는 해제되었다. 우리나라산 제품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 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 중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이어야 한다. 역외로부터 반입된 원자재로 생산한 경우에는 역내 생산 부가가치가 30%이상일 경우에 중미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에는 원산지 표기가 요건화 되어있으며, 원산지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통상 담당부처에서 관장한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규정(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볼리비아는 과거에는 모든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 일부 수입 규제 품목과 안데스공동체(CAN), 남미공동시장(Mercosur)국가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적용 시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페루 역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1) 상업 주체(수출업체 등)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및 한국에 적용) 2)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가 승인한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칠레, 쿠바, 싱가포르, 중국, 태국, 멕시코, 일본, 파나마, EU, MERCOSUR, EFTA,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의 제품에 적용) 3) 수출국에서 별도 허가된 수출자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이며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일본, 파나마, EU 및 코스타리카에 적용된다.

아르헨티나의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1개국이어야 하고, 2~3개국 개입으로 변형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 섬유제품·신발류 등 아르헨티나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또한 이 경우 원산지국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 간 특혜 원산지규정 이외에는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관련 국제 법규와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MERCOSUR 원산 품목으로 인정받으려면 역내산 비율에 대해 60% 충족(마킬라 산업의 경우 40%)이 필요하다.

ALADI 원산지 규정은 1) 회원국의 원재료 또는 다른 회원국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2) 제3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세번(tariff heading)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전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F.O.B)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MERCOSUR에는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이 있으며 전자에 따르면 1) MERCOSUR에서 완전히 획득되고 제조된 물건, 2) 제3국의 원재료가 사용되고 세번(tariff heading)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식물성 기름, 육류와 생선 재료, 야채, 과일과 음식 재료, 화학물, 섬유, 신발, 철강, 통신, 컴퓨터 등이다.

MERCOSUR 회원국들 간에 거래되는 자동차, 버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이 MERCOSUR 협정에 따라 역내제품으로 간주,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50% 이상(2019. 10.3 개정)이 역내산 부품으로 충당되었다는 원산지 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U는 FTA,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반덤핑조치, 수량 제한 등 통상정책조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제품의 최종적·실질적·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EU에서는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고, 섬유·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SAARC(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 기준이 인정되겠으나,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euro-mediterranean)에 대해서도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최근 발효된 EU-베트남 FTA에 의해 한국과 베트남간의 교차 누적도 인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한국산 직물에 대한 교차누적이 적용되어 한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제조된 의류는 EU-베트남 FTA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취급된다.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에서 양측은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원산지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의 해외조달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규정에 합의하였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기계 등 주요 공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결합기준(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대신 수출자 및 생산자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기준이 도입되었다. 관세환급제도는 우리 측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계속 유지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도입되었다.

영국의 원산지 규정은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 적용되고 있다. 한-영 FTA에서는 특혜 관세 대우의 목적상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해당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획득한 제품,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은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스위스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은 스위스에서 생성된 제품의 부가가치가 최종 판매가격의 60~80% 이내일 경우 스위스산 원산지 지위를 갖고 유럽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판매될 수 있다. 스위스의 원산지규정은 일반 원산지규정과 EU/EFTA, GSP, FTA 등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9월 이후 한·EFTA FTA 발효에 따라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 받게 되었다. 동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당사국 내에서 완전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가격 결정 기준은 공장도가격으로 규정한다. 또한 역외가공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나, EEA(European Economic Area)협정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라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tives)에 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에 비특혜원산지규정의 사용을 통보하는 등 국제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EU와 FTA 체결국인 러시아 등에 적용되는 특혜지위와 일반 제3국에 적용되는 비특혜지위를 구분하고 있다. 특혜지위 대상국가인 EU, EFTA(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CEFTA(발칸 국가), 튀르키예는 "EUR 1"로,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즈 등은 "Form CT-2"로 분류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상품 수출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튀르키예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요구되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튀르키예 간 원산지 규정은 한-EU FTA 상 품목별원산지기준(PSR)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 규정을 원화[82]하거나 원산지 예외 쿼터 물량[83]을 설정하고 있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섬유·직물 분야에서 경직적인 원산지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개별 소품목마다 생산국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 국제적으로 원산지표시는 가급적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다. 우리나라도 원산지

82) 원산지 규정이 원화된 품목은 설탕과자(HS코드 1704), 초콜릿 함유 식료품(HS코드 1806), 기타 비스킷(HS코드 1905)이다.

83) 원산지 예외 쿼터 품목은 면사(HS코드 5205), 인조필라멘트 직물(HS코드 5408),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HS코드 5501)이다.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표시로 인해 제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 품목에 직접 원산지표시를 하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통상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입통관시 협정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전에 반드시 원산지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고, 원산지를 사후에 보완하여 입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수입허가 전 반출제도(BP:Before Permit)를 활용하면 사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허가 전에 물품의 일본 반입이 가능하다. 다양한 EPA 체결 이후 일본 세관에서는 무역원활화 촉진 측면에서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액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수입허가 전이라도 일본 국내로의 물품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세관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겠다는 신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신고시에 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 현지 수입자가 이를 인지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물품 발송시에 동 내용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84]

싱가포르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규정은 완전획득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으로 구분되며, 실질적변형기준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의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누적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태국, 베트남은 ASEAN FTA에 따라 회원국의 수출품에 대해 특혜관세 부여를

84)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seido_tetsuduki/syomeisyo.htm#hakkyu
https://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13_jr.htm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원산지규정을 적용한다. CEPT 제도는 물품이 ASEAN 국가 내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 산출 시에는 원재료, 노임,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말레이시아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혹은 RCEP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HS 코드에 따라 FTA/RCEP의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HS 코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출물품의 경우 HS 코드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의 확인도 필요하다.

태국의 경우 세관에서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ASEAN FTA와 비교해 품목별 원산지 수준이 일부 개선되었다. 또한 2022년 1월 발효된 RCEP을 통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과 누적기준을 중심으로 보다 활용도 높은 FTA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루나이의 원산지증명은 산업자원부 국제관계국 및 무역개발국(IRT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ade Development Division)에서 주관하며, 수출업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IRTD에 신청하면 IRTD 관계관은 늦어도 제품이 완성 또는 포장되기 60~70% 전에 제품을 검사,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최소한 수출일자 이틀 전까지 발급, 제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적 지연 등의 불편이 따른다.

미얀마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 수출기업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

지 않고 있다. 단,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협정이 규정한 'AK Form' 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무역협정에서 양허된 품목에 대해 정해진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인도는 수출국의 지정기관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역적자 심화가 인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2020년 4월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 내 제28DA조(원산지 관리 조항)를 신설하였고, 이후에도 '무역협정에 관한 세관 원산지 관리 규정(CAROTAR 2020)'을 고시, 2020년 9월 21일부터 FTA 특혜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수입자가 FTA에 의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지정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원산지 관련 추가서류를 보유 및 제출해야 하고, 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관련한 다양한 근거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신청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도 세관이 수출국을 상대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은행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담보 해제 지연과 관련 행정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관세 및 통관 애로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인도 관세청 산하 관세특별조사국(DRI: 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의 자의적 품목분류로 인한 소급적 관세 추징 및 한-인도 CEPA 활용 불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DRI는 주로 모바일 및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하여 HS 협약에 어긋나는 품목 분류를 통해 관세 추징을 시도하고, 한-인도 CEPA 활용을 어렵게 하거나,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관련 기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파키스탄은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인도산 및 이스라엘산 품목 그리고 인도 및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스리랑카와의 교역 시에는 해당 무역협정의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판정은 대체로 HS코드 4단위 또는 6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협정 및 교역 상대국에 따라 대략 30~60% 정도이다.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C/O)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특별한 제약은 없다.

카자흐스탄은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수입상품이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은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등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원산지 판단시 △HS 4단위 변형을 유발하는지 여부,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 공정 및 기술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가 현저히 증가되는지 여부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현행 세계무역기구의 원산지 협약에 준해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아야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도 일반특혜제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4년 11월부터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이 아닌 일반관세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뉴질랜드는 관세총독령(Tariff Order 2005)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개발국가 및 최빈개도국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혜택(최저개발국관세)을 부여한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수출하는 경우 과거에는 주한 요르단 대사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공증 받아 첨부해야 했으나, 2020년 7월 요르단 산업통상부가 영사인증이 수입통관시 필요 요건 서류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영사인증 제도가 폐지되었다.

시리아 역시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규정과 관계되는 영사인증, 아랍 보이콧, 시리아 제재법 등에 따른 조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충족할 필요가 있다.

쿠웨이트로 수출하기 위해서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 화물 수령증의 복사본 3장, 원산지증명서, 화물 명세 리스트 등의 법적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부착을 요구하며 한국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당사국에 소재하고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대사관에서 공인을 받아 송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 대사관 내지 Arab 대사관에서 인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트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보내져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의 통관이 불가능하다.

이라크는 별도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출국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류를 주한이라크대사관에서 공증 받아 사용하면 된다.

UAE는 수입물품 통관시 상업송장(Invoice) 및 원산지증명서(C/O)에 해외 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세관 신고서류에 대해 아랍어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오만은 영사인증 제도를 실시, 상업송장 및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오만대사관의 영사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취득시 통관이 불가능하다. 오만은 원산지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에 적용하는 부가가치 기준(40% of Local Value-Added)이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예멘에서는 개인물품, 기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 상품은 수출국 상공회의소가 확인한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 적시 상업송장)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사우디 및 이라크와 맺은 특혜무역협정에서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하며 생산품 가격의 40% 이상이 투입된 지역을 원산지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중동지방 국가들의 영사인증제도는 관세 포탈이나 외화도피 등 무역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동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수출업자에게 시간소요 및 인증비용 부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면, 이란 정부는 2001년부터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란은행에서 수입자의 신용에 따라 자체 산정한 금액 이상 수입 시에는 수입자에게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수출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발급했던 영사공증제도를 2006년 5월 폐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 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포장에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문제가 된 사례로, 수출 시 원산지 확인 및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 세관은 2011년 4월부터 수입통관 시 필요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며, 과거에는 스탬프가 직접 날인된 원본서류만을 인정, 전자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현재는 주카타르 한국대사관과 카타르 당국의 협의를 통해 전자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는 상태인데, 그러나 카타르 세관 업무 담당자의 미숙지로 인해, 원산지

증명서 원본미비의 사유로 통관이 거절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측에서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넷 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공증을 받은 이후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카타르는 2011년 9월부터 차량부품 수입 시, 원산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증명서는 카타르 표준청(Qatar Standard)이 공고한 품질 표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타이어 수입 시에도 GCC 표준 준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013년 4월부터는 강화된 통관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제품에서 제거 가능한 방법(스티커 부착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관을 거절한다.

레바논은 통관 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타 원산지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 요구 사항은 여타 중동 국가와 동일하다.

이집트는 2009년 6월경부터 이집트 세관이 원산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규정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및 원산지국 주재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며,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을 따르면 제품표면, 서류선적,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바, 중계무역이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주한이집트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했으나, 2021년 신규통관시스템 개발 이후 대사관 공증절차를 폐지하였다.

튀니지의 원산지규정은 교토협약 개정안(the Revised Kyoto Convention)의

부속서 K를 기반으로 제정, 2009년 2월에 공포된 세관법에 따라 가공이 완료되었거나 상당부분 가공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한다. 원산지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으로 결정한다. 튀니지는 모리타니아,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등의 아랍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가공제품 공장도 가격의 최소 40%를 지역부가가치로 인정하는 특별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EU, EFTA, 아가디르협정국(모로코·이집트·요르단), 튀르키예와의 FTA에서는 PAN-EURO-MED의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알제리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과 더불어 수입품에 아랍어로 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였다. 원산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 복제품 퇴치 목적의 일환으로, 원산지 국가로부터 직수입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제3국에서 제조되어 알제리로 수입되어야 한다.

세네갈은 독자적인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대신에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WAEMU)의 공동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WAEMU의 원산지 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30% 이상 부가가치기준을 병행하고 있다.

가나는 현재까지 우리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서아프리카경제협력체(ECOWAS) 협약에 따라 동 기구 회원 국가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상품(30% 이상 ECOWAS 역내 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DR콩고는 귀금속(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황옥 등) 및 반귀금속(금, 은, 이리듐, 팔라듐, 라듐, 백금, 바나듐 등)의 특정 광산물 수출의 경우 광물성분 분석기관인 귀금속·반귀금속 감정평가센터(CEEC)의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DR콩고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에 따라 특혜적 원산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WTO에 통보하였으나 아직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정부조달

개관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로 정의된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정부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10%에 달하며 공기업과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약 15%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경제에서 정부조달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조달 시장은 정치·국방·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조달 시장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경제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조달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부조달의 대상은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이고 조달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경제에서 정부는 가계와 기업, 해외와 더불어 경제주체 중 하나이고 정부조달을 포함한 정부지출은 소비, 투자, 수입과 함께 총수요의 한 요소이지만, 정부는 여타 경제주체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다. 첫째, 여타 경제주체는 여러 작은 주체의 결합인 반면, 정부는 하나 또는 극히 소수(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로 구성되어 그 규모가 개별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크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독점(monopsony)을 하고 있어 정부의 시장영향력은 다른 경제주체들보다 훨씬 강력하다. 둘째, 다른 경제주체는 법이나 규제 등 주어진 시장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시장의 법이나 규정에 대한 결정권한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장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셋째, 기업이나 소비자의 지출은 수익과 신용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정부의 지출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정부지출의 원천은 세수이며 원칙적으로 정부조달의 효용은 정부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귀속된다. 지출의 주체와 수혜 주체가 다른 정부조달의 특성 때문에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달시장이 효율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높은 투명성과 지출에 대한 책임의무가 요구되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부조달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정부조달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정책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자국의 경제수준 및 환경에 부합하는 조달체계와 법규를 구축하고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국제기구들과 국제경제협력체들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수행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을 제정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대해 각 회원국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부조달에 대한 연구도 진행함으로써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는 정부조달 체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구속적 정부조달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정부조달에 대한 합의와 상호 시장개방 양허안이 협정에 포함되고 있다.

정부조달과 관련된 무역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첫째, 외국기업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완전히 금지되는 경우로 특히 국방관련 조달에서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내기업에게 특혜 마진을 제공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별적 특혜는 국내산업 육성이나 고용향상을 위한 목적이지만 사회정책으로까지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예들 들면, 미국이나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소수민족에게 정부조달 관련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외국기업이 자국 정부조달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불공정한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요구하거나 공동입찰을 해야만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국산 제품이나 서비스의 의무적 사용, 또는 기술이전 의무 요건 등이다. 넷째, 비록 구체적인 특혜를 부여하지는 않으나 비공식적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즉, 문화적인 이유, 또는 국내기업과 정부관리간 맺어온 인맥관계 등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조달체제 및 관행을 유지하여 여러 절차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복잡한 조달체제가 외국기업에는 시장진출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WTO에서 정부조달에 관련되는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GPA가 있다. 그러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원칙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GATT 제3조 8a항에서는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산품의 조달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 또는 요건에는 내국과세 및 규칙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GATS 제13조 1항에서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해서 최혜국대우(제2조), 내국민대우(제17조), 시장접근(제16조)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 조약에 따르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나 시장접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85] 이에 따라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국내기업에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에서는 복수국간협정의 형태로 GPA가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이의제기 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는 복수국간(plurilateral)협정이라는 차이가 있다.[86] 따라서 WTO GPA에 가입한 WTO 회원국은 GPA의 부록에

85) 단, 정부가 수익을 바라며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이는 MFN과 내국민대우 등의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86) 현재 WTO_GPA가입국은 총 47개국(EU 28개국 포함)이며 다른 WTO회원국과 4개 국제기구((IMF, OECD,

자국이 양허한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GPA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은 동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가입국에 의무의 준수를 요구할 수도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을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WTO GPA는 정부조달에 다자무역의 원칙을 적용시켜 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으나, 일부 GATT/WTO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로 GPA는 다자협정이 아닌 복수국간협정으로 남게 되었다.[87] 많은 국가들이 GPA의 다자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정치적 민감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일부 국가들이 정부조달과 정부지출을 국내 경제발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도 GPA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들은 국내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자국산 우선구매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GPA가 규정하는 투명성, 입찰과정, 낙찰기준에 관련된 조건 및 이행사항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비교적 개방적인 정부조달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GPA에 가입한 국가들마저도 자국의 환경을 고려하여 양허안에서 일부 조달기관이나 조달 대상품목을 제외시키고 있다.

개정 GPA가 발효된 2014년 4월 이후부터 조달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규범적 측면에서도 개도국 우대 조치(가격특혜, 대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 단계적 추가 등을 일정기간 허용)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개도국의 GPA 가입 접근성도 높아졌다. 또한 아시아, 남미,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WTO-GPA 가입국은 아니지만 지역무역협정 및 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계 각국은 글로벌 조달시장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러-우 전쟁, 미중 전략경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

UNCTAD, ITC)는 옵서버 자격으로 GPA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옵서버 국가 중 10개국(알바니아, 호주, 중국, 조지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오만, 러시아,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GPA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87) GPA는 비록 복수국간협정이지만 일부 양자협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GPA의 부록에서 각 서명국가는 특정 서명국가에 대해 차별대우를 양허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상호 공평성 및 형평성을 이유로 하며 미국의 경우, 한국 지방정부의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에 대해 미국의 지방정부도 한국에만 차별적으로 동일하게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을 적용하고 있다.

으로 기후 리스크, 공급망,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의 조달정책은 보호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경기와 공급망 재편 추세와 함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분석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650억 달러로 연방정부 지출액의 13.9%를 차지한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 「연방구매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며 동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 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우선구매정책(Buy American),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Buy American정책은 미국 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Buy American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재료가 55%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조달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주는 총 50개 주 중 37개 주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 주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88] 한편, Buy American 조항은 2009년 2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경기부양법에도 포함되었다. 즉,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미국제품 구매 의무화 대상에 철강과 함께 공산품을 포함함과 동시에 동 조항을 국제협정에 따

88)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의 주는 13개(앨라배마, 알라스카, 조지아, 인디아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이다.

른 미국의 의무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임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연방조달과 양허를 한 주정부 조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형식상의 차별은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공식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미국 내 납품실적 요구, 특정 규격 요청 등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존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화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조달기준 강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특혜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통령 행정명령(14005)을 발표하였다. 동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① 미국산 부품 인정기준 상향, ② 미국산에 적용되는 가격 특혜 강화, ③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우대조치의 이행을 위한 담당기관 신설, ④ 정부조달 절차의 투명성 제고, ⑤ 미국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⑥ 미국산 우대조치의 예외적용에 대한 공지 및 보고의무 절차 마련 등 바이 아메리칸 강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이행 조치이다.[89] 2021년 7월 연방조달규제위원회(FAR Council)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미국산 제품의 '우선화 규제안(proposed rule)'을 발표하여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달기준을 상향하였다. 2021년 1월부터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품의 55% 이상을 국내 조달해야 하며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60%로 상향할 계획이다[90].

중국은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이라는 조직방식과 결합하여 조달을 실행한다. 집중조달이란 조달자가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된 항목을 집중조달기구에 위임하여 조달하거나 부서집중조달을 진행하는 행위를 의미하여 집중조달에는 정부집중조달과 부서집중조달이 있다. 중앙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91]은 국무원이 결정·공포하며 지방예산에 속하는 목록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중앙국가기관 조

89) U.S. Federal Register(2021), "A Presidential Document by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n 01/28/2021" 참고.

90) 이 기준은 2024~28년에는 65%, 2029년에는 75%로 상향될 예정임.

91) 중국의 정부조달은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을 결합하여 실행하는데, 집중조달목록은 집중조달 범위(정부조달 항목)를 규정하는 목록이다. 중국 국무원에서는 매년 정부구매 목록을 집중조달목록과 부문조달목록, 분산조달목록으로 구분하여 발표하는데, 집중조달목록은 반드시 집중구매기구에서 위탁하여 조달하며 부문집중 및 분산조달 목록인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집행하거나 집중구매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달센터 등 6개의 중앙부처 산하 조달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정부 산하의 조달센터가 존재하고, 이들이 관할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물품을 집중조달하고 있다. 다만 국유기업은 자체적으로 분산조달하고 있다. 중국 조달시장이 우리나라 조달시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입찰 대리업체의 존재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입찰센터(招标中心)가 존재하지만, 입찰대리기구(招标代理公司)가 있어 정부를 대신하여 대부분 입찰 과정을 진행한다. 약 5,000여 개의 입찰대리기구가 있으며, 갑(甲)급 업체의 경우 전국의 입찰 대행이 가능하고 입찰금액에 제한 없이 입찰 대리가 가능하다. 을(乙)급 업체는 해당 사업자등록 소재지에서만 입찰 대행이 가능하며 1,000만 위안(한화 약 18억 원) 이하의 입찰건만 대행이 가능하다. 집중조달은 국무원 및 성급 이상 지방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지정 물품과 금액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분산 조달하고 있다. 입찰 조달방식은 공개 입찰방식 및 초청 입찰방식[92], 경쟁성 담판[93], 단일구매[94], 가격 조회[95],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반드시 정부조달정보매체에 입찰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명 경쟁과 유사한 초청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매체에 자격예비심사공고를 발표하여 응찰자의 자격조건을 공포하고, 그 외 국제입찰은 국제입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국 국제 입찰망'에서 공고한다.

92) 물품·서비스의 경우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중 무작위 방식으로 3개 이상 공급자를 선택하고 응찰 초청장을 송부하고, 특수성을 가진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해야 할 경우 및 공개입찰 비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진행하는 방식이다.

93) 특정 공급자 몇몇과 협상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고 후 공급자 응찰이 없거나 합격한 응찰서가 없는 경우, 기술이나 성질이 특수하여 상세한 규격 또는 구체적 요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입찰공고 소요시간이 고객의 긴급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가격 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본 방식을 이용한다. 담판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개별 공급자와 담판을 진행하여,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94) 유일한 공급자만 있을 경우, 긴급 상황 발생으로 기타 공급자로부터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에 대해 기존 조달항목과 일치성 또는 서비스 요구를 보장하고 원 공급자로부터 보충 조달 시 원 계약 조달 금액의 10% 이하일 경우, 조달자와 공급자 양측이 합의한 합리적 가격의 기초에 의거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95) 조달물품의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가격변화 폭이 적은 정부조달의 경우, 가격조회 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가격조회 통지서 송부하며, 가격 조회 후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중국정부조달개요' 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정부조달 규모는 3조 6,970.6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중국 재정지출의 10.2%, GDP의 3.6%에 해당한다. 중국 조달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협의 공급제도의 확산, 용역 조달시장의 비약적 발전, 공공조달을 활용한 정부 경제정책 지원 증대, 민관협력사업의 확대 등이다.

대만은 1999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정부조달법」에 의거하여 GPA의 공고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공사, 재무, 노동 서비스 조달사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대만은 2008년 12월 GPA에 가입하여 2009년 7월 15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GPA에 양허된 조달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타 지방정부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관급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2021년 기준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은 총 4,090건(표결 금액 기준 5,718억 대만달러)으로 외국 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는 추세를 이어갔다. 이중에서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959건(비중 23.45%), 낙찰 금액은 총 1,974억 대만달러(비중 34.52%)로 평균 비중은 30%전후 수준이다.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방증한다. 주요 장벽으로는 언어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 별도 구비), 입찰행정 비용 등이다. 2021년 가장 큰 규모(122억 대만달러)의 외국기업 낙찰 건은 타이중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방지시스템 개량을 위한 장비 구매 건이었으며, 한국 기업(KC코트렐)에 낙찰되었다.

일본의 정부 조달규모는 2019년 기준 2조 6,213억 엔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총 조달 건수는 1만 5,710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다.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실적을 평가대상에 추가,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관행 시정요구를 받아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조달에 있어서 개방 대상 조달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 비율이 2019년 기준 금액 대비 2.4%, 건수 대비 2.4%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외국기업의 국적별 비율(2019년 기준)은 미국 169건(252.7억 엔), EU 179건(310.4억 엔), 기타국 33건(55억 엔)으로 미국과 EU의 비중이 높다. 분산조달방식 하에서 중앙정부기관 조달은 국토교통성이 건설공사 및 건설컨설턴트 업무 등을, 그리고 총무성이 물품 및 용역 관련 업무를 각각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은 전자조달시스템[96]을 활용하여 참여 자격 신청은 물론, 조달정보 확인,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등 제반사항을 처리토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2018년 기준 정부조달 규모는 GDP의 약 14%(연간 2조 유로)이며 이 중 GPA를 통한 조달규모는 3,520억 유로이다. EU는 단일시장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공공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공공조달 제도를 도입하였다 연 2조 유로에 달하는 EU 공공조달시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는 2016년 4월부터 적용 중인데, EU는 2014년 4월, 3가지 형태의 공공 조달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침인 공공계약(Public Contracts), 공공시설(Utilities), 공공사업실시협약(Concession contracts)을 채택한 바 있다. 동 조달지침은 공공조달 절차의 간편화와 유연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포맷(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으로 조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의 단순화는 자국상품구매(buy national) 정책을 막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조달당국이 비용대비 최적의 가치를 보유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각종 필요 자격

96) 국토교통성 : https://www.mlit.go.jp/appli/file000004.html 또는 https://e-bisc.go.jp
총무성 : https://www.soumu.go.jp/menu_sinsei/cyoutatsu/index.html 또는 https://www.geps.go.jp

증명 시에도 조달 참여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self-declaration방식을 채택하며 낙찰자만 실제 자격 증명을 위해 서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2016년 4월부터 전자조달(e-procurement)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전자공고(e-notification) 및 조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의무화하였다. 특히, E-Certis라는 무료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조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 정보, 자주 요구되는 증명서 및 증명서간 상호 동등성 인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지침은 낙찰기준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 기준이 아니라, 가격 외에도 비용(특히 비용-효율 접근 및 제품생애주기비용 등 고려) 및 생산과정/사회·환경적 기준/혁신적 성격 등을 고려한 품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즉 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EU에서는 조달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있는 경제 구축,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2018년도 발표한 '혁신조달 가이드'에서 조달절차를 혁신 친화적(경쟁적 대화, 혁신파트너십)으로 운용할 것을 공언하였다. 이 중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은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 파트너 선정 계약의 낙찰단계 (2) 낙찰 이후 계약이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혁신단계 (3) 연구개발로 인한 결과물과 실제 구매 단계이다. EU는 세계 조달시장의 절반이 외국 입찰자들에게 폐쇄되어 있지만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EU의 조달시장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방된 공공조달시장을 가지고 있는 EU는 제3국에 대해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IPI(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설립을 추진 중이다. 향후 IPI를 통해 EU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하는 등 제3국의 조달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년 1월 1일 미국과의 FTA 발효, 2019년 5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계기로 정부조달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다. 비차별원칙을 도입하였고 정부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 등록 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여 여부, 자연재해 대응 등도 고려해야 하고,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국내기업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호주 정부조달 입찰 시 전체 정부조달 사업에서 20%를 중소기업에 발주토록 하는 등 규정이 있어 외국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호주는 한·호주FTA를 통해 우리나라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조달시장까지 개방하였고 2019년 5월 WTO-GPA에 가입하였다.

러시아의 공공조달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3,788억 달러로 GDP의 24.4%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인다. 특히 전체 조달시장에서 공기업 조달 비중이 72%에 달한다. 러시아의 조달관련 법률은 중앙 및 지방정부 조달을 규율하는 연방법률(No.44-FZ, 2014년 1월 1일 전면개정 시행)과 공기업의 조달을 규율하는 연방법률(No.223-FZ, 2011년 7월 18일 발효)에 기반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공공조달 절차의 투명성 강화, 조달시장의 독점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당초 정부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공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추세이다. 모든 입찰공고는 조달웹사이트(www.zakupki.gov.ru)에 공지되며 발주기관 홈페이지에도 공지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공공조달 방식은 크게 경매, 입찰, 견적입찰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경매는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공고된 최초가격에서 가격을 낮추어 가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수주토록 하는 최저가 낙찰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가격에 의해서만 수주 여부를 결정하며, 이 방식을 적용할 조달물품 및 서비스는 러 연방정부가 매년 결정하여 공고한다. 일반적으로 경매일 20일 이전에 공식 웹사이트에 경매일자 및 장소, 물품, 시작가격, 응찰 공탁금 등이 공고되며, 통상 시

작가격의 5%씩 가격을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입찰에는 공개 혹은 비공개 입찰이 있으며, 통상 참가비는 없으나 공고되는 최초 가격의 5% 이하 공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응찰서류 개찰일 30일 전에 최초 가격, 평가항목 및 기준, 응찰서류 등을 공식웹사이트에 기재해야 하며, 응찰자들은 모든 응찰서류를 100% 러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개찰시에 모든 응찰서류를 개봉하여 공개한 후, 10일 이내에 응찰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 심사 대상을 확정하고 수주업체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된다. 탈락한 업체들은 탈락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업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최초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견적입찰 방식은 평균 시장가격을 손쉽게 알 수 있거나, 조달품목의 가치가 25만 루블을 넘지 않거나, 시작 가격이 25만 루블보다 낮고 경매가 실패했을 경우 사용하는 방식이다. 웹사이트에 응찰 정보를 게재하여 서류를 제출하되, 또한 축적된 과거 응찰서류 검토를 통해 잠재 계약자를 발굴하여 개별적으로 응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위원회에서 응찰서류를 검토한 후, 적격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토록 한다. 러시아 정부는 정부조달법(No.94-FZ)에 근거하여 정부조달 입찰에서 최종 선정된 외국산 제품 중에서 경제개발부령(No.217)에서 정한 품목은 최종 낙찰 가격보다 15% 낮은 금액에 공급하는 제도를 2011년 시행하였다. 2012년 3월에는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 돼지고기, 농기계 및 장비, 종이류를 대상품목에 추가하였다. 이후 2014년 3월 25일 발표된 경제개발부령(No.155)에서 지정된 품목의 경우 EAEU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가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러시아 제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도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2014년 엔지니어링 제품 및 경공업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였고 2015년에는 의약품과 소프트웨어, 2017년에는 식료품 및 보안제품, 2018년에는 스포츠 일부 용품(소총, 총알 등)을 제한하였다. 2019년에는 국방 및 안보 강화로 레이저 금속 가공, 금속 선반, 보링 머신, 밀링 머신 등을 조달제한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러시아가 수입대체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러시아 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4월 30일자 정부 결의안을 통해 기계 · 자동차 · 경공업 제품 · 소프트웨어 등 127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내 생산 불가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산 제품 조달을 금지하였으며[97],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마스크 수요 증가로 공공조달 부문에서도 2021년까지 외국산 마스크의 공공조달을 금지하였다[98]. 또한 의료 장비, 특정 방사선 제품, 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특정 식품 등의 경우 두개 이상의 러시아 제품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시 외국제품의 조달을 금지하였다. 한편,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입찰시 EAEU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가격 혜택을 부여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사이버 보안 강화 차원에서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및 통신장비 국산 인정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산 IT 제품의 공공조달을 제한하고 있다(상세 내용은 '디지털 무역 장벽' 부분 참조).

말레이시아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 시장을 미개방하고 있으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22.11.29)되면 정부조달 시장이 CPTPP 회원국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CPTPP 회원국의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지만,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 사업에만 참여할 수가 있고, 입찰 가능 하한선이 높은 프로젝트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은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만링깃, 5만링깃, 10만링깃, 50만 링깃 각각을 기준으로 재무부에서 규정한 조달계약의 범위에 제한

97) https://etpgpb.ru/posts/9688-pravila_natsionalnogo_rezhima_pri_zakupkah_izmeneniya_i_praktika_primeneniya/

98) https://iz.ru/1104959/2020-12-26/v-rossii-zapretili-goszakupki-importnykh-meditcinskikh-masok-do-kontca-2021-goda

이 규정되어 있다.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 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말레이계 기업 육성을 위해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구매제도는 자국의 자원 이용을 극대화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 촉진, 부미푸트라 기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현지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가 발행하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는 현지인 지분 70% 이상인 기업만 대상으로 발행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며, 입찰 및 낙찰 과정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자국기업 우대 정책[99]과 불투명한 조달체계로 인해 외국기업의 말레이시아 현지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시장은 미개방인 바, 위와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실정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조달청과 같은 중앙조달기관은 없지만 기획투자부가 공공조달 총괄기능을 수행하며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국(PPA: Public Procurement Agency)에서 조달업무를 주관한다. 베트남의 공공조달제도는 2013년에 개정된 「입찰법」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은 공공조달 입찰참가에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차별적 조건을 두고 있다. 국제입찰이 가능한 외국기업의 경우 내국기업과의 합작이나 공동참여만 가능하며, 국내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하므로 현지화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베트남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CR마크, 에너지효율인증, 유·무선통신 관련 인증, ISO 국제화표준인증, GMP 의약품

99) 말레이시아 국제입찰 중 10만~1500만 링깃 규모의 조달의 경우 부미푸트라 기업에게 2.5%~10%의 특혜 세제를 부여한다.

인증 등이 필요하다. 외국기업이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① ODA 프로젝트에서 공여국의 국체 입찰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조달 입찰인 경우, ③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없는 경우 혹은 유찰된 국내입찰의 경우이다.

베트남은 코이카(KOICA)의 무상원조를 통해 2009년 국가전자조달 사이트(National e-GP System)를 개설하였으며 2016년부터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자입찰에 대한 2016~ 2025 마스터플랜(결정서 1402/QD-TTg)이 2016년 7월 13일에 승인되었다. 본 플랜에 따르면 2025년까지 ①전자조달시스템 상에 입찰 과정 전체 100% 등록, ②개정 입찰법 범위에 속하는 입찰 중 최소 70%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실행, ③연속구매, 집중구매 관련 활동 시스템 상에서 100% 실행'이 목표이다. 그 외에도 2017년 5월 조달 시스템을 통한 컨설팅, 시공, 물품구매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시행규칙 초안이 마련되는 등 최근 베트남 정부조달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달 관행이 법 규정보다 우선시 되고 있어 자국기업을 미리 선정한 다음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의 물품구매는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 참여해야 하며, 현지 파트너가 없을 경우에는 입찰정보 수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정부조달은 관련 법규 및 제도는 개선되었으나 시장의 조달관행은 여전히 남아있어 시스템과 시장환경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브루나이의 정부조달 관련 법령으로는 「83 금융규정(Finance Regulation of 1983)」과 재무부 고시(Financial Circular) 「10/1992」 및 「17/1993」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은 재무부 산하 국가조달위원회(State Tenders Board) 및 12개 부처(총리실, 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내무부, 교육부, 산자부, 종교부, 개발부, 문화청소년체육부, 보건부, 통신부)별 조달소위원회(Mini Tender Board) 등 총 13개 조달위원회에서 발주한다. 국가조달위원회는 계약규모가 15만 브루나이달러 이상인 조달사업을, 부처별 조달소위원회는 15만 브루나이달러 이하인 조달사업을 수행한다. 브루나이는 현재까지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최근 타결된 TPP에서 단계별 양허방식으로 자국의 조달시장을 개방하였다.

싱가포르의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년 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조달 포탈(www.gebiz. gov.sg)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달방식은 조달규모에 따라 소액구매(small value purchases), 견적서 입찰(quotations), 입찰(tenders)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입찰은 다시 공개경쟁입찰(open tenders), 선별입찰(selective tenders), 제한입찰(limited tenders)로 구분된다. 소액구매(6천 싱가포르 달러 이하)는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지만 견적서 입찰(6천~9만 싱가포르달러)이나 입찰(9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대상이 되는 구매 건은 정부조달 포탈에 사전 공지하여 경쟁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에 등록해야만 포탈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탈에 등록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년 2월 회원국간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 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자체 웹사이트를 가진 조직은 입찰 내용을 동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하며, 자체 웹사이트가 없는 조직은 National Information Center (NIC)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래 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

(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동 협정은 정부조달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데 2012년에 정부조달법에 근거하여 정부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공여 단체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 공여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부패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캄보디아는 공기업 수가 적은데, 대표적인 공기업은 Electricite du Cambodia, Phnom Penh Water Supplu Authority, Rural Development Bank, Green Trade Company, Phnom Penh Autonomous Port, Sihanoukville Autonmous Port 등이며 모두 정부조달법 대상이다. 우리 정부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으로 「캄보디아 전자조달체계 구축 및 해외공공조달시장 역량강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공개입찰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5월 공공조달관리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조달절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무를 위한 규정(Frame work)을 제정하여 국제 입찰정보는 신문광고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 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 왔다. 새로운 정부는 정부조달 관련 부패 및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위해 과거 수주 사례 전면 재검토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과테말라의 국가계약법[100]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지방자치단체(Municipalidad)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2015년 말 개정된 국가계약법 제43조에 따르면 9만 께찰을 초과하는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조달은 반드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 전 90만 께찰에서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입찰 참가 희망자는 사전자격심사등록서[101]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내용은 정부 입찰사이트인 Guatecompra(www.guatecompra.gt)를 통해 고지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에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2015년 국가계약법 개정 이전에는 국가간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 법인으로 한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적 입찰을 위해서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라과이는 법률(「Ley 2,051/03」, 「Ley 3,439/07」, 「Decreto 21909/03」, 「Decreto 5174/05」)을 통해 중앙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방산장비 포함) 구매 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 등을 재무부 산하 조달청(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Publicas)의 감독과 통제 하에 각 기관책임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국제입찰은 국제금융기관(특히, IDB 및 CAF)의 차관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해당 원조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경부 간에 조율된 입찰 규정에 따라 입찰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라과이 「정부조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 업체에 대해 모두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

100)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

101) Registro de Pre-calificaciones

나, 국산품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국산품에 대해서 최대 10% 정도까지 가격 가산점을 부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기업이 파라과이 현지법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입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정부조달계약에서 자국 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기본정책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국제조약(FTA 등)에서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③응찰자가 없을 때, ④국제금융기구(IMF 등) 차관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때, ⑤입찰참가자가 금융과 함께 들어오는 때 등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기업과의 합작이나 컨소시엄을 통한 조달시장 진입이 바람직하다.

에콰도르의 정부조달 각종 입찰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 내 관세청에 단일회사등록(RUP: Registro Unico de Proveedores)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UP 신청서, 출신국가 발행 사업자등록증 및 번역문(아포스티유 받을 것), 재정증명서, 지정한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외국인인 경우 여권, 에콰도르인의 경우 Cedula 혹은 투표증명서 사본 동봉) 등이 필요하다.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회원국이 아니다. 정부조달은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법」(2000년 4월 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재무부의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 규제 위원회(UNAC)가 조달관련 정책을 수립하나 조달 자체는 각 정부기관에서 담당한다. 현 정부의 공개입찰 하한선(threshold)은 87,600달러(상공업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240배)이다. 동 규모 이하 입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관련 법규는 상품·서비스·건설서비

스 모두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입찰조건이 동일한 경우 국내기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조달 시장 규모가 큰 편이다. 또한 우루과이는 WTO GPA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조달은 국내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조달 및 계약은 조달청(ACCE)이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조달 프로젝트는 조달청 홈페이지[102]에 게재해야하며,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위한 절차도 홈페이지에[103] 소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한 조달이 이루어지지만 계약규모에 따라 간이절차나 수의계약이 허용되기도 한다. 법령「194/997」에 의해 외국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입찰 시작일 15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정부조달을 국내산업의 보호와 장려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법령에 의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기업의 입찰가격이 외국기업보다 10%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중소기업 할당분(계획된 조달 물량의 10%)을 두고 있다. 입찰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되고 입찰정보 입수가 어려워 조달시장 진출 시 장벽으로 작용한다. 우루과이 헌법에는 조달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페루는 WTO GPA 비회원국으로 조달 시장이 개방적이지는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1998년도 신 정부조달 법령(「Ley No 26850」)을 제정했고 조달 절차 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투명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정부조달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기관인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CONSUCODE: Consejo Superior de Contratos y Adquisiciones del Estado)"를 설립한 바 있다. 이후 정부조달 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재정경제부(MEF) 산

102) http://www.comprasestatales.gub.uy/

103) https://www.comprasestatales.gub.uy/inicio/proveedores/rupe/rupe

하에 업무상 독립성을 부여한 조달청인 국가계약 최고감독청(OSCE;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을 두어, 이전의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를 대체하였다. 또한 2014년 개정 법률 제30225호 제4조에 규정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국가 및 지방정부, 국영 기업의 계약내용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페루 정부의 인프라 부문 투자가 감소하면서 2019년에 비해 조달규모가 감소하여 217.2억솔(2019년 349.4억솔)을 기록하였다. 전체 49,208건 중 입찰 후 계약은 687.9억솔(19,904건), 직접계약은 46.7억솔(9,354건), 기타(옥션 등)는 60.0억솔(5,596건)을 차지한다. 계약방식별로는 공개경쟁입찰이 39.8%(2,135건, 964.4억솔), 국제입찰 2.8%(1,580건, 8.1억솔), 간이입찰 22.3%(19,904건, 67.6억불)이며 계약대상별로는 물품 및 서비스가 45.1%, 건설서비스가 40.1%이다. 조달주체별로는 중앙정부 78%, 지방정부(Regional 및 Municipal) 71%이며, 이외에도, Petroperu(석유공사), FONAFE(기업활동기금) 등이 공공발주를 시행한다.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전산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28일부터 페루 정부기관 입찰 참여를 하고자 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들을 사전에 페루 조달청(OSCE: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벤더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을 위해서는 페루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세번호(RUC N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 에이전트나 지사,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페루 내 지사나 법인이 있어 납세번호(RUC No.)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이들을 통해 직접 입찰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기업은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개인 또는 법인)를 선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와는 2011년 발표된 한·페루 FTA를 통해 양국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였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 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 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는 적

용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주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주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5년 1월 1일에 발효한 한·캐나다 FTA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2016년 1월 14일 개정 정부조달협정이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어 캐나다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건설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미국과의 CAFTA 협상(2009년 1월 발효)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가 매우 유리해졌다. 이에 따라 입찰기관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충분하게(최소 15일 이상 공고) 설정해야 하며 상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한 규정 설정도 할 수 없다.

코스타리카는 2010년 우리 조달청과 삼성 SDS의 지원으로 나라장터(KONEPS)를 모델로한 정부조달시스템인 SICOP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공공기관의 약 90%가 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정부조달 지침에 따른 정부조달 규정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경제개발부에서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해당분야 조달을 시행한다. 정부조달 및 입찰 관련 내용은 EU 규정(Directive 2014/24&25)에 근거한 정부조달 법률(Law 4412/016)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법률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 따라 각기 규정되었던 조달 법률을 통합한 조달법규이다. 동 법률은 조달 및 입찰과정에서의 입찰자간의 동등한 대우와 차별금지를 명문화하여 경쟁을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 중앙전산 기록소'(Central Electronic Registry for Public Procurement, KIMDIS)에 입찰 및 조달 관련 모든 생애주기 절차 관련 기록 및 문서를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 전 과정을 온라인형태로 제공하는 '국가전자입찰시스템'(National System of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ESIDIS)

을 구축하여 모든 조달과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조달 및 입찰의 경우 회계감사기구의 사전 법률검토 작업을 통해 조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EU는 공개입찰 상한기준(2년 주기 갱신)이 설정되어 있어 그 이상의 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기준 금액 이하 조달은 각 회원국에 자율권을 부여하지만 EU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이러한 EU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준 금액은 6만 유로이다.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기업의 입찰 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이 없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06년 11월 「정부조달규정(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을 국내법으로 완전히 수용하였다. 독일의 공공기관, 연방주, 지자체, 연방정부, 사회보험 기관 등 총 30,000여 기관에서 연간 100만 건의 조달계약을 체결한다. 현재 공식 통계는 없지만 2020년 10월 1일 독일 경제부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장관 재임 시 공공 조달 통계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였으며, 2022년 10월 독일경제·기후보호부(BMWK)는 공공조달 관련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약 87,000건, 총 528억 유로 규모의 공공조달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지자체 조달은 45,000건으로, 총 158억 유로의 공공조달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 지침에 의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며 독일 내 관보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또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Berücksichtigung mittelstae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을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며 발주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르비아 정부는 과거 공산주의체제에서의 조달시장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정부조달법」을 제정하였다. 세르비아의 조달체제는 EU의 정부조달 지침에 근거하며 EU 조달 지침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세르비아의 조달 규모는 2020년 기준 GDP의 6.88%인 36억 달러이다.

2019년 세르비아 정부는 EU 정부조달 지침과의 조화를 위해 정부조달법을 추가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 등 정부조달 절차, 비용,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및 부패 방지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2020년 2월 제정된 "선형 인프라시설(Linear Infrastructure Project)에 대한 특별법"은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등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조달법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고, 정부가 조달 절차에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EU는 조달 절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부조달법의 취지와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언급하였으며, 2021년 EU집행위원회 국별보고서는 코로나19 연관 품목을 이유로 상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조달법 적용 예외 품목 및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에도 동 조항의 폐지 필요성을 상기하면서 선형 인프라시설 관련 공공조달 투명성 증진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104]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 연방정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칸톤 주정부의 조달은 WTO GPA 양허 하한선에 한하여 외국인의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한·EFTA FTA는 정부조달 분야에 관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원용하고 있다. 양허 하한선은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조달 및 서비스의 하한선은 23만 스위스 프랑, 빌딩은 870만 스위스 프랑, 물·에너지 및 교통회사가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는 70만 스위스 프랑이다. 한편 주정부가 계약 당사자일 경우는 2001년 개정된 주정부간 공공조달협약(AIMP)에 의하여 건설은 870만 스위스 프랑, 조달 및 서비스는 각각 35만 스위스 프랑이 하한선이다. 스위스 정부의 입찰공고는 스위스 공공조달 포탈사이트(www.simap.ch)에 게재된다.

슬로바키아는 1999년 「공공조달법」을 제정, 2000년 중앙정부기관인 조달청(UVO)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하였으며 2004년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였다. 슬로바키아의 조달 규모는 2020

104)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ites/near/files/serbia_report_2020.pdf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년 기준 약 46억 유로이다. 2020년 EU 집행위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공공조달은 간소화 노력이 아직 부족하고 특히 복잡하고 긴 검증 절차가 EU기금을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령 해석 및 교육을 지원하는 공공조달청 지역사무소 신설,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슬로바키아 정부가 EU 회복기금 사용계획의 개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조달법 개정안(Act No. 395/2021 Coll.)이 2021년 10월 국회 승인되어 2022년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일부 공공조달절차가 신속해지고 조달청의 감독기능이 강화되며, 공직자 소유 회사와의 계약이 금지되는 등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 조항이 보완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구매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전문보증기관이 신설되며, 전자감사 등 전자화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슬로바키아 정부는 EU 회복기금 사용계획의 투자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기관 구매자 교육·훈련을 위해 2.1백만 유로를 투입하는 등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영국의 2019/20년 기준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규모는 약 3,059억 파운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영국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 및 재정건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한 보수당 단독정부도 공공조달을 재정절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립정부 시절인 2014년 4월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CCS(Crown Commercial Service)를 확대·신설하여, 공공조달의 중앙 통제를 더욱 강화한 바 있으며, 대형 공급사와의 계약 시 회계공개(Open-book)를 요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하고, 전자역경매, 상용물품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확대 등 공공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영국은 중소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제공 및 하도급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제품혁신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초에 조달공고 통합조회 웹사이트(Contracts Finder)를 구축한 데 이어 에너지, 행정용품, 시설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향후 3~5년 동안 있을 조달사업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주요 조달품목은 공공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주요 조달품목은 IT 장비 및 서비스, 통신장비, 군수용품, 의약품, 사무용품 및 가구, 식품, 청소 서비스, 인쇄, 출판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는 'Find a Tender'를 통해 공공조달품목을 검색할 수 있으며, 기존 공공조달 사이트인 Contracts Finder, MOD Defence Contracts Online, Public Contracts Scotland, Sell2Wales, eTendersNI 등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인 2018년 6월 영국 정부는 WTO GPA에 독립적으로 가입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으며, 2019년 2월 가입이 승인되었다. 따라서 영국 조달시장에 한국기업은 기존 기준에 따라 접근가능하다. 그러나 언어장벽 및 A/S 등 문화적·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계약담당자들이 기존 공급자와의 관계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신규 공급자들이 진출할 기회가 적고 아직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영국 조달시장 진출은 쉽지 않다 영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안서 제출 후 협상을 진행하므로 조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들을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EU 공공조달지침이 개정·발효됨에 따라, 영국도 그에 준하여 2015년 2월 국내 조달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을 개정한 바 있다. 전자조달 강화 등 기존에 비해 조달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계약(lot) 분할 허용, 입찰자 보유 전문 인력 및 사회적 요소(social aspect)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영국 조달시장은 한국의 물품 중심의 공공조달 거래 관행과 달리, 물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복합적인 구매가 많아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들은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조달기관, 주계약자,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체코의 공공구매 및 입찰절차, 입찰조건 등은 공공구매 관련법인 「법령 No.229/1996」에 명시되어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법(「40/2004 COL」)이 2004년 5월 1일 발표됨에 따라 정부조달에서 외국기업은 체코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자동차 조달의 경우 실질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을 제시하고, 자국산과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조건을 차등화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체코철도공사(2012년 3월)와 재무부(2013년 3월)의 조달 입찰에서 '최소길이'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며, 프라하공항공사(2012년 10월) 조달입찰에서는 자국 브랜드인 스코다 자동차와 스코다 이외의 차량 납품으로 구분하고, 스코다 이외의 차량은 서비스 비용도 입찰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입찰조건을 실질적으로 차등화 하여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참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차별적 조건 요구는 WTO GPA 제3조 2항(내국민대우) 및 6조 1항, 2항(기술규격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어 주체코한국대사관 등 우리나라 유관 부서에서 체코에 개선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체코의 외국산 자동차 입찰 참여 제한이 개선되어 2015년 9월부터 한국 자동차의 체코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05]

크로아티아 정부는 EU의 정부조달지침(Directives)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OG No. 90/2011)을 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새로운 정부조달법(OG No. 120/016)이 적용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새로운 정부조달법은 수도, 에너지, 운송, 우편 서비스 부문도 EU 정부조달지침과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공공 건설 계약, 공공 서비스 계약, 공공 물품 조달 계약 등에 있어서 전자 입찰 공고, 특정 입찰 절차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EU 정부조달 지침 변화에 따라 국내조달법을 개정하며 EU조달지침과의 조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공공입찰에는 공개경쟁 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등이 일반적이나 건설 공사의 경우 설계공모(design contest)가 추가되기도 한다. 20만 쿠나(약 2만7천 유로) 이상의 상품·서비스 구매와 50만 쿠나(약 6만6천7백만 유로) 이상의 공사 계약은 모두 새로운 정부조달법의 적용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조달(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동 법은 건설공사 계약(Works Contract), 물품조달 계약(Supply Contract),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에 모두 적용

105) 현대차는 2015년 9월 체코 경찰에 경찰특장차(ix 35) 150대를 납품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체코 국방부에 8대(i40)와 체코 도로공단에 195대(ix20 42대, 투싼 119대, i40 34대)를 납품하였으며, 2016년 1월에는 프라하 시경에 40대(i30)를 납품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된다. 2020년 기준 크로아티아 공공조달에서 공개입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이며 모든 입찰 정보는 크로아티아 전자 공공입찰 기관인 OGLASNIK 및 EU 관보(TED)에 등록된다. 입찰희망자는 OGLASNIK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도 가능하다. 프랑스의 2019년 기준 조달시장 규모는 1,108억 유로이며 계약 건수는 173,764건에 이른다. 분야별 비중은 물품이 34.6%, 노동이 26.3%, 서비스가 39.0%로 물품과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14/23/EU, 2014/24/EU, 2014/5/EU)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공공시장법(CMP, Code des Marchés Publics)과 2016년 3월 25일 시행된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2016-360) 등을 통합하여 공공구매법(CCP, Code de la Commande Publique)을 제정하고 2019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정부조달 대상은 사업(work) 계약, 물품(supplies), 용역(services) 계약 등으로 구분된다. 계약방식은 크게 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으며, 각 방식별로 조달 절차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공공조달 금액이 EU 공공조달 하한선 이상이면 반드시 유럽연합 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하한선 이하인 경우에는 프랑스 공공입찰관보(bulletin officiel des announces des marches publics) 또는 프랑스 법정공고관보(journal announces lecale)에 공고하고 있다. 프랑스 「공공시장법(CMP)」에서는 조달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 이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나는 WTO GPA 가입국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였다(2016년 개정). 동 법은 경쟁 입찰, 제한 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입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입찰절차는 발주기관이 공공조달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시행하며, 가나 조달청(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은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ppa.gov.gh)에 공지한다. 입찰방법 중에는 국제·국내 경쟁 입찰이 가장 선호된다. 공공기관은

10만~1,000만 세디 상품 구매, 20만~1,500만 세디 규모 공사, 5만~500만 세디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1,000만 세디 이상의 상품 구매, 1,500만 세디 이상의 공사 또는 500만 세디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한입찰 및 수의계약은 조달청 심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행하며, 조달 성격상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시간 또는 금액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세계은행/IMF,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랑스 개발청 등 해외 원조기관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과 달리 가나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수주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나는 1980년대 말 300여 개에 달하던 공기업을 1990년대 Rawlings 정부부터 민영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수도, 석유, 전기, 광물 등의 분야에 약 30여 개의 공기업이 존재한다. 특히, 전력분야 공기업의 경우 인프라 투자 부족 및 비효율적 운영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가나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핵심으로 한 전력분야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가나 정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미국 정부로부터 4.9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는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Compact를 체결하고, 국영 가나전력회사(ECG: Electricity Company of Ghana)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계약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마찰이 발생하여 가나 정부는 관련 계약 추진을 일방 종료하였다. 이후 가나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독립발전사업자(IPP)들과 개별 전력구입협정(PPA)을 체결하였으나, 전력구입협정(PPA) 과잉 체결로 인해 전력 생산 과잉 문제가 발생하자 가나 에너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독립발전사업자(IPP)들과의 추가 PPA 체결을 중단하였으며, 추가 전력 생산 관련 신규 투자자는 2023년부터 다시 모집할 계획이다. 석유 분야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나 현지에 진출한 주요 석유기업들의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2020년 추진할 예정이었던 유전 탐사계획들이 연기되어 가나 정부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중단되었다. 또한 당초 예정되었던 기업들의 시추 및 기존 생산시설의 유지·보수 활동도 연기 또는 취소되어 많은 국내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였다.

온두라스는 WTO GPA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온두라스 국가조달계약법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는 55만 렘피라(약 USD 23,404), 건설서비스는 200만 렘피라(약 USD 85,106)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입찰 절차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자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국제경쟁 입찰을 하지 않으며, 컨설팅 서비스 입찰은 온두라스 국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촉진·개발법(Ley para el Fomento y Desarrollo de la Competitividad de la Micro, Pequena y Mediana Empresa)」에 의거, 자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용역 구매 비중을 30%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온두라스의 정부조달 절차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온두라스 로컬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최근 온두라스 정부는 "표준입찰서식"을 지정하여 미주개발은행(IDB) 및 세계은행 등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불을 제외한 조달 절차를 조달청(ONCAE) 웹사이트(www.oncae.gob.hn/ www.honducompras.gob.hn)에서 실시하는 등 부분적 전자조달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적 비효율성과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라도 입찰 조건을 자국기업과 전문인들에게 유리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조달법(Ley de Contratacion del Estado)」,「전자매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구매에 대한 법(Ley de Compras Eficientes y Transparentes a traves de Medios Electronicos)」 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 12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으나 동위원회 가입을 위한 협의는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왕령에 따라 정부조달을 실시하나 대부분의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안별로 협상을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 계약(약 1.3억 달러 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투자 규모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달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외국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물론 Saudi Aramco(국영석유회사), SABIC(석유화학회사), SEC(전력청), STC(사우디 텔레콤)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시 까다로운 사전기술심사(PQ)를 거쳐야 하며 입찰 참가 대상을 발주처에 등록된 Vendor 또는 Contractor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ARAMCO(국영석유회사)는 현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자국산 기자재 조달 비율 강화 정책인 IKTVA(In-Kingdom Total Value Add Program)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2021년까지 자국산 제품 구매비율 70% 달성을 목표로하며, 동 프로그램은 ARAMCO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된다. 또한 ARAMCO 프로젝트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사우디인 의무고용(Saudization), 사우디산 제품 조달 비율, 프로젝트 총액 대비 R&D 투자 비율 등의 IKTVA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ARAMCO의 자회사인 SABIC도 NUSANED 프로그램을 적용 중인데,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2030년까지 GDP기여도를 각각 65% 및 3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현지화를 추진 중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외국기업이 사우디 정부 및 기관, 정부의 자금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본부(ROHQ : Regional Operating Head Quater)를 사우디 내에 설립해야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0년 2월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국기업에게 무기를 제외한 기초 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개에 이른다. 사우디 국방부는 현지화 비중을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UAE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방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예산과 에미리트별로 수행하는 다양한 산업개발 프로젝트, 국영기업의 구매예산을 포함한다. UAE 정부는 정부조달에 대해 현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지만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외국기업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조달은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방식은 일반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견적, 수의계약의 4가지 방식이다. 한편 입찰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입찰 모두 UAE 국적 파트너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 외국인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결정 등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입찰의 경우에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의 명의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동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석유·가스 분야 플랜트 발주가 많은 UAE 아부다비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발주사업에 국내가치(ICV: In-Country Value)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ICV는 자국 내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 증가를 유발하여 GDP 다변화를 촉진하고, 민간분야에서 자국민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핵심 공급망의 현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ICV 점수 증명서가 입찰 참가를 위한 강제 요건은 아니나, 미제출 시 입찰참가기업 재무평가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ICV 점수가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화나 다름이 없다. ICV 평가 및 인증은 ① 제조, ② 조달, ③ 하도급, ④ 투자, ⑤ 현지인 고용, ⑥ 외국인 공헌 등 6가지 항목으로 이뤄진다. 아부다비 석유공사가 선정한 6개 컨설팅 업체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서를 받으면 12개월간 유효하다. ICV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중국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함께 사업 수주에 불리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2019년 아부다비 경제개발부(Abu Dhab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는 현지화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ADNOC의 ICV와 비슷한 아부다비가치(Abu Dhabi Value)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발주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는 공급업체가 대상이 된다. 2020년 2월, ADNOC과 아부다비 경제개발부는 두 제도

를 통합 운영키로 하는 아부다비 현지 콘텐츠 프로그램(ADLC; Abu Dhabi Local Contents Program) 양해각서를 체결, 협력 증진과 현지화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양해각서에 따라 두 기관은 아부다비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점수 산출 방법을 통합하였으며, 이후 민간 및 준정부기관도 프로그램에 합류함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통합된 프로그램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산하 산업개발실(Industrial Development Bureau)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란은 법률(the Constitu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123조)에 따라 정부와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국제입찰은 1) 이란 내 관련업체가 없다는 증명, 2) 최대한 국산화 제품 사용(비율 없음), 그리고 3) 경제부 및 관련부처 승인 하에 이루어진다. 공사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적정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업체가 공사 총액의 51% 이상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시 51% 이상의 품목은 반드시 국내 자재를 조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 자재가 없는 경우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해외 자재를 조달할 수 있다. 2017년 8월 이란 무역부는 국내 자재 및 서비스 조달 극대화가 요구되는 10개 산업분야(자동차, 섬유, 기계장비, 금속성 광물, 비금속성 광물, 식품건강, 제약, 전자통신, 화학, 소프트웨어)의 상세품목을 선정 발표하였다. 정부 조달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과 제한입찰이 있어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한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가 제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자체조달을 한다.

이스라엘은 WTO GPA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부로서 현지조달, 기술이전, 투자, 구상무역 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이 인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계약금액의 35% (GPA 서명국일 경우 20%)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달

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경제부 산하 산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국제협력계약을 통하여 이행되며, 동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은 이스라엘의 정부조달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스라엘 산업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개발·공동생산,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하청 또는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의 구매 방식으로 상쇄(offset)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조달 입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카타르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조달 계약은 「Law No. 26(2005)」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방부, 경찰 및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정부의 표준 조달 입찰절차는 2개 방식으로 구분되며, 1백만 리얄(274,725달러) 이상의 조달은 재정부 산하의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조달은 현지 업체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각 부서의 부내 입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장관은 CTC의 Recommendation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만일 입찰규모가 50백만 리얄(13.7백만 달러)을 초과하는 계약은 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CTC의 관장 하에 있지 않은 국방부는 방산물품 구매를 관장하고,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2015년 11월 24.일 공고(공고 후 6개월 후 발효)된 입찰에 관한 규정 Law No.24(2015)는 총리가 각 정부부처 소속의 5인에서 7인으로 구성된 입찰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재조달과 관련, 현지 법령 「1987 Law No.6」(정부 조달 시 National Products와 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우선권을 주는 통일된 규칙)에 따라,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National Products)에 대하여 가격측면에서 유사 외국제품 대비 10%의 우선권을 주며, GCC 회원국 중의 하나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대하여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자국 및 GCC 국가 생산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조달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쿠웨이트 발주처에 벤더로서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다만, KOC(Kuwait Oil Company),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등 국영기업 발주처는 벤더등록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VEC: Vendor Evaluation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으나, MEW(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등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해당분야 차관보(Asst. Under-Secretary)가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분야는 국방·보안·안전·위생·식품·화학 등이며, 등록대상 업체는 해당품목 제조업체에 국한한다. 벤더등록 희망업체는 쿠웨이트 내 적격업체를 발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에이전트를 통해 해당 발주처에 벤더로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주처에 따라서는 동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나 KOC는 1년에 2회(1월, 6월)로 국한하고 있으며, 기간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중앙입찰위원회(CAPT)에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의 발주를 전담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기업이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입찰위원회 벤더에 등록하고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찰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해서 현지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쿠웨이트는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Oil & Gas 플랜트 프로젝트, 민자담수발전사업, GCC연결철도, 메트로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프로젝트의 추진과 연계한 사전 벤더등록이 필요하다. 정부 발주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외국기업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으나 외국기업이 석유개발 및 생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쿠웨이트化(Kuwaitization)정책에 따라 쿠웨이트 업체의 공사가 가능한 주택 및 도로건설 공사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쿠웨이트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지기도 한다. 정부 발주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금액 중 역외부문(offshore portion)의 최대 35%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오프셋(offse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 6월부터 운영이 중지되었고 2015년 8월 24일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No.1212 of 2015에 따라 오프셋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이집트에는 정부조달을 위한 별도 입찰전담기관이 없고 각 정부부서 및 기관별로 필요시 입찰을 공개 공시하여 조달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 관련 국영기업은 117개사(제조업 총생산의 70~80%)로서 동 국영기업에서 대부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게차, 의료기기 입찰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산 제품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입찰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사례가 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은 현지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의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평상시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입찰정보는 Al Ahram 및 Al Gomhuria 등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 인사(구매담당자)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한편 국방부 입찰시 주의할 점은 품질 요구수준이나 가격협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입찰 추진 절차는 병기국으로부터 의향서를 접수 →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유 제안서 제출 → 1차 기술 평가(3~4개월 소요) → 입찰 초청서 접수 후 개별 협상(통상 10회 이상 개별 가격 협상, 조건 합의) → 입찰 참가 → 낙찰 후 가격 재협상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몽골 정부는 2005년 조달법을 제정, 2011년 6월 및 2019년 3월에 각각 개정하여 국가 및 지역 조달체계를 확립했다. 국가적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업체 선정과 물품 조달은 조달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수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조달을 수행하도록 개정했다. 몽골에서 공공조달의 정책 기획, 법령 개정 및 시행과 관련 업무는 재무부 산하 공공조달정책조정국이 관할하며, 대규모 국책산업과 관련 조달은 몽골정부 정책실행기관인 국유자산청, 조달국(이하 조달청)에서 관리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도 울란바토르시 및 9개구, 21개도에 각각 조달부서를 별도로 두어 각 지자체장이 지역 내 조달을 수행

한다. 몽골 '조달법'상 외국기업의 입찰 참여에 대해서는 조달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정책으로 자국산 물품 공급 업체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100억 투그릭 이상 금액의 공사, 1억 투그릭 이상 금액의 물품 조달 입찰에 외국기업 참여는 허용하고 있으며, 현지 발주처는 해당 입찰 공고를 주요 신문에 공고해야한다. 최근 자원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제조업 발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질과 규격에 맞는 물품은 현지 생산품을 조달하도록 법제화했다. 해당 물품 목록은 정부가 작성하며 2019년 기준으로 155종 현지 생산품 목록이 작성되었다. 그 외에도 현지생산 물품 및 폐기물 재가공 생산 물품을 조달하는 기업, 해당 공사의 50% 이상을 자체 진행하는 기업, 지분 50% 이상을 몽골기업이 소유한 외국인투자 합작기업, 현지 생산 물품 및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기업, 전체 인력의 90% 이상 현지인력 고용기업, 30% 이상 장애인 고용 기업, 전체 공사의 50% 이상을 국기업이 수행하는 몽골기업과 외국계기업의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시 현지 생산 물품 견적의 10%, 현지 중소기업 생산 물품 견적은 15%, 공사 견적은 7.5%를 자동인하 평가하는 특혜부여 제도가 있다. 몽골 정부는 정부조달 과정의 신속성, 정보의 공개 및 투명성 확보, 감독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2015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사업을 실시해 기존의 정부조달 모니터링 시스템, 정부조달 통합정보시스템, 전자조달 시스템 을 통합하여 정부조달 시스템 (www.tender.gov.mn)을 개발했다. 또한 정부조달 입찰의 공고 및 서류 접수, 결과 통보 등 과정이 100% 전자로 진행됨을 법제화했다. 입찰 참가자들이 낙찰업체의 정보를 전자로 확인하고 정부기관 조달 감독 체계가 도입되었다.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TBT 개관

무역상 기술장벽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및 표준관련 제도는 과거 각국이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할 때 주로 자국 상품 및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제정한 결과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이후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국가간 표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표준 및 관련 제도의 차이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간 상품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무역상 기술장벽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및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TBT 협정은 최혜국대우원칙 및 내국민대우원칙과 관련하여 비차별원칙과 더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채택 또는 적용을 금지하는 필요성 원칙, 국제표준을 (예외적인 상황 외에) 기초로 사용할 의무, 동등성 및 상호인정, 투명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다자무역규범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술장벽은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해서는 GATT 1947체제에서 이미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이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GATT 제Ⅲ.4조 및 제Ⅺ.2항 그리고 제ⅩⅩ조(d)호 등에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중요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도쿄라운드(Tokyo Round, 1973~79년)에서 32개국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수국가간 협정인 이른바 '표준규약(Standards Code, 정식명칭은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채택된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1986~93년)에서는 도쿄라운드에서의 표준규약의 규정들이 구체화되고 강화된[106] 새로운 TBT협정이 채택되었다.

TBT협정의 적용대상인 TBT 조치들은 식품포장에서 자동차안전에 이르기까지 실제 교역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품목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건강과 관련한 의약품규제 또는 담배의 상품표시부착의무 및 식료품의 표시부착 요건과 영양성분 관련사항, 품질 및 포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상품의 생산과정, 유통, 소비자 사용 및 폐기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채택되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TBT의 일반적인 유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각각 구분되는데,

106) 표준규약과 TBT협정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첫째, 일부 국가만이 참여하는 복수국가간 협정이 아니라 single undertaking 방식에 따라 WTO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협정으로 채택되었으며, 둘째 도쿄라운드 표준규약에서 기술규제의 주요요소인 기술규정이나 표준은 품질. 성능, 안전 또는 규격 등 제품의 특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WTO TBT협정에서는 제품의 특성은 물론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공정이나 제조방법 또한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고, 셋째 포럼쇼핑(forum shopping)이 가능하고 강력한 이행의 확보가 어려웠던 표준규약과는 달리 TBT협정은 WTO분쟁해결절차로 일원화되고 강력한 이행확보가 담보된다는 점이다(국제경제법학회(2013), 「新국제경제법」, 박영사, pp. 249-250 참조).

기술규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술장벽은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투명성이 결여된 규제와 절차, 기술규정의 부재 등이 있다. 표준의 경우에는 준수자체가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표준화기구나 단체 등에서 설정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차별적인 선택에 의해 실질적인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양국간 기술규정, 표준 또는 시험, 인증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중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검사지연, 관련비용 과다, 불투명한 절차 등이 흔히 기술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품표시부착(labelling)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상이하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표시요건 등이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TBT조치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채택되었다고 주장되나 실제로는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TBT 조치와 관련한 무역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분석

기술장벽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자국의 기술규정을 준비, 적용 및 채택하는데 있어 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안된 기술규정의 기술적인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② 동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1995~2023년 3월말까지 WTO에 제출된 TBT 통보문은 총 49,215건이며, 특별 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된 건수는 791건이다.

우리 상품이 외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술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증 및 적합성평가 과정에 있어서 검사가 지연되거나 인증마크의 획득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등이다. 또한, 높은 검사비용,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해 상당수준의 노력과 초과비용이 드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외국시장에서 겪는 기술장벽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편, 상품표시부착과 관련하여 자국어 표기의 요구와 표기형태 및 방식 등의 까다로운 요건도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증제도의 이원화 및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중복검사,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요건,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와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 등 과도한 기술요건, 동일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표준의 적용과 같은 문제도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시 흔히 직면하는 기술장벽이다. 또한, 우리 상품에 대한 외국의 기술장벽은 특정한 품목에 집중 또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육류, 수산물, 농산물 등 식품에서부터 자동차, 건설자재, 타이어,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업종별 협회·단체, 시험연구기관 등으로 TBT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TBT 통보문 조사·분석과 산업계 전파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기술장벽의 일반적인 유형

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내용
기술규정	차별적 기준 적용	- 조달비율의 계산에 국내외 업체간 산정방식 차별 적용
	상이한 표준 적용	- 국가, 지자체, 공동체 회원국간 독자적인 표준제도 운영 - 동일 국가내 동일제품에 대해 일부 지방에서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금지조치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 제품표준이나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과도한 기술요건	-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설정 -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
	투명성 결여	- 빈번한 기술규정의 개정 및 불충분한 사전공시기간
임 의 표 준		- 민간표준화기구 및 단체에 의해 설정된 자발적인 임의표준과 국내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인증취득에 실질적인 강제성 부여

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내용
적합성평가	중복검사	- 이미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중복검사 요구 - 인증제도의 이원화
	과다시간 소요	- 인증마크 획득에 과다시간 소요 -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검사지연
	과다비용 소요	- 높은 검사비용 -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발생
	투명성 결여	- 판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검사원의 자의성에 따른 판정 -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민간업체에 의한 검사
상품표시부착		- 국내조달비율의 표시를 요구하여 자국산 구매의욕 고취 - 자국어로 표기 의무 - 표기를 상품자체에 하도록 요구

또한 FTA에도 TBT규범이 포함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TBT 규범을 살펴보면 WTO TBT 협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 이행기간을 규정하거나 절차적 요건 등을 추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을 강화한 조항이 많다. 특히 한미 FTA, 한EU FTA 체결 이후 TBT 규범이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한편 2016년 2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국 탈퇴 이후 일본과 호주의 주도로 CPTPP(Copm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2019년 1월 출범했다. CPTPP TBT 규범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107]

위생검역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

WTO회원국은 SPS협정에 따라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995~2023년 3월말까지 WTO에 제출된 SPS 통보문은 총 32,370건이며, 특별 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된 건수는 567건이다. 이 중 분쟁해결 절차인

107) 장용준 외. (2019),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협의로 이어진 사건은 53건으로, 위생검역의 경우 수입국의 과학적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조치의 도입, 차별적인 보호조치, 불투명하거나 불필요한 지나친 위생검역 조치의 도입, 수입위험평가 지연으로 인한 과다한 시간 소요와 비용 등이 특히 문제가 된다.

TBT 및 SPS 관련 조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상 품목도 광범위하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별 TBT, SPS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표준에 있어서도 WTO TBT 협정의 요건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흔히 있어서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 접근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만3천개(연방정부 4만4천개, 민간부문 4만9천개)에 달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다.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의 표준 및 인증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기술장벽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실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시 UL마크[108] 획득 의무 및 현지 업체에 의한 시공 등을 제약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간적·금전적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미국정부는 「미국 자동차 라벨링법(American Automobile Labelling Act)」(1992년 10월)에 근거하여 ①미국·캐나다 부품 사용비율, ②미국·캐나다 이외에 15% 이상 부품을 조달한 국가와 조달비율(최대 2개국), ③최종

108) UL마크는 미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중 하나이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부여 받는다(참고로 소형 냉장고의 경우 6,000~10,000 달러의 비용 소요).

조립국가, 주, 도시, ④엔진 원산지, ⑤변속기 원산지 등을 라벨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연비관련 라벨의 경우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환경청(EPA)은 2013년 모델 차량부터는 평균연비(도시 및 고속도로 연비 병행 표기), 연간 유류비용, 동일차종의 평균 유류소비량 대비 절감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스모그 영향 정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능력, 충전시간 연비, 전력소비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109] 안전관련 라벨의 경우 2007년 9월 이후 생산되는 승용차부터 충돌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전면(운전석 및 조수석) 및 측면(앞좌석 및 뒷좌석) 충돌, 전복 사고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전반적 안전도가 별 5개 만점으로 표기된다. 픽업트럭은 라벨 표기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었지만 자발적인 표기는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셋째, 「소비재 안전 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이 있다. 2008년 도입된 CPSIA는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비재에 대해서 라벨링 요건, 시험인증요건, 중금속 함유 상한 요건 등의 강화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이후 새로이 정해진 납 성분 상한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용품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영구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각 주들도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에서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TBT 협정문의 범위에 미국 주정부를 포함시켰으며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은 고위해성 식품군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관리권 부여, 고위해성 제품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 요구,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를 2년마다 새로이 갱신, 현행 우수제조기준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검사

109) 상세 내용: www.epa.gov/fueleconomy

비용 부과, 기업의 자발적 회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회수 실시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2011년 1월에 발효하였다. 이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 식품 시설의 등록을 주기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식품안전현대화법 일환으로 ①해외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②제3자 감사기관의 승인, ③사료관리규정 개정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2021년 7월 1일부터 미국 FDA는 식품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매출규모나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하였다. 이는 2016년 식품 및 음료의 영양성분표 라벨 규정에 대한 개정에 따른 전면 시행으로, 식품 소비자들이 영양 정보를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식습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반적인 디자인이 변경되고 첨가당(Added sugars) 표기가 새로 도입되며,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기준이 시대변화에 맞춰 업데이트되었다.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자발적 표준화(Voluntary Standardization)는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공기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캐나다 가스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는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으로서 전기제품 표준 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년 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에 따라 양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분야에서 자격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1992년 제정된 「에너지 효율법」에 따라 건조기 등 46개 적용대상 품목은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은 2016년 개정에 따라 20개 제품군으로 확대되었다.

캐나다 내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중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 주는 프랑스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켓,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는 상자(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을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기준(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보건부는 2008년 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루텐(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알레르기 표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 보건부 산하의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알레르겐 함유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실제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2016년 중 우리나라의 여러 식품 제조업체가 공급한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해 총 9건의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제품 라벨에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계란표기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대상 제품은 어묵(Frozen fish products or Fish cake), 해물완자(Seafood pancake),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소시지(Fish paste) 등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알레르겐은 글루텐과 아황산염 외 땅콩, 아몬드 유사 작물, 깨, 우유, 계란, 갑각류, 조개류, 콩, 대구, 밀 등이 추가로 있다. 또한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2016년 12월 14일부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라면·과자류, 포장김치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준수 하여야 한다.

또한 2019년 1월 15일부로 식품검역청(CFIA)에 의한 신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 Act)이 발효되었다. 동 법령은 현존하는 14개의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법령과 달리 신규 법령은 면허 발급, 식품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부분을 요구한다. 캐나다 내 일부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거나 수출입(수출의 경우 직접 식품을 생산·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을 조달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희망하는 캐나다 기업은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품목에 따라 면허 발급 유예기간이 각각 주어진다. 단, 식품안정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는 식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의 경우 요식업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푸드트럭 등을 제외하고 식품을 생산하거나 지방·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단순 수출기업이 아닌 캐나다 현지 생산·수입업체인 바이어는 면허 취득이 필수이므로 수출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멕시코의 강제인증인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ficial Mexicana)는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다음날 시행에 들어가는 등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멕시코는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이전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 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NOM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가,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벌금부과의 제재가 가해진다. 2009년 10월 멕시코 표준인증협회(ANCE: 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ITL) 간에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KTL의 시험성적서 만으로도

NOM마크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타이어의 경우 NOM의 권리이양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패턴별로 NOM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어 수입업자의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발류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은 고정·부착식만 가능하다. 186개 에너지사용제품의 경우 단위시간당 소비전력과 필요한 경우 대기전력을 표시하는 라벨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186개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에너지지속사용가능국가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해야 한다. 초콜릿, 음료수(주류 제외), 과자 및 이와 유사한 식제품 등은 관련 제조업체가 식품 포장지에 포화지방(Grasa Saturada), 기타지방(Otras Grasas), 총 당 함유량(Azucares Totales), 나트륨(Sodio), 열량(Energia)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라벨링에는 해당 항목의 함유량, 일일 섭취권장량 대비 비율, 함유량에 따른 단위(kcal, cal, mg, g 등)를 기재해야 한다. 1회 분량 기준으로 식품 정보를 기재할 경우 한 봉지에 몇 회 분량이 포함돼 있는지 혹은 기준 단위(g)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단 식품의 총 칼로리가 5kcal 미만일 경우 제로(0) 칼로리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이외 2019년 10월 멕시코 하원은 과체중과 비만을 유발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식음료 제품에 대해 전면 경고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하는 일반건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0년 10월 1일부터 제품 포장 전면에 소비자에게 건강에 해로운 과도한 성분(칼로리, 나트륨, 트랜스 지방, 설탕 및 포화지방 과다)에 대한 경고 스탬프를 추가해야 한다. 제품에 감미료나 카페인이 포함된 경우 어린이를 위한 예방조치 문구를 추가해야 하고, 필수 영양소나 감미료가 과도하게 함유된 제품에 어린이 캐릭터, 만화 등을 제거해야 한다.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검사 및 등록이 필요하며, ①제품명, ②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③등록번호 ④과테말라 유통 업체명 및 주소, ④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스페인어로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위원회(Comision Guatemaleca de Normas)이며 표준규격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고 소요기간은 약 3개월이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Certificado de Fitosanitario)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품을 선호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Certificado de Libre Venta)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이외 중미 5개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C)[110]에서 담당한다.

니카라과는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에서 「기술표준 및 품질법(1996/219)」에 따라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한다. 또한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식품은 상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유통 만료일자를 스페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어 외에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식료품 및 음료제품의 수입이 보건부(검역실)에 신고되면 산업통상부(표준실)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의약품실)는 사용방법의 스페인어 표기를 요구하며,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본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유전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운송에 필요한 허가, 라이센스 및 인증 단일화 창구인 VUC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품목에 대한 인증, 표준, 기술검사 관련 불공정한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며, 민감한 상품거래 관리를 위해 수입라이센스 발급을 농업부가 관리하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대해 두 가지 라벨링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간,

110)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생산자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공인 ISO, CE 등이 인정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베네수엘라는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ech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 12)」에 의해 300여 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 놓고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중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자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토대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공업시험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한편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짧으며 자의적으로 발급된다는 점이 기업들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제품의 생산에서 운송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확인서를 받은 직후 주문하더라도 통관시점에서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거나 재발급이 안 될 경우 세관에 방치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1997년 국립표준계량원(IBMETRO), 품질표준원(IBNORCA), 승인인증청(DTA) 등으로 구성된 국가표준승인인증조직(SNMAC)을 설립했다. 포장식품의 경우 수입품 또는 국내산 구분 없이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동 라벨에는 식품명, 성분, 제조날짜, 유효기간,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 원산지, 위생등록번호, 수입자의 납세자등록번호 등이 반드시 스페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2016년 제정된 「건강식품 관련 법률 제775호」에는 식품과 비주류 라벨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는 해당 식품 성분 중 설탕, 나트륨, 지방 등의 포함여부 및 비율에 따라 라벨 색상(빨강, 노랑, 초록)을 달리 구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15년 제정된 「최고법령 제2452호」는 유전자변형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사항(반드시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내용을 세모 모양의 표시 안에 GMO 문구 기재)을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은 국제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또는 메르코수르 국가)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인증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인증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규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브라질은 도량형 및 품질관리기관인 INMETRO의 독자적인 타이어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IT 제품의 통관시 브라질 지적재산권협의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과정에서 지나친 정보공개 요구로 기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

브라질 정부 및 업체들은 최근 들어 품질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반드시 강제인증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이나 검역을 받아야 한다.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요구 품목은 2008년 59개에서 2010년 81개, 2013년 110개, 2015년 150개, 2016년 155개 품목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148개 품목이 대상이다.[111] 우리기업 제품도 강제인증 요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브라질 내 판매가 가능하다.

이외 브라질 농림식품부(MAPA)는 '포도주 또는 포도주 파생제품' 및 '음료 또는 식초류'의 수입에 대해 「원산지 및 시험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0년 11월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Busan Branch), 한국식품연구원(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분석기술연구원(Korea Analytical Technique Research Institute Co. Ltd),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Korea Health Supplements Institute) 등 5개 기관을 MAPA에 통보하였다.

아르헨티나의 표준화 담당기관은 IRAM(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

111) 구체적인 강제인증품목 내역은 INMETRO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metro.gov.br/qualidade/rtepac/compulsorios.asp

zacion) 이다. 표준규격 관련 모든 제품은 IRAM 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각 제품별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표준 및 규격을 비강제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점차 안전, 인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에서 규격과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 행정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규격과 안전검사 대상 품목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사기관인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는 필수/자발적 인증대상을 규정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품질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라벨링에는 원산지, 수량, 질, 혼합률(필요시), 규격 및 중량(미터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품에 따라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섬유 및 가전제품에 대해 라벨링, 품질 및 안전보증서 등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 표준(reputable)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Instituto Ecuatoriano de Normali-zacio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서 발급에 대한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의약품은 국가위생감독관리청(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y Vigilancia Sanitaria)의 유통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의 경우 에콰도르 수입이 더욱 까다롭다. 그러나 2014년 3월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Homologacion)를 부여하여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의약품 수입절차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기간이 품목에 따라 인증 획득에 6개월 이상 소요된다. 또한 INEN 측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심사를 서류 제출로만 진행하며, 담당자별로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 예상치 못한 품질 증명서를 요청받을 우려가 있다. 이외 국가교통안전국(ANT)이 수입되는 자동차 및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해 최소안전규정에 따라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라벨링은 INEN에서 제정한 규

정에 따라 모두 스페인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라벨에는 기업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원산지, 단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벨링과 관련하여 INEN은 FTA 기체결 국가에 대해 라벨링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관련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되고 등록되어야 하며 제품명,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유통업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스페인어로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온두라스는 「국가품질체계법(Ley del Sistema Nacional de Calidad)」과 여러 개별 법령으로 표준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는 중미통합 회원국으로 국가표준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법제도, 기술규정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평가 규정을 실시할 수 없다. 각종 기술관련 표준 관리 및 인증은 경제개발부, 보건부, 국립표준위원회, 표준기구, 인증기구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법(Ley de Proteccion al Consumidor)」에 의거하여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그램),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상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단, 중미관세동맹(CACU)회원국가 간에는 이미 한 국가에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외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서 자국민들의 건강보호, 사회안전, 자국 식량주권 보호 등을 이유로 통관하기 전 승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오존파괴물질(ODS: Ozone 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소(CFCs: Chloro Fluoro Carbon)와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 산하 오존기술부(UTOH: 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축산검역청(SENASA: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 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수역사무국(OIE)

회원국인 온두라스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대해 동 사무국의 권고 기준을 따르며, WTO의 위생 및 검역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우루과이의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입식료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 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동식물 위생 및 원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칠레는 국가표준원(INN)에서 ①국내 표준기술 연구소·시험소 인증 및 관리, ②칠레표준(NCh) 연구 및 확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칠레에서 통용되고 있는 칠레표준(NCh) 수는 현재 총 3,300여개에 불과하며, 특히 의료기기와 에너지 분야에서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칠레에서 난방·전기·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연료관리국(SEC)이 규정하는 안전성(Seguridad)과 에너지효율(Eficiencia)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외에도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국방부 산하 병무청)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식품,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비료 및 살충제 등(농림부 산하 농목축청), △의약품, 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등(보건부 산하 공공보건청),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칠레원자력위원회), △수산물 등(농수산차관실), △시멘트(주택도시계획부) 등의 품목은 필수인증을 거쳐야 한다. 라벨링의 경우 일반 소비자용 수입품에는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품질, 순도, 성분,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캔 또는 포장음식물은 스페인어 라벨로 첨가물 등 주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등을 명기하고 크기, 중량 등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기해야 한다. 2016년부터는 식품에 함유되는 나트륨, 설탕, 칼로리 및 지방의 기준치를 규정하고, 설정된 기준치를 상회하는 상품은 포장에 해당 성분이 다량 함유하였다는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을 수입시 보건부, 농축산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코스타리카는 2012년부터 식품에 대한 중미기술규정(RTCA)을 적용하여 식품첨가물, 식품생산관리 등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WTO의 식품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SPS)를 준수하는 국가로 식물위생관리법(법령 7664)」, 「동물보건일반법(법령 8495)」, 「보건법(법령 5395)」에 의해 관리된다. 식품수입의 경우 통관시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수입 식품은 보건부 식품위생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일부 수출품(커피, 무기류, 동식물, 종자, 어류, 섬유 등)은 수출 전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령」 제7472조에 따라 통조림류, 식품, 일부 공산품에 대해 수입자가 제품의 성분, 중량 등에 대해 스페인어로 라벨을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상공부에서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표준 보증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는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기구인 ONAC(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는 국가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의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외 SPS 정책은 식품동식물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에서 담당하며, 위원회 내 농축산연구소(ICA: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는 동식물 검역 및 건강문제를, 국립식품의약품감독청(INVIMA: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은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한다. 품목별로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은 수입 전 식약청(INVIMA) 인증 등록이, 동식물과 관련된 품목은 ICA에서 안전 등록을 해야 하며, 전기·전자 제품 또한 인증 및 라벨링이 필수이다.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다. 단, 동식물검역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관리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의료기기의 경우 공공입찰시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약품이 포함된 의료기기의 경우 추가로 보건등록(Registro Sanitario)을 요구하기도 한다. 라벨링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시하면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및 가정용품은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국제식품규격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파라과이는 모든 기술규정을 국립정보통보시스템(SNIN: Sistema Nacional de Información y Notificación)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SNIN은 2011~17년 중 총 73개의 신규 및 개정규정을 WTO에 통보하였으며, 파라과이가 채택한 기술규정 중 상당수는 MERCOSUR 공동시장그룹(GMC) 결의안으로 채택된 역내 규정이다. 기술표준과 관련해서는 국내 표준 및 ISO 표준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립기술표준원(INTN: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Normalización y Metrología)이 전반적인 인증제도를 관리한다. 위생 검역과 관련해서는 동물검역청(SENACSA), 식물종자품질관리청(SENAVE), 농축산부(MAG)에서 해당 절차를 관리한다. 라벨링 관련 상표, 특허 등 제반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국내외 상품 구별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중량, 유효기간 등의 상품정보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품정보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와이어, 포장식품, 설탕, 철강 봉제품, 시멘트, 신발, 섬유, 가정위생용품, 백열등·형광등, 장난감, 윤활제 등 특정제품에는 별도의 라벨링 요건이 적용된다.

페루의 국가품질원(INACAL: Instituto Nacional de Calidad)은 WTO 무역기술장벽 협정과 국제협정 등에 따라 페루의 인증제도 마련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NACAL의 품질 인증업무는 제품 및 서비스별로 공식 지정된 적합성 평가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INDECOPI에서는 신기술 등록, 특허, 상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루에는 품목에 따라 8개의 강제인증이 존재하며 ①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등은 생산부인증이, ②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동물용 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유기제품, 식물성 기름, 통조림, 파스타, 야채, 향신료, 과일/건과일 및 살아있는 동생물은 SENASA인증이, ③호신, 스포츠, 사냥 등 관련 분야에 사용되는 무기류는 SUCAMEC 인증이, ④제약, 화장품, 위생제품, 의료장비, 의료/제약시설 등은 보건부인증이, ⑤휴대폰, 통신장비, 라디오, 무선마이크, 레이더 등 통신관련 장비는 교통통신부인증이, ⑥지도, 도면 등이 포함된 출판물, 인쇄물 전반은 외교부인증이, ⑦X-ray 등 방사선사용 전 품목은 에너지광업부인증이, ⑧카지노기계 등 상행성 기기는 통상관광부인증이 필요하다.

EU 내 WTO TBT 협정의 이행은 EU 집행위가 담당하고 있으며, TBT inquiry point는 집행위 기업·산업총국(Enterprise and Industry Directorate-General)이 담당하고 있다. EU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38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통상 최소 6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EU FTA TBT 챕터는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정안을 WTO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기간 EU는 미국(3,378개), 브라질(1,926개), 우간다(1,787개) 등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에 통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U의 규제관행,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는 EU 시장접근에 중요한 결정요소인데, 때로는 교역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관련 장애가 되는 사항에 대해 EU 집행위와 협의 중에 있는데 EU의 타이어 관련 E마크 및 인증번호 표기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EU에서는 타이어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마크를 타이어에 직접 인쇄물 형태로 부착하거나 매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성능 정보 추가, △대형 트럭 타이어로 적용 대상 확대, △상품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개 및 라벨에 QR코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타이어 라벨링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새로운 수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KC인증과 E마크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타이어 수출 장애 요소 해소 및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개별 회원국과 EU차원에서 채택되고 있다. EU의 완전 조화입법(fully harmonizing legislation)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각 회원국의 규정이 적용되며, 조화입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따라 채택된다. 이때 EU 집행위는 조화입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제품의 목록을 발간하며, 회원국들은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기술규정 초안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고지한다.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는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회원국에게 기술 규정에 상호 인정 조항(mutual recognition clause)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조화입법에 의한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는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게재되며,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향평가 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U는 영향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SME test)를 포함하고 있다. TBT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여 EU와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는 정보상호교환을 합의함에 따라 우리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12]

EU 차원의 기술규정은 performance에 기반 한 지표나 목표만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전기·전

112)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통보문과 규제동향정보, 인증정보 등 TBT의 전반적인 정보를 국가별, 업종별로 분류하여 TBT 정보포털(http://knowtbt.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자제품, 가스기구, 의료 기구, 통신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차의 구체적인 기술요건은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C」)을 채택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로 인해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EU의 UN ECE 기준의 조화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전기차 및 수소차 개발에 따른 안전기준 제·개정 및 대상 부품 확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수 제품군에 대해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채택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비,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섬유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는 제품 등이 공급자 적합성 선언의 대상이다. 이중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한·EU 전기·전자 규제대화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기술규제 현안, 무역기술장벽 완화 및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함으로써 FTA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상호인증확대 등 TBT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등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notified bodies)에 의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국이 일정한 기술평가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독립 인증기관의 목록은 집행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U의 친환경 인증인 에코라벨(Ecolabel)은 소비자 선택을 통한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EU 차원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인증 프로그램으로 현재 TV, 컴퓨터, 세제, 종이, 섬유, 신발류, 관광숙박업 등 34개 품목에 에코라벨이 부여되고 있으며, 한 회원국에서 인증 받는 에코라벨은 인증 국가와 관계없이 유럽 전체에 통용될 수 있다.

EU는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1990년대 광우병,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파동 등을 겪으면서 2000년 초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table)"라는 구호 아래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즉 EU 차원의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EU Regulation 178/2002」)을 제정하고,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

워크 도구인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경보시스템(RASFF)'과 식품망과 관련된 모든 위험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고 제공하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을 설립했다.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table)" 일환으로 2004년 4월 새로운 식품위생규정(New Hygiene Package)을 채택하여 소비용 식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를 통한 자기규제(self-regulating)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 후 2017년 그리포사이트 및 독성 농약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크게 증가하면서 EU 집행위는 식품기본법과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 향료 등 8개 세부규정 전반에 대한 법률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에 EFSA의 위험평가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개선하고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0년에는 'A Farm to Fork Strategy'를 통해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반적인 식품사슬(food chain)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식품 오염(food contamination)과 관련하여 재배 또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산염, 중금속 등의 최대잔여수준을 설정하고, 식품 포장 및 주방식기와 같은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EU집행위는 EFSA 과학적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기준을 계속 개정 중이며, 2019년에도 식품 용기 플라스틱 물질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식품접촉물질 번호 1059(이하 PHBH)로 제작된 식품용기의 용도, 사용조건 및 화학 물질 검출량 허용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U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식품표기(labelling)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콩, 글루틴과 같은 알러지 유발물질은 반드시 포장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다. 2016년 12월부터는 포장되지 않는 식품 내 알러지 물질 포함여부까지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식품 첨가물(Food additives)의 승인, 사용조건 및 표시에 대한 규정, 유전자 변형식품(GMO), 가축 사료 및 사료 라벨링, 동식물 건강 관련 규정을 두어 소비자 건강 위해요인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EU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은 신식품(noble food)규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및 허가 후 판매가 가

능하며, 허가 신청 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각 회원국이 아닌 EFSA가 담당한다. 이외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수산물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EU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당국(competent authority)이 EU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동 정부기관에서 확인하여 EU에 등록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 통관 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수산물 수출 가능 제3국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EU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집행위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내 보건및식품검사분석국(Health and Food Audits Analysis Office)에서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 오고 있다.

그리고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8년에 이를 위한 EU 규정(Regulation「1005/2008」)을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0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EU로 수입되는 수산물에는 위생증명서와 함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도 첨부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EU는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1차 : 2013년 7월 30일, 2차: 2015년 1월 6일, 시행: 2015년 7월 7일)하여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2014년 3월 20일) 및 조업감시센터 설립(2014년 3월 28일), IUU어업 처벌강화(500만원이하 과태료 → 1차 개정: 3년 이하 징역 등 → 2차 개정: 5년 이하 징역 등), 해외수역에서의 IUU 어업금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해 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개선조치에 힘입어 , EU는 2015년 4월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2015년 5

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해양수산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양국간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를 제안하였다. 이후 2015년 7월 EU측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고, 양측은 실무협의를 거쳐 2017년 5월에 공동선언문 문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다. 이후 2018년 10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담을 계기로 10월 18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카미누 벨라 해양수산집행위원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한-EU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가진바 있다. 한-EU 공동선언은 한국과 EU간 전 세계 IUU어업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상호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과 EU가 IUU어업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성과물로서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채택되었다. 동 선언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EU 상호 간에 기술적,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21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는 IUU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관련 국제규범인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즉시 시행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IUU어업 근절을 위한 경험과 기술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등에 전수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네덜란드에는 CE마크,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WEEE (폐가전제품의 의무 재활용 관련 규제), 에너지라벨 등 EU공통으로 취득해야 하는 강제인증과 측량도구에 대한 네덜란드 자체 강제인증이 있다. 또한 EU 유기농 인증 로고, 에코라벨 등 EU공통으로 부여하는 자율인증과 전기제품의 안전 상태를 검사하는 네덜란드 고유의 KEMA-KEUR 인증, 건축 관련 제품에 적용되는 KOMO 인증, 게임에 대한 연령제한등급라벨인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인증, 채식 인증제도인 V-Label 등 자율인증이 있다. 상기 인증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우선 가스기기, 저압 전기기기 등 24개 카테고리 품목에 해당하는 공산품을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이외 EU회원국 및 EFTA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마크를 획득하여 부착해야 한다. CE 인증은 대상품목에 따라 다양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네덜란드 인정기관(RvA: Raad voor Accreditatie)은

DEKRA Certification 등 47개 기관이 있다. ②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이 규정 이상(납 0.1%, 수은 0.1% 등) 사용되지 않았다는 RoHS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WEEE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는 법적으로 Het Nationaal (W)EEE Register에 등록해야 하며, 매년 판매, 수출, 회수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④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TV, 에어컨, 건조기, 청소기 등에는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2015년 1월부터는 건물의 신축, 매매, 임대 계약에서 건물 에너지 라벨을 취득해야 한다. 2018년 11월부터 사무실용 건물에는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C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외교 공관을 포함한 사무실용 건물은 소유 및 사용이 금지된다. ⑤중량기, 경찰용 측정기(호흡 분석기계, 스피드 미터 등), 택시미터기, 자동차 검진용 측정기, 액체 및 가스 측정기 등 측량도구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⑥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packaged food)에는 유기농 인증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EU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선택적으로 동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이 유기농 인증로고를 운영하는 기관은 네덜란드의 유기농 검사기관인 SKAL이다. ⑦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자율적 라벨로 다목적 세제, 침대 매트리스 등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⑧KEMA-KEUR 인증은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 상태를 검사한 후 부여하는 자율인증이나 네달란드 국민의 94%가 인지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인증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⑨네덜란드 건축 관련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인 KOMO를 필수인증인 CE에 더하여 취득할 경우 네덜란드 국내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해당 제품이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⑩게임에 대한 연령제한 등급라벨인 PEGI인증은 사용자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고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인증이다. PEGI 인증은 자율 인증이지만 네덜란드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콘솔, 온라인 게임은 PEGI 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게임 제조사들은 PEGI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다. ⑪V-label은 EU의 대표적인 채식 인증 제도로 필수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업계 내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채식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 구매율이 상승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에서 적용되는 국제(ISO, IEC), 유럽(EN), 국내(NEN) 기준은 네덜란드 표준화기관(NEN: NEderlandse Norm)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제품에 대한 규정은 NEN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열람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해준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해야 하며 특히,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EEA 국가 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시를 포함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준("European Norm" stand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험표시를 포함토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한 규정을 국내 법령에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물질과 같은 일부 분야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더욱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뮴 함유 건전지, 석면(asbestos)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독일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독일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 특유의 인증제도인 VDE 및 GS 표시는 EU의 제품규격기준 및 국제적 인증기준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독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엄격하기로 유명한 VDE 인증도 국내 사무소가 개설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가공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등을 독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및 독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특히 독일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차적으로 감독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소와 접촉을 하는 것이 수출에 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

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의 경우 비용보상정책에 따라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해당 의료기기가 보험처리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는 기존 국가표준규격인 GOST-R 인증제도[113]를 인근 국가와의 관세동맹 확립에 따라 새로운 제도로 변환했다. 즉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은 관세동맹(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EAEU는 유럽의 CE와 유사한 통합 EAC(EurAsia Conformity) 인증제도를 구축하였다. 유라시아 5개국의 단일 인증제도 구축으로 각 국가별로 적용되던 인증은 순차적으로 EAC 인증으로 대체되고 있다. 2019년 5월 기준 총 47개 품목에 대한 공통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42개의 기술규정이 시행되어 이를 기준으로 EAC 적합성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EAC 인증으로 편입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별 인증제도인 GOST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유라시아 현지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EAC 인증서 발행과 함께 해당 인증서 정보가 5개국 인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EAEU 5개국 중 한 국가에서 인증서 취득 및 DB 등록이 이루어진 제품은 EAC 마크를 부착한 후 EAEU 5개국으로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 EAC 인증서는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5개국 국가등록증(Certificate of State Registration) 3가지로 분류된다.

또한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 및 소비자권리보호청이 관세선(국경)에서 실질적인 위생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이에 필요한 서류의 진본 여부를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 가입 이전부터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에서 주요 농수산물 교역국들과 상호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정 체결국은 수입국의 위생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상대국에 상호 등록하여야 하고 이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상호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중

113) 러시아연방 국가표준(state standards)으로 Gosstandart라고도 함.

에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은 수입국인 러시아 당국이 요구하는 일정 위생검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검사증명서를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며, 보통 약정 체결국간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과 동물, 식물 및 수산물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위생검역협정(MOU)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세계 각국의 등록시설들은 러시아 동식물검역감독청 홈페이지에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다. 다만, 동식물위생감독청은 2010년 2월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한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한 이후 한국이 2014년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2020년 5월 한국산 열처리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2004년 러시아에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러시아를 축산물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일부 지역이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모스크바주, 브랸스크주, 상트페테르부르크주 등 3개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전자이력추적시스템(National Track and Trade Digital System)을 구축하여 상품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위조 상품을 근절함으로써 불법 유통/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을 2017년 12월 발표했다. 동 시스템은 정보유형 4개[114]를 포함하는 코드를 상품 낱개 단위로 부착하고, 그 코드 정보를 디지털 마킹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벨라루스는 2만여 개의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의무인증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인증서와 적합심사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시장진입이 가능하며, 특정 상품들은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인증서 발행 대신 정부등록이 필요하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EAEU 회원국 중 한 곳에서만

114) Global Trade Item Number(GTIN) 14자리, Serial number 13자리, Verification key 4자리, 유효기간

인증받아도 다른 EAEU 회원국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안전 인증은 EAEU 회원국 역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공유되는 반면 EAEU 역외의 제3국에서 수입된 품목의 경우 EAEU 회원국간 공유에 예외가 많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20년 10월 기준 철도차량, 고속교통수단, 저전압장비, 완구, 아동·청소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 등을 위한 48개의 관세동맹기술규칙을 채택하였다. 인증의 경우 제품마다 다르고 복잡한데, 예를 들어, 가전 제품군은 이미 인증이 통합되어 각 나라의 인증은 없고 EAC 인증만 존재한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TBT(기술무역장벽)에 해당하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벨라루스의 경우 가전제품 수출을 위해 EAC 인증 외에 에너지효율 인증등록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동물 약품의 경우에는 아직 EAC 인증으로 통합되지 않았으며, 각국의 개별 인증을 취득하되, 1개국에서만 인증을 취득하면 EAEU 모든 국가에서 유통판매가 가능하게 다소 느슨하게 되어있다. 화장품, 일반소비재, 기계류, 부품류 등 대다수 제품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인증으로 통합된 상태이다.

스위스는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시험과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가 EU 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럽공동체 인증마크 관련지침 가운데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6월에 발효된 스위스-EU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서 자국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 인증이 있다.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EU의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료제품청(Swissmedic)의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스위스 SPS 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 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 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 분석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품검사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검사도 받는다.

또한,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물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해서는 GMO 성분이 1% 이상인 모든 GMO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축용 사료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자변형표시(compre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EU회원국으로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해 23개 카테고리 품목에 대해 CE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또한 스페인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자율적인 라벨인 에코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3년부터 시행되어온 에코라벨은 현재 29개 품목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었고 8개 품목에 대한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에너지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하여 스페인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EU의 신연비 측정법인 WLTP (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2020년까지 제조사들은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95g/km 이내로 줄여야 하며, 줄이지 못할 경우 1g/km 초과 시 95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슬로바키아는 특정상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한 품목인증서를

사전에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서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또한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한편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제품의 내용물, 제품 설명서(product mauals), 제품 보증과 여타 소비자 관련 정보는 슬로바키아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CE 마크 부착을 의무화해왔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자체의 UKCA 마크 사용을 통해 기존 CE 인증 제품 대부분을 대체할 계획이며, 기존 CE 마크 제품의 유통·판매는 2023년 1월 1일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북아일랜드에서는 CE 마크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EU 에코 라벨 역시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영국에는 주소 식품과 소비재에 사용되는 90여 개의 친환경 관련 라벨이 존재한다. 이외 영국에서는 자체의 안전성 관련 인증인 KITE 마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인 KITE 마크는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으로는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이 있다.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식물 및 식물관련 제품의 경우 검역이 요구되며, 반려동물과 말의 경우 PETS(Pet Travel Scheme) 및 동물 종류에 따른 관련 규칙을 따라야하고, 식물의 경우 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의 제출이 요구된다.

오스트리아의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 제도로 EU 및 EFTA 회원국으로 수출하려면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이외에도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격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1993년 이후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에코라벨이 있으며 이는 자율적 라벨로 2020년 10월 기준 총 12개 품목군, 55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은 세제, 의류, DIY, 전자제품,

바닥덮개, 가구, 정원용품, 가정용기기, 윤활유, 기타 가정용품, 종이제품, 신문용지, 캠프장 및 관광객 숙박 서비스, 인쇄된 종이, 교육시설 등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로 등급을 구분하는 에너지라벨이 있다. 에너지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이나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반입 시 필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전반적인 수입 품목의 인증과 국가 표준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인증을 감독하는 기관은 표준인증청(UzStandard)이며, 그 외의 품목들은 각 분야별로 관련 정부기관이 관장한다. 제약,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및 등록은 보건부 산하 제약산업발전청(Agency for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담당하며, 이 상품의 수입통관 시 필요한 위생증명서는 국가에서 인가한 위생검역센터(Center of State Sanitary-Epidemiological Surveillance)에서 위생 및 역학적 검토를 거쳐 발급된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 우즈벡어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2018년 9월 1일부터는 유통 전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개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은 '일부 제품에 대한 디지털 라벨링 의무화 도입'을 시행령으로 의결하고 2022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전제품에 라벨링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2022년 9월부터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디지털 라벨링을 의무화하였다.

카자흐스탄에 반입되는 모든 제품은 적합성평가(인증)를 통과해야 한다. 기술규격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표준을 따르고 있어 EAEU의 통합인증 제도인 TRCU(EAC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되고 있다. TRCU 인증은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둘 다 취득해야 한다. 또한 제품 종류에 따라 TRCU 인증 외 국가 등록, 화재안전 인증서 등 별도의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민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한다. TRCU의 기술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일부 제품의 경우 카자흐스탄에서만 유효한 별도의 국가 인증인

GOST-K를 받아야 하며, GOST-K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카자흐스탄 필수 인증 대상 제품 통합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공식 인증기관은 NAEC (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로 정부기관이다.

크로아티아는 EU 지침(Directives)을 자국 기술표준에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술표준은 EU 혹은 국제표준에 해당 한다. 이로 인해 약 0.2%의 표준만이 크로아티아 자체 표준이며 이마저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EU 통일 인증마크인 CE 마크의 획득 및 부착이 필수이다. 한편 수입업자는 생산품이 기술표준에 부합하고 생산자에 의한 품질 적격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시장에 출하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품질 적격 평가를 위해서는 검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s), 품질적격인정서(conformity certificate), 검토보고서(review reports), 품질적격설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 서류(technical documents) 등이 필요하며, 라벨에는 제품명, 생산자 주소 및 원산지, 순수량/무게/부피, 성분, 보관 방법, 소비자 정보(GMO 성분 포함 여부) 등의 정보가 담겨있어야 한다.

키르기스스탄은 EAEU에 가입함에 따라 46개의 기술 규제를 채택하였고, 이 중 36개가 발효된 상태이다. EAEU 기술규정을 충족한 재화는 EAC (EurAsian Conformity)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표준화, 계량, 인증제도 국제협력 분야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계량센터(CSM: Center for Standardi- zation and Metrology)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외 키르기즈공화국 내 판매 및 수입되는 재화, EAEU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중앙집중형 정보시스템(State Automated Information Labeling System for Goods)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한편 판매되는 제품은 키르기즈어 또는 러시아어로 라벨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키르기즈어 및 러시아어 병기를 권장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수입 통관 시 표준, 인증, 위생 등과 관련된 장벽은 없으나 모든 수입소비재는 국가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르크로 건설장비 수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특수차량 및 장비는 출시된지 5년이 경과한 것은 수입이 금지된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에 투르크메니스탄 국내생산 건설기자재 우선 구매 조항을 명시하는 관행이 있다.

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무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외 비EU 회원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유업인증(CE인증서)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표준인증(TSE)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영국의 EU회원국 탈퇴로 인해 기존 영국 소재 CE인증기관에서 발급받았던 인증은 여타 EU회원국 내 지정 인증기관을 통해 갱신하지 않을 경우 2021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 위생 관련 법규는 동식물, 농작물, 육류 및 관련 식품들, 음식물과 접촉하는 제품들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수입제품에 따라 튀르키예 보건부와 농림부 산하 안전 검사청에서 테스트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으로 EU의 제도를 따르며 프랑스 자체 표준, 인증 및 라벨링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관련 업무는 프랑스 표준협회인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별 구체적 인증 업무는 AFNOR 뿐만 아니라 동 기관이 위임한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인증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CE 마크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등급 표시도 의무화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자사 제품이 친환경 제품임을 알리기 위해 에코(ECO) 라벨 부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라벨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 「Loi n° 94-665」에 따라 소비재, 식품 및 섬유 제품 등의 상표 표기의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로 상업상 사용되는 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 제반 서류, 채용 공고 및 근로 계약 등 노동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나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되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또한, 호주는 영국, EU, 싱가폴, 뉴질랜드 등과 통신장비, 자동차, 의학장비, 일부 전기·전자 장비 등 일부 공산품의 표준취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115]을 체결하고 있는바, 호주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의무준수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원(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을 뉴질랜드 정부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식품기준을 공동으로 수립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식품안전기준 상호인정 협약[116]을 체결하여 통조림 식품, 신선 채소 및 과일, 유제품, 대부분의 해산물, 과일주스, 빵류, 과자류, 수렵육 등 일부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획득을 상호 인정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 용품 등의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경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 인증취득 필요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뉴질랜드 표준 담당부서(Standards New Zealand)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 EU, 싱가포르, APEC 회원국과 전기전자 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RCM 인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규제청

115) 호주산업과학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ndustry.gov.au/trade/reducing-technical-barriers-trade

116) 호주 농업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export/from-australia/food-safety-recognition-agreements

(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 공급자로 등록해야 한다. 라디오송신기계와 관련된 제품은 R-NZ인증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며, HACCP가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EU, 호주,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부여받은 인증을 인정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기에 비해당품목과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입업체는 수입품 유통 30일전에 보건부 산하 Medsafe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해야 한다. 수도시설 제품은 호주 인증인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시험과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해당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주택의 대부분이 목재로 건축되어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여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규격 관리는 BRANZ가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건축자재가 승인의 대상은 아니므로 규격승인 대상여부는 BRANZ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환경인증제도인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는 사무기기,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34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 주도로 환경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인증제도와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가 요구하는 제품시험평가 및 현장실사를 대행하고 있다.

중국은 8개의 강제인증제도와 2개의 임의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강제인증제도를 설명하면 첫째,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의 경우,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대상 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CCC제도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는 211개 국가지정 인증·시험기관이 있으며, 2019년 11월 기준 CCC 인증대상 품목은 22개 분야 127개 품목이다. CCC제도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는 35개 국가 지정 인증기관과 243개 실험실이 있으며, 2021년 7월 기준 CCC 인증 대상 품목은 17개 분야 103개 품목이다(기존 강제 인증 실시 범위를 변경하지 않는 기본구조 아래에서 목록 내의 일부 제품 종류를 통합 및 최적화함). 2022년 10월 기준 CCC 인증대상 품목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 분야에 변동이 생겨 16개 분야 104개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한·중 FTA 발효 1주년(2016년 12월)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어 전기전자제품 104개 품목은 국내인증기관이 발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로 CCC인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China RoHS 인증제도가 있다. 따라서 제품포장에는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PBDE)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2019년 11월 1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텔레비전, 모니터, 마이크로 컴퓨터(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PDA), 이동통신장치, 전화 등 12개 품목의 제조 및 수입제품은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2월 14일과 2021년 10월 11일, 국가 시장 감독 관리총국(국가 표준화 관리 위원회)은 GB/T 39560 전자전기제품 중 일부 물질 측정 시리즈의 9개 표준을 발표하였다. 신규 발표된 9개 기준은 현행 중국 RoHS 부대 검사 기준으로 활용된다.

셋째,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NMPA 인증으로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있어 NMPA 인증취득은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넷째, CSEL(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는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특종설비안전감찰국(SESA)에서 총괄하는 제도로 과거 SQL을 보완 개선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즉 생명안전과 관련되고 위험성이 비교적 큰 보일러, 압력용기(가스실린더 포함), 압력배관, 엘리베이터, 하역기계, 여객용 케이블카, 대형 놀이시설과 시설 내 전용 모터바이클 등을 판매 및 유통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 「중국인민공화국특수설비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및 관련 제도에 따라 특수설비 제조허가를 취득하거나 비안(등록)을 진행 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은 특정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으로 중국의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MIIT)에 의해 시행된 인증제도이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ID)를 보유하여야 한다.

여섯째,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은 중국 공업정보부(MIIT)에서 지정한 NAL 대상 품목에 강제 적용되는 통신기기 승인제도이다. 현재는 26개 NAL 대상 품목이 있으며 시험기관은 제품별로 상이하다. 규격승인기관은 MIIT의 BTA(Bureau of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이고 중국에 판매되는 통신장비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하며 NAL 취득 없이는 중국 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일곱째, 2002년 5월 중국이 최초로 편성한 소방제품인증(CCCF: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이 있다. 제품목록에 편성된 소방제품은 반드시 이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국제표준에 부합하거나 국가표준이 없을 경우 업계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소방제품을 3C 강제인증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고 중국 국내 소방 생산 업체 제품의 강제 인증 시장 접근 관리를 강화하여 중국 국내 소방 업체의 소방 제품 생산 능력, 정비 품질 보증 능력,시장 진입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중국 품질검수총국, 공안부, 국가인감위 등에서 발표한 2014년 제12호 공고 〈일

부 소방제품 강제 인정 실시에 관한 공고〉와 국가인감위 2014년 제15호 공고 〈국가인감위 소방제품 강제 인정 실행 규칙의 공고 발표에 따르면, 2015년 9월 1일부터 본 강제 제품 인증 목록에 등재된 소방 제품은 강제 인증 증서와 강제 제품 인증 표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2014년 9월 1일부터 위탁자는 지정 인증기관에 인증제품의 인증을 의뢰할 수 있다.

여덟째, 중국 에너지라벨 등록제도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벨 제품목록」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 등을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16년 6월1일부터 〈신판에너지 효율라벨 관리 방법〉이 시행되었다. 2004년 8월 13일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질량검사총국령 제17호로 발표된 〈에너지 효율라벨 관리 방법〉이 동시에 폐지되었다. 국가발전개혁위·시장감독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벨의 제품 실행 목록(15차)〉 및 관련 실시 규칙을 제개정하였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영자동기전동기 에너지효율라벨 시행규칙〉 〈공기청정기 에너지효율라벨 시행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0년 7월 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된 제품은 2021년 7월 1일까지 에너지효율라벨을 추가할 수 있다. 〈도로·터널조명용 LED등기구 에너지효율라벨 시행규칙〉, 〈풍관송풍식 공조장치 에너지효율라벨 시행규칙〉, 〈저환경온도 공기원 히트펌프(냉수)장치 에너지효율 표시 시행규칙〉시행일은 해당 에너지효율 강제성 국가 기준 시행일과 일치하며, 라벨 시행 전 출하 또는 수입된 제품은 라벨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추가할 수 있다.〈단위형 공기조절기 에너지효율라벨 시행규칙〉(개정), 〈실내공기조절기 에너지효율라벨 시행규칙〉(개정), 〈실내조명용 LED제품 에너지효율라벨 시행규칙〉(개정) 시행일은 해당 에너지효율 강제성 국가 표준 시행일과 동일하게 하며 라벨 시행 전 출하 또는 수입된 제품은 라벨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에너지효율 라벨을 추가할 수 있다.

아홉째, 2021년 11월 중국 국가인증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의 강제성 CCC 인증기준 개정에 관련 통지(TC11-2021-01 기술결의서)〉를 발표했다. 이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강제성 3C 인증기준 및 이행관련 신규로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기준요구(실시일 포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준 개정후, 추가 시험 항목이 없을 경우, 인증받은 제품은 추가 시험 없이 신규 인증서로 교환 발급한다. 추가 시험 항목이 있을 경우, 시험을 거쳐야 하며, 새로운 기준 시행 전에 출하되어 이미 시장에 투입된 이후, 추가 생산하지 않는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신규 인증서로 교환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자율인증제도인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는 소비자의 재산, 안전, 권익을 보호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 제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CQC인증을 받을 경우 기업 브랜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CSP: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 역시 자율인증제도로 안전기술 방범제품, 도로교통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의 사회공공안전제품이 대상이다.

한편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입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산업표준화 촉진을 목적으로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JIS는 일본의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제정되는 임의의 국가 규격이나, 각 개별 법령에서 기술기준 등에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 JIS 인증 대상 품목은 토목, 건축, 기계, 전자기기 및 전기기계, 자동차, 철도, 선박,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섬유, 광산, 펌프, 종이, 관리시스템, 생활용품, 의료안전용구, 항공, 정보처리, 요업, 데이터, 서비스 등이다. 일본 정부에 등록된 민간 인증기관(등록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이 해당 JIS 기준을 만족한 합격품인 경우 JIS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등록인증기관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JISC)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해외기관도 등록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한국표준협회(KSA)도 등록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품목이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JIS 인증 소요기간은 품목 및 실제 심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 소요기간은 신청 접수로부터 최소 60일에서 최대 140일이다.

한편,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식품 중 농약 등 잔류기준 적용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PLS)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기준 834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해서는 일률기준치 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67건에 대한 한국의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48건을 일본 잔류기준으로 반영시켜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은 2008년 3월 1일부터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을 10kg 초과 휴대물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중 전수검사로 남아 있는 품목은 토마토, 방울토마토, 풋고추, 홍고추, 들깻잎, 참외 등 6개 품목이며, ID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협의된 농약성분의 경우에는 명령검사를 면제받고 있다.

이외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1997년부터 총 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일본은 현재까지 총 45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8종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다.

싱가포르는 Enterprise Singapore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33개 품목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Enterprise Singapore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Enterprise Singapore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육류 및 조류 수입 시 엄격한 품질요건을 부과하는 싱가포르로의 식품 수입은 승인된 국가 및 기관에서 생산된 제품만 가능하다. 싱가포르에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 시 모든 해외식품기관은 싱가포르 식품청(SFA)[117]에 등록해야 하며, 이때 수입되는 육류 및 육류제품은 육류 성분을 제품의 최소 5%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쇠고기의 경우 모든 재료 및 관련제품은 제품 성분의 육류 포함 정도에 상관없이 SF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로 가금류, 신선란, 통조림 형태의 돼지고기의 수출은 가능하나 쇠고기 수출은 현재 금지되어 있다.

홍콩의 시험/공인위원회(HKCTC: 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는 정부 인증의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홍콩 세관/물품세국은 완구류, 어린이용 물품, 소비자 물품 등의 안전, 기준, 수량, 허위 및 과장 광고 등을 관리하고 있다. 식품 환경보건부(FEHD: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홍콩 내의 식료품업 관련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한품목(중국 찻잎, 회, 우유 등) 판매, 공공 오락시설, 개인 수영장, 상업용 목욕탕 등에 대한 허가서 발급과 주류허가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한다. 육류, 채소류 등 식품수입에는 간단한 검역 절차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수입업자가 홍콩 위생국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다. 수입업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품목에 대한 상세내역을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할 수 있다. 한편 FEHD의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는 홍콩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의 섭취 안전성을 관리한다. 「영양표시법」에 의해 면제된 제품 이외의 사전 포장된 모든 식품은 지정된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기해야 한다. 이외 「식품안전법(Food and Drugs regulation)」에 따라 식품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식품을 신고해야 하며 식품 거래업자는 적절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해

117)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은 국립공원청(NParks) 산하의 싱가포르식품청(SFA)과 동물 및 수의청(AVS)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모든 음식 관련 서비스는 SFA에서 담당한다.

국제인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지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라오스에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해 총 397가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 중 144종의 라오스 국가표준은 주로 건설자재, 전기 및 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며, 국제 인증을 이용한 제품 등록을 인정하기도 한다. 총리실을 비롯한 보건부, 농림부, 공안부, 산업부 등 21개 기관이 12가지 범주의 인증 또는 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라오스의 별도 인증마크 나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검수품목 20가지, 필수등록품목 21가지, 라이선스 확인 품목 42가지 등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및 세계시장(WTO)을 통한 교역 활성화를 위해 수입 물품 전체에 대한 국가 표준 및 인증기준 확대에 힘쓰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산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에서 제품 표준 및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 인증으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받을 수 있다. 제품인증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아니나 에너지 위원회(Energy Commission), 화재 및 구조청(Fire and Rescue Department Malaysia),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Commission), 국가 물 서비스 위원회(National Water Services Commission), 도로교통청(Road Transport Department) 등 국가기관에서 의무 인증을 법제화한 경우에는 의무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 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모든 육류, 축산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JAKIM: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로부터 Halal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얀마는 아직까지 국가표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얀마에는 의약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 시 대부분의 품목에서 UL, CE 마크와 같은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검사 제도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시장진출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 한편 2018년 10월 미얀마 상무부는 2019년 4월 26일부터 9개 품목(food, household appliance, children's facilities, communications equipment, medicine and food supplements, chemicals, consumer products, and professional products)에 대한 사용법, 보관방법 및 조건, 경고 및 부작용, 독성물질 관련 사항의 미얀마어 라벨링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준비 미흡 및 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2020년 2월로 시행 연기를 발표하였다. 2013년 9월 미얀마 상무부 발표에 따라 사전허가 없이 수출입 가능한 1,928개의 HS Code별 품목은 인증서 없이 수출입라이선스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축산물, 농약, 씨(앗) 및 비료의 경우 관련부처의 인증서를 받은 이후에 수출입라이센스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을 생산, 수입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얀마 식약청으로부터 FDA 허가를 받으면 COA가 발급되며 동 증명서에 따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식품 및 화장품의 경우 식품관리 부처와 의약품관리 부처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상기 두 품목의 경우 식약청의 FDA 허가(추천서)를 받아야지만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베트남 수출 기업은 제품 수출 전 제품 인증기관 또는 현지 바이어를 통해 CR 인증 마크 대상 여부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출을 진행해야 하며, 베트남 수출 희망 기업은 베트남 인증 기관 및 정부 각 부처별 상이한 인증 절차를 사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KC 인증, 중국의 CCC 인증 등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기술 규정(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QCVNs, Local Technical Regulations-QCDPs)에 해당하는 제품을 베트남 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CR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마크(CR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보건, 안전, 환경, 위생과 관련된 제품의 인증에 대한 정책과

절차는 각 국가마다 다르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진출 기업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인증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베트남 CR 인증 마크 취득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시험 접수 후 약 2개월이며, 시험을 제외했을 경우 약 2주가 소요된다. 2021년 기준 통상적인 CR 인증 마크 취득 비용은 약 80만 원이나 공장심사 추가 시 80만 원, 파생모델 시험 시 16만 원이 추가된다.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재화는 베트남 수상이 정한 라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정부의 검사 관리를 위해서 수입된 재화의 포장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 약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 안전 인증서를 요구한다.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STAMEQ: 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품의 표준 규격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WTO TBT의 표준관련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표준 관련 사항은 스리랑카 표준원(SLSI)에서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Government Gazette Notification No 2064/34 of 29th March 2018」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표준은 122개가 있다. 기술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실 농축물,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엌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제품 등이 있으며, 관련 품목들이 스리랑카 표준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게 된다.

인도의 대표적인 인증제도 담당기관은 인도표준국(BIS), 의약품표준국(CDSCO), 식품안전표준청(FSSAI) 등이 있다. BIS(Bureau of India Standards)에는 각 산업분야의 표준 관련 품목이 21,000여개에 이르며, 2020년 10월 기준 의무인증 대상품목은 318개로, 의무등록 269개 품목과 강제등록 49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의무인증 품목에는 시멘트, 가전제품, 식품, 유압스토브, 차량용 액세서리, 실린더, 밸브, 의료기기, 철강제품, 변압기 등이 포함된다. 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는 제약, 의료기기 관련 규제와 등록규제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으로, 화장품의 수입시에도 동 인증이 필요하다. FSSAI(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는 식품 안전을 위해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제품인증은 BIS를 따르나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2개 이상의 제품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 이전에 현지 로펌, 협력 수입상 등과 협의를 통해 어떤 종류의 인증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품목별 규정 신설, 대상품목 확대, 인증관련 비용 인상 등 조치가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에는 농업부가 발급하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라벨링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5」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1995」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한 규제는 안전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BPOM,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할랄 등 3대 인증제도가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BPOM 및 SNI 등 인증을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득한 글로벌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기 인증이 해당되는 제품군은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TV나 PC 등 부품으로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21년 11월 기준 248개 품목이 SNI 강제인증 적용 대상 품목이며 자발적 인증 품목은 1만여 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에 포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되며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로 인력 실사가 어려워지며 인증 연장 및 신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관련 제품은 할랄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할랄인증 관리 대상 품목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 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식음료의 경우 2024년부터, 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는 2026년까지 관련 제품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할랄인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외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식품안정관리시스템 등을 등록하지 못한 국가는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신선농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본부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태국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2022년 11월 현재 21개 분야 129개 품목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품목은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하며 물품 통관 시 화물보관해제(cargo release)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 표식을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업표준원 홈페이지에서 강제 표준품목별 물품의 범위, 표준 및 요건, 테스트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태국 식품의약청(Thai FDA)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마약, 유해물질, 의료기기, 항정신성 의약품, 독성물질 등의 생산, 유통,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일부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특별관리' 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분의 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 · 의약품 등의 수입면허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애매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재량이 많다. 이로 인해 면허발급 여부가 불확실하고 면허발급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높은 편이다. 한편, 농산물 및 농수축산물의 위생검역관련 업무는 농업협동부 산하 식품표준국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선 및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표준설정과 안전 프로그램의 감독은 국립농산품 및 식품표준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축산제품의 생산 및 검역의 관리감독과 검역증명서 발급은 축산개발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다.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다. 식품 및 의약품은 식약청(FDA)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며,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2016년에는 폐전기·전자기기(WEEE) 등의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원재료의 유해물질관리(ESM)에 관한 기술 지침과 여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준수 프레임워크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유아용 젖병 및 빨대컵 수입 시 비스페놀 A(Bisphenol A, BPA) 등과 같은 유해성분을 제한하는 통보문을 발표하였고, 11월에는 건축건설, 전기전자, 화학 및 소비재와 같은 범주에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 PS 안전 인증 마크의 시행, 발급 및 검증 지침을 발표하였다. 2020년 6월에는 필리핀 수입 물품에 대한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되어 필리핀 화학 물질 및 화학 물질 목록(PICCS)에 31개의 화학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PMPIN (Pre-Manufacture and Pre-Importation Notification)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는 한 사용, 제조 또는 수입 할 수 없게 되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은 수입 시 별도로 보건부로부터 해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 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수입전 사전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표준 품질 관리국(PSQCA: Pakistan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에서 산업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표준제도 수립 및 시행, 검사기관 등록, 국제표준과의 부합여부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국 및 한국 등 선진국 인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기준충족이나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증기준은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020년 10월 기준 식음료, 기계장비, 원자재 등 305가지 품목에 대해 수입 시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가나에서는 가나기술표준청(GSA: Ghana Standards Authority)이 표준의 제정, 내수시장 및 수출입을 위한 제품, 서비스의 표준, 품질보증, 안전 인증 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GSA는 국제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류(fish) 분야에서는 유럽연합과, 식품(food) 분야에서는 일본과

표준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가나는 아프리카 지역표준화 기구(ARSO: Afric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국으로 2010년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표준원(KATS)과 표준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모든 수입업자는 GSA 등록 및 세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건설자재, 중고품, 자동차 부품, 무기류, 장난감 등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수출국 공인 기관의 분석 인증서(CoA: Cer tivication of Analysis)나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irmity)를 GSA에 제출하고 도착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정 제품군[118]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CoC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가나 식약청(FDA: Food and Drugs Authority)에 따르면, 모든 관련제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A에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의약품 수입업자의 경우 FDA로부터 사업 허가를 승인받아야 하며,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한 수입의약품의 유통기한은 60%를 초과하여야 하고 남은 유통기한이 80% 미만 또는 24개월 이하인 의약품은 수입이 불가하다. 아울러, 가나에서는 정식 인가를 받은 기업만 상업적 목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으며, 가나 약국위원회(Ghana Pharmacy Council)에서 인가를 받은 제약회사는 소매업 판매만을 위해 한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고, 의료종사자는 업무중 사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현재 가나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 5월 49개의 의약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시행한 이후 규제 대상 의약품 49종과 관련 새로운 등록 및 갱신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등 최근 들어 관련 품목의 수입 금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2년 제정된 GSA Labelling 규정에 따라 모든 식약품은 영문으로 제품의 종류, 원산지, 원료, 무게, 용도,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에어컨, 배터리, 램프, 페인트, 사료, 화장품 등도 영문 표기가 되어야 한다. 표기가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28일 전까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118) 장난감 및 운동용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기계재료 및 가스용품, 펄프 및 종이류, 가구류, 건설자재, 석유제품, 섬유 및 가죽의류, 광업기기 및 부품, 유리제품 등

가봉은 2007년 표준, 검사, 인증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하였고, 2014년 설립된 광물산업부 산하 국제표준기구(AGANOR :Agence Gabonnaise de Normalisation)가 표준, 적합 및 인증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봉은 2015년 국가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PROGEC)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봉은 2016년 2월부터 건설재료, 기계·전기설비·전자제품·유무선통신기기·화장품·의료기구·장난감 수입품에 대해 통관서류로 적합성(conformity certificate) 증명서를 세관을 거쳐 AGANOR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 증명서는 AGANOR과 계약관계에 있는 SGS, Bureau Veritas, Intertek의 3개 국제적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시험인증 증명서 없이 수입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만 AGANOR에 직접 신고하여 서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200만 원~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증서는 각 항목마다 불어와 영어가 동시에 표기되기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은 없다. 수입 제품은 불어로 라벨링이 되어야 하고, 기타 특별 라벨링이나 표기 제한은 없다. 위생검역과 관련하여 가봉은 수입 식품과 국내 생산 식품에 위생 규제를 모두 적용한다. 농식품·식물을 수입할 경우 농축산부 산하 식품안전기구(AGASA)에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Sanitary Certificate) 및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든 식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SON: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은 2005년부터 필수제도의 하나로 품질 표준검사(SONCAP 증명서)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 공산품 및 기계류 제품들은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부 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표준 품질 검사의 대상 품목, 절차 등 주요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https://son.gov.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표준 품질검사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품은 식품, 약물, 의료품(장비 및 기계 제외), 화학물질(원재료), 군용품 및 군장비, 밀수품으로 분류된 상품, 자동차 이외의 중고품 등이 있다.

위생검역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는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수입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첫째,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 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 수입품은 제조업체와 적절한 국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분석확인증(certificate of analysis)이 구비되어야 하며 둘째, 특정 동물제품이나 식물, 씨앗, 토양 등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인증을 수반해야 하고 셋째, 나이지리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으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높은 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시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모든 수입품과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SABS 산하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이 정한 필수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라이닝, 헤드라이트 등), 모터사이클 헬멧 관련 품목, 전자제품, 전선, 전기플러그,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필수규격을 정하고 있다. 각종 필수규격에 관한 정보는 NRCS 홈페이지(www.nrcs.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농축산물, 농수산가공품, 주류 등은 위생·검역 규제 대상으로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거친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라벨에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한편 NRCS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 11월 28일 에어컨, TV, 셋톱박스 등 시청각 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및 냉장고, 전기오븐,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해당 가전제품들은 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효율 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레바논은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으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공증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용 전자제품, 배터리, 완구, 세라믹 대리석, 화장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다.

르완다는 표준이사회에서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EAC 표준의 경우 70% 이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르완다표준이사회는 1,300개 이상의 국가 표준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국가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르완다표준이사회는 수입 및 수출품이 르완다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국경에서의 수입품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을 준수하는 상품 및 시스템에 품질 마크(RSB Standardisation Mark)를 표시하는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물품·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르완다표준이사회가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한편 위생 및 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6년 8월 농축산검역 및 인증 서비스(eRALIS)를 개시하여, 농업분야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온라인 검역 및 인증 등 규제 관련 서비스 절차를 온라인으로 자동화하였다.

모로코의 기술표준은 국제표준기구(ISO), 유럽안전인증(CE), 프랑스 표준협회(AFNOR) 등 유럽표준에,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기구인 모로코 산업표준청(SNMIA)은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은 ISP/IEC에 의거하여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모로코는 국가기술 표준 및 규정 준수를 통한 제품의 적합성 및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산업용 수입제품에 대해 적합성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후 3개 글로벌

검사기관(APPLUS FOMENTO, Bureau veritas, Tuv Rheiland)과 아웃소싱 협약을 체결하여 수출국에 위치한 해당 검사기관사무소를 통해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s of Conformity)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외 모로코는 할랄(Halal)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할랄 인증을 공식발표 하였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Halal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도 허용되고 있지만, 성분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표기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할랄 시장에서 지역 허브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가 할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할랄 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바레인은 다른 GCC 국가들과 함께 걸프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countr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ISO의 회원국이다. 바레인내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 및 국제적 표준을 동시에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이 존재하는 한 바레인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지 않는다. 또한, 바레인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라벨링 역시 GCC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품목, 브랜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자 이름 및 주소, 용량, 원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거나 아랍어와 영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에 이를 표시해야 하는데, 소량의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더라도 이를 표기하지 않을 시에는 압수되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내외 제품 여부에 상관없이 표준청(SASO: 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이 수립하고 관리하는 품질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런 연유로 2021년 기준 25,000명 이상이 제품 수입 및 유통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 이와 같은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출품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2006년 5월 사우디 정부는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를 첨부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2008년 6월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SASO와 상호인정 프로그램(MRP)을 체결함에 따라 KATS의 KOLAS 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는 사우디에서 인정되고 있다. 강제적합성 인증제도는 2004년 8월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되었다. 소비재 상품 중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되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다.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간혹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장비,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외 SASO는 2019년부터 제품안전 프로그램인 SALEEM(Saudi Product Safety Program) 구현을 위한 수입안전관리(SABER)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SABER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품의 품질 및 적합성 검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출 전 SABER를 통한 제품인증서 및 선적인증서 발급은 필수이며, 수입업자는 SABER에서 국내 인증 대행기관을 지정해야하며, 국내 수출업자는 인증 대행기관을 통해 SABER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술표준원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국 6개국 및 예멘과 국내 인증기관 발급인증서를 통용할 수 있게 하는 MRP(Mutual Recognition Program, 상호인정 프로그램) 체결을 위해 2013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이후 국제 유가 및 경기 변동, 코로나19 등으로 보류되어 왔다. 최근 사우디측에서 MRP 추진을 위한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 체결 요청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세네갈의 포장 및 의무표시 제도는 Codex 기준에 따른 식품포장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신선 과일, 야채 및 식품의 포장에는 품명, 생산일, 유통기한, 성분, 중량, 생산자 정보 등이 프랑스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냥, 담배, 20도 이상의 주류, 설탕, 배터리, 가정용 양초, T셔츠 등 특정 수입품의 경우, 밀수 또는 신고된 용도이외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Vente au Senegal'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수단은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건강, 보건,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등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NMPB(National Medicines & Poision Board)에, 농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은 SSMO(Sudan Standard & Metrology Organization)에, 동물용 사료와 의약품, 사료 첨가제 등은 동물자원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수단은 자체 인증제도가 없어 미국, 일본, EU, 한국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UL, FDA, CE, ISO 등)을 획득한 경우 등록이 수월하다.

시리아는 ISO에 가입하고 동 국제 규정을 국내 제도화 하는 등 표준화와 관련한 제도정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표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만 17개(정부 7개, 유관기관 10개)에 이르고 있고 또한 서로간의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국내산 제품 표준을 따라야 하고 수입 제품은 정부에서 정한 시험 혹은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현지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①생산/수출자의 이름, ②내용성분, ③크기와 용량, ④제조일자 및 소멸시효, ⑤원산지 등을 아랍어로 라벨링 해야 하며 의약품에는 1회 복용량도 함께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외 국민들의 건강보건과 관련된 제품은 사전 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약과 화장품(피부용)은 보건부 제약국에 사전 등록 및 인증이 요구되며 식품류의 경우 수입 시 전문 연구소에서 샘플 검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유무선 전화기와 수신기, 안테나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수입전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0년 9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국제인증업체(SGS 또는 Bureau Veritas)로부터 발급받은 적합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부터 UAE 연방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0년 5월, 모하메드 알 막툼 UAE 부총령 겸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책 회의에서 정부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정부 조직 통폐합 사안을 검토했고, 같은해 7월 최종 개편이 승인, ESMA는 '산업첨단기술부(MoIAT; 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에 합병되었다. 동 부처는 UAE 산업 부문 활성화와 GDP 기여도 제고를 목표로 신설되었으며, 기존 ESMA의 모든 권한, 책임 및 의무는 합병된 부처로 전임되었다. 아울러 2021년 상반기까지 개별 운영하던 웹사이트도 산업첨단기술부 웹사이트로 통합되어 추후 신규 인증 발표 등은 MoIAT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UAE의 경우 2014년에서야 연방차원의 인증제도가 확립되었다. 그간 여러 기관이 각기 다른 품목을 관장하거나 특별한 규제 없이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하였다. 2014년 UAE 연방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를 설립, 연방차원의 규제 정비, 이후 2020년 7월, 정부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정부 조직 통폐합 개편이 시행되어 ESMA는 산업첨단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에 합병되었다. 2022년 10월 현재 UAE 내 수입과 유통을 위해서는 산업첨단기술부가 관장하는 적합성 인증인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획득이 강제되며, 해당 인증은 식품·소비재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주요 ECAS 인증 취득 대상은 저전압 전기제품,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 세제, 식품 접촉 제품, 담배 제품 및 물담배,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타이어 및 재생타이어, 어린이 보호 시트, 속도 제한 장치, 트레일러, 개인보호 장비(PPE), 전자담배 등이 있다. 아울러 에미리트 품질 마크인 EQM(Emirates Quality Mark)은 식수, 주스 및 음료, 유제품 등에 적용, 이외에도 안전 강화, 에너지 효율 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 라벨링(EESL)과 유해물질 제한제도(RoHS)가 운영되고 있다. 주요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의무 대상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다.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RoHS) 제도를 의료기기를 포함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도입 중이다.

알제리의 경우 표준, 검사, 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증 제도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의 기술규격 사전인증과 세관 통과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하며 그 외의 가축용 의약품도 농업개발부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 식품류 수입에도 「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에 위험물, 일부 화학제품이나 산업용 가스제품들도 산업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중 자동차, 가축, 동식물, 곡식, 씨앗, 식료품, 의료품, 화학제품, 주류, 유제품 등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Bromangol은 앙골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안전 검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수입업자는 앙골라 소재 검사 기관(SGS, COTECNA, BIVAC)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역부 발행 수입허가번호를 지정한 검사기관에 접수하고,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번호(일명 PIP)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해 준다. 수출업자는 PIP와 함께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후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앙골라 소재 검사소에 통보하며, 검사소는 통관에 필요한 CRF 검사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이외 수입되는 제품은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라벨링을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1970년 에티오피아 표준협회(Ethiopia Standard Agency, ESA)를 설립하여 수입품 안정성 테스트(Testing)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실시하고 있다. ESA는 국제표준기구인 ISO, OIML, CAC, ARSO, IEC, SAQI의 회원으로서 국제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몇몇 제품(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품질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의약품, 건축자재, 화학약품, 섬유 등은 품질인증서가 필수이다. 또한 모든 수입 상품에는 분명하고 서류와 대조 가능하도록 라벨 및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 및 마킹과 관련한 규정은 에티오피아 표준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멘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기술적합성 여부는, IFIA 인증 BIVAC 및

Cotecna 사가 예멘 정부와의 계약 하에 검사 및 인증서 발급을 대행한다. 수입업자들은 대체로 ISO, IEC, ISO/IE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OIE 및 예멘 정부의 환경, 보건, 소비자 안전 관련 기준 및 표준을 따라야 한다. YSMO는 2014년 1월 기준 2,474개 수입품(자동차, 섬유, 식품, 음료, 전자기기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가지고 자체품질인증(Yemen Accreditation)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생검역 조치 관련 예멘 내 주요부서는 농업관개부, 보건인구부, YSMO로 농업관개부는 식물 및 동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며, YSMO는 동물 및 식품 관련 기술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한다.

오만은 국제 표준화 기구 회원국으로,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걸프 지역 표준화 기구(GSO: Gulf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마련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자국 생산 제품과 수입 상품에 차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특히, 식료품이 아닌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물품을 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인정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의 신고만으로 자동반입이 가능하며, MR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샘플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오만은 소수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라벨에 반드시 아랍어 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육류나 가금류 수입의 경우 위생증명서와 수입 사전 허가, 이슬람 도축 방식 확인서(할랄 인증서)가 필요하다.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요르단 자체 또는 국제 표준규정 및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Directorate of Testing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샘플링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담당기관은 JSMO(Jordan Standard and Metrology Organization)이다. 요르단 국내 검사기준이 없을 경우 라벨링 기준이 적용되며, 요르단 국내 또는 국제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라벨링,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능성이 없을 시 수입이 허가된다. 한편, JSMO는 2018년부터 ISO 라벨 부착 상품의 수입 통관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행정·기술적 문제로 이행을 유예한 상황이며 2020년에 시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라크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적전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기획부 산하 '표준화 및 품질검사 중앙기관(COSQC, 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관장되며,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검사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수입품 통관시 품질검사 내용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Intertek, HQTS, Geo-Chem, Bureau Veritas 등 4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 제도 등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라크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해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라벨링 제도를 EU에서 차용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2017년 4월 에어컨을 시작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및 텅스텐 램프, 에너지 절약램프, 형광램프 등으로 적용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관 현장에서는 에너지라벨링규제가 적용되는 에어컨의 경우도 통관 시 라벨부착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이란의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www.isiri.com)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 이란 내 유일한 기관으로 품목별 표준규격을 결정한다. 필수 표준규격 적용 대상 품목은 반드시 송장(Invoice)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 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통관 시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내의 표준규격심사에 합격해야 하는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제품 내용은 이란어로 표기되어있어야 한다. 보건부에서 정한 위생, 안전 허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되며, 필요 시 외국기업의 현지공장 실사 등도 병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제도(라벨링, 마킹, 포장 등)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 적극적인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수입품은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표준원(SII: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의 검사가 필수적인데,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는다. 2022년 6월 발효된 표준개혁안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수입관련 인증 절차가 크게 간소해졌다. 표준개혁으로 인해 이스라엘 국가표준 인증 없이 국제표준에 따른 적합성인증으로 수입 통관이 가능한 경로가 신설됐다.(일명 '카시스 트랙') 카시스 트랙 역시 물품 검사 없는 수입자 선언 기반의 통관이며, 중위험군(그룹2)과 저위험군(그룹3) 중 산업경제부가 정한 positive list에 포함된 표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재, 주방기구, 생활용품, 장난감, 산업안전제품, 가전제품, 광학제품, 의료용품, 육아용품, 산업용 개인보호장비, 자전거와 같은 스포츠 용품,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수만 개의 제품이 카시스 트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정되는 국제표준의 종류는 이스라엘 표준마다 다르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어떤 국제표준이 인정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대교 율법의 음식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코셔(kosher) 인증서는 별도로 유대교 랍비(율법학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경우 코셔 인증서가 없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 생산업자는 코셔 인증서가 없이 육류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여 외국산 육류와 차별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육류 및 육류제품을 제외한 음식물을 이스라엘로 수입할 때 코셔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요자들이 (식품 소비자의 60%~70%) 코셔 인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이 있다.

또한, 수입품 중 포장식품은 반드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재, 종이제품, 핸드백, 음악 기록, 비료, 살충제, 화학약품, 제약, 일부 음식, 씨앗,

주류에는 특별한 라벨링 규제가 적용된다. 독극물, 살충제, 마약, 화기성 물질, 탄약, 폭발물, 파충류, 곤충,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과 같이 위험한 품목을 담은 용기는 명백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검사대상은 101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하여 규격별 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s by size)를 시행함에 있어 이집트 당국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배터리 및 타이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용 손실이 과다하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이 있다. 또한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성으로 검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검사결과가 신청자에게 즉시 회신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라벨링과 관련하여 식료품, 의약품, 섬유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업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집트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의 샘플 통관 시 별도 수입허가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된 샘플이 1년 이내에 재수출되거나 수입당시 재수출할 것을 서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간단한 휴대 샘플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도로 발송하는 것은 4~5일의 통관절차가 소요되고 잘못 배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이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별도의 수입승인과 더불어 까다로운 성분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부 전기, 기계제품의 경우에도 국제공인 인증규격이나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CE 인증 및 FSC(Free Sales Certificate) 또는 FDA 인증이 없는 경우 수출이 어려우므로 이집트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CE와 FSC 또는 FDA를 획득해야 한다.

적도기니의 라벨링과 패키징 필요조건은 적도기니 무역 규정으로부터 삭제되었으나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라벨링할 것을 권장한다. 적도기니는 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의 세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은 무관세이지만 "Vente en la CEMAC"이라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카메룬의 품질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사항은 ANOR(Cameroon Standards and Quality Agency, 약어와 풀네임이 맞지 않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에 대한 것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관리하고 있다. 라벨링과 관련하여 수입되는 통조림 제품의 상표 붙이기와 표시 요건은 제조일자와 만료 일자를 깡통 위쪽에 새겨 넣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포장해야 한다. 또한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미리 라벨을 붙여야 한다. 수입인지와 같은 형태의 이 라벨비용은 담배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입업자가 미리 지불해야 한다. 이외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전자변형식품(GMO)은 변형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야 하나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타르의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는 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라벨에는 아랍어와 영어를 함께 명기하고, 상품명, 상호명, 원산지, 성분표, 첨가물, 동물성지방성분, 생산년월일, 유효기간, 제조자,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한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카타르 자치환경부(Ministry of Municipality and Environment)는 2016년 7월 1일부터 에어컨 제품에 대해 지정 인증기관의 표준화 인증 테스트인 G-Mark 부착, 에너지효율등급표시(Star Rating) 라벨 부착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8.5(별3개) 미만인 에어컨 제품은 카타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케냐 표준청은 케냐의 기술규정 및 의무표준, 승인된 규격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적전수출적합자격검사(PVoC: 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를 수행하고 있다. 표준청 웹사이트(www.kebs.ort)에 요건, 검사절차, 면제물품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무역부는 2019년 의약품에 대해 3개원간 PVoC를 면제하는 등 규정적용이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표준청(KEBS)에서는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제한 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제품과 관련된 사례로는 ①라면에 대한 별도의 규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례, ②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표준 준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적한 사례, ③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업체들의 반발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 ④ 케냐 정부가 비현실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을 설정하여 한국 기업 제품을 포함한 에어컨 수입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인 절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표준인증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기기 통관 시 적절한 요건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통신기기는 통신규제국(ARTCI)에서,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표준원(CODINORM)에서 발부한 안전기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는 국내 자체적으로 기술 시험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대체적으로 국제 공인 기관의 시험 결과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수입품에는 원산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가공식품의 라벨은 유통기한(일/월/연)과 함께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DR콩고는 수입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관련 법령이 없다. 다만, 콩고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규제 및 상품평가에 관한 주무부처는 산업부(Ministere de l'Industrie)이며 표준규정의 집행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수출입통제국(OCC: Office congolais de controle)에서 관할하고 있다. OCC는 콩고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Manuel Qualite: System de Management de la qualite de l'OCC)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 규제집을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산업부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트 등 품목에 대한 217개의 표준 기준(식품 134, 강철 44, 측정단위 14, 목재 13, 시멘트 11, 적합성 평가 1)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광물자원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모든 광물자원 수출시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인 CEEC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3T(주석, 탄탈륨, 콜탄)와 금은 CEEC가 별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상품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제는 ISO 및 국제포장기구(WPO)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통부 산하 포장기준국(DNE: Departement de la normalisation des emballages)에서 관할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국내 생산품 또는 수입품 여부), 상품명,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명, 그리고 중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DNE측의 요청시 업체는 15일 이내 라벨 및 포장의 적용 규격 준수 여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식물 위생검사에 대해 콩고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식물위생 제품은 수입, 포장, 국내시장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물, 식품제품, 동물 또는 광물을 원천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수입에는 농촌개발부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가 있어야 한다. 모든 농산물, 종자 등 식물 및 동물과 관련된 식품 등의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식품위생증명서 또는 수출국가의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농촌개발부가 시행하는 식물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물 관련 수입물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건을 분리, 처리, 거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환경부는 유전자 변형 관련 법률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DR콩고는 자국의 식물 보호를 위해 숙주로 기생하는 생물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케냐산 커피의 DR콩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간다 카사바류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검역인증서(certification de phytosanitaire) 발급수수료는 건당 50CF(콩고 프랑)이며, 수입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5CF,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CF, 수출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1CF,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수입 식료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3CF,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이 있다. 최초 수입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구하며,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제도와 관련 모든 수입 제품은 KS(Kuwait Standard) 및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①전기장난감(1개), ②가전기기 및 가스기기(43개), ③자동차(3개), ④화학제품(2개), ⑤기타 제품(2개) 등 5개 품목 그룹에 대해서는 쿠웨이트 적합성인증프로그램(KUCAS: 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쿠웨이트에서는 KUCAS 인증 외에도 GSO(걸프 표준화 기구)에서 발급하는 G-Mark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인증을 보유한 제품들은 KUCAS 인증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해당 인증은 저전압 전기기기 및 장난감에 적용되고 있다.

튀니지에서 표준은 크게 임의표준과 의무표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의표준은 제품과 관련된 정부부처(주로 의약품, 농식품, IT장비 등)가 규정하는 표준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증명된 경우에 INNORP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의무표준의 경우에는 WTO의 TBT 협정 추가조항 1에 제시된 기술지침과 SPS 협정에 적합하다는 공식승인이 필요하다. 튀니지표준의 생성과정은 국제표준의 생성과정과 거의 유사하며, 2015년 말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 표준의 96%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6월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표준은 17,710개로 경제 전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동·식물성 제품은 위생검사를 필요로 하며 수입 시에는 특별허가서가 요구된다. 동물, 육류, 원피, 야채류, 식품첨가물, 동물사료(동물사육용 식료품과 식품 수입에는 비방사능전염 증명서 또한 첨부), 음료 및 기타 식품 등은 보건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가, 식물성 제품은 식물보건 증

명서가 요구되며 벌과 꿀 수입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무해성증명서가 필요하다. 농업용 살충제의 제조, 수입, 조제, 포장, 판매 및 배포는 농업학기사, 화학공학자격증 소지자, 약사 내지는 농업학교의 공중보건학 수료증 소지자에 한하여 인증서가 발부된다.



지식재산권

개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생성물을 권리화한 것으로 산업적 발명이나 문학 또는 예술에서의 창작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이루어진 무형적인 재산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체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분류되며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분류된다. 신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저작권, 동·식물 및 미생물관련 생명공학기술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기술에 관련한 첨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나 디자인은 장소를 달리하여 이용 가능하며 그 모방이나 보급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119] 오래전부터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국가간 공통된 법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1883년 발효)', '문예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1886년 발효)' 등이 있다. 세계경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120]가 설립되

119) 송영식·이상정·김병일 (2014) 지적재산법(13정판), 세창출판사, p.419

120) UN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이다. 188개 회원국의 특허청장들은 매년 9월~10월 WIP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의를 가져 특허제도 조화, 개도국에 대한 기술

면서 여러 지식재산권 협약을 발전시켜왔다. 현재 WIPO가 관장하는 지재권 협약은 WIPO 설립협약을 포함하여 총 26개로 다음과 같다. 2020년 4월에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2020년 7월에 가입하였다.

WIPO가 관장하는 지식재산권 협약

조 약 명	조약 목적	가입국 수	채택일 (발효일)	우리나라 가입여부 (발효일)
WIPO 설립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설립	193개국	'67.07.14 ('70.04.26)	○ ('79.03.01)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저작인접권 보호	47개국	'12.6.24 ('20.4.28)	○ ('20.7.22)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저작권 보호	181개국	1886.9.9. (1887.12.5)	○ ('96.08.21)
브뤼셀협약 (Brussels Convention)	위성통신 신호배분	39개국	'74.05.21 ('79.08.25)	○ ('12.03.19)
마드리드 협정(출처)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	허위출처 방지	36개국	1891.4.14. (1892.6.15)	- (-)
마라케시 VIP조약 (Marrakesh VIP Treaty)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92개국	'13.06.27 ('16.9.30.)	○ ('16.9.30.)
나이로비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올림픽 심벌 보호	55개국	'81.09.26 ('82.09.25)	- (-)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산업재산권 보호	179개국	1883.3.20. (1884.7.7)	○ (1980.5.4.)
특허법조약 (Patent Law Treaty, PLT)	특허출원 절차 통일	43개국	'00.06.01 ('05.04.28)	- (-)

지원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121) 싱가포르 조약은 상표출원 절차에 관한 행정적 국제 조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상표법 조약

조 약 명	조약 목적	가입국 수	채택일 (발효일)	우리나라 가입여부 (발효일)
음반불법복제방지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음반 불법복제 방지	81개국	'71.10.29 ('73.04.18)	○ ('87.10.10)
로마협약 (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공연자, 음반 및 방송 제작자 보호	97개국	'61.10.26 ('70.02.26)	○ ('09.03.18)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121]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상표출원 절차 통일	54개국	'06.03.28 ('09.03.16)	○ ('16.07.01)
상표법 조약 (Trademark Law Treaty, TLT)	상표출원 절차 통일	54개국	'94.10.28 ('96.08.01)	○ ('03.02.25)
워싱턴 조약 (Washington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	10개국	'89.05.26 (미발효)	– (–)
WIPO 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저작권보호	115개국	'96.12.20 ('02.03.06)	○ ('04.06.24)
WIPO 실연음반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저작인접권 보호	112개국	'96.12.20 ('02.05.20)	○ ('09.03.18)
부다페스트 조약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미생물기탁	87개국	'77.04.28 ('80.08.19)	○ ('88.03.28)
헤이그 협정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디자인의 국제등록	79개국	1925.11.06 (1928.06.01)	○ ('14.07.01)
리스본 협정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원산지 명칭 보호 및 등록	30개국	'58.10.31 ('66.09.25)	– (–)

(TLT)의 기초 하에 적용범위를 더 확대하고, 최신의 통신기술의 발전을 다룸

조 약 명	조약 목적	가입국 수	채택일 (발효일)	우리나라 가입여부 (발효일)
마드리드 협정 (상표)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상표의 국제등록	55개국	1891.4.14. (1892.7.15)	-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상표의 국제등록	114개국	'89.06.29 ('95.12.01)	○ ('03.04.10)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특허의 국제출원	157개국	'70.06.19 ('78.01.24)	○ ('84.08.10)
로카르노 협정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디자인의 국제분류	62개국	'68.10.08 ('71.04.27)	○ ('11.04.17)
니스협정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상품의 국제분류	92개국	'57.06.15 ('61.04.08)	○ ('99.01.08)
스트라스버그 협정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특허분류	65개국	'71.03.24 ('75.10.07)	○ ('99.10.08)
비엔나 협정 (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도형상표 분류	37개국	'73.06.12 ('85.08.09)	○ ('11.04.17)

자료: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treaties/en/)(2023.5.13.일 검색) 상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그러나 과거에는 WIPO가 관장하는 지식재산권 협약들이 집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각국은 경제·사회의 여건 및 경제발전단계에 맞추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각기 다른 제도를 시행하여 국제적인 조화가 어려웠으며, 위조상품의 교역이 증가하였다. 이에 통상협정에서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1983년 제39차 GATT 총회에서

부터 위조상품의 교역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6년 각료선언에서는 국제무역에 대한 장애와 왜곡을 축소하고,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조치 및 절차 자체가 무역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GATT규정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새로운 규칙과 규율을 제정하고 위조상품의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다자간 기본원칙을 설정하기로 선언하였다.[122] 이러한 목표를 두고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에서 부속서1C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이 나오게 되어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TRIPS협정은 다자체제에서 처음으로 포괄적인 지재권 법을 도입한 협정으로,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 국제무역에 대한 왜곡과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차적으로 지재권 보호 및 이차적으로 지재권 남용으로부터 정당한 무역의 침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TRIPS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기존의 지재권 협약의 원칙과 규정 등을 그 성립 및 운영의 기초로 하여 '국제협약 Plus 방식'으로 마련되었고, 집행에 관해 지재권 보호와 남용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Single Undertaking 방식에 따라 WTO분쟁해결기구를 통해 강제력이 담보되어 국내법 이행에 있어 효과적 촉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WTO TRIPS협정을 통한 보호 외에도 FTA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FTA에서의 지재권 조항은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분쟁, 의약품 관련 조항 등 TRIPS 플러스 방식으로 체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월까지 WTO에 통보된 발효된 245개의 RTA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174개의 RTA가 지재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123] RTA에는 新유형 지식재산 보호, 특허의 대상 확대, 보호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GI) 보호 강화, Grace Period 연장, 강제실시권 발동요건 강화,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 등의 규정을 포함하여 지재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 전환

122) 박덕영·이일호,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세창출판사, 2009, p.256.

123) Raymundo Valdes·Maegan McCann,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Revision and update, WTO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2014, p.6

해 나가면서, FTA 등을 통해 국내외 무형자산 보호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우리의 지재권 보호체계를 보다 선진화하려는 노력은 기업의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에 유인을 제공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로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자에게 강력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의 지재권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진화된 지재권 제도 도입을 요구하여 우리의 지재권이 보다 확실하게 보호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황분석

TRIPS 협정에 따르면 최빈국은 TRIPS협정에 따른 의무로부터 발효후 10년간은 적용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어,[124] 2005년부터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3년 TRIPS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2021년 7월 1일까지 TRIPS 준수를 위한 기한이 연장되었다. 또한 최빈국 회원국의 경우 2016년 1월 1일까지 의약품특허 및 임상 데이터 보호 및 집행하여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었는데 2015년 11월 TRIPS 위원회 결정을 통해 최소 2033년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되었다. 2017년 1월 23일,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가 발효하여 TRIPS 협정이 개정되었다. TRIPS협정 제31조(f)에 따르면 강제실시권에 기하여 생산된 의약품은 생산국가의 국내 시장에서만 제공이 가능하나, 동 의정서 발효로 해당 요건이 면제되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이 타국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저개발국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세계는 전례 없는 글로벌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자 지적재산권(특허, 산업 디자인, 저작권 및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이 백신 및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제품에 대한 감당가능한 가격과 적시의 접근 혹은 코로나19 극복에 필수적인 의료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및 공급의 확대에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124) TRIPS 협정 제66조 제1항

2020년 10월 2일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TRIPS 협정의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을 TRIPS 위원회에 제출하였다.[125] 2022년 6월 17일 채택된 TRIPS 협정에 대한 MC12 장관 결정은 TRIPs 협정 적용 면제 대상을 코로나 19 백신에 한정하고, 개도국은 백신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강제실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5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코로나 19 진단 및 치료제 생산과 공급으로 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는 채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최근 지식재산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발전 등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부터 의료진단, 첨단제조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발전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신기술과 인공지능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UAE와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하여 인공지능의 특허행정 도입,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보호 등에 관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흥시장의 지재권 환경 개선을 통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ASEAN 지재권 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별 현황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이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가 신기술 개발 분야이며, 이러한 장점이 실제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자국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125) "Waiver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for the prevention, containment and treatment of COVID-19"(IP/C/W669)

미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공정하지 못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내용을 매년 평가하여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PFC),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으로 분류하고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6~9개월 동안 협상을 벌이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1년 이상 우선감시대상국인 국가에 대해서 USTR은 해당 국가가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와 미국인의 지재권이 보호받으면서 시장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기준(benchmark)이 포함된 조치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야 하며 만약 지속적으로 조치계획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감시대상국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지재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언급된 지재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

국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알제리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WL	WL
아르헨티나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바베이도스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벨로루시	WL	WL	WL	WL	*	*WL	*						
볼리비아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WL
브라질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브루나이	WL	WL	WL	*									
불가리아				*WL	WL	WL	WL	WL	*				
캐나다	PWL	PWL	PWL	*WL	WL	WL	WL	WL	*PWL	*WL	WL	WL	WL
칠레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중국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콜롬비아	WL	WL	WL	WL	WL	WL	WL	WL	*PWL	*WL	WL	WL	WL
코스타리카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도미니카 공화국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국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에콰도르	WL	WL	WL	WL	WL	*PWL	*WL	WL	WL	WL	WL	WL	WL
이집트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핀란드	WL	WL	WL	WL	WL	*							
그리스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과테말라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인도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인도네시아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이스라엘	*Pending	*PWL	PWL	*WL	*								
이탈리아	WL	WL	WL	WL	*								
자메이카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쿠웨이트	WL	WL	WL	WL	WL	*PWL	PWL	PWL	PWL	PWL	*WL	WL	*
라트비아													
레바논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WL	WL	*										
멕시코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노르웨이	WL	WL	WL	*									
파키스탄	PWL	PWL	PWL	PWL	PWL	PWL	*WL	WL	WL	WL	WL	WL	WL
파라과이	M	M	M	*WL	WL	WL	*			*WL	WL	WL	WL
페루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필리핀	WL	WL	WL	WL	*								
폴란드	*												
루마니아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러시아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사우디 아라비아	*								*WL	*PWL	PWL	PWL	*
대한민국													
스페인	WL	WL	*										
스위스							*WL	WL	WL	WL	*		
대만													
타지키스탄	WL	WL	WL	WL	WL	WL	*		*WL	*			
태국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WL	WL	WL	WL	WL
트리니다드토바고				*WL	WL	WL	*				*WL	WL	WL
튀르키예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국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투르크메니스탄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우크라이나	WL	WL	*PWL	*PFC	PFC	*PWL	PWL	PWL	PWL	PWL	PWL	PWL	*
아랍에미리트									*WL	WL	WL	*	
우즈베키스탄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베네수엘라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베트남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주: *는 지위변화를 나타냄. M은 Trade Act of 1974 제306조에 따른 모니터링을 의미함.

미국은 또한 지재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활용하여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 침해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ITC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되면 ITC는 세관 당국에 대하여 동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국경에서 차단하도록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내릴 수 있다. 지재권 분쟁에 따르는 소요기일이 1년 내외로 신속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미국은 부실특허의 등록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특허권 행사의 남용을 저지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되어 가고 있다.

우선심사제도(Prioritized Examination)의 도입, 출원료 및 등록료 등 수수료 인상(15%), 중소기업과 영세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50%) 등은 미국 특허 출원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코로나 관련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 및 우선심판을 실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허변호사 출신의 특허상표청장을 임명하고 특허의 보호와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ICT , 의료 및 바이오 분야 특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특허변호사 출신의 특허상표청장을 지명하였고, 지재권 분야에서의 다양성(diversity)을 추구하고 있다.

2021년 현재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기까지는 평균 약 16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tuion Highsway) 제도를 활용할 경우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신청을 승인받는 날로부터 1~3개월 정도면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2021년에는 한·미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CSP, 양국 특허청간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 출원제도 개선 등 출원인 편의성 향상, 인공지능(AI)이 창작한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호, AI를 활용한 심사·심판 서비스의 개선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를 통해 특허 분야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 등을 도입하여 특허권자들의 편익을 증대시켰다. 한편, 상표 분야에서는 증명표장제도 도입과 소리·냄새 상표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품질보증 기능의 강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기업의 자산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상표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관련 물품의 압류명령,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EU는 회원국 간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와 EU 지식재산권의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 특허제도의 고비용, 저효율 및 복잡한 특허소송 제도 및 회원국 간 엇갈린 판결 등으로 특허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저하가 문제되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의 시행 및 통합특허법원

(United Patent Court)의 설립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시행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독일의 UPC 이행 법률이 발효되어(2021년 8월), 2023년 6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식재산권(IPR) 보호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1월 정책패키지(Communication on A balanced IP enforcement system responding to today's societal challenges)[126]를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8년 12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간하는 'Notorious Markets List[127]'를 벤치마킹한 EU 역외시장 위조 및 저작권 침해 감시리스트(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128])를 발표하였다. 동 리스트는 EU의 기업, 협회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PR 침해가 의심되는 시장(온/오프라인 마켓) 관련 의견수렴절차(Public consultation)를 시행하고, Europol, EUIPO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IPR 침해 관련 사실관계를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저작권보호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약국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 실제 시장 등 4분야로 분류하여 20개 이상의 국가의 52개의 EU 역외 웹사이트 및 시장을 감시리스트에 포함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와 동대문 시장이 2018 EU의 감시 리스트에 포함되었지만 2020 수정된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리스트에서는 개선 사례(Positive development)로 소개되면서 제외되었다.

한편,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이하 제3국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제3국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가 발행하는 격년 보고서로써 지난 2006년부터 발행해 왔는데 이번 제3국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Priority Countries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EU와의 FTA

126)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7/EN/COM-2017-707-F1-EN-MAIN-PART-1.PDF(검색일:2018.12.21.)

127)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anuary/2017-notorious-markets-list(검색일:2018.12.21.)

128)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december/tradoc_157564.pdf(검색일:2018.12.21.)

체결국 중 FTA 이행관련 모니터링 국가(한국, 캐나다, 베트남) 챕터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IPR 보호 및 집행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 노점상에 대한 위조품 단속·온라인상 IP침해 억제 노력, 네이버, 카카오 등 10개 온라인사업자와 IP보호 관련 MOU를 체결('19. 9)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우려/개선 분야로는 특허(제약, 표준필수특허), 저작권(공연권), 집행에서의 일부 이슈가 언급되었다.

유럽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유럽의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 3월 지리적표시(GI)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22.3.31)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①온라인에서의 보호 강화 ② 생산자 단체 역할 강화 ③ EU 정책 연계성 강화 ④ 절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EU 차원의 공예품·공산품에 대한 GI 보호 체계 구축하기 위한 법안('22. 4. 13)도 제출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2002년 이전에는 특허청, 문화청 등 지적재산권 정책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의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2년 고이즈미 내각은 지재전략본부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정책을 범부처 정책으로 바꾸었다. 특히 지재전략본부 설립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4년에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의 2심과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이 도쿄고등재판소로 집중되었으며, 이후 2005년 지재고등재판소가 설립되어 지재고등재판소로 집중되었다. 특허심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2004년 평균 특허심사기간은 26.2개월이었으나 2013년말 11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이후 10개월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과 지재전략을 위한 대학 지재전략본부, 기술이전 사무소 등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을 위해 「관세정률법」이 개정되었고, 일본 국내의 상표권침해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지재권법에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에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진정한 권리자가 모인출원을 한 자로부터 특허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2014년에는 부실 특허권에 대한 공중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상표법 개정에 의해 색체상표 및 소리상표가 도입되었다. 2015년에는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원시귀속할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되었으며, 특허법조약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과 더불어 출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데이터를 부정 취득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으로서, 데이터의 보호가 강화되었다. 2019년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중립적인 기술전문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손해배상액 산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특허권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으며, 의장법(디자인법)도 개정되어, 물품에 기록·표시되지 않는 이미지와 건축물의 외관, 인테리어 디자인이 의장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2020년에는 신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를 골자로 하는 종묘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 19 및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각종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무효심판에서 온라인 구술심리를 도입하는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상표법의 개정으로 모방품의 해외 직접구매행위를 상표법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일본특허청은 2019년 4월부터, 특허수수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기존에 적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으로 한정하였던 감면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증명서류의 제출도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감면대상에는 국적을 불문하므로, 우리 중소기업들도 개선된 감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지재전략본부는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2022년 6월에 발표된「지적재산추진계획 2022」에서는 △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촉진 메커니즘 강화,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활용 환경 정비,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중소기업/지방(지역)/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지식재산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운용·

인재 기반 강화, △애프터 코로나를 응시한 쿨 재팬의 재시동 등의 중점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을 스타트업이 최대한 활용해 사업화로 연결해 갈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과 함께, 방대하고 다양한 저작물 등을 IT기술을 이용하여 간소하고 신속히 권리처리할 수 있는 일원적 권리처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022년 5월에는 경제안보추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동 법안에는 경제안보정책의 한 축으로서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도가 포함되었다. 이 제도는, 특허출원서에, 공개되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가 그 발명을 보전지정을 하여, 해당 발명의 공개 및 실시 등을 제한하는 한편, 특허출원인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관련 시행령 등의 정비 후, 2024년 4월 실시될 예정이다.

중국은 1980년대 초 「상표법」과 「특허법」을 제정한 후 약 20년간 전세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5년 이후 중국 정부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2008-20년)」를 발표하는 등 지식재산권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통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지재권 창출, 활용, 보호관리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를 건설하고, △차세대 IT,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 로봇, △항공우주 설비, △해양공학설비, 첨단 선박, △선진 철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고성능 의료기기 등 10대 기술에 대한 중국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들 10대 기술은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 10대 산업으로 발전되어, 이들 분야 중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21년에 「국가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강요(2021-35년)를 제정하는 등 2035년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2009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2011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52.6만 건)이 처음

으로 미국(50.4만 건)을 추월하였으며, 2017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매년 20%이상 성장하였다. 2018년에는 발명특허 출원은 154.2만 건으로 2017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미중 무역갈등과 경기하강 등에 따라 발명특허 출원(140.1만 건)이 2018년 대비 9.2% 감소하였으나, 5년 연속 백만 건 이상의 출원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상표 출원은 2020년 934.8만 건(2019년 대비 19.3% 증가)으로 19년 연속 세계 1위 상표 출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허출원은 2020년 519.4만건(2019년 대비 18.6% 증가)으로 중국은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도 2020년 발명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 등의 출원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실용신안은 2020년 292.7만건(2019년 대비 29.0% 증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기업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 권리침해 현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 전 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중국법원은 1심, 2심과 재심청구 등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481,793건을 신규 접수하였고, 475,853건을 종결하였으며, 2018년 대비 각각 44.16%와 48.87% 증가하였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모조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분쟁 최소화를 위해 매년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국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은 2017년 8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018년 3월 강제적인 기술이전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2019년에는 관세부과를 확대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외국 투자유치, 기술획득, 기술자립 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지하여, 2019년 1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고, 2019년 11월 발표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강조하였다. 중국은 「상표법」에 대해, 3차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 이후, 2019년 4월 4차 개

정(2019년 11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17년 11월 개정된「부정경쟁방지법」(2018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 2019년 4월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2019년 4월 23일 시행)을 하였다. 또한 2014년 북경, 상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한데 이어, 2020년 해남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비준하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24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정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기술관련 지식재산권 2심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기존 여러 부처가 관리하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일원화하는 중앙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2019년에는 지방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미국과「미중 1단계 경제무역합의」에 서명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17일「특허법」에 대해 4차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20년 11월 11일「저작권법」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다. 이번「특허법」,「저작권법」개정에서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기업 보호주의,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상표 선점 등으로 인해 중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이 근절되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2월 중국정부는 미국 퀄컴에 과도한 기술사용료 요구는 반독점행위라고 판단하며 약 61억 위안(한화 약 1조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부정경쟁행위 또는 반독점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한·중 양국 간 교역증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지명도 제고 등에 따라 중국기업에 의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문제와 기술유출은 우리기업의 중요한 투자 장애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매년 한중 특허청장회담과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특허청과 중국 지방정부인 강소성과 지식재산권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채널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간 저작권 보호 관련 MOU를 체결하여 매년 정부간회의를 개최하

고 있다. 특히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등으로 한중간의 상호투자와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 간의 지식재산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22일 WTO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WTO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2013년 2월 지식재산권 문제를 전담하는 법원을 개원하였다. 러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개별 법률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 「민법」의 제4부, 제7편, 지식재산권 편 내에 총칙,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 품종개량, 집적회로 배치도, 영업비밀(노하우), 상표, 지적활동 결과물의 이용 등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1995년 구 소비에트연방의 8개국[129]은 유라시아 특허조약(Eurasian Patent Convention)을 통해 유라시아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를 창설하고 특허동맹을 결성하였으며, 발명을 유라시아 특허로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9년 9월 9일 유라시아특허기구(EAPO) 회원국들은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본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라시아 특허의 보호 대상이 발명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까지 확장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 · 사업 중단으로 인한 러시아 내 제품 · 부품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3.29.부로 특정 물품에 대한 병행수입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 · 갱신하는 외국산 상품 목록에 대해서는 러시아 유통업자 등 수입자가 러시아에 등록된 상표권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우호국 기업의 동의 없이 해당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지재권 침해에 따른 수입자의 책임이 면책된다.

한편, 러시아민법 상 국방 · 안보 및 시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 등록된 특허권 · 디자인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22.3.6.자 러시아 정부령에 의해 비우호국 국적자 보유한 지재권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없이 무상 실시할 수 있다.

129) 러시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말레이시아는 WIPO 회원국이며 파리협약, 베른협약, TRIPS에 가입되어 있으며 특허권, 등록상표, 의장, 저작권, 집적회로 설계, 지리적표시 등의 보호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CPTPP 발효, 기타 FTA 추진 등으로 지재권 보호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말레이시아 편을 제작하여 법제도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멕시코는 2018년 11월 30일, 미국·멕시코·캐나다는 기존의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는 USMCA에 공식 서명하고, 이후 미국 하원의 반대로 인해 개정안에 다시 합의를 이루면서 2019년 12월 3개국 중 처음으로 비준하였다. USMCA는 '저작자 사후 최소 70년의 저작권' 등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USMCA 개정의정서를 통해 신규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10년간 데이터를 보호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 상표권 등 제반 지재권 보호 관련 법규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물의 시장유통이 많은 편이다. 미국은 2021년에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멕시코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멕시코는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지만, 멕시코에서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멕시코에서 개별적으로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주장이 불가능하다.

베트남은 WIPO회원국으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TRIPS 협정 및 베트남이 맺은 기타 국제 지식재산 협약을 따르고 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 법률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세부 규정이 미비해 무단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의 꾸준한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증가와 맞물려, 지식재산권 이슈 또한 양적, 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침해 및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여러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가 택할 수 있는 구제책은 크게 4가지(행정구제, 민사소송, 형사처벌, 수출입 통제)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베트남 국경을 통해 반입하는 모조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으며 증가하는 각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에 비해, 베트남 특허청(NOIP-www.noip.gov.vn)의 지식재산권 등록 행정 처리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 투자 진출하거나 투자예정인 우리나라 기업들을 돕기 위해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IP-DESK를 운영하여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브라질은 아직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브라질은 2019년 상표의 국제 등록 관련 협정인 마드리드 의정서에 서명했다. 브라질 특허청인 INPI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고 있다. 브라질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신규 특허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지재권의 대외적 평가는 낮다.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한국과의 FTA를 통해 한국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권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부가 설치되었다. 한·싱가포르 FTA 제17장 “지식재산권”에 의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실체 심사 없이 특허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도는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재권 침해율이 높고 보호 메커니즘이 허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의약품, 화공제품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2021년에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인도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발간한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인도 편을 참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20년), 상표권(10년), 저작권(50년 또는 사후 70년), 산업디자인권(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어 진다. 그 외에는 지리적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보호제도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 소유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미국 스페셜 301조상의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보호를 담당하는 팀을 격상시키는 등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재권의 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은 WIPO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 시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국정부는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불법 음반, CD, 서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복제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은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8년부터 감시대상국으로 조정되어 2022년에도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태국 내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면서 현지인에 의한 상표무단 선등록 피해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로 지재권 권리확보를 위한 태국 현지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인식제고, 권리확보 및 분쟁대응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콕 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

한 처벌은 미약하다. 특히, 인터넷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은 1994년 이래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관련 스페셜 301조 보고서상 감시대상국 또는 우선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시켜 왔으나, 2014년 보고서부터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 노력을 감안하여 필리핀을 동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2019년 한 해(1월~12월) 동안 필리핀 정부기관인 국가 지식재산권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CIPR)가 압수수색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총 추정액은 약 221억 3,000만 페소(한화 약 5,193억 원)이며, 압류물 대부분은 고급시계류, 개인용품, 가방, 광매체물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3월에도 필리핀 지식재산청내 지재권 집행사무소(IEO: IPR Enforcement Office)는 현행 업무범위에 전자(electronic) alc 디지털/온라인 채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과 광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재권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재권 침해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파기명령 부과 외에도 관련 정부기관에 사업허가권 등과 같은 허가 및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작권 침해자가 소명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60일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도 하였다.

호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어, 너무 지나친 규제는 현실에 맞추어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 기업이 호주내에서 지재권을 침해 받은 사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호주의 특허관련 업무는 IP Australia(www.ipaustralia.gov.au)에서 맡고 있으며 일반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의약품 25년)이다. 혁신 특허의 보호기간은 8년인데, 호주 정부는 특허법 효율성, 규제 간소화 등을 위해 일반 특허와 혁신특허를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2021.8.25.일이후부터 신규 혁신 특허에 대한 접수를 받지 않고, 기존 혁신 특허를 일반 특허로 전환하여 주고 있다. 호주의 상표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나 등록이 권고된다. 최초 상표권 등록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종료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10년씩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Trade Mark가 최초 등록된 이후 5년이 지나면 검사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디자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호되며 총 10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에 따라 저작권의 라이선스와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원본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나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예술 및 문학 작품은 대개 작가가 사망한 날로부터 70년 또는 최초 공개된 해로부터 70년간 지속되고, TV나 라디오 방송의 경우 방송일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해외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 국적의 국가와 호주가 같은 저작권관련 국제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호주내에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호주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은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하는 해당 콘텐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은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 시장 중에 하나로서, 교역이 활발한 만큼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상황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 마카오와 별개로 독자적인 지식 재산권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본토 또는 마카오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더라도 홍콩 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홍콩지식재산권서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 홍콩의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는 지식재산권서와 해관을 들 수 있다. 지식재산권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를 수행한다. 해관은 홍콩 공항, 항구, 시내에서 모조품 조사 및 단속에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 뿐만 아니라 홍콩 내에서 제작된 물품에 대해서도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주요 지식 재산권 유형으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표준특허(보호기간 20년), 단기 특허(보호기간 4년, 1회 연장가능)이고, 상표권은 10년(10년 마다 갱신필요), 디자인권은 5년(최대 4회 연장 가능)이다.

이라크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제도는 여타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

다. 그러나 치안질서도 확보하지 못한 현재 이라크 상황에서 지재권을 보호할 유효한 행정적 집행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요원한 상황으로 실제 지재권 보호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지켜줄 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품, 윤활유, 전자제품, 담배류 등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제품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으며, 특히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들이 모조품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의 행정력 미비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그 밖에 가나, 남아공, 니카라과, 라오스, 르완다, 루마니아, 볼리비아, 스리랑카, 앙골라,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수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요르단, 적도기니, 카메룬,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케냐, 쿠웨이트, 튀르키예, 튀니지,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등 개도국에서는 아직도 불법복제물의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개도국에서의 지재권 분야 통상장벽은 주로 지재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거나 법적 집행능력의 부재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불법복제 시에도 이를 처벌할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집행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재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도국에서도 지재권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등 이전보다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서비스

개관

WTO 서비스협상 동향

GATT 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 제정되어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UR 협상 당시 서비스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130]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2월부터 GATS하에서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었다. WTO 출범 이후 UR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출범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으며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9개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131]

DDA가 출범하면서 DDA 선언문에 서비스협상의 일정 및 최종협상시한이 명시됨에 따라 동 분야의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02년 6월에 서비스 분야별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고, 2003년 3월에 양허요청안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분야별 양자간·다자간 협상과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130) 기설정의제란 UR 협상을 통해 체결된 WTO 협정에서 지시하고 있는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작업과제를 의미한다.

131) 9개 주요 협상 의제로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분쟁해결양해,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개도국 개발문제 등이며 이중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며,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등도 중요한 의제이다.

DDA 출범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던 다자무역협상은 중간점검회의의 성격을 가진 칸쿤 각료회의(2003년 9월)가 결렬되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짐과 동시에 최종협상시한의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서비스협상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이 다자무역협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2004년 DDA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2004년 8월 1일 'July Package(WT/GC/W/535)'가 채택되면서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동 합의문에서는 최종협상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까지 DDA 협상을 지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를 2005.12월에 홍콩에서 개최하는 것을 명시함에 따라 DDA 협상의 모멘텀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비스협상의 경우 July Package에서 1차 양허안(initial offer) 미제출 국가의 조속한 제출을 독려하고 1차 양허안 기제출 국가의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 제출 시한(2005년 5월)을 명시함에 따라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서비스 분야의 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5년 5월에는 수정양허안이 제출되었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당초 회의가 결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언문이 채택됨에 따라 향후 협상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선언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서비스 협상의 경우 각료선언문 본문에서는 서비스협상의 목표, 개도국 유연성 원칙 등이 합의되었으며 부속서 C에서는 모드(Mode)별 협상목표, 이해당사국간 복수적 협상 개시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고려 등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2006년 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고 2006년 7월까지 2차 수정양허안을 제출하며 2006년 10월까지 최종양허안 등을 제출하는데 합의하였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DDA 협상은 2011년 들어 DDA 출범 10년째를 맞이하여 연내 협상을 타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WTO에서는 1/4분기 동안 복수간·양자간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NAMA를 중심으로 주요국간의 대립은 지속되었고, 그 결과 2011년 4월 29일 비공식 무역

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 회의에서 구속력을 가진 의장 텍스트 채택이 무산되고 분야별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만 채택됨으로써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이 어렵게 되었다. WTO 회원국들은 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소규모 패키지의 조기 타결을 계획하고 협의를 했으나, 이 또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되어 2011년 7월에 무산되었다. 2011년 4월 29일 발표된 분야별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협상은 그동안 일부 부분적인 진전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2008년의 Signaling Conference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 협상의 부진은 여타 분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DDA 서비스 협상이 2005년 5월 주요국들의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DDA 서비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132]간에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의 협상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2012년 2월부터 2013년 초까지 개최되었으며, 2013년 3월부터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시작하였다. 2013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TiSA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 TiSA 협상 참여국들이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33] TiSA 협상은 2016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다자 및 복수국간 협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크게 낮아지면서 TiSA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132) RGF 국가는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파키스탄 등 1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33) 2013년 6월 당시 TiSA 협상 참여국은 22개국이었으나 이후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면서 2016년 11월 기준 총 23개국(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대만, 홍콩, 파키스탄,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파라과이, 튀르키예,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이 TiSA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RTAs 서비스협정 체결 동향

다자간 자유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지역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따라 WTO 회원국들의 지역무역협정(RTAs: Regional trade agreements)의 체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체결된 대부분의 RTAs는 상품협정만을 포함하고 서비스협정은 다루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서비스협정을 포함하는 RTAs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2년 12월 기준 발효중인 RTAs 356건 중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RTAs가 189건(53.1%)에 이르고 있다.[134]

용어의 정의

GATS 제1조에서 서비스무역의 형태(mode)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예: 국제전화)
-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예: 관광)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외국은행 영업)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패션모델, 컨설턴트)

최혜국(MFN: most-favoured-nation) 대우란 모든 교역 상대국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한 회원국에게 혜택을 줄 경우 모든 다른 회원국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GATS 제2조). 다만, GATS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MFN 대우 면제 목록에 명시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MFN 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134) WTO, RTA Database(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참고.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가리킨다(GATS 제17조). 즉, 일단 외국회사로 하여금 국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하면 외국회사와 국내회사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교역장벽의 일반적 유형

서비스 교역장벽은 일반적으로 전술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및 NT, 그리고 MFN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서비스협정의 주요 내용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이다. UR 협상결과 타결된 GATS는 상품분야의 협정(GATT)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 MFN 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목록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와 MFN 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GAT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GATS 본문에서는 NT, MFN 대우, 투명성, 국내규제, 상호인정, 국제지불 및 송금 등에 관련된 원칙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GATS의 NT 원칙은 상품분야와는 달리 회원국이 외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양허한 경우

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양허를 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NT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고 있다. 부속서는 서비스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혜국대우의 면제, 자연인의 이동, 항공,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특정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목록(서비스 양허표)은 회원국들이 자유화할 것을 양허하는 서비스 분야와 분야별 활동에 관해 MA 및 NT 상 제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서비스 양허표는 W/120[135] 기준 총 155개 서비스 업종이 포함되며 각각의 업종별로 MA 및 NT와 관련된 네 가지 공급형태[136]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 양허표에서는 MA 및 NT상의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양허를 하지 않는 경우 'unbound'로, 아무런 제한 없이 양허를 하는 경우 'none'으로 명시하며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MA 및 NT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RTAs 서비스협정에서도 GATS 형태(positive list 방식, 열거주의)의 서비스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WTO 서비스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양허표를 도입하여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을 기재한다. 반면, NAFTA 형태(negative list 방식, 포괄주의)의 RTAs 서비스협정은 부속서 I(현재유보)과 부속서 II(미래유보)에 NT, MA, MFN 대우, 현지주재(LP: Local Presence) 조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NCMs: Non-Conforming Measures)를 둘 수 있고, 부속서 I과 부속서 II에 기재되어있는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137]

135) WTO(1991), MTN.GNS/W/120 참고.

136) 앞서 언급한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을 의미한다.

137) NAFTA 형태의 RTAs는 서비스 무역 형태 중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자연인의 이동은 국경간 서비스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에서 다루고 상업적 주재는 투자(Investment) chapter에서 다룬다. NAFTA 형태의 RTAs 서비스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은 서비스분야의 상업적 주재에 대해 투자 chapter의 NT, MFN 대우,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조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두는 경우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기재해야 한다.

현황분석

UR 당시 WTO 회원국들은 전분야에 해당되는 수평적 조치(Horizontal Commitments)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별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네 가지 공급형태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내용[138]을 명시하여 양허표를 제출한 바 있다.[139] DDA 출범 이후 각국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1차 양허안(initial offer)과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을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DDA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허의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서비스분야의 자발적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조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운법에 따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신업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연,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건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으며, 외국인 설립 기업에 내국인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WTO 가입 당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 단계적인 개방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인 규제 완화·철폐가 이루어졌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의 외국인 투자 제한목록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철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제한·금지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138) 이를 Sector-Specific Commitments라고 한다.

139) 국별 서비스시장 양허내용은 WTO(1999), Services Database에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의 서비스시장 세부 개방 약속(양허) 내용은 UR 양허표를 참고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발효한 국가의 경우 FTA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양허표나 서비스·투자 유보목록을 살펴보아야 한다.[140] 다음의 내용은 현지 공관을 통해 파악된 서비스분야의 주요 교역장벽이다.

미국은 서비스분야의 개방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해운서비스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국적선 요건을 규정하여 해운서비스 시장에서 미국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61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연안운송에 대한 규정인 「1920년 미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소위 Jones Act)에도 '모든 미국내(속령(屬領), 자치령 포함)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승선한 미국 국적선박에 의해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적선 요건을 명시한 그 밖의 법률로는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1954년 화물우선적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 「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of 1985)」, 「1995년 알래스카 산 석유 금수해제법」 등이 있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 · 미 FTA에서 미국은 미 · 호주 FTA(2005년 발효)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서 이에 더해 미국 내 케이블 TV 사업자에 대한 지분 제한 관련 미래유보를 포함하지 않고 UR 이후 시장접근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다만, 미국은 한 · 미 FTA에서 여타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의 일시입국 또는 자연인의 이동 챕터를 불포함하고 있다.

140)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협정 웹사이트(http://www.fta.go.kr/main/)에서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과 각각의 FTA 협정별 협정문을 제공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1997년부터 우편서비스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쟁 도입, 규제당국과 사업자 분리를 통한 시장의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서비스 지침을 세 차례 도입·개정하였다. 동 지침에 따라 2006년 1월 50g 이상 우편물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정부 독점인 50g 미만의 우편물도 2009년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고, 2kg 이하 우편물과 10kg 이하 소포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 등을 규제하되, 우편 사업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정부 조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우편서비스 시장 자유화 방안은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그 일정이 연기되다가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우편면허를 획득한 민간 사업자의 우편시장 참여가 가능해 졌다.

EU는 문화의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제한을 하고 있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개정안(2016년 5월 25)을 통해 VOD 서비스 제공목록의 20% 이상을 EU산 작품으로 구성할 것을 포함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방송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상의 제한을 두고 있고 영화상영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EU 방송지침(Broadcast Directive, 1989)」에서는 TV 송출 시간의 절반이상을 EU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EU 회원국은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영화산업을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개방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MFN) 적용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콘텐츠를 배급·유통하기 전에 관련 심의 기관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연령 등급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비디오게임·온라인게임은 USK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에서, 영화·비디오·DVD와 같은 시청각물은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에서 심의를 한다. 불가리아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에 따라 공중파 방송에서 많은 부분(predominant portion)을 유럽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며, 불가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체코에서

외국인이 방송과 미디어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등록절차도 필요하다. 폴란드에서도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의 경우 사업권(concession)을 취득해야 한다. 이탈리아는 정부가 지급하는 영화산업 보조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스크린 쿼터나 외국영화 수입 쿼터를 두지 않고 있으나 자국 영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화 제작시 아일랜드 영화협회(Irish Film Board)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준다. 한편, EU는 디지털 단일시장(DSM)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영화, 방송, 음악, 게임 등)의 회원국 간 휴대(portability)를 허용하도록 2018년 4월 법령(Regulation on cross-border portability of online content services)이 도입되었으며,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2017년에 EU 차원에서 EU의 이익과 안보,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FDI 스크리닝 제도(사전심사제도)가 발의되고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등 공동체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EU 개별 회원국들도 2010년대에 들어 외국인직접투자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4년부터 일부 분야에 대해 EU 회원국 외의 외국인이 투자 진출을 하는 경우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운송, 통신, 공공보건 등 정부가 지정한 주요 산업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프랑스 정부는 2019년에 '기업혁신과 성장촉진 전략 실행법안'인 팍트 법(loi PACTE)을 시행함에 따라 투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야가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도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략산업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대외경제법 시행령(AWV: Außenwirtschaftsverordnung)의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2017년 AWV의 개정을 통해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자가 독일기업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한 것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특정산업(에너지·금융·교통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 통신설비, 국민여론과 관련된 언론사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자가 10% 이상의 의결권을 획득할 경우 정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AWV를 다시 개정하였다. 2020년 5월 1일 발효된 개정안에서는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 투자인 경우, 독일 주요 핵심 산업 및 주요 인프라 보호와 동시에 EU 안보 및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 목적 하에 투자 심사 및 통제를 강화하였고, 투자 규제 분야에 의료분야의 제조 및 연구개발을 포함시켰다. 이어 2021년 5월 또 한 차례의 개정으로 미래 첨단기술 분야 기업의 M&A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투자자가 미래 첨단기술 분야(AI, 자율주행, 반도체, 양자기술, 항공우주, 핵기술 등 총 16개 분야) 기업의 지분을 최소 20% 취득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또한 이전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강화 조치된 의료분야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20% 지분(기존 10%) 취득 시 사전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EU는 2021년 5월 2020년 기발표한 EU 산업전략(EU Industrial Strategy)을 개편하여 유럽회복을 위한 더 강한 단일시장(towards a stronger Single Market for Euroe's recovery)을 발표하였다. EU는 팬더믹으로 단일시장의 사람,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되었다면서, 서비스 측면에서는 새로운 잠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통지의무를 포함하여 회원국이 기존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비스 지침(Services Directive)을 완전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141]에서 EU는 총 155개 서비스 분야 중 139개 분야를 양허하였으며, 이중 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자문·조사·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 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내수운송 등 운송서비스, 운송보조 서비스 등 9개 분야의 경우 DDA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양허를 하였다.

141) 한·EU FTA에서 서비스 분야는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열거식(positive) 방식을 따름.

EU의 서비스 분야별 교역 장벽은 다음과 같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1980년대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공공통신망 독점이 종료되어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통신 서비스 규제가 EU 회원국별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범유럽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EU 통신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제와 도소매 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EU 통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하여 2010년 5월 19일 Europe 2020 Strategy 내에서 Digital Agenda를 채택하고 디지털 경제발달, 고속통신망 구축 가속화, single online market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5년 5월 6일 EU 집행위는 EU 28개국의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며, 490-790 MHz 대역 주파수 배정, 온라인 콘텐츠의 국경간 이동성 보장, 역내 휴대폰 로밍비 폐지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15일부터 EU 역내에서의 로밍비(roaming tariffs)가 전면 폐지되었고, EU 전역 어디서든지 여행객들이 추가 로밍비 없이 자국과 동일한 통신요금만 지불하게 되었다. 또한 EU는 2021년 3월, 「2030 Digital Compass」를 발표하며 디지털 인력, 기반, 기업, 공공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한 EU차원의 2030년 디지털 목표를 제시하였고, 2030년까지 모든 인구밀집지역은 5G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벨기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통제하거나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는 없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 간 차별을 두지 않으며, 오히려 벨기에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투자 한도액, 투자 비율, 지분 소유 등에 대한 제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 및 보험, 에너지, 방송, 통신, 우편서비스와 관련한 산업에 대한 투자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관련 산업에 투자 시, 사전 통보 혹은 관계 당국에 의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벨기에 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벨기에는 2004년 영화 등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의 진흥을 위해 투자회사에 세금혜택을 주는 Tax Shelter 제도를 도입하였다. Tax Shelter 제도가 적

용되는 투자 대상 작품은 영화, 극장 및 TV용 애니메이션 등이며, 벨기에기업 및 VAT 번호를 부여받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다(단, 투자자는 작품 전체 제작비용의 50%, 최대 투자한도 241,945유로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

폴란드에서 항공운송, 라디오·TV 프로그램 방송 분야는 정부의 인가(concession)를 받아야 하고, 사설탐정 등 통제되는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등록(register)을 해야 한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주류 도매, 유독성 물질 제조·판매, 방사성 물질 제조·판매,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판매, 약국 또는 의약품 창고 운영, 특정 우편·택배 서비스, 카지노 운영, 은행 운영, 보험회사·중개회사 운영, 통신서비스, 도로 운송,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투자펀드·연금펀드 설립, 비료·살충제 거래, 부동산 중개 서비스, 경제특별구역(SEZ)에서의 사업 활동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permit)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 화장품, 일부 아동용품(크레용, 물감 등)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공공 전화 네트워크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공공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에는 면허(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영국은 금융서비스, 우편, 주류 판매, 유전 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식용 육류(食肉)의 가공·소매 등에 대해 사업 인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 브로커, 식품 판매 등의 경우 사업 등록을 요구한다.

노르웨이는 원칙적으로 유럽경제구역(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EEA국가에 등록사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회사의 대표자와 이사의 과반수가 국적요건(노르웨이 영주권자)과 거주요건(최근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업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비EEA 기반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에서 은행, 증권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비EEA 보험회사의 국경간(cross-border) 보험서비스(예: 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 제공은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

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으며,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해운분야에 있어 노르웨이는 EU 지침을 차용하고 있다. 비EEA 외국해운회사가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부를 노르웨이에 두어야 하며, 대표자와 이사진에 대한 국적요건(과반수 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비EEA 외국해운회사가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을 했더라도 노르웨이 항구 간 여객·화물 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 항구 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할 수 없다.

스위스는 외국인이 은행업에 투자할 때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스위스는 국적 선박운행과 국내 항공사 운행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는 2008년 1월 1일부터 이사회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해야 하고 대표자 중 한 명은 거주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스위스는 외국인이 통신과 방송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두고 투자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 하에서 2010년 5월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과 규정에 관한 명령(Decree on Terms and Conditions for Attracting Direct Investment)」을 제정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르비아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서비스 분야는 국제적으로 판매하는 서비스(세르비아 영토 밖의 사용자에게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주로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지원)와 온천 지역에서의 호텔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는 서비스 분야에 있어 높은 진입 장벽을 두고 있었으나, 2012년 WTO에 가입하면서 총 155개 서비스 업종 중 116개 업종을 양허[142]하는 등 서비스

142) 러시아의 WTO 가입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총 155개 업종 중에서 26개 업종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90개 업종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양허를 하였고, 39개 업종은 미양허하였다.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단, 파이프라인 운송, 철도운송, 내륙수로운송, 의료, 과학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업종은 미양허 상태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15개 업종 중 텔렉스, 텔레그래프, 팩시밀리 등 3개 업종은 제한 없이 양허하고 그 외의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12개 업종은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내국민대우상 일부 분야(국가정체성,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정부지원이 존재하나,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도소매업에서는 일부 취급품목 제한(의약품, 의료기기(도소매), 알콜류(도매) 불허, 설립형태 제한(법인만 허용), 허가요건(소매업) 등 제한을 두고 있고, 소매업에서는 식품 및 비식품 취급, 자동차(부품, 액세서리 포함), 모터사이클, 주유소 등에 대해 양허하였다. 러시아는 WTO에 가입하면서 보험서비스와 은행서비스 전분야(기타금융서비스 제외)를 양허하였으나, 국경간 공급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거래형태 등을 제한하고 상업적 주재에 있어서는 설립형태를 현지법인(자회사)으로 한정하고 허가요건을 두는 등 다양한 제한이 있다. 외국은행의 러시아내 대표사무소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등록(등록기간 3년, 무기한 갱신 가능)을 해야 하며 업무범위가 연구·국제협력증진으로 제한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6월 20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튀르키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있으나 금융, 라디오·TV 방송, 국내 민간항공, 국내해운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을 두고 있다. 라디오·TV 방송의 경우 방송법(Law No. 3984)에 따라 외국인 지분을 49%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항공의 경우 항공법(Law No. 2920)에 따라 튀르키예 내에서의 승객, 화물 및 우편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 항공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또한, 해운 분야의 경우 해운법(Law No. 815)에 따라 튀르키예 내에서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튀르키예 국민만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튀르키예에서는 노동허가법 시행령(2010년 8월 시행)에 따라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를 신청하려면 최소 5인

이상의 튀르키예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일부 조건[143]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일본은 금융 분야에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일본 내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에게 금융중개 및 알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된 감사(금융청 검사, 일본은행 고사(考査), 재무성의 외환업무관련 감사, 세무서의 수시감사 등)를 받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은 일본의 금융결제망에 가입하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으나 높은 가입비 및 운영비 부담 등으로 실제 가입에는 애로가 있어 마케팅채널의 구축과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거래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것을 면제하는 제도 운용에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을 차별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 제180조 제1항에 의거, 일본 국내은행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최초 거래시에만 거래처에게 교부하면 되지만 외국계은행은 매 5년마다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모든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는 대출금이자, 콜론이자 등의 거래에도 적용되고 있어 외국계은행의 업무상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외국계은행은 본국의 본점 결산일에 맞추어 매년 12월말에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영업 연도를 일본 회계연도인 3월에 맞추고 있어 현실적으로 외국계은행이 결산을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은 WTO 가입 당시의 개방 약속을 이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던 서비스 교역 장벽을 점차 완화 또는 철폐하였으나, 아직까지 다수 분야에 여러 가지 제한이 존재한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2004년 6월 1일부터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외국인 투자(합자, 합작, 독자)를 허용하였으며, 2005년 12월 11일부터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에 대해 최소 납입자본금(최소 100만 달러 이상) 요건 하에 외국인이 독자형태의 법인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한편 2018년 7월 28일부터

143) ①연락사무소(Liason Office)인 경우 ②튀르키예가 참가한 양자·다자협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한 경우 ③첨단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현지인 전문가가 부재한 경우 ④예외적인 상황의 FDI인 경우(단, Key Personnel에 한함)

시행된 「외국인투자허가특별관리조치」(2018)에 따라 중국은 국제해상운송, 국제선박대리 분야에 대한 외자제한을 폐지하였으며,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허가특별관리조치」(2019)에 따라 국내선박대리 분야에서 중국이 지배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하였다.

중국은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부분적인 개방을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교역장벽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외국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할 때 광전총국의 심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기업의 설립을 금지하고, 방송콘텐츠 제작(합작)은 49%이내에서 합작투자를 할 수 있다. 해외 드라마의 경우 당일 방영 프로그램의 총 방영시간의 25%를 넘을 수 없으며, 기타 방송프로그램은 15%를 넘을 수 없다. 또한 해외 드라마의 주시청시간대(19:00~22:00) 방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드라마를 5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고화질(HD) 해외 영화·드라마만 수입할 수 있다. 위성TV의 해외 프로그램 포맷 수입은 연 1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19:30~22:00 시간대에는 편성하지 못한다. 2014년 1월부터 해외 프로그램 포맷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144]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화 분야에서는 외국영화의 수입편수가 제한되어있다. 흥행수입에 따라 일정비율 나누는 방식인 분장제는 34편(14편은 3D/ IMAX(2012)), 배급회사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판권을 사는 방식인 단매제는 30편으로 제한된다. 중국은 영화 등 콘텐츠 제작 합자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WTO 가입 서비스 양허표에 따라 외자 비율의 제한(49% 이내) 하에 외국인의 영화관 설립을 허용하였으며, 2019년에는 「외국인투자허가특별관리조치」(2019)에 따라 영화관 설립 시 중국이 지배권을 보유해야 된다는 제한도 폐지하였다. 영화의 공동제작은 영화제작 허가증을 보유한 중국제작사가 '중외합작영화 허가증'을 확보한 후에 촬영이 가능하며, 제작된 영화는 폭력성 및 선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통과해야만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다.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외상 투자 금지에 해당된다. 중국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판호(중앙선전부 신문출판서),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문화부),

144)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2013년 10월 12일) 「TV 위성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ICP(Internet Content Provider)허가증(공업신식화부)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은 중국기업에게만 발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ICP는 상업적 인터넷서비스제공 업무에 대한 허가증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지분비율을 51:49로 제한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수입은 광전총국, 문화부에서 지정 또는 허가한 국유기관에게만 허용되며, 광전총국에서 TV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다. 외국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업 및 영화제작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기관과 애니메이션 제작경영기관 설립 시 광전총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입 애니메이션은 17:00~21:00에 방영 불가이며, 애니메이션·아동·청소년 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은 국산 애니메이션을 70% 이상 편성해야 한다. CD와 DVD를 수입할 때 출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음반 영상제품 출판의 경우 중국 지분이 51% 이상인 합자 형태의 외국인 투자만이 가능하다. 중국은 문화예술공연단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한다. 반면, 2019년 7월 30일부터 공연중개기관에 대해 중국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은 철폐되었다.[145] 한편, 2014년부터 중국은 콘텐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선심사 후방영'으로 강화하였다.[146] 이와 같은 규제 외에도 중국은 '라디오 TV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 취득 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만 방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대해서는 「온라인 해외 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통지」에 의거하여 동영상 사이트에서 해외 드라마 제공 편수가 중국 콘텐츠 총량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방영 1년 전에 성급 신문출판광전국 및 광전총국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147], 인터넷 상에서 해외 영상물 상영시 '영화상영허가증' 혹은 '드라마발행허가증' 취득[148]을 요구한다.

145) 중화인민광화국상무부(2019년7월30일)「외상투자허가특별관리조치(2019년)」발표

146) 「온라인드라마, 단편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보충통지(2014년)」

147) 광전총국은 매년 2월 20일 전, 모든 동영상 사이트에서 계획한 해외 영상물 심사 '인터넷 해외영상물 수입 정보 통합 등록 플랫폼'에 공고하였다.

148) 허가증이 없는 경우 2015.4.1일 이후 방영할 수 없다.

중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현황

구분	연도	명칭	주요내용
게임	2004	온라인 게임류의 프로그램 방송 금지에 대한 통지	- 모든 온라인 게임류 TV 방송 금지
게임	2004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 작업에 관한 문화부통지	- 모든 온라인 게임은 문화부에 신고 후 심사
영상	2004	인터넷 등 정보망과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방법	- 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영화와 드라마는 '영화개봉 허가증'과 '드라마 배급허가증' 또는 'TV 애니메이션 배급허가증' 획득 - 정보망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가진 사이트만 정보망 전파 뉴스류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공통	2006	온라인 콘텐츠 전파권 보호조례	- 중국내 모든 온라인 콘텐츠 전파에 대한 관리 규정
영상	2007	인터넷 영상물 관리 강화 통지	- 인터넷 유통 영상물에 대한 심사 및 관리 강화 - '애니메이션 배급 허가증' 취득 및 심의 사항 규정
공통	2007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 국유독자기업/국유지주기업만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신청가능 - 자체로 인터넷 드라마류 서비스를 제작 운영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추가요구
출판	2008	전자출판물출판 관리규정	- 전자출판물출판사는 외자 진입 불가능
영상	2009	인터넷동영상콘텐츠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 영화와 드라마, 만화 및 다큐의 인터넷 방송 허가요구 - 문란한 내용 전파 금지
게임	2009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관리 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	- 온라인게임 게임머니에 대한 규제 정책
게임	2009	수입온라인게임심사, 허가 관리의 강화에 대한 통지	- 온라인게임 심사 및 관리 권한 신문출판 총서 규정
공통	2009	TV를 수신단말기로 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수신 단말기 종류에 따른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발급 명시
게임	2010	온라인게임관리 임시규정	- 온라인게임 콘텐츠에 대한 관리 규정 - 온라인게임 이용시 실명확인,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 취득, 해외업체 게임 변경시 신고후 심사
출판 음반 영상	2010	인터넷 출판물 발행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통지	- 온라인 출판물 발행 기업 '출판물경영허가증'과 '음반/영상물 경영허가증' 취득

구분	연도	명칭	주요내용
게임	2011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사용자에 대한 부모감호에 대한 공정실행방안	-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규제 - 미집행 운영사에 벌금형진행
출판	2011	출판관리조례(수정본)	-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 활동 종사 시 출판물경영허가증 획득 필요 등 일부 내용 추가 혹은 수정
공통	2012	이동스마트 단말기 네트워크 접근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 정부의 규제 경향에 반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금지 ※ 해외콘텐츠의 다운로드 관련 전파 경로에 대한 콘텐츠 규제가 될 수 있음
영상	2012	온라인드라마, 마이크로 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통지	- 온라인 동영상 방영업체는 사이트에 온라인 콘텐츠를 업로딩 하는 개인이나 기관 신분 확인 필요
영상	2014	온라인드라마, 단편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보충통지	- 선심사 후방영, 콘텐츠 내용심의 강화 -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기구는 '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취득. 허가증 없는 기구가 제작한 콘텐츠 방영 금지 -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는 제작자 실명 확인된 콘텐츠만 방영
영상	2014	온라인 해외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통지	- 총량규제 : 30% 내, 1년 전 사전심사 - 인터넷상 해외 영상물을 개제할 시는 반드시 '영화상영 - 허가증'혹은 '드라마발행허가증'을 취득
출판	2016	출판관리조례(제4차수정본)	- 도매업 종사 시 출판물경영허가증 취득 - 출판물발행활동 종사시 행정부분에 등록(비안; 備案) - 기타 수정내용
영상	2019	온라인단편영상플랫폼관리규범	- 플랫폼에서 방송되는 모든 짧은 동영상은 내용 검토후 방송 가능 - 불법 부정 업로드 계정리스트 라이브러리 설립 -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면 동영상의 편집과 일부 삭제가 불가능 - 계좌 실명제 관리제도의 실현을 확보
게임	2019	"온라인게임관리임시규정" 폐지, "문화여유부 문화시장종합집법감독국 온라인게임시장 유관법 집행 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	- 온라인 게임에 대한 문화여유부의 관할권 종료(폐지) - 중앙선전부(신문출판총서)가 온라인 게임 관련 사안 관할

중국은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기존 35%에서 49%로 완화하였으며, 2002년 8월에는 중국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은 외자지분 25% 이하, 대표 중국인)하는 조건 하에 중외 합자·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합영기간은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유통업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철폐하였다. 2004년에 소매업과 도매업의 외국인 투자 지역 제한이 철폐되었고,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면서 자격요건 중 연간매출액 및 자산규모 요건을 철폐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도매업 50만 위안, 소매업 30만 위안)하였다.[149] 2006년 중국 정부는 화학비료 및 원유, 정제유 등 품목에 대한 도소매업 취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였으나 일부 업종 및 품목은 중국 상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투자 또는 취급이 가능하다.[150] 그리고 2014년에는 국무원의 "등록자본등기제도개혁방안(《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方案》)"이 시행됨에 따라 유한책임공사, 1인 유한회사, 주식유한회사에 대한 최저등록금 제한이 철폐되었다(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에서 결정한 특수업계는 제외). 그리고 2018년에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벼·밀·옥수수의 매입 및 도매에 대한 외자제한이 철폐되었다. 한편, TV 홈쇼핑이나 전자상거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의 광전총국으로부터 사업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무부로부터는 외자기업 설립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받은 외자기업(TV 홈쇼핑 또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외자온라인기업관리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 기업에 대한 관리는 광전총국이 한다. 중국은 인터넷 쇼핑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외자기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개정·발표된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에 따라 외국 단독투자기업의 전자상거래 업무를 금지하였으나, 2015년 「국무원 전자상거래 발전과 경제의 신동력

149)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

150) 민감한 경영범위에 속하는 업종(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동판매기 등)에 종사하는 경우와 국가관리가 필요한 중요 품목으로서 「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 제17, 18조에 규정된 제한 제품(강재, 귀금속, 철광석, 연료유, 천연고무, 화학비료, 제품유, 원료, 소금, 담배,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 약품, 농약, 식량, 식물유, 사탕, 면화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중앙 상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육성 및 가속화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大力发展电子商务加快培育经济新动力的意见》)」이 통과됨에 따라 외상투자 전자상거래업무에 대한 외자 지분율 제한이 철폐되었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의 경우 2004년 12월부터 외자기업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유통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외자 독자 프랜차이즈 기업의 설립은 물론 타 업종으로 등록한 외자기업의 프랜차이즈 분야 사업 확장도 허용된다. 그러나 2007년 1월부터 중국은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외자 기업의 진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151] 그 외에도 직접판매의 경우 중국 정부는 일정한 설립조건을 갖춘 기업에 직접판매를 허용하나 다단계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법률서비스 분야를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 법률사무소는 대표처 형태만 허용되며, 업무범위는 중국법률사무[152]를 포함하지 않는 활동으로 제한된다. 중국에서 외국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해 있어야 하며, 변호사 직업윤리나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처의 대표는 직업변호사이면서 각종 요건[153]을 충족해야 하며, 수석대표에 대해서도 경력요건(중국 이외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과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 건설서비스의 경우, 외국업체는 합자와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1급 시공기업 등록자본금 1,000만 달러 이상, 2급은 5,000만 달러 이상, 1급 실내장식은 자본금 200만 달러 이상) 사전에 외국인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증명서(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證)'를 취득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2년 12월 1일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

151) 2007년 1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에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프랜차이즈 관련 기본 법규로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를 공포하였다. 동 조례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사업자 등록제도 신설, 사업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의무화, 가맹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조례에서는 사업자 자격요건으로 '개업 1년 이상 된 직영점을 2개 이상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공상부처에 등록된 '기업'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외자 기업의 진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52) 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

153) 자격 취득 국가의 변호사협회 회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 형사처벌 경력과 변호사 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건설기업은 2005년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중국 내에 현지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하여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건설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 범위를 ①전액 외자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 투자 건, ②국제기구에 의해 자금조달이 된 건, ③중외합작 프로젝트로 외자가 50% 이상인 건이나, 외자가 50% 미만이지만 기술적 난관으로 중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주할 수 없는 건, ④중국 투자 프로젝트이지만 기술적 난관으로 중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주할 수 없는 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7월 「부동산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于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管理的意見)」을 시행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외상투자기업의 부동산 기업 설립,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 등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고급 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의 건설과 경영 등을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에 포함시켰으며, 2012년 개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도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분양(합자, 합작의 경우만 가능) 등 부동산업을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개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중국은 부동산 관련업을 제한업종에서 제외하고 시장을 개방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시 양허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해 「외국인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을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시켰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 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기본통신서비스는 49%까지, 부가서비스는 5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되었고, 외국인 지분 한도는 2019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온라인 게임 또는 이동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지분을 50%까지 허용(단, 최저자본금요건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 2013년 9월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한하여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2018년 개정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에 따라 중국의 모든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이 폐지되었다.

2018년 7월 중국이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은행업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이 철폐되었고, 증권·기금관리·선물·생명보험의 외자 지분 한도가 51%(증권사·펀드·선물회사 49%→51%; 생명보험사 50%→51%)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20년 4월 중국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외자 지분 한도를 폐지하였다.

한-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됨에 따라 양측은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 FTA 최초로 상해 자유무역지역(FTZ)내에서 우리나라 로펌의 대표사무소와 중국 로펌의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은 외국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시 중국내 실적만을 인정하여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기업에게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 인정을 약속하였으며, 건설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은 면허 등급 판정 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을 인정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상해 FTZ내에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이 상해 지역에서 외국자본비율 요건[154] 제한 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유통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외국계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대형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DDA 양허에서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있어 합작 기업 설립만을 허용해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순 한국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게 되었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에서는 그간 외국기업의 진출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으나, FTA를 통해 공연 중계 및 공연장 사업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합작 진출을 허용(49% 지분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방송·법률·회계·엔지니어링 및 건축·금융 서비스 등에서 제한

154) 기존에는 중외 합작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①외국투자 50% 이상, 또는 ②외국투자 50% 미만이나 중국기업 단독수행이 불가한 사업만 수주 가능하다.

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싱가포르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49%까지, 개인 소유지분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Temasek)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싱가포르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률회사와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의 합작,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 고용은 허용되나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으며 합작의 형태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다르다.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엔지니어링 회사를 100% 소유할 수 있으나 대표, 임원 등에 대해 국적요건과 각종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회계서비스의 경우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하며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의 형태는 회계사무소(개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accounting corporation) 등 세 가지이며 회계법인의 형태별로 파트너 또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일정 요건이 요구된다. 은행 및 증권업의 경우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가 2006년 3월 발효됨에 따라 양자간 서비스무역은 동 협정문에 따르게 되었다. 동 협정문의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의거,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현지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은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를 하고 있으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간행, 초·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TV 방송,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율 제한 등 특별한 서비스 장벽을 두지 않고 있다. TV 방송의 경우 외국인이 TV 방송 면허를 가진 회사의 지분을 2% 이상 취득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지분은 49%까지로 제한된다. 라디오 방송 면허를 보유한 회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된다. 한편 민간항공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율 제한은 없으나 외국 항공사에 대한 규제를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맡는다는 차이가 있다.

대만의 경우 WTO 가입으로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였다. WTO 가입 이후 수출입 해운컨테이너운수업이 개방되고 건설업에 있어서도 외국 건설업체의 외국 경영실적을 인정하며 건설업 등급제를 폐지하였다. 그 외에 대만 내 외국변호사의 업무를 허용하고 항공·육상 종합배달 서비스업체는 항공화물 운송 도급자 신분을 갖고 자체 차량으로 대만에서 화물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며 수입영화의 카피 수 및 외국영화 상영 극장 수 제한이 철폐되었다.

대만 정부가 2018년 2월 8일 개정(2022년 12월 현재까지 유지 중)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업, 우편·저축, 환어음, 민간 공증 서비스(법률), 공중파 라디오 방송, 공중파 TV 방송,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특수 오락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동 조례에서 군사용 항공기 수리업, 송전·배전업(전력공급업), 가스배송관, 수도사업, 자동차 화물, 자동차 컨테이너, 선박 운송·대여, 항공운수업, 공항 서비스업자 및 항공 케이터링업자, 제1분류 전신사업, 토지등기 전문 대리서비스, 케이블 라디오·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오·TV 방송 사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가 많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의 경우 말레이계 현지인 지분(부미푸트라 지분)이 30% 이상 포함돼야 하

며 물류업 중 육상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분 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기본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 모두에서 외국인 지분을 30%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WTO의 기본정보통신협정의 제한된 부분만을 수용(단, 기본통신서비스는 기존 통신운영자의 지분 취득에 국한)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도 금융, 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장벽을 갖고 있다.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리스트 Ⅲ(List 3)에 포함되어 외국인 지분 50% 미만은 승인 없이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며,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소유는 외국인 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검토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투자요건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도 투자에 따른 경영참여에 한하고 직업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국인에게 요구되는 각종 요건(자격증 취득 등)의 충족과 태국거주, 노동허가 취득 등이 필요하다. 태국에서 외국인 지분소유 상한이 49% 이하인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이 100%를 투자하고도 51%의 지분을 태국인의 명의를 빌어 등록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태국의 통신분야는 IMF와의 합의에서 민영화를 약속했지만, 기존 업체 외 제3 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방식에 있어서도 시설을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전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에 「통신서비스법」을 개정하여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허용 한도를 49%에서 25%로 축소시켰으나 기존 업체의 반발로 다시 49%로 환원되었다.

태국의 건설분야의 경우 외국 건설회사는 등록을 해야 하고 태국 내에서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태국 내에서 건축사나 엔지니어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태국은 외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가할 때 等級分類(billing rate)에 의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 관광안내원 직종은 외국인에게 미개방되어 있으며, 컴퓨터관련 서비스, 음반제작 등 시청각서비스, 외항화물수송, 화물운송 대리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라 방송매체, 엔지니어, 의료업(약사 제외),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와 소매업(자본금 250만 달러 미만), 민간경호회사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 리스트 상에 기재된 업종은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제한되는데, 2018년 발표된 11차 외국인투자 제한리스트(FINL: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서 기존 25%를 40%로 확대하였다. 리스트의 주요 제한 업종은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예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 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으로, 현재 외국인 지분 소유는 40%까지 허용된다. 반면 광고업의 경우 30%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투자제한 기업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44호(Perpres 44/2016)」을 시행하여 문화산업, 통신서비스, 창조경제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신규·추가 개방을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더해 2020년에 「고용창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0년 제11호(UU Cipta Kerja 11/2020)(일명 '옴니버스법')」이 마련되고 2021년 동 법의 시행령인 「대통령령 2021년 10호(Perpres 10/2021)」이 시행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가 대폭 확대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옴니버스법」과 「대통령령 2021년 10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서비스 분야는 도박·카지노와 중앙정부만이 실행가능한 활동분야(국가 방위 및 안전관련 업무활동)이다. 한편,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는 ▶조합·영세중소기업 할당 사업 및 그들과의 협업 분야와 ▶특정 조건이 요구되는 분야로 구분된다. 조합·영세중소기업 할당 사업 및 그들과의 협업 분야에는 수리 및 유지보수 산업 일부(오토바이의 유지보수 및 수리 등), 건설 산업 일부(전력 설비의 건설 및 설치, 단순 및 중급 기술 사용 건물 건설, 주거용 건물 건설, 항구 건설, 건물 내외부 인테리어 등), 소매업 일부(쌀, 신발류, 무알콜음료 소매 등), 개인서비스 일부(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등), 숙

박서비스 일부(1성급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출판, 방송, 우편, 운송, 이슬람 종교 관련 여행사 활동 등의 서비스 산업이 포함되며, 주로 외국인 자본 참여에 일정한 제한이 부여된다.[155]

베트남에서는 기존의 「투자법」(「Law No. 67/ 2014/QH13」, 2014년 제정, 2015년 시행)을 개정한 「2020년 개정 투자법」(「Law No. 61/2020/QH14」)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베트남의 「2020년 개정 투자법」에 따르면 채권추심 서비스가 기존 조건부 투자 분야에서 투자금지 분야로 투자 제한이 강화되었다. 반면 기존 조건부 투자 분야에 포함되어 있던 상사중재서비스, 프랜차이즈 활동, 물류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공동주택 운영·관리교육 서비스, 외국기업 제공 도시계획 컨설팅 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분야가 기존 조건부 분야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동 법에서는 생수·정수·음용수 유통, 건축 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전자식별·인증 서비스, 수입 신문 유통, 어선 등록 서비스, 선원 훈련·재교육 서비스 등은 조건부 투자 분야에 신규 포함되었다. 또한, 시장접근이 금지되는 25개의 사업영역과 조건부로 시장접근이 허용되는 59가지 사업영역으로 나누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한된 영역 목록을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가 금지되거나 조건부로 허용되는 영역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가 위법이거나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근거가 있는 경우, 투자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투자법 시행령(Decree 31/2021/ND-CP, 9조)에 명문화하여 국가가 투자자 권익보호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에서는 2020년 투자법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영위하려는 사업영역이 네거티브 목록(시행령 부록1)에 속하지 않으면 시장진입 관점에서 베트남 국내 투자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베트남 FTA 발효(2015년 12월 20일) 이후 베트남의 서비스 장벽이 크게 완화되면서 우리 서비스 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향후에도 보다 증가될 것

155) 예를 들어 방송의 경우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국내자본만 참여할 수 있고 사업 확장이나 사업개발을 할 경우 외국자본을 20%까지만 허용하며, 운송 분야에서는 외국인 자본 참여를 최대 49%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으로 예상된다. 동 협상에서 베트남측은 건설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금융 및 통신 분야의 교역 활성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무엇보다 포지티브 방식의 양허표를 네거티브방식의 유보목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협상 성과이다.

라오스는 공공의료 및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분야의 외국인투자는 금지되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관광업에서는 호텔(3성급 이상)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반면,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투자를 불허하고 있고, 관광안내업의 경우 합작투자만 허용한다.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 보건과 같은 교육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국적 변호사가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고 라오스인이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라오스에서 효력이 없다. 라오스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인력 고용시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더라도 외국인 인력 채용에 제한(노무직은 전체 고용인력의 15%까지, 사무직인 경우 전체 고용인력의 25%까지 허용)이 있다(단, 전문성·업무경험 측면에서 라오스 국민 대신 해외 인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고용 가능). 2016년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와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해 「투자촉진법」을 개정하였다. 2017년 4월 19일 동 법이 발효됨에 따라 라오스의 서비스·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는 우편·통신, 항공, 철도, 은행·보험, 방송·TV, 전력생산 등의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며, 동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운은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Five Star Line)이 독점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는 그동안 외국인의 무역업 투자를 금지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장애가 되었으나, 2015년부터 일

부 품목을 취급하는 무역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 자유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복권, 도박, 전통소매금융(Chit funds), 부동산사업·농가주택 건설, 민간투자금지분야(원자력 에너지, 철도 운영)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금지된다. 인도의 외국인투자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정부승인 두 종류가 있으며, 2017년 들어 FIPB가 폐지되고 담당 부처가 정부승인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회사에 대한 최고 투자 허용 한도 및 제한은 분야별로 상이하다. 2020년 10월 발효된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의 Consolidated FDI Policy에 따르면 방위, 방송, 출판, 민간항공, 위성, 통신, 민간보안, 유통, 금융서비스, 보험 등 11개 산업 부분이 외국인투자에 정부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는 100% FDI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FDI 유치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과 수출조건부 인센티브(EOU)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FDI 인센티브는 진출지역의 주정부별로 그 혜택이 상이하고 주정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진출 희망 지역의 주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하다.

`캄보디아는 국영기업에 대해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화제작, 출판 및 인쇄, 라디오 및 TV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별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 캄보디아는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외국 면허를 인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외국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캄보디아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전체 고용 인력의 1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자, 기술자 및 숙련공이 자질 및 전문성 면에서 캄보디아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건설, 교육(초·중·고등), 환경, 금융, 의료, 관광, 해운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한 장벽이 없다. 반면 항공서비스의 경우 국제선 운항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9%로 제한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기존 외국인 지분율 제한, 정부 승인 요건 등이 2011년부터 폐지되고 일반적인 사업투자 규정

이 적용되나, 뉴질랜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Chorus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등은 유지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4월 기존 보조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에 따라 해외 제작사의 뉴질랜드 내 영화 제작(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포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및 스토리 제작 관련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전문가 서비스에서는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으나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다.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 쿼터, 국적 및 거주요건, 국내 주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는데, 뉴질랜드는 노동시장 수요심사 및 ENT 요건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로 집중되는 이민자들의 지역 분배를 위해 지역 기업이 외국인 채용 시 비자 스폰서를 위해 존재하던 뉴질랜드 노동시장 심사 요건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FTA협정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의 일시체류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뉴질랜드는 FTA 협상을 통해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을 허용하고 있다.[156] 한·뉴질랜드 FTA(2015년 12월 20일 발효)에서 뉴질랜드는 한국의 한의사,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여행가이드,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 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일시고용입국을 허용(직종별 쿼터 최대 50명, 총 쿼터 200명, 체류기간 최대 3년)하였다.[157]

호주는 서비스 분야 중 부동산,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 등의 분야에 있어 외국인투자 제한사항이 있다. 해운의 경우, 선박을 호주에 등록하려면 호주인이 소유주거나, 호주 운영권자에 의해 임차된 선박이어야 한다. 통신서

156)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은 협정 상대국의 전문직서비스 또는 숙련노동을 공급하는 국민(nationals)이 뉴질랜드에 영구거주의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뉴질랜드는 일시고용입국에 대해 수적 제한과 자격요건을 두고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157) 한·뉴질랜드 FTA 「일시고용입국 관련 양국 간 서한」 참고.

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전체 35%, 개인 5%)가 있다.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TV(공중파, free to air), 라디오 방송과 주요 신문사(Fairfax, News Corp)의 지분에 대해 2.5% 이상을 투자할 때에는 정부에 지분취득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미디어 기업의 지분 5% 이상 보유를 원할 때는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미디어 기업 전체 지분의 2.5%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회계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분 소유주 변경은 지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기관(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에 통보[158] 등 다양한 공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서비스의 경우 국내선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100% 허용(기존 및 신규 항공사 포함)하나,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외국인지분 한도가 49%(Qantas 항공은 49%)로 제한된다. 공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9%까지 허용하나 개별 항공사는 5%까지만 공항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최근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의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국익 및 국가안보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투자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호주 정부는 기승인된 투자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투자에 대한 철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호주 내의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지원책을 실시 중이다. 첫째, 호주기업이 영화제작자이거나 또는 외국 제작자가 호주에 영화제작사를 설립하여 호주와 관련된 극장 상영용 영화(feature film)를 촬영할 경우 Screen Australia는 총 제작비의 65% 한도내에서 최대 2백만 호주달러까지 지원해주며, TV시리즈의 경우 각본 개발단계 분당 1만 호주달러에서 최대 시간당 1.3백만 호주달러까지 지원하고, 제작단계는 최대 2백만 호주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제작단계에서 최대 3만 호주달러, 제작단계의 경우 시간당 총 제작비가 최소 12만5천 호주달러인 경우, 최대 75만 호주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Screen Australia는

158)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https://firb.gov.au/general-guidance/fact-sheets/fact-sheet-8-interests-australian-media-assets

"Producer Offset"[159]이라는 영화, 드라마 등 시청각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극장상영용 영화는 40% 제작비를 환급해주고 있으며, 극장상영용 영화 외 드라마, 온라인 콘텐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은 30%를 환급해 준다. 둘째, 영화, 드라마 등의 총 제작비용 중 호주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A$1,500만 이상이면 제작비의 16.5%를 돌려준다. 셋째, 영화의 특수효과(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PDV)를 호주에서 사용한 경우 호주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의 30%를 환급해 준다. 또한, 호주 정부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들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청각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부기관별로 특별허가를 받아야 투자가 가능한 업종이 있다. 석유 및 천연가스의 판매, 파이프라인·교량·터널 등의 설계, 시공, 운영·보수는 각료회의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등은 내무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는 보건부로부터 은행, 증권업, 보험업은 중앙은행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외국인이 전문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가는 해주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통신법(2003년 11월 19일 제정)」에 의거, 인터넷 교신의 추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만 한다. 금융서비스 중 보험업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보험회사만이 보험업에 종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외국 은행 및 외국 보험사의 지사 설립을 금지하였으나 2006년 WTO에 가입하면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판, 방송 등의 분야에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방송의 경우 외국인은 TV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방송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되며 외국인의 방송투자는 국가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9) Producer Offset 개정 규칙(Screen Australia)
https://www.screenaustralia.gov.au/getmedia/70b2fae6-232c-4a48-be6d-e970aead20d9/Guidelines-producer-offset-2022.pdf

카자흐스탄의 경우, 운송서비스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양국 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이 우선시된다. 건설서비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현지 건설 시장에 참여가 가능한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건설면허 재등록/갱신 관련법규를 변경하면서 건설면허 제도를 1-3등급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 조건을 강화함으로서 외국기업의 건설업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을 금지하고 대표사무소만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 완화로 현재 현지법인 설립과 카자흐스탄 은행의 지분 인수가 가능하며, 카자흐스탄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서비스 양허 계획에 의해 외국계 은행은 2020년 12.16일부터 카자흐스탄에 지점을 열 수가 있다. 또한 외국 은행과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을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의 분야에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그 외에도 「카자흐스탄 보안에 관한 법(the law on national security)」에 따라 통신서비스 및 언론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가 각각 49%와 20%로 제한된다.

몽골 정부는 2001년 2월 1일 「사업운영 관련 인허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동 법에 대한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2020년 및 2021년에 시행된 동 법의 개정안에 따라서 1)은행 및 금융서비스 관련 허가, 2)법무 관련 허가, 3)환경 관련 허가, 4)에너지 관련 허가, 5)교육과학 서비스 관련 허가, 6)사회복지노동 관련 허가, 7)제조·유통 관련 허가, 8)식품·농업 관련 허가, 9)의료 관련 허가, 9)지재권·특허 관련 허가, 10)도시건설 관련 허가, 11)도로교통·관광 관련 허가, 12)정보통신 관련 허가, 13)방사선광물 관련 허거, 14)국방 관련 허가, 15)재난방지 관련 허가, 16)부동산중개업 관련 허가, 17)문화서비스 관련 허가 등의 다양한 사업운영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 외국인이 신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그 외에 2013년 10월에 시행된 「신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정부 소유 법인이 광업, 은행 및 금융, 언론 및 통신 같은 주요 사업 부문에서 몽골 법인

의 전체 주식의 33%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기 외국정부 소유 법인은 투자 관련 해당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또한 몽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인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에 있어 외국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 있어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mode 3)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 통역 등의 분야에서 자연인의 이동(mode 4)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신서비스는 인터넷, 위성통신 등을 제외하고는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엔지니어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외국인 엔지니어 수가 내국인 엔지니어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또한 은행, 병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내국민 이사 또는 경영진이 포함되도록 요구한다.

캐나다는 문화·금융·운송·통신 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문화산업(서적 출판·배포, 정기간행물, TV 및 라디오 방송, 영상물 배급 등)의 경우 상업적 주재에 대해 지분제한, 이사진의 국적요건 부과 등 각종 제한요건을 두거나 업종에 따라 외국인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 라디오·TV통신위원회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캐나다방송공사와 민영 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쿼터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국내 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려면 프로듀서나 핵심 제작인력이 캐나다인이거나, 제작비의 75% 이상이 캐나다 자본이라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규제에 따라 TV의 경우 민영 방송사업자는 1일 방송시간 중 평균 60% 이상, 공영방송사업자인 캐나다방송공사는 모든 시간대에서 평균 60% 이상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 쿼터제는 MAPL (Music, Artist, Production and Lyrics)시스템에 근거하는데, 이 시스템은 캐나다 음악 실연자, 작사가, 작곡가 등이 캐나다 국민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캐나다 음악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주당 방송시간의 35% 이상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방송되는 대중음악의 35%를 프랑스 국적 가수의 음악 콘텐츠로 채워야 한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 munications Commission)는 주 당 방송시간의 65%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방송되는 대중음악의 55%이상은 프랑스어로 된 음악으로 채워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에 따라 중형은행(자본금 C$10억~ 50억)과 대형은행(자본금 C$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상의 제한(각각 65%, 20%까지만 허용)을 하며 소형은행(자본금 C$10억~50억)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운송서비스에서는 캐나다 국적선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가 25%로 제한되고 외국 선박의 캐나다 연안 운송을 불허하고 있다. 통신의 경우 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직접투자 20% 이내)과 이사 수 제한(외국인 20%이내), 그리고 실질적 경영자에 대한 국적요건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일부 문화산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인 출자 제한 등 부분적 투자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서적의 출판·배포·판매와 관련해서는 캐나다 문화정책 하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직·간접 투자를 통한 경영권 취득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수익의 일정부분을 재투자한다는 조건하에 허용되고 있다. 영상물의 제작·배급·판매는 캐나다 기존업체의 인수는 불허하지만 지적재산권 보유상품의 수입 및 배포는 신규투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화 배급사 설립 시 국제규모의 인가받은 수입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간행물의 출판·배포·판매와 관련, 모든 간행물에 대한 투자는 캐나다 전통문화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캐나다 회사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 간행물의 광고 공간을 최대 18%로 제한하고 있다. 통신업과 관련해서는 직접투자를 통한 통신사업 운영자 및 관리사(Type 1 carriers) 소유는 최대 20%까지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통제하고 있다.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에 문화산업 예외 조항(제22.6조)이 포함됨에 따라 문화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는 산업[160]은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60) 한·케나다 FTA 제22.8조에서 문화산업을 가. 서적·잡지·정기간행물·신문의 출판·배포·판매, 나. 영화·비디오의 제작·배포·판매·상영, 다. 오디오·비디오 음악의 제작·배포·판매·상영, 라. 음악의 발행·배포·판매, 마. 무선통신, 바. 라디오·텔레비전·케이블 방송사업, 사. 위성 프로그램 및 방송 네트워크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에서 양국은 계약서비스공급자(CSS) 22개 직종과 독립전문가(IP) 4개 직종의 이동을 약속하여 향후 양국간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에 따라 전신, 무선통신, 우체국, 항구·공항·헬기장의 관리·감독·감시 등의 서비스 분야는 국가 독점이며, 여객·화물·관광관련 국내 육상운송(택배·소포 서비스 제외)과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개발 금융기관, 해당 법률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전문 및 기술 서비스 제공은 멕시코 국민이나 멕시코 회사만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국내 유통용 정기간행물의 인쇄·발행, 종합 항만 관리, 선박의 내륙수로 이용 관리, 내륙수로운송·국내항간운송 상업 해운사, 선박·항공기·철도장비의 연료·윤활유 공급, 방송(단, 최대 외국인투자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주의 적용), 정기·비정기 국내항공운송, 비정기 국제항공운송, 전문 항공운송은 외국인투자 지분이 최대 49%로 제한된다. 그 외에도 항만서비스, 고속선박운영 해운회사, 공공비행장의 면허·양허 회사, 유치원·초·중·고등교육 및 복합교육 서비스, 법률서비스, 철도의 건설·운영·개발 및 공공철도운송서비스 제공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외국인이 49%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

멕시코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 의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국영기업은 멕시코의 금융부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요건(2016년 기준, 모든 금융관련 기능 수행 상업은행은 9,000만 달러,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의 경우 3,600만~5,600만 달러)의 충족을 요구한다. 상업은행의 외국인투자 지분상한은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한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100%, 비체결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연락사무소 설립은 은행증권위원회(CNBV)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법인 설립조건에 더해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부와 재무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다.

멕시코 정부는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다양한 무역·투자 장벽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 분야를 보면, 멕시코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쿼터 규정은 없고,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프로그램의 스페인어 프로그램 쿼터를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수입 허가와 관련해서 멕시코 방송시장에서 해외 프로그램 수입시 특별한 검열이나 정부의 규제사항은 없다. 다만 폭력성과 선전성이 심하거나 멕시코 사회문화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내무성의 규제를 받게 되나, 해외 프로그램도 국내 프로그램과 같은 기준으로 검열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외주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를 육성하기 위해, 방송사 프로그램의 20% 이상이 외주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의 프로그램일 때 광고 시간을 5% 증가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법규정(Reglamento)에서 정한 시간에 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및 TV 방송국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 아동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원하고, 창의성, 가족의 통합, 인류의 연대(human solidarity)를 북돋고, 국가적 가치의 이해 및 국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제공, 아동의 과학, 예술, 사회적 관심을 촉진시킬 의무사항이 있다. 그 외에도 라디오 및 TV 방송국은 연속 또는 불연속으로 최대 30분까지 교육적, 문화적 내용 및 사회지향성을 띠는 내용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무료 방송을 매일 실시해야 한다. 방송광고와 관련해서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의 광고 방송이 금지되어 있으며, 케이블, 위성 텔레비전 채널은 1시간 당 6분, 텔레비전의 경우 하루 방송분량의 18%까지, 라디오의 경우는 하루 방송분량의 40%까지 광고방송이 가능하다. 또한 소수자들에게 부적절한 광고는 방송 시작시 경고해야 한다. 한편 2014년 7월 9일 멕시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연방방송통신법(Ley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y Radiodifusión) 및 멕시코 방송 공공시스템법(Ley del Sistema Público de Radiodifusión del Estado Mexicano) 등 방송통신 개정 관련 2차 법안에 따라 멕시코의 방송통신 시장 규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동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연방방송통신청(IFT: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이 멕시코 방송통신사업자 인가 권한을 가지며, 방송통신분야 시장지배 사업자를 지정해 시장지배 및 독점 관행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는 2개의 신규 공

중파 TV 방송사 허가를 위한 입찰을 실시해야 하며, 신규 TV 방송사는 송출을 위해 기존 시장지배사업자(Televisa)의 인프라 접근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방송통신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할 관청을 구분(요금 징수 등 사용자의 권익 침해는 소비자검찰청(Profeco)이, 방송콘텐츠 관련 위반은 내무부(Secretaria Gober- nacion)가 경쟁 관련 위반은 IFT가 관할)하고, 방송통신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일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화분야에서 멕시코 정부는 투자제한, 상영허가, 자국영화 상영 권장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당초 멕시코는 모든 극장의 상영시간 30%(연간단위로 산정)는 멕시코 영내외의 멕시코인이 제작한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스크린 쿼터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협정 이행을 위해 1992년 「연방영화법」에 따라 스크린쿼터제를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1997년 말까지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스크린쿼터의 폐지로 멕시코영화의 상영 편수가 1990년 80편에서 1998년 10편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1997년 개정된 「신연방영화법」을 통해 스크린쿼터제(10%)를 부활시켰고, 1998년 10%(37일)에서 2001년 30%까지 연차적 증가를 권장사항으로 채택하였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장 규정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통신서비스 및 방송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법률가·의사·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과테말라는 회계감사, 금융, 보험, 임업, 부동산 및 운수업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카지노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제한된다. 니카라과는 과거에 전기, 통신, 우편, 유류 및 에너지, 금융, 보험, 사회보장 서비스 등을 국가 독점사업으로 지정해서 민간의 투자 진출을 제한했었지만, 정부의 개혁조치 및 WTO, CAFTA-DR 등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대외투자 개방을 추진중이다. 현재 국영기업인 상하수도공사(ENACAL), 해운항만청(EPN), 전력배전공사(ENATREL) 등에 대한 민간투자는 금지되며 사회보장

연금기금(INSS)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영기업인 보험공사(INISER), 전력공사(ENEL), 석유공사(Petronic) 등에 대해서는 민간투자가 일부 허용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금융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있다.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가이드 및 카지노딜러는 국적요건이 부과된다. 그 외에 공공서비스, 매스미디어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특별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업과 보험업의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약에서 채택된 최종의정서 내용에 기초하여 1995년 11월 20일 개정된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과거 외국에 개방하고 있지 않았던 공공서비스, 광업, 금융업, 운송업 등의 분야를 개방한 바 있다.

브라질은 WTO 통신서비스협정, 금융서비스협정 등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제한적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 적용, 특정분야에 있어서 외국자본 참여제한 등의 제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브라질 통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참여지분제한은 존재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1996년 외국인에 대한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고(외국인 절대다수 지분보유는 불허), 1997년에는 국영전화회사인 Telebras가 외국인 지분참여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었다. 고정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이 있어 신규기업의 관련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를 브라질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국(ANATEL)의 품질 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브라질 시청각서비스에 있어서 모든 영화, TV제작물은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하고 영화, TV의 컬러인쇄물은 직접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영화의 경우 스크린쿼터제도(1개 상영관 최소 28일, 연간 3개 이상 국산영화 상영)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영화산업진흥을 위해 2002년에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 영화진흥위원회(Acine)를 설립하였으며 외국영화, 외국연예 제작

물 및 방송프로그램물에 일정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 동 기금을 국내 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상파 TV분야에서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금지해 왔으나 2002년부터 외국인투자 지분제한(30%까지 허용)과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국내제작 프로그램 80% 이상)을 두고 허용을 하였다. 외국인이 브라질의 유선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분제한은 49%이며 브라질 내에 본부를 가지고 있고 10년간의 영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케이블 TV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의결권의 49%까지만 허용된다.

브라질 보험서비스의 경우, 1999년 브라질 정부가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 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들, 특히 미국 보험회사들은 기존 브라질 내에 설립되어 있던 보험회사와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재보험은 브라질 정부소유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 왔으나,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 2007년 1월)」에 의해 재보험에 대한 정부 독점이 해제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 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1997년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을 하였지만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개개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은 육상화물운송, 연안해상운송, 국내항공운송 분야에서 의결권의 25%까지만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부가 제한을 두고 있다. 보건서비스 분야도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 규제가 완화되어 병원, 검사기관 등 의료서비스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허가되었다.

브라질 정부는 2007년 3월 25일부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서비스, 의약소매 및 개인약국업을 포함한 도소매유통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서비스, 위성송수신서비스, 도시간열차승객수송서비스 및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도로건설사업에 있어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식으

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BO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비보험 금융서비스 업체에게 내국민대우 및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WTO에 양허하였으나 외국인 소유 은행지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투자법(Law 21382/1993)」 및 「대통령령(Decree 1853/1993)」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금지분야가 없으며 공공서비스, 우편, 전기·가스, 교통·통신, 라디오·TV·잡지·신문, 에너지, 교육, 은행, 금융 등 특정 분야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함에 따라 일부 허가를 요구하는 업종 외에는 외국인투자 등록소(Registro de Inversiones de Capitales Extranjeros)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에콰도르는 화석연료의 수송을 에콰도르 국내 수송업체에게만 허용하며, 라디오 및 TV 방송서비스의 외국인투자 한도는 25% 이내로 제한된다(개인인 경우 방송권은 에콰도르 국적요건 적용).

파나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완전개방하고 있고 현재 전기, 통신, 항만 등의 국영기업 중 대부분을 외국기업에게 민영화한 상태이다. 다만, 공공서비스(수도·전기·전화·방송), 금융서비스(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거래, 리스, 신탁)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 분야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초·중·고등학교) 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대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파나마에 관련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파나마도 「노동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종업원 수의 10%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전문직·기술자 등 파나마인 인력이 부족한 경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을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온두라스는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활동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기초보건 서비스와 통신, 전기의 발전·송전·배전은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4년 7월 「전력산업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ica No.404-2013)」이 발효됨에 따라 온두라스 전

력산업의 자유화(민간투자 유치 및 경쟁체제 도입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두라스도 현지인 고용 의무(총 고용인원의 90%)가 있으며, 전문성과 기술 측면에서 외국 인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5년 이내에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 10%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서비스시장이 대부분 개방되어 외국 기업의 진출에 특별한 장벽이 없으나 일부 분야에 제한이 있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외국 국적선이 파라과이 내륙수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파라과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파라과이 국적 도선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신공사(COPACO)가 독점하며 무선통신분야는 외국인 지분제한 50%로 개방되어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차별대우가 없다.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아순시온 국립대학에서 취득학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을 받아 해당 협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학교장에 대한 국적요건(파라과이 인으로 제한) 외에는 외국인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 그 외에 송전망 운영에 대해서는 파라과이전력공사(ANDE)가 독점을 하는 등 제한사항이 있다.

우루과이는 보험 및 은행업,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독점인 유선전화, 전기·수도·가스 등도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라디오 및 TV 방송국의 소유자는 우루과이 내에 거주하는 우루과이 국민으로 제한된다.

칠레는 서비스무역에 있어 WTO GATS 상의 양허사항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고용창출, local inputs 사용도 등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수평적 제한(horizontal limitation)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외국인이 대중매체에 대한 투자를 할 때에는 칠레 외국인투자진흥청(InvestChile)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안운송업(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업만 허용), 항공업(대표 국적요건, 칠레 내 본사 설치 요건), 방송사업(대표 국적요건) 등에 외국인투자 제한 조치가 있다. 칠레도 근로자 25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 지점과 관계없이 반드시 총 직원의

85%가 칠레 국적자여야 한다는 현지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전문기술직이 제외되며,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칠레인인 경우 또는 칠레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칠레 국적자를 고용한 것으로 취급된다.

콜롬비아는 금융, 정보통신, 회계·감사, 에너지 및 관광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진 국가이다. 반면,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무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작할 것이 요구되며, 콜롬비아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회계·감사분야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며, 정보처리사업의 경우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보험업은 외국인 지분율 100%를 허용하고 있지만 콜롬비아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업서비스의 경우 ENT가 있으며, 회계, 부기,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여 상업적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 업체는 외국인이 일반직의 10%, 전문직의 20%를 넘을 수 없다. 광고분야는 내·외국 광고방영 비율에 있어서의 제한이 없으며 광고 방송요금도 동일하다.

콜롬비아 방송분야에서는 외국 방송물 방송제한 규정이 있다(외국 방송물은 프라임 타임에는 30%이내, 기타 시간대에는 50% 이내에서 허용). 영화 및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쿼터를 두고 있고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서 이루어지고 출연배우의 90% 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일 경우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로 인정한다.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이는 콜롬비아의 국산영화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WTO 협상과정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한 개방을 약속하였으나, 유·무선위성시스템 서비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전기통신분야에는 ENT가 있으며, 기간통신서비스 중 캐리어(carrier), 국내·외전화,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70%까지 허용된다. 그 외에도 콜롬비아의 석유탐사 및 개발분야에 대해서는 국영석유공사(Ecopetrol)와의 합작사업 형태만을 허용한다.

페루는 방송매체의 경우 페루인이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 및 경비,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운송업, 은행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해운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등록을 위해, 그리고 해운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선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경우, 1996년 베네수엘라 국영통신회사 CANTV의 독점이 폐지된 이후 국내외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공급회사가 크게 증가하였다. 베네수엘라는 메스미디어(TV 방송, 라디오 방송, 현지어 신문)와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에는 외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고용인원 10명 이하, 연간 판매액 통상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482배 이하)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종업원 증원 계획을 국가투자청(ONI)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투자를 할 수 있다.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으나 케이블 TV의 경우 지분 제한이 없다. 여타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엘살바도르도 「노동법」에 따라 총인원수 기준 90%, 총임금 기준 85% 이상을 엘살바도르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전문성과 기술 면에서 외국 인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5년 이내에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2007년 10월 「국제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국제유통, 국제화물운송, 콜센터, 정보통신, R&D, 선박 수리, 의료, 국제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서비스법」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와 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2013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서비스법」 개정안에 따라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컨테이너 보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영화 등이 추가로 포

함되어 있다. 2013년 5월 「민관파트너쉽법」이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외국기업이 공공서비스(단, 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는 제외),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과거 통신서비스와 보험서비스가 국가의 독점사업이었으나 2008년 6월 CAFTA-DR 이행법안이 통과되면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터넷서비스와 유·무선통신서비스 등이 부분적으로 개방되었고, 보험서비스업은 2011년 완전히 개방되었다. 현재 코스타리카 서비스 시장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고 현지에 법인등록을 하고 적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한편, CAFTA-DR 협정에 따르면 미국에 소재지를 둔 기업도 코스타리카 기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항공사와 은행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코스타리카에 지점을 두어야 영업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분야의 개방 수준이 낮았으나 2005년 12월 WTO 가입과 함께 다수의 부문에서 상당한 개방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이 50% 미만으로 제한되었던 보험,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지분제한 완화가 이루어졌다. 2020년 발행된 투자부의 9차 가이드에 따르며, 주요 업종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은 보험업, 재보험업이 60%, 통신서비스업이 70%이며, 도소매업의 경우 2016년 외국인투자 100%를 허용하였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원유 탐사·시추·생산, 군사장비, 보안, 폭발물 제조, 성지순례 관련 여행안내 서비스, 메카 및 메디나 지역 부동산 중개업, 인력사무소 운영, 인쇄출판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회사 내 고용자의 일정 비율을 사우디인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사우디인 의무고용제(Nitaqat)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0년 1월부터 기존 등급 폐지 및 재조정을 통해 5개 등급(Platinum, High Green, Medium Gree, Low Green, Red)으로 구성하고, 각 채용비율별 분류되는 등급에 따라 기업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의 혜택과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0년 이후 별도 직종별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발표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자국민 보호 및 육성하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은 외국인 민간 투자 촉진 및 보호법(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oin & Protection Act 1976) 및 기업법(Company Ordinance 1984), 외환관리법(Foreign Currency Accounts Ordinance 2001)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파키스탄 기업법에 따르면 단독투자(Private Limited Company) 형태의 경우 1인 이상의 주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주주가 1인의 경우에도 Single Member Company로 등록이 가능하며, 외국인 지분제한도 철폐되어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통신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의해 파키스탄통신회사(PTCL)가 2005년 이후 민영화되었으며, 현재 유무선 통신서비스 모두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파키스탄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따라 현재 다수의 민영 상업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은행이 파키스탄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50억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해야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은행은 국내은행과의 합작(외국인 지분 최대 49%까지 허용)을 통해서만 파키스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금융개혁에 따라 보험시장도 개방되었으며, 현재 동 분야의 외국인 지분 한도는 최대 49%이다.

이라크는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매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간 동안 이라크 은행에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2009.11월 이라크 정부는 투자법 개정을 통해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를 허가하였으나, 외국인의 토지 소유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이란은 화물운송에 있어 이란 국적 기업 우대제도가 있다. 해운의 경우, 500mt 이상의 화물을 수입할 때 외국 선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주가 화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무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국적선을 우대하고 있다.

카타르는 2019년 개정된 「외국자본투자법(Law No. 1 of 2019)」에 따라 교육,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의 최대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해졌다. 단, 외국인이 49% 이상의 지분 소유를 희망하는 경우 「상사회사법(Law No. 11 of 2015)」과 「외국자본투자법」에 따라 통상산

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금융·보험 분야는 내각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투자할 수 없으며, 상업에이전시 그리고 기타 내각이 정하는 분야에는 투자할 수 없다. 그 외에도 민간보안서비스(private security services)와 인력공급업(manpower supply) 등은 카타르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다.

UAE는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현지인(스폰서)의 지분 참여(51%) 요건을 적용하고,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때에도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둘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UAE 정부가 회사법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는 모든 산업 분야(단, 공공 서비스 공급이 요구되는 일부 분야 제외)에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이 완화·철폐되었고,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해야하는 요건도 폐지되었다. 다만 이러한 연방의 조치에 대한 적용 권한은 각각의 에미리트에 있는 경제개발부(DED)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에미리트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연하면 개별 에미리트의 DED 내에 있는 FDI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외국인 지분 보유의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75~80%까지만 외국인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나머지 지분은 자국민 스폰서로 하여금 소유하게 한 사례도 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 조항은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에만 적용된다.

UAE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에미리트 별로 경제개발부(DED), 관광부, 산업단지관리청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면허(Business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면허는 네 가지가 있는데, 서비스업에서 유통업, 은행·보험업, 호텔업, 운송업 등은 상업면허(Commercial License)를, 회계·법률 등 전문직 서비스와 예능서비스 기업은 전문면허(Professional License)를 받아야 하며, 호텔업, 숙박업, 여행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광면허(Tourism License)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제조업 기업은 산업면허(Industr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프리존 안에서는 사업 활동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사업면허(Service License, Trading License, Industr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UAE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소유권, 경영진·이사회, 최소자본금 등에 대한 제한이 있다. UAE에서 사업 면허를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쿠웨이트의 경우 외국 건설회사는 통상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영업(P/Q, 입찰, 시공 등)을 하고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송출 및 장비·자재 수출입도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쿠웨이트 제조업체의 독과점이 허용되어 쿠웨이트 현지나 GCC 국가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의 가격이 수입제품보다 10~20% 더 비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인력취업문제가 대두되어 일정수의 현지 인력고용(Kuwaitization)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여제한, 벌금부과 및 외국인력 채용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200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외국인은 쿠웨이트 은행의 지분을 49%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50% 이상 취득시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 필요)하였으나, 2004년 동 제한이 철폐되어 외국인이 쿠웨이트 은행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멘은 외국인이 이동통신서비스(국제위성개인이동통신서비스 포함) 및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입법규제는 없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국 변호사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서비스는 외국인이 제반 요건(예멘인 회계사 1인 이상과 공동설립, 예멘 당국에 모든 파트너 등록, 임원 중 예멘인 1명 이상 포함, 기타 직원의 2/3 이상 예멘인으로 구성)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감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예멘은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은 허용하나 소매업의 외국인투자는 허용하지 않으며,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5%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오만은 WTO 회원국에 대해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상공부의 승인을 받으면 동 분야에 100% 단독 출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오만에서는 동일 국적의 은행은 2개 까지만 설립이 가능하며, 은행 설립시 필요자본금은 5,200만 달러 이상으로 제한되고, 해외 은행은 최소 78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을 오만 내 항시 보유 및 유지해야 한다.

요르단에서 100% 개방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단독 투자가 가능

하지만, 그 외의 분야는 요르단인과 합작 투자를 해야 한다. 요르단에서 소매업(유통, 수출입 등), 리스 활동(금융 리스를 제외),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컨설팅, 건설 계약 및 관련 서비스, 건축 및 건설 목적을 위한 토양 검사 및 화학 테스트 등 관련 기술 서비스, 고용 및 인력 제공 서비스, TV 및 영화 제작을 제외한 사진 서비스, 은행 및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중개 서비스, 광고 서비스,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화폐 교환 서비스, 호텔 및 모텔을 제외한 케이터링 서비스, 여행사 서비스 분야는 외국인의 소유권이 50%까지 허용된다. 그리고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관련 서비스, 송신기·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장비의 유지보수, 주거용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분양·임대, 스포츠클럽 등은 외국인의 소유권이 49%까지 허용된다. 반면, 조사 및 보안 서비스, 개인 신변 보호 서비스 및 관련 교육, 화기 및 탄약의 거래 및 수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한다.

바레인은 제1종 우편이 정부 독점이며, 도박업은 내외국인 모두 투자가 금지된다. 그리고 부기·회계 서비스(회계감사 제외), 경주용차량 연료 수출입·판매, 화물 통관은 바레인 국민과 바레인 기업에게만 허용을 하며 외국인투자는 금지된다. 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건물의 임대·관리, 언론사와 출판사, TV·라디오·영화의 제작·관리·배급, 운수, 해양크루즈, 운전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터카, 콜택시, 석유제품판매(주유소 등), 공공기관 행정지원서비스, 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외국인 노동력 공급, 상업신흥소 등은 바레인을 포함한 GCC 국민·기업에게만 영업을 허가한다. 그동안 바레인은 숙박, 요식, 행정서비스, 관광 · 레저, 예술, 보건, 사회복지, 정보통신기술, 제조, 채석 · 채굴, 과학 · 기술, 상수도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49%까지 제한해 왔으나. 2016년 5월 「2001 기업법(2001 Commercial Companies Law)」이 개정되면서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철폐되었다. 또한 바레인은 2006년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철폐하였다. 한편 바레인은 자국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인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동 의무가 면제되거나 10% 내외의 기준이 적용되지만,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25~30%의 자국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

레바논은 여타 중동국가와 다르게 내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외국인투

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인센티브제도 운영, 투자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레바논은 자국의 정치적 불안정 요인을 고려하여 '전쟁·내란·몰수'의 위험으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해주는 NIIG(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를 설립하였으며, '외화송금 및 전쟁 리스크'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해주는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건당 최고 5,000만 달러까지 보상)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통신서비스 분야에 있어 외국인 지분상한(국제전화 74%, 휴대전화 80%, 케이블TV 74%)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은행업의 경우 지점 설립시 이스라엘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스라엘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임원의 국적 요건(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자) 및 CEO의 거주요건(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에 자본비율에 관한 규제 및 국제거래에 관한 규제는 없다. 관광업의 경우 호텔, 여행사에 대한 등록요건이 있으며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인한 여행에 관한 전문가를 최소한 1명 고용해야 한다.

가나는 유통업 분야에서 중소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GIPC(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re) Act에 따라 노점상 및 가판대 상품 판매, 25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기업의 택시 및 차량대절 서비스, 미용실 및 이발소, 휴대전화 충전용 스크래치 카드 제작, 연습장 등 기초 사무용품 생산, 의약완제품 소매, 봉지 포장된 생수(sachet water)의 생산·공급·소매, 복권 및 도박업(축구 베팅 제외)의 경우 가나인과의 합작투자만 허용(외국인 투자금액 20만 달러 이상, 가나인 지분 보유 10% 이상 요구(추후 가나인이 외국인에게 지분 양도 불가))된다. 또한 가나는 통신, 은행, 부동산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가나에서 숙박시설(호텔, 게스트하우스 등)과 여행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프라 분야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크지 않으나, 자금조달(financing), 가나 정부측 절차진행, 세금 과다 부과 등이 사업 진행의 큰 관건이 되고 있다. 가나 이동통신시장에는 MTN, Vodafone, AirtelTigo, Glo 등의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다. 가나 통

신시장의 규제는 통신청(NCA)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이미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어 가나 정부는 현재까지 추가 사업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나이지리아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제한해 왔으나, 1995년 「외국인 투자진흥법(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Decree)」이 시행되면서 Negative List에 포함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고 있고, 은행 및 보험 서비스의 경우 50% 이상의 외국인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 현지인과 합작투자를 할 때에는 주식회사 형태만 가능하며 현지 파트너의 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나이지리아에 설립된 현지법인이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에 외국인 사용 사유를 첨부하여 외국인 쿼터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 GATS에 의한 양허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과거 인종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외국기업의 신규 진입은 매우 어렵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2013년 9월 SADC 서비스 무역자유화 의정서(SADC Protocol on Trade in Service)를 비준하였다. 동 의정서는 SADC 회원국간 서비스 분야 개발, 투자 촉진 및 건설, 교통, 에너지, 관광 분야 등의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정부조달에 참여하거나 통신 등과 같이 사업면허를 요구하는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법: 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이 요구하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국영전화회사(Telkom)가 독점을 하고 있으며 Telkom의 최대주주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51%의 지분(직접 39.8%, 여타 지분은 공공투자공사를 통한 간접 방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선통신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유선통신시장 독점으로 인해 통신비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은 Vodacom, MTN, Cell C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이다.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지 않아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주요 국내 및 유럽계 외국기업(Makro, SPAR, Woolworth 등)의 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업 진출이 쉽지 않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에 따라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 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투자를 고려할 때 BBBEE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케냐는 보험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을 각각 66.7%와 70%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언론 분야에도 지분 제한을 두고 있다. 케냐는 과거 나이로비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75%까지 허용했지만, 현재 동 제한이 폐지되어 100% 외국인 지분 보유가 허용된다. 한편, 관광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2020년 4월 투자법을 개정하여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하였다. 전기 수출입업, 국제 항공운송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택배를 제외한 우편서비스의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와 합작투자를 요구한다. 그리고 국가 통합 전력망을 통한 송배전업 등은 에티오피아 국민만이 투자할 수 있으며, 물류 서비스 등은 에티오피아 국내투자자와 공동 투자를 해야 한다. 한편, 에티오피아의 개정 투자법에서는 최고경영진을 제외한 감독, 훈련, 기타 기술 관련 분야의 경우 유사한 자격이나 경험을 보유한 에티오피아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리비아는 건설시장에 많은 제한이 있다. 리비아 정부는 국내 고용 확대를 위해 2006년 11월부터 토목건축분야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기업과 합작법인(최소자본금 100만LD 이상)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외국기업에 대해 최대 6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161] 토목건축 공사에 대한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리비아 발주처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사계약금액의 2.01%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리비아에서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공사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산업경제통상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및 국영석유회사(NOC) 등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참여대상 공사의 종류, 업체의 실적 등에 따라 1년, 3년, 5년 등의 제한이 있다. 그리고 외국 건설인력은 비자와 함께 공사별로 업체에 부여되는 외국 건설인력의 사용 허가증인 'Form B'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와 Form B의 유효기간이 통상 1년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우간다는 2017년 10월 기준 외국인의 서비스 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없으며, 서비스 무역 법안 및 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WTO GATS에 관해서는 개도국 유연성 원칙을 적용받고 있으며, 통신 분야와 관광 분야를 개방할 것을 양허하였다. EAC 공동시장협약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분야 개방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집트는 여타 국가와 달리 「통합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한정하여 발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list)을 가지고 있다. 동법에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총 24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비스분야는 호텔, 국제해운, 항공운송, 병원·클리닉, 금융리스, 소프트웨어·전자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 7월 이에 더하여 외국인들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기간 중 이집트 체류 보장, 이윤의 해외송금 보장, 투자 분야에 따라 최대 50% 면세 등을 골자로 한 「투자신법 No.73 2017」을 발효하여 점차적으로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집트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전체 노동자 수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1993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통신,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기업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통신 등 국가

161) 특별한 경우 발주처가 총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지사를 설립하여 시공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며, 금융, 보험 등은 특수 규정과 절차가 적용된다. 모로코는 자국 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300명 이상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모로코 기술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노동청(OFPPT)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인 외국인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의 지분 취득상 제한(과반수 미만)이 있지만, 그 외의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지분 취득 제한이 없다. 특정 분야에서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하는데, 외국 회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회계법인에서 근무해야만 코트디부아르 회계사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는 데에는 국적요건이 부여되지 않으나 변호사로 등록하거나 법정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있어야 한다.

튀니지 정부는 1994년부터 민영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에너지, 국내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해 특별투자법이 적용되며 사업허가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튀니지는 금융업이나 투자회사에 대해 활동조건에 따라 승인을 요구하며, 보험업, 부동산관리, 외판업, 주식중개업, 운송업, 해운업 등에 대해서는 외국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서비스업 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완전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통업 중 프랜차이즈와 쇼핑센터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CSI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50%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이 육상운송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CSI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분의 50% 이상을 튀니지인이 보유해야 하고 경영인에 대한 국적요건이 적용된다(단, 국제육상운송서비스는 경영인의 국적요건 미적용).



금융서비스

개관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여기에는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그리고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정의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 따르며 현재도 그 범위와 정의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서비스가 포함하는 활동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1) 원보험(공동보험을 포함)
  (가) 생명보험
  (나) 생명보험이외의 모든 보험
(2) 재보험과 재재보험
(3) 중개업자와 대리점 등과 같은 보험중개
(4) 보험상담, 보험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에 부수되는 서비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5)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다른 요구불 자금의 수신
(6) 소비자신용, 담보대부, 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7) 금융리스
(8) 신용, 직접지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어음등 모든 지불 및 송금서비스
(9) 보증 및 약속

(10) 외환시장이나 장외시장 또는 다른 시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상품의 자기매매 또는 고객위탁매매
 (가)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포함)
 (나) 외환
 (다) 선물 및 옵션 거래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라) 스왑, 선도금리계약등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마) 양도성 증권
 (바) 금괴를 포함한 다른 유통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11) 주간사로서의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인수와 투자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 업무에의 참여 및 이러한 발행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12) 화폐중개업
(13)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유형의 공동투자관리, 연금기금관리, 보관, 위탁 및 신탁 서비스등과 같은 자산관리
(14)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다른 유통가능 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서비스
(15) 금융정보 제공과 이전, 그리고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자료처리 및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16)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와 법인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 등을 포함하여, (5)호부터 (15)호까지 열거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다른 보조적인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이란 이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협정에 위반되는 당사국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시장접근 제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정,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들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합리적인 이유의 이른바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도 협정에 따른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이자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볼 수 있다.

금융서비스 무역협상 동향

1994년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는 서비스 무역을 규율하는 최초의 다자간 협정인 GATS가 체결된 바 있으나,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1996년 7월 1차 추가협상에서도 WTO 회원국들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잠정적인 형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2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됨에 따라 비로소 금융서비스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WTO 서비스 협상은 2001년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정식 출범시킴으로써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서비스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국, 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 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 각국의 강도 높은 자유화를 요구한 반면, 개도국들은 각 회원국의 금융시장 발전정도를 감안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립한 끝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WTO에서의 협상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자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복수국간협정의 형식의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 개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TiSA 협정에는 금융서비스를 비롯하여 17개 규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명성, 정보통신 등 GATS 보다 더 높은 규범 수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SA는 2016년 11월 21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현재 참여국간 협상이 진행 중이나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2021년 12월에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의 타결이 선언되었다. 이는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이미 개방한 분야에서의 국내절차적 측면(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에 대한 투명성·개방성·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범의 경우 적용 여부가 회원국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일반서비스 부문과 비교해 의무수준은 완화되어 있다.

한편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는 단순한 FTA가 아닌,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Mega FTA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비록 미국의 불참으로 그 영향력은 반감되었으나, CPTPP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이 있으며, 규범 수준은 한·미 FTA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규범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만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CPTPP의 금융서비스 챕터(11조2항)는 유예조항인 상태이다.

금융서비스 개방효과

오늘날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연관되어 있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긍정적 효과로는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선진 투자기법의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서민금융 위축 우려,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현황분석

유럽 지역에서는 영국,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등 많은 국가들이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EU는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2011년에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 시행, 2013년에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제를 강화, 2014년에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EU에서는 금융부문 통합을 공고히 하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 재발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동맹(Banking Union)이 제안되었는데 그 출발점으로 2014년에는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로서 은행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가 설치되었으며, 은행 인가 및 취소, 은행 및 임직원 제재, 감독대상 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부실은행 정리 및 회생을 담당하는 단일정리기

구(Single Resolution Mechanism)가 출범하였다. 한편 은행동맹의 마지막 남은 핵심 구성요소인 단일예금보험기구(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 EDIS)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나, 설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EDIS는 회원국별로 상이한 예금자보호 수준을 유로지역에서 모두 동일하게 10만 유로까지 보장함으로써 회원국별 충격에 따른 금융취약성을 축소시키고, 은행의 소재지와 관계 없이 예금자들의 은행예금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에 의해 주도되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도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역시 은행업무를 하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하나의 회원국에서 인가를 얻은 경우 EU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면허(single passport) 원칙'이 적용된다. 외국 은행들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나라 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한편 EU 회원국들은 EU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외국 은행 지점에 적용할 수 없다.

EU의 보험서비스 역시 회원국들의 감독을 받으며,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EU 회원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면허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 고객에게도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EU 역외 지역에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상업적 주재를 통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점 설치가 요구된다. 보험 및 재보험의 국경간 공급은 개별 EU 회원국의 WTO 양허나 EU가 체결한 FTA의 국별 양허를 따른다.

영국의 런던은 세계 1위 규모의 국제금융 중심지이며, 또한 강력한 금융서비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든버러, 리즈, 맨체스터 등 여러 도시들에 산재해 있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이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EU 역내 금융영업권인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 금융감독원은 EEA(Eurpean Economic Area) 국가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기업에 대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영국 주재의 EEA 국가 기업들은 일시허용제도(TPR: Temporary permissions

regime)나 금융서비스계약제도(FSCR: Financial services contracts regime)를 적용받게 된다.

독일의 금융산업 및 보험시장의 총 자산 규모는 영국과 함께 유럽 내 최대 규모 수준으로 평가된다. 독일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는 상장 기업 수 438개, 시가 총액 약 2조 2,841억 달러(2020년 기준) 규모로 파리(Euronext Paris)와 런던(London Stock Exchange ,LSE)에 이어 유럽 내 3위 규모이다. 또한 독일증권거래소는 세계 6위 규모의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독일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4조 3,100억 유로이며, 유럽 자산운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이다.

독일의 은행업은 수익성이 낮고 금융 관련 규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런던에 비해면 경쟁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소규모·고밀도 지점망과 공영은행의 높은 시장 점유율은 은행업의 수익성이 낮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독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민간은행의 인수·합병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업(universal banking system)하며, 리츠(REITs) 운용대상 자산에서 주거용 건물이 제외되고, 헤지펀드에 대해 엄격한 등록절차를 요구하는 등 비교적 규제가 강하다.

독일에서는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규제 외에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독일의 주요 외국계은행으로는 독일 3대 상업은행인 HypoVereinsbank가 인수한 Unicredit이 독일 내 5위 자산 규모의 은행이며, 네덜란드계 ING Diba 은행이 10위 규모이다. 또한 UBS(스위스), Santander(스페인), J.P Morgan(미국), Targobank(Citybank의 자회사, 미국) HSBC(영국), Toyota Kreditbank(일본) 등도 상당한 규모로 독일 100대 은행에 속한다. 독일 내에는 총 201개(2020년 기준)의 외국계 은행이 소재하는데, 아시아계 은행으로는 우리나라의 KEB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의 현지법인과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은행 연락사무소가 진출해 있으며(총 5개), 일본 9개, 중국 7개, 인도 2개가 진출해 있다.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

(Brexit)에 따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룩셈부르크, 더블린 등과 함께 런던을 잇는 금융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2021년 4월 씽크탱크 New Financial의 브렉시트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63개의 금융계 기업이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하였으며, 이 중 36개(약 60%)가 은행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은행시스템은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유니버설 은행(Universal Banking)'이다. 스위스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대금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금융과 투자가 분리되어 있는 영어권 국가나 일본 등과는 대비가 되는 특징이다. 스위스의 은행은 UBS와 Credit Suisse가 대표적이다. 스위스의 은행들은 정부의 감독기관인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원(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발적인 내부 규율 하에서 영업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규율은 스위스 은행가협회(SBA: Swiss Bankers Association)에서 발표하는 권고사항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하며, 윤리적이고 적법한 금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일종의 은행의 행동준칙이자 가이드라인인 CDB(Agreement on Due Diligenc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시장감독원은 최소 규제기준으로 외부감사를 통해 이를 감시하며, 은행이 규율을 어길 시 금융시장감독원과 은행가협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스위스에는 1,000여 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관련 법률회사 및 대학연구소 등과 협업하여 소위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를 형성하고 있다. 2019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원(FINMA)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업체인 시그넘과 세바크립토를 은행으로 정식 허가했다. 2021년 8월 1일 분산전자등록기술에 적용되는 연방법률인 분산원장기술법(DLT Law)이 발효되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네덜란드 금융업의 가장 큰 특징 역시 유니버설 은행이다. 유니버설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모두 수행, 개인 및 기업 금융은 물론 파이낸싱, 보증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네덜란드 은행 부문의 총 자산은 2020년 2월 기준 약 2조 4천억 유로에 달하며, 3대 유니버설 은행은

ING(8,900억 유로), Rabobank(5,900억 유로), ABN AMRO(3,700억 유로)으로, 네덜란드 전체 은행자산의 약 79.74%를 차지한다.

노르웨이에서는 EEA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 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 WTO 금융서비스의 서약에 관한 양해에 반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예: 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의 경우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중앙은행과 슬로바키아중앙은행이 은행, 자본시장, 보험, 연금 등 모든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슬로바키아 은행시스템은 유럽중앙은행의 감독규정과 슬로바키아 은행법(Slovak Banking Act)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상업은행의 경우 투자은행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앙은행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계 은행들은 슬로바키아에 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나, 사무소의 경우 수익 관련 활동을 할 수 없고, 모 은행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 및 정보 제공으로 업무가 제한된다. 반면 지점 또는 현지법인 형태의 경우 인허가권자인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이 허용한 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계 모 은행이 지점의 재무건전성을 효과적으로 보증해야 하며,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또한 은행과 금융기관의 규제 비율과 관련하여 지점의 경우 자본금 규정은 모 은행의 자본비율 등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LCR, NSFR 등 유동성 비율은 지점 기준으로 규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아일랜드는 EU에서 4번째로 큰 도매금융서비스 제공 국가로 기술적 기반 및 투자·세금 혜택 등에 유인된 세계 금융사들이 많이 운집되어 있다. 12.5%의 낮은 법인세와 76개국과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

합은 아일랜드가 국제 금융서비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이 아일랜드의 미래국제금융서비스(IFS) 산업 발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치하에 2019년 4월 「아일랜드 IFS 개발 전략 2025」를 발표했다. 또한 2021년 10월에는 새로운 국제 지속가능금융센터 설립 계획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은 자금 관리, 항공기 임대, 보험 및 다양한 도매은행업 활동의 글로벌 허브이다. 특히 더블린의 아일랜드금융센터(IFSC)에는 세계 상위 50개 은행과 상위 20개 보험회사를 포함해 500여개 이상의 금융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브렉시트가 발표된 이후 다수의 영국 주재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더블린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뱅크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최근 더블린에 유럽본부를 설립했고, 영국의 거대 은행인 바클레이스(Barclays)는 더블린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시티은행과 JP모건도 더블린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EY Ireland 조사(2021.3월)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소재의 EU 금융사 중 32개가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옮겼거나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에는 싱가포르, 일본, 홍콩과 같이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 반면,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 금융허브로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수준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대형 금융사를 포함하여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호가 강력하고 금융규제가 많지 않아 조세회피처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자금세탁이나 테러 등과 연관된 자금거래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정보 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2016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체결하여 2018년부터

는 주요 금융 정보, 2019년부터는 금융자산 거래내역(gross proceeds) 등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은행업은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이 없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이 존재한다. 은행의 종류는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Full bank, △비재무적 활동 참여 금지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은행업무가 가능한 Wholesale bank, △금융회사법에 따라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Finance Company 및 △Merchant banks로 구분되어 있다.

일본의 금융서비스 분야에는 실질적인 장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내 외국계 은행들이 고객에게 금융중개 및 알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된 감사(금융청 검사, 일본은행 고사(考査), 재무성의 외환업무 관련 감사, 세무서의 수시감사 등)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일본 금융결제망 가입에 법적인 장벽은 없으나, 높은 가입비 및 운영비 부담으로 실제 가입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마케팅채널의 구축과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외국계 은행은 이미 금융결제망에 가입해 있는 일본의 대형은행과 제휴를 맺어 결제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얻는 이자소득의 처리방식에 있어 일본 국내은행에는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이 대출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해당 거래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다만 외국계 은행이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의거 매 5년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모든 거래처에 교부할 경우라면, 거래처는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와 달리 일본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거래처의 원천징수 의무 규정이 없다.

일본은 은행법 제17조에서 은행의 사업연도를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본국의 사업연도가 일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외국은행지점이 결산을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은행

법 제49조 제2항은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신고(금융청장관)를 통한 사업연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은행지점은 대부분 금융청에 신고를 거쳐 우리나라 본점 결산일에 맞춘 12월 말 결산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외국의 중국 은행업 진출 및 위안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었으나, 중국의 대외개방 기조에 따라 점차 완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8월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2019년 9월 외국은행이 중국내 현지법인 및 지점 설립시 요구되던 총자산 요건(각각 100억 달러, 200억 달러)과 인민폐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업무신청 전 중국에서 1년 이상 영업요건'을 폐지하였다.

중국 금융투자업에서는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한도 규제가 2018년 51%로 확대, 2020년 규제가 폐지되었다. 아울러 자본시장도 QFII제도 도입(2002년 11월), RQFII제도 시행(2011년 12월), 후강통 시행(2014년 11월), 선강통 시행(2016년 12월), QFII·RQFII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2020년 5월), QFII· RQFII 신청자격 완화 및 투자범위 확대(2020년 9월), 외국인의 중국내 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매매 시스템(후강통, 선강통)을 통한 ETF상품 거래 합의(2022년 5월), 중국내 거래소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2022년 6월) 등 점진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보험업의 경우 WTO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으로 영업범위 및 지역 제한이 폐지되었다. 그간 외국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업 영위기간 30년 이상,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본사 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등 각종 제한요건을 두었으나, 2019년10월 「외자보험회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해당 요건을 폐지하였다. 그간 손해보험회사 현지법인은 100% 외상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했던 반면, 생명보험회사 현지법인은 합자형태만 허용되었고 외국인 지분취득 역시 규제('02년1월 50%→'19년12월 51%)된 바 있으나,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동 제한을 폐지하였다.

대만은 「외국은행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및 관리법(外國銀行分行代表人辦事

處設立及管理辦法, 2022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라 외국은행이 대만 지점을 설립하려면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 2억 5천만 대만달러(약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향후 매 차례 신규 지점 설립 시에도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도 2억 5천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점 설립 신청 당해 연도로부터 1년 전 은행 자본 및 자산 규모 기준 세계 랭킹이 500위권 이내이거나 설립 신청 전 3년 동안 대만 은행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총액이 10억 미국달러 이상에 달해야 하는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 은행업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Vietnam State Bank) 산하 금융감독청이 담당한다. 베트남에 외국신용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인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 본국 은행업무에 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자본적정성 비율 8%이상, 국제적 관행에 따른 기타 건전성 지수 유지, 인가 신청 1년 전부터 중앙은행 인가 검토시까지 부실 여신 비율 3% 미만 유지; ③ 인가를 신청한 년도 이전 최소 5년간 영업이익 실현; ④ 본점에서 허가받은 업무와 인허가 신청 업무가 동일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외국은행 업무는 △예금수취, △예금증서 및 어음의 발행/베트남 국내외 소재하는 다른 금융회사로의 차입,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 △대출업무, △어음할인, △지급보증/외환업무, △지급결제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외화지급준비율은 15%이며, 집단대출 한도는 자본금의 50%, 집단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60% 이다. 베트남 내 우리나라 은행은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이 법인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농협 등이 지점 형태로 진출해 있다. 이 중 신한은행은 베트남 내 1위 외국계 은행이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는 2016년부터 국내 소규모 은행(총 118개)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에게는 2개 이상의 중·소형 부실 은행의 인수·합병을 통해서만 신규 진출을 허용하는데, 이와 같이 외국계 은행의 진출을 국내 구조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금융회사로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

행, KB은행, OK은행 등 6개 상업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이외에도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 회사 등 총 32개 금융회사가 현지법인·사무소·주재원 등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말레이시아의 금융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포괄적인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기관은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고 있어 손실·충격 흡수력(buffers)이 높고, 리스크 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위상이 높다. 금융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도 심도 있는 채권시장, 건전한 지급결제시스템,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22년 11월 기준 말레이시아 내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26개, 투자은행 11개, 이슬람은행 17개 등이 영업 중이다. 이외에도 보험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타카풀(Takaful)사, 증권사, 개발금융기관 등이 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금융 감독은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이 총괄하고 있으며, 외국 금융기관의 캄보디아 진출에 대해 특별한 장벽은 없다. 다만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최소자본금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는데 2016년 3월 상업은행 75백만 달러, 특수은행 15백만 달러, MDI 30백만 달러, MFI 1.5백만 달러 등으로 인상하였다. 각 은행들은 10%를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필리핀은 2018년 10월 발표된 '제11차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를 통해 조정사(adjustment company)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기존 40%에서 100% 완전 개방하였다. 또한 대출사(lending company), 금융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사(investment company)에 대한 투자도 완전 개방되었다.

미얀마 내 민간상업은행은 총 19개로 최근 민간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다소 제한적이다. 다만 2019년 11월 미얀마 정부가 3차 은행시장 개방에 착수하면서 외국계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2020년 영업허가를 받아 2022년 현재 4개 은행이 법인 또는 지점을 개설한 상태이다.

인도에는 40개 이상의 외국계 은행이 300개 이상의 지점 설립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 중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는 가장 규모가 큰 은행들로 각각 100개, 50개, 50개 가량의 지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라 투자 진출 증대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점 확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소 설치를 고려,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푸네, 하이데라바드, 암다바드; 우리은행은 첸나이, 구르가온, 뭄바이; IBK기업은행은 뉴델리; KEB하나은행은 첸나이, 구르가온; KB국민은행은 구르가온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이외에 NH농협은행, 수출입은행, 부산은행은 구르가온, 뉴델리, 뭄바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의 경우 구르가온 지점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의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진다. 인도는 보험업 규제를 위하여 과거 2000년에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를 설립한 바 있다. 인도의 보험산업은 매년 고성장(연평균 15~20% 성장)하고 있지만, 보험회사 설립 시 최소자본금 요건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천만 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매우 높아 보험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2019년 7월 보험중개업에 대해서는 100%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였다.

파키스탄에 외국 금융기관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요건을 만족하여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100억 루피 이상의 최소요구자본(MCR)을 보유하고, 본사가 납입자본금을 최소 50억 달러를 보유해야 하며, 최소자본적정성비율(CAR)이 8%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은행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파키스탄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회사는 최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한편 보험업의 경우도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다만 최대 49% 지분 보유만 동일하게 적용된다. 파키스탄의 보험 시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정부가 소유한 State

Life Insurance Company가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보험(대물, 사고, 건강)은 민간회사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몽골에는 외국계 은행이 진출 시 중앙은행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몽골에서 1년 이상 연락사무소를 운영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현재 몽골에는 네덜란드 1개, 일본 2개, 중국 2개로 총 5개 외국은행의 연락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외국계 은행이 현지 은행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지는 않다.

미주 지역 국가들의 금융서비스는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많은 국가들에서 아직 상당 부분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는 1999년 6월부터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가 허용되었으며, 2001년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지분취득 제한의 완화 및 폐지가 이루어졌다. 동 법안에서는 은행을 자본금 크기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지분취득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의 금융기관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이 담당한다.

브라질의 보험시장은 남미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1996년 국내외 지분 참여 철폐, 2007년 재보험 정부 독점 해제 등을 통해 개방이 이루어졌다. 특히 브라질에는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기존 회사들과 합작형태로 대거 진출해있다. 브라질의 재보험 관련 행정 규제 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고 있다. 브라질의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존 은행의 확장이나 지분 매입을 통해서만 허용하는 등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우루과이는 중앙은행(Banco Central Uruguay, BCU)의 금융 활동 규제,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 역외 금융에 대한 면세 혜택, 원활한 자금 및 외화 운용, MERCOSUR 등의 역내 국제 금융 중심지라는 특징이 있다. 과거 우루과이 금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금융비밀주의 유지였으나, 2017년 1월에 재정 투명성 관련법(ley de transparencia fiscal)이

발효되면서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였다. 우루과이의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본, 지불 능력, 유동성 자산 보유율 등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낮은 국제 금리 및 자본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수익이 낮은 단점이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나 거래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콜롬비아는 보험업에 있어 100% 외국인 출자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보험업체의 국내지점 설치와 외국인의 해상보험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금융기관의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형태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으며, 외국금융기관 지사는 자본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한 콜롬비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파나마는 서비스업이 GDP의 80%를 차지할 만큼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금융업은 물류·창고업 등과 함께 파나마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서비스업 가운데 하나이다. 2022년 8월 기준 파나마에는 글로벌 은행 78개사가 진출해 있다. 파나마에서는 중앙은행이 없이 은행감독원의 관리 하에 시장에 의해 금융자원이 관리된다. 파나마 은행들은 수출입·기업 금융, 은행간 거래에 특화 되어 있으며, 은행 자산의 72%가 미주·카리브, 유럽, 아시아계 외국 은행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다. 한편 파나마는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오래 전부터 조세피난처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2016년에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스캔들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실추된 국가 이미지 회복을 도모하고 중남미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2019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해 회색국가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5월에는 EU의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

파나마에는 은행업 관련 3가지 라이센스가 존재한다. (1) 일반 라이센스(Licencia General)는 파나마 국내 및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국내외 은행에 부여되고, (2) 국제 라이센스(Licencia Internacional)는 오직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은행에 부여되며, (3) 대표 라이

센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는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코스타리카는 2018년까지 자회사 형태의 외국은행 설립만을 허용하였으나, 2019년 외국은행의 지사 설립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코스타리카에서 외국계 은행사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국립금융시스템감독기관인 Conassif의 승인이 필요하다(법령 №.9724). 외국은행은 본국에서 금융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으로서 현지에서의 은행 영업은 코스타리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코스타리카 중앙은행(BCCR)이 정하는 최소 자본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설립 이전에 코스타리카 금융감독원(Sugef)과 본국 간 정보교환, 협력, 조율, 재정관리, 감독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기 조건에 따라 현지에 설립된 외국은행은 코스타리카 민간은행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국내은행과 동일한 금융활동을 보장받고, Conassif, Sugef, BCCR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은행업 및 보험업 진출은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러시아는 현지법인(자회사) 형태의 외국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개별 은행에 대한 지분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은행업 전체로 볼 때 외국 자본 참여가 정관자본금의 50%를 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소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등록 기간 3년, 무기한 갱신 가능), 대표사무소의 업무범위는 연구·국제협력증진 등으로 제한된다. 러시아 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 중 외국계 은행 수는 2018년 170개였는데, 2021년 63개로 대폭 감소하였다.

러시아 보험업은 「러시아연방 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보험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는 외국보험회사의 진출을 현지법인(자회

사) 형태로만 제한했었으나, WTO 가입 9년이 경과한 2021년부터 지점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외국자본이 러시아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하고(WTO 가입에 따라 50%), 이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영업허가발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국 등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다수의 러시아 금융기관이 특별제재대상자(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로 지정되었으므로, 이들 은행이 비즈니스에 연계될 시 자금조달이나 송수금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경우 일부 국가에 한해 금융서비스 규모가 크고 선진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를 따르는 이슬람 금융시스템의 특징이 나타난다.

UAE의 금융부문은 대표적인 금융 프리존인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로 널리 알려져 있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는 2004년 두바이를 중동 지역의 글로벌 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500여개의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2,500여개의 회사들이 소재하고 있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는 소위 역외(off-shore) 금융 지역으로서 UAE 중앙은행 등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별도로 두바이금융감독청(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다. 또한 두바이국제금융센터에 소재한 금융회사들은 도매금융, 투자금융 등을 수행하며, UAE 현지 통화(AED)가 아닌 US 달러로 거래를 한다.

UAE에서는 △중앙은행이 은행부문(상업은행, 투자은행, 금융투자회사, 환전소 등)의 인가 및 감독 업무를, △보험감독청(Insurance Authority)이 보험회사·보험브로커들의 인가 및 감독 업무를, △증권상품감독청(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ies)이 증권회사·금융브로커·상품브로커 등의 인가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UAE 내에서 외국 은행의 지점 설치는 중앙은행의 인가를 받으면 되지만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대부분 외국 은행들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1개 은행만이

UAE 중앙은행의 인가를 받아 영업을 수행하고 있으며(단, 도매금융만 가능), 다른 은행 및 보험회사 지점들은 모두 두바이국제금융센터에 소재하고 있다.

레바논은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은행의 비밀 보장이 잘 되고 시스템 역시 발달되어 시리아 무역상들 다수가 레바논에서 L/C 개설을 하고 있다. 레바논 보험업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분야다. 공식적으로는 경제무역부 산하 보험부서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만 내전 중 정부의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보험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약 50개사에 약 4천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보험시장을 놓고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있어 주변 지역 국가 중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폭 넓게 보장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인근 시리아 사태로 인해 보험업계의 타격이 심한 상황이다.

바레인은 중동 지역의 금융허브로 362개(2021년 6월 기준)의 은행과 금융기관이 있으며, 금융 분야가 국가 GDP의 약 17.7%를 차지한다. 바레인은 2021년 기준 4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14개의 이슬람은행이 소재하고 있다. 바레인의 금융서비스는 주로 해외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거래처에 대출해주는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건강 등 일반 보험시장도 성장 중에 있으며,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Takaful)도 영업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다. 바레인의 보험 시장은 2019년 기준 종사자가 약 1,700여명(2/3가 바레인人)으로 전체 금융업 종사자의 약 12%를 차지하며, 150여개의 보험관련 기관이 영업 중이다. 금융기관의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은 바레인중앙은행(CBB: Central Bank of Bahrain)이 담당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의 경우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상장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규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바레인에는 총 43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 12월 WTO 가입 이후 금융 및 보험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승인하지 않는 경향

을 보이고 있어 진출에 주의를 요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보험 분야는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 및 직접 영업 그리고 상업적인 국내 보험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합작)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지분은 최대 60%까지 허용한다. 2022년 11월 기준 약 207개의 보험/재보험 회사가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았으며, 이 중 현재까지 유효한 면허는 총 172개이다. 또한 투자은행 및 중개회사의 외국인 설립도 가능하며, 합작기업의 외국인 자산보유한도는 60%, 중개회사의 최소자본은 13.3백만 달러이다. 한편 2015년 6월 15일부터는 적격 외국인 투자가(QFI)에 대해서는 사우디 주식시장 직접투자를 허용하였다. 외국인 투자가는 사우디 주식시장의 10% 보유만 허용 가능하며 단일 QFI(전략적 투자자(SI) 제외)가 보유 가능한 주식은 단일 기업의 최대 49%이다. 2019년 10월 기준 사우디 내 QFI는 1,500명 이상이다.

오만에서 외국은행이 은행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호명에 은행(Bank, Bank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정관 개정, 납입자본의 변동, 소유권과 지배력의 유의미한 변동, 합병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상업은행의 경우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가된 경우 투자은행 활동도 수행할 수 있다. 외국 은행에게 요구되는 최소자본금은 2천만 오만 리알(약 $5,200만)이다. 금융 및 리스 회사에게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은 2천 5백만 오만 리알(약 $6,500만)이며 외부 부채는 순자산의 5배 이내로 제한된다. 2022년 11월 기준 오만에는 7개의 현지은행과 9개의 외국은행, 2개의 특별목적은행, 2개의 이슬람은행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외국은행이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은행을 불문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은행 소유자에 대한 국적 역시 불문하나, 이사진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CEO는 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보험업은 외국기업의 보험회사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회사를 설립한 외국기업의 경우 자본을 이스라엘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최저자본액은 생명보험 3,500만 셰켈, 일반보험(손해보험) 4,000만 셰켈, 생명·손해보험 6,000만 셰켈 등이다.

카타르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를 따르는 이슬람 금융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 카타르 기업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나 상거래에 투자하며, 여러 전통 상업은행들은 독자적 이슬람 지사를 설치,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타르에는 총 20개 은행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12개가 국립 은행(이슬람 은행 4개), 8개가 외국계 은행이다.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여러 제한이 있는데, 특히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카타르 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er, QFC)는 Law No.7/2005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이 카타르 내에서 국제금융, 금융서비스, 보험 등의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련 주요 유치 분야는 투자은행,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 보험, 자산관리, 컨설팅, 법률자문, 리크루팅, 프로젝트 관리, 설계, 교육, 세무회계, 광고홍보 등이다.

카타르 도하 증권 시장에는 카타르의 공공 지주회사들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기업 발행 주식 자본금의 최고 49%까지 투자할 수 있다. 카타르 내 주식거래는 카타르주식거래소(Qatar Stock Exchange, QS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은 QSE에 상장된 기업 지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2022년 11월 기준 QSE에 상장된 기업은 총 47개다.

쿠웨이트는 과거 1970~80년대 걸프지역의 금융허브였으며, 현재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효율적인 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통적으로 이슬람계 은행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반은행도 상당 부분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 이슬람계 은행, 외국계 지사 등을 합쳐서 20여개의 은행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인구 450만 명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국내은행이 외국계은행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국은행 설립 관련 최소자본금은 1,500만 디나르(5,150만 달러)이며, 50% 이상 인력을 쿠웨이트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집트는 과거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

나, 비효율적인 운영시스템 및 규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중앙은행이 신규 금융기관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 외국계 은행이 이집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은행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매각지분을 인수하거나 이집트 은행을 합병해야 한다.

튀니지는 외환관리법에 따라 상주기업(개인 및 법인 포함)의 외환송금 및 입금, 해외금융서비스 구매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나, 비상주기업이라면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된다. 비상주은행과 상주기업 간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의 지분 참여, 중·장기적 재정지원(외환자본, 수입·수출 거래, 현지화(디나르) 자본, 튀니지 내에서의 수익, 무역거래), 해외차용 자본으로 상주기업의 상거래 금융지원 등이다. 튀니지에서 증권중개상(개인 및 법인)은 법적으로 협상가 신분 및 유가증권 등록 권한을 취득한 튀니지 국적 소유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모로코는 금융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중앙은행(Bank Al-Maghrib)에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모로코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 외국 금융당국의 의견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업과 관련해서는 모로코 재경부가 새로운 보험상품 출시를 심의할 때, 다른 경쟁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이 모로코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한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기존 금융회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나의 은행 부문은 가나중앙은행(Bank of Ghana)이 규제하고 있다. 가나는 2017년 8월부터 부실 금융부문 정리를 실시한 이후, 현재 가나 내에는 상업은행 24개 및 4개 은행사무소가 운영 중이다(2022년 기준). 가나에 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초기 자본금 요건은 4억 세디이며, 지방은행(RCB) 및 소액대부금융기관(MFI)들에 대한 최소 자본금 요건은 2백만 세디이다. 가나의 보험업 규제는보험위원회(NI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보험회사 및 브로커는 법인격을 갖춰야 하고 NIC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2006년 폐지되었으나, 모든 보험사는 다른 업종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회사가 생명

보험과 비생명보험을 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가나의 증권은 가나증권거래소(GSE)에서 거래되며, 2009년부터 전자거래가 시행되었고, 2011년 1월부터는 가나 증권종합지수를 개발하여 주가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상장 기업은 22개이다.

나이지리아에는 과거 2005년까지 89개의 은행이 난립해 있었으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폐합을 거쳐 현재 24개의 상업은행이 존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중 상업은행의 최소자본금은 350억 나이라(NGN)로 확대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강화되었다. 외국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는데 있어 특기할 만한 장벽은 없으나, 금융기관 진출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자본금 및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사례는 없으며, 국제적으로는 현재 Standard Chartered, City Bank, Stanbic IBTC, Ecobank 등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해 있다.

튀르키예는 금융감독원(BRSA), 중앙은행(TCMB), 재무부 차관실(UT) 자본시장위원회(CMB), 예금보험공사(TMSF)에서 튀르키예 금융시장 감독, 통제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2021년 기준 총 49개의 은행이 있으며, 은행 부문 총 자산은 4,564억 달러이다. 전체 은행자산의 43.2%를 국내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4.1%는 외국계은행이, 32.7%는 민간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튀르키예 전체 은행자산의 59.2%를 차지하는 튀르키예 5대 은행은 지랏(Ziraat) Bank(16.1%), 바키프(Vakif) Bank(11.9%), 이쉬(Is) Bank(10.9%), 할크(Halk) Bank(10.6%), 가란티(Garanti) Bank(8.9%)이다.



투 자

개관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로, 크게 설립 전(pre-establishment) 단계와 설립 후(post-establishment) 단계의 장벽으로 구분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와 동등하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약하는 사항들을 말한다.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대상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으며 유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허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더라도 합작투자를 요구하거나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식이 채택되기도 한다. 또한 설립 전 단계에서 법인의 설치뿐만 아니라 법률적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지점이나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한다. 한편 설립 전 단계의 실질적인 장벽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s)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현지부품 사용의무, 기술이전 의무, 수출의무, 외환수지의무, 현지인 고용 및 교육훈련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외 투자에 필수적인 토지의 취득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사실상의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다.

설립 후 단계의 장벽은 기투자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도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경영상 문제점들도 장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체류 및 노동허가와 관련된 제한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 중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실상 불리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것도 설립 후 단계의 장벽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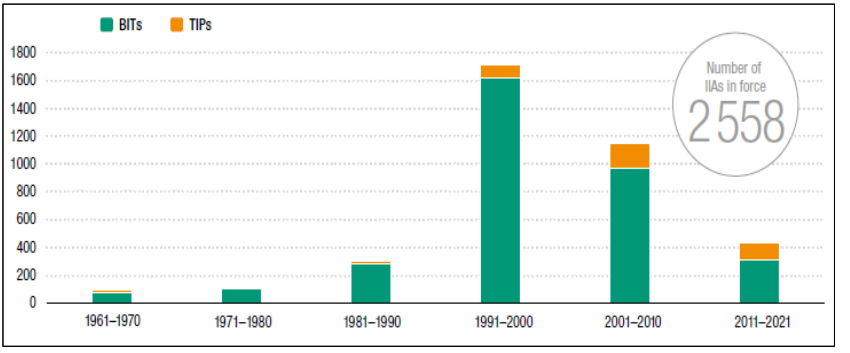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이해상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으로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 국제투자규범이란 한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당한 행위[162]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 이들 기업을 적절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며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치국 정부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제투자규범은 이들 주체간의 이행상충을 정리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62) 예를 들면, 이전가격의 설정, 반경쟁, 반고용, 환경침해 등이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국제투자규범이라 볼 수 있는 규범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양자간 상호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자간투자협정(BIT)은 현재 가장 기본적인 국제투자규범의 한 유형으로 World Investment Report(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양자간투자협정(BITs) 수는 2,861개이며, 투자규정이 포함된 협정(TIPs) 427개를 포함하면 국제투자협정(IIA)은 3,288개에 달한다. 이중 2021년말 기준 발효 중인 국제투자협정의 수는 2,558개이다. 그리고 WTO 체제에서도 국제투자와 관련된 규범으로 TRIMs와 GATS가 있으며, 이외 OECD, APEC, NAFTA, ASEAN 등의 경제협력체들도 회원국에 적용되는 투자 준칙이 있다.

전 세계 국제투자협정 현황



자료 : World Investment Report, 2022, p. 65.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국제투자규범들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할 뿐 세계 투자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국제투자규범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투자규범의 포괄성과 구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OECD에서 추진되었지만 1998년 말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국제투자규범의 불완전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MAI협상의 결렬 이후 WTO에서 무역투자 작업반을 중심으로 다자간투자규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등이 WTO에서 다자간투자규범의 제정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997년 WTO에 무역투자 작업반이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11차 WTO 각료회의(2017년 12월)에서 70개 회원국이 투자원활화 분야에 대한 공동각료 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2020년 9월 공식 협상이 개시되었다. 현재 투자원활화 협상은 통합문서를 바탕으로 투명성 강화,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국제협력 강화,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환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기존 투자협정에서 주요 의제였던 시장접근, 투자보호,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는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다.[163] 이외 UNCTAD, OECD, G20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투자원활화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의 투자확대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요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미국은 ICT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중국의 M&A 투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2020년 2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의 외국인투자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을 발효하였다.[164] 이외 EU,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인도, 호주, 캐나다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조치를 발표하였다.[165]

주요국의 투자장벽을 설립 전 단계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업종선택은 물론 외국인의 지분과 부동산 취득 등에 있어서 광범

163) 투자원활화협정에 관한 내용은 김관호(2020, 「WTO 투자원활화협정 논의의 성격과 의미의 고찰」), 이주관·김지현(2022,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논의 전망」), 산업통상자원부(2023,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관」) 를 참고하여 작성함.

164) 나수엽·김영선(2020,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발효에 따른 중국의 대미 투자규제 강화 및 평가) 참고.

165) 오태현·윤지현·박나연(2020,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강화와 시사점) 참고.

위한 투자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투자장벽의 해소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발적인 투자자유화와 기존의 국제투자규범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할 투자장벽들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극복노력도 이러한 틀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주요국별 투자장벽(설립 전 단계)

국가	투자장벽
미국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를 규정 / 연락사무소에 대한 관리강화
베트남	투자법을 통해 투자금지분야, 조건부 투자분야, 외국인투자자의 분야별 지분제한 등을 규정
인도	원자력, 복권, 도박, 전통소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 금지 / 외국기업의 부동산 사용은 실질적으로 장기임대만 가능
캐나다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 기업 인수 시 사전 통지 및 심사 / 방송·통신·운송업의 경우 외국인지분율 제한
말레이시아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시아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와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아래에서는 국별 주요 투자장벽의 현황을 설립 전 단계와 설립 후 단계로 나누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이때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이행의무 부과, 부동산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기타제한 등으로,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과세문제, 금융 및 자본조달상 제한, 인력의 현지파견 제한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세계 각국은 외국인투자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자유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각국의 투자제한 업종은 많이 축소되어 왔다. 특히 OECD 회원국은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따라 직접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MAI와 같이 포괄적으로 설립 전 단계의 투자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투자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제한업종의 철폐는 전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정책에 달려 있으며 투자유치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만큼 각 국가별로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각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 중 노르웨이의 경우 수력 발전, 우편, 철도, 양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자산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산림, 광산, 경작지, 휴양지, 수력발전용 폭포 등을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고 있으나, 통신, 에너지, 운송 및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 등 일부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규제이다. 실제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 불

허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투자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2월에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 발효되어 CFIUS의 외국인투자 심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었다. 즉 미국기업을 통제하는 투자뿐만 아니라 핵심기술, 주요 인프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지배적 투자와 주요시설 인근의 부동산 투자까지로 심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한편 2022년 9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EO 14083)」은 CFIUS가 심사 시 고려하는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미 공급망 회복력에 관한 영향, △미 기술 리더십에 관한 영향, △과거 거래의 맥락상 누적적 영향을 고려한 투자 트렌드, △사이버 보안 위험,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에 관한 위협을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항공, 통신, 핵에너지, 방송 분야는 특별허가를, 은행업은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 관련 업종은 주정부(칸톤)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EU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개별국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해 왔으나, 최근 첨단기술을 보유한 EU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M&A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공동체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EU의 이익과 안보,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FDI 사전심사제도(스크리닝 규정)[166]를 도입하였다. EU의 FDI 사전심사제도는 2017년 발의되었고, 2019년 3월 EU 이사회의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 10월 11일 부로 본격 시행되었다. 동 규정에 따르면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인프라스트럭처 전반과 첨단기술, 식량·에너지·원자재 공급, 데이터의 처리, 언론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우 넓은 분야가 FDI 사전심사제도의 대상이 될 수

166) 이 규정은 "REGULATION (EU) 2019/4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1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이다.
EUR-Lex의 동 문건(https://eur-lex.europa.eu/eli/reg/2019/452/oj) 참고.

있다.[167] EU 회원국에서 이들 분야에 FDI가 유치될 때 해당 국가는 심사를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여타 회원국 및 EU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여타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투자를 유치하는 회원국에 대해 제공된 정보 외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는 회원국이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통보 받은 EU 회원국과 EU 집행위는 해당 투자가 공동체의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는 EU 회원국은 자국의 심사결과와 EU 회원국 및 EU 집행위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U 회원국 중 독일은 외국기업의 공격적인 M&A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7월 대외경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 위협 가능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심사를 강화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자가 독일기업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2018년 12월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인프라, 특정산업(에너지·금융·교통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설비, 국민여론과 관련된 언론사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자가 10% 이상의 의결권을 획득할 경우 정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대외경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20년 5월 발효된 개정안에서는 의료분야(백신, 의약품, 의료장비 및 전염병 치료 관련 의료제품의 제조업 등) 제조 및 연구개발 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동 산업분야와 관련된 인수계약 체결 시 거래 참여 기업은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에 관련 내용을 사전 보고해야 한다. 2021년 5월 추가개정으로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투자자가 미래 첨단 기술 분야(AI, 자율주행, 반도체, 양자기술, 항공우

167) 동 규정의 제4조 1에서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특히 (a) 에너지, 운송, 수자원, 보건, 통신, 미디어,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우주, 국방, 선거 및 금융 인프라를 포함하는 물리적·가상적 중요 인프라와 그러한 인프라의 사용을 위해 중요한 토지 및 부동산과 민감한 시설, (b)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사이버 보안, 항공 우주, 방위, 에너지 저장, 양자 및 핵 기술, 나노 기술, 생명공학을 포함하는 (EC) No 428/2009의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기술 및 민수용이나 군수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c) 식량 안보, 에너지, 원자재를 포함한 중요 투입물의 공급, (d) 개인 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그러한 정보를 통제하는 능력, (e) 언론의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핵기술 등 총 16개 분야) 기업의 지분을 최소 20% 취득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코로나19 위기로 강화된 의료분야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20% 지분(기존 10%) 취득 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스페인은 외국인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와 직접관련이 있는 무기, 군수품 및 폭발물 제조 분야 등은 국무회의를 통해 제한하고 있다. 이외 비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무회의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및 광물 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투자는 특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페인 전략기업이 저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외국인투자를 중단한 바 있다. 즉 EU 및 EFTA 이외 투자자가 전략산업 부문 기업의 자본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운영·통제권을 가지는 투자는 공공 안전·질서·건강상의 이유로 중단될 수 있다.

영국은 외국인이 금융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식용 육류(食肉)의 가공·소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료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브로커, 식품 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등록을 필요로 한다.

오스트리아는 환경오염산업, 국가 독점사업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며, 그 외 대부분의 산업(약 99.7%)은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일본은 국가 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 대상 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 4월 말 「외환및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을 일부 개정(6월 7일부 적용)하였다. 개정된 「외환및외국무역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사전신고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기업의 주식을 1% 이상 취득시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전은 10% 이상 취득시 사전신고). 또한 핵심 업종(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개발, 군사용도로 활용 가능한 제조업, 사이버 보안, 전기·가스·석유, 통신, 수도, 철도 등)이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외국 투자가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7월 15일부터는 의약품·의료기구 등도 핵심 업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외환및외국무역법」 외에도 「광업법」,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법」, 「항공법」 등을 통해 각 업종별로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일본 기업에 대한 출자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지만, 외국인투자관련 기본법인 「Investment Canada Act」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캐나다 내 신규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 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투자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투자계획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 또는 추가적으로 국가안보사전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 서적 출판 및 배포와 정기간행물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직접인수가 금지되어 있으며, 간접인수 역시 캐나다에 순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포르투갈의 경우도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수도, 우편, 철도, 항만 등 국가 기본 인프라사업에 한해서는 양여계약의 조건으로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2014년부터 EU 회원국이 아닌 외국인이 국방, 에너지, 물, 운송, 통신 및 공공보건 등 정부가 지정한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우주항공, 공공안전, 사이버안전,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로 사전허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극복 일환으로 전략산업 및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외국인투자는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와 관련 있는 부동산 투자, 주거용 부동산 투자, 개발되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 2.89억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외국정부 및 공기업에 의한 투자, 매스미디어에 대한 투자, 2.89억 호주달러 이상의 일반자산에 대한 투자, 1.5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농지투자, 6.3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농기업 투자 등은 FIRB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의 FTA를 통해 일반자산의 투자심사 면제 상한이 12.5억 호주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 한편 FIRB는 거의 모든 사전심사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투자심의제도가 강화되어 국익 또는 국가안보에 반하는 투자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기승인 된 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철회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개도국은 다양한 산업에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공공시설, 회계, 금융, 보험, 광산업, 임업, 운수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며,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Negative List 업종인 석유가스와 무기, 마약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며, 이중 석유가스 부문은 국영석유공사(NNPC)와의 합작투자가 필수적이다. 그 외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니카라과 역시 공공질서,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정책적 이유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대만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금지 또는 제한 분야를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Negative List 방식으로 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2018년 2월 8일 개정)에 명시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

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경우 행정부의 명시적 권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라오스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광산업의 경우 실제 개발을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여 2012년 6월 총리령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여야 한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금지된 13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모로코는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광업,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사업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 보험 및 제약업 등 일부 분야에는 특수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몽골은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 분야의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설업체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미얀마에서는 ①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 ②해외에서 시험 단계에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약품,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③ 미얀마 내 소수민족의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④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업 ⑤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 ⑥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등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 ①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②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

업 ③환경 및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이 큰 사업 ④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사업은 투자위원회(MIC)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레인은 우선 ①도박, 주류제조, 담배제조, 담배 자동판매기 수입, 마약제조, 무기제조 ②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투기, 유독성 물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제조, 제한된 화학약품 수입과 산업용도로의 사용 ③제1종 우편(letter post)에 대한 영업 등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금지 되어있다. 그리고 ①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와 건물 임대 및 관리 ②언론사와 출판사, TV, 영화, 라디오 연극제작과 관리, 배포관련 업종 ③운수업, 해양 크루즈, 운전 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트카, 콜택시 ④석유관련 제품 공급(주유소 등), 가스분배 ⑤공공기관 행정지원 서비스 ⑥하지와 움라(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⑦외국인 노동력 공급 ⑧상업흥신소(commercial agency) 등은 바레인과 GCC의 국민과 기업에만 영업이 허가 된다. 마지막으로 ①어업 ②부기(book-keeping)와 회계서비스(회계감사 제외) ③레이스카 연료 수입, 수출, 판매 ④화물 통관은 바레인 내국민과 기업에만 영업이 허가된다.

베트남은 투자법을 통해 투자 금지 및 조건부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2021년에 개정된 투자법에 명시된 금지분야는 ①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투자 ②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투자 ③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투자 ④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투자 등이다.

벨라루스는 ①보건부가 규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②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경제부의 동의 없는 투자 ③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등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군수품(총기, 탄약, 폭발물 등) 및 군사시설, 마약류, 방사능·화학 폐기물 처리, 귀금속 채굴 및 가공, 임업, 복권사업, 역사 유물 등 약 21개 산업군/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전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국가투자 계약목록에 등록해야 한다. 상기 일련의 절

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투자계획 실행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 선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통신, 광산, 금융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경제위원회(SEC: The Supreme Economic Council)는 2007년 3월 원유생산부문, 군사부문, 수송부문, 이슬람교의 정서를 침해하는 부문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하였다. 다만 2018년 10월 23일부로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육상 운송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금 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500만 달러 미만의 내수 소매업, 연안어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가 금지된다.

UAE는 해외기업의 회사설립에 관하여 석유 및 가스 산업,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 있으며, 면허, 자국인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프리존이 매우 발달해 있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168]

아르헨티나의 경우 투자금지 분야는 없으며 방위산업, 공공서비스·우편·전기·가스, 교통·통신, 라디오·TV·잡지·신문, 에너지, 교육, 은행, 금융 분야로의 투자는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앙골라에서는 국방, 국내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상이 이유로 외국인투자가 제한될 수 있으며, 중앙은행 및 은행을 포함한 은행 업무에는 외국인의 참여가 불가하고 국가가 법으로 정한 기타 부문에서의 투자도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석유 및 다이아몬드 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특별법에 따라 관리

168) UAE 프리존 입주 시 ①100%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 ②수출입 관세 면제 ③자본 및 수익의 본국 송환에 대한 무규제 ④장기간 법인세 면제(갱신 가능) ⑤채용 및 비자 발급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 없음 등의 혜택이 있음.

되고 있다. 이외 2018년에 발효된 「2018년 민간투자법」에 따라 5천만 달러 이하 투자는 해당 부처의 승인이 필요하고, 5천만 달러 이상 투자는 내각회의 및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다.

에콰도르는 국가안보 분야 및 국가통제가 강화된 전략적 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부분의 제한이 따른다. 그리고 관련분야로의 외국자본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 수산업, 소규모 어업활동, 광산 채굴권 및 화석연료 분야, 라디오와 TV 방송권 등에도 외국인투자 제약이 존재한다.

에티오피아는 법령, 도덕, 공중보건, 안보에 반하거나 정부와의 공동투자 분야(①무기, 탄약, 화약 제조업 ②전기 수출입 ③국제항공운송 ④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⑤택배를 제외한 우편서비스), 국내투자자를 위한 분야(국가 통합 전력망을 통한 송배전업 등), 국내투자자와의 공동투자 분야(물류서비스 등) 등 별도로 규정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통상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482배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년 5월에는 투자촉진을 위해 「민관파트너쉽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의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하여 「민관파트너쉽법」을 개정하였다.

오만은 통·번역, 인쇄업, 의상 제조판매, 차량 수리, 부동산, 주유소, 식수 배달 등 일부 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

온두라스는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는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개발, 일정면적 이상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 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보건, 무기사업,

복권, 위험 또는 유독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등은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된다.

요르단은 최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투자제한 업종이 다수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조사 및 보안 서비스, 개인 신변 보호 서비스 및 관련 교육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우간다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은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s Authority Act of 1996, 2015년 개정)」, 「회사법(Companies Act of 2012)」, 「투자법(Investment Code Act of 1991)」이 있다. 투자법은 국가안보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산업 분야의 외국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곡물 및 가축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 분야 외국 투자자들은 우간다 소재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 분야, 차량 대여 및 택시운영사업, 제과·다과, 내수용 음식가공업, 우편서비스 사업 등은 여타 투자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수입관세, 판매세 면제 등)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루과이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어 외국인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적인 외국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독점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및 석유 등)이 존재한다.

이라크 내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굴분야는 「정유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07년)」 등에 의해 제한되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한 투자 역시 제한되어 있다. 이외 소매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집트의 경우 명시된 투자허용분야(24개 분야)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①에너지집약 프로젝트 ②알루미늄 원료 ③메탈합금 프로젝트 ④담배산업 ⑤군수부문(국영 및 관련기

업과의 합작은 가능) ⑥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도는 대부분 산업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박, 전통소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①마약 재배 및 유통 산업 ②모든 형태의 도박 및/또는 카지노 산업 ③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산업 ④산호초의 활용 및 채취 등에 관한 산업 ⑤화학무기 제조업 ⑥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관련 산업 등 6개 업종과 중앙정부만 수행할 수 있는 분야(전략적인 안보 및 보안)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된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이 중국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는지, 개방정도는 어떠한지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 목록에서는 외국인투자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는 외국인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제한은 지분율 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장려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말한다. 위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법령은 1995년 실행된 이후 12차례(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정되었으며, 2021년 네거티브 리스트(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를 발표한 이후 2022년에는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을 발표하였다. 2021년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목록 수는 2018년 48개, 2019년 40개, 2020년 33개, 2021년 31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둘째,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종에서 승용차 제조업의 외국인 지분 비율 제한이 없어지고, 동일한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2개 이하의 동종 완성차 합자기업만 설립하도록 제한한 규정도 철폐되었다. 또한, 방송 설비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방송 수신 시설과

핵심 부품 생산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없앴다. 셋째, 지분 요구사항 및 고위 경영자 요구사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통일적으로 명시하였다. 넷째, 외국인 투자자는 자영업자, 개인 독자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원의 신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다섯째, 국무원 유관 주무부처의 심사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특정 외국인투자자는 네거티브 리스트 중 관련 분야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섯째,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분야 사업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이 해외 주식 발행 및 상장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의 검토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율은 국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일곱째, 중국 경내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외환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여덟째,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나열되지 않은 문화, 금융 등 영역과 행정심사, 자격요건, 국가안전 등에 관한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캄보디아는 투자에 내외국인의 차별이 없어 외국인에게만 금지되는 분야는 없으나 ①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②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③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④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⑤기타 법률 등에 의해 금지된 투자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에게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케냐에서는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업용 토지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규제되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받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코스타리카는 전력생산, 관광인프라, 교통운송 부문에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전력생산과 관광인프라는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통운송은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양허사업에 있어 입찰 시 동점일 경우 외국투자기업보다 자국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방위산업,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금융 및 보험, 자원개발, TV 중계 등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의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내국민대우를 받고 외국인에 의한 100% 투자가 가능하다.

쿠웨이트는 2001년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인프라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해 승인 또는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천연자원인 석유 생산(특히 원유 개발)에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참여는 불허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고 있으나 도로건설, 보건, 군사 등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어 있다.

튀르키예는 2003년 6월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고 2018년 7월 대통령실 직속 투자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외국인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되어 있다. 다만 라디오·TV 방송, 국내 민간항공, 국내해운 등의 분야에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는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파나마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 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분야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광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가 필요하다.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 고도 폭발물, 보안인쇄, 화폐·조폐, 방사능 물질 등 5개 분야에 대해 투자진출이 제한되어 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①농업(주로 5만키나 이하), ②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 활동, ③야생동물의 사냥이나 수집, ④어업(3마일 이내 연안 및 내수면어업 등), ⑤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금 채취 등 소규모 사업활동은 오직 자국민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제한목록은 투자진흥청의 기업정보·촉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페루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고 있으나 ①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유해한 동식물, 국민 보건 위생에 위해를 야기하는 산업 ②용역 및 경비업 ③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④운송업, 은행 및 국방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페루의 관련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외 국경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 취득에 있어서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폴란드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나 항공업이나 라디오·TV 방송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권을 취득해야하며, 주류·담배 제조, 공항관리, 의약품 제조, 통신서비스, 상수공급 및 하수처리, 은행, 부동산 중개업 등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리코팅 업종 제외), 엔지니어링, 의료업(약사의 경우 호혜주의에 따라 활동 허용),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환경설계,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소매업(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나) 투자지분관련 제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이다.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적인 목적 하에 경영권을 국내투자가가 보유하도록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련 제한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제한의 강도는 개도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 중 노르웨이는 방송분야에 대한 투자를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정부의 양허(concession)를 받지 않으면 개인투자자 1인이 국내 TV와 라디오의 지분을 1/3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①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 ②지분매입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③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④투자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⑤자산 및 사업체 투자중 투자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사업투자와 ①토지의 총 면적이 5ha(5만m^2) 초과 ②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천m^2 초과 ③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④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천m^2 초과 ⑤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⑥해안선을 포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천m^2 초과하는 토지투자의 경우 해외투자청(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 외국인이 산림조림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임대를 위해서는 ①현재 산림 조림중인 토지 ②산림으로 이용될 토지 ③연간 1천ha 이상의 벌목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승인절차가 개시되며, 토지를 이용한 사업 목적에 따라 ①특수산림 검사 ②표준이익 검사 ③수정이익 검사 ④유효동의 등 4개 절차 중 1개를 선택하여 해외투자실에 승인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2021년에 해외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동 조치의 지속여부는 90일 마다 검토된다. 이에 의하면 국익테스트는 ①외국지분 25% 이상의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②기 소유 비율이 추가적 투자로 50%, 75% 이상 또는 100% 증가하게 되는 해외투자에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러시아는 2021년 7월 「국가 방위 및 안보 보장을 위한 중요 기업의 외국인 투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하여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상한이 50%에서 25%로 낮아졌다. 2022년에는 수산업뿐만 아니라 어획물의 생산, 처리, 운송, 재적재, 보관 및 하역 등 수산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수정 법안이 논의 중이다.

싱가포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등 6개 제조업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 법률,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회계 서비스, 은행 및 증권업 등에는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에 대해 지분제한이 있다.

이스라엘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제한은 없으나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는 허용되지 않으며, 통신분야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이외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규제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특정부문은 정부의 면허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경우 TV 및 라디오 방송은 캐나다인이 지분의 80%(모기업의 경우 66.7%)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통신(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은 20%, 운송(캐나다 국적기에 대한)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은 25%이다. 반면 에너지 및 광업 산업의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외 외국인은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 지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호주의 경우 항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서비스의 외국인지분제한은 국내선 100%,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49%, Qantas 항공은 49%이며 공항의 외국인지분한도는 49%(개별항공사 5%)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총 외국인투자 한도는 총지분의 35%이며, 개별 외국인투자한도는 총 지분의 5% 이하이다.

홍콩의 무료 TV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TV방송 라이선스를 2% 이상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라디오 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개도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제한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등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측면에서 투자지분율 제한을 활용하고 있다. 몇몇 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나는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 단독투자는 50만 달러 이상, 합작투자는 외국인이 2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중소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유통업 분야에서는 가나인과의 합작투자만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는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지분한도가 완전히 자유화되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의 경우 말레이계 지분(부미트라 지분)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물류업 중 육상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분 51% 이상이 돼야 한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합작회사는 10%, 국내 및 특수 항공운송, 택시, 보험, 외환 거래회사, 방송, 통신, 보험 등은 49%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이 존재한다. 이외 외국인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경우와 총 투자가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CNIE: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로코에서 환경, 문화서비스, 수도·전기 공급, 사설교육, 전문 서비스(회계, 건축, 법률, 의료, 제약, 운송, 금융, 통신 등) 등은 특정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25% 이상이고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고액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00억 투그릭 이상(광산, 중공업, 인프라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지분소유 관련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지분이 35%를 초

과하면 외국회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분야에서 35%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는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투자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항공운송과 선박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또는 국적선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석유 등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석유 개발은 2005.7월부터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2006.5월 제정된 「화석연료법」에 따라 지분의 50% 이상을 PDVSA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의 조건부 투자 분야는 ①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②금융 및 은행 분야 ③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④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⑤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⑥부동산 사업 ⑦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⑧공적 교육 개발 분야 ⑨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등이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 등으로 현지 기업활동이 어려워진 외국투자기업이 지분 매각 후 철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벨라루스 유가증권 처분 제한에 관한 재무부령(2022년 7월 5일)」을 도입하였다. 특히 벨라루스에 비우호적 조치를 취한 국가의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190개 기업이 지분 매각 금지 대상기업 목록에 포함되었다.[169]

브라질은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의 절대다수 지분 보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았다. 광산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질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등 언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의결권주의 30%까지만 허용하며 그

169) 2022년 4월 벨라루스 정부는 39개 비우호 국가 명단을 발표하였다. 동 명단에는 EU 회원국(27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알바니아,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가 포함되어 있다.

외에도 케이블 TV는 49%까지, 국내 항공사는 25%까지 외국인의 의결권주 보유 제한을 두고 있다.

브루나이의 경우 원유·천연가스 등 자원분야와 국가식품안전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49%까지의 자본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지분 및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현지 기업인과의 공동합작 형식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 WTO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제한조치를 완화하여 보험업과 금융업은 60%, 통신서비스업은 70%, 도소매업은 100%로 외국인투자지분 상한을 확대하였다. 이외 외국인 100% 지분 보유 제한 업종은 석유, 가스, 방산, 보안 및 탐지, 메디나 및 메카 부동산 구입, 성지순례 여행업, 인력 사무소, 부동산 중개, 출판, 방송 및 오디오, 병원, 대중교통, 어업 등이며, 2017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가능하다. 한편 모든 외국인투자는 투자자지원센터(ISC: Investor Service Center)를 통해 사우디 투자청(SAGIA)에 서류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단은 제도적으로는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무역, 도소매업, 공공부문의 경우 외국인 단독투자는 불가능하며 수입회사는 내국인 지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 현지법인 및 수출입 업무를 하는데 있어 관련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규제가 존재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UAE는 2021년 4월에 지사·연락사무소 설립 시 요구되었던 로컬서비스에이전트 임명요건(회사법 제239조)을, 동년 6월에 UAE 국적자 지분 51% 이상 보유요건(회사법 제10조)을 폐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방의 조치에 대한 적용 권한이 각각의 에미리트에 있는 경제개발부(DED)에 위임되어 있고 에미리트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알제리의 경우 2020년 「석유가스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석유·가스 신규 탐사 및 개발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파트너 계약 도입 등을 포함하는 일부 제

도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5대 전략분야(석유가스, 군수, 교통인프라, 제약, 광업)에는 외국인투자 지분이 제한(51:49 규정)되어 있다. 석유 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을 통한 수송 포함)의 경우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의 참여를 체계화·의무화하고 있다. 즉 동 분야에 외국회사가 투자할 경우 Sonatrach의 지분이 최소 51% 이상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앙골라의 최대 산업인 석유와 관련된 탐사·개발·시추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합작하여야 한다.

엘살바도르에서는 TV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해 외국인소유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외 지분소유제한은 거의 없다.

요르단은 도소매업(유통, 수출),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컨설팅 등은 50%까지, 운송 관련 서비스, 방송장비 유지보수, 스포츠클럽 등은 49%까지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이 있으며, 투자제한 분야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요르단 투자청을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인도의 경우 외국인은 공공은행 20%, 출판(신문, 뉴스, 정기간행물) 26%, 개인경비서비스, 방송 컨텐츠, 증권인프라, 연금, 전력거래 49%, 멀티브랜드 유통업 51%, 민간은행 74%를 초과하여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국방, 방송, 출판, 민간항공, 위성, 통신, 개인경비서비스, 유통, 금융서비스 등 11개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2020년 4월 인도는 중국 등 접경지역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사전 정부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개정된 투자제한 목록에 의하면 ①간단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분야 ②노동집약적인 특성 또는 문화적 특성이 있는 사업분야 ③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제외하고 사업활동 자본금이 100억 루피아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는 89개 분야는 협동조합 및 영세중소기업에 할당된 분야 또는 협업 조건 개방분야에 속한다. 이외 지분제한 및 특별허가와 같이 특정조건에 의해 개방이 허용되는 46개 분야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일부 보호대상 산업에 대해 외국인출자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업별·업종별 제한 요건에 대한 통합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중요 산업인 석유분야의 경우 해상 및 육상 광구 모두 외국인 지분참여는 50%미만까지만 가능하다. 광산의 경우 노후광산에 대한 매장량이 고갈됨에 따라 탐사사업을 독려하고 신규광산을 발굴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방 메이저사들에 대해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최근 다소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외 방송분야의 경우 외국인은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제한이 없어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나 국영기업 투자의 경우 외국인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케냐는 보험, 정보통신, 전력·항만 등 인프라, 언론분야를 제외하면 자국인의 일정 지분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보통신 분야는 외국인지분이 각각 66.7%, 70%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코스타리카는 전력생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전체 자본금의 65%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안선 200미터 이내 지역의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시 외국기업의 지분 한도는 49%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49% 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튀니지는 금융업이나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와 외국인지분율이 50% 이상인 보험업, 부동산관리, 외판업, 주식중개업, 운송업, 해운업 분야 등에 대한 투자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서비스업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전량 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참

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경지 경작, 수산·양식업(튀니지 북부) 등의 농수산업부문의 경우 외국인 지분소유는 66%까지 허용된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두고 있는데 광고업은 외국인 최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며,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국제경쟁입찰 제외), 교육기관 투자,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대형(5천만 달러 이상) 지열발전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메스 등) 프로젝트의 외국인 지분은 40%로 제한된다.

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를 통한 해외진출은 국제기업이 자주 선택하는 해외진출방식이다. 이 조직형태는 자회사 형식에 비해서 설립과 운영에서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생산거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사 등에 의해 선택된다. 이러한 지사 및 사무소 진출방식의 유연성은 역으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단기성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있어서 자회사에 비해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외환관리상으로도 투자유치국이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외환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및 사무소 설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지사 및 사무소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지사 및 사무소의 운영을 파악하고 있어, 지사 및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이 대부분 개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몇몇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과 관련한 투자제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나의 경우 광업과 석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투자진흥청에 등록해야 하며, 신규 투자 승인 이후 2년마다 투자등록 갱신이 필요하다. 투자 관련 승인 신청비용은 투자형태 및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투자진흥청(GIP)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외국기업이 대표자를 과테말라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자본금 200케찰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 하며, 투자보증금으로 5만 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하게 된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외국회사는 나이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 계약행위, L/C 개설 및 협상에 제약이 있다. 대표사무소는 홍보 및 연락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현지 운영경비는 해외 본사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입되어야 한다. 또한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위원회(CAC: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한다.

미얀마에서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는 외국계 무역법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외국계 무역법인의 신규투자는 2002년부터 허용되고 있지 않아 현재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신규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브라질의 경우 지사 설립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항공사 등 지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사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는 베트남「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현지에서의 영업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된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본사가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을 해야 하며 투자허가기관은 무역부(MOIT)이다. 지사의 경우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에 준하는 회계업

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 및 거주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 시 크게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등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나 각각 약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지사는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는 불가능하고 단독진출만 가능하며, 지사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모회사인 본사가 지게 된다. 연락 사무소는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 상사, 제조업 등 일반무역이나 상업적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엘살바도르는 최소자본금(2천 달러)을 보유하고 스페인어 구좌 기록을 준비해야 지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만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은행, 보험, 법률 및 회계 컨설팅 등 오만 각료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점 설치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오만인 또는 GCC 국민만 이용할 수 있다.

이란의 경우 외국회사가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재정부 산하 회사 등록청에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자국 회계검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이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집트 내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청의 승인을 얻고 상업등기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설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이집트 기업 심의국에 제출하고 등록하면 된다.

인도는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적도기니에서 외국회사의 지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적도기니에서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설립할 수 있다. 해당 지사는 무역부 부령으로 면제받지 않는 한 설립 후 2년 이내 법인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설립은 허가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시장조사 및 연락업무 등의 본사지원업무는 가능하다. 연락사무소 설립은 출판사, 영화사, 항공사, 증권사, 보험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전허가 절차가 필요 없으며, 지역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요구사항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연락사무소의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2010년 1월 4일에 발표하였고, 이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조례」를 2011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2013년 7월과 2018년 9월 두 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일부 관할부서의 명칭에 대한 변경만 진행하였고 주요 내용에 큰 변화는 없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무부(MoC)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만을 할 수 있다. 지사는 영업활동이 가능하나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과 원천세 부과, 본사와의 거래내역 보고 등의 까다로운 행정이 요구된다.

파라과이는 법인, 지사, 사무소 설립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경영진이 될 수 없으며 대표이사는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지사·사무소의 형태로 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의 경우 역시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폴란드에서 지사 및 대표사무소 설립은 가능하나 지사는 법인성을 갖지 못하며 본사 영업 범위내의 활동만 가능하다. 대표사무소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개발부가 관장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라) 이행의무의 부과

이행의무의 부과란 외국인투자 설립의 조건으로 투자유치국이 외국인투자가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수출 및 국내부품조달 의무, 국내 상품의 우선적 구매 의무, 수입액이나 국내 판매 등을 수출액과 연계시키는 의무, 기술이전 의무, 합작법인의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내 지분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투자관련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WTO의 TRIMs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이행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투자규범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 다만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에서는 수출의무, 국내조달의무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무를 투자의 설립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MAI 협상에서는 이러한 이행의무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기술이전의무, 합작법인의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내 지분 의무 등에 대해서는 투자인센티브와 같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투자관련 이행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에서 다수의 이행의무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영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현지고용조건과 연계되어 있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이행의무부과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 TRIMs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내용을 이미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이행의무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도국의 알려진 이행의무 부과는 아래와 같다.

가나는 무역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1백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을 20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가봉에서는 내국인을 80% 이상 고용해야 하며, 과테말라에서는 전체 고용 인원의 90% 이상을, 급여기준으로 85% 이상을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나이지리아는 석유가스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석유투자관리사무소(NAPIMS)에 그 이유를 소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대만의 가공무역수출구역에 투자한 기업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생산의 100%를 수출해야 한다. 기타 특별경제구역(과학단지, 공업 단지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은 없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수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이 생산품을 국내로 판매하려고 할 경우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일정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품의 20%를 초과하여 국내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25% 이상의 국산화의무를 충족하거나 동종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라오스에서는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자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를, 사무직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국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외국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이외 라오스내 외국인투자법인은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모로코는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취업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노동청(OFPPT)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업을 위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외국 인력의 취업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몽골 역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만 채용이 허용되며,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미얀마에서는 투자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은 비숙련 노동자를 반드시 현지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전문직 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위의 경우에도 현지인 비중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첫 2년간은 25%, 다음 2년간은 50%, 세 번째 2년간은 7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품목을 불문하고 생산품의 약 40%이상을 수출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투자진출 자체가 어렵거나 과실송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노동담당 직원, 선박 혹은 항공의 선장은 베네수엘라 국적을 보유한 자로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용인이 10인 이상인 기업은 피고용인의 90% 이상을 내국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총 급여의 80% 이상을 내국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족한 경우와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유예를 얻을 수 있다.

볼리비아의 「투자촉진법(2014년)」은 볼리비아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①볼리비아 근로자 또는 기업에게 기술이전하거나 ②투자분야와 관련된 대학이나 기술학교에 장비나 용품을 기증하거나 ③투자분야와 관련한 국가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에서는 총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볼리비아간 투자협정은 2019년 6월 4일자로 종료되었으며, 종료일 이전에 이뤄진 투자는 10년간 동 협정에 따라 보호된다.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과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요건을 연계하고 있으며 국산부품사용 요구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국 인력의 급증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자국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회사 내 고용자의 일정 비율을 사우디인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인 사우디인 의무고용제(Saudization; Nitaqat)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별 및 기업 규모별로 등급을 5단계(Platinum, High Green, Medium Green, Low Green, Red)로 나누어 의무고용 비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해당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그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된다. 기본적인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신규 비자 신청, 외국인 근로자 이전 신청, 워크퍼밋 갱신 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3번째 등급인 Medium Green 등급 준수가 필요하며 그 이하부터는 제약을 받게 된다. 더불어 2020년부터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에서는 사우디인 의무고용제 이외, 특별 직종별로 사우디인 고용 비율을 발표 및 적용하고 있다. 2020년에 엔지니어 고용 비율을 20%로 발표 및 적용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특수 서비스 직종을 비롯한 컨설팅 등 직종별 현지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 도입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주요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원부자재의 국내생산 단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동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재정수입 증대 목적으로 투자계약서 상 국내생산 해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아르헨티나는 외국인투자 관련법에 국산화율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자동차 부문은 2016년 8월 발효된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법」에 의하면 승용차 30%, 경차 및 트럭 25%, 차량엔진 15%의 국산화 의무비율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업진흥법」에 의한 각종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업진흥지역 내의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앙골라는 현지 조립생산제품에 대해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내산업이 낙후되어 동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 예멘 역시 자재, 장비 및 인력사용 등에 있어서 국산품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출의 무사항은 없다.

이란의 경우 국내 산업보호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정책 일환으로 외국인투자허가 시 국산화 의무 및 일정 비율의 수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장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인을 일정 비율 이상(총 고용인원의 90% 이상,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단, 엘살바도르인으로 충원이 어려운 경우 10%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5년 이내에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오만에는 자국민 의무 고용 제도(Omanisation)가 있어 사업 부문 및 업무 직종에 따른 자국민 의무 고용 조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국민 의무 고용 비율을 미달성한 기업은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두라스는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우간다투자청(UIA)은 투자 금액 10만 달러, 투자 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투자허가를 발급하며, 동 투자허가의 조건으로 우간다인을 최대한 고용하고 훈련시킬 것과 품질이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전제 하에 우간다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투자하는 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이집트의 경우 2011년 10월말에 부품국산화율이 45%에서 6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국산화율에 대한 심사는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집트 내 설립된 지사에는 외국인 고용 인력을 총 고용원의 10% 이내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총 지급 임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외 이집트 내 영업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순이익의 10% 이상을 종업원에게 배분해야하는 의무도 있다.

인도는 복수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현지 중소기업으로부터 30%이상,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현지 제품을 30%이상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왔으나, 2019년 8월부터 외국인지분이 51% 이상인 회사는 현지조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외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 부품구입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다만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이 진출할 경우 해당기업과 주정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의무비율 등에 대해 규제하기도 한다.

적도기니는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0%까지, 탄화수소, 광업, 농업 분야의 경우 노동고용촉진사회보장부의 사전허가 신청으로 30%까지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10년 6월 국립 국산화 진흥원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국산화비율 상황을 감독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시 상당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분야에 투자할 경우 총 투자액의 1%를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외 「노동쿼터,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상위직(1 및 2 범주) 3:7, 하위직 1:9(3 및 4 범주)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0월 기준 상기 비율은 지속 유지되고 있다. 한편 노동사회보호부는 자국민의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매년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를 정하고 있다. 2021년 대표, 관리자, 전문직 등의 4가지 유형의 쿼터는 총 노동력의 0.31%이며, 노동이민자 쿼터는 총 인력의 2.7%로 설정했다.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승인이 이루어지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및 원자재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기업이 전체 고용의 10%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파나마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 전문직, 기술자의 경우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을 경우 고용한도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승인이 쉽지 않다.

파키스탄의 경우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

별 및 개별 투자건별로 투자 시 투자위원회(BOI)와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차종에 따라 시작년도에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지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 산업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리핀의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CDC, SBMA, BOI 등) 공단소재 외국투자기업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마)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외국인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공간적으로 현지에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면서 부동산 취득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된다. 각국의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제한은 외국인투자의 전반적인 제한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큰 제한이 없다. 다만 노르웨이의 경우 외국인은 레져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때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2018년에 「해외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은 거주용 부동산 구매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따라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자원활용 승인절차개선,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도모,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원관리 개정안이 2020년 6월 통과되었다.

불가리아에서는 부동산(토지) 취득권, 건물 취득권, 건물 건축권이 구분되어

있으며, 비EU 회원국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즉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회사는 농지 구매는 불가하나, 현지 법인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농지를 구매할 수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지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

스위스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Lex Koller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정부(칸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영업용 부동산과 특정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개발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면허를 얻어야 하는데 자격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 완료 후 Temporary Occupation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의 취득 2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2년 안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 금액(토지 구입 금액의 8%~24%)을 납부하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차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산업개발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외국인 회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소유·임차할 권리를 갖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폴란드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폴란드에 진출한 기업에게만 취득허가를 발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내무부는 심사 시 국방에 위협이 되는지의 여부,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 사회 및 보건정책을 위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국방부 및 농업부와 함께 심사한다.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장기임차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

최근 개도국들도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나 법률적 문제의 충돌로 인하여 여전히 동 분야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몇몇 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나는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최대 50년의 임차권(연장가능)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토지 소유권 및 임차권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나이지리아 역시 「토지이용법」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일반적으로 99년까지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주정부마다 외국인 토지점유에 대해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해당 관할 시·현(縣) 정부의 허가와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현지 관련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천 평방피트 이하의 토지, 국내영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라오스의 모든 토지는 국유원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사용권을 매입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에는 토지보호, 이용, 매각,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국가토지관리청에서 지정한 지역 내 국유지에 대해서만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다.

레바논은 외국인이 3천m^2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정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국토의 3% 이상, 베이루트시의 10% 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르완다에서 토지는 국가소유이며, 외국인투자자는 최대 99년 기간으로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몽골의 경우 역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사용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파트 및 건물 소유는 가능하다.

바레인을 포함한 GCC 국민은 바레인 내 모든 지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2006년부터 비GCC 외국인도 바레인 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으나 지역 및 목적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7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 소지자로 제한)도 사전에 허가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소유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소유권 제한 등 중대한 변경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벨라루스의 경우 외국인 및 외국인 회사는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외국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브라질은 「외국인법(1971년 제정)」에 따라 외국인의 농지취득 및 국경지역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 토지취득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브루나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불가능하다. 다만 산업용 목적이나 농업, 임업, 양식 등의 목적으로 장기 임차는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부

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세르비아에서는 「기본소유권법」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의 군사시설, 국립공원 등 인접지역 부동산 소유에는 제약이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는 가능하며, 아파트는 구매가 가능하다.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정부소유로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최대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 임차권은 공공경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장기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파기 및 개발권 환수, 패널티 등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오만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 2000년에는 GCC권 국적보유자들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으며, 2006년부터는 일부 관광특구에 분양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외국인의 소유를 인정하였다. 2021년 3월부터는 관광특구 이외 7개 지정 지역에서 외국인이 다층 상업건물 및 거주 건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건물의 40% 이상을 구매할 수 없으며, 동일 국적의 외국인들이 총 건물의 2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2022년 3월부터는 일부 전략적 지역을 제외한 관광특구 외부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구매 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최대 10년(연장 가능)의 거주 자격을 부여한다.

우간다 투자법은 투자자의 부동산 취득 협상을 소유자와 투자자 간의 문제로 간주하여 개입하지 않으나, 토지법상 외국인은 49년 이하 갱신 가능한 장기임대만이 허용된다.

이라크는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등 「투자법」을 2009년 11월에 개정하였으나 현지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명의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입해야하는 등 외국인의 토지 소유 조건은 여전히 까다롭다.

인도의 경우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대부분 공단지역은 국가소유이며 그 외의 매입 가능한 지역은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부족한 인프라 설치비용은 개별회사 부담으로 되어 있어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집단(근로집단 및 농민집단)만이 갖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토지의 사용권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용도에 따라 사용연한이 다르다(거주용지는 70년(만료 시 기간 자동 연장),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 50년).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출양, 유상이전, 상품주택 구매, 합자·합작 등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일정한 제한 조건 하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외국인 개인이 농업용, 조림용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및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다.

카타르는 외국인투자자, 부동산 펀드 등을 유치하기 위해 2019년 3월 「외국인 부동산 규제법(Law No. 16/2018)」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소유 및 투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면 총 25개 지역은 외국인이 소유(9개 지역) 또는 이용(16개 지역)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 단지, 쇼핑몰 내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20년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 및 투자제도(Law No. 28/2020)」를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나 내국인이 51%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토지소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케냐의 경우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피 및 원예 농업 등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본 농산물 재배용으로 토지가 필요한 농업제품 가공회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농지소유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쿠웨이트는 일반적으로 자국인 또는 GCC 회원국 국민만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특정사업수행과 관련한 경우 제한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비EU 국가의 외국인은 상호호혜주의(양국의 개인이 상대국에서 부동산 구매가능)에 따라 부동산을 구매 또는 소유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해당 지자체 승인 하에 거주용 부동산만 구매 또는 소유할 수 있다.

튀니지에서 농경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튀니지 법인의 지분을 66%까지 소유하고 튀니지 동업자를 갖춘 경우 영업활동에 필요한 공업용 부지 구매는 허용된다.

파나마에서는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다만 2006년 제정된 「Law 2」에 따라 관광개발 목적을 위한 경우 섬, 해변, 및 정부소유지를 40년간 양허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3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지분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바)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제한

과테말라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능력검증, 자본금 납부여부, 재무제표의 제출, 철수 전 의무사항 이행각서, 현지 대표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투자허가가 내국기업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에 따라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입찰이나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 광업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 정책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흑인 지분소유권에 대한 배점은 25점이다. 그리고 2018년 9월 27일 개정된 3차 광업현장에 의하면 광산업 신규 신청기업은 흑인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개정이전 투자기업은 광업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흑인지분을 3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기업설립 시 대표자 및 이사진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이어야 하며, 해외국적 기업은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수익이 5백만 NOK 이상인 기업은 국내 회계 감사원을 고용해야 하며,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장기업은 이사진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센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쿼터 라이선스는 「어업법(Fisheries Act 1996)」 Part 5에 따라 장관이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외국인 쿼터는 전체 상업적 쿼터를 초과할 수 없다.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은 독일기업 인수 시 독과점 방지에 대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차별 없이 동 법에 정해진 조건을 따라야 한다. 즉 50% 이상의 지분인수,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중대한 기업자산 매각 등

의 경우 인수합병에 참여한 기업과 매각대상기업 모두 독일 연방 카르텔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시아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와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이 있다. 이외 총 정규직 노동자의 80%는 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차베스 정부에서 2006년 이후 석유산업 국유화에 이어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가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마두로 정부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석유산업 활성화, 투자유치 확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수출입 확대 등을 위해 2019년 10월 「반봉쇄법」을 마련한 바 있다.

벨기에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려면 영업 성격에 따라 현지 직업 자격증과 학력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와 동종의 직업 자격증이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벨기에 정부로부터 동격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개인사업자로서 벨기에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동격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또는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어 사실상 투자진출이 불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바탕으로 각종 법률행위(비자 취득, 은행거래, 운전면허증, 거주증(이까마) 취득 등) 및 영업행위 등 현지활동이 가능해 진출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2021년 8월 발표한 은폐방지법(Anti-Concealment Law)에 따라 스폰서 제도를 활용한 외국인의 현지 영업활동을 위반행위로 명명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토록 행정명령을 공표하며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 활동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스위스는 현지진출 기업의 이사진 중 과반수를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의무를 2008년 1월부터 '1명 이상이 국적과 관계없이 스위스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으로 변경한 바 있다.

알제리에서 정부발주 공공사업 영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의무적

으로 알제리 기업의 지분이 과반이상인 합작투자를 해야 한다. 2021년 「수정재정법」에 따라 ①광물 등 지하자원 개발 ②에너지 등 「석유가스사업법」에 포함된 모든 분야 ③군사 ④철도, 항만, 공항 ⑤제약산업 등 주요 전략분야는 합작투자 의무화가 적용된다. 다만 2022년에 ①광물 수출 활동 ②에너지 생산이전 단계 ③석유가스사업법상 명시된 기타 활동 등은 전략분야에서 제외되었다. 이외 국책 프로젝트를 수주한 외국기업은 전체 투입 근로자의 약 80% 수준을 알제리인으로 고용해야한다.

에티오피아는 2020년 4월 「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규정을 개선하였으나 최고경영진을 제외한 감독, 훈련, 기타 기술관련 분야는 유사한 자격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고용요건을 강화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부가 경제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에너지, 통신, 항공, 광산업 등 핵심 산업에 정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에 차별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적도기니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인 지분을 최소 35% 이상 보장해야 하며, 이사회가 3명 이상인 경우 1/3 이상을 내국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비석유분야 투자 시 상기 의무를 철회한 새로운 투자관련 법률이 201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재정수입의 90%를 의존하는 석유분야에서는 여전히 상기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중국은 외자기업의 총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2020년부터 실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2020년 이후 투자총액 대비 자본금 비율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지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나 사전심사 시 고용, 자원가공, 현지부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 등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40% 이하인 국내법인은 필리핀 국내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정분야 기술인력, 이사회 이사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임원 및 관리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가) 과세 문제

설립 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현지에서의 세금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과세문제는 양자간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간 가능한 경제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의 관할권 문제, 이중과세문제 및 부당한 과세에 대한 상호합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 경제교류관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한 국가들이 가장 먼저 체결하는 협정이 조세조약이다. 특히 투자국이 투자유치국에 대해서 조세조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BIT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조약 역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조세조약이 많아지면서 국제과세체계의 복잡화 및 조세조약 쇼핑(treaty shopping) 등 조세조약의 남용문제 등이 논의됨에 따라 다자간조세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이 저세율국으로 소득이전을 통하여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양국간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투자유치국의 국내 세법만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이해가 현지에서의 과세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차별조항은 현지기업과 동일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 상황이 다른 경우 과세는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정사업장 인정문제, 모기업과의 상품 및 자본거래(이전가격설정) 문제 등은 외국인투자가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국제조세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투자자는 현지국의 과세조치에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

특히 과세제도는 각 국가의 고유한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조세조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국 규정이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현지국이 외국인투자가의 부당한 소득이전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취하는 과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제도상의 문제이외에도 과세행정에서 받는 장애요인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투자장벽과 달리 과세문제는 개도국보다 선진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게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 방대한 과세자료의 집적 및 정교한 과세방안의 개발 등으로 조금만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세율이 상당히 높다. 브라질 정부가 거둬들이는 직·간접세가 전체 GDP의 33.9%(2021년)에 달한다. 아울러, 과세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탈세를 하게 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무관리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차별적인 조세부과는 개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가나 국세청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국가별로 개인소득 추정액을 정해놓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를 추정매출액에 기반하여 사전 징수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과다 징수된 법인세에 대한 정산을 미루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과 사례는 없으나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유예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상 문제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보유주체(법인, 개인, 외국인)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비시민권자 및 비거주자)이 5년 이하로 보유한 경우 양도차액의 3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6년차 이후에는 10%가 부과된다. 다만 2022년 1월부터 양도되는 6년차 이후 부동산에 대해서는 0%가 적용된다.

UAE는 그간 석유·가스 관련 회사(두바이 50%, 아부다비 55%) 및 외국은행 지점(20%)에 한해 에미리트 차원에서 부과해왔으나 2023년 6월 1일부로 연방법인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법인세 과세 대상이던 석유·가스 분야는 신규 연방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은행 지점도 과세대상이나 상세한 지침은 발표된 바가 없다.

에콰도르에는 과세문제는 아니나 순이익의 15%를 근로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

인도는 인도기업에 15~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나 지사, 프로젝트사무소 등을 포함한 외국기업에게는 4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국인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반면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카타르는 「Law No. 9/1898」에 의거 내국기업과 GCC 국민 소유 외국기업에게는 소득세가 부과하지 않고 외국인 소유 기업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자국기업,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중과세방지 협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5%가 원칙이나 내국법인은 대부분 간이과세 특례를 적용 받아 2%만 납부한다. 법인소득세 역시 내국기업은 8%, 외국기업은 20%로 차이가 난다.

나) 금융 및 자본조달상 제약

투자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의 이전 및 운영자본의 조달 등에 대한 제약이다. 모든 양자간투자협정에서는 투자보호와 관련해서 투자관련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자의 송금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송금제한 규정은 투자유치국의 국제수지위기에 따른 예외규정이다. 이외 과세 목적 등으로 송금 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적법한 과세절차를 거친 과실 및 양도차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세 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관리차원에서 송금을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가 많다. 한편 개도국에서는 외환관리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차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가나의 경우 외국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의 송금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모든 해외송금에 대해 거래은행이 가나중앙은행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서류의 사전 제출 없이 최고 2.5만 달러까지 직접 송금할 수 있다. 더불어 송금액의 10%를 지점이윤세 명목으로 별도 납부해야 한다.

가봉은 외환송금이 1억 세파프랑을 초과할 경우 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제부 신고 후 30일이 소요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송금액, 송금세, 재투자 등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외환부족 시 중앙은행이 해외송금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이 75% 이상인 합작투자 기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제한을 받으며 외국계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투자할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 청산이나 폐업 등에 따른 배당금 지불은 사실 입증 후 송금이 가능하며 2022년 11월 현재 천만 란드를 초과하여 공동통화지역 이외로 반출할 경우 중앙은행 재정감독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외 지불능력 및 유동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는 등 영업이익이나 자산매각 차익의 해외송금에 일부 제약이 있다.

대만에서는 개인 및 회사 명의에 따라 해외송금액이 제한되며, 송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송금 관련 거래 계약서 또는 투자허가서 등 송금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 1년 이상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기대 가능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제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천만 링깃 이상을 대출하려면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내대출액에 상관없이 무역관련 대출분을 포함하여 당해 기업이 받은 총 대출액 중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베네수엘라에는 2014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외환송금에 정부규제가 존재한다. 즉 외국인투자법인은 설립 후 5년 동안 자본금의 송금이 제한되고, 이익의 80%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다. 청산의 경우 투자자산과 기술을 잔존시키는 조건으로 청산잔액의 85%까지 송금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법령에 따라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한 경우에만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②베트남 내의 투자활동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이 허용되고, 기존 반기별 임시 해외송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기업의 재정보고서에 누적손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에 따라 분배 받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은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 이

외 규정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입 시 신고해야 하며, 규정된 금액 또는 가장 최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외화를 재반출하기 위해서는 인가된 금융기관의 외화반출 확인서와 중앙은행의 승인서가 필요하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직접투자자본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2천 달러 이상의 금액을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금금액의 0.3%를 은행 송금세(ITF: Impuesto a las Transacciones Financieras)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 1만 달러 이상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5~50만 달러 이하는 중앙은행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50만 달러 이상은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소신고의 경우 차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브라질의 경우 투자원금,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의 대외송금에는 제한이 없고 15%의 원천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통화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외 외국자본의 과실송금 시 최근 3년간 과실송금액이 투자금액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이익금에 대해 기지급한 법인세 이외 추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외환시장은 자유화되어 있으나 2020년 10월 기준 △달러화 신용카드 구매금액을 포함한 개인의 달러 구매는 월 200달러로 제한, △수출 외화대금의 경우 수령 후 5일 이내 또는 선적 허가 후 180일 이내(1차 상품의 경우 15일 이내) 청산 의무 부과, △수입대금 송부 시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외환통제 조치가 시행중이다.

알제리는 자본유입을 통해서 투자가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투자된 자본과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과실송금을 위해서는 생산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자산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가치를 구분해야 하며, 투자를 위해 알제리로 유입된 자본만이 송금 가능한 자본과 수익산출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과실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알제리 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 보고서, 이사회의 이윤배분 결의서, 납세증명서 등의 서

류를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송금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나, 소득의 일정 부분(평상시 60%)만 허용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앙골라에서는 외환사정에 따라 송금규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송금 거래에 앞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대상인지를 현지거래 은행에 확인을 받아야 송금제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해외 환급은 법인 등록 후 3년 후부터 가능하며, 수익 및 배당금의 해외 송금 규모가 투자자의 기여도를 초과할 경우 15~50%의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온두라스는 배당금이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 및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란의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법률(FIPPA)」에 의해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으나, 행정규제(대차대조표 검사, 외국인 투자위원회 통지 및 재정경제부장관 승인 등)가 일부 존재한다. 현지금융은 외국은행과 이란은행의 상호보증협약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란 통화의 환전성 결여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외환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다만 해외자금차입 시 금액, 목적, 금리 등에 따라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동 승인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과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배당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인도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회계사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납세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비 시 외환관리국 허가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기업의 외화 예금구좌를 통해 송금이 가능하며,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내 법인은 역외금융 리스크 한도 내에서 1년 이내의 단기 외화자금을 역외에서 차입할 수 있으며, 1년 초과 장기차입금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장기외채 한도 내에서 차입할 수 있다. 한도는 직전년도 차입규모와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산정하여 부여한다.

카메룬의 경우 배당금, 투자이익, 이자, 외채 원금, 임대료, 로열티, 관리수익, 청산수익 등은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청산은 30일 이전에 재무부와 BEAC에 신고해야 하며, 1억 세파프랑 이상의 사업거래를 위한 상업적 송금은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타르는 외환규제가 없어 송금에 제한이 없으나,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는 매년 발생한 이익금의 10%를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국영 대외경제은행을 통해 송금은 가능하나, 송금금액 및 횟수에 많은 제약이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각종 이익에 대한 본국 송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테러자금 및 돈세탁 여부확인, 외환부족 등의 이유로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필리핀으로 유입된 모든 투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 무역규제 및 소비자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 등록필증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등록필증이 영업 철수, 투자회수, 현금배당금, 이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 인력의 현지 파견 시 문제점

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핵심적인 사항중 하나가 경영인력 혹은 핵심인력을

본국에서 파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양자간투자협정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핵심인력의 일시적 입국 및 체류, 그리고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BIT 모델의 경우 "일방체약국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자국의 법규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운영에 관한 조언 등을 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독일의 BIT 모델에서도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규의 틀 안에서 타방체약국 국민의 투자와 관련된 입국 및 체류요청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BIT에서 입국 및 체류의 문제는 해당국의 주권사항임을 전제하고 있다.

인력파견과 관련된 거주 및 노동허가 등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공통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 선진국에서 거주 및 노동허가와 관련된 제한은 주로 복잡한 신청절차와 단기간의 허가기간에 따른 잦은 갱신의 필요성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개도국의 경우 아예 노동 및 거주허가 대상인원을 일정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비자발급과 관련해서 복잡한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허가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실제 네덜란드에서는 비EU지역의 외국인이 노동허가(work permit) 없이 취업할 경우 Inspectie SZW[170]에 적발되어 높은 벌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채용 또는 본국에서 한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노동허가를 발급받은 후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가나의 경우 투자금액별로 이민쿼터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민쿼터 부과기준 금액이 상향되어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다만 자유무역지대 투자 및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허가 및 체류증 발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과테말라의 노동허가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나 발급에 3~4개월이 소요되고 건당 4천 케찰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70) Inspectie SZW(www.inspeciteszw.nl)는 네덜란드 사회고용부(Minist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 산하 기관으로 고용주의 노동착취, 최저임금 미지급, 인신매매, 보험사기 등을 적발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나이지리아에는 외국인 채용을 위한 외국인 쿼터(EQ: expatriate quota)가 있다. EQ는 업종마다 특별한 기준이 없어 외국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STR(Subject to Regularization) 비자는 나이지리아에 등록된 회사의 EQ를 토대로 발급되는데 갱신 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민법은 개정을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어 노동비자 또는 사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비자는 사업의 타당성 및 남아공 경제기여 등을 포함하여 통상산업부의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베트남의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시행령(「Decree 152/2020/ND-CP」, 2021년 2월 15일 발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즉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최소 학사학위 이상 소유 ②해외에서 전공분야 3년 이상의 경력 ③해외에서 관련분야 현장실무 5년 이상의 경력 및 관련 경력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 내 외국기업들은 전공분야 3년 이상의 경력과 해외근무 경력 조항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기존의 전공분야 3년 이상 및 현장실무 5년 이상이라는 조항을 베트남 내에서 동일직군 3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전문가 및 기술근로자를 증명하는 서류로 다른 국가의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행한 졸업장, 학위, 인증서, 추천서, 경력증명서 및 이미 받았던 노동허가서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다.

브라질에 장기체류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상사주재원은 우선 임시체류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하여 노동부에 체류허가를 받은 다음 본국으로 돌아가 동 허가서를 첨부하여 주한브라질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등 비자 발급절차가 복잡하다.

이란은 외국 상사주재원들에 대해 보통 1년간 유효한 노동허가를 발급하였으나 2022년 현재 단기(3~6개월) 노동허가가 발급되기도 한다. 갱신 시점에

개인소득세의 완납, 현지직원 추가 채용, 일정 비율이상의 수입 등을 점검하며 제3국 출입국 시에는 세금 미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국허가를 발급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대표기관 외교관, 주주인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긴급 상황에서 생산장비 유지 및 보수, 교육, 스타트업, 비즈니스 방문, 일정 기간 연구활동 등 특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 고용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위스는 체류허가 비자 발급 시 EU 및 EFTA 국가와 비교하여 이들 이외의 국민에 대해서는 연간 할당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는 「스위스연방외국인국민통합법」에 따라 비스위스 국적자는 공용어 구사가능 증빙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적도기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노동 및 거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현재 노동비자나 장기체류비자는 일반적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이에 외국인은 현지에서 체류비자 혹은 거주증을 국가안보부에 신청해야 하며,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때 거주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외국인 노동허가를 취득한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허가기간이 종료되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나 노동허가 신청과 이후 비자 갱신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학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60세 이상 국외 거주자의 비자는 갱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튀르키예에서는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튀르키예인을 고용해야 하는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이 있다. 일부 예외 조항이 있으나 평가 기준이 투명하지 않아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원(주로 폴란드인) 2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외국인 노동허가 신규발급 및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인력의 현지파견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파견인력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인력들은 현지국에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국 정부에서 현지 파견인에게도 자국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러시아의 「사회보장법」이 2012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아르헨티나의 우리 근로자 역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편 투자유치국이 한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에 사회보장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투자유치국에 5년간 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환 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환경과 관련된 통상장벽은 크게 환경관련 무역조치(ERTMs: Environment Related Trade Measures)와 무역관련 환경조치(TREMs: Trade 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환경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제 혹은 제한하는 조치이다. 자국이 추구하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시행하며 동 환경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조치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자간환경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환경목적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우발적인 무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환경정책 조치를 말한다. 의도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취한 각종 조치가 결과적으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영향을 주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역효과를 갖는 선진국의 환경마크제, 폐기물의 재활용요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는 오용 또는 남용되어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각종 환경조치 또한 교역을 불필요하게 또는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보전과 동시에 자국의 산업이익을 보호하고자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높은 환경기준을 제정하거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환경조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관련 통상장벽을 형성하며 나아가 환경보전과 무역촉진 간의 마찰을 유발한다. 또한 개도국들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며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추가적 조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대개도국 수출 전략 수립시 환경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

가) 특정제품 및 성분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환경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수출입의 규제, 제한, 금지로 환경유해제품과 물질의 사용 및 판매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사용 혹은 판매의 제한과 금지,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교역의 제한과 금지,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조치 등이 포함된다.

나) 특정 제조공정의 사용제한 및 금지

환경피해가 제품 자체가 아닌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방법 및 공정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이 같은 제조공정·생산방식(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의 사용규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여 환경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육 시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 오존층파괴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입 규제가 그 예에 해당한다.

다) 환경기준(Compulsory Norm)

환경기준은 제품기준, 제조공정기준, 배출기준, 대기·수질·소음기준 등으로 분류되며 그밖에 제품의 테스트 또는 제품 및 제조과정에 적용되는 규격의 준수감시에 관련된 절차기준, 생산 및 유통업체에 부과되는 폐기물 관리기준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표준, 제품 테스트, 라벨링, 인증·승인 등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의 환경기준 관련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자국의 동 내용과 상이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동 규정이나 기준 등은 국내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품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제품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무역제한 효과를 갖게 된다.

라)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 Program)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체 주기에 걸쳐 환경친화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는 자발적 제도로, 특히 수입국이 선진국인 경우 마크 부여기준이 높고 소비자의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구매유도 효과가 크므로 간접적 무역효과를 초래한다.

마) 제품부과금

오염물질 함유 또는 오염유발 제품의 생산, 소비 및 처리단계에서 각종 부과금을 징수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제품 사용억제, 오염방지 및 재활용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세 및 탄소세, 수입 석유제품 및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미국의 수퍼펀드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바) 다자간환경협약에 의한 조치

다자간환경협약은 국제환경협약의 의무사항으로 당사국간 합의된 무역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로 협약 당사국간 혹은 비당사국에 대해 적용된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20여 개 협약이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다자간환경협약 동향

2015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회의(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교토의정서를 승계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제19차 회의 당시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최종안 마련을 2015년으로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파리 협정 체결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선진국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자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체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171] 합의문에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공약한 감축 목표를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이행상황을 5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3년부터 5년 주기로 협정의 이행과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global stocktaking) 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협정은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현재 197 협약 당사국 중 187개 당사국이 참가하였다.[172] 나아가 2018년에 파리협정의 이행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었으며 17개 세부지침 중 16개 지침이 채택되었다. 2019년 12월 제25차 당사국회의에서 탄소시장에 관한 이행 지침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지원에 대한 계획 이행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으로 2020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음 당사국총회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어 10월31일부터 11월12일까지 개최되었다.[173]

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 발효된 대표적인 환경협약의 하나로 생물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한 이익 공유를 협약의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10월 3일 동 협정에 가입한 이후 2014년 10월 평창에서 제12회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9월에 출범한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Agenda 2030, P4G)는 녹색경제 분야[174]에서 민관[175] 간의 협력을 확대하여 파리협정의 이행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가속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8년 10월 코펜하겐에서 1차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서울에서 2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71) UNFCCC, The Paris Agreement, https://unfccc.int/resource/bigpicture/index.html#content-the-paris-agreemen(검색일: 2019.12.06.)

172) UNFCCC, Paris Agreement – Status of Ratification,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status-of-ratification(검색일: 2019.12.06.)

173) https://www.ukcop26.org/

174) 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식량 및 농업을 5대 중점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175) 남아공, 네덜란드, 덴마크, 멕시코, 방글라데시, 베트남,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칠레, 케냐, 콜롬비아, 한국 등 12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협력사 및 민간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환경 관련 논의 동향

2012년 APEC 회원국들은 54개 품목의 환경상품리스트를 개발하여 2015년까지 회원국의 WTO 지위와 상관없이 각 회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5%이하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176] 2013년 APEC 정상들은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환경상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177]은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성명의 요지는 ①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시킬 환경상품 협정 추진, ②모든 주요 교역국을 포함, 최혜국대우 및 교역액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국 참여시 발효(critical mass) 등의 방식을 적용, ③APEC에서 합의된 54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약속(2015년까지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을 기반으로 폭넓은 범위의 추가적인 자유화 모색, ④환경 분야의 여타 이슈(비관세장벽 문제도 협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EU측 희망을 우회적으로 반영)를 다루고 앞으로의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협정 추진 등이다. 2014년 7월 WTO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이 공식 출범되었고 1차 협상이 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협상 전 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 12월부터 WTO EGA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2016년 12월 제네바에서 2차 협상을 가졌지만 참가국간의 이견으로 품목 목록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한편, 2017년 12월 제11차 WTO각료회의에서 몇몇 국가들이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초로 400ppm을 넘어서는 등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2013년 2월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2014년에 10년 마

176) APEC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WTO와 달리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177)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9개국(환경프렌즈그룹)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가 포함된다.

스터플랜[178]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2015년 1월 1일부터 한국은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를 실시하였고, 2016년 6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이 개장되어 일부 대상 업체들은 동 시장을 통하여 배출권의 3%를 충당하게 되었다. 동 수치가 2021년부터는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179] 한편, 유럽연합은 탄소 저감 노력이 미흡한 국가나 기업에 국경탄소세 부과를 검토 중이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이 되기 위한 청사진(유럽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다.

현황분석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도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의 환경규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202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별 기여 공약(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철회하고 및 녹색기후기금(GCF)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2019년 11월 4일 파리협정 탈퇴 의사를 UN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하였으며 2020년 11월 4일부로 동 협정에서 공식 탈퇴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국가안보'사안으로 규정하고, 그 대응을 경제회복, 코로나 대응, 인종평등 도모와 더불어 4대

178) 동 마스터플랜은 총 3단계로 구분 된다: 2015-2017년(1단계), 2018-2020년(2단계), 2021-2026년(3단계).

179) ICAP. (2019). Emissions Trading Worldwide: Status Report 2019. Berlin: ICAP.; 2019년 초 기준으로 도시, 주, 국가 등 27개의 관할권에서 20개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2021년 1월 20일) 파리협정 복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협정 규정에 의거하여 미국은 2021년 2월 19일부로 공식적으로 당사국으로 복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2021.1.20), 대통령 메모랜덤(2021.1.27)을 통해 규제,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천명하였다. 예로 2021년 1월 20일 행정명령 13990을 통해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국가부지 내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중단하는 한편 차량의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된 기준(SAFE)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지시하였다. 2021년 1월 27일 행정명령 14008을 통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각 부처·청의 기후대응 측면에서의 정책 전면 검토를 요청하였다.

미국이 주최한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은 2005년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50~52% 감축한다는 미국의 신규 강화된 감축공약(NDC)를 발표하였으며,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

미 환경청(EPA)은 2017년 10월 10일 오바마 행정부의 "Clean Power Plan(청정전력계획)"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미국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의 30%에서 32%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의 22%에서 28%로 상향 설정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는 오바마 前 행정부의 계획으로, 전체 전력생산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기존의 1/3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8년 8월 21일 환경청(EPA)은 CPP(청정전력계획)을 대체하여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정인 '적정청정에너지(ACE, Affordable Clean Energy) 규칙(Rule)'을 발표하였다. EPA는 기

존 CPP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부과하고 단일한 연방 기준을 각 주가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었던 반면, ACE는 연방정부의 지침 하에서 각 주가 각자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ACE 규칙은 ①석탄화력전소의 CO2 감축을 위한 최선의 시스템(BSER)을 정의함으로써, 각 주가 이를 토대로 발전소의 운영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 ②각 주가 발전소 운영 기준 수립 및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 기술(candidate technologies) 목록을 제시, ③기존 발전소 효율을 개선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EPA의 검토프로그램(NSR, New Source Review)을 개선, ④ 각 주의 배출량 관련 지침 및 계획 발표를 규율하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제111(d)조를 보다 유연하게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배출 제로화 목표를 천명하였으며, 청정전원 공급능력 확대 및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청정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 예로 2021년 3월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2030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통과된 인프라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건물·제조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여 프로그램, 태양광·지열·에너지 저장 등 관련 실증(demonstration) 프로젝트 등을 담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연장 여부 등 관련 내용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조정 법안(「Build Back Better bill」)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의 기업평균연비(CAFE: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및 온실가스 규제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8월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가스 163g/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7~20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 발표했던 바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2017년 3월, 환경청(EPA)과 교통부를 통해 2012년 8월 확정 발표된 2017~2025년까지의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대한 중간 평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완화된 기준(SAFE(Safer Affordable Fuel Efficient))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모델의 연비를 32.2mpg 수준으로 낮추고, 매년 연비 상향 비율도 1.5%로 하향 조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오바마 행정부의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보다도 강화된 수준의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8월 5일 행정명령을 통해 환경청(EPA)은 「청정에너지법(Clean Energy Act)」에 의거하여 소형·중형 차량에 대해 2027-2030년 온실가스를 포함한 오염원(multi-pollutant) 배출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다. 동 행정명령에 따라 교통부는 「에너지독립및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에 의거하여 승용차 및 소형트럭에 대해 2027-2030년 새로운 연비기준 개정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교통부는 대형 픽업트럭에 대해 2028-2030년 연비기준 신설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환경청(EPA)은 2021년 8월 2023-2026년 제조되는 승용차와 소형트럭에 적용되는 연비·배기가스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조 모델은 2022년 모델에 비해 연비 기준이 10% 상향되어 38.2mpg가 상향되고, 이후 2024-2026년 모델은 5%씩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 기준(2023년 모델 36.8mpg)보다도 강화된 수준이다. 경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규 기준이 적용될 경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0억톤 가량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상기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경트럭 신규 판매의 50%를 BEV(배터리 전기차),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FCEV(수소전기차)를 포함한 무배출차량(ZEV)이 차지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대기정화법

대기정화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0년, 1977년, 1990년에 개정되었다. 특히 1990년 개정법은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탄화수소(HC) 배출량을 종전의 1마일 당 0.41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도 1.0g에서 0.4g으로 감축하여 이 기준을 1994년형부터 신차의 40%에 적용개시하고 1996년형부터는 신차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 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미 FTA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7년 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하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협약 (①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유지 및 집행을 약속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수준을 약화·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총 30개국(27개 EU 회원국 및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EU의 ETS는 3개 온실가스, 즉 CO2, N2O, PFCs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180] 유상할당 비중은 발전의 경우 100%, 산업의 경우 70%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탄소 다배출 산업의 경우 무상할당 비중이 원칙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9년 12월 EU집행위가 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면서,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1990년 대비 40% 감축→55% 감축)하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을 제정 발효시킴에 따라 EU의 ETS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집행위는 「유럽기후법」의 후속조치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 · 개정안 'Fit for 55 Package'를 2021년 7월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해양부문을 ETS에 포함시키고 수송, 건물 등의 분야에 별도의 ETS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2년 12월 EU이사회,

180) 우리나라의 ETS는 CO2, CH4, PFCs, HFCs, SF6 등 6대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함.

유럽의회, EU집행위 3개 입법기관이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개정에 합의하면서, 도로수송과 건물에 대한 별도의 배출권거래제도(ETSⅡ)를 2027년까지 도입(집행위 제안은 2026년 도입)할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2028년까지 ETSⅡ 도입을 1년 늦출 수 있으며, ETSⅡ의 배출권 최고가격을 사실상 €45로 제한한 것도 특징이다. (€45를 넘어가는 경우 2,000만톤의 추가 배출권을 시장에 공급 가능)

또한, 기존 ETS 대상 분야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62% 감축(2021년 7월 집행위 제안은 61% 감축)하고, 연평균 배출권 감축율은 2024-27년 간 4.3%, 2080-2030년 간 4.4%으로 상향하였다.[181] 무상할당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감축하기 시작해서 2034년 완전 폐지하며, 감축 부담을 매년 증가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182]

탄소국경조정제도

최근 EU집행위는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탄소누출[183] 방지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EU의 CBAM 제도는 적용 대상품목에 대하여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EU ETS에 상응하는 가격을 부과(CBAM 인증서(배출권) 구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역시 2021년 7월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Fit for 55 Package' 중 하나로서 2022년 12월 ETS와 함께 EU 입법기관들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당초 집행위가 제안한 5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외에 수소, 간접배출 및 전구물질(precursors)과 나사 · 너트 등 철을 재료로 한 소비재(downstream) 등이 CBAM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아울러, 유기화학물질, 고분자물질(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추가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CBAM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81) 현 제도 기준으로는 2030년 감축 목표는 43%이며, 연평균 감축 목표는 2.2%/년

182) (2026) 2.5% → (2027) 5% → (2028) 10% → (2029) 22.5% → (2030) 48.5% → (2031) 61% → (2032) 73.5% → (2033) 86% → (2034) 100%

183) EU보다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 생산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함.

해당 제품을 EU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수입품의 탄소함유량과 관련된 정보를 EU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햐 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수입품의 탄소함유량, EU 및 수출국의 탄소가격 정보 등에 기반하여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도 ETS 무상할당 폐지와 같은 일정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CBAM에 품목에 대한 비용 부과는 2026년 시작해서 2034년 전액 부담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WTO 규정에의 부합성, 탄소함량의 측정 방법 등 고려사항이 많은데, EU집행위는 역내외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결과는 우리나라의 시행령과 유사한 위임법령(delgated act) 또는 이행법령(implementing act)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다. CBAM이 도입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EU측의 도입 준비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EU 친환경 분류체계

유럽은 2020년 6월 22일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7월 동 규정을 발효함으로써 친환경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였다. 이로써 그린본드 기준이 마련되어 유럽은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그린딜 이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184]

현재까지 공통의 분류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데이터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유럽 소비자와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EU의 분류체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2022년 7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일정 요건하에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에

184) European Commission,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eu-taxonomy-sustainable-activities_en (검색일: 2022. 1. 20)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었다.

순환경제패키지 채택, 이행

EU집행위는 2015년 12월에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하고,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존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집행위는 순환경제패키지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따른 제품규제 강화 및 변화 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 EU 차원에서 에코라벨(Eco-Label)을 부여하는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Regulation (EC) No 66/2010」이다. 2015년 3월 기준 2,010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고 있으며, 세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윤활제, 종이류, 숙박업소 및 캠핑장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등 26개 제품 및 서비스군에서 44,051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고 있다. EU는 부여대상 품목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도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에코라벨 획득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에코라벨이 유럽 소비자들의 제품·서비스선택에 주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므로, EU 에코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U집행위는 2022년 3월 그린딜 및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의 표준화 전략과 함께, 섬유 및 건축관련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 제품의 표준화 전략 (making sustainable products the norm)은 EU 시장의 물리적 상품에 대하여 수명주기[185](life cycle) 전체에 걸쳐 환경, 순환 및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규칙을 개정하고, 일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디자인 측면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신뢰성, 재사용 · 활용성, 수리 및 유지보수 용이성,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존 에코디자인 기준보다 △보다 광범위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제품별로도 준수해야 할 기준의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EU집행위는 섬유, 가구, 매트리스, 타이어, 세제, 페인트와 철 ·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제품들이 1차 작업계획의 대상으로 잠정 분류해 두었다.

또한, 규제 대상 제품에 디지털 패스포트를 부착하여 제품의 수리나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supply-chain)을 따라서 문제가 되는 물질을 용이하게 추적할 계획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수량, 재사용 · 재제조 · 재활용 계획을 관리 ·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폐기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승용차와 경상용(Van)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EU 집행위는 자동차업계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획기적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7년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EU는 2009년과 2011년 관련 규정들(Regulation EC 443/2009, Regulation EU 510/2011))을 제정하여 승용차 및 경상용차(밴, 적재중량 3.5톤 미만, 공차 중량 2610㎏ 미만)에 대해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였다.

185) 설계 단계부터 일상적인 사용, 용도 변경 및 수명 종료 시까지를 포함

승용차와 경상용차(밴)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 목표

목표 연도	승용차	경상용차
2015년-	130 g·CO2/㎞	
2017년-		175 g·CO2/㎞
2020년-	95 g·CO2/㎞	147 g·CO2/㎞

EU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7년 11월 수송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려는 정책패키지(Delivering on Clean Mobility)를 제안하였고, 그 후 유럽의회 심의, 각료이사회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12월 ①신규 등록되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을 2025년까지 15% 감축(2021년 대비)해야 하고, 2030년까지 37.5% 감축(2021년 대비)해야하고, ②신규 등록되는 경상용차(밴)의 이산화탄소평균배출량을 2025년까지는 15% 감축(2021년 대비)해야 하고, 2030년까지는 31% 감축(2021년 대비)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정[186]이 2019년 4월 발효되었다.

한편, EU집행위는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5%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2021년 7월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발표하였고, 2022년 11월 EU이사회, 유럽의회, EU집행위 3개 입법기관이 개정안 수정에 합의하였고, 2023년 중 발효될 전망이다.

강화된 법안의 핵심은 2035년부터 등록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야 하며(2021년 대비 100% 감축), 2030년에는 승용차의 경우 20211년 대비 55% 감축하고, 경상용차의 경우 50%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2035년부터는 전기차, 수소차 등만 등록 가능하다.

아울러,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7)(안)을 발표했는데,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차 등록이 금지되

186) Regulation (EU 2019/631) : Regulation on setting CO2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nd for new light commercial vehicles

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2035년 이후에는 신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따라서 이번 Euro7이 마지막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및 경상용차(최대중량 3.5톤 이하 차량)의 경우 2025년부터, 트럭과 버스는 2027년부터 기존 Euro6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휘발유·디젤 등 기존 Euro6의 연료별 분리 배출규칙을 단순화하여 승용차와 경상용차에 연료 구분 없이 단일 배출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휘발유 승용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Euro6와 같은 60mg/km으로 유지되며, 디젤 승용차의 경우 기존 80mg/km에서 휘발유와 같은 60mg/km으로 강화된다.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시내주행 등을 고려하여 10km 이하 주행에 대한 별도의 완화된 기준(질소산화물의 경우 600mg/km)을 함께 마련한 점도 돋보인다.

신규 승용차와 경상용차(Van)에 대해서 Euro7의 배출기준을 사용 10년 및 주행거리 20만km까지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기존 Euro6보다 내구성 요건 2배 강화했으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환경영향까지 고려하여 신규 승용차 및 Van의 타이어 및 브레이크에서 배출되는 미세입자(PM 10)와 배터리 성능도 규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연소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은 없지만, 타이어 및 브레이크 관련 배출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형차량(HDVs)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또한 EU집행위는 2014년 5월에 대형차량의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관한 대화문을 채택하였으며, 2018년 5월에 대형 트럭 등 중량자동차(heavy-duty vehicle)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 규정안(Regulation setting CO2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heavy-duty vehicles)을 제안하였다[187]. 동 규정안은 대형트럭(소형 트럭, 버스, 트레일

187) EU 집행위 보도자료 (2018년 5월 17일): Europe on the Move: Commission completes its agenda for safe, clean and connected mobility

러 등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데, EU 전체적으로 신규 등록 대형 트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19년 배출수준 대비 15%를 감축해야 하고(의무목표), 2030년까지 최소 30%를 감축하여야 한다(잠정 목표). 동 규정에 대한 중간 평가를 2022년에 실시하여,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확정하고, 소형 트럭, 버스, 트레일러 등 다른 중량 자동차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를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차량제조사들에게 업체별 차량 구성, 특징 등을 감안하여 목표량을 gC02/km로 환산하여 할당하고, 제조사들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EU 시장에 출시하는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연료 소비량을 EU 집행위가 개발한 툴(VECTO)을 이용하게 측정하게 된다.

동 사안에 대해 2019년 2월 유럽의회와 EU각료이사회는 신규등록 중량자동차(대형트럭)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을 2025년까지 15% 감축(2019년 배출수준 대비)하고, 2030년까지는 30% 감축(2019년 배출수준 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항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온실가스 규제

EU는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ETS) 지침을 개정하여 항공부문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EU회원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적용하며, ETS 제3기의 항공부문 배출총량(Cap)은 역사적 배출량(2004~06년간 평균)의 95%인 2.1억톤(2014년에 크로아티아의 가입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이다. 항공사별로는 무상할당 82%, 경매(유상할당) 15%, 신규 진입자 등에 대한 특별유보(special reserve) 3%로 배분되며, 배출량 초과시에는 여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충당하여야 한다. 제도시행을 위해 유럽경제권(EEA) 30개국과 역외 62개국 900여개 이상 항공사가 무상할당을 신청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도 무상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EU는 2014년 4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까지는 유럽 역내 간 운항편(intra-EU flight)에 대해서만

ETS를 적용하고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해외 항공사의 EU 역내 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도의 도입은 2016년 말까지 유보(stop-the-clock) 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EU 의회와 EU 이사회는 EU 역내와 EU 역외 지역간의 항공운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차 유보하는 내용으로 EU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을 채택하였다[188]. 이에 따라 항공부문 배출권거래제는 2023년까지 EU 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2019년 12월 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면서,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1990년 대비 40% 감축→55% 감축)하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을 제정 발효시켰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기후법의 후속조치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 'Fit for 55 Package'를 2021년 7월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해양 부문을 ETS에 포함시키고 수송, 건물 등의 분야에 별도의 ETS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역외 항공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항공 부문 무상할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해양·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ReFuelEU Aviation Initiative 및 FuelEU Maritime Intiative 제안하였다. 우선, 항공사들은 EU 공항에서 출발할 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를 섞은 항공연료(SAF-blended aviation fuel)의 사용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연료 공급자들은 연료 공급자들은 2050년까지 항공연료에 지속가능연료(SAF)를 혼합하는 비율을 늘리는 방안[189]이다. 해양 부문에서는 EU항구 선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집약도를 제한[190]하는 규정을 제안하였다.

188) EU 의회는 2017년 12월 12일 동 지침개정안을 표결로 채택하였고, EU 이사회는 2017년 12월 13일 동 지침개정안에 서명하였음.

189) 2%(2025년) ⇒ 5%(2030년) ⇒ 20%(2035년) ⇒ 32%(2040년) ⇒ 38%(2045년) ⇒ 63%(2050년)

190) - 2%(2025년) ⇒ - 6%(2030년) ⇒ - 13%(2035년) ⇒ - 26%(2040년) ⇒ - 59%(2045년) ⇒ - 75% (2050년)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Directive 70/220/EEC」이다.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을 기존 180mg/km에서 80mg/kg으로 강화한 Euro VI에 의해 신규 차종의 승인은 2014년 9월부터, 신규차종의 등록은 2015년 9월부터 적용되었다. 한편, 버스와 트럭 등 중형차량(heavy-duty vehicles)의 배출가스와 관련한 형식승인 지침인 「Directive 2005/55/EC」에서는 가스, 분진배출 및 배기가스 투명도의 한계를 설정하고,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의 내구성 확보 및 자가진단시스템(OBD) 장착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부터 적용된 Euro V 기준에 이어 2013년부터는 Euro VI 기준(「Regulation (EC) No 595/2009」)이 적용되고 있다. Euro VI는 Euro V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0% 감소시키고 분진은 66%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5년 독일 Volkswagen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EU는 역내 자동차 형식승인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실험실 검사에 추가하여 실도로조건(RDE)에서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9월 1일부터 신규등록 자동차는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실험실 배출허용기준의 2.1배 이내,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실제 도로 주행조건을 더욱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1일부터 신규등록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검사방법을 WLTP(Wolr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6년 1월 EU집행위원회는 자동차 형식승인 과정에서 형식승인 기관의 서비스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장에 이미 출시된 자동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EU집행위원회 차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승인 및 시장감시에 대한 규정(Regulation regulation on the approval and market surveillance of motor vehicles)'을 제안하였고, 동 규정이 2018년 5월에 확정되어(Regulation (EU) 2018/858), 2020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오존층 보호 및 불화 온실가스(F-gas) 규제

EU는 오존층 파괴물질(CFCs, 할론 등)의 단계적 사용 금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Regulation(EC) No 1005/2009」)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존층 고갈물질의 생산, 무역, 사용, 회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EU는 불화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용 냉방시스템 지침(MAC Directive)과 불화온실가스 규정 등 2개 지침을 운용중이다.

「자동차 에어컨 사용 냉매 규제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6/40/EC)」은 2011년 1월부터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150을 초과하는 불화 온실가스를 사용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금지하고, 2017년 1월부터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50을 초과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과 등록, 판매, 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행위는 불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3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불화온실가스 규정 개정안(Regulation (EU) 517/2014)」을 2012년 11월에 제안하여 2014년 5월 채택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몬트리올 의정서와 유사한 수소불화탄소(HFCs)의 단계적 감축 제도(Phase-down)가 도입되며(2017년까지 93%, 2020년까지 63%, 2023년까지 45%, 2026년까지 31%, 2029년까지 24%, 2030년까지 21%), 불화 온실가스 함유 장비의 시장출시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은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과 예시(부속서 I)를 포함한 포장재 폐기물의 관리를 규율하는 지침이다. 이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EU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EU집행위는 유럽내 연간 80억 개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2015년 4월 개정(Directive 2015/720)하여, 회원국들에게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에 대해 2018년까지 부담금 부과체계를 도입하거나 사용량 감축 목표(2019년 말까지 1인당 90개/연, 2025년 말까지 40개/연) 달성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EU의 포장재 폐기물저감정책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EU집행위는 2015년 12월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서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존 기한을 설정하고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 마련 등을 밝히고 있다.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패키징에 대한 기존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하면서[191], 규제 자체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도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191) 지침은 회원국별 입법(자율성)이 수반되나, 규정은 회원국별 입법 없이 EU전체에 일괄 적용

동 규정안은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1인당 포장재 폐기물을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①불필요한 포장을 제한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포장 방법을 장려함으로써 포장재 폐기물 생산 자체를 억제하고, ②EU시장에서 모든 포장재의 품질을 향상하여 보다 완벽한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③플라스틱이나 종이와 같은 원자재(virgin materials)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써 secondary raw materials의 사용을 촉진하고, 외부로부터의 원자재 의존도를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안에는 제품별 포장재의 재사용 비율 설정, 특정 일회용 포장재 금지, 재활용 · 재사용이 용이한 포장제 설계 의무 등이 포함되었다. 사업자는 제품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주요 제품별 의무 제시), 배달용 음료수 포장, 온라인쇼핑 배송품 포장 등도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당 · 카페 안에서 소비되는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일회용 포장, △과일 · 야채에 대한 일회용 포장, △호텔 등에서 사용되는 샴푸병 등에 대한 포장 등 특정한 포장 방식들을 금지하였다.

향후, EU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각각 규정안을 검토(필요시 수정의견 의결)하는 절차로 이어지며, EU이사회나 유럽의회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EU의 3개 입법기관 간 3자협의(trialogue)를 거쳐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3자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다시 EU이사회 및 유럽의회(상임위 및 본회의) 각각의 검토를 거치고 관보게재를 통해 법으로 발효된다.

2018년 1월 EU집행위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과 재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Circular Economy)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EU 시장내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사용 가능하거나 비용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유럽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192]

192) EU집행위(2018), "Plastic Waste: a European strategy to protect the planet, defend our citizens and empower our industries"(2018. 1. 16. 보도자료) 참고.

2018년 5월 EU집행위는 해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10가지 플라스틱 제품(플라스틱 면봉, 식기류, 접시, 빨대, 음료교반기, 풍선막대, 과자·사탕 봉투 등)과 어구용품(fishing gear)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해 시장 출시 금지, 시장출시 제한, 회원국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동 제품의 소비를 저감시키는 목표의 설정, 판매 시 대체품 제공, 생산자의 책임 제고 등의 규제를 부과하는 지침(Directive) 제정안을 제안하였다[193].

그 후 유럽의회와 EU 각료이사회는 동 지침의 제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8년 12월에 10가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사용 금지(플라스틱 식기류·접시·빨대·면봉용 막대, 발포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 음식물 용기·음료 용기·음료용 컵,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회원국의 상당 수준의 소비저감 조치(플라스틱 음식물 용기·음료 컵), △생산자책임강화[194](플라스틱 함유 담배필터 제조업자), △표시 의무[195](물티슈, 담배, 플라스틱이 함유된 필터가 있는 담배제품)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196] 동 지침(Directive 2019/904)은 2019년 5월에 확정되었고[197], 2021년부터 발효되었다.

2021년 발표된 플라스틱 관련 지침에 따르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또한 플라스틱의 일부로 간주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없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환경에 무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물질(polymer)들의 특성, 연구개발 필요성, 상용화 가능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93) EU집행위(2018), "Single-use plastics: New EU rules to reduce marine litter" (2018. 5. 28. 보도자료) 참고.

194) 제품이 수명을 다하여 폐기물이 된 경우, 동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공공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동 제품의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임.

195) 해당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고, 이 제품을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릴 경우 환경에 위해를 준다는 내용을 표시할 의무임.

196) EU집행위(2018), "Single-use plastics: Commission welcomes ambitious agreement on newrules to reduce marine litter"(2018. 12. 19. 보도자료) 및 EU 각료이사회(2018) "Single-use plastics: Presidency reaches provisional agreement with Parliament"(2018. 12. 19. 보도자료) 참고.

197) EU 각료이사회(2019), Council adopts ban on single-use plastics"(2019. 5. 21. 보도자료) 참고.

야 한다는 의견이 EU 내에서 대두되었다. 이에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바이오기반 플라스틱 등에 대한 정책방향(Framework on biobased, compostable and biodegradable plastics)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방향은 특정 바이외 기반 플라스틱 물질에 대한 사용 여부보다는 바이오기반플라스틱의 3가지 분야에 대해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바이오기반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재료(biomass)는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바이오재료를 주목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유기성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이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정 제품에 포함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비중(양)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생분해성(자연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지,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추가 검토 예정이다.

퇴비화(자연상태에서 유기물질로 분해) 가능한(compostable) 플라스틱 역시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재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유기물과 하나의 제품을 이루는) 티백, 커피관련 용품(커피캡슐), 과일과 야채에 붙이는 스티커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동 정책방향은 시장에 신호를 주고, 민간의 연구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아직 본격적인 입법단계가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전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EU집행위원회가 EU환경청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관리

EU는 생산자 책임원칙(No Data, No Market) 하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위해성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2007년 6월부터 유럽신화학물질등록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라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등록이,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속서 14에 등재된 SVHC는 유예기간 이후 허가가 필요하며, 부속서 17에 등재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된다.

EU는 2008년 REACH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1차(2010년 11월), 2차(2013년 5월), 3차(2018년 5월)에 걸쳐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을 모두 완료하였다.[198] 2018년 6월 기준으로 13,620개 기업이 21,551개 물질에 대해 88,319건의 화학물질을 등록하였다. REACH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규모 기준으로 대기업이 82%, 중소기업이 18%를 차지하며, 등록자들은 제3국 업체를 위한 유일대리인이 23%, 수입업체가 38%, EU소재 제조업체가 39% 이었으며, 국가별 등록 건 수/화학물질 수는 독일이 8,463건/4,792개, 프랑스가 3,455건/2,124개, 이탈리아가 2,926건/2,049개, 네덜란드가 2,751건/1,653개 등이다.[199]

한편, EU집행위는 2022년 4월 지속가능 화학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규제 로드맵(Restriction Roadmap)을 발표하였다. 이는 EU집행위가 화학물질 규제를 위해 작성한 업무지침을

198) 1차 등록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0년 11월 30일까지
2차 등록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3년 5월 31일까지
3차 등록 (연간 1~1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8년 5월 31일까지

199) 영국의 경우, 2018년 8월말 기준 등록 건수 4,396건에 화학물질 수가 2,298개였는데,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영국 기업은 EU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할 수 없다. EU/EEA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영국 기업은 대리인(representative)을 통해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국내 제도로는 UK REACH가 있으며 이는 EU REACH의 주요 원칙을 계승한다.
(https://www.hse.gov.uk/brexit/reach-guidance.htm)

공개한 것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일종의 규제 예고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동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향후 집행위가 제안할 화학물질 관련 법안의 근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집행위는 2027년까지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전면 개정 등을 준비중이고, 2023~2024년 초안 발표가 전망된다.

동 로드맵은 투명성과 시의성을 위해 3가지 목적(objectives) 설정하였는데, 우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여건에 따라 목록 변경(rolling list)도 가능하다. 목록은 발암, 호르몬장애유발, 생식장애유발 등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난연제, 비스페놀, PVC 플라스틱, 1회용 기저귀에 포함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PFAS) 등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목록은 개별 물질(substance) 단위가 아니라 구조나 특성이 비슷한 물질군(group)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집행위가 강조해 온 화학물질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유럽환경청은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군)에 대해서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등 현행 규제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규제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EU집행위는 자신들이 준비중인 화학물질관리정책 전면 개정 이전에 유해 화학물질 대부분이 제품이나 공정에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EU와 회원국들은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을 통해 2017년 5월에 나노물질관측소(EU-ON)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나노물질 현황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EU 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직접적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국가 나노물질등록부(registry)를 설치하여 자국내 수입, 판매 또는 제조되는 제품에 나노물질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물질의 용도와 사용량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은함유제품 관리 강화

EU는 치과용 아말감, 체온계, 형광등, 전지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사용되고 화력발전, 시멘트 제조 등을 통해 환경에 배출되는 독성물질인 수은의 생산, 유통, 폐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전통적으로 수은 수출국으로서 한때 전 세계 수은 공급량의 25%(연간 약 3,000톤)를 공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수은과 수은을 함유한 일부 제품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반면 수은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여 2007년 기준 연간 320톤 이상을 치과 치료, 계측기기, 에너지 효율 램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EU집행위는 2005년부터 「수은배출 및 사용 저감 정책(Community Strategy concerning Mercury 2005)」을 추진하였고, 수은을 함유한 체온계 등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지침(「2007/51/EC」)을 채택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EU 지역 외부로의 수은 수출을 금지하고 수은에 대한 안전한 저장을 의무화하는 규정(「Regulation (EC) No 1102/2008」)을 채택·시행하고 있다.

2017년 5월 EU집행위는 수은의 생산, 사용, 배출, 폐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수은협약(미나마타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Regulation 2017/852)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며 EU 역내에서 수은함유제품중 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는 2018년 12월 31일 부터, 배터리·축전지, 스위치·계전기, 농약·살충제, 계측기기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제조, 수출,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수입도 금지되는데 폐기물로서의 처분목적 이외의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EU 내 수입이 금지되고 처분목적을 위한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국이 자국 영토내에서 가용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산업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사용도 금지되는데, 촉매제(catalyst) 생산공정에서의 사용과 폴리우레탄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극(electrode)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금지된다. 또한 신규 수은함유 제품(new mercury-added products)의 생산과 출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치과용 아말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캡슐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치(deciduous teeth),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에 대한 치료에 치과용 아말감의 사용은 2018년 7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EU집행위는 2021년 1월 1일까지 회원국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수은오염 지점을 목록화(inventory)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하였고, 2020년 6월 30일까지 화장터(crematoria)에서의 수은 배출을 규제할 필요 여부를 검토하며, 치과용 아말감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을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규제가능성

EU집행위는 2011년 10월 나노물질(nanomaterial)에 대한 정의를 집행위 권고문(Commission Recommendation)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나노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 채택으로 인하여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규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현재 EU REACH 제도가 나노물질에도 적용되고 있는 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나노물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REACH 등록과 관련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고문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결합되지 않은 상태 또는 혼합물(aggregate) 또는 덩어리(an agglomerate)로서, 크기 분포상 50% 이상(입자수 기준)이 1~100 nm 범위에 있는 자연적, 우연적 또는 제조된 물질"로 정의되며, EU 집행위 권고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제2항」에 따라 특별한 경우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경쟁측면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크기 분포상 입자수 기준 50%는 1~50% 사이로 대체될 수 있다. 한편 나노물질에 대한 직접규제를 위해 현재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가 국가 나노물질등록부(registry)를 설치하여 자국내 수입, 판매 또는 제조되는 제품에 나노물질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물질의 용도와 사용량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등록부 설치 대신에 관측소(Observatory)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2016년 4월에 발표하였다. 첫 단계로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17년 6월 나노물질 관측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중이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나노물질 소개, 용도, 안전성, 관리체계, 나노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동향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EU의 나노물질 규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

EU는 2014년 5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EU내 이행법률을 채택하고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유럽국가와 개도국 등 5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2014년 10월 발효되었으며, 2016년 11월 기준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멕시코, 인도, 아랍에미리트, 중국, 남아공 등 89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다.

동 이행법률에 따라 유전자원의 사용자는 유전자원에 대해 원산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접근하고 타당한 이익을 공유해야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 승인을 받거나 상업화시 이를 선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관련 절차 준수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89년 캐나다「환경보호법(CEPA: Canadian Enviromental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 플랜으로「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 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그동안 양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이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캐나다는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예정인 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앞두고 자국의 입장을 재검토한 바 있다. 이후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2015년 12월 유엔 파리기후총회에서 전 보수당 정부의 기존 감축목표에 더하여,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목표로 연방·주정부간 적극적 협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기후변화국가전략(Pan-Canadian Framework)을 시행할 예정
  - 오일 및 가스 부문의 메탄배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화학제품 및 질소비료 생산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독자적인 환경규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 및 준주와 협력
  -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의 점진적 폐기,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정책도 지속 추진
  - 범캐나다 프레임 워크(PCF: 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를 시행하여 탄소 오염 가격 책정, 배출량 감축을 위한 보완 조치, 적응과 기후 탄력성, 깨끗한 기술과 혁신 및 일자리
  - 모든 주와 준주에서 엄격한 탄소 가격 책정을 시행하도록 Federal Benchmark를 설정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6개 품목

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년 10월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6년 4월 발표된 개정안은 기존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EPS)를 20개의 제품군으로 증가시켰으며 2016년 12월 9일 개정안 발효, 2017년 6월 28일 추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州, 알버타州)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로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리닝은 주무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

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조정 시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 5월 온타리오 주는 획기적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 in Tariff)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을 목표로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2012년 4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2년간의 FIT 프로그램의 성과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FIT 2.0 지원제도 개정안을 공시하였다. 우리나라 삼성물산은 동 제도 아래 온타리오 주에 1,369MW(풍력 1,069MW, 태양광 30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2018년 4월 완공하였다.

2009년 9월에는 「Green Energy Act」 조항 내 Local Contents 규정을 추가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풍력과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가 FIT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량의 온타리오산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Local Contents 규정을 두고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너무 강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쪽과,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친환경 제품 제조시설 유치를 통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며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일본과 EU는 WTO에 온타리오 주정부의 Local Contents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의사를 제기하였고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하여 분쟁에 나선 캐나다 연방정부는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표와 함께 2014년까지 Local Contents 규정을 수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Local Contents 규정을 폐지하였다.

Local Contents 규정

재생에너지 종류	2009년 10월 1일 ~ 변동시기	변동시기 이후
소규모 (10kw 이하) 태양광 PV	40% (변동시기 : 2011.1.1)	60%
대규모 (10kw 이상) 태양광 PV	50% (변동시기 : 2011.1.1)	60%
풍력 (10kw 이상)	25% (변동시기 : 2012.1.1)	50%

주 : 10kw 이하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Domestic Contents 규정과 무관
자료 : Ontario Power Authority

독일은 EU의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5년 3월「전기 및 전자장비법」을 제정,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로 하여금 폐기된 제품을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는 연방 환경청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연방 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 회수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독일 내 전기 및 전자제품 공급 및 수입업자는 EAR에 제품을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2013년 새로 도입된 RoHS II는 2014년 7월 22일부터 의료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 2016년 7월 22일부터 체외 진단 의료기기, 2017년 7월 22일부터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에 적용되며, 2019년 7월 22일부터는 모든 전자제품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단, 개정을 통해서 처음 발표와는 달리 이미 유통기업에 배송된 신규 제품이 아닌, 시장 내 최초로 출시된 제품에 한해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아일랜드는 장기 인프라 구축 계획인 Project Ireland 2040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8억 투자를 통해 2021년부터 연간 3만~4만 5천 가구의 에너지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공영버스를 전기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 리머릭(Limerick), 드로게다(Drogeda) 등 홍수 피해구제계획 및 홍수 위험관리에 총 9억 4천만 유로를 투입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스웨덴은 정부 및 민간기업 모두 환경보호와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교통분야(국내 항공편 제외)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70% 감축, 2045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1990년 보다 최소 85% 감축)으로 만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성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 「환경법」상의 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히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급적 초기단계에서 환경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환경법」 위반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년 9월 1일 러시아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신차·중고차에 대해 폐차세(utilization fee)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폐차세는 차량의 폐차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징수하는 일종의 환경분담금 성격의 세금이다. 도입 초기에는 수입차 일부에 대해서만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량까지 모두 부과하고 있다. 부과 세금은 차종별 책정된 기본 부과금에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책정된 부담금 지수를 곱해서 산출되며, 러 정부는 기본 부과금과 부담금 지수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폐차세 기본 부과금은 승용차 2만 루블, 화물차 15만 루블이다.

현지 생산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러 정부는 일정 비율로 환급 지원을 하고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 정부는 5천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차량생산자 및 그 자회사들에 대해, 2022년 1~3분기에 납부해야 하는 폐차세를 4분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 해당 기업이 제재 대상일 경우, 2021년 4분기 납부액까지 2022년 4분기로 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1.7월 푸틴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 №296-F3호(Federal Law on Limiting Greenhouse Gas

Emissions)에 서명,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법안에 따라 2023.1월부터 온실가스 연 15만 톤 이상 배출 기업, 2024.1월부터 연 5만 톤 이상 배출 기업은 생산 및 기타 활동의 결과 발생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량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동 법은 의무 보고 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동 법안 내용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한 관련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legal persons), 개인사업자(individual entrepreneurs) 또는 개인(individuals)은 온실가스 감축 등 자체 기후 프로젝트를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동 프로젝트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기후 프로젝트 이행 결과에 따른 감축량은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 등록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 평가 시 기후 프로젝트 이행에 따른 감축분을 감안할 예정이다.

상기 법안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사전 실험으로 2022년 들어 사할린 지역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실시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3월 러시아 연방의 특정 주체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험을 위한 연방법 №296-FZ호(Federal Law on Conducting an Experiment to Limit Greenhouse Gas Emissions in Certain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8월에는 2023.1월~2028.12월간 유효한 정부령을 통해 사할린 지역 내에서 쿼터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 · 징수하기 위한 구체 사항을 규정하였다. 수수료는 쿼터를 초과한 배출량에 비례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1톤 당 1,000루블이 부과된다.

벨라루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생산·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의무적 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무적 환경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

간, 기술·규범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친환경에너지 사용과 관련 벨라루스는 발전용 연료의 약 80%를 해외에서 수입함에 따라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해 2005년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주요 정책 과제로 지정한 바 있으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벨라루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이 전체 에너지 생산의 6%에 불과하나 벨라루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9%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0] 또한, 벨라루스의 금융, 통신, IT, 소매 분야 28개 기업이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ESG 경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는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를 도입하였다. 2000년 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견되는 휘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VOC 세금은 주로 수입품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VOC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상은 아니다. 스위스는 현재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연소물질(combustibles)에 대한 CO2 세금(tax 형식이 아니라 동기유발조치 형식임)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도입되었다. CO2세 부과정책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 시 발생하는 CO2 1톤당 60프랑의 CO2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CO2 1톤당 96프랑으로 인상되었다. 관세청은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해 CO2세를 부과하나, 유해한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CO2세를 부과되지 않는다. 동 세금의 면제에 대한 승인문제도 연방환경청이 담당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변경하는 경우 세금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2010년부터 CO2 세금 수입의 3분의 1이 건

200) '22년5월 국회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분야 관련 규정"에 관한 법률안 채택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추진

물 외피의 개조 및 투자를 지원하는 연방 및 주 건축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연방에너지법」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스위스의 승용차 수입딜러는 신규 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말까지 평균 130g/km로 감축해야 했다. 자동차에 대한 CO2 배출기준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스위스 연방각의는 2020년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신규등록 승용차량은 평균 95g/km로, 3.5톤까지의 소형 신규등록 상용차량은 평균 147g/km로 감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수입딜러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승용차는 물론, 단위중량 1,600kg 이하 경상용차에 대해 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하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 이와 별개로 스위스 주(칸톤)는 각 주에 등록된 차량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이는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환경오염에서 자유로운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 혹은 면제하기도 한다. 아울러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운행 중인 중형차에는 총 중량, 배기가스 배출수준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연방세인 중차량세(HVF)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으로는 3.5톤 이상의 중량, 화물운반용, 스위스 국내외에서 허가를 받고 스위스 대중도로망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과 트레일러는 동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군용차량, 경찰, 소방서, 앰뷸런스 등의 차량, 운전학습 차량 등 특정 목적의 일부차량은 면제대상이다.

스위스의 전기 소비자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전기를 지원하기 위해 kWh 당 2.3센트의 잉여금을 지불해야 한다. 특정 조건에서 재생 가능한 전력(풍력, 태양열, 지열 및 바이오매스) 생산자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스위스 및 해외에 퇴적된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스위스에 버려지는 폐기물에 대한 요금은 5-16 CHF/t 이다. 지하 매립지에 퇴적된 폐기물에 대한 요금은 22CHF/t이다. 해외 매립지의 경우 스위스 내 매립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선처리 수수료는 유리, 음료수병, 배터리 등의 처리비용을 위해 제품의 구매 가격에 부과된다. 주로 도시 차원

에서 부과되는 쓰레기부담금의 경우 각 도시마다 다르며, 대부분 쓰레기 봉투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외 수도세가 있다.

또한 1996년 1월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환경청(BAFU)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운 수은 및 카드뮴을 방출하는 폐기 배터리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노르웨이는 살충제 및 인을 함유한 비료의 카드뮴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전자변형물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에 대해서도 EU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노르웨이 국내 생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EU에서 승인된 GMO도 노르웨이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GMO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적절히 라벨링을 해야 하며(GMO 사용량이 0.9% 이하인 경우는 면제),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새로운 식품(novel foods)은 EU 기준에 기초를 둔 노르웨이 기준에 따라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GMO 수입업자는 제품의 사용이 윤리적·사회적으로 정당화되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색소, 비타민, 향료 등 식품첨가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 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을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한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캐나다, 미국, 멕시코, 포르투갈,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목재의 경우,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이 한층 강화된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

한-EFTA FTA에 의하면 한-노르웨이 간 농수산물의 교역과정상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WTO/SPS 협정(Conven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EU 및 EEA에 대한 수출이 승인된 기관이나 상품의 경우 노르웨이로부터 별도의 수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한-EFTA FTA 회원국인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목표 및 일본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 더 나아가 50%까지 감축)를 제시하였다. 2021년 10월 일본 정부는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2022년 2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을 국회 의결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장기 목표 설정 뿐만 아니라 '탄소세', '탄소가격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도입을 위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사회 및 산업구조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혁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여 실시 중이며, 기업 성장전략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배출감축 효과의 불확실성 등 과제가 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는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내적으로 국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검토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WTO 규범에 적합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 각국의 검토 현황 및 대응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탄소배출량 계측·평가 방법 등 국제규범 책정에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 하에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방향성 등에서 동일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연계 대응을 희망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탈탄소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후진국 등을 대상으로 탈탄소 기술전수 및 제품· 시스템· 인프라 등의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양국 간 크레딧 제도(JCM, Joint Crediting Mechanism)'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을 통해 후진국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해당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기여도를 정량 평가하여 일본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르비아는 2021년 EU 환경기준 국내 이행을 위해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개정 및 도입하였다. 2021년 3월 세르비아는 기후변화법(Law on Climate Change)을 도입하여 탄소배출절감정책 기본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에너지기후통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201] 또한 2021년 4월 재생에너지원 활용에 관한 법(Law on Use of Renewable Energy)을 도입하였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매방식의 시장프리미엄 도입을 명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활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202] EU가 세르비아의 관련 제도 및 법안을 2050 그린어젠다와 합치할 것을 주문하는 만큼, 향후 관련 법제 제·개정 및 기존 제정된 법안의 시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203]

튀르키예 환경법은 1983년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환경 관련 의무 및 규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몇 차례 개정되었다. 2006년 4월 튀르키예 정부는 신환경규제를 통해 산업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및 산업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2년에는 EU 수준으로 환경 규제 수준을 정비하기 위해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ces in EEE) 법안을 공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제품 생산자는 전기 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 수준이 적합한지 유의하고 폐전기 전자제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계획을 튀르키예 환경청에 승인받아야 한다. 판매대상인 전기 전자제품은 환경청이 만든 등록기관에 등록되어야 한다. 한편, 2017년 12월에는 EU REACH 규정과 유사한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KKDIK 규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 내 화학물질의 제조자, 수입자, 유일 대리인은 연간 1톤 이상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화

201)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202) Balkan Green Energy News. https://balkangreenenergynews.com/serbia-adopts-four-laws-on-energy-mining/

203)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학물질의 물질안전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규정 부속서 14에 등재된 물질의 제조 및 유통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튀르키예 내 화학물질은 부속서 17에 명기된 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튀르키예의 KKDIK 규정은 화학물질 등록자 및 신고자가 지정기관에서 최소 64시간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받고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EU의 REACH 규정과 차이점을 보인다.

오스트리아는 친환경적 제품에 관해서 자율적인 에코라벨을 부여하고 있는데,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9년 12월 기준 총 12개 품목군, 55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은 △세제, △의류, △Do-it-yourself, △전자제품, △바닥덮개, △가구(목재가구),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용기기, △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복사용지 등), △Laundry detergents, △Ecolabel-Eup project, △관광(캠프, 여행객 숙박시설) △교육시설 등이다.

카자흐스탄은 2021년 7월부터 신규 환경법을 시행하고 환경오염 유발가능 시설을 카테고리 1~4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유소, 300MW이상 화력발전소, 500톤 이상 석탄설비, 광산업체 등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카테고리 1로 분류되고 중소규모 석유, 석탄업체, 자동차 공장등은 카테고리 2로 금속가공, 가스화력발전소 등은 카테고리 3으로 분류하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카테고리 4에 해당한다.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환경부 및 환경부산하 환경위생기술국(CETESB)이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환경에 유해한 품목(예: 독극물, 폭발물) 등을 수입금지품목 내지 허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식품 내지 약품수입 시 환경관련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 식품안전청의 허가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유해폐기물의 생산, 처리 수입 등에 관한 법률(Law 24051)」 등 환경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느슨하였으나, 2016년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환경관련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환경관련 다양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전기공업제품 표준규격제도(IRAM)를 강화시켜 모든 수입 전기, 전자제품들은 공업규격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아르헨티나로 농산물 및 보건 관련 제품을 수입하려면 아르헨티나 연방 식품·의약품청의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아르헨티나 식품 코드(CAA: Codigo Alimentario Argentino)에 따라 위생, 품질, 포장, 운송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립농식품품질관리원(SENASA), 연방식품관리원(INVAL), 연방포도주관리원(INV) 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칠레의 3대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MMA),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독원은 환경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년 10월부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RCA)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50MWT 이상의 화력발전소 운영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5달러의 환경세를 부과하며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황 등에 대해서도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2월 세제개혁으로 환경세가 개정되어, 연간 입상물질 100톤 이상, 이산화탄소 25,000톤을 초과하는 오염 요소를 배출하는 모든 시설 운영자에게도 환경세가 적용된다.

또한, 신규 차량 구입 시 차량별 판매가격, 연비, 배출가스(질소산화물) 배출량 등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된다.

칠레는 2019년 제2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달성을 선언하며 '에너지 2050(Energia 2050)' 정책을 필두로 세부 전략을 적극 수립 및 추진 중이다. 칠레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30년까지 칠레 전력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60%로 감소
- 2050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2018년 대비 70% 감소
- 2050년 신규 주거·비주거 건물의 탄소배출 '제로(Zero,0)' 실현
-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이 '제로(Zero,0)'인 신차 100% 판매
- 2030년까지 2,000MW, 2050년 6,000MW를 국가전력망(Sistema Electrico Nacional, SEN) 에너지 저장장치를 통해 전력 공급

우루과이 역시 「헌법 47조」 및 「환경보호법률 17283」에 환경보호가 보편적인 문제라고 명시되면서 정부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업허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투자진흥법률에는 청정기술(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주택토지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 산하 국립환경국(Direccion Nacional de Medio Ambiente)에서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2005년 9월에 발표된 법령 349/005에 따라 주택토지환경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분야별 사업은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건설,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 △에너지, △무역, 여행, 농림 등이 있다. 해당 건설 업체는 국립환경국에 건설업체명, 토지소유자명, 토지 특성, 연관 기술자 신상 정보, 공사 내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및 환경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건설환경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공사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 정도를 측정하

여 A급(오염 가능성 낮음), B급(오염 가능성 중간), C급(오염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한 후 이를 국립환경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립환경국은 환경 카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환경오염 가능성 정도를 승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A급 사업의 경우 허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 변경 및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B, C급 사업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C급 사업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중질유, 특정 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 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할론가스 등 몬트리올 협약(Montreal Protocol)에 명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주택토지환경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코스타리카는 화산, 해변, 하천, 밀림과 다양한 동식물을 바탕으로 Eco-tourism(생태관광)이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원 개발의 경우에도 산림 자원이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법」, 「탄수화자원법」, 「에너지절약규정」, 「생물다양성법」, 「수자원법」, 「토양관리보존법」, 「환경기구법」 등이 있으며 가입한 국제협약으로는 「식물채취거래협약」 등이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국립환경기술국(SETENA)이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며, 최근 많은 지방 정부들이 건축허가(Building permit) 발급허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해당 기업은 1차적으로 국립환경기술국에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D1(소규모), D2(중·대규모)서류를 제출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B2 범주(低환경영향)에 속할 경우 추가적으로 환경보전진술서(DJCA)만 제출하면 되지만, 만약 프로젝트가 B1범주(환경영향 중간수준)에 속할 경우 앞선 환경보전진술서와 더불어 예비환경관리계획서(P-PGA) 및 환경영향연구(EsIA)도 제출해야 한다.

페루는 일부 위해환경 품목에 대한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 제613호」 및 관련 규정을 통해 환경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 업체나 기

존 업체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당국에 환경영향평가(EIA)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광을 희망하는 광업 회사의 경우 폐광계획서를 에너지광업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복구, 재생 및 폐광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환경보증(environmental guaranty)을 제시하여야 한다.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4년 2월부터 호주-뉴질랜드 식품공통 표준에 의해 옥수수, 카놀라, 섬유, 대두, 감자, 사탕무의 경우 유전자변형 식품이 허가돼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상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목(MDF 혹은 합판 제외)으로 만들어진 나무 제품 테이블, 의자, 소파, 우든팔렛 그리고 우든박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옹이 혹은 나무껍질 부분에 있을 수 있는 유충의 알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역을 실시한다. 수출국에서 사전검역을 받지 않은 이상 반드시 매틸브로마이드 화학약품이 첨가된 소독처리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통관과 관련한 MPI(1차산업부)와 세관의 결정사항은 타협의 대상의 아니며, 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뉴질랜드의 자연환경 및 공중보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제품은 언제든지 뉴질랜드 세관과 뉴질랜드 MPI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랜덤으로 지정될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2022년 1월 1일, 개정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이 발효되었다. 2014년 환경보호법과 비교하여 개정 환경보호법은 환경자원 보호, 환경 보호 정책, 환경보호정책 책임 주체, 생산 제조 기업 환경 보호 책임, 환경 영향 평가(EIA) 대상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전망이다. 개정 환경보호법은 프로젝트의 규모, 환경 자원(수자원, 광물자원, 토양자원)의 이용 정도, 환경 민감도와 같은 특정 요소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환경영향평가(EIA) 목록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그룹 Ⅲ·Ⅳ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EIA)의 의무에서 배제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환경보호법은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 보호규정을 구체화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을 의무적으로 확대한다. 경제구역·산업단지 내 생산기업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환경보호 및 관리 인프라를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EIA) 보고서에 따른 규정을 명확화 한다. 또한 기업의 산업 폐기물 및 위험물질(오·폐수, 배기가스, 먼지, 기타 위험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와 수입자의 책임을 확대한다. 생산기업은 TVCN ISO 14001또는 국제표준 ISO 14001의 규정에 부합하는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배터리 및 축전지, 전기 전자제품, 타이어 및 튜브, 윤활유, 자동차 및 오토바이, 포장재를 생산하는 6개 분야의 기업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대상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대상 기업은 상품 및 포장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재정적 기부를 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재활용을 원하는 기업은 생산폐기물 및 포장재 재활용에 관한 세부 계획을 베트남 환경부에 등록하고 재활용 결과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베트남 환경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직접 재활용을 하는 대신 베트남에 환경보호기금 기부를 선택한다면 기업의 상품 생산량 및 포장수량에 따라 기부금이 결정된다. 또한 개정 환경보호법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탄소 시장의 조직과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베트남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기준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받고

베트남 내 탄소시장에서 탄소를 교환, 구매, 판매할 권리가 있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베트남의 탄소 절감 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개정 환경보호법상 베트남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기업에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는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수입원 중의 하나이어서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환경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경보호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두 제한적이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mental Act No 47 of 1980)」을 준수해야 되며, 동법은 관련 산업을 A, B, C의 3가지 Category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1개월 전까지 환경보호라이센스(EPL)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취득된 라이센스는 업종에 따라서 1년 또는 최장 3년까지 유효하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재무부 장관령(2008년, No 223/PMK. 011/2008), 2021년 무역부 장관령(No 18/2021)으로 모든 원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최소한 1차 가공된 목재제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내 대부분의 영세 목재생산업자는 추가 가공을 위한 재제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원목을 납품하는 형태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원목거래가격은 국제가격의 1/3수준에 불과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산주협회 등에서 꾸준히 인공적으로 조림된 원목에 한해서 해외수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증제(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인증제는 2020년 무역부 장관령(No 15/2020, No 45/2020)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해당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탄지 개발을 전면금지하는 산림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2018년 팜 농장 개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으며, 2019년에는 66백만ha의 천연림 및 이탄지를 영구적으로 개발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기존 인도네시아의 산림활용활동은 지역활용, 환경서비스활용, 목재 및 비목제품의 활용, 목재 및 비목재제품의 수집 등 4가지로 분류되는데, 산림 이용 시 활동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옴니버스법에 따라 모든 산림관리 활동이 1개의 허가로 묶었다. 옴니버스 법은 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투자 가속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는 조건으로 산림관리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인도네시아 산림은 정부 규정 (2007년6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는 지역활용허가(Izin Usaha Pemanfaatan Kawasan - IUPK), 환경서비스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Jasa Lingkungan - IUPJL), 목제품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 IUPHHK), 비목제품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Bukan Kayu - IUPHHBK), 목제품채집허가(Izin Pemungutan Hasil Hutan Kayu - IPHHK), 비목재림제품채집허가(Izin Pemungutan Hasil Hutan Bukan Kayu - IPHHBK) 등을 받아야 했다.

옴니버스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바꿨다. 49개 정부 규정 중에 산림자원과 관련된 규정 5개 이상을 바꿨다. 즉 정부규정 2021년5호(위험기반사업허가 이행에 관한 규정), 정부규정 2021년 22호(환경보호관리규정), 정부 규정 2021년 23호(산림행정규정), 정부 규정 2021년 24호(임업분야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제재 및 세외수입 절차에 관한 규정), 정부 규정 2021년 43호(공간, 산림면적, 허가 및/또는 토지권리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캄보디아는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각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관련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개발이 우선시되는 국가로 지난 20년간 많은 산림이 개간되었다. 메릴랜드 대학에서 발표한 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만 20만 헥타르의 산림이 일반 농지 등으로 개발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캄보디아 환경부는 환경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필리핀의 경우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은 대량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incineration)의 사용은 금지된다. 2002년 대법원은 대기오염방지법이 모든 소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는 것을 유해물질 배출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①계획안을 검토하고, 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③신규산업개발 또는 주택개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 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해 향후 5년간 탄소 배출량 1톤당 S$5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탄소세는 향후 2024년과 2025년에 S$25, 2026년과 2027년에 S$4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 후 2030년까지 배출량 톤당 S$50~S$80 가량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중국은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스모그와의 전쟁 선포」(2014년 정부업무보고),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시행(2013년 9월), 25년 만에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개정(2014년 4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2015년 6월), 「푸른하늘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2018년 7월) 등 환경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을 개정하여 '생태문명 건설' 개념을 명시하였고,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다. 2020년에는 전국 337개 지급 이상 도시 중 202개 도시의 대기질이 환경기준에 도달(전년 대비 45개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도시의 59.9%로, 전년 대비 13.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337개 지급이상 도시의 평균 우량 날씨 비율은 87.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대비 5.0%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PM2.5연평균농도는 33㎍/㎥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했고, PM10 농도는 56㎍/㎥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하였다.

중국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1973년 「헌법」에 환경보호 내용을 명시하고, 1989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법령 체계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해양환경보호법」,「소음오염방지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보호 법률과 「수자원관리법(水法)」, 「야생동물보호법」,「산림법」등 자연자원 관리 법률, 국무원이 제정·시행하는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관리 행정법규(조례 등)와 생태환경부가 제정한 각종 환경기준 등이 있다.

중국의 「신환경보호법」은 25년 만에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201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신환경보호법」은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치,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시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등 그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 법률이라고 평가되는 신환경보호법은 그 시행에 있어서도 불법적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零容忍)을 견지하는 등 가장 엄격한 집행력을 보이고 있다.[204] 아울러 2018년부터는 기존의 환경오염배출부과금제도를 대체하는

「환경세수법」이 시행되고 2020년부터는 전면개정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환경규제 강도는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은 곧 민생'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민생관련 환경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대기분야에서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氣10條)」(2013년 9월 발표), 「푸른하늘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2018년 7월 발표)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효율 개선,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리, 지역연합 방지전략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질분야에서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水10條)」(2015년 4월 발표)에 따라 안정적인 수질기준 달성, 수질퇴화 방지와 함께 Ⅴ급 나쁜 수질에 대한 관리 강화, 대중 관심이 높은 도시악취오수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토양분야도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 제정을 통해 토양오염 복원 정화 추진, 오염지역 개발이용 등을 13.5계획기간(2016~2020년)부터 환경분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환경관련 주요 신규 정책으로서 경제 구조조정 및 성장방식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축을 강화하고, 녹색경제와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환경관련 부문별 정책 목표와 발전 대책 등을 포함하는 각종 계획을 2011년 이후 다수 발표하였다. 특히 환경보호사업 강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 발표(2011년 12월)[205], 제18차 공산당 전당대회 결과(2012년 11월)[206],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2013년 3월)[207] 등에서도 대폭 강화된 환경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중국은 그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불균형, 부조화 등으로 지속가능 발전 측면

204) 2014.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于全面推進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분야도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중점방향으로 추진중이다.

205)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주요 오염물질 총량 감축, 환경산업발전, 농촌 환경보호 등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6) 자원절약과 환경 친화적 사회건설을 4대 중점추진분야로 채택하고, 당장에 '생태문명 건설'을 최초로 삽입하였다.

207) 경제발전 방식 전환(내수확대, 환경보호, 해양관리 강화 등), 도시와 농촌의 호혜·상생, 민생개선, 개혁개방 심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다양한 유형의 생태환경문제가 혼재되어 있었고, 생태환경 여건과 대중들의 요구간에도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환경질을 개선하고 생태환경 종합관리를 강화하며 기존의 생태환경 정책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17일에 발표된 「13.5종합 규획」(제13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2016~2020) 내용 속에 구속력이 있는 10개의 환경 분야 목표 및 지표를 포함시킨바 있다. 중국은 기존에 발표한 13.5규획의 생태환경 분야 내용을 일부수정 보완하여 지방성에 통지문형태로 동 규획을 시달(2016년 11월 24일)하였으며, 통지문은 기존 양회시 발표된 계획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이해 및 추진하기 쉽도록 총 10장으로 구성하였다.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전국 생태환경보호 현황, 지도사상 및 원칙, 주요목표, 녹색발전방향, 대기·수질·토양 등 3대 핵심 행동계획, 법치체계 등 관리현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에는 기존 발표(2016년 3월)한 13.5규획의 생태환경분야 내 구속성 기준은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토양분야 생태상황, 지역별 오염물질총량감소, 야생동식물 보호률, 자연해안선 보호, 사막화토지 관리면적, 물토양 유실관리 등의 지표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종합해보면 13.5 규획은 3개 분야, 10개 항목, 26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환경질 관련 15개 기준'에는 지역 대기질 권고성 기준 추가(중오염 날씨비율) 및 토양환경관리 구속성 기준이 추가되었고, '오염물질 배출총량 관련 7개 기준'에는 물질별 감축량변경(이산화황 기존 10%에서 15%로, 암모니아 기존 15%에서 10%로 변경) 및 지역 배출총량감소 권고기준이 추가되었다. '생태보호 및 복구 관련 4개 기준'에는 야생동물보호, 자연해안선, 토양유실 등이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13.5 규획의 실질적 이행 및 결과 검증을 위해 환경감찰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2018년 헌법을 개정, 「생태문명 건설」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 개념을 명시하고, 녹색 · 저탄소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0년 9월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2030년 전 탄소배출 정점 도달, 2060년 전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발표한 이후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0년 12월 개최된 UN기후목표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단

위 국내총생산(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약 25%까지 확대하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 총 시설용량을 12억㎾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2021년 4월에 개최된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는 2030년 및 2060년 목표를 재확인하고 석탄발전사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21년 3월 발표된 「제14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 및 2035년 장기비전」에서는, 2035년 장기목표로 녹색생산 · 생활방식을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탄소배출 정점 도달 후 안정적으로 감축하며,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14 · 5"기간의 주요목표로는 단위 국내총생산 당 에너지소비, 이산화탄소배출을 각각 13.5%, 18% 감축하고,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지급 이상 도시 대기질 우량일수비율 87.5%, 지표수 Ⅲ류 이상 수체 비율 85% 달성하는 것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환경산업과 함께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 · 장비 등과 관련된 중국의 환경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정 ·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 또한 정책적으로 자국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효율과 경제성이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확보하고, 현지 프로젝트 핵심 기관과 바이어와의 연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현지 실증화 선행, 현지 전문기관 활용[208] 등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홍콩은 공공보건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환경 기준을 제정했다.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데에 드는 잠재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한다. 환경보호부는 각 부문별 업체들이 「환경보호법」을 잘 준수하게 하기 위해 건설업, 요식업, 차량정비업 등과 협력한다.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법준수지원센터(Compliance Assistance Centre)를 운영하여 환경보호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208)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효과적인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8월에 한·중 환경산업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공한다. 스톡홀름협정(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과 로테르담협정(the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의 내용은 홍콩에서 적용되며, 「유해화학물질규제법」은 농약 외의 유해한 화학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 및 사용을 규제한다.

또한 환경보호부는 불법 폐기물 수송을 억제하는 국제프로그램들에 참여한다. 환경보호부는 세계 여러 규제당국과 정보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들과 공동 훈련을 수행한다. 2000년 이래로 양측의 공식적 협의 하에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해 폐기물들의 이동은 규제되고 있다. 양측 사이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홍콩의 규제당국들은 공동으로 규제법을 집행한다. 2018년 8월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생산자들이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제도'를 시행하였다. 한편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은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를 적용한다. 이 법안을 통해 홍콩정부는 멸종위기동식물에 대한 보유, 수입, 수출, 재수출 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한다. 높은 멸종위험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수출입은 금지되었으며 그 외의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국제거래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농수산품보호국에 의해 관리되며 동부서와 관세/물품세국에 의해 집행된다. 최대 5백만 HKD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호주는 최근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2005년대비 26-28%감축 → 43%감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기후변화 법(Climate Change Act 2022)을 도입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 상위 150여개 업체(연 배출 10만톤 이상)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세이프가드 메카니즘 제도를 강화하고,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 공공기관 차량의 75%를 무탄소 배출차량으로 교체하고, 저탄소 배출차량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제공 등을 포함한 국가 전기자동차 전략 수

립, 자동차 유류효율성 기준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 개발 촉진 등을 추진중에 있다.

호주 정부는 최소 33,000 Gwh를 풍력, 태양광 및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하고 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단하는 전력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신재생에너지목표제(RET: Renewable Energy Target)를 운영 중이며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 상용화와 건물·자동차·전자제품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키는 에너지 생산성 목표(National Energy Productivity Target) 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노력 중에 있다. 한편, 호주 정부는 「Climate Active」탄소중립 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기관 및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인식 제고 등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독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최근 호주 노동당 정부는 Powering Australia Plan 및 150억 호불 규모의 국가재건기금(National Reconstruction Fund)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는 물론 이를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소와 핵심광물 분야의 경우에는 호주의 미래 유망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는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가 많지 않다. 그러나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집트의 경우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48호/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수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투자프로

젝트의 승인절차에 관해서는 환경청(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이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르단은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촉매 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2012년 8월 1일부터 연식 5년 이상의 중고차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알제리는 과거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에는 '환경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High Council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된바 있으며, 2021년 9월 국가경제사회위원회(CNES)가 국가경제사회환경위원회(CNESE)로 명칭을 바꾸며 환경 문제도 담당하게 되었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 시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2017년 재정법 개정으로 알제리로 수입되거나 알제리 내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세(Taxe D'efficacite energetique)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효율 등급에 따라 A에서 G까지 등급이 매겨지고 A등급(고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가격의 5%, G등급(에너지 고소비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알제리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도 도입의 취지는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 재정 건전화에 있었으나 업계에서는 에너지 등급 부여 기준 및 규정이 확립되지 않았고 등급을 부여할 자격을 갖춘 인증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하여 규정을 도입하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등급 부여 방식이 도입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0년 재정법은 환경보호 관련 세율을 인상(담배세, 자동차세 등)하고, 에너지효율성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거나, 하수처리, 공기 오염 시설, 산업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는 등 환경 보호 관련 조치를 다수 도입한 만큼, 향후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만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백신관리 교육센터지역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UN에 의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위생적인 나라로 지정되는 등 위생 및 환경면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 지구오존층을 파괴, 지구온난화를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진 프레온가스에 대해서는 이미 수입규제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바, 프레온가스(R12 냉매)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완전히 수입을 금지토록 하였다. 아울러 R22 냉매도 2030년이면 수입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부분의 산업용 화학제품들은 사전에 허가 제도를 통해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만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석면 및 석면을 포함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조일로부터 7년을 초과한 개인 차량의 수입도 금지된다. 2022년 1월부터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수입이 금지된다.

쿠웨이트의 환경관련 주요 규제를 살펴보면, 먼저 석면(ABESTOS) 제품의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즉, 석면 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해에서 트롤선, 어선 등이 Nylon Fishing Net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 수입 시 생산년도가 5년이 지난 차량은 수입이 금지된다.

카타르는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한 세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우간다에서는 투자자들이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국가환경관리청(NEMA: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의 환경영향평가(EIA)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가 NEMA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으면 투자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우간다 정부는 2009년부터 환경적 이유로 플라스틱 백(plastic bag)의 수입 및 생산을 불법화하였으며, 2015년 4월부터 시장내 비닐백 유통을 금지시켰다.

예멘은 GATT 20조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를 이유로 하는 수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중고타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고기계, 중고 디젤 승용차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리아는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 소형트럭의 수입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도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디젤유의 질을 높이고, 휘발유도 유연에서 무연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차량 수입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립환경관리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관련 법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동 법은 협력적인 의사결정, 포괄적 환경관리, 환경관리

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규약,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환경관리법」에 규정된 위반사례 적발시, 5백만 랜드 미만의 범칙금 또는/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남아공의 탄소세법은 2010년에 입안되었지만, 탄소세 도입에 따른 전기세·유류세 인상과 광산업과 철강 산업 기업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도입이 지연되었으나, 2019년 5월 26일 최종 대통령 승인됐다. 2022년 1월 1일부터 탄소세의 기준 세율은 이산화탄소 1톤당 134란드에서 144란드(R144/tCO2e)로 인상하였다[209].

2017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대기질법은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물질을 연간 0.1 메가톤 이상 발생시키는 업체는 환경부 장관에게 대기오염방지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남아공 국영전기회사 Eskom의 발전 중 90%가 화력발전임에 따라 환경단체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남아공 에너지부는 환경과 관련하여 향후 석탄발전소 개발을 자제하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53개 신재생에너지 IPP 프로젝트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4월 4일 27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발전용량 2,300MW)에 대해 국영전력회사 에스콤(Eskom)과 IPP사업자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향후 22개 프로젝트 더 추진하는 등 총 102개 신재생에너지 IPP 프로젝트를 운영을 통해 총 17,000MW의 발전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210]

2019년 10월 남아공 광물자원에너지부는 '통합자원계획 2019' (Integrated Resource Plan 2019)를 발표하여 신재생에너지 증가를 목표로 2030년까지 화력발전 12GW, 2050년까지 35GW까지(2019년 당시 42GW) 폐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남아공 정부는 석탄화력 의존율을 71.31%(2019년)에서 2030년까지 43%로 감소하고, 2030년까지 풍력발전은 3,8%에서 22.53%,

209)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National Treasury), 2021 예산발표 (Budet Review)

210) 남아공 에너지부, 2019년 5월 이후 '광물자원 및 에너지부(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로 통합됨

태양광 발전은 2.82%에서 10.52%, 양수발전 6.35%, 수력발전 5.84%, 원자력발전 2.36%, 집중태양력 0.76% 으로 구성할 계획이다[211].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2050"이 규정하는 배기가스 범위, 목표 성취 등과 관련하여 남아공 환경산림어업부는 '기후변화 법안(National Climate Change Bill)'을 기안하고 2018년 6월 8일 고시를 한 후 2019-2020년 대중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하였다. 대중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 내각에 제출되었고, 남아공 내각은 2021년 9월 22일 기후변화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산림어업부는 동 법안을 2022년 2월 18일에 남아공 하원에 제출하였고, 2022년 10월 기준 남아공 하원에서 공청회 등 심의가 진행 중이다.[212]

르완다의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청(REMA)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한편 2019년 6월 12일 의회에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제품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금지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공항 입국검사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소지 시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9월에는 페루와 함께 유엔환경계획(UNEP)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 3월 케냐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동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가나는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환경보호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회사 설립을 등록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영향 없음', '일부 영향 있음', '영향 있음' 중 하나이며, '영향 있음'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허될 수도 있다. 가나 정부는 기후변화, 위생, 폐기물 처리 등 국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환경보호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시

211) 자료원: 남아공 에너지부, IRP 2019

212) 자료원: 남아공 환경산림어업부(https://www.environment.gov.za/)

민과 기업인들의 친환경적 생활 및 기업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가나 재무부에 따르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환경세로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가 있는데, 2011년 도입 당시 20%였던 동 소비세는 추가 인하를 거쳐 현행 10%의 소비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1월부터는 중고 전자부품 및 타이어 수입에 대해 품목별로 사전환경부담금(advance eco levy)이 부과되고 있다.

가봉의 「환경법(Environment Code)」에서는 폐기물(처리, 재활용, 폐기 등) 관리,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 환경오염 방지, 유해물질사용 등을 다루고 있다. 「공해방지법」에 따라 산업 및 생산 시설 설치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정부 허가 후 3년내 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2년 연속 운영되지 않은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아울러 가봉은 폐수투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름 및 윤활유, 세제(detergent) 및 농가 폐수 투기는 엄격히 금지된다.

멕시코 정부는 1988년 1월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은 마낄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는 2024년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3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멕시코 국가전력개발계획(PRODESEN2022-2036)에 따르면, 멕시코는 2025년까지 1,4266MW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이 중 태양광 에너지가 26.34%, 풍력에너지가 11.22%, 수소에너지가 2.74%, 지열에너지가 0.15%바이오에너지가 0.05%이다.[213] 멕시코 온실가스감축 정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 22%, 석탄가스(Black

213) 멕시코 전력개발계획 (PRODESEN 2022-2036), p.126-127
https://www.cenace.gob.mx/Paginas/SIM/Prodesen.aspx

Carbon) 51%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조건부 목표는 온실가스 36%, 석탄가스 70%를 각각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멕시코 정부는 국가 대표정책으로 에너지 자립을 전면에 내세우고 석유 생산 효율화 및 정유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환경 정책과 다소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하였고,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면서 현재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천연가스 Kit의 안전성 문제 및 소형차량에의 탑재 어려움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솔린 가격과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법률 제3467호 및 최고법령 제28963호에 따라, 3년 이상 된 중고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방출량 및 오존 파괴 물질 여부에 대한 환경평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또한, 법률 제15629호에 따라, 방사선을 배출하는 기계· 장비, 방사성 화학 원소 및 동위 원소 수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냉장고에 쓰이는 냉매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허용된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담수공사(SWCC)와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 시 각종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산업광물자원부(MOIM)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 시 환경보호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환경수농업부(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 Agriculture: MEWA)으로 1989년 제정된 환경보

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전체 GDP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약 70~80%가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1997년 도입된 에티오피아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of Ethiopia)에는 토양, 숲, 생물 품종, 수자원, 에너지, 천연자원, 도시환경, 산업폐기물,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화 및 자연 보존지역, 인구, 공동체, 토지, 성, 환경경제, 환경정보화 시스템, 환경영향평가, 환경교육 등이 망라되어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1년 기후 복원력 증진 경제 전략(Ethiopia's Climate-Resilient Green Economy, CRGE)을 발표하여,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탄소배출 중립적이고 기후 복원력 있는 국가 달성 및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발전 목표를 추진 중이다. 또한 에티오피아 투자규정(2020년 4월)은 투자의 세부 목표 중 하나를 사회적·환경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모든 투자자는 투자 진행 시 환경보호 등 사회·환경적 지속가능한 가치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냐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기업에 오염 활동을 중지하고 원상회복 및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법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자연보호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광산, 도시개발, 수송망, 농업, 전기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 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케냐는 2017년 6월 말부터 케냐 내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 포장지와 비닐 쇼핑백의 사용을 전면 금지 조치하였다. 케냐환경관리국(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및 제조기업에 대해 최대 4만 달러의 벌금 또는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발표하였다.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체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

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2년 6월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치 제66호,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테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2013년 6월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홍보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하여 통관이 불가능하게 된 혼란을 겪었다.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적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우선 자연자원환경부(MIAMBIENTE: Secretari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보호지역 및 야생동물법(Ley Forestal, Areas Protegidas y Vida Silvestre)」, 「탄화수소법(Ley de Hidrocarburos)」, 「광업법(Ley General de Mineria)」 등이 있다.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관련 규제 장치를 발전 및 강화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총리실 주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변화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om Climate Change)"를 재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2015년 인도는 2030년까지 GDP당 탄소배출량(emission intensity)을 2005년 대비 30-35%까지 감축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전력설비의 40%(누적)를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전력 설비로 전

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450GW 목표 달성, 전기차 미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2021년 11월 인도 재생에너지부는 동 목표를 확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용량도 500GW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공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도정부와 각 지방정부 역시 노후 디젤차에 대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모디총리는 2021년 10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연설에서 인도가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영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환경영향평가 기관(SEIAA)으로부터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적이다.

튀니지의 경우, 비인체분야에 대한 유전공학 실험이나 유전자변형유기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활용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GMO 문제 관련, 튀니지는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생물·기술학적 위험성 예방에 대한 카르타제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서명한 바, 유전자변형 규제를 법률상으로 제도화하고 생물안전성을 감시·관리하는 국가위원회의 발족을 검토 중이다. 환경 분야 국제협약에 따라 튀니지는 유해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및 야생 동·식물 수입 등을 철저히 관리·규제하고 있다. 석유, 중합체, 원심분리기, 건전지·배터리, 축전지 등은 수입 및 판매 시 5%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이 관리하는 "공해방지기금(FODEP: Fonds de

Depollution)"과 "환경미화보호기금(FPEE: Fonds de la protection de l'esthetique de l'environnement)"에 각각 70%와 30%씩 적립된다.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환경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2012년 7월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드시 EURO Ⅱ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소 배출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현재까지도 파키스탄은 차량 수입 및 생산을 위해 EURO II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내 제조 회사들의 여력에 따라 정부는 향후 EURO V 등으로 환경 규제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키르기즈공화국은 1999년 7월 「환경 보호법」을 제정한 뒤, 「대기 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생물권보호지역법」 등 일련의 환경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2009년에는 「환경 안전보장에 관한 일반기술규제법」을 제정하여 환경 안전 보장을 위한 대기, 수자원, 동식물, 토양 등의 보호 및 산업/가정폐기물 처리 및 천연자원 사용 등에 대한 특별 안전 요건을 부과하였다.[214] 2021년 10월 국가기후환경위원회에서 승격된 천연자원환경기술감독부가 키르기즈공화국의 환경 보호, 기후, 환경 안전 보장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활동 및 기타 활동을 하는 기업은 상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규제는 위험 범주[215]에 속하는 경제활동 혹은 기타 활동 시설이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시행 예정 활동뿐 아니라 제품의 보관, 운송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적용된다. 사람의 건강 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천연자원의 재생산 및 합리적 사용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품, 가공품, 서비스 등은 생산 또는 수입시 환경 표준화와 환경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당 상품의 목록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가 결정한다.[216]

214)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82

215) 이 같은 위험 범주 분류는 "환경영향평가법-부록2"의 내용에 따라 수행된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 기업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따라 별도로 설정된다.

216)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73, 제26조 환경 표준화 및 인증

프랑스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 제도인 ICPE(Installations Classe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를 도입,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Declaration) 대상, 허가(Authorization) 대상, 감독 및 허가(Authorization avec servitude)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별로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물질의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환경법」은 신고 및 허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대상의 경우 최소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최소 75,000유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헝가리의 경우, EU의 환경규제 조치로 203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의 목표는 최소 32%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이다. 2014-2020년 EU펀드를 활용하는 EEOP(환경 에너지 운영 프로그램, Environment and Energy Operating Programme) 아래 헝가리 내 각종 환경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중이며 헝가리의 EEOP 에는 전체 헝가리 EU펀드 기금인 296억 유로 중 37억 유로(12.5%)가 배정되어 헝가리의 환경과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폐기물 재활용, 수질 개선, 폐수 관리, 홍수 예방, 산불 예방, 동식물 서식지 보호,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2021-2027년 EU펀드에는 기존의 국가별 MFF 기금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회복 기금(Next Generation EU, NGEU)이 배정될 예정인데 펀드 집행 금액 합계의 30% 이상을 반드시 기후 변화 대응에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풍력 및 수력 자원이 부족한 헝가리는 태양광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과거 0.5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2019년에는 헝가리 에너지 국가보조금 체계에 따른 공공 입찰을 실시하여, ①0.3MW~1MW 규모, ②1MW~20MW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공 입찰을 진행, 보다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산업을 증진할 계획에 있다.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비교적 완화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1996)」은 기업과 개인에게 오염을 완화하고 야생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할 '환경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환경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년 5월 「법률 제218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0년 8월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로코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환경협정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특정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을 2015년 완전히 금지하였다. 한편 모로코 정부는 2016년 11월 마라케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2)를 개최하는 등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2017년 채택된 지속개발가능발전국가전략(SNDD,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urable)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환경 분야에 적용될 대대적인 환경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바레인은 2011년의 보건부의 각서에 따라 139가지의 화학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 방사선 물질, 투기, 유독성 물질,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 제조 및 산업용도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파라과이는 생태계,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재조림 조성지, 농장, 목장 등 포함)에 대해 법령 293/93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를 승인받도록 규정한다.

우간다는 투자자들이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국가환경관리청(NEMA: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의 환경영향평가(EIA)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가 NEMA로부터 평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투자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우간다는 2009년부터 환경적 이유로 플라스틱 백(plastic bag)의 수입 및 생산을 불법화하였으며, 2015년 4월부터 시장 내 비닐봉지 유통을 금지시켰다.



경쟁정책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경쟁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다. 경쟁정책은 경쟁법을 통해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행, 즉 가격과 생산량을 특정 하는 기업 간의 공모행위나 진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경쟁당국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 또는 억제하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정책의 통제 대상 중 대표적인 것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에는 국제카르텔, 특히 수출 카르텔을 들 수 있으며 수직적 거래제한, 또는 기업결합제한의 차별적 운영을 통한 시장접근 저해 등을 들 수 있다.

경쟁정책을 세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국제기구 및 협의체들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컨센서스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 사례 검토, 권고안 채택, 경쟁포럼 채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가들의 경쟁 환경을 평가하는 경쟁법/정책 지표(CLP: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개발하였다. 다자간 규범에도 경쟁과 관련된 규정들이 반영되었다. GATT 협정은 수입독점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율(제2조)과 수입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제3조)을 담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217], GATS협정은 독

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 시 협의요청 및 협의 의무,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및 조화를 위하여 WTO와 OECD 범위 밖에 구성된 경쟁법 전문 국제협의체이다. ICN에는 현재 129개국 140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연차 총회에서는 경쟁정책의 이행, 카르텔, 기업결합 등 각 작업반 활동을 보고하며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모범사례 도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ASEAN은 2007년 아세안 경쟁정책 전문가그룹(ASEAN Expert Group on Competition: AEGC)을 설립하여 회원국 간 자유무역 확산과 경쟁법 도입을 장려하였다. AEGC는 2010년에 「아세안 역내 경쟁정책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여 역내 경쟁정책의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였고, 2012년에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표준화된 「아세안 역내 경쟁정책·경쟁법 핵심 역량 발전에 관한 가이드 라인 II」을 발표하였다. APEC은 경쟁정책과 제도개혁을 같이 도모하여 경쟁정책과 법 작업단(Com petition policy and Law Group)을 1996년부터 운영하였고, OECD와 같이 「제도개혁에 대한 통합리스트(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를 작성하여 규제와 경쟁정책, 시장개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도모하고,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을 위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과 선진국의 경쟁당국들은 경쟁법에 대한 구제적인 과제 검토,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경쟁정책 관련 세미나 및 연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 발간된 'OECD Competition Trend 20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25개국이 경쟁법을 보유하고 대부분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적으로 경쟁법의 집행은 급격하게 성장해왔다.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국제 규범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지만 경쟁정책은 최근 체결되는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경쟁당국 간의

217) 세이프가드 협정문에서는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 유지협정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사한 조치란 수출조절, 수출 및 수입품 가격 모니터링 제도, 수출 및 수입감시제도, 수입카르텔, 재량적 수입허가제도, 수출카르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협의회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특히 지역무역협정에서 경쟁정책은 경쟁정책 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 및 조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황분석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자국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기업간 합병 등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국의 경쟁당국은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카르텔 등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쟁당국, 국제기구 등과 경쟁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경쟁법 이행 시 상호조율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경쟁법을 역외로 확대하거나 경쟁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보호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별 경쟁정책 논의 및 활동 내용

비교항목	OECD	WTO	UNCTAD	ICN
설립취지 및 조직성격	• 경제 분야 정책연구 • 협의와 공유	• 무역규범의 수립 •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 개발도상국의 지원 • UN 산하기구	•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체 • 협상기구 아님
회원가입	• 대부분 선진국가입 (참여범위의 한계)	• 개별 국가별 가입	• UN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회원이 됨	• 일반경쟁당국, 국제기구, NGO, 학계를 포함(포괄성 최대)
비용조달	• 회원국들의 비용분담	• 가입회원국의 분담	• UN에서 부담	• 회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무 없음
사무국 존재 여부	• 상설 사무국이 의사일정관리	• 강력한 상설사무국	• 독립된 사무국 (UN으로부터)	• 사무국이 존재안함 (Virtual 조직) • 개별 작업반 활동
대표적 활동	• 경쟁위원회(COMP) • 모범관행을 검토하는 라운드테이블 개최 • OECD 권고안 채택 • 글로벌경쟁포럼 (GFC) 발족	• 무역경쟁작업반 (WGTCP) 활동 • 다자간 규범수립을 위한 WTO/ UNCTAD 공동사업	• "The Set" 제정·권고 • 경쟁법·정책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 모델법(Model Law) 제정작업 추진	• 모범관행 도출 •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 경쟁주창기능 제고

비교항목	OECD	WTO	UNCTAD	ICN
결과물의 구속성	• 채택된 권고-구속력 없으나 사실상 이행 요구(3년이내에 권고 이행실적 보고의무, 회원국간 압력)	• 구속력 있음 • 분쟁발생시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	• 작성된 권고안에 법적 구속력 없음	• 구속력은 없으나 경쟁정책의 절차적·실체적 수렴에 영향력 발휘

자료 : 김정해 외(2005)『경쟁정책 국제규범화의 동태적 구조와 전개과정』, 한국행정학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경쟁법 운용의 역사가 길고 경쟁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온 반면,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중진국 및 개도국은 경쟁법을 도입하지 않거나 운용해온 역사가 짧다. 미국, EU국가는 경쟁적으로 자국의 경쟁법 체제를 다른 국가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EU모델을 수용하여 경쟁법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라오스, 필리핀 등 개도국들도 경쟁법 도입을 준비 중이다. 선진국간의 경쟁정책 관련 분쟁은 양자협정이나 지역협정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중진국의 경우에는 양자 협정 및 지역협정이 초기단계에 있으며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쟁 이슈는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따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이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경쟁법을 도입하고 있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은 인프라, 공공서비스, 해운·수송 분야에서 국내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를 부과하는 것과 교역국 기업에게 경쟁법을 역외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하는 반경쟁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 내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을 경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말한다. 전자는 주로 반경쟁행위에 대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개도국이 취하는 형태이다. 후자의 경우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이 주로 적용하는 유형으로, 미국은 양자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점차로 역외적용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활발하며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

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어느 기업이 외국시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 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하며,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독점금지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그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기업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의 인상·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할당 등의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6월부터 개정된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벌금을 법인 1억 달러(종전의 10배), 개인 백만 달러(종전 35만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상한도 10년(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상기의 개정 셔만법 이외에 별개 법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의해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평소에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의식을 높이고 준법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을 개정하여 반독점법 위반 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 5십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2005년에는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15일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 법무부가 삼성전자에 3억 달러, 하이닉스에 1억 8천5백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두 회사 간부(삼성전자 6명, 하이닉스 4명) 10명에 대해 5개

월에서 14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8월에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7월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TFT-LCD 국제가격 카르텔에 가담한 LG Display 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벌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2009년 5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은 바도 있으며, 2011년 3월에는 삼성SDI가 CDT(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3개의 국내 정유사들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 공급 입찰에서 2005년~2016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8,200만 달러의 형사벌금과 1억 5,400만 달러의 민사배상금 등을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죄인정합의(guilty plea)를 하였으며, 2019년 3월에는 같은 사건에 대해 추가로 2개 정유사들이 7,460만 달러의 형사벌금과 5,208만 달러의 민사배상금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유죄인정합의가 성립되었다. 이와같이 2020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가 확정된 벌금액은 약 총 14.3억 달러이다.

이와같이 2019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가 확정된 벌금액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하여, 카르텔을 저지름으로써 회사는 물론 개인 처벌까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부 독점금지국에서는 2019년 7월 11일 반독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즉, 종래에는 법무부가 반독점 형사사건의 처벌 수준을 정하는 단계(sentencing stage)에서만 사업자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고려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소검토(charging stage)에서도 고려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함을 발표하였다.[218] 이는 법부무 반독점국이

218) https://www.justice.gov/opa/pr/antitrust-division-announces-new-policy-incentivize-corporate-compliance

반독점 형사사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진신고감면프로그램(leniency)에 변화를 의미한다. 즉, 미국에서는 종래 제1순위 자진신고자만이 형사기소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 외의 다른 가담자는 유죄인정합의(guilty plea)와 벌금부과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조사 협조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아왔다. 새로운 정책에 따를 경우 제1순위 자진신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에 강력한 자율준수 프로그램(robust compliance program)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소유예합의(DP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종래 어떤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이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협조에 의한 감경가능성을 인정해 온 것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219] 이에 따라 법무부 반독점국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새로 발표한 바 있으며[220], 사업자들은 그러한 새로운 지침상의 기준을 숙지하고, 그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만일의 경우 법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기소 검토단계에서부터 책임성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정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마켓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카르텔에 연루되어 고액의 형사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 당하거나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까지 실추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카르텔 예방 설명회는 국내에서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한편, 주미 대사관 등을 통하여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개최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년 8월 수평결합심사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1992년 제정된 이후 대폭 개정(1997년 일부 개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각 경쟁당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반영하여 기업결합 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집중 검토 대상이 되는 시장집중도 수준을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기준으로 종전의 1,800에서 2,500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 기업결합 심사업무에서

219)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delivers-remarks-new-york-university-school-l-0

220) https://www.justice.gov/atr/page/file/1181891/download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기준을 반영시킨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 범위의 사업자를 단기간에 실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로 한정하여 관련 시장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현실적인 경제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2020년 6월 개정된 수직결합심사지침(Vertical Merger Guidelines)의 주요 내용은, 수직합병에서 잠재적인 반독점적 효과에 대한 기술, 반독점적 폐해의 잠재적인 요인으로서 봉쇄(foreclosure) 및 경쟁자의 비용 상승과 경쟁상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규정, 봉쇄 및 경쟁자의 비용 상승의 잠재적인 경쟁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기술, 이중 마진화 (double-marginalization)의 제거가 수직결합의 반경쟁적 효과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중립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수직결합 특유의 합병 효율성(cognizable merger efficiency), 수직 합병을 평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분석 방법의 명확성을 더하기 위한 다수의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SR 법(Hart-Scott-Rodino Act)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시 이전에 반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거래가 HSR법에 의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상업적 거래기준(commerce test), 거래규모 검증기준(size of transaction test) 및 사업자 규모 검증기준(size of person test)의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된다. 즉, 어떠한 기업거래가 상업적인 거래일 경우, 해당 거래의 규모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된다.

HSR법상 2019년도 의무적 사전신고 기준 요지[221]

(단위: 백만 달러)

거래규모 기준	사업자규모 검증기준	의무적 사전신고 대상 여부
90 이하	적용 않음	비대상
거래규모가 90초과~359.9미만	한 당사자의 순 매출(net sales) 또는 총 자산(total assets)이 18이상이고, 다른 당사자의 연간 순 매출 또는 총 자산이 180 이상인 경우	대 상
359.9 이상	적용 않음	예외 사유 없는 한 대상

221)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9-03-04/pdf/2019-03396.pdf

이 신고 대상 기업결합 규모는 미국의 GDP에 연동되어 매년 고시되므로 대형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미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고된 기업결합 건은 우선 30일간의 대기기간(waiting period)동안 1차 심사(initial review)를 거치게 된다. 경쟁당국에서 1차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종결(early termination: ET)을 부여한다. 반면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상 1차 심사 기간 30일이 지나기 전에 추가정보요구(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second request)를 하게 되고, 심사 기간은 당사회사와 경쟁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후에는 당사회사는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 기간 동안 기업결합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일일 최고 42,53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2019년 기준).[222] 기업결합 심사청구 시에는 심사비를 미 경쟁당국에 지불하여야 하고, 심사비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거래 규모(백만 $)	신고비용(filing fee)
90 이상-180 미만	$45,000
180 이상-899.8 미만	$125,000
899.8이상	$280,000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무부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사기행위 규제 등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업무 이외에 최근에는 개인정보 도용, Spyware 메일, 크레디트 거래 사기 등의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독점금지법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양국간 기관장 회의를 개최(2014년

222)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9/03/ftc-publishes-inflation-adjusted-civil-penalty-amounts

서울, 2015년 워싱턴, 2016년 싱가폴, 2017년 뭄바이 등)를 개최하고, 주요 사안별 각급 양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경쟁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국 기업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 학계 및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이 Facebook, Google, Amazon, Apple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대규모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독과점화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시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의 모색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회에서는 상·하원이 각기 시장상황 및 경쟁당국 법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쟁당국에서는 이들 대규모 기술기업의 사업행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진 합병심사 등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에서 새로운 규범의 정립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223]

이 같은 상황에서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2020년 10월 전격적으로 구글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다. 구글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업자, 웹브라우저개발자 등에게 막대한 금액을 제공하고 자사 프로그램을 경쟁자들에 비해 특혜적 혜택을 받아온 점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글이 온라인플랫폼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활용하여 막대한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충당했다는 등이다. FTC도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른바 빅4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에 대한 미 경쟁당국의 조사 및 조치가 연이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로 볼 때,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분야에서

223) ①(하원) https://judiciary.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judiciary-committee-launches-bipartisan-investigation-competition-digital
②(상원) https://www.judiciary.senate.gov/meetings/09/17/2019/07/23/2019/oversight-of-the-enforcement-of-the-antitrust-laws
③(FTC) https://www.ftc.gov/public-statements/2019/09/prepared-statement-federal-trade-commission-oversight-federal-antitrust 및 ④ https://www.ftc.gov/public-statements/2019/11/prepared-statement-federal-trade-commission-house-judiciary-subcommittee
⑤(DOJ)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testifies-house-judiciary-subcommittee 및 ⑥ https://www.justice.gov/opa/speech/statement-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us-senate-subcommittee-antitrust

도 미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는 미 경쟁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경쟁당국의 설립 및 법집행과 관련하여 반독점 사건 처리의 절차적 공정성, 비차별성, 적절한 방어권의 보장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 법집행에서의 규범을 다자간 규범으로 정립하기 위한 미 법무부 주도의 노력의 결과 2019년 5월 ICN CAP (Competition Agency Procedure)를 마련하게 되어, 각 당국의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224] 그 동안에는 경쟁법의 실체적 내용과 관련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였으나, 앞으로는 절차법제와 관련한 다자간, 양자간 논의도 미국 주도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EU경쟁당국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EU회원국의 국가보조금을 심사하여 국가에 의한 인위적 장벽설정을 견제하고, 시장감시(market monitoring)와 업종분석(sector inquiries) 활동을 통해 시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단일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경제회복, 나아가 성장 및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4년 11월 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취임(2019년 12월 연임)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EU집행위는 카르텔규제(Fighting Against Cartels)를 최우선 업무로 설정하고 있으며 EU경쟁당국의 연례보

224) https://www.justice.gov/opa/pr/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adopts-framework-competition-agency-procedures-and

고서(2013년 5월) 서문에도 “No time to relax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라고 강조하면서 법집행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EU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카르텔의 신속한 처리와 시장경쟁 회복을 위해 카르텔 합의처리제도(settlement tool) 활용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EU는 1990~1999년의 10년간 카르텔에 대해 총 6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2000~2004년 사이에는 31.6억 유로, 2005~2009년간에는 총 과징금액이 무려 78.6억 유로에 달했으며,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2010~2014년간 총 76억 유로, 2015년부터 22년 7월까지 총 10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요 사건을 보면, 2013년 7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하네스 시장에서의 카르텔에 1.4억 유로, 2014년 3월 차량용 베어링 카르텔에 대해 9.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6년 7월에는 Volvo 등 5개 트럭 제조사업자간의 가격 카르텔에 대해 EU의 경쟁법 관련사건 사상 최대 금액인 29.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20년 9월에는 Brose 등 자동차 부품 3개사의 가격 카르텔을 적발하여 18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우리기업관련 사건들을 보면, 2012년 말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제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업 포함 6개 업체에 14.7억 유로(2.2조 원)라는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2014년에도 4월에 고압전선시장 카르텔혐의로 우리기업포함 11개 업체에 3억 유로, 9월에는 스마트칩 카르텔혐의로 3개 업체에 1.4억 유로 과징금 부과 등 카르텔 적발 및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한국 선사들이 관련된 컨테이너 선사 카르텔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받아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동의 의결 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카르텔 사건에서 이례적이다. 동 사건은 2016년 7월 컨테이너 선사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카르텔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는 IT, 제약 및 통신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5개의 글로벌 출판사들이 연루된 e-book 사건의 경우 2013년 7월 사업자들의 획기적인 개선약속에 따른 합의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다. 특히 제약분야에 있어서 역지불합의라는 특정유형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집행이 활발했는

데, 2013년 6월 역지불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출현을 지연시킨 Lundbeck 등 몇몇 제약사들에 대한 제재에 이어 13년 Johnson & Johnson사의 반경쟁합의에 대한 제재 및 2014년 7월 프랑스 제약사인 Servier사와 5개 제네릭약품 제조사간 역지불합의 등에 대한 4.3억 유로의 과징금 부과하였고 2020년 11월 Teva와 Cephalon간 수면장애 치료제 관련 역지불합의에 대해 60.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EU 경쟁당국은 2017년 6월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 24.2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소비자가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경우, 자회사의 쇼핑서비스(구글쇼핑)의 결과를 보다 좋은 위치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자사의 서비스에 특혜를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OS관련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 43.4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이 검색엔진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제조업체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구글 검색과 브라우저 앱을 선탑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약을 가했다고 판단하였다. 2019년 3월에는 구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14.9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이 검색광고 브로커링 시장에서 고객사들에게 자신과 경쟁하는 다른 온라인 광고 브로커링 사업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19년 7월 EU 경쟁당국은 미국의 퀄컴사가 3G 관련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킬 의도로 약탈적 가격설정을 하였다고 판단, 과징금 2.42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또한 같은 달 EU 경쟁당국은 미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유통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공식 조사 개시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9년 10월 EU는 미국의 TV 셋탑박스 및 모뎀에 들어가는 시스템 온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 구매업체들에게 자사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강제·유인하였다고 판단하여 구매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의 관련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임시중지명령(interim measure)를 결정하였다. 이 명령은 EU 경쟁법 역사상 약 20년만에 사용된 것인데,

Margrethe Vestager EU 경쟁집행위원은 디지털 시장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특정 기업으로의 쏠림(tipping) 현상이 심하고 그 결과 혁신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향후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2020년 12월 EU 집행위는 소위 GAFA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Gatekeeper로 지정하고 18개의 작위,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등 사전규제 법률인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유럽의회, EU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00~400여건의 기업결합 신고건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활용하여 경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IT, 미디어, 통신, 금융업종에서 기업구조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1년 EU경쟁당국은 1건의 기업결합(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 조치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털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매각관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6년에는 Hutchison의 Telefonica UK 인수건, 2017년에는 Heidelberg Cement와 Schwenk의 Cemex Croatia 인수건, Deutsche Borse와 영국의 런던증권거래소간 기업결합건 등 2건, 2019년에는 Wieland의 Aurubis Rolled Products 인수건, Siemens의 Alstom 인수건, Tata Steel과 ThyssenKrupp간 조인트벤처 설립건 등 3건, 2022년에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건 및 Illumina의 Grail 인수건에 대해 경쟁자 수 감소에 따른 가격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2020년에는 4월 Johnson&Johnson -Tachosil, 5월 Boeing-Embraer, 2021년에는 2월 Fincantieri-CAT, 4월 Air Canada-Transat, 12월 Air Europa-IAG 사건에서 해당 기업들이 EU 집행위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만한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못해 기업결합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였다. 2019년 12월 이후 2022년까지 심층조사(Phase 2)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승인된 기업

결합 건은 2020년 5월 Aurubis-Metallo 1건에 불과하다. 또한, 경쟁제한성 심사 외에 기업결합 미신고, 기업결합 심사기간 중 기업결합 이행금지 의무 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절차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Facebook/Whatsapp, 2019년 GE/LM WIND 기업결합에 대해 EU 집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으나, 추후 절차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각각 110백만 유로, 52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우리기업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 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으며, 2021년 1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무엇보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 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3년 6월 EU집행위가 경쟁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제정안을 발의한 후, 2014년 4월 유럽의회는 동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 11월 10일 각료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2018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이 해당지침의 내용을 자국법률에 반영 완료하였다. 정보접근권한 강화, 경쟁당국의 결정의 증거력 강화 등 손해배상소송제기시의 장애물들이 많이 제거되어, 피해자들의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르텔 자진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절대공개 불가임을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경쟁당국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에는 그간 집행위의 고시(notice)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진신고감면제도에 대해 회원국들을 직접 구속하는 집행위 규정(regulation)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집단손해배상청구제도(Collective redress)와 관련해서는 EU집행위는 2013년 6월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common principles for collective mechanisms)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경쟁법위반행위를 포함 EU법상의 권리침해 모두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에 관한 것이며, 회원국들에 대해 구속력은 없다. 아울러 EU 경쟁당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바, 이미 2011년 EU 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춰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

고, 기업결합심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EU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CN) 소속 개별회원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 공정위,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및 국제포럼(ICN, OECD, UNCTAD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공조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촉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 공정위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간 경쟁정책분야 양자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2009년에는 '한-EU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그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강화해왔다. 그 외 2011년 EU경쟁당국은 미국-EU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력지침을 개정하였고, 러시아 경쟁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스위스, 중국과도 경쟁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EU경쟁당국은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심사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조금 심사부분은 EU경쟁당국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EU경쟁당국은 회원국내 조세심판 관행(tax ruling practices)을 조사해 왔으며, 2015년 10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피아트(Fiat)[225]와 스타벅스(Starbucks)[226]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었다고 결론짓고 세금추납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16년 8월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대해 불법적인 조세특혜를 주었다며 130억 유로를 애플로부터 환수하라고 명령[227]한데 이어, 2017년 10월에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아마존에 대한 조세특혜 2.5억 유로를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애플에 대한 조세특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아일랜드 정부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에 제소하였다. 현재 나이키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세제혜택이 불법적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225) 피아트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9월 패소하였다.

226) 스타벅스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9월 승소하였다.

227) 애플은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7월 승소하였다. 이후 2020.9월 EU 집행위는 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하였다.

EU 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라는 3가지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경쟁을 억제하고,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일시장화, 고용, 환경보호, R&D와 혁신 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의 개별 회원국들은 자국의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의 하나인 국가보조금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U 이사회의 멤버로서 EU 법령을 제정하는 기능도 행하기 때문에 EU 차원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갈등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EU 회원국들은 투자 보조금을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반면, EU 집행위는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EU 단일시장 내 경쟁이 왜곡되고 회원국 간 보조금 지급경쟁이 펼쳐지게 될 경우 자칫 EU 통합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투자 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이 다른 요소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보조금 지급에 엄격한 잣대를 취하고 있다.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스코어보드(State aid Scoreboard)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철도, 공공서비스 제외)은 3,843억 유로(EU GDP의 2.4%)였다. 이는 19년도 1,351억 유로(EU GDP의 0.81%) 대비 137% 증가한 수치로서, COVID-19 관련 보조금 지급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전체 보조금 중 COVID-19 보조금은 건수 기준 총 384건(6%)에 불과하나,

금액기준 총 2,280억 유로(59%)로서 전례없는 수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COVID-19와 무관한 보조금은 총 1,564억 유로로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는데[228], 이에 대해 EU집행위는 보조금 통제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분야별로는 환경 및 에너지(770억 유로), 지역투자(183억 유로), 연구개발 및 혁신(164억 유로) 순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당해 3개 분야 총액(1,117억 유로)이 전체 COVID-19와 무관한 보조금 총액의 72%를 차지하였다.

새로운 프레임웍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이루어져 왔다. 2012년 1월 30일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이 에너지, 교통, 통신, 우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 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 5월에 EU 집행위는 국가보조금현대화(SAM: State Aid Modernization)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단일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동 프로젝트에 따라 2013년 6월 'Regional Aid Guidelines', 2014년 1월 'New Risk Finance Guidelines' 등이 채택되었다.

2019년 12월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에는 녹색전환, 디지털전환 등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럽 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 Interest, 이하 IPCEI)에 대한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1월), 기후·환경보호·에너지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2월), 연구개발혁신 보조금 심사기준(2022년 10월) 등이 개정되었다. 특히, IPCEI는 다수 회원국이 공동으로 개별 국가를 뛰어넘어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기술 혁신 및 기반 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EU는 2022년 말까지 초소형전자공학(2018년 12월 17.5억 유로), 배터리공급망(2019년 12월

228) 2019년 대비 91.2억 유로 증가했으나, 당해 증가액은 19년도 기준 전년대비 증가액(134.4억 유로)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32억 유로, 2021년 1월 29억 유로), 수소(2022년 7월 54억 유로, 9월 52억 유로) 분야 IPCEI에 대한 보조금을 승인하였다. 한편, EU는 2020~2022년 동안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Temporary Framework for State aid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in the current COVID-19 outbreak)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Temporary Crisis Framework for State aid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following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 by Russia)을 채택하여 수 차례 개정하기도 하였다. 2021년에는 지역투자 보조금 심사기준(regional aid guidelines)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이 유럽 낙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시 회원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EU 집행위는 2021년 7월 헝가리의 SKBM 지역투자 보조금(90백 만 유로), 2022년 3월 폴란드의 LG에너지솔루션 지역투자 보조금(95백만 유로), 헝가리의 SK On Hungary 지역투자 보조금(2.09억 유로) 지급계획 등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1월 기준 헝가리의 삼성SDI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 지급계획(1.08억 유로)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2021년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EU 전체인구의 47%(28개국 기준)에서 48%(27개국 기준, 영국 탈퇴)로 확대되었으며, 지역별 인구, 1인당 GDP,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 지역[229]을 재지정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의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을 확대한 반면, c지역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이 강화되어 새로운 혁신공정 적용을 위한 기존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었다.

한편, EU는 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들이 EU 내 상품·서비스 판매, 기업 인수합병, 공공조달 분야의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역외보조금(foreign subsidy)를 규제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율 법안(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5월 집행위가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을 발표한 이후, 2022년 6월 집행위, 유럽의회 및 이사

229) 지역투자 보조금은 생활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실업이 심각한 지역(a지역),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 지역(c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a지역이 c지역보다 더 낙후된 지역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도 a지역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회는 3자 합의를 통해 동 법안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2022년 11월 10일 유럽의회는 동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230]. 동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역외 기업이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참여시 사전에 EU 집행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역외 기업이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EU 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보조금으로 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상당한 자구노력이 없는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 규모·기간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채무보증, 기업결합을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공공조달에서 과도하게 유리한 입찰을 가능하도록하는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란 일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한 역외적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과 함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판례규범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텔이나 기업결합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확립된 국제규범(settled law)으로 자리잡았다.

스웨덴의 경쟁정책은 1993년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근거로 기업들의 반경쟁적 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 지배적 지위 악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지하는 한편, 경제·통상행위의 집중(concentration between undertakings)을 규율한다. 원활히 작동하는 시장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를 모토로 하는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은 ①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 등을 통한 조사, ②위법 여부 결정 및 벌금 부과 권한을 행사하며 경쟁청이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될

230) 2022년 11월말경 EU 이사회 승인 이후 관보 게재절차를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일로부터 규정별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경우에는 스톡홀름시 법원이 반경쟁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은 EU 기업과 비 EU 기업 간에 EU 관련 협정 범위 내에서 일정한 차별(예: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 등 관련)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대외경제법」상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있으나, 유통분야를 포함 모든 산업분야에서 내외국인간 동일한 경쟁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 기업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 기업 인수 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enkungen)에 따른 합병(50% 이상의 지분 인수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등)이 진행되고,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동 법에 정해진 규모(참여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5억 유로 이상의 매출 달성 등)를 넘을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를 당국(Bundeskartelamt)에 사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업·은행업·전당포업·경매업·도박·부동산중개업·국방/보안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독관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노르웨이는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1993년 제정)」 및 「경쟁법(1993년 제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가격·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관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연간 매출 10억 NOK(약 1억 미국달러, 2022년 12월 환율 기준) 이상인 기업이 합병을 원할 경우 기업은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에 신고해야 하며, 경쟁청은 합병 3개월 내 최종신고(complete notification)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경쟁청은 신고 접수 후 근무일 25일 내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접수 후 근무일 70일 내 예심판결을 통보한다. 기업은 예심 판결 후 근무일 15일 내에 회신을 해야 하며, 경쟁청은 기업의 회신을 참고하여 회신일로부터 15일 내에 최종판정을 한다. 기업합병(특히, 시장점유율 40% 이상인 경우) 경쟁청(Competiton Authority)이 3개월 내 개입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내 최종판정을 한다. 비농업분야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지침을 수용 및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수산업·임업분야에서는 정부 보호조치(예외적용)로 인하여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한·EFTA FTA에 따라 노르웨이 내 반경쟁적 기업

활동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정부 간 협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및 「가격법」의 일부내용(가격독점행위)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협의(카르텔), 가격독점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행위"라 함), 불공정거래행위, 행정독점행위,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를 집행하는 기구는 크게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비 의결기구로서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독점지침의 제정 및 부처간 집행업무의 협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고 경쟁법 집행기능을 일원화하였으며 2021년 11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내 반독점법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반독점국 조직을 국가반독점국(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 성·시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직접 처리하나, 지방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은 관할 성급 시장감독관리국에 위임 처리한다. 중국의 경쟁법이 규율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반유형 및 그 법률책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점협의(카르텔)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협의·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수평적 독점협의'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수직적 독점협의'로 구분된다. 그 중 '수평적 독점협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간의 독점협의로서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을 의미하며, '수직적 독점협의'는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독점협의를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발개위는 「반독점법」상 규정된 자진신고관련 규정인 「수평독점협의 사건에의 리니언시(감면) 제도 적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카르텔 가담 후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징금 전액면제 또는 80%이상 감면, 2순위 신고자의 경우 30%이상 50%이하 감면, 3순위 이하 신고자에 대해서는 30%미

만 감면 폭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격법」이 적용되는 '가격독점행위'로서는 가격담합, 부당염매, 가격선동, 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리도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있다.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당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조직 또한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즉, 행정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상업적 뇌물행위, 허위광고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홍보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경품판촉행위,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한 경쟁자의 신용 및 명예 손상행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사업자의 정상영업을 저해하는 행위(이하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정당경쟁행위) 등이 존재한다. 반부정당경쟁법은 2017년 11월에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바, 기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열거되었던 끼워팔기, 원가이하 판매행위, 입찰담합, 공기업 및 법률상 독점기업의 거래상대방 지정행위, 정부기관 등의 행정권력남용행위는 반독점법 등 다른 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삭제되고, 인터넷 거래 증가에 따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정당경쟁행위를 신설하였다.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약 1조 7,0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약 3,400억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약 6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상담(商谈) 등을 통해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대부분이 경쟁제한심사(즉, 반독점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초심사(初步审查; 30일간)와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일간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전심사(약 120일정도 소요)를 받아야 한다.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 강력한 집행권한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의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하여는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협의를 실행치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만 위안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만元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행위유형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상업적 뇌물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염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부당한 경품판매행위, 입찰담합행위 등을 포함한다. 위반시에는 위법행위의 중지, 위법소득의 몰수, 과징금 부과(위법소득의 1배~3배), 20만元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그 중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낙찰무효처리 등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가격독점행위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법소득의 몰수조치, 위법소득 5배 이하의 과징금 병과, 500만元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업명령 또는 영업취소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상업적 뇌물행위, 입찰담합 등)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다.

베트남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기에 있으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경쟁법(Law 27/2004/QH11)」이 2004년 제정되고 2005년 7월 1일에 발표되었다. 베트남 「경쟁법」은 ①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과 경제 집중 행위

등의 경쟁 제한 행위와 ② 영업비밀 침해, 영업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 경쟁기업에 대한 중상모략 등의 불건전 경쟁행위를 규제하며, 개인 사업자와 기업(공공재·서비스 제공기업, 국가 독점 산업 부분 종사 기업,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 포함)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각 산업계 협회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경쟁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가서 회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시행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무역부 산하에 경쟁관리국을 설치하였다. 본 기관은 시장경쟁과 관련한 실질적인 관리기능을 담당한다. 경쟁관리국은 반경쟁적 행위 사건 접수·조사·심사·처리업무, 경제집중 규제는 물론, 시장지배기업과 독점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축·관리함으로써 산업무역부 장관의 경쟁정책 업무를 보좌한다. 이후 2018년에도 신 경쟁법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해 2019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이전 법률과 비교했을 때 신규 법률은 규제 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베트남인, 외국기관, 개인에 상관없이 규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확장했다. 경쟁 억제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란 시장의 경쟁을 제외, 축소, 왜곡, 또는 저해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기업 외에도 병원 또는 학교와 같은 공공부문 기관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종전 2004년 구 경쟁법의 결함 중 하나는 타 법에서의 경쟁 조항과 상충되는 경우, 법 집행기관과 권리 소유자가 불공정 경쟁 조치로서 어떤 집행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신법에서는 경쟁법과 타 법상 불공정 경쟁 조항 사이에 불일치 발생시, 타 법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국가기관은 기업, 개인, 기관에게 특정 상품의 생산 및 판매, 또는 특정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고,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체계 미비로 원활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 분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인도는 독립 이후 특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고, 1969년 「독점및제한적거래관행법(MRTP Act: 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제정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경제개방 이후 동법은 규율 대상이 독점 및 제한적 거래에 국한된 구시대적 법제로 평가되어 폐기되었고, 2002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이 제정되어, 2007년 및 2009년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쟁 정책 및 법제의 주요 규제 대상이 '독점'에서 '불공정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도 국내시장 뿐 아니라 국제적 형태의 경쟁 문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동법에 따라 2003년 경쟁법 집행을 위한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 기관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경쟁 촉진 및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자유 시장경쟁 보장을 위한 경쟁법 집행 및 준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벌금 부과 등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경쟁위원회 명령에 대한 불복은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에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경쟁보호법")에 시장에서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독점적 행위 및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시장점유율로 판단되는데, 1개 기업이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로 간주되며, 시장점유율이 35~50% 미만일 경우에도 반독점청이 지배적 지위로 판단하게 되면 독점 지위가 된다. 시장점유율이 35% 미만일 경우에는 비시장지배적 지위로 간주되나, 만약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유통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와 같이 경쟁법상 근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반독점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정부 기준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단일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로 판단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 지위로 지정될 경우 이들에게는 가격인상 또는 인하와 같은 독점적 가격조정이 금지되며,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의 회수조치,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야기하는 계약체결 행위, 특정 소비자에게 적절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있음에도 이를 부적절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이중가격설정행위, 타 기업의 시장진입과 탈퇴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행위 등이 금지되게 된다. 불공정 행위와 관련하여 러시아 경쟁보호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차별(거짓, 부정확, 왜곡된 정보의 유통) 행위를 통해 다른 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왜곡정보를 배포하여 타 법인에 손실을 주거나 법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 타 법인 제품과의 부정확한 비교, 타 법인의 제품, 상표, 로고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법인의 비밀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공표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러시아는 경쟁법 적용 예외를 두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는 북극지역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과학 및 교육발전, 기초과학 연구수행, 환경보호, 문화발전 및 문화유산 보전, 스포츠 발전, 농업생산, 국방 및 치안,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보건 및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독점청에 특혜 제공 목적, 향후 2년간 제공되는 특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독점청은 모든 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1달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독점청은 이러한 혜택부여가 경쟁제한을 유도한다고 믿을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2달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생산제품의 특성 및 정부정책상 독과점 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송, 전력공급, 철도수송, 운송터미널·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편서비스)에 대하여는 「자연독점에 관한 연방법률」(제정 1995년 8월 17일, 최근 개정 2017년 7월 29일)에 의거, 자연독점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독립 이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등 투명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년 7월 3일 도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97년 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2003년 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료하였다. Q.S.C.는 새로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 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전기 및 수도, 통신, 석유 제품의 유통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도 민영화하였다. 다른 많은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전력 및 담수 분야의 경우, 1990년 전력 부문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QEWC(Qatar Electricity & Water Company)가 과거 카타르수전력부가 보유하고 있던 발전·담수화 시설을 이전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카타르수전력청(Kahramaa)에 전력과 담수를 공급

하고 있다. 카타르는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연자원, 채광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회사에 대해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 국내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반가공품과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농업, 산업, 여가, 관광, 건강, 교육, 천연자원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국적 기업이 카타르 과학기술단지에 투자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의 장기 전략은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카타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사업 관행과 규정은 아직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집트는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이 여전히 국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행되어온 IMF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2004년 7월에 출범한 현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어 왔던 은행, 통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주요 국영기업들의 지분 매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원은 그간 민영화되었던 3개회사(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전 Morsy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 정부는 당분간 민영화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다만 2022년 외환보유액 부족 사태와 관련해 IMF의 민간기업 참여 재고 등의 요청사항에 따라 chill-out, wataniya 등 국영기업을 걸프산유국들에 매각하기도 하였다.

요르단은 과거 요르단 국영통신회사 등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에 독과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타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되어 왔으나, 요르단 국영통신회사를 포함하여 2005년 여타 국영기업들의 경우도 대부분 2010년까지 민영화를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요르단의 인가 은행 수는 2018년 기준

총 26개로 국내 상업은행 16개, 이슬람계를 포함하는 외국계 은행 10개로 구성되고 오프라인 점포수는 844개이다. 2018년 기준 요르단 인가 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약 719억 달러에 달하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융시장 미발달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은행을 통한 대출 및 financing의 경우 내외국계 기업간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들어 중앙은행의 민간은행 대출규제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요르단 내 외국기업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투자와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송금하며, 중앙은행에 통보 없이 투자관련 자금 이체 및 이관이 가능하다. 1996년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번하다.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 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채용 외국 인력은 전체근로자의 30%(QIZ의 경우 50%)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는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불법고용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200~500JD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정 고용시간은 주 48시간이며, 평일 125%, 휴일 150%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 150JD(약 210달러)이며, 인상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법정 최저근로 가능연령은 만 16세이다. 인건비는 급여, 사회보장세(기본급여의 18.75%로서 고용주 12.25%, 근로자 6.5% 분납), 의료보험으로 구성된다.

과테말라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꾸준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통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독점법(경쟁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EU와의 FTA 체결시 2016년까지 경쟁법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과테말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쟁법(안)이 독점기업들의 로비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인

하여 2017년 10월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헸고, 현재 아직까지 경쟁법이 없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 분야 이며 철강,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항,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가 민영화되지 않았다. 과테말라는 중남미 국가들 중 경쟁법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외형상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의 시장 개방 및 민영화가 이루어져 경쟁적인 시장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현지 유력가문이나 독과점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방해, 경쟁 제한적 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불완전한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 환경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자 혹은 유통업자들이 진출하기 어렵고, 폐플라스틱이나 타이어 재생업 등은 범죄조직이 장악하고 있어 시장 진출이 위험한 경우도 있다.

베네수엘라는 1992년 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은행, 식품 유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활동 영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레 독점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신부문은 아직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남아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정책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 전반의 경쟁 수준은 여전히

낮다. 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 2021/22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담합(cartel) 관련 조사 35건 가운데 14건을 공정거래 위반으로 법원에 제소하였다. 2021/22 회계연도에 공정거래위반으로 진행된 소송이 건수는 총 116건이며 답합 관련 소송이 80건으로 가장 많다. 116건 중 26건은 관련 업체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하였으며, 합의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2,464만 란드이다.[231].

세르비아의 「경쟁보호법」은 경쟁보호위원회(CPC)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카르텔 참여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인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2013년 10월 경쟁보호법 개정을 통해 경쟁보호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였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정의를 EU규범에 가깝게 조정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통상관광이동통신부 주도로 새로운 경쟁보호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232]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 경쟁보호법 도입은 지연되고 있다. 세르비아의 경쟁보호 노력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위원회(Foreign Investors Council, FCI) 2021년 백서는 경쟁보호위원회의 활동이 전년 대비 활발해졌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규 경쟁보호법의 조속한 도입과 위원회의 시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33] 국가보조는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에서 규율하고, 2019년 10월에는 국가보조 수단 명시, CSAS의 투명성과 독립성제고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조통제에 관한 법이 개정됐다.[234] 2022년 EU 국별보고서는 전년 대비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 집행력이 보다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235]. 다만 동 보고서는 전년 지적 사항과 같이 세르비아가 특정 국적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보조에 대한 통제와

231) 자료원: 남아공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Annual Report 2021/22

232) Emerging Europe, (https://emerging-europe.com/news/serbia-drafts-new-competition-law/)

233) 세르비아외국투자자위원회, https://fic.org.rs/wp-content/uploads/2021/11/White-Book-2021.pdf

234) Stojković Attorney, https://statt.rs/the-national-assembly-of-the-republic-of-serbia-adopts-a-new-law-on-state-aid-control/

235)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erbia-report-2021_en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보조는 비차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36]

코스타리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기본적으로 내국기업과 동등한 자격조건으로 국가경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전력, 관광인프라, 교통운송 등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투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코스타리카는「헌법」상 일부 국유사업을 제외하고 무역자유를 제한하는 독과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반재화에 대한 물가통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전력생성단가, 대중교통요금, 연료가격 등 일반 공공서비스요금의 경우 공공물가서비스청(ARESEP)에 의해 통제·관리된다. 이러한 코스타리카의 자유무역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외국인 지분 참여가 제한된 사업 분야가 있으며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통신, 보험, 석유수입의 3개 업종은 국가독점으로 규정되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CA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통신, 보험시장 개방요구를 수용하였으며, 현재 석유 수입에 대해서만 국가독점을 하고 있다. 국영공사(RECOPE)는 석유를 포함한 탄화수소(Hydrocarbon)의 수입, 정제,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경쟁정책과 관련「산업재산권법」,「저작권법」등 각종 개별 법령에 그 취지를 부여하고 있으며,「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으며 2011년 6월 29일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2012년 1월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활동은 주로 공정경쟁을 통한 국가경제 체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헌법」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63년 4월 27일 제정된「법률 제13호」는 기본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00년

236)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11월 1일 제정된 「법률 제112호」는 산업통상부가 석유류 제품의 지역별 소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탕도 가격통제 품목 중의 하나이다. 1998년 소비자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법제화(「법률 제358호」)되어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존의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년 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를 신설하였으나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 통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유선전화와 전력 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지금은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1994년 4월에 제정된 「반독점 및 경쟁 발전·보호를 위한 규제법」에 따라 반독점 생산자들을 감시 및 규제해왔고, 2009년까지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1년 7월 22일 「경쟁법」을 제정하였다. 현재는 「경쟁법」을 비롯하여 2011년 제정된 「자연독점법」, 1998년 제정된 「광고법」등의 기타 관련 법 및 규정이 존재한다.[237] 「경쟁법」은 경쟁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조직적·법적 기반을 정의하며, 독점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방지·제한·억제하기 위한 법으로, 키르기즈공화국 시장이 효율적으로 조성·기능하는 조건을 제공한다.[238] 동 법에 따르면 국내시장 지분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지배적 입장 즉, 독점생산자로 규정한다.[239] 그러나 「자연독점법」에 따라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 제품 운송, 천연가스의 운송·유통·저장 및 판매,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유통·판매·수송, 국가에너지시스템 제어 서비스, 중앙집중식 물 공급 및 하수도, 통신 및 우편 일반 사용 서비스, 철도 운송, 비

237)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743?cl=ru-ru,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71,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69

238)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239) 제4절,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행의 항행 보장, 국내 항공 운송 지상 서비스의 9개 영역을 자연독점 영역으로 지정하고 있다.[240] 키르기즈공화국 반독점 규제청 및 해당 부속 기관은 △상품 시장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경쟁 발전 및 보호, △독점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의 방지·제한·억제를 위한 조치 실현, △소비자와 자연독점 영역 생산자 간 이해의 균형 보장 및 소비자 판매 상품과 가격 규제 조정, △국가 차원의 소비자 권리 보호, △광고 소비자에 대한 국가 보호 구현 등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독과점 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통제한다.[241] 반독점 규제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연료 및 에너지 공단 제외, 통일된 국가 반독점 가격 정책 실현, △독점 경제 분야의 비독점화 조치 수립 및 이행, △독점금지법 개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광고 및 가격 형성과 적용 절차 개선에 관한 규제법 초안 수립 참여 등이다.[242]

240)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71

241)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7110 (2-3번)

242)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7110 (4번)



디지털 무역

개관

WTO 전자상거래협상 동향

1990년대에 들어 ICT의 빠른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자상거래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시현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1998년 2월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지속하는 데에 합의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다자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규범 논의가 시작되었다.[243]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의 전자전송 무관세 적용 관행을 지속하고 포괄적인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이 채택되었다.[244] 이후 1998년 9월 WTO는 포괄적인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로 하였지만 DDA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2017년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범 마련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245]

그러던 중 2017년 12월에 개최된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71개 회원국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개시를 목적으로 탐색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전자

243) WTO(1998), WT/GC/W/78; 박지현(2018),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20, pp. 4-5 참고.

244) WTO(1998), WT/MIN(98)/DEC/2 참고.

245) 박지현(2018), pp. 5-7; 이규엽·조문희·강준구·강민지(2018),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pp. 34-36 참고.

상거래에 대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3월에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되고 2020년 12월에는 각국의 제안서 내용을 포함한 통합문서[246]가 마련되었다. 통합문서는 6개 분야(Section)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Section A(전자상거래 원활화)에서는 전자 서명, 전자 송장, 전자 결제, 종이 없는 무역, 통관 절차, 운송 서비스 등의 내용을, Section B(개방과 전자상거래)에서는 비차별과 책임, 국경 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등을, Section C(신뢰와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비즈니스 신뢰(소스코드) 등을 다루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규정에 대한 미국과 EU의 입장 대립,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구 조항에 대한 선진국의 압박과 개도국의 저항, 전자 전송의 무관세 적용기간(모라토리엄 여부)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충돌 등이 발생되고 있어 조기에 높은 수준의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247]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구성

구분	소구분	내용
Section A (전자상거래 원활화)	A.1 전자거래 원활화	전자 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계약 전자송장(e-invoicing), 전자결재서비스
	A.2 디지털 무역원활화 및 로지스틱스	종이 없는 무역, 미소 마진(de minimis), 세관 절차 싱글 윈도우 정보 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로지스틱스(logistics) 서비스, 무역 원활화 강화 상품 반출과 통관을 위한 기술 사용, 무역 원활화 지원서비스
Section B 개방과 전자상거래	B.1 비차별 및 책임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인터렉티브(interactive) 컴퓨터 서비스(책임제한) 인터렉티브 컴퓨터 서비스(침해)
	B.2 정보의 이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 /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 금융정보 / 대상 금융서비스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팅 설비의 위치

246) WTO(2020), INF/ECOM/62/Rev.1

247) 이규엽·강민지(2021),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3, pp. 11-15 참고.

구분	소구분	내용
	B.3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B.4 인터넷과 정보로의 접근	공공데이터 개방, 인터넷 접근 개방/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 원칙, 인터렉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접근과 사용, 경쟁
Section C 신뢰와 전자상거래	C.1 소비자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원치 않는 상업 전자 메시지
	C.2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information/data) 보호
	C.3 비지니스 신뢰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Section D 공통이슈	D.1 투명성, 국내 규제 및 협력	투명성, 무역 관련 정보의 전자적 가용성(electronic availability) 국내규제, 협력, 협력 매커니즘(mechanism)
	D.2 사이버 보안	
	D.3 역량강화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Section E 통신	E.1 통신서비스에 대한 WTO 참고문서 업데이트	범위, 정의, 경쟁적인 세이프가드(competitive safeguards), 상호연결(inter-connection),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라이센싱(licensing)과 인증, 통신 규제 기관
	E.2 네트워크 장비 및 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장비와 상품
Section F 시장접근	서비스 시장접근, 임시입국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인원부족, 상품 시장접근	
Annex 1	서언, 정의,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일반적인 예외, 안보 예외, 건전성 조치, 조세, 분쟁해결, 전자상거래의 무역측면에 대한 위원회	

자료: WTO(2020), INF/ECOM/62/Rev.1을 정리한 이규엽·강민지(2021), p. 5, 표. 2 인용.

이와 같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회원국들의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제13차 WTO 각료회의가 2023년 12월 말 이전에 개최될 경우 그때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처럼 DDA 출범 이후 다자 차원의 디지털 무역 규범 마련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FTA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무

역을 규율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교역 당사국과 체결한 FTA에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 이전, 데이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무역 원활화를 위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중요함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미 FTA 제15.8조, 국경간 정보 흐름)하여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2010년대에 추진한 TPP, USMCA, USJDTA에서는 모두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대상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인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허용할 것(TPP) 또는 제한하지 않을 것(USMCA, USJDTA)을 강행의무로 규정하고 있다.[248] 그리고 TPP, USMCA, USJDTA는 공통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을 위한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① 자의적이거나 정당화 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과 ② 목적달성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제한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면서 USMCA와 USJDTA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necessary)' 조치인지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며 필요성 요건 강화하였다.[249] 이에 더해 TPP 및 USMCA의 '적용대상 주체' 정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및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제외되나,[250] USMCA 금융서비스 챕터는 별도로 국경간 정보 이전을 규정하고[251] USJDTA는 금융기관을 제외하지 않는다.[252]

EU는 일본과 체결한 EPA에서는 발효 후 3년 내에 동 협정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에 관한 규정의 포함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규정하고[253] WTO 협상에서는 국경간 정보 이전에 대한 규칙 제정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248) TPP 제14.11조 제2항, USMCA 제19.11조 제1항, USJDTA 제11조 제1항
249) TPP 제14.11조 제3항, USMCA 제19.11조 제2항, USJDTA 제11조 제2항
250) TPP 제14.11조 제3항, USMCA 제19.1조
251) USMCA 제17.17조
252) USJDTA 제1조 (e)
253) EU·일 EPA 제8.81조

위한 안전장치(safeguard)에 대해서 국경간 정보 이전 조항의 예외로 제안하여 정책공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254] EU는 기존 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강화하여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GDPR은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255] 국경간 정보 이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의 적정성 결정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EU 집행위가 승인하는 보호조치인 법적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이나 EU 집행위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EU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적절한 보호수준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EU 밖으로 정보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56] GDPR은 위반 시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과징금은 중요한 위반 사항인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4% 혹은 2천만 유로(약 250억 원) 중 높은 금액이 부과 받을 수 있다.[257] 한국은 2015년부터 GDPR 적정성 평가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나 2016년 10월 EU 집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적정성 불가를 통보한 바 있으며, 2017년 초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정성 평가 협상을 일임하여 「정보통신망법」으로 평가의 범위를 제한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258]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제·감독 권한이 일원화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21년 12월 17일 한국은 EU GDPR의 적정성 결정을 통과하였으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은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259]

254) WTO(2020), INF/ECOM/62/Rev.1

255) EU GDPR 제3조

256) EU GDPR 제44조-제50조

257) EU GDPR 제83조

258) 김현수 외.(2019),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제2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제도』, KIEP 연구보고서 19-15-2, p. 113 참고.

259) 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대응지원 센터(2021년 12월 21일 공지사항), "한-EU「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상 외에도 우리나라는 2020년 6월 22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을 개시하여 2021년 12월 15일 최종 타결하였다. 동 협상이 발효되면 양국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디지털화된 제품, 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가 보장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싱가포르 및 아세안 지역 디지털 시장에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60]

한편,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 국제세원잠식 문제를 논의하는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Pillar 1(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이하 '필라 1'), Pillar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하 '필라 2') 최종 합의문을 합의하여 140개 참여국 중 4개국(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을 제외한 136개국의 지지를 얻고 대외에 공개하였다.[261] 필라 1과 필라 2가 시행되면 구글, 넷플릭스 같은 IT 대기업 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자국 뿐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및 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의 매출이 한 국가에서 100만 유로(약 14억 원)를 넘기면 해당 국가는 그 기업에 과세할 수 있으며, 기업은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한다. 각국들은 필라 1의 합의 시점(2021년 10월 8일)부터 발효일 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세나 유사 과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필라 1이 시행되면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나 유사 과세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디지털세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합의안에 따르면 채굴업 및 규제된 금융업을 제외한 일정 매출

(Adequacy Decision)」최종 통과" 참고, https://gdpr.kisa.or.kr/gdpr/bbs/selectArticl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068&nttId=1121

260)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웹사이트, "한-싱가포르 DOPA 타결의 의의" 참고.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ksdpa/1/

261) OECD(2021),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https://www.oecd.org/tax/beps/developing-countries-and-the-oecd-g20-inclusive-framework-on-beps.pdf〉

및 이익률 이상의 모든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과제 대상이 될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여서 국가 세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기업의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황분석

디지털 무역 장벽의 유형이 다자·지역 통상협정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과거 미국이 참여했던 TPP(현 CPTPP) 협정부터이다. 동 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14)에는 전자적인 전송에 대한 과세를 금지한다는 조항(제14.3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제14.4조)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제14.11조),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소위 Data Locali- zation) 요구 금지(제14.13조), 그리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 또는 공개 요구 금지(14.17조)와 같은 네 가지의 의무를 두고 있다.[262]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의 통상장벽을 조사하여 매년 3월 말에 발표하고 있는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이하 NTE 보고서)에서 디지털 무역 장벽의 몇 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미국은 2016년까지 조사 분야[263]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오다가 2017년 NTE 보고서부터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Barriers to digital trade)으로 개편한 바 있는데,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장벽으로 각국의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 요구를 포함하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장벽, 디지털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차별적 조치, 인터넷 지원 서비스의 공급 제한, 기타 제한적인 기술 요건을 포함하는 등 장벽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264] 그리고 전술한 WTO 전자

262) 이와 같은 네 가지 의무에 위배되는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는 각국의 서비스·투자 유보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TPP 협정의 제14.2조 참고.

263) 조사 분야(categories)는 2016년 NTE 보고서 기준 10개임. USTR(2016), "201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참고.

264) USTR(2017, 2020),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2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참고.

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내용과 같이 향후 동 분야의 협상에서 다루어질 디지털 무역 장벽은 TPP 협정에서 고려되었던 사안에 그치지 않고 인터렉티브(interactive) 컴퓨터 서비스나 공공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관련 조치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장벽은 국가 간의 협정이나 각국의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일부 민감한 사안 또는 분야를 제외하면 디지털 무역 관련 장벽이 낮은 편이다. 선진국들과는 상반되게 개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많고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지역화와 같이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현지 공관을 통해 파악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각국의 법령과 주요 교역장벽이다.

먼저 선진국들의 디지털 무역 관련 법령과 장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그동안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 오다가 2018년 5월에 이를 대체하는 GDPR이 발효되었다.[265] GDPR은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경우에 더하여, EU 밖에서 EU에 있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 있는 정보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역외 기업(단, 간헐적, 소규모의 개인정보처리로써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의 경우 EU 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또한 GDPR에서는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어 IP 주소, 쿠키, 무선인식(RFID) 태그 등이 온라인 식별자에 포함되며, 삭제권(잊힐 권리)과 개인정보이동권 등이 신규로 도입되었다.

GDPR은 '컨트롤러(Controller)'와 '프로세서(Processor)'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컨트롤러는 적절한 문

265) EU의 GDPR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GDPR 대응지원 센터 (https://gdpr.kisa.or.kr/index.do)를 참고하기 바람.

서화 의무,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을 충족하는 내부 정책과 조치를 채택할 의무,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의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통지 의무,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는 적절한 문서화 의무, 적절한 보안기준 적용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국외전송 기준,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부담한다.

또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 GDPR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여 한다. GDPR은 적법한 역외 이전의 근거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에 따른 이전, 적절한 보호조치(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 등)에 의한 이전 등이 있다. 우리정부가 EU와 GDPR 적정성 결정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1년 12월 17일 EU 집행위는 한-EU GDPR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공식 채택하였고 이 결정은 즉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은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GDPR에서는 일반 위반의 경우 1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사업체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심각한 위반의 경우 2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4%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였다. GDPR 시행 후 2022년 10월 기준 EU(회원국)가 부과한 과징금 건수와 금액이 각각 1,352건과 약 21억 6백만 유로에 달한다. GDPR의 다수의 조문이 EU 회원국에게 일종의 자유재량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회원국 감독기관의 동향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EU의 GDPR과 관련하여 2020년 7월 EU 사법재판소가 EU·미국 간 데이터 전송 협약(Privacy Shield, Decision 2016/1250)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인 일명 '슈렘스(Schrems)Ⅱ' 사건의 판결에서 Privacy Shield에 근거한 미국으로의 데

이터 이전이 EU GDPR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Privacy Shield의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사례는 EU가 데이터의 역외 이전이나 컴퓨팅 설비를 역외에 위치시키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GDPR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데이터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정보, 파일과 자유에 관한 1978년 법률(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20일 GDPR의 내용을 반영하여 동 법을 개정하였다.[266] 따라서 프랑스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사항은 EU의 GDPR과 프랑스의 국내법인 「정보, 파일과 자유에 관한 1978년 법률」을 따라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2019년까지 컴퓨팅 설비의 위치를 EU 내로 제한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효성 및 프랑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현재 EU GDPR과 프랑스 국내법은 컴퓨팅 설비 위치를 EU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전술한 EU 사법재판소의 Privacy Shield 효력 정지에서 볼 수 있듯이 EU GDPR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EU 역외로의 데이터 이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프랑스 정부가 국가건강데이터허브(Health Data Hub)의 호스팅 기업을 당초 미국 기업인 Microsoft로 지정했다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가 국가건강데이터허브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EU 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된다.[267]

266) 프랑스는 EU의 GDPR을 반영하여 기존의 「정보, 파일과 자유에 관한 1978년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Loi n° 2018-493 du 20 juin 2018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을 제정하였음. 국회입법조사처(2019), 「유럽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강화」,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8호, p. 2 참고.

267) 그동안 프랑스는 민감정보인 개인 건강 데이터를 저장하는 설비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왔음. 프랑스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에 따르면 프랑스 의료 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 데이터 호스팅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관할기관(Comité français d'accréditation)으로부터 인증(certification)을 획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 호스팅 기업의 국적이나 설비의 위치를 프랑스 또는 EU로 한정하지 않음. 이러한 법적 근거 하에서 프랑스 정부는 국가건강데이터허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019년 7월 「보건체계 조직과 개혁에 관한 법률(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을 제정해 프랑스 공공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프랑스는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제한하지 않지만, 최근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사용된 뉴스에 대한 사용료 지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 콘텐츠 검열 이슈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는 사용자가 언론자유법, 형법 등에서 정한 각종 불법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가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은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지식재산법」에 따라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원으로 하여금 저작물의 권리자, 관계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침해사실에 대한 적절한 경고 조치 또는 중단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GDPR에 근거하여 역외국으로 고유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디지털 의료시스템인 'Telematikinfrastruktur'의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1년부터 '전자환자서류(ePA: elektronische Patientenakte)'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시스템에는 환자정보(보험, 의사 진단 및 소견서, 의료검사 기록) 등이 저장되며, 앞으로 EU 내 모든 의료기관이 동 시스템에 접근해서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독일은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 2020년 10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환자정보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 활용할 목적으로 국가건강데이터시스템(Système national des données de santé)을 중앙집중화된 국가건강데이터허브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데이터 호스팅 기업으로 Microsoft를 지정했었음. 그 과정에서 프랑스 내에서는 미국 기업을 호스팅 기업으로 지정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해외로 건강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으며, CNIL도 국가건강데이터허브의 호스팅 서비스를 해외 기업에 맡기는 것의 위험성을 지속 경고하였음.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 나갔으나, 2020년 7월 EU 사법재판소가 Privacy Shield 효력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2020년 10월 9일 CNIL도 이를 근거로 미국 법률이 적용되는 기업에 건강 데이터의 호스팅을 맡기는 것을 금지하였음. 결국 프랑스 정부도 국가건강데이터허브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EU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Microsoft가 아닌 EU 기업과 협력해 EU 내 설비를 두고 저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보호법(PDSG: Patientendaten-Schutz-Gesetz)」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독일은 2017년 10월 1일부터 불법 콘텐츠(가짜뉴스, 혐오발언, 폭력조장 등)를 방치하는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관계망에서의 적법성 관철 개선을 위한 법률(NetDG: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일명 '페이스북법(Facebook-Gesetz)'을 시행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등록된 사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는 불법 콘텐츠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24시간 또는 1주일 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이의제기자 수 및 해당업무 담당자 수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동 규정을 위반한 소셜 네트워크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500만 유로)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28일 발효된 개정법은 특히 독일법무부(BfJ)의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에 대한 감독 권한과 독일법무부 내 독일에 기반을 둔 비디오 공유 플랫폼 서비스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 중재기관의 설립안을 포함하고 있다.

스웨덴의 기존 「개인정보법(personuppgiftslagen)」은 2018년 5월 시행된 EU의 GDPR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IT 시스템 및 루틴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제공 및 공유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EU외 제3국으로의 개인 정보 이전은 1) 해당 국가가 합당한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보장한다는 EU 집행위의 적정성 결정이 있거나, 2)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 또는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과 같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했을 경우, 3) 기타 특정 상황 또는 개별 사안의 경우에 가능하다. 모든 EU 회원국은 GDPR 규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1개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스웨덴에서는 독립 감독기구인 IMY(Intergritetsskyddsmyndigheten)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관련 조사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스웨덴에서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가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의 미흡'(위반 조항 제5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G20 차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EU 경제재정 이사회(ECOFIN)은 2019년 3월 디지털 기업에 매출액에 기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단기 대책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스웨덴을 비롯한 일부 북유럽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21년 10월에는 G20정상들이 새로운 디지털세 도입 제안에 합의하였으나, '유니콘 기업의 나라'로 불리며 다수의 테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은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와 스웨덴 기업의 비용 증가 및 세금 분쟁 등의 복잡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빠질 수 있는 우려로 인해 디지털세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핀란드도 2018년 12월 EU GDPR의 국내 적용을 위해 「Data Protection Act(DPA)」를 제정·발효했다. 핀란드의 DPA는 EU GDPR의 내용을 대부분 따르고 있지만 몇 가지 규정은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연령을 13세로 설정(DPA 제5조)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개인정보 처리(DPA 제6조 제1항),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DPA 제6조 제4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DPA 제6조 제5항), 그리고 보건 및 유전자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경우(DPA 제6조 제6항)과 같이 특수 범주에 해당되는 개인데이터 처리는 GDPR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DPA는 개인식별번호의 사용 요건(법적 의무사항 실행, 대상자·시행자의 권리와 의무 구현, 과학·역사 연구, 통계 목적)을 명시(DPA 제29조)하였고, 개인 데이터 접근이 허용되는 비-공공 행위자를 명확히 규정(DPA 제31조)하였다. 그 외에도 DPA에서는 국가안보, 국방, 공공질서, 보안, 범죄 조사·예방, 보건관련 심각성, 핀란드나 EU의 중대한 경제적·재정적 이익을 위해 데이터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DPA 제34조), 개인 데이터 처리가 언론, 학술, 예술, 문학 관련 목표와 관련될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허용될 수 있다는 조항(DPA 제27조)도 포함한다.

한편, 핀란드는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지리정보 등의 국경간 이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에 대해 GDPR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온라인콘텐츠의 검열이나 특정 암호화기술 사용 요구는 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18년 5월 EU의 GDPR이 발효됨에 따라 「GDPR 이행법(Uitvoeringswet AVG/UAVG)」을 제정하여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Wet bescherming persoonsgegevens)」을 유지하면서 GDPR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법령에서는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이전 받는 국가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경우에만 외국으로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GDPR 제49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독립기구인 네덜란드 정보보호 위원회(Dutch DPA: Dutch Data Protection Authority)[268]가 감독기구 역할을 맡고 있다. Dutch DPA는 GDPR의 이행·감독을 위해 벌금 부과, 경고 및 주의, 데이터 처리의 일시 또는 영구 정지 명령, 제3국으로의 데이터 이전 중지 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2018년 5월 발효된 EU의 GDPR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면서 GDPR이 EU 회원국에 일부 유연성을 부여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 국내 정보 보호 관련 법안[269] 내용도 포함하는 새로운 정보보호법인 「Data Protection Act(DPA) 2018」을 제정하였다[270]. 「DPA 2018」에 따라, 아일랜드의 새로운 정보 보호 감독 기구인 정보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개인정보 처리가 전화, 이메일 및 SMS 형태의 스팸(spam)을 포함하여 특정 전자통신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GDPR 외에도 전자프라이버시 규정(ePrivacy Regulations 2011)이 적용된다. 한편, 아일랜드 의회는 현재 유해 콘텐츠 등으로부터 온라인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안전 및 미디어 규정 법안(Online Safety and Media Regulation Bill)」을 심의중[271]이다. 동 법안은 EU 개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국내 이행법 성격으로서 동 법으로 설립될 새로운 규제 기구인 미디어 위원회(Media Commission)는 강

268) 네덜란드 정보보호 위원회(Dutch DPA)의 네덜란드어 명칭은 Authoriteit Persoonssgegevens임. https://autoriteitpersoonsgegevens.nl/en

269) 관련 법안은 아일랜드의 기존 「데이터 보호법 1988」 및 「데이터 보호 개정법 2003」 그리고 EU의 법집행 지침(Law Enforcement Directove/Directive 2016/680)을 포함함.

270) https://enterprise.gov.ie/en/data-protection/

271) 동 법안은 2022년 1월 25일 발의된 후 상원 검토를 거쳐 2022년 10월 26일 현재 하원에서 검토 중임.

제 조사권 및 실질적인 벌금 부과(2천만 유로 상한 또는 매출액의 10%) 등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GDPR을 시행함에 따라 체코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Act No. 101/2000)」을 대체하는 「개인정보처리법(Act No. 110/2019)」을 2019년 4월부터 시행했다. 체코의 「개인정보처리법」에는 GDPR과 동일한 취지의 조항, GDPR이 유럽 각국에 자율성을 부여한 부문에 대한 재량입법, EU 형사사법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지침에 따른 체코 국내법 적용 내용 및 국방·안보 관련 개인정보처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체코 「개인정보처리법」에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규정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체코 국내에서는 GDPR(제V장) 조항이 적용된다. 체코의 개인정보 관할기관은 개인정보보호국(The Offic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UOOU)이다.

폴란드는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합리적 과세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와 시청각 상업 통신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s Taxes)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은 1.5%이다. 폴란드의 DTS 부과 조치에 따라 역외에서 폴란드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Netflix, Amazon, Apple TV 등도 세금을 내야하며, 폴란드 최대 인터넷 TV 서비스 기업인 IPLA 등도 DTS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헝가리는 2011년에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보 자기 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Act CXII of 2011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EU가 GDPR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헝가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보 자기 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을 수정·시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헝가리의 규제 체제를 GDPR에 맞추기 위해 금융, 건강, 소매 등 부문별 86개 조항을 입법 개정한 「Bill no. T/8016(Salad Act)」을 제정하였다. 헝가리에서는 NAIH(The Hungarian National Authority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가 GDPR 관련 사항을 감독한다.

헝가리는「온라인 무역 서비스 및 정보사회 연관 서비스에 관한 법(Act CVIII of 2001 on Online Trade Services and Services Connected to Information Society)」과 EU의「전자상거래 지침(Directive 2000/31/EC)」 등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규율하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사전 승인이 요구되지 않으며(단,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한 전자적 소통은 예외), EU 회원국에 위치한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어떠한 제약도 부과되지 않지만(단, 소비자, 아동,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위험을 구성하여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예외),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원거리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 외에 헝가리 정부는 합법적인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지만 형법상 금지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관할 정부 당국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도 EU 회원국으로 EU의 GDPR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진다. 그 외에 크로아티아는 국가간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제한, 소스코드 공개 요구, 특정 데이터의 국내 보관 강제 등과 같은 제한 조치가 없다.

세르비아 정부는 2018년에 EU의 GDPR에 기초하여「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2020년 1월 세르비아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이전 표준 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에 따라 세르비아에 기반을 둔 법인이 당사자 동의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허용 국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절한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는 국가 및 단체 목록'상의 대상으로 제한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 지역에 개인 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세르비아에는 컴퓨팅 설비의 위치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약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국외 클라우드의 경우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과 사업자와의 법률 계약에 기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OTT 서비

스는 「전자미디어에 관한 법(Law on Electronic Media)」에 따라 국내, 국외 사업자 모두 제약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불가리아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EU의 GDPR에 기초하여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Law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업무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CPDP: Commision for Personal Data Protection)가 담당한다. 불가리아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당국은 정보 주체의 합법적 이익 보호, EU 회원국 및 제3국의 공공질서 및 안보 위협여부, 범죄 행위의 심각성, 이전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02년 개인정보보호법(Act No. 428/2002)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었으나 2018년 5월 EU의 GDPR법의 시행에 따라 슬로바키아도 이를 기초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Act No. 18/2018 Coll.)을 새롭게 제정했다. 동 법에 따라 슬로바키아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비 EU 국가로 이전할 때 EU 집행위의 적정성 결정이 있다는 경우에는 특별 승인이 불필요하나, 적정성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보호조치를 실시 등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슬로바키아 전자상거래법(Act No. 22/2004)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보건, 환경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영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거나, 데이터보호법의 목적상 개인 데이터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리정보의 국외반출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 의료기록 중 일반적으로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로 간주되어 국외 이전이 제한된다. 그 외에 영국은 OTT 서비스를 ODPS(On-Demand Programme Service)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노르웨이는 디지털무역에 관해서는 가장 개방된 국가의 하나이며,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개방된 디지털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272] 2020년 4월 1일부터 VOEC(VAT on E-Commerce) 실시에 따라 노르웨이 내 연 매출이 50,000 NOK를 초과하는 외국계 온라인 판매업자는 노르웨이 국내 소비자에 대한 저가 상품(청구서 총액 기준이 아닌 품목당 3,000 NOK 이하)의 국경간 B2C 판매에 대한 VAT를 지불하여야 한다. 외국 회사가 VAT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VAT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VOEC를 위해 마련된 간소화된 등록 절차 또는 기존 일반 등록 절차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VOEC 범위 내 상품은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VOEC 등록업체가 발송한 경우 세관 신고 적용도 받지 않는다.

스위스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연방법(FADP)」,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연방법 조례(OFADP)」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법(TCA)」이 있다. 그리고 스위스는 최대 교역 상대인 EU의 GDPR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스위스의 FADP는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전자 데이터 처리(Electronic Data Processing)와 수동 파일(Manual Files)에 적용된다. 스위스는 데이터 수신 국가의 데이터 보호 수준이 스위스나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수준과 적정 기준 이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의 국외 전송을 허용한다.

캐나다는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을 마련하고 있고, 주와 분야에 따라 연방정부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주정부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먼저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는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정보에 관한 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을 따르면서 PIPEDA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앨버타주와 BC주 및 퀘벡주의 경우 PIPEDA 대신 관련 주정부법을 따르고 있으며,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PIPEDA 대신 각 주의 개인의료정보법을 따르는 주(온타리오주, 뉴브런즈윅주, 노바스코샤주, 뉴펀들랜드주)도 있다. 그리고 공공분야의 경우 연방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과 각 주・준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고 있다.

272) European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 참고.

최근 캐나다에서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들은 PIPEDA 및 관련 주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단, BC주와 노바스코샤주만이 주정부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보유중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PIPEDA 및 관련 주정부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기관들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또는 제3자 위탁이 필요할 경우 해당 개개인에게 그러한 사실과 해당 정보를 열람 가능한 해외 기관이 누구인지를 통보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캐나다는 지리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두지 않고 있지만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개인을 식별하는데 있어 해당 지리정보가 하나의 단서가 된다면 개인정보로 간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의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캐나다는 PIPEDA에 따라 금융분야에서 고유식별 정보(personal information)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지 않으며, USMCA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관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국내 설치를 요구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법과 대부분의 주정부법은 의료정보의 보관을 캐나다 내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뉴브런즈윅주의 경우 주정부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료정보의 보존 및 열람을 캐나다 내로 제한한다. 그 외에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OTT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나, 금융, 의료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는 연매출 3백만 호주 달러 이상 모든 분야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서도 별도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입법하고 주정부 기관과 주지역내 보건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개인정보원칙(Australia Privacy Principle)을 수립하고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을 허가하고 있으며, 무역협정 체결시에도 금융관련 개인정보 및 처리시설에 대한 국외 설치를 금지하는 제한을 유보하는 등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최근 호주

2위 통신사인 OPTUS社의 해킹사건으로 98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민간의료보험 기업인 Medibank社도 해킹으로 인한 약 390만여 명의 개인정보 탈취사건 등 역대 최대수준의 개인정보 탈취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개인정보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반면 호주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OTT 서비스의 예를 들면, 호주 정부는 OTT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 이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 외에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호주 정부는 OTT 서비스에 대해 호주 국내제작 콘텐츠 의무비율(호주 제공 프로그램의 20%를 국내제작 및 전체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20%를 아동용으로 국내제작)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20년 12월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 기관의 개입·위험관리 장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위원(Privacy Commissioner)의 역할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The Privacy Act 2020)」을 시행하였다. 동 법에 따르면 국외기관과의 정보공유협정을 제한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위원(Privacy Commissioner)의 권한으로 개인정보보호국간(privacy enforcement authority)은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특히 뉴질랜드 정부는 동 법의 8부 193조(Part 8 Section 193)에 따라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정보가 제3국으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어 뉴질랜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OECD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경우 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한다. 따라서 뉴질랜드 내 기관은 해외로 개인 정보를 전송시 뉴질랜드 보호법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호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며, 해외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계약시 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영화·비디오·출판물 분류법(Films, Videos, and Publications Classification Act)」에 따라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 콘텐츠 검열 등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뉴질랜드 국민을 보호하는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①개인정보 보호 및 지적 재산권 보호, 보안 등을 확보한 후, ②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Data Free Flow With Trust' 구상 아래,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통해 경제·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디지털 무역 장벽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해외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보유한 외국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정보 이전인 경우에도 본인 동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일본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가 아닌 '개인관련 정보'를 별도로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 '개인관련 정보'란, 인터넷 열람 · 검색 이력, 위치정보, 쿠키정보 등(행태정보, 기기정보 등) 정보 제공자에게는 개인정보가 아니나, 제공받는 자에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개인 식별을 위해 다른 정보와 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관련 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개인관련 정보를 식별 목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 제공자는 제공받는 자가 본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및 사실을 기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개인관련 정보를 국외에서 제공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제도 ·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계획 등을 제공하고, 본인 동의 획득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일본은 의료정보에 대해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법령 규정이 없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의료정보를 취급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의료정보를 수탁 관리하는 정보처리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국내법의 집행이 미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거나 컴퓨팅 설비를 국내로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日 FISC(금

융정보시스템센터, 비영리재단)의 '안전대책기준'에서 금융정보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거점은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 지역(국가, 주 등)에 소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도국의 디지털 무역 관련 법령과 장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는 금융분야의 개인신용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한다. 싱가포르 Credit Bureau[273] 연합회(Credit Bureau Singapore)에 의하면, Credit Bureau는 싱가포르 국내 회원사에만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는 금융분야 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국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해외 설치를 허용한다. 싱가포르의 「Personal Data Protection Act(PDPA)」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싱가포르 영토 밖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기관이 준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PDPA 가이드라인(Advisory Guidelines on Key Concepts in the PDPA)을 통해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도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의무기록의 해외 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동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기관이 준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홍콩의 「개인정보법(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은 1996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두 차례의 개정(2012년 1차 개정, 2019년 2차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되었다. 1차 개정에서는 기업들의 직접 마케팅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중심이 되었으며, 2차 개정은 고객정보의 취급 및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정보 및 거래에 관한 2008년 법률(Law No. 11 of 2008)」과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의 공급에 관한 정부규정 82호(Reg 82

273) 싱가포르의 「Credit Bureau Act」 제2조에 의하면 Credit Bureau는 '신용보고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음.

of 2012, 2012년 10월 시행)」에 따라 '대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시스템 운영자'들은 데이터센터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두어야만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디지털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건의 법령[274]을 제정하고 2020년 8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조치의 시행으로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포함)들은 인도네시아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전자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재무부장관령 No.48/PMK.03/2020(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48/PMK.03/2020)」의 제3조(Pasal 3)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①1년 매출액 600백만 루피아 또는 1개월 매출이 50백만 루피아를 초과하거나, ② 1년 방문객이 12,000명 또는 1개월 방문객이 1,000명 이상인 경우가 납부대상이며 2020년 8월부터 공식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출한 국제 조세 합의에 동참함으로써 현재 도입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2023년 관련 협약이 완비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Law, 24/2018/QH14)」을 통해 사이버 공간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규율하고 있다.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7개의 장과 4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 제26조의 1항 및 2항에 따르면 동 법의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콘텐츠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제공, 게재, 전송될 수 없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 제26조의 3항에서 베트남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등은 베트남 내에서 일정 기간 저장되어야 한다는 의무와 함께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개발·분석·처리하는 국외 업체는 베트남 내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75] 한편,

27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와 금융 안정을 위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20)」과 「국외에 있는 과세 대상 무형 상품 및 서비스 기업들의 디지털세 납부 의무 지정에 대한 재무부령(No.48/PMK.03/2020)」임.

275)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Law, 24/2018/QH14)의 제26조 3항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관계 관련 데이터, 베트남의 서비스 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집·개발·분석·처리하는 업체로서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의 사이버 공간상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의 업체는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 내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규정한 외국 업체는 베트남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베트남에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으며 「사이버정보보안법(LOCIS, Law on Network Cyberinformation Security, 86/2015/QH13)」과 「사이버보안법」에 관련 조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276]

2022년 8월 15일, 「사이버보안법」 일부 규정의 시행령인 「Decree No.53/2022/ND-CP」이 제정되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사이버보안법」은 통신서비스, 사이버 공간에서의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서비스, 베트남 사용자를 위한 국내 또는 국제 도메인 사업,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결제 대행,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통수단 연결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이메일 서비스 등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된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베트남 내에서 전술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 기업들은 사용자의 계정이름, 전화번호, 신용카드 정보, 이메일 및 IP주소, 서비스 사용시간, 가장 최근의 로그인 내역 등 베트남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베트남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에 저장해야만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및 비즈니스의 거래 촉진을 위해 EU의 원칙과 유사한 데이터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13년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만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처리된 개인정보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이용자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자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식적인 검열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법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웹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번역자료 참고.

276)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국가정보_베트남 웹사이트 참고.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vietnam.do

태국의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ct, B.E. 2562 (2019)」은 2019년 5월에 부분 발효되었다가 2022년 6월 전면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제33조 1항과 2항은 개인 정보가 이용 또는 공개 목적에 따른 필요를 다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또는 공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 개인정보 관리자가 더 이상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 개인 정보 삭제, 파기하거나 개인정보 주체의 신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정보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의 제28조에 따르면 정보처리자의 활동이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관련될 경우 전송된 데이터의 도착국가 또는 최종 국제기구는 충분한 데이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수집자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고유의 정보보호 정책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가 수집자의 해외 자회사 등으로 전송될 경우에는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제29조), 해외에 거주하는 정보통제자는 태국 내 대표책임자를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정보통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7조 5항). 한편 태국은 2007년에 제정된 「컴퓨터범죄법(Computer Crimes Act, B.E. 2550(2007)」에 따라 동 법을 위반한 컴퓨터 데이터,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데이터 또는 공공질서 및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컴퓨터 데이터 등을 관련 부처의 장관이 법원 요청을 통하여 차단, 배포금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태국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B.E. 2544(2001)」과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Act, B.E. 2562(2019)」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2012년 8월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Act, RA 10173)」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직간접적 조합을 통해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며, 개인정보의 처리가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개인과의 계약이 있거나 또는 법률상의 의무 또는 헌법이나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가진 주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행, 시설보호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National Privacy Commission)에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한편 2020년 5월 필리핀 의회는 디지털 세금 도입을 통한 세수 확보를 골자로 하는 법안(HB 6765)을 마련했으며, 2021년 9월 21일 필리핀 하원이 디지털세 법안(Digital Tax: House Bill 7425)을 승인하였다. 동 법안은 2021년 10월 현재 미발효 상태이다. 필리핀의 디지털세 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필리핀 내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non-resident digital service provider)의 12개월 기준 총 매출(gross sale)이 300만 페소(약 6만 달러)를 상회할 경우(단, 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순이익(net income) 기준 25만 페소(약 5천 달러) 이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세율은 12%이다. 그리고 동 법안은 구독서비스나 여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는 물론 각종 전자상거래(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 포함)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인도의 규제는 「헌법」, 「정보기술법(IT Act 2008)」과 「합리적인 보안 관행 및 절차와 민감한 개인 데이터 또는 정보 규칙」(2011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정보기술법(IT Act 2008)」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민감정보(sensitive data) 또는 정보(information)를 보관,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법인이 합당한 보안 관행의 이행 및 유지에 소홀하여 정보주체에게 부당한 손실이나 이득을 초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77] 2017년부터 인도에서 「헌법」 제21조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후 2018년 법안의 초안이 마련되었고, 2019년 12월 인도 의회에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19)」(이하 PDPB)이 상정되었으나, 2021년 10월 현재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다.

277) 인도 「IT법(IT Act 2008)」, 제43A조; 한국인터넷진흥원(2021), 「인도 개인정보보호 법 행정 체계 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20.12월 기준)」, p. 1의 번역문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rivacy.go.kr/pic/reference.do?divtype=2)

인도의 PDPB에서는 정보가 수집된 당사자를 '정보 주체(Data principal)'로, 해당 정보의 취급자는 '정보 수탁자(Data fiduciary)'로 정의하고, 정보 수탁자가 일정 기준이 충족된 플랫폼을 통해 정보 처리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일정한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사전 동의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정보의 비개인화 데이터를 인도 정부에도 공유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시 인도 정부는 별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정보와 관심 사항 등을 쉽게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규제 없이 사용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의 '개인정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의 특징, 속성 또는 그러한 특징의 조합 또는 그러한 조합과 다른 정보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가 넓다. 한편, PDPB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인도에서 OTT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도 관련기업들의 단체인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는 '온라인 큐레이팅 콘텐츠 공급자 자체 규정(Self Regulation for Online Curated Content Providers)'을 발표하고 협회 내 감독 기구인 Digital Curated Content Complaint Council(DCCC)을 신규 발족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OTT 기업 대상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동 규정에 합의한 OTT 서비스 내 동영상의 경우 협회의 콘텐츠 검열 결과 인도를 어떤 형태로든 모욕하거나 인도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테러리즘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콘텐츠는 방영 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헌법(Constitution Law)」, 「민법(Civil Code)」, 「형법(Criminal Law)」 등 전통적인 일반법규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일반적인 규제는 「정보통신법(Law on Telecommunication)」을 따르며,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Law on E-Commerce)」에 기초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보관, 보호 등이 규율된다. 이와 함께 금융이나 의료와 같은 특수 분야의 개인정보는 「금융기관법(Law 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 1999)」과 「의료기관법(Law on the Management of Private Medical, Paramedical and Medical Aid Profession 2000)」에 의해 보호된다.

캄보디아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금융기관법」 및 「의료기관법」에서 일반적인 고객정보로서 보호 의무를 규정할 뿐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고, 그 외의 법령에서도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는 컴퓨팅 설비의 위치나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특정 암호화기술 사용이나 소스코드 공개·이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몽골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였으며, 동 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이나 제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컴퓨팅 설비의 위치 제한과 관련하여 몽골은 「정부안보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정보화시스템 등 국가보안시설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통신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컴퓨팅 설비의 위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몽골은 도박, 성인사이트 등 공중도덕에 위해를 가하는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음란방지법」, 「아동권리보호법」, 「광고법」, 「형법」, 「소비자보호법」, 「지적재산 및 저작권보호법」 등 개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소관 행정청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청이 차단한다. 한편 몽골 정부는 2010년 "정보안보확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정보안보법, 전자사인법, 데이터보호법의 제정과 통신법, 정부안보법, 재난법, 문서기록법, 지적재산법, 저작권법, 특허법, 민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 법률에 대한 개정 및 전자사인법의 제정만이 이루어졌고 정보안보법과 데이터보호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2017년 7월에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보호와 관련된 활동의 원칙과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관련법[278]에 따라 영토와 관련된 지리정

278) 「개인 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법률」, 「투르크 공무원법」, 「상업적 비밀에 관한 법률」 등이며, 해외로 정보이전에 관해서는 「개인 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제한이 명시되어 있음.

보, 개인정보(개인 및 법인), 금융정보, 의료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전송(인터넷을 통한 전송을 포함)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정보 자원은 비밀로 분류되며, 이의 수집 및 처리는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수행되고, 이에 대한 의료인의 접근은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은 사법기관 및 기타 국가 기관과 환자에게만 허용된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4년 12월에 승인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인터넷 개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에 근거하여 서비스, 웹사이트 및 메신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모두 차단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모바일·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들에 대해 감시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이 없으며, 해외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가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한다. 그리고 동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중도덕의 보호,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지키스탄이 인정하는 국제협약에 따를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한다. 그 외에 타지키스탄 정부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극단주의 관련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 2항을 근거로 일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등 콘텐츠에 대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법」(2008년 4월 제정, 2017년 7월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동 법 제25조 '개인정보의 역외 전송'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개인정보 소유자가 개인정보를 키르기즈 역외로 전송할 시, 정보를 전송 받는 이가 위치한 국가와 키르기스스탄 간의 국제협약 유무에 따라 수신자는 키르기즈공화국이 지정한 적절한 수준

으로 개인 정보 주체의 권리,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즈 내 개인정보 혹은 키르기즈를 거쳐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왜곡 및 무단 사용을 배제하는 법적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주체의 당사자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가 있을 시, △개인정보 주체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보 전송이 이루어져야 할 시, △개인정보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에 있을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자유 보장이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도 개인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 인터넷 등 전 세계적인 정보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할 시, 개인정보 소유자이자 정보 전송자는 정보의 비밀보장을 준수하여 정보 보호가 가능한 방법으로 전송을 할 의무가 있다.[279]

파푸아뉴기니의 현행 법령에서는 개인정보의 저장·관리 위치를 국내로 한정하거나, 타국 국민 소유 소스코드의 알고리듬의 이전을 요구하는 등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러시아는 「개인정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개인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개인정보의 자동처리 시 개인 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협약」당사국 및 동 협약 당사국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 국가(관련 법령으로 해당국가 목록 승인, 한국 포함)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동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러시아의 헌법질서 기초, 공중도덕과 건강, 시민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방 및 국가 안보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그 외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개인정보주체가 정보 이전에 동의한 경우, 러 연방의 협약에 규정된 경우, 러 연방의 헌법질서, 국가 안보 보호 등의 목적으로 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 개인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수행 목적인 경우, 개인의 생명, 건강, 기타 중요 이익 보호목적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279)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2269

러시아는 「국가기밀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또는 국제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해당 국가기밀 정보 보호 관련 부처간위원회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밀은 군사, 외교 정책, 경제, 방첩 작전 및 수색활동 분야의 정보로써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해당 정보가 확산될 경우 러시아 연방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며,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러시아 연방 및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도 포함된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처리절차 확립에 대한 개별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을 시행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현지화를 규율하고 있다. 동 법을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제18조 제5항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내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다만, 러시아 연방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는 러시아 내 데이터저장서버의 현지 구축 요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처리절차 확립에 대한 개별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은 개인정보를 기본 데이터와 서브 데이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백업용 서브 데이터로써 러시아인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외에 동시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는 2021년 7월 1일 제정된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연방 법률」에 따라 1일 50만 명 이상의 러시아 이용자를 가진 해외의 정보자원 소유자들에게 러시아 연방에 지사, 대표사무소 또는 법인 설립 의무를 부과하며, 정보통신언론감독청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 웹사이트에 계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대중매체법(Law on Mass Media)에 따라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웹사이트를 법원의 결정 없이 차단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권단체 홈페이지나 온라인 뉴스매체의 웹사이트들이 주기적으로 접속 차단되고 있다. 2021년 5월 7일 벨라루스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관련 법령

(No.99-3, 제9조)」을 발표하였으며, 동 법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벨라루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센터(https://cpd.by)를 두고 있다.

멕시코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논의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9년 12월 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정식으로 승인된 후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이 시행됨에 따라 멕시코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의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가 멕시코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 세율 16%의 부가가치세(디지털 서비스세)를 납부해야 한다. 멕시코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8-B조에 따르면 동 세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지, 영화, 텍스트, 정보, 비디오, 오디오, 음악, 게임, 기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다운로드 및 접근, 멀티플레이어 환경, 모바일 벨소리 다운로드, 온라인 뉴스, 교통정보, 일기예보, 통계의 열람(단, 전자 책·신문·잡지의 다운로드 및 접근 제외),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자인 제3자와 수요자 간의 중개 행위, ▶온라인 클럽 및 데이트 사이트, ▶원격 학습·시험·운동이다.

아르헨티나는 2000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5,326호(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Ley 25.326)를 제정하여 파일, 데이터 등 공공 또는 민간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공공정보접근청(Agencia de Acceso a la Informacion Publico)을 설치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동법 12조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가 불가능한 국가 간 또는 다자·초국가기관 간 개인정보의 이동을 금지하지만, 국제사법을 위한 목적, 의료 또는 전염병 연구 목적, 합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금융 거래 목적, 조직범죄·테러·마약밀매 등 범죄 대응 및 방첩 목적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칠레는 2020년 2월에 디지털 세금을 도입하였으며, 2020년 6월부터 칠레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해외기반 디지털서비스(넷플릭스, 에어비엔비 등)에 부가세 19%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와 디지

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2020년 6월에 동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국내 절차에 따라 2021년 11월 23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되었다.

과테말라에는 아직까지 전자상거래 및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며, 헌법 제24조에서는 통신 및 디지털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서신, 문서 및 서적에서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권리 보호, 개인 데이터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관련 항목의 배포 금지를 제공하는 세 가지 법률안(제4054호「사이버 범죄 방지법」, 제4055호「정보통신 범죄법」, 제4090호「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바 있다.

페루는 디지털 무역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치는 없다. 페루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사항은 「법령 27291 (2000.6월)」을 따르며, 디지털 무역활동 중 사이버 안전기준은 「총리실 행정명령 2012-129호」에 의해 규율되고, 개인정보의 보호는 「법령 29733 (2011.6월)」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에콰도르의 정보통신부(MINTEL)는 2019년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 적절한 보호 하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또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에콰도르는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없기 때문에 신분증(Cedula) 번호나 자동차 번호만으로도 타인의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가 취약한 상태이다.

온두라스는 국내산업의 보호나 사이버 안보 등을 이유로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 법상에서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한편 온두라스 관세청은 2020년 코스타리카가 신규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 부가가치세 부과 법안과 유사한 법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나마는 디지털 무역 기반이 미미하여 특별한 디지털 무역 관련 장벽은 없는

편이다. 또한, 역외 송금이나, 페이팔 등 온라인 상 국가간의 결제도 자유롭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파나마는 2008년에 제정한「전자 문서 및 전자 서명 문서의 기술적인 저장과 전자 서명인증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정의와 전자 상거래 발전을 위한 법률」에 전자상거래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있으며, 동 법률은 2012년에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법률 제82호).

파나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2019년 3월「개인정보보호법(제81호)」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제5조에 따르면,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내외국민의 개인정보, 동 데이터 취급자 등 파나마 공화국 내의 데이터베이스는 동 법의 법규와 규칙 적용 대상이 되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280]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파나마「전자상거래법」제78조(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는 "타국가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을 통한 상업 서비스는 현 법률에서 인정하는 국제협약이 규정하는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의 자유로운 제공 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파나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업거래를 수행할 경우, 기술적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파나마 법의 의무사항과 현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최근 인터넷서비스 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정책적 기반은 아직 취약하다. 볼리비아의「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제164호(2011.8.8.)」제4장에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이행을 위한 지침(Reglamento para el Desarrollo de Tecnologías de Información y Comunicación (2013.11.13.))」제56조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수집, 보관, 처리 등)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혹은 사법당국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 개인정

280)「개인정보보호법(제81호)」제5조에서 "파나마 공화국 내에서 저장된 개인 정보의 원본 또는 저장본 중 기밀, 정밀, 제한된 정보 또는 국제적인(국경을 넘는) 정보의 저장 또는 이전은 상기 정보(데이터) 저장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동 법이 요구하는 정보(데이터) 보호 기준을 준수하거나 동법이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 혹은 상급 수준의 정보 보호 기준 또는 법규를 준수함을 증명할 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에 개인정보 취급(처리) 주체가 지켜야할 보안 관련 의무사항을 두고 있다.

튀르키예에서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를 관리·감독하는 부처는 무역부이며, 인터넷 콘텐츠는 정보통신기술청이, 그리고 결제 관련 사항은 은행 규제 감독청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튀르키예에서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규제법 No. 6563」(2014년 제정)에 의해 규율된다. 동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자는 자신의 신원, 연락처, 주소 등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고 소비자는 판매자로부터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튀르키예에서 디지털무역은 「전자상거래 규제법 No. 6563」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법 No. 6502」, 「인터넷에 게시 된 콘텐츠 규제에 관한 법률 No. 5651」, 「전자 서명에 관한 법률 No. 5070」,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No. 6698」, 「결제 및 보안 결제 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No. 6493」, 「서비스 제공자 및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 「인터넷에 게시 된 콘텐츠에 대한 규정(2017년 11월 30일)」, 「원거리 계약에 관한 규정(2014년 11월 27일)」, 「상업 통신 및 상업 전자 메시지에 대한 규정(2015년 7월 15일)」 등 다양한 법과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정보기술위원회(CITC: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는 2019년 정부 클라우드(Cloud) 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설립 후 만들어진 개인정보 취급 내부 지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의료정보, 범죄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한다. 이에 더하여 2022년 3월 사우디 데이터 보호 규제 기관인 SDAIA는 NDMO(National Data Management Office)와 협업 하에 「개인 데이터 보호법(PDPL: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초안을 발행했다. 이는 왕국 최초의 포괄적 데이터 보호법으로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스를 보호하고 조직의 개인 데이터 수집, 처리, 공개 또는 보유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법령은 2023년 3월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만의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DPL)」은 국왕령 6/2022에 따라 2022년 2월 13일 공포되었고 2023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행정 규정과 조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개인 식별 정보를 보유하거나 처리하기 전에 개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교통통신정보기술부로부터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 당사자는 예외적인 경우[281]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주체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오만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와 "개인 데이터의 특수 범주(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와 관련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조건 또는 특정 안전장치가 없다. 그 대신 오만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전자 데이터, 생체 데이터, 건강 데이터, 인종 기원, 성생활, 정치 또는 종교적 의견, 철학적 신념, 범죄 유죄 사실 및 보안 조치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 처리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보호자의 승인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오만 정부는 특정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리고 오만 통신 규제국(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은 음성 및 화상 인터넷 통화에 사용되는 인터넷 전화(VoIP)의 이용을 금지(단,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일부 원격 교육 어플의 이용은 허용)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아직까지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제, 법령, 행정규칙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다. 현재 쿠웨이트에서 디지털 분야를 규율하는 법령은 「2014년 전자상거래법(Law No. 20 of 2014 The E-Commerce Law)」과 「2015년 사이버범죄법(Law No. 63 of 2015 The Cybercrime

281) 국가 보안이나 공익, 범죄 방지, 국가의 경제 및 재정적 이익 보호, 권한을 취득한 단체에 의한 연구 목적 등임.

Law)」이 있다. 「2014년 전자상거래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의 고객 관련 데이터를 당사자나 법원의 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단순히 전자상거래 분야에 그치지 않고, 공공, 민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사이버범죄법」은 쿠웨이트의 중요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혹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분야의 규제기관인 CITRA는 CITRA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이트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수행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인터넷 해킹, 온라인상의 거짓정보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같은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사이버범죄 법안(Anti-Cyber Crime Law)의 초안이 제안된 사실은 있으나, 아직까지 개인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무역, 사이버 안보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외 이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규제 또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정치적 분열이나 폭력 조장을 막기 위해, 또는 선정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검열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 10월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을 당시에 이라크 정부는 공공안전을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일부 SNS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바 있다.

요르단에서는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21년 11월에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았고 국회의 최종 추인을 남겨둔 상태이다. 요르단의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 따르면 요르단 외부로 개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요르단 법률에서 규정한 보호 수준보다 낮은 국가로 개인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요르단에서 시행 중인 국제 협정이나 조약에 따른 협력국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요르단 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도 당사자(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2가지 조건(①이전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당사자 및 데이터 수신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해야 할 것, ②개인정보 처리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목적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데이터 전송이 금지된다. 또한, 요르단의 데이터 처리 관련자는 개인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 데이터 수신자가 다른 국가에서 규정한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남아공의 「개인정보보호법(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은 2020년 7월 1일 시행(유예기간 1년)되었다. 동 법 제72조에 따르면, 남아공 기업이 고객이나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해외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① 정보를 제공 받는 해외기관, 기업 또는 정보수령자가 남아공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어 효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경우, ②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③ 정보제공이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 전 조치의 이행을 위한 경우, ④ 정보제공이 계약 종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⑤ 개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으나 정보이전이 해당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득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021년 8월 27일 남아공 정부는 기존 시행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PAIA Regulations)을 발표하였다. 신규 시행령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들이 내부적으로 임명한 정보담당관(Information Regulator)이 동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양식, 정보제공 요청 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정보제공 시 부과할 수 있는 비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282].

남아공은 2014년부터 온라인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구분 없이 온라인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직접세 도입과 관련하여, 2020년 8월 남아공 재무부는 OECD의 디지털세 관련 종합 보고서의 발표 또는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독자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케냐 대통령은 2019년 11월 디지털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재정법(Finance Bill, 2020)」을 승인했다. 케냐 재무부는 2021년 1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하여 케냐 디

282) 남아공 법무부 홈페이지

지털 시장에서 파생·창출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총거래가치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3%로 추가 인상도 모색 중이다.

케냐는 2019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9)」을 통과시켰으며,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직 설치,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등록 규정 도입, 개인정보주체 권리강화 등을 포함한다. 케냐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가 감독관에게 개인정보보안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보호장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관련 절차의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동 법은 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감독관에게 부여한다. 허가받지 않은 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취득한 경우, 정보주체에 실질적인 위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자는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5만 달러,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알제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정보이전에 동의한 경우 및 의료적 목적을 제외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보 및 국익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283]

코트디부아르는 디지털경제부가 디지털 및 ITC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의 정보통신규제청(ARTCI: Aut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TIC)이 감독을 한다. 디지털 거래와 관련해 2013년 디지털 거래 관련법이 신설되었으며 거래의 일부분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이루어지거나 코트디부아르 온라인망에서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 가능할 경우 코트디부아르 법이 적용된다.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2013년 코트디부아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동 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다루는 일의 경우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이나 의학·과학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 등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코트디부아르는 온라인 콘텐츠 검열과 관련된 별도의 제도를 두지 않고 있으나 2018년 온라인상에 폭력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

283) 알제리 「개인정보처리법(Law No.18-07, 2018.6.10.)」 제4장 44조 및 45조.

린 남성에 대해 2017년 개정된 「미디어법」에 포함된 "게시 방법과 상관없이, 폭력, 방화, 절도 등을 부추기는 글을 게시한 자는 징역 1~5년 형, 30~300백만 세파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내린 사례가 있다.

앙골라는 인터넷 보급률, 인터넷 서비스 품질, 인터넷 접근성, 카드결제, 통실·물류망 등 디지털 무역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미흡하고 디지털 문맹률이 높아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무역이 발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2020년 4월에 들어서 처음으로 앙골라 기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축되어 운영을 시작하였고, 2020년 2월 전자무역 관련 규정 도입을 위한 부처 간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튀니지는 2004년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보안청(ANSI: Agence Nationale de la Sécurité Informatique)을 설립하였으며, ANSI가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 감시 및 특정 보안 표준을 정의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284]

모로코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자연인 보호에 관한 법률 제09-08호(Loi n° 09-08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physiques à l'égard du traitement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에 따라 보호되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모로코 국가 개인정보보호 통제 및 보호 위원회(CNDP: La 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 la protec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이다. CNDP는 총리 소속 기관으로 법률 제09-0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해 감시·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모로코에서 개인정보 해외이전은 원칙적으로 CNDP가 허용한 국가로만 가능하며, 허가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상대측이 명백한 동의를 표했거나, 사생활, 공공이익 등의 보호가 필요할 때 가능하다.

가봉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은 2011년에 제정된 데이터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2018년에 제정된 전자통신법(The Electric Communications Act), 2018년에 제정된 사이버보안규정

284) https://www.mtc.gov.tn/index.php?id=428&L=0&uid_etab=2

(Cyber Security Order) 등에 의해 규율된다. 가봉은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개인정보관련 법적 조항, 시행된 보안 조치, 데이터의 성격·출처·목적지 등 정보내용)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간 개인정보 데이터 전송을 금지한다. 다만 ①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전송에 명시적으로 동의, ②생명구조, ③공익보호, ④법정에서의 변호권 보장, ⑤계약이행의 경우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매우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건 부문 조사 목적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 데이터의 국제적 전송이 불가능하다.



요약문

관세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다. 그러나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억제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 WTO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관세는 WTO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통상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섬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장벽이 남아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 여전히 관세가 높은 수준이다.

한편 WTO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자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세장벽 완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에는 IT제품, 환경상품 등을 중심으로 WTO 복수국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양자간 자유무역협상을 통해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EFTA, 싱가포르,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와의 FTA가 발효 중이며, 2023년 1월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됨에 따라 전체 FTA 발효 건수가 21건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그간 교착상태에 있던

한·GCC FTA와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2022년 3월과 9월에 각각 재개하였으며, 11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협정인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MERCOSUR,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상을 추진 중이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 목적, 방법,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과세의 기회에 따라서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나뉘고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 보호관세,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성격에 따라 일반관세, 특수관세로 분류된다. 일반관세는 국정관세, 협정관세를 말하며, 특수관세에는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할당관세 등이 포함된다.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되며 동 관세율표는 국제품목분류기준인 HS code에 따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이며 여기에는 다자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2~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품목별로 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개도국은 운송장비, 전기기계 및 농산물 분야의 관세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 약 13.6%, 평균 양허세율은 약 18.3%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

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온두라스,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의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은 중고차동차와 부품, 중고기계류, 중고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환경보호의 차원보다는 자국 산업의 보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방글라데시, 시리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쿠웨이트, 시리아, UAE 등 중동 국가들은 종교상 또는 정치상의 이유로 돼지고기 등 육류 수입을 제한하고, 이스라엘산 수입품이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상품 수입과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품목들에 대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학제품, 의약품 및 화장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산업이나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뿐 아니라 기초 금속 및 일부 원자재, 수송기기, 기계류, 전기기기, 석유제품, 섬유류, 화학제품 및 일반적인 제조업제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수입업자에 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무역부 또는 주무부처의 특별 관리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심각한 식량부족, 국제수지문제 등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시적·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을 허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량제한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다. 수량제한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

라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협정을 맺어 일부 섬유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제한 바 있다. 일본은 총 17개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EU, 한국 등의 철폐 요구에도 불구하고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만은 그 동안 실시해 왔던 소형자동차에 대한 수입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2011년부터 동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에콰도르는 휴대전화기 수입쿼터를 도입하여, 2012년 휴대전화 수입쿼터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195만대, 1억 4,3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자동차 수입쿼터를 축소하였으나, 동 제도는 2015년 12월 재연장하여 실행하다 2017년 1월부터 폐지되었다. 필리핀은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쇠고기통조림 등의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입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의 차원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국은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자동등록관리제도, 수입상품분급제도 등의 수입규제제도를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의무화하거나 수입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기도 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의 범위는 세관절차만을 의미하는 세관통관절차에서부터 수입과 관련된 제반절차 전부를 포함하는 수입통관절차까지 다양하다. 통관절차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류 임의 변경,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FTA의 확산으로 인한 원산지 규정 적용의 문제,

교역화물의 안전성과 물류 원활화의 조화, 개도국의 경우 통관 관련 역량 부족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역업자에게 상당한 시간적·금전적 교역비용으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통한 무역장벽 완화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 선진화는 세계 교역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WCO, WTO, OECD, World Bank, APEC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WCO는 통관절차 관련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교토협약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협약은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1974년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21세기에 맞게 현대화되고 효율적인 통관절차를 위해 한차례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개정 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통관 및 증빙 서류의 표준화 및 간소화, 인가된 영업자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 IT의 사용 극대화, 위험관리의 사용, 기타 국경 관련 기관 간의 조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33개국이 개정 교토협약에 가입 중이다.

WTO 차원에서 통관절차와 관련된 논의는 무역원활화가 싱가포르 이슈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싱가포르 이슈가 합의에 이르지 못 하다 2004년 DDA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July Package)이 합의되면서 무역원활화만이 뒤늦게 DDA 협상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다. DDA협상 중단에 의해 무역원활화 협상 역시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여타 DDA 이슈들에 비해 논의 진전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후 2014년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고, WTO 회원국의 2/3이 이상이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17년 2월 22일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협정 발효로 무역비용감소, 수출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1년 12월

현재 WTO 전체 회원국의 무역원화화 협정의 이행률은 76.2%이며,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으로만 국한하면 68.9%이다.

OECD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바탕으로 160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무역원활화 지수(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수를 활용하여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선순위 분야 선정, 효율적인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World Bank 역시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통관절차와 관련이 있는 물류성과지수(Logistic Performance Index)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다.

APEC 국가들의 경우 Shanghai Accord 채택 이후 역내 무역비용 감축을 위해 통관절차를 비롯하여 표준 및 적합성, 기업인 이동, 원산지 규정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간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통관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자동화시스템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통관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통관절차는 관세와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번한 분야로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와 더불어 기술의 발달로 전반적으로 통관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통관절차는 가시적인 무역장벽이나 무역제한조치와는 별개로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WTO 협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 회원국이 WTO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다보면 국가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예외를 인정함 없이 WTO 협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협정의 탈퇴나 위반을 초래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둘째, 동종상품이나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특정 상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한인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라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제한 조치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징으로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와는 구별된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수량제한조치를 사용하여 쿼터를 수출국 사이에 할당해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별적 적용이 허용된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최초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적용기간은 잠정조치, 최초 적용기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수량제한의 형태로 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농업협정에 규정된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므로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섬유

및 의류의 수입에 대해서도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잠정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WTO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412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WTO 출범 이후 25년간 연평균 약 15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더욱 증가했다. 1995~2022년 기간 동안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많이 한 국가는 인도(47건), 인도네시아(38건), 튀르키예(29건)이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25건), 필리핀(20건) 등의 세이프가드 조사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세계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2019년(30건), 2020년 22건, 2021년 9건 , 2022년 4건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는 수입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 시장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치이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전 세계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1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12년 이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매년 200건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고 2016년에 298건을 기록한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355건으로 급증하였고 2021년에는 186건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11년 이후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205건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287건으로 급증하였다.

1995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조치를 취한 국가는 인도, 미국 순이며, 상계관세 조치는 미국, EU 순이다.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빈번하게 취한 국가의 순위도 이와 같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화학제품에, 미국은 철강제품에 조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 미국의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이 통과되면서 조사 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강화되는 등 미국의 반덤핑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은 2016년 12월 12일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면서 분쟁(DS/515 및 DS/516)이 개시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따라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제15조(a)항(ii))은 15년 뒤인 2016년 12월 11일에 만료되어야 하는데(제15조(d)항),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고 지속적인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해당 조항이 만료된다고 하여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을 개혁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최근까지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EU도 보호조치를 신설한 후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조건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받더라도 미국과 EU 등은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개정하거나 상계관세를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GATT 협정에서 "회원국이 직간접적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상품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 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간접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다.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일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진시켜 균형가격을 낮추거나 소비를 증가시키고 특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특정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수출과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5년 1월 1일 발효된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과거 GATT 협정과는 달리 보조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함으로서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하였다. 동 협정은 제조업 부문의 보조금만을 다루고 있으며 보조금을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조금 문제는 WTO 체제하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부당성 증명, 보조금 정의의 명확화 등의 원론적인 문제와 더불어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 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달라 보조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개도국은 개도국의 경제개발 목적 보조금의 허용, 수출신용과 관련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입장 차이 뿐 아니라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금지보조

금, 보조금의 철회, 심각한 손상 등 보조금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도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각국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주로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 철강, 섬유 등 사양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인 원산지결정기준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그 규정의 불명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경제통합의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조치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제정되어 있다. 적용범위는 MFN 원칙, 반덤핑 및 상계관세, 원산지표시요건,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 정부조달,

무역통계 작성 등이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goods wholly obtained test)기준과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기준이 있으며, 실질적변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세계적인 통일 규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WTO 출범 이후 지속되어 왔으나, 각 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진전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별·지역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이한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크게는 미주지역의 NAFTA 모델과, 유럽지역의 PANEURO 모델로 양분할 수 있다. 한편 2018년에는 NAFTA 재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변경되었고, 여기서는 일부 원산지규정이 개정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상향, 역내산 철강·알루미늄 사용 의무화, 노동부가가치 요건 등을 통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강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역내 생산을 촉진하고 역내산 부품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약 10%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조달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큰 시장으로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를 폐쇄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내경제의 효율성이 하락함은 물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조달시장의 효

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된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이 있으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 원칙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체결되었으며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항의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만이 준수 의무를 가지는 복수국간(plurilateral)협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WTO차원에서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양자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상호간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한다. 아시아, 남미,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WTO-GPA가입국은 아니지만 FTA를 통해 조달시장은 상호 개방하고 있다. WTO-GPA를 통한 조달 규범의 확립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정치적 민감성 때문이며 이외에도 일부 국가들은 정부조달과 정부지출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도 GPA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들도 국내기업에 혜택을 주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부 국가는 GPA가 규정하는 투명성, 입찰과정, 낙찰기준에 관련된 조건 및 이행사항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교적 개방적인 정부조달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개정 GPA가 발효된 2014년 4월 이후부터 조달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규범적 측면에서도 개도국 우대 조치(가격특혜, 대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 단계적 추가 등을 일정기간 허용)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개도국의 GPA 가입 접근성도 높아졌다. 또한 아시아, 남미,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WTO-GPA 가입국은 아니지만 지역무역협정 및 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계 각국은 글로벌 조달시장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러-우 전쟁, 미중 전략경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리스크, 공급망,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의 조달정책은 보호주의적으

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경기와 공급망 재편 추세와 함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TBT는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SPS의 경우는 '식품에서 기인하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상의 위험' 및 '질병 또는 병충해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WTO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정)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및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원칙의 비차별원칙과 더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채택 또는 적용을 금지하는 필요성(necessity) 원칙, 국제표준을 사용할 의무, 동등성 및 상호인정, 투명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다자무역규범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 무를 부여하고 관련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TBT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TBT 통보건수가 개

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통보건수가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SPS 협정은 기본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WTO 회원국의 건강과 생명 관련 정책의 합법성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과학적 원칙'을 도입하여 SPS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것과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과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WTO회원국의 경우 자국의 SPS 조치에 대해 WTO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2006년 이후에는 매년 1,000건 이상의 통보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00건이 넘는 통보문이 접수되었다. 만약 SPS 조치와 관련하여 회원국간 통상 마찰이 있을 경우 연간 세 차례 개최되는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다자간 협상과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SPS 조치는 수입국의 검역주권에 따른 꼭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수출국입장에서는 당해 SPS 조치를 정당화될 수 없는 무역제한조치로 인식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최근 각종 질병 및 병충해의 진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SPS 조치를 취할 유인은 더 높아 앞으로도 SPS 조치를 둘러싼 이해관계국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국제무역에서 무형자산의 하나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여러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특히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TRIPs협정은 위조 상표의 교역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요 국제협약을 모두 흡수하여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산업디자

인, 특허, 반도체설계, 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그 보호의 최소기준, 실행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강력한 협정으로 탄생하였다. 최근에는 FTA 등을 통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범위의 확장, 신유형 지재권 보호 등으로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확장되고 있다.

서비스

GATT 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제정되어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으며, UR 협상 당시 서비스 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로 채택되어 2000년 2월부터 GATS하에서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었다. 이후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9개 주요 협상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DDA가 출범하면서 DDA 선언문에 서비스협상의 일정 및 최종협상시한이 명시됨에 따라 동 분야의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02년 6월에 서비스 분야별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고, 2003년 3월에 양허요청안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분야별 양자간·다자간 협상과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2003년 9월)가 결렬되면서 최종협상시한의 연기가 불가피해지면서 서비스협상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되었으나, 2004년 8월 1일 'July Package'가 채택되면서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서비스 협상의 경우 July Package에서 1차 양허안 미제출 국가의 조속한 제출을 독려하고 1차 양허안 기제출 국가의 수정 양허안 제출 시한(2005년 5월)을 명시함에 따라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서비스 분야의 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5년 5월에는 수정양허안이 제출되었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DDA 협상은 2011년 들어 DDA 출범 10년째를 맞이하여

연내 협상을 타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WTO에서는 1/4 분기 동안 복수국간·양자간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DDA 서비스 협상이 2005년 5월 주요국들의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DDA 서비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간에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의 협상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2012년 2월부터 2013년 초까지 개최되었으며, 2013년 3월부터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시작하였다. 2013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TiSA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 TiSA 협상 참여국들이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TiSA 협상은 2016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다자 및 복수국간 협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크게 낮아지면서 TiSA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GATS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비스 교역장벽은 이러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시장접근(MA) 및 내국민대우(NT), 그리고 최혜국(MFN)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으로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MFN 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목록으로 구성되며, 특히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와 MFN 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GAT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조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운법에 따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신업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연,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건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으며, 외국인 설립 기업에 내국인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WTO 가입 당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 단계적인 개방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인 규제 완화·철폐가 이루어졌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의 외국인 투자 제한목록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철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제한·금지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여기에는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그리고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정의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 따르며 현재도 그 범위와 정의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이란 이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협정에 위반되는 당사국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시장접근

제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정,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들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합리적인 이유의 이른바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도 협정에 따른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이자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볼 수 있다.

GATS 이후 WTO 차원의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은 2001년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이 출범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 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 각국의 강도 높은 자유화를 요구한 반면, 개도국들은 각 회원국의 금융시장 발전 정도를 감안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립한 끝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DDA 협상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자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복수국간협정의 형식의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 개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TiSA 협정에는 금융서비스를 비롯하여 17개 규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명성, 정보통신 등 GATS 보다 더 높은 규범 수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SA는 2016년 11월 21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현재 참여국간 협상이 진행 중이나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2021년 12월에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의 타결이 선언되었다. 이는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이미 개방한 분야에서의 국내절차적 측면(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에 대한 투명성·개방성·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범의 경우 적용 여부가 회원국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일반서비스 부문과 비교해 의무수준은 완화되어 있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는 단순한 FTA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이른바 Mega FTA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비록 미국의 불참으로 그 영향력은 반감되었으나, CPTPP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이 있으며, 규범 수준은 한·미 FTA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규범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만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CPTPP에서 금융서비스 챕터(11조2항)는 유예조항인 상태이다.

오늘날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연관되어 있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긍정적 효과로는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선진 투자기법의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서민금융 위축 우려,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투자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로 크게 설립 전 단계와 설립 후 단계의 장벽으로 구분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와 동등하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약하는 사항을 말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대상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설립 후 단계의 장벽은 기투자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 역시 장벽이 될 수 있다.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의 이해상

층에서 비롯된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사항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으로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투자가 활성화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 국제투자규범이란 한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장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이행의무의 부과,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제한 등이 있으며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과세 문제, 금융 및 자본조달 상 제약, 인력의 현지 파견 제약 등이 있다.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의 특징은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각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특징을 보인다.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으로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 목적 하에 경영권을 국내투자가(내국인)가 보유하도록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련 제한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제한의 강도는 개도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외환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및 사무소 설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도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을 상대적으로 많이 두고 있다. 투자관련 이행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에서

다수의 이행의무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 제공과 결부해서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시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 제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을 포함한 일반적인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체제전환국, LDC 등의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사용권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설립 후 단계에서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과실송금의 제한과 현지에서의 세금문제이다. BIT에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과세 상 목적 등으로 송금 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적법한 과세절차를 거친 과실 및 양도차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반적인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세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관리차원에서 송금을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가 많다. 한편 과세 문제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력의 현지 파견 문제는 노동허가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 등이 애로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환경

환경 관련 다자간 협의가 최근 결과를 거두었다. 2015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회의(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교토의정서를 승계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2016년 11월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선진국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자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체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협정 이행에 관한 세부지침이 대부분 2018년에 채택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로 탄소시장에 관한 지침은 2020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도 한층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유화 노력은 APEC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다가 최근 주춤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이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2014년 7월 1차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2016년 12월 제네바에서의 2차 협상이 마지막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도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 및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1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회의(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계기 미국은 2005년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50~52% 감축한다는 신규 강화된 감축공약(NDC) 및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였다.

EU 의회와 이사회는 2017년 12월 EU역내와 EU역외 지역간의 항공 운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는 내용으로 EU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캐나다 역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영국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저탄소사업전략을 통해 경쟁력 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6월에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는 새로운 법을 채택한 첫 국가이다.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는 GMO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은 건축이나 사업 허가시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보호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유발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캄보디아도 인접국가에 비해 환경관련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중국은 최근 「푸른하늘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2018년 7월) 등 환경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을 개정하여 '생태문명 건설' 개념을 명시하

였고,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다. 호주는 기존 '탄소가격제'와 '탄소세'를 폐기하고 탄소배출감축분을 정부가 역경매(Reverse auction) 방식으로 매입하는 배출감축펀드 (Emission Reduction Fund, ERF)를 주축으로 한 「직접행동계획(Direct Action Plan)」을 도입하였다. 또한, Post- 2020 신기후변화체제하 국별 기여방안(INDC)을 발표하여 호주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하기로 하였다. 최근 호주 정부는 기술투자 로드맵(Technology Investment Roadmap)을 통해 탄소포집 및 저장, 수소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배출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호주 정부는 저탄소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분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미래 에너지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들과 수소 등 저탄소분야관련 기술개발 등 협력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여 2019년 5월 26일 최종 대통령 승인을 받음으로 입법이 완료되었다. 탄소세 부과는 2019년 6월 1일부로 1단계(2019~22년)와 2단계(2023~30년)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중진국진입 및 탄소배출 중립국을 목표로 국가발전방안 및 투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그 중 인도는 환경관련 규제 장치를 발전 및 강화하고 있다. 아직은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개별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되고 있으며 대상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쟁정책

경쟁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행, 즉 기업 간의 공모행위나 진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쟁법 상에서 통제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반경쟁적인 기업관행

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이 있다.

경쟁정책을 세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국제기구 및 협의체들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컨세서스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사례 검토, 권고안 채택, 경쟁포럼 채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4개 국가들의 경쟁 환경을 평가하는 경쟁법/정책 지표(CLP: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개발하였다. 다자간 규범에도 경쟁과 관련된 규정들이 반영되어왔다. GATT 협정은 수입 독점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율(제2조)과 수입에 대한 내국민대우 규정(제3조)을 담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 GATS협정은 독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 시 협의 요청 및 협의 의무,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그러나 경쟁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및 조화를 위하여 WTO와 OECD 범위 밖에 구성된 경쟁법 전문 국제협의체이다. ICN 총회에서는 경쟁정책의 이행, 카르텔, 기업결합 등 각 실무그룹들의 활동을 보고하며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모범사례 도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ASEAN은 2007년 아세안 경쟁정책 전문가 그룹(ASEAN Expert Group on Competition: AEGC)을 설립하여 회원국 간 자유무역 확산과 경쟁법 도입을 장려하였다. 2010년에 「아세안 역내 경쟁정책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여 역내 경쟁정책의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였고, 2012년에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표준화된 「아세안 역내 경쟁정책·경쟁법 핵심 역량 발전에 관한 가이드 라인 II」을 발표하였다. 2020년 발간된 'OECD Competition Trend 20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25개국이 경쟁법을 보유하고 대부분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적으로 경쟁법의 집행은 급격하게 성장해왔다.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국제규범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나 경쟁정책은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왔으며 국별 경쟁당국 간의 협의, 국제기구를 통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자국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기업간 합병 등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무역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반독점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

DDA 출범 이후 다자 차원의 디지털 무역 규범 마련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FTA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교역 당사국과 체결한 FTA에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이전, 데이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의무를 점차 확대·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WTO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이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서의 통상장벽을 규정하기 쉽지 않다. 디지털 무역 장벽의 유형이 다자·지역 통상협정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과거 미국이 참여했던 TPP(현 CPTPP) 협정부터이다. 동 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14)에는 전자적인 전송에 대한 과세 부과를 금지한다는 조항(제14.3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제14.4조)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제14.11조),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소위 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제14.13조), 그리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 또는 공개 요구 금지(14.17조)와 같은 네 가지의 의무를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의 통상장벽을 조사하여 매년 3월 말에 발표하고 있는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이하 NTE 보고서)에서 디지털 무역 장벽의 몇 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미국은 2016년까지 조사 분야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오다가 2017년 NTE 보고서부터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Barriers to digital trade)으로 개편한 바 있는데,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장벽으로 각국의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 요구를 포함하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장벽, 디지털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차별적 조치, 인터넷 지원 서비스의 공급 제한, 기타 제한적인 기술 요건을 포함하는 등 장벽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전술한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내용과 같이 향후 동 분야의 협상에서 다루어질 디지털 무역 장벽은 TPP 협정에서 고려되었던 사안에 그치지 않고 인터렉티브(interactive) 컴퓨터 서비스나 공공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관련 조치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은 각국의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일부 민감한 사안 또는 분야를 제외하면 디지털 무역 관련 장벽이 낮은 편이다. 선진국들과는 상반되게 개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많고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지역화와 같이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분야별 통상환경 –

◈ 인 쇄 | 2022년 12월

◈ 발 행 | 2022년 12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 나모기획 (044-998-6998)